찾아가는 규제개혁
www.better.go.kr

2014 규제개혁백서

국민을 웃게 하는
행복한 변화

2014 Regulatory Reform Book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2014 규제개혁백서

국민을 웃게 하는
행복한 변화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국민을 웃게 하는
행복한 변화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 발간사

“규제의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

이 백서를 통해 2014년 한 해 동안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과정과 그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그 기록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작년은 우리나라 규제개혁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된 한 해였습니다. 우선 규제개혁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였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보다는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는 폐지 · 완화하고 생명 · 안전관리 규제는 강화하는 두 방향(Two-Track)의 규제개혁을 천명, 규제의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하고 끝장토론을 실시하여 높은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규제부담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를 설치, 18,033건의 건의가 접수되는 등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중 일반 민원을 제외한 총 6,500여건(중복건의 제외)의 건의규제 중 2,300여건을 수용하였는데 이는 13년 대비 건의건수는 20배, 수용률은 4배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또한, 규제기요틴을 실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규제를 3개월 내에 일괄적으로 처리, 114건의 규제건의를 개선키로 하였고, 경제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도 추진하여 총 995건을 감축하였으며 입지 · 건축 등 불합리한 규제 796건도 완화하는 등 작년 한해 총 3,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개설하였습니다. 규제정보포털은 정부의 규제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규제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 등 각종 규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의 규제애로를 건의부터 개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작년 한 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서비스산업 규제, 덩어리 규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 시장 창출을 선도하기 위한 핀테크 · U-Health 등 융복합 산업의 규제, 공장신증설 · 인허가 및 국민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규제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규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규제개혁이 쉽지 않은 길이고 멀고 힘든 여정이라는 것을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 도지사 시절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봉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규제현장의 크고 작은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규제개선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고 국회의 협조와 국민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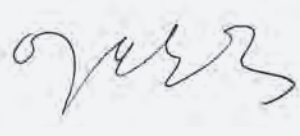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발간사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위해 성심껏 노력”

2014년 한 해 동안 추진된 규제개혁 활동을 정리하여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위축된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로 전환되지 못하면서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 목적과 수단이 균형을 상실한 규제들로 인해 기업들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혁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나아가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데 핵심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2014년은 규제개혁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한해였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공론화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앞장서서 규제개혁을 추진한 덕분에 개혁의 강력한 추동력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두 차례(3.20, 9.3) 개최하였으며 현장건의과제 77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제활동규제를 10% 감축하고 핵심규제를 개선하는 등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히 규제개혁을 추진

하였습니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기요틴 방식을 도입하여 경제단체 건의과제 114건을 개선하기로 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규제 신설 · 강화로 순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를 폐지 · 완화함으로써 규제비용총량을 동결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 8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들의 규제애로를 듣고 이를 해결하는데에도 힘썼습니다.

규제현장의 시급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30회)하고, 346건의 손톱 밑 가시를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규제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를 개설하였으며, 건의에 대한 소관부처 답변 → 답변에 대한 소명요구 → 합리적 건의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의 3심제로 책임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300여건의 규제건의가 수용되는 등 전년대비 수용건수 95배, 수용률 4.6배(8%→36.6%) 증가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전면 개편하고 다양한 규제정보 및 규제건의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TV광고 등 다양하고 파급력있는 홍보수단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성과를 알리고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발간사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신설 · 강화 규제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성 및 규제수준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심사하였으며, 1,148건의 규제를 심사하여 138건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개선 · 철회를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노력들로 인해 대한상공회의소 규제개선 체감지수 조사 및 중소기업중앙회 만족도 조사 등에서 기업들의 체감도 및 만족도가 전년대비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올 해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위해 성심껏 노력하고자 합니다.

규제기요틴 방식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정비 · 합리화하여 규제 접점 관리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보다 활성화하여 실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피규제자들의 건의를 즉시 해결하고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규제는 바람직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서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목적을 가지거나 필요이상의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규제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니지만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경제는 재도약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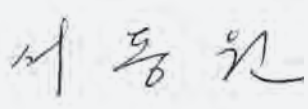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

바로 국민이 함께하는 규제개혁입니다.

○ 규제개혁장관회의

찾아가는 규제개선간담회

일방적인 규제개혁은 ***NO!***

소통의 규제개혁은 ***YES!***

선진 인류국가, 따뜻한 사회
규제개혁으로 이루겠습니다.

○ 규제개혁 홍보버스 제막식

2014
REGULATORY REFORM BOOK

○ 규제개혁위원회

▲ 이완구 총리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서울청사)

▲ 본회의

대한민국의 新 성장동력!
규제개혁을 통해 만들어 갑니다

▲ 경제분과

▲ 사회분과

CONTENTS

기고문

경제혁신을 위한 '2단계 규제개혁'을 기대한다. ····· 24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 이 동 근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소고 ····· 29
한국행정연구원 이 종 한

제1장 규제개혁 추진 개요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 38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 40
1. 개 요 ····· 40
2. 추진체계별 기능 및 역할 ····· 41
3.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43
4.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47
5.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 49
6.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설치 및 운영 ····· 50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 53

제3절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 54
1. 규제현황 ····· 54
2. 부처별 규제현황 ····· 54

제2장 규제개혁 추진 실적

제1절 규제개혁장관회의 ····· 60
1. 추진배경 ····· 60
2.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요 ····· 60
3.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실적 ····· 62
4. 규제개혁장관회의 성과 ····· 66

제2절 규제비용총량제 ····· 67
1. 규제비용총량제 개요 ····· 67
2.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현황 ····· 73

3.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주요 사례 ····· 76
4.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 ····· 81

제3절 규제개혁신문고 ····· 82
1. 운영 취지 ····· 82
2. 건의 처리 절차 ····· 82
3. 2014년도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성과 ····· 88
4. 주요 규제 개선 사례 ····· 88
5. 향후계획 ····· 93

제4절 규제기요틴 ····· 94
1. 규제기요틴의 정의 및 의의 ····· 94
2. 규제기요틴 추진체계 ····· 94
3. 규제기요틴 추진경과 ····· 95
4. 규제기요틴의 성과 ····· 96
5. 규제기요틴 과제 검토결과 ····· 97

제5절 핵심규제 개선 ····· 107
1. 추진배경 ····· 107
2. 추진방식 및 경과 ····· 107
3. 핵심규제 개선 주요 성과 ····· 108
4. 향후계획 ····· 111

제6절 기존규제 감축 ····· 112
6-1 기존규제 10% 감축 ····· 112
1. 추진배경 ····· 112
2. 기존규제 감축목표 설정 ····· 112
3. 기존규제 감축 추진 ····· 113
4. 기존규제 감축 결과 ····· 114
6-2 일몰 설정 ····· 116
1. 규제 일몰제의 개요 ····· 116
2. 규제 일몰 설정 추진 ····· 117
3. 향후계획 ····· 118
6-3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개선 ····· 119
1.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개요 ····· 119
2. 추진실적 ····· 120
3. 향후계획 ····· 121

CONTENTS

제7절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 ····· 122
1.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 ····· 122
2.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 132

제8절 규제정보화 추진 ····· 137
1. 추진배경 및 경과 ····· 137
2. 규제정보포털의 주요 기능 ····· 138
3. '14년 규제정보화 중점추진 내용 ····· 139
4. 향후계획 ····· 140

제9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141
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배경 ····· 141
2. 개정 추진경과 ····· 142
3.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142
4. 국회 심의경과 ····· 144
5. 향후계획 ····· 146

제10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 147
1. 개 관 ····· 147
2. 국제회의 참석 ····· 148
3. 규제개혁 경험전수 및 양자간 규제개혁 협력강화 ····· 151

제11절 규제개혁 홍보 ····· 153
1. 추진배경 ····· 153
2. 주요내용 ····· 154
3. 향후방향 ····· 159

제12절 미등록규제 정비 ····· 160
1. 추진배경 ····· 160
2. 추진경과 ····· 161
3. 향후계획 ····· 163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 166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 168
1. 기획재정부 ····· 168
2. 공정거래위원회 ····· 182
3. 금융위원회 ····· 203
4. 금융감독원 ····· 257
5. 관세청 ····· 267

제3절 산업·에너지 분야 ····· 269
1. 산업통상자원부 ····· 269
2. 중소기업청 ····· 301
3. 특허청 ····· 309

제4절 국토·해양 분야 ····· 311
1. 국토교통부 ····· 311
2. 해양수산부 ····· 387

제5절 농림축산 분야 ····· 413
1. 농림축산식품부 ····· 413
2. 산림청 ····· 430

제6절 방송통신 분야 ····· 434
1. 방송통신위원회 ····· 434

제7절 노동·환경 분야 ····· 444
1. 고용노동부 ····· 444
2. 기상청 ····· 463
3. 환경부 ····· 465

제8절 교육·과학기술 및 문화 분야 ····· 512
1. 교육부 ····· 512
2. 미래창조과학부 ····· 520
3. 문화체육관광부 ····· 537
4. 문화재청 ····· 554
5. 원자력안전위원회 ····· 560

CONTENTS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 568
1. 보건복지부 ····· 568
2. 여성가족부 ····· 588
3. 식품의약품안전처 ····· 593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 625
1. 통일부 ····· 625
2. 외교부 ····· 628
3. 국방부 ····· 629
4. 국가보훈처 ····· 631

제11절 일반행정·안전 분야 ····· 632
1. 행정자치부 ····· 632
2. 인사혁신처 ····· 639
3. 국민안전처 ····· 642
4. 법무부 ····· 657
5. 경찰청 ····· 660
6. 국민권익위원회 ····· 664

제12절 규제영향평가 ····· 666
1.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요 ····· 666
2. 평가항목 및 요소 ····· 668
3. 작성 대상 및 절차 ····· 669
4.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672
5. 향후계획 ····· 678

제4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14년 규제개혁 평가 ····· 682
1. 규제개혁 평가개요 ····· 682
2. 2014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 683
3. 부처별 평가결과 ····· 683
4. 분야별 평가결과 ····· 684

제2절 2015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 686
1. 기본방향 ····· 686
2. 중점 추진분야 ····· 687

제5장 부록

제1절 규제개혁 관련 법령 ····· 692
1. 행정규제기본법 ····· 692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709
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 722
4. 규제개혁장관회의 운영훈령 ····· 728
5.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731
6.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733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일지 ····· 735
1. 본 회의 개최 일지 ····· 735
2. 경제분과위원회 개최 일지 ····· 737
3. 사회분과위원회 개최 일지 ····· 738

제3절 규제개혁 핵심사례 40선 ····· 740

제4절 2015년 행정규제 업무기준 ····· 754

제5절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매뉴얼 ····· 813

경제혁신을 위한 '2단계 규제개혁'을 기대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 이 동 근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유로존과 중국 등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나홀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 경우 국제금융시장도 요동칠 우려가 높다. 대내적으로는 GDP 성장률이 여전히 잠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주력산업의 성숙화로 인한 만성적 고용부진, 계층간 소득격차 심화, 급속한 고령화와 폭증하는 청년실업률 등 해결해 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위기가 경기순환적 문제를 넘어 제도적,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혁신이 시급하다. 물론 그 동안에도 경제혁신의 목소리는 드높았지만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딘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웃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재건의 기치를 내걸고 아베가 쏘아 올린 세 개의 화살 - 금융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 - 도 금융완화 정책만 강력히 시행되었을 뿐,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세 화살 모두 부러질 위기에 처해 있다. 구조개혁 없는 부양정책만으로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경제석학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우리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현 정부의 남은 3년 동안 경제체질을 뿌리부터 바꿔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여야 하는 상황적 당위성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과감한 규제개혁은 경제가 난국을 이겨내고 도약의 궤도로 들어서는 지름길이다.

1. 2014년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 규제개혁의 원년

지난해는 가히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원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주재하신 2차례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처럼 규제개혁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했던 시기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과 국민들도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한해였다.

경제계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국무조정실 중심의 정부 규제개혁 노력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먼저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핵심규제의 개선이 과감하게 이루어졌다.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파급력이 큰 규제개혁 대책을 추진하였다. 또 연말에는 규제기요틴을 통해 대한상의 등 8개 경제단체에서 건의한 153건의 기업활동 저해규제가 집중 검토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작년 말까지 불합리한 경제규제 10% 감축을 추진하였다.

다음으로 규제시스템 개혁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여 등록규제가 많은 8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 신설·강화 규제 중 217건과 기존 규제 중 627건에 대해 규제일몰을 설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시스템개혁 작업을 추진한 것은 규제개혁의 효과성과 일관성,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시의적절했다는 평가이다. 과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후반기에 개혁 추동력을 잃고 오히려 규제 수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원인 중 하나도 시스템개혁의 미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과 국민과의 눈높이에 맞춘 정부의 현장소통 노력도 인상적이었다. 이번 정부 출범후 발족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전국 순회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을 시행하여 기업 현장의 시급한 규제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규제개혁 성과의 현장 확산에 기여하였다. 규제정보포털의 전면 개편을 통해, 규제신문고를 개설하고 건의과제를 상시 접수, 처리함으로써 원스톱 규제개선 창구를 실현하였다. 규제신문고는 수용곤란 건의 과제에 대해 정부의 소명을 의무화함으로써, 규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를 국민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정부가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제시하도록 한 점이 커다란 특징이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은 경제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 12월 대한상의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체감지수[1]를 측정한 결과 121로, 기업들이 규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 전반에 걸쳐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국회가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아, 개혁의 병목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가 제안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나 여당의 규제개혁 특별법과 같은 시스템개혁법안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어렵게 지혜를 모아 마련한 개별 규제 개혁 법안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이다. 여기에 더해, 규제심사조차 받지 않는 의원입법 형태의 무분별한 규제성 입법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도 '대못 뽑기'식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 진행되는 정부 시스템 혁신으로 연결되어야 최소한의 규제개혁 성공이 담보될 수 있다. 과거 정부가 규제개혁 실패는 결국 이런 꾸준함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2. 규제개혁을 위한 경제계 지원활동

경제혁신의 근본적인 실행주체는 기업이다. 때문에 규제개혁을 포함한 경제혁신이 성공하려면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는 팀플레이가 중요하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인식하에 기업의 목소리가 정부의 규제개혁 활동에 활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에도 규제개선 건의 활동을 비롯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2월에는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71개 전국상의와 30여개 업종단체, 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취합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과제'를 전달하여 정부 정책개발을 지원하였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 발표 이후에는 각 분야별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는지 점검하는 '경제혁신 국민점검반'(공동반장 : 대한상의 부회장, KDI 원장)을 운영하였다.

또한 대한상의는 지난 12월 전국228개 지자체의 기업환경을 색으로 표현한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해 발표하였다. 이는 기업의 투자적지 선정에 도움을 주고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기

1 지수가 100이상일 경우 지난해 보다 규제가 개선되었다고 체감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

위한 것으로, 기업의 지자체 규제행정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조례 및 기업지원실적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으로 구성되어, 분야별 지자체 순위와 평가점수를 상세하게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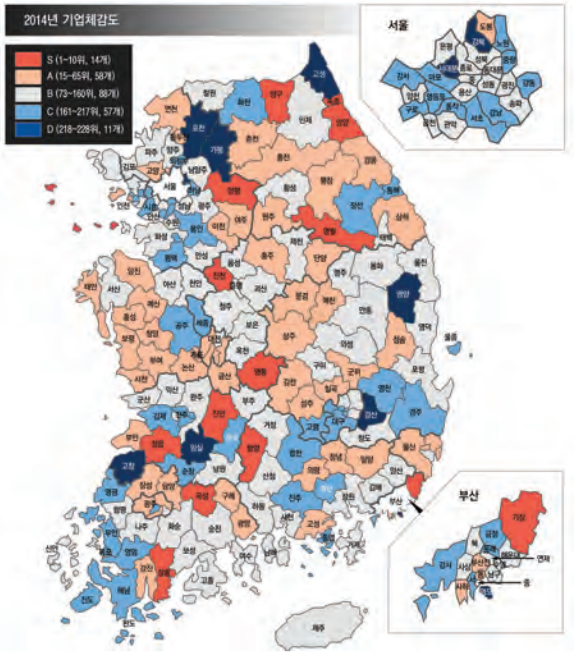

이를 통해 일선 지자체간 경쟁이 촉발되어 발표 이후 2월말까지 100여건의 조례가 개정되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매년 평가항목을 확대,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를 조사하고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별 평가도 병행하는 등 정부의 규제개혁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 '2단계 규제개혁'에 거는 기대와 바람직한 규제개혁을 위한 제언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유례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의 중심추는 기업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기업은 100마일의 속도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며 사회 다른 부분의 변혁을 주도하는 반면에 정부와 법·제도는 30마일도 안되는 속도로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우리가 경제혁신을 고려할 때 기업이 가장 역동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 활력을 뒷받침하는데 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시스템 정비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건수에 의한 기존 규제관리에서 벗어나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일몰제 등을 본격 추진하여 규제신설을 억제하고,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관련법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와 결단이 촉구된다.

둘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핵심·덩어리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우리 노동시장은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중 어디에 소속되는가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박탈감을 줄이고, 기업이 정규직 확대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교육·관광 등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는 각종 규제가 기득권 보호장치로 전락된 것은 아닌지, 규제를 완화하면 공익이 훼손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규제개혁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셋째, 규제개혁 성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이다. 감사를 두려워하는 법집행과 행태, 부처 이기주의적이고 면피적인 행정행태는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가장 큰 규제개혁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공무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제도화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도 선언적 조치에 수준이 아닌 일선행정 공무원들도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면밀하게 설계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올해를 제대로 된 규제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이 시기를 헛되이 소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정부가 계획 중인 2단계 규제개혁 방안[2]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국민 등 모든 부문의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참여다.

2 2단계 규제개혁은 ❶ 지자체 규제혁신 ❷ 융복합·신산업 규제혁신 ❸ 경제혁신 걸림돌 제거 ❹ 규제시스템 선진화 ❺ 국민체감 강화 등 5대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임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소고

한국행정연구원 이 종 한

1. 서 론

2014년은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로 규제개혁이 전 국민적 화두로 등장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지난 1년간 추진한 규제개혁의 범위와 수준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부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혁 추진의지만 보면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행정부만의 노력으로는 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피규제자인 기업과 국민의 참여는 물론이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은 필수적이다. 또한 규제개혁은 단기에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정책분야이다. 이렇게 보면 작년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를 채 일 년이 되지도 않아 평가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또한 규제개혁의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규제개혁 과제 수, 규제개혁 과제의 행정적 처리완료, 규제건수의 증감, 규제관련 법 개정 완료 건수, 기업과 국민의 규제부담 완화정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크기 등 다양한 지표로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지표가 규제개혁의 성과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지 구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앞서 언급한 과제 수나 행정처리 완료시점, 규제건수 등의 지표보다는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정도나 국민경제 파급효과의 크기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단기에 확인하기 어렵고 효과가 반영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지표를 만드는 데에도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본 고에서는 필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몇 가지 특징적 사안을 중심으로 지난 일 년의 규제개혁 평가에 대한 논의를 대신하고자 한다.

2.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의 규제개혁

대부분의 정부는 집권 초기에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한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친화 정부를 표방하면서 집권 초기에 규제 전봇대 뽑기를 필두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다 부처 관련 기존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제를 추진하였다. 당시에는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존규제의 개선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담당하는 이중적 규제개혁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법에 명시된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규제개혁기획단을 구성하여 다 부처 관련 핵심 덩어리규제의 개선을 전담하였으나 규제개혁기획단은 규제개혁조정관이 단장을 겸임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하는 차원이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때와는 구별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별도의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어 규제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원래 규제개혁위원회 설립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실제로 일부의 주장대로 정부의 규제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다. 법에 명시된 규제개혁의 권한도 제대로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한을 이용하여 규제개혁의 주창자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위원회가 규제개혁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의 규제개혁위원회 사무조직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이 담당하고 있지만, 규제개혁위원이 모두 비상임임을 감안할 때, 실제 규제개혁 정책을 실무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력과 예산으로 규제개혁을 총괄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조직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부처와 업무협약을 맺어 마치 하나의 조직처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유연조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실무조직을 확대 개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안정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2014년 3월 20일과 9월 3일 두 차례의 공개적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과제를 점검하였다. 이러한 규제개혁장관회의는 홍보측면에서는 상당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도 이러한 대국민용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지속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규제개혁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과 관련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서비스산업 등 주요 분야의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규제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관계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3]을 한다. 규제개혁장관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담당하며 분기별로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핵심적 규제현안을 점검하고 추진을 독려한다는 의미에서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추진회의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운영했었지만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하였으며 일반적인 규제정비 방안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이 이루어졌다[4].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추진회의는 핵심규제 개혁과제에 대한 심의 및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지만 정기적으로 개최되지는 않았으며 현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같은 전략적 기능은 부여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장관회의가 규제개혁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와 규제개혁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본 기능하고도 중복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첫 번째 기능은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5]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규제개혁장관회의가 규제개혁과 관련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면 규제개혁위원회가 보다 구체적인 정책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정책방안 구체화 기능을 강화해서 실질적 내용을 확보하고,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 대한 홍보위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규제개혁은 처음도 끝도 '정치적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른 개혁정책도 비슷하지만 규제개혁은 특히 그 속성상 개혁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대통령훈령 제328호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 제3조
4 2004년 규제개혁백서, p.39
5 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 제1호

4.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운영

작년 한 해 동안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부처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규제비용총량제일 것이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기존 규제를 신설·강화 규제와 연계하여 규제비용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규제개혁 정책수단의 하나이다. 최근 다수의 OECD 규제선진국에서 다소간 적용 대상과 범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원리의 규제관리 수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One-In, One-Out 방식의 규제비용 총량관리 제도 도입은 이전의 범 정부적 차원에서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 감축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영국은 10여년 전에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각 분야별로 계량화하고 이를 토대로 부처별로 연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전체 행정부담의 약 25% 이상을 성공적으로 감축한 바 있다. 영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규제준수비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 또는 감축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2010년 말부터 도입하여 현재는 One-In, Two-Out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부담 감축 정책은 네덜란드에서 먼저 시행되었으며 이후 덴마크, 스웨덴, 영국, 독일, 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도 2007년 국무조정실에서 행정부담을 시범측정한 바 있으나 정책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부담 측정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제도시행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를 과감히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4년 8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규제비용 분석과 검증 역량 강화를 위해 KDI와 행정연구원에 규제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규제비용의 검증과 교육훈련을 통한 부처의 규제비용분석 및 규제영향분석을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각 부처는 신설·강화 규제와 폐지·완화 규제의 비용분석을 위해 관련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직은 시범운영의 기간이 짧아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어렵지만 규제비용총량제가 규제저량과 규제유량을 연계하여 계량적 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규제비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비용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심사대상 규제의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부처의 과도한 비용분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간편심사제를 도입하였고, 과도한 규제완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하여 환경위기 대응, 국민안전, 금융건전성, 재난방지 등과 직접 관련된 규제는 총량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규제비용총량제가 시행되면 각 부처는 규제비용이 증가한 만큼 기존규제를 폐지·완화 또는 개선해서 그만큼 규제비용을 감축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비용 감축의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규제의 무분별한 완화를 우려하여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상당부분 과도한 염려이거나 주장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규제비용총량제의 측정 대상인 직접비용의 상당 부분이 행정부담이며, 이러한 행정부담 감축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증가한 규제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기존규제의 개선이 무리한 규제폐지나 규제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부처가 할 수 있는 규제완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모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된 규제의 경우에도 규제 자체의 폐지는 법률의 개정을 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또한 규제의 신설·강화시 규제영향분석서에서 확인한 규제의 순편익이 큰 사회적 규제를 단순히 피규제자의 규제로 인한 직접비용 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포기하는 규제기관은 규제기관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방기와 다를 바 없다. 가능성은 낮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비용총량제에 참여하는 규제기관의 기본임무에 대한 대국민 선언문이나 규제기관 헌장을 만들어 규제기관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국회의 역할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 규제개혁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국회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어느 정부에서건 규제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 국회는 암묵적이건 명시적이건 정부의 규제개혁에 영향을 준다.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는 규제개혁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개혁 입법은 대부분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 규제사안과는 달리 규제개혁 체계나 규제개혁의 수단이나 방법과 관련한 입법은 '행정규제기본법'이 유일하고 국회 주도로 규제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이 이루어진 경험이 거의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규제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행정명령 외에 국회에서 제정된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소기업규제집행형평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문서감축법(Paper Reduction Act)' '정부문서업무제거법(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비재정지원명령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 등 다양한 법률로서 정부의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매년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미국은 의회소속의 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에서 의회심사법(Congress Review Act)에 따라 정부의 규제활동에 대한 사후적 감독을 수행한다.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의 규제개념의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회의 규제개혁과 관련한 주도적 활동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경제활성화 법안의 경우 국회에 2년 이상 계류

중인 법안 건수는 5건, 1~2년 계류 중인 법안은 10건, 6개월~1년 계류 중인 법안은 6건, 처리완료는 9건으로 발표하고 있다[6]. 1년 이상 계류 중인 법안이 약 절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개혁 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의원발의 입법에 근거한 무리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과 함께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의 하나이다.

6. 결 론

모두에서 언급한대로 규제개혁 활동에 대한 단기적 관점의 평가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단기적 관점의 평가이전에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틀이 구축되고 이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개혁 정책을 투입, 과정, 산출, 결과의 네 단계 정책 싸이클로 나누어 볼 때 단기의 평가는 투입, 과정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게 된다. 대부분 규제개혁 정책의 성과는 중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투입, 과정 지표를 이용한 체계적 평가대신 2014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과정의 몇 가지 특징적 측면을 부각시켜 필자의 주관에 따라 평가하였다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정책적 함의도출을 위해 논의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의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체계가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으로 구축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과 운영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존재함과 동시에 규제개혁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권한과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규개위 중심의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규개위 조직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장관회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 두 기관간의 기능조정이 필요하다.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정부의 규제개혁을 독려하고 홍보하여 규제개혁의 추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정치적 지지역할을 하고 규제개혁 정책의 실질적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도 현재의 규개위 실무조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004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는 매우 선진적인 규제개혁 및 규제관리 수단으로 부처의 상당한 규제개혁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부담 측정의 경험이 없는 우리의 경우 규제비용총량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제연구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부처의 규제영향분석과 비용분석을 지원하여 분석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동시에 부처는 관련 전문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6] 2015년 3월 19일 현재 규제정보포털

구축해 규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존규제 개선의무가 사회적 규제에 대한 부문별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제기관 헌장이나 선언문을 작성해 규제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도의 운영결과를 공개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규제비용총량제에 필요한 규제관리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서 제도 운영과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 부처별 규제비용잔고, 총량제 적용현황, IN, OUT 규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규제개혁은 아직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미국의 규제개념이나 정치사회적 맥락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규제개혁을 위한 국회의 역할은 미국과 비교해 부족함을 부정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력관계 구축과 규제비용총량제 관련 규제관리 시스템 개선, 규제개혁위원회 조직역량 강화 및 규제개혁장관회의와의 기능 분담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규제개혁

Part 01

제1장 규제개혁 추진 개요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 38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1. 개 요 ····· 40
2. 추진체계별 기능 및 역할 ····· 41
3.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43
4.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47
5.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 49
6.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설치 및 운영 ····· 50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 53

제3절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1. 규제현황 ····· 54
2. 부처별 규제현황 ····· 54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김 유 일 사무관
T 044-200-2452 E enogengi@pmo.go.kr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규제가 등록되어 관리되기 시작한 이래 규제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2014년의 경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및 투자위축, 소비감소 등에 따른 경기 침체가 심화된 한 해였다. 이에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었으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이 강구된 한 해였다. 더욱이 재정투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규제개혁은 '돈 안들이는 투자'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강조되었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년 2월 25일)에도 강력한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방향을 담는 등 정부의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7]하였고,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은 각 부처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규제개혁의 기본틀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추동력으로 작용하였다.

7 ① '규제개혁은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2014년 2월 5일,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② '규제개혁이라 쓰고 일자리창출이라 읽는다.'(2014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③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뿐입니다.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박근혜 대통령,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3개년 계획) ④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할 암덩어리.'(2014년 3월 10일, 수석비서관회의) ⑤ '규제개혁 이야말로 한국 경제에 대한 특단의 개혁조치.'(2014년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⑥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하면서 정체되어 있거나 늑장을 부리는 사이에 세계는 규제를 혁파해 나가고 있다.'(2014년 8월 26일,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⑥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애에 올려 처리, 규제길로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이룰 것.'(2014년 11월 25일 국무회의)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의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애로를 들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하는 한편, 일회성의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규제개혁시스템 자체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미등록규제 정비, 규제개혁신문고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기존 규제의 개선방식도 규제기요틴 실시 및 10% 감축목표 설정 등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효과 체감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4년은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한 해였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사고는 생명·안전관련 규제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규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건이었고, 규제개혁 추진전략도 경제적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철폐와 더불어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합리화라는 투트랙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시스템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97년 제정이후 16년만에 대폭 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15년 3월말 현재 국회 정무위 계류중).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정 재 상 사무관
T 044-200-2416 E kkirri@pmo.go.kr

1. 개 요

좋은 규제개혁거버넌스 확립은 규제개혁 성공의 제1요건(OECD 강조)이며,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다양한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박근혜정부의 경우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3월)하였고, 국민의 규제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규제개혁 신문고(4월)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 추진체계 변경 현황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출범시	2014년 추진체계
• 규제개혁위원회(규제조정실)	• 규제개혁위원회(규제조정실) –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	• 규제개혁위원회(규제조정실) – 규제개혁정책 총괄	• 규제개혁위원회(규제조정실) – 규제개혁 총괄
• 총리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덩어리 규제 개혁 및 규제정책 관련 대통령 보좌		• 대통령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 규제개혁기획단 – 덩어리규제 개혁	•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 기업 현장 규제애로 개선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손톱 밑 가시 등 기업 규제애로 해소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손톱 밑 가시 등 기업 규제애로 해소
• 규제신고센터 – 규제민원 처리			•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민원 처리

2. 추진체계별 기능 및 역할

가.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제개혁을 효과적이고 획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대통령훈령 제328호), 2014년도 두 차례(3.20, 9.3)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으며 관계장관이 참석하며 회의 안건 등에 따라 각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이 참석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규제개혁의 강력한 추동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규제개혁 관련 법제도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한편, 일반 국민 및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신설·강화 규제의 대한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인 등 공동위원장을 포함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효율적인 규제정책 추진 및 심사를 위해 경제분과위원회 및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전담하는 사무국의 역할과 동시에 규제개혁장관회의 운영,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등 주요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조율 및 각 부처의 규제개혁정책 추진 지원 등을 총괄한다. 규제조정실은 14년 11월, 규제개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의 3국 11과로 운영되고 있다.

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기업 현장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손톱 밑 가시) 등의 발굴·개선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설치(국무총리훈령 제615호)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3인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기구로, 4개팀 26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 공동으로 운영하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13년 2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폐지로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보다 보완·발전된 조직으로 재정비되었다.

마.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과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원스톱 규제건의·처리 창구로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4월 개설되었다. 과거 정부 모두 규제애로를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 바 있으나 개선효과가 미미하였고 건의자는 자신이 건의한 규제의 처리상황을 알기 쉽지 않았다.

규제개혁신문고는 합리적 규제건의가 사장되지 않도록 3단계 검토과정(부처답변-소명-개선권고)을 도입하였으며, 각 단계는 검토자의 실명 및 직급 등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건의처리사항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안내함과 별도로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바. 중앙행정기관 규제법무담당관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의 신설·강화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사를 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 및 조례·규칙 제·개정시 사전심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규제개혁추진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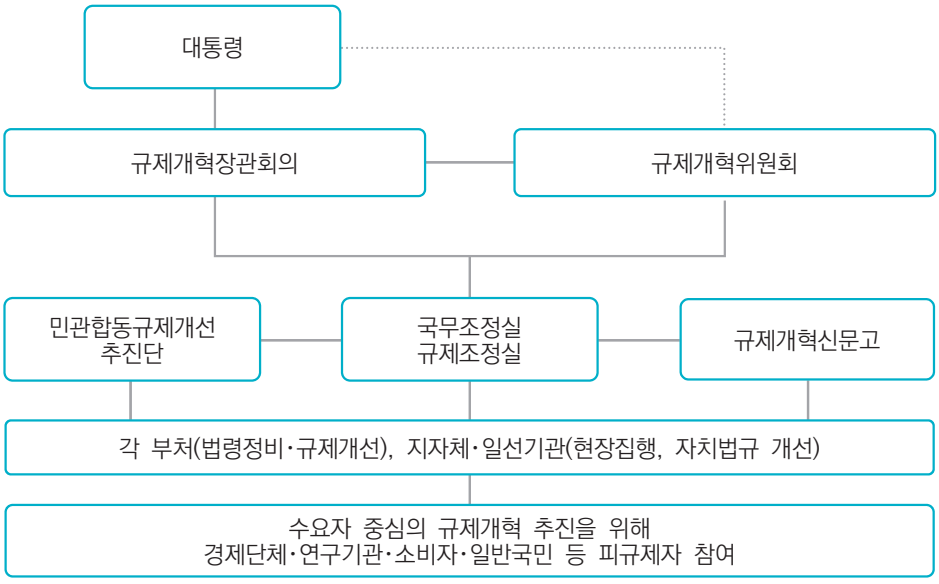

3.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가. 구성 및 기능

(1)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및 발전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규제의 등록·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3) 구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당연직) 및 민간공동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되며, 2014년 12월 현재 위원장 2인, 민간위원 16인, 정부위원 6인 등 총2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명단

(2014년 12월 기준)

구 분	성 명	현 직
위 원 장	정 홍 원	국무총리
	서 동 원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정부위원 (6)	최 경 환	기획재정부 장관
	정 종 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 상 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 경 호	국무조정실장
	정 재 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 정 부	법제처장
민간위원 (16)	김 종 석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전 의 찬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
	김 동 원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김 민 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영 수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김 용 하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학장
	김 종 일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 준 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 태 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손 원 익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
	신 용 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윤 창 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 원 호	광운대 건축학과 교수
	조 신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장
	조 준 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한 경 희	(주)한경희 생활과학 대표

나. 회의운영

(1) 소집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의는 격주,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회의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실장 또는 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 직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조정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신설·강화규제 심사

(1) 일반적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요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요규제인 경우에는 심사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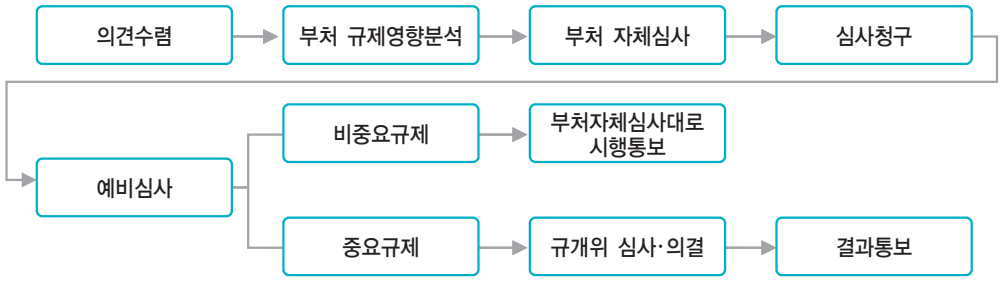

(2) 긴급한 규제의 경우

긴급한 규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수렴,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평가를 생략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긴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분과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반적인 경우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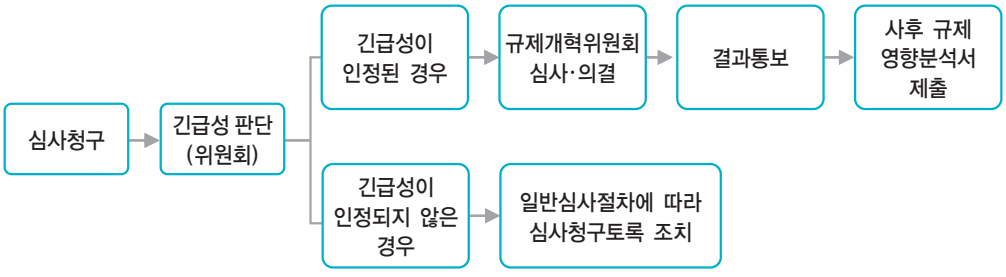

(3) 14년 본회의 운영 실적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는 2014년 총 20회(320회~339회) 개최되었으며, 13개 부처의 총 40개 안건을 처리(의결 25건, 보고 15건)하였다. 25건의 의결안건을 통해 42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20건, 개선권고 19건, 철회권고 3건이었다.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일지 참조

4.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구성 및 기능

(1)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기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4.12월 현재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 등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7~9인, 정부위원 4인 등 11~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

(2014년 12월 기준)

구 분	분 과 위 원		소 관 부 처	
경 제	민간위원	김 종 석(위원장) 김 종 일 김 준 기 손 원 익 신 용 현 윤 창 현 조 신 조 준 모 한 경 희	• 기획재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 공정거래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관세청 • 조달청 • 특허청 • 행복도시건설청	• 미래창조과학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금융위원회 • 국세청 • 통계청 • 중소기업청 • 농촌진흥청 • 산림청
	정부위원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 무 조 정 실 장 공 정 거 래 위 원 장 법 제 처 장		
행정사회	민간위원	전 의 찬(위원장) 김 동 원 김 민 호 김 영 수 김 용 하 김 태 윤 이 원 호	• 교육부 • 통일부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여성가족부	• 외교부 • 법무부 • 행정자치부 • 보건복지부 • 노동부 • 국무조정실

구 분	분 과 위 원		소 관 부 처	
	정부위원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 인사혁신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권익위원회 • 병무청 • 경찰청 • 기상청	• 국민안전처 • 법제처 • 국가보훈처 • 검찰청 • 방위사업청 • 문화재청

나. 회의 운영

(1) 회의 소집

분과위원회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2) 의 결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공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회의 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직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위원회 의결로 의제되는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 14년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실적

경제분과위원회는 2014년 총 12회(474회~485회) 개최되었으며, 6개 부처의 총 19개 안건을 처리(의결 19건)하였다. 19건의 의결안건을 통해 41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26건, 개선권고 15건이었다.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2014년 총 18회(500회~517회) 개최되었으며, 13개 부처의 총 41개 안건을 처리(의결 41건)하였다. 41건의 의결안건을 통해 63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28건, 개선권고 33건, 철회권고 2건이었다.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일지 참조

5.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가. 규제조정실의 기능 및 역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사무국인 동시에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심사관리관실로 구성되어있다.

규제총괄정책관실 및 규제혁신기획관실은 규제개혁장관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청와대,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이행상황 점검·관리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규제총괄정책관실은 규제개혁 정책의 총괄과 함께 규제등록제도 운영, 규제개혁 국제협력,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등을 담당하며, 규제혁신기획관실은 기존규제 정비, 핵심규제 개선, 일몰 및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전환, 규제개혁 홍보,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등을 담당한다. 규제심사관리관실은 각 부처의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를 위한 실무검토를 담당한다.

나. 규제조정실 조직

규제조정실은 2014년 11월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규제 개선 및 규제시스템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규제혁신국을 신설하고, 규제심사 기능의 과학화·전문화를 위해 기존 심사관련 조직을 통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다만, 규제조정실의 조직과 인력을 추가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업무 및 인력 효율화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3국 11과에서 심사와 규제개선 업무를 병행하던 조직 구성에서 심사업무와 규제혁신 업무를 분리하여 핵심규제개선, 규제감축 등을 전담하는 규제혁신기획관실을 신설하는 한편,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업무는 규제심사관리관실에서 전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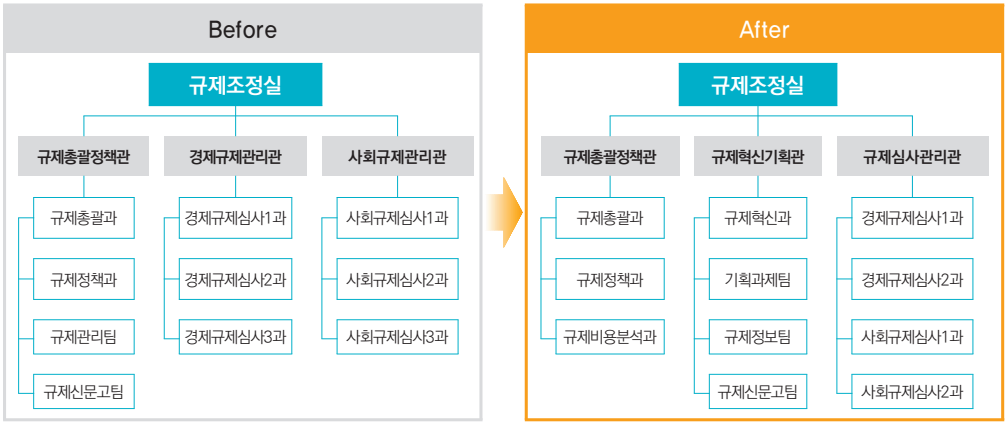

6.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설치 및 운영

홍 성 애 사무관
T 02-6050-3292 E hong@pmo.go.kr

가. 설치배경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와 국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하기 위해 민과 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규제개선 전담 조직이다.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선의 추진이 필요하며 성공적인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귀를 더 크게 열고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13년 2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추진단의 재정비 및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13년 9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추진단은 전신인 규제개혁추진단과 달리 중기중앙회가 가세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보강함에 따라 규제혁파를 통한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발굴·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추진단 조직 및 구성

추진단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급),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 중앙회 상근부회장의 3인 공동단장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추진단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이 맡고 있다.

추진단은 총괄기획팀, 규제개선전략팀, 투자환경개선팀, 중기·소상공인지원팀의 4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공무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주요 민간단체에서 파견한 직원 총 26명(정부 14명, 민간 12명, 단장제외)으로 운영된다.

추진단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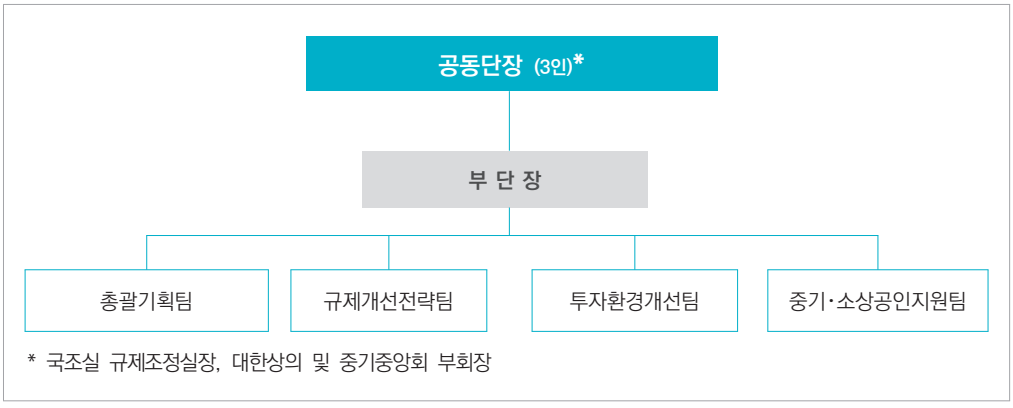

다. 추진단의 역할

추진단은 '손톱 밑 가시'를 포함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수요자인 기업·국민과 정책공급자인 정부 상호간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가 기업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는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발굴에 역점을 두고, 공무원은 정부나 관계기관과의 제도개선 협의·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함으로써 민관합동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라. 주요 업무처리 절차

추진단 업무는 크게 규제개선 과제 발굴→ 관계부처 협의·조정→ 규제개선 → 이행점검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제별로 책임담당관을 지정하여 민원인에게 건의과제 진행 상황을 수시로 통보하여 소통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한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과제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

추진단은 과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와 오픈 오피스(Open-office) 형태의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과제발굴 창구를 보다 다양화하기 위해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02-6050-3366) 및 추진단 홈페이지(www.smartregulation.or.kr)를 개설하여 규제애로를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 무역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정부 규제개혁 담당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건의된 과제는 추진단의 자체 검토를 거쳐 소관부처에 전달되며, 소관부처는 건의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추진단은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협의·조정을 진행하며, 규제건의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소관부처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는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착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점검도 실시한다.

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개선결과를 건의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주요 개선과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 보고하며, 언론사를 통해서도 발표함으로써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는 물론 정부의 신뢰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가.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추진기구

(1) 규제심사위원회

(가) 기 능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규제심사위원회는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나) 구 성

규제심사위원회는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0인~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도록 하고 있다.

(2) 규제개혁 총괄부서

(가) 기 능

규제개혁 총괄부서에서는 규제개혁업무 총괄조정, 규제개혁추진상황 점검·평가, 정부내 규제개혁관련 부처간 협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구 성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이 담당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추진기구

(가) 기 능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개혁추진기구에서는 조례·규칙에 근거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에 기초하여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다.

(나) 구 성

시·도, 시·군·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규제심사위원회는 10~20인 내외의 민간인,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절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김 경 태 사무관
Ⓣ 044-200-2429 Ⓔ kt0112@pmo.go.kr

1. 규제현황

국민의 정부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8]에 있던 등록규제수는 전 부처의 규제감축 노력 및 등록오류 정비 등을 통해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규제등록 초년인 1998년 총 10,717건이었던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총 규제수는 2014년 말 현재 전년 대비 337건이 감소(신설 194건, 폐지 531건)한 14,928건이다.

또한 '14년 11월 정부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가 국민안전처로, 안전행정부 소관 규제는 그 성격에 따라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었다.

2. 부처별 규제현황

국토교통부가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규제를 등록(2,359건, 15.8%)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000건 이상의 규제를 등록·관리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다.

8 '06년 등록단위 개편(개별등록→통합등록)에 따른 등록규제수 감소를 제외

반면, 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은 법제처,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3개 기관이며, 국무조정실 등 7개 기관은 20개 미만의 규제를 관리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등록규제수

순서	부처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체	12,867	13,386	14,049	14,857	15,265	14,928
1	국토교통부	2,038	2,148	2,208	2,350	2,431	2,359
2	해양수산부	1317	1,330	1,356	1,462	1,516	1,509
3	보건복지부	996	1,035	1,106	1,193	1,202	1,193
4	금융위원회	953	1,016	1,039	1,077	1,138	1,120
5	산업통상자원부	1,020	1,041	1,131	1,180	1,191	1,101
6	농림축산식품부	724	766	843	881	919	931
7	환경부	719	740	782	817	851	851
8	국민안전처	598	601	620	637	649	635
9	미래창조과학부	500	537	550	588	599	582
10	고용노동부	511	526	546	567	571	567
11	공정거래위원회	379	426	470	481	482	482
12	교육부	425	443	454	459	465	440
13	식품의약품안전처	401	409	430	454	458	434
14	산림청	293	297	328	378	393	390
15	문화체육관광부	364	369	374	378	383	371
16	행정자치부	238	242	274	286	297	290
17	법무부	201	203	217	227	229	227
18	기획재정부	158	161	176	204	217	211
19	여성가족부	99	112	117	160	171	166
20	경찰청	143	145	146	148	148	148
21	중소기업청	133	136	142	145	151	132
22	방송통신위원회	100	107	115	133	133	125
23	국가보훈처	102	103	104	108	107	106
24	문화재청	63	85	99	100	100	98
25	원자력안전위원회	87	89	91	95	95	96
26	특허청	70	71	72	72	84	95
27	통일부	48	56	56	56	56	48
28	국방부	26	27	27	32	36	36
29	인사혁신처	31	31	35	35	35	36
30	관세청	33	32	34	35	37	34
31	외교부	32	33	35	35	35	34
32	기상청	21	21	21	21	21	21
33	국무조정실	0	4	4	15	15	15
34	국세청	14	14	14	15	15	14
35	농촌진흥청	14	14	15	15	16	12
36	병무청	9	9	9	9	9	9
37	통계청	5	5	5	5	5	5
38	국민권익위원회	2	2	4	4	4	4
39	국가인권위원회	0	0	0	0	1	1

[참고 1] 규제등록제도[9]

1. 개 요

- 규제등록제도는 국민 및 기업 등 정책수요자에게 전체적인 규제체계 및 규제내용 등 규제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함과 동시에 규제의 질적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8년 행정규제 기본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폐지한 경우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매년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대상 규제사무

- 등록대상 규제사무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정한 행정규제이며, 중앙행정기관의 규제담당자가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3. 등록절차 및 등록방법

-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정보를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한다.(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이 공포·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각 부처 규제담당자는 규제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하여 시스템이 제공하는 규제등록카드(참고2 참조)에 따라 규제정보를 입력하고 규제등록을 신청한다. 부처 규제담당자의 신청은 각 부처 법무담당관실의 검토를 거쳐 규제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로 이송되며, 입력한 규제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반려하여 다시 작성·신청하게 된다. 국무조정실로 접수된 부처의 규제등록신청은 규제조정실 등록담당관이 이상 유무를 검토 후 승인함으로써 등록된다.
- 규제의 등록은 규제사무 단위로 한다. 법령의 1개 조(條)를 1개 규제사무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조(條)단위로 나누는 것이 어려운 경우나 하나의 규제사무명으로 등록하는 것이 규제정보 파악 등에 용이할 경우 하나의 규제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고시 등의 행정규칙의 경우 행정규칙 전체를 1개의 규제사무로 등록한다.
- 규제사무는 그 내용에 따라 주규제와 부수규제로 구분한다. 주규제는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이며, 부수규제는 주규제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주규제 부과를 위한 사전절차적 규제 및 주규제에 수반되는 사후보완적 규제를 의미한다. 규제정보 파악이 용이하도록 부수규제는 주규제와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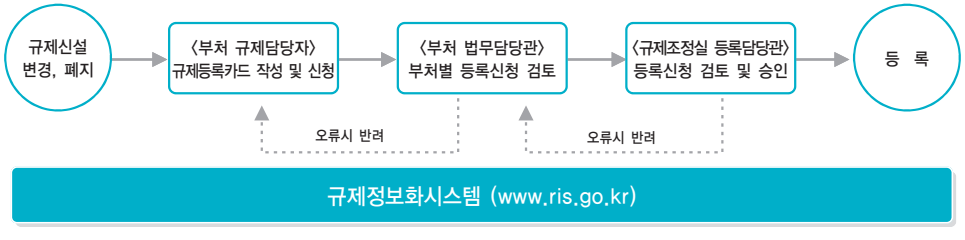

[참고 2] 규제등록카드

● 기본정보

규제등록번호	0000017219		
규제사무명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적규제
성격별	사회적규제 / 시장유발-소비자안전	유형 / 규제구분	사절 /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재안부처(건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생활제품안전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소속
책임자	담당 / 이용환 / 과장 / 윤기환 / 국장 / 김정환	담당 연락처	02-2110-5508

● 법적근거

입법유형	정부입법		
법적근거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별 제14조제3항		
조문 제·개정일(공포일)	2014-06-14	시행일	2014-06-14

● 업종정보

존속기한(재검토)만료일	-	업종유형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소비자 위해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 안전관리 필요		
업종설정된 구체적인 내용			
규제 유예기간			
업종설정일		업종해제일	
업종심사일		업종심사결과	

● 규제비용

IN 규제비용			
OUT 규제비용		기준등록번호	

● 상세정보

미전 규제내용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안전기준은 일본공업규격 JIS D 0401을 기초로 일부항목(하네스/조끼형 제품관련 요건)을 추가하여 사용
규제내용	- ECR R 44 기준을 철폐하여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 - 제품의 유해물질 시험 추가 - 안전성을 위한 시험항목 추가
첨부파일	기준 제개정검토.hwp
비고	
변동경과	신설 (2011-12-30) → 강화 (2012-02-10) → 강화 (2014-06-14) → 폐지 (승인요청)

● 업법경로

구분	일시	처리결과	안건카드/의견	비고
해비심사 433회차	2014-06-14	해비심사종결		

9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규제등록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등록체계는 현행 규제사무단위 등록을 탈피, 법령상 1개의 조문을 1개의 규제로 등록하는 조문단위 등록을 실시하며,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법령 등이 제·개정된 경우 실시간으로 규제정보가 변경된다. 등록체계 개편은 규제정보 검토, 신규 등록시스템 개발 등 준비과정을 거쳐 15년 상반기중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미래를 위한
규제개혁

Part 02

제2장 규제개혁 추진 실적

제1절 규제개혁장관회의 ····· 60
제2절 규제비용총량제 ····· 67
제3절 규제개혁신문고 ····· 82
제4절 규제기요틴 ····· 94
제5절 핵심규제 개선 ····· 107
제6절 기존규제 감축
6-1 기존규제 10% 감축 ····· 112
6-2 일몰 설정 ····· 116
6-3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개선 ····· 119
제7절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 ····· 122
제8절 규제정보화 추진 ····· 137
제9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141
제10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 147
제11절 규제개혁 홍보 ····· 153
제12절 미등록규제 정비 ····· 160

제1절 규제개혁장관회의

김 유 일 사무관
T 044-200-2452 E enogengi@pmo.go.kr

1. 추진배경

최근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에서 경제·사회 각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규제개혁이다. 일본 정부도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에서 규제개혁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하여 전국단위·지역단위·기업단위로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지정 등을 통해 무역 및 투자관리방식 혁신, 서비스산업 개방확대 등 시장지향적인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서 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의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여, 규제개혁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을 혁신하고 규제개혁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2.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요

가. 목적

규제개혁을 강력하고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하였으며, 각 부처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규제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특징이 있다.

나. 기능

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전략, 서비스산업 등 주요 분야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며, 규제개혁 기본틀 재정립을 통한 규제개혁 법제도 기반 설립, 실질적 개혁조치가 부진했던 핵심규제 개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 구성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중소기업청, 정책조정수석으로 회의를 구성한다. 다만, 회의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라. 운영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국무조정실 국무1차창)를 둔다.

또한, 관계 부처간 이견 조율 등 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조정회의를 둔다. 조정회의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회의의 구성원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차장,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법제처차장, 중소기업청차장 및 조정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조정회의의 의장은 조정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실적

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

○ 일시·장소 : '14.3.20(목), 청와대 영빈관

○ 참석자 : 대통령(회의 주재), 국무총리, 감사원장, 관련부처 장차관, 규개위 민간위원, 경제단체장, 기업인, 민간전문가, 현장공무원 등 140여명

• 세션1 :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 (발제1)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대한상의)

– (발제2)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과제(전경련)

• 세션2 :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발제1) 규제시스템 개혁방안(국조실)

– (발제2) 분야별 주요규제개혁과제 추진방안(기재부)

– (발제3) 국민에게 다가서는 규제개혁(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주요 실적

– 총 52건의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건의되었으며 이 중 50건이 정부내 조치가 완료(국회 심의중 7건 포함)되었고, 2건이 부분 완료 되었다.('15.2.28기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요 성과

과제명(건의자)	개선전	개선후	부처
항만배후단지 내 제조업 공장 입주자격 완화 (심충식 (주)선광 부회장)	• 항만 배후단지에 제조기업 입주가 가능하나 입주기업 선정기준이 물류업을 우대하고 있어 제조기업 입주 실적이 미흡 •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의 기업으로 제조업 입주 자격 제한	•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0이어도 제조업 입주 가능 * 1종 항만배후관리 지침 개정('14.7월)	해수부
산업단지 녹지내 공장증설 시 지가상승분 부담금 50% 이내 감면 (여천 NCC)	• 산업단지 내 녹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할 경우, 용도 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분 50%와 대체 녹지 조성비를 이중으로 부담	• 대체녹지 조성비를 지가차액의 50% 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대체녹지 조성비를 지가차액 환수 시 공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4.8월)	산업부

과제명(건의자)	개선전	개선후	부처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이중규제 개선 **(심충식 (주)선광 부회장)**	•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을 추가로 변경한 뒤 사업 추진 가능	•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배후 개발계획 변경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14.12월), 항만공사법 개정('15.1월)	산업부 해수부
분양가 상한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 분양가상한제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 * 단,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 건축물 제외	•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 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지정 제도를 도입 * 주택법 개정('14.12월)	국토부
까다로운 자동차 튜닝규제 개선으로 튜닝산업 활성화 **(장형성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	• 엄격한 튜닝규제 탓에 튜닝산업이 활성화되지 못 함	• 금지 대상이던 캠핑카, 푸드트럭의 구조변경 허용 • 전조등을 제외한 방향지시등과 안개등 등의 자동차 등화장치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튜닝이 가능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14.6월)	국토부
IT 융합 의료기기의 제조업 진입장벽 완화 **(김홍진 인성정보 이사)**	• IT기기와 융합된 단순한 측정용 의료기기도 제조업 허가 및 제품별로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함	• IT융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공장별'에서 '기업별' 허가로 변경 * 의료기기법 개정('15.1월)	미래부
위해도 낮은 의료기기, 공공기관에서 신고·인증 가능 **(김홍진 인성정보 이사)**	• 제품의 위해도와 관계없이 정부에서 모든 의료기기 허가·신고 수리	• 위해도가 낮은 1,2 등급 의료기기는 공공기관에 위탁해 신고·인증, 위해도가 높은 3,4등급 의료기기는 종전과 같이 정부에서 허가 * 의료기기법 개정('15.1월)	식약처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완화 **(유정무 IRT코리아 대표)**	• 관련 제도 부재	• 우수기술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 보증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갖춘 경우 연대보증 부담 5년간 면제 – 대출금액 중 신·기보가 보증하지 않는 부분(15%)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자율협약을 통해 연대보증 면제 지원 *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도입('14.2월)	금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고용부·법무부 중 한곳에만 신고 가능 **(김미정 정수원 돼지갈비 대표)**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고용변동 신고를, 법무부에 근로개시신고를 각각 해야 함 – 근로개시신고 10일 이내, 취업개시신고 14일 이내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전산시스템 연계로 한 곳에서만 신고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 *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14.9월), 시스템 개편('14.10월)	고용부 법무부

과제명(건의자)	개선전	개선후	부처
택배차량 증차로 합법적 영업 가능 (박재억 통합물류협회장)	•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공급(허가) 금지	• 택배차량 부족분 1만2,000대 공급 * 201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 기준 고시('14.8월)	국토부
뷔페음식점, 5km 밖 제과점 빵도 구입·판매 가능 (한국외식업중앙회장)	• 뷔페음식점은 관할 구역 내 5km 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만 구입해 판매 가능	• 뷔페음식점의 제과점 빵류 구입 거리 제한 규제 폐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4.5월)	식약처
외국인 유학생, 국내에서 한국어 이외 외국어 연수 가능 (김춘호 한국 뉴욕주립대 총장)	•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연수만 가능	•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연수, 영어 등 외국어 연수, 한국어와 외국어가 결합된 어학연수도 가능 *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지침 개정('14.4월)	법무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 해외여행객 휴대품 면세한도 400달러로 제한	• 2014년 9월5일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휴대품부터 면세한도 600달러 적용 •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동일하게 적용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14.9월)	기재부
방학 중 대학교 시설 내 초·중등학생 어학캠프 가능 (김춘호 한국 뉴욕주립대 총장)	• 초·중등학생 대상, 대학교 시설내 어학캠프 운영 금지	• 방학 중 대학교 시설내 어학캠프 운영이 가능해져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어학캠프 운용을 위한 MOU 체결 기준 안내('14.5월)	교육부

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4.9.3)

○ 일시·장소 : '14.9.3(목), 청와대 영빈관

○ 참석자 : 대통령(회의 주재), 국무총리, 감사원장, 관련부처 장차관, 규개위 민간위원, 경제단체장, 기업인, 민간전문가, 현장공무원 등 180여명

• 세션1 : 1차 회의 후속조치 점검 및 현장건의

– (보고) 제1차 회의 후속조치 점검 및 규제포털 개선사항 시연(국조실)

• 세션2 :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 (보고1)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국토부)

– (보고2) 인터넷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미래부)

– (보고3)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규제정비방안(농식품부)

○ 주요 실적

– 총 25건의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건의되었으며 이 중 24건이 정부내 조치가 완료(국회 심의중 1건 포함)되었으며, 1건이 부분 완료 되었다.('15.2.28기준)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요 규제개선 실적

과제명(건의자)	개선전	개선후	부처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증축 허용 및 건폐율 완화 **(이홍근 세대산전 대표)**	•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 증축을 제한(건폐율 20%)	•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들어섰던 공장은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40%까지 증축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4.10월)	국토부
도로변 건축물 사선제한 규정 폐지 **(국토부 보고)**	•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도로 너비의 1.5배로 획일적으로 제한해 미관 저해, 경제성 저하, 준공 후 불법 증축을 조장	• 획일적 도로 사선제한 폐지로 용적률 추가개발이 가능, 거리 미관 향상 * 건축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강석호 의원, '14.10월 발의)	
상수원 상류 떡, 한과, 커피공장 허용 **(이희숙 농업인)**	•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선 모든 제조업의 공장설립 제한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생계형 공장*은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의 설립 허용 * ① 커피 가공업, ② 떡·빵류 제조업, ③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④ 면류 제조업 * 수도법 시행령 및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14.12월)	환경부
개별포장 안해도 생닭 판매 가능 **(진병호 신원시장 상인연합회장)**	• 닭·오리의 식육은 도축장에서 포장된 상태 그대로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해야 함	•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소가 위생요건*을 갖춘 경우 닭·오리 식육의 포장을 뜯어 진열·판매가 가능 * 위생요건 : 냉장온도 유지가 가능하고 소비자가 식육을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의 개폐형 냉장진열상자, 식육 전면의 표지판 등을 이용한 표시, 식육에 직접 접촉하는 얼음 사용 금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4.10월)	식약처
미용사에서 메이크업을 분리한 국가기술자격 신설 **(오세희 한국메이크업협회장)**	• 메이크업은 미용사(일반) 기능사 자격종목에 포함 – 메이크업 시술을 위해선 미용사(일반) 기능사 자격 필요	• 메이크업을 미용사(일반) 기능사 자격종목에서 분리해 미용사(메이크업) 기능사 자격종목 신설 • 메이크업 기술 습득만으로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메이크업 시술 가능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15.1월)	고용부

과제명(건의자)	개선전	개선후	부처
창문, 입간판, 차량뒷면 등 옥외광고 활성화 **(박정숙 대전시 발레학원장)**	• 법령과 상관없는 지자체 조례로 창문 광고 및 입간판 설치 금지 • 자동차·화물차의 옆면 1/2만 광고면적으로 활용 가능	• 도시 미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 창문 이용 광고 및 입간판 설치 가능 • 자동차·화물차의 광고물 표시면적을 옆면 1/2과 뒷면 1/2까지 확대	행자부
자투리 농지활용으로 전원마을 활성화 **(이종혁 귀촌인)**	• 농림지역 비율이 50% 이내인 경우만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사업후보지 선정 요건을 충족	• 자투리 농지(2만㎡)의 경우 농림지역 비율이 50%를 초가해도 전원마을 조성 가능 * 자투리 농지 : 농업진흥지역 중 도로·철도 등의 설치, 택지조성,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2만㎡ 이하의 농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14.9월)	농식품부

4. 규제개혁장관회의 성과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인·재계대표·학계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민간인과 부처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격식없이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정부에 대한 규제완화 건의가 쏟아져 나왔고, 규제개혁 전략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는 등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도시·건축, 인터넷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 규제개선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현장 규제애로 해결을 통해 규제개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었다.

제2절
규제비용총량제

문 유 진 사무관
T 044-200-2441 E yujin700@pmo.go.kr

1. 규제비용총량제 개요

가. 의의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은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를 통하여 규제비용의 총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규제가 들어올 때, 피규제자에게 어떠한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이 발생하는지 분석토록 하고, 순비용이 발생하면 기존의 규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찾아내어 정비(폐지·완화)하려는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새로운 규제의 품질은 높이고 기존 규제는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나. 추진 경과

(1)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총량제의 도입은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하나로 내수부문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부문별로 할당해 관리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후, 2월 국조실 업무보고,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비용총량제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용'을 기준으로 규제 신설시 기존 규제를 폐지
  - 이 때, '비용'은 기업과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
  - 다만, 비용계산이 어려운 경우 규제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한 '등급' 방식 적용
- 국민 생명 및 위기상황 관련 규제는 적용 제외
- 규제비용분석기구 설립, 7월부터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실시
-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 근거를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추진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 도입계획이 구체화되었다. 이는 2004~2005년 실시된 규제총량제 추진 경험에서 기인한 것으로, 당시 부처별 연간 규제 신설 건수를 2%로 제한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2006년 폐지된 바 있다. 따라서, 금번 규제비용총량제는 건수가 아니라 객관적·과학적인 방식인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비용계산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등급 방식을 적용토록 설계하였다.

(2)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인프라 구축

(가) 규제연구센터 설치

6월 18일, KDI와 행정연 산하에 규제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KDI는 2실 11명으로 경제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을, 행정연은 2팀 12명으로 행정·사회 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2014년은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소규모로 시작하고 2015년 사업 확대에 맞춰 조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KDI·행정연 규제연구센터 비교

구 분	KDI 규제연구센터	행정연 규제연구센터
기 능	• 경제 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 • 비용분석기법 컨설팅 •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	• 행정·사회 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 • 비용분석기법 컨설팅 •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
인 력	• 총 11명(소장 : 임원혁)	• 총 12명(소장 : 이종한)
조 직	• 2실(분석평가실, 제도연구실)	• 2팀(규제비용분석팀, 제도지원팀)

(나)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매뉴얼 마련

4월부터 KDI·행정연·국조실 공동으로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기준, 비용분석 방법 등을 포함한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매뉴얼 마련에 본격 착수하여 6월 규제비용총량제 시범

사업 매뉴얼(안)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2011년부터 이미 규제총량제(One-in, One-out)[10]을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벤치마킹을 하였다.

운영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고민이 있었다.

첫째, 등급제 도입 여부이다. 등급제는 규제의 강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 후 등급을 분류해 같은 등급의 규제끼리 교환하는 방식으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등급분류 기준의 설정이 곤란하고 규제 부담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비용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되, 이 때에도 등급제 대신 규제의 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사수준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심사처리제를 적용키로 하였다.

둘째, 측정비용을 직접비용으로 할 것인지, 규제순비용(직접비용-직접편익)으로 할 것인지 여부이다. 제도 도입 초기 단계임을 고려할 때, 직접 비용만 측정하는 것이 행정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규제 도입시 비용뿐만 아니라 편익도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규제순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영국에서도 규제순비용을 측정 기준으로 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비용 대신 규제순비용을 측정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고 각 부처, 경제단체, 학계,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 매뉴얼을 마련 배포하였으며, 7월 23일 전 부처 대상 규제비용총량제 합동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비용전문위원회 설치

8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여부, 규제비용분석 검증의 적정성 판단, 규제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는 비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공동위원장 2인(규개위 위원 1인, 규제조정실장)과 규제연구센터장, 비용·편익 분석 전문가, 정부 위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10 영국은 2011년부터 'One-in, One-out' 제도를 운영하여 신규규제 도입시 기업에 순비용을 초래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순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 2013년부터는 'One-In, Two-Out'으로 변경하여 신규규제 도입시 이에 두 배에 해당하는 순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

비용전문위원회 구성과 위원 명단

(2014년 12월 31일 기준)

구 분	성 명	현 직
위원장 (2)	김 종 일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위원
	강 영 철	규제조정실장
민간위원 (6)	임 원 혁	KDI 규제연구센터장
	이 종 한	행정연 규제연구센터장
	이 혁 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 용 석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 석 준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 현 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정부위원 (3)	이 창 수	규제총괄정책관
	이 정 원	규제혁신기획관
	이 효 진	규제심사관리관

(3)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실시

7월부터 8개 부처(문체·농식품·산업·환경·국토·해수부, 산림·중기청)를 대상으로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4) 규제비용총량제 법적 근거 마련

8월 28일, 규제비용총량제의 명확한 도입 근거를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다. 주요내용

(1) 적용 대상

규제비용총량제 규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규제는 '기업 등'에 직접적인 비용 및 편익을 발생시키는 행정규제기본법 상의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기업 등' 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개인, 법인, 비영리법인을 의미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 국가 위기 상황 대처 규제 등은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을 제외한다.

매뉴얼상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제외 요건

1.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2. 조약이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
3.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4. 금융·외환시스템 위기의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환경 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
5. 1년 이하의 효력상실형 일몰이 설정된 규제
6. 통상적인 임금 및 물가상승에 상응해 기존규제 수준을 유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규제
7. 수익적 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요금, 수수료
8. 규제의 미이행으로 부과되는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9. 1항 내지 8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용총량제 적용제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

(2) 적용 방안

(가) 비용 분석

규제비용총량제는 원칙적으로 신설·강화 규제에 상응하는 비용을 유발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한다. 따라서 신설·강화 규제 심사시 대응하는 폐지·완화 규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규제 심사시 폐지·완화 계획(대상 규제, 시기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측정비용은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순비용(직접비용-직접편익)을 기준으로 하며, 순비용의 현재가치를 규제존속기간 동안 동일하게 배분한 연간균등순비용을 도출한다.

신설·강화 규제와 폐지·완화 규제 간 규제 비용 교환 후 남은 금액은 적립하여 추후 사용할 수 있다.(규제비용적립제, Banking)

다만, 비용분석 대상이나, 규제비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규제연구센터의 검증을 생략하는 간이 심사 절차를 적용한다.(간편심사, Fast-Track)

(나) 심사처리제

화폐적인 비용분석이 불가능하거나, 분석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규제의 성질·강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사 수준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심사처리제'를 적용할 수 있다. 비용분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규제이거나,

규제 기준 및 규제범위 설정이 대단히 어렵고 관련 통계 등이 전무하여 비용분석 추계(시뮬레이션)조차 불가능한 규제가 심사처리제 대상이 된다.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여부에 따른 분류

비용총량제 대상			비용총량제 비대상
비용분석	간편심사	심사처리제	적용 제외

(3) 운영 절차

기존의 규제심사 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규제비용총량제 관련 절차가 일부 추가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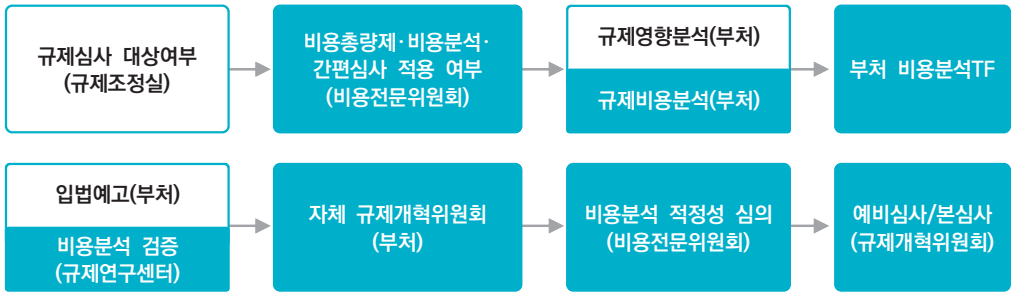

※ 음영은 규제비용총량제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절차

(비용분석 대상) 비용분석 대상으로 결정된 규제안은 위 표에 제시된 적용절차에 따라 규제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간편심사 대상 규제안에 대해서는 규제연구센터의 비용분석 검증 과정이 생략된다.

(심사처리제 대상)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대상이나, 심사처리제로 결정된 규제안에 대해서는 규제조정실에서 검토 후 비용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적용제외 대상) 비용총량제 비대상(적용제외)로 결정된 규제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관련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기존의 규제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여부에 따른 규제심사 적용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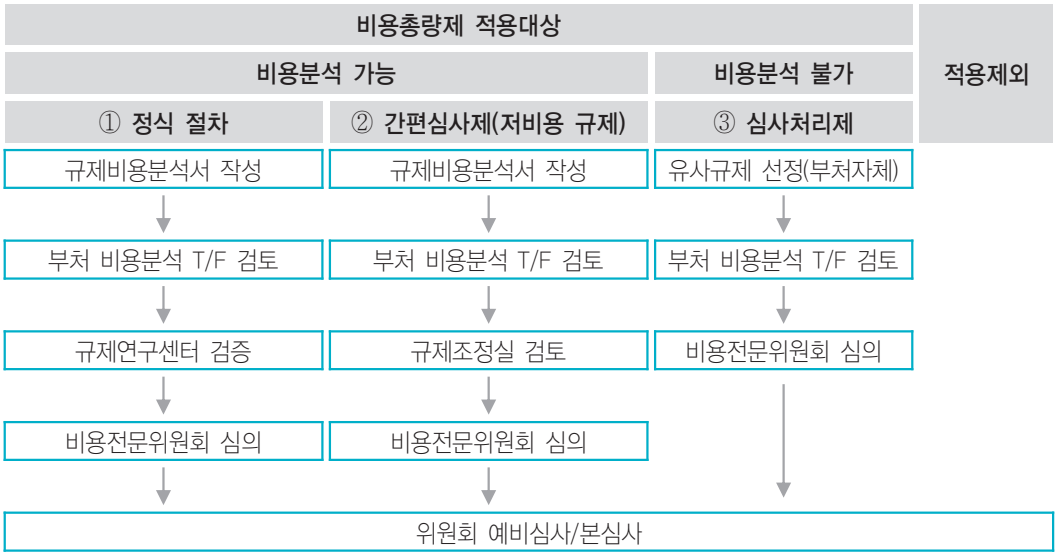

2.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현황

(2014년 12월 31일 기준)

가. 시범사업 개요

2014년 7월부터 8개 부처(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중기청)를 대상으로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7~8월에는 비용분석 연습 차원에서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9월부터는 소관 부처의 규제심사 대상이 되는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Cost-in, Cost-out을 적용하였다.

나. 시범사업 운영 현황

(1) 적용 현황

규제심사 대상(220개) 중 60개(27%)에 대해 규제비용총량제가 적용되었으며, 160개(73%)는 적용 제외[11]되었다.

11 「적용 현황」 통계는 원칙적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단위인 '개별조문'(개) 단위로, 「비용분석」 통계는 해당 정책과 관련된 개별 조문들을 모은 '정책 프로그램'(건) 단위로 관리
(例 : '돼지출생신고', '식별번호 표시 등 개별조문 단위로 적용여부 판단, 적용대상이 되면 '돼지출생신고', '식별번호 표시', 등 3개가 모아진 '가축이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돼지 이력관리제)'이라는 1건의 정책 프로그램 단위로 분석)

적용대상 60개 중 54개(90%)는 비용분석이 가능하였으며, 6개(10%)는 비용분석이 어려워 '심사처리제'를 적용하였다.

적용제외 160개는 그 사유별로 분류하면 「생명·안전」 68개(43%),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 65개(41%), 「조약 및 국제협약」 13개(8%) 등 순으로 나타났다.

(2) 적용 대상에 대한 분석 현황

(가) 비용분석

2014.12.31일 기준 비용전문위원회를 완료한 7건[12]은 문체부 1건(간행물의 정가변경 절차), 농식품부 2건(돼지 이력관리제, 배합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 환경부 1건(통합허가 배출기준 설정 등), 국토부 1건(친환경 주택의 설계 및 성능기준), 산림청 2건(산림탄소사 자격요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이다.

부 처	법령명(대상 규제)	유형	규제비용 (단위 :백만원)
문체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간행물의 정가변경 절차)	신설 강화	연간균등순비용 : 4 순비용 : 36
농식품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돼지 이력관리제)	신설 강화	연간균등순비용 : 5,867 순비용 : 46,65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배합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	폐지 완화	연간균등순비용 : △878 순비용 : △10,102
환경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 배출기준 설정 등)	신설 강화	연간균등순비용 : △8,241 순비용 : △65,539
국토부	친환경 주택건설기준 고시 (친환경 주택의 설계 및 성능기준)	신설 강화	연간균등순비용 : 900 순비용 : 13,900
산림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산림탄소사 자격요건)	신설 강화	연간균등순비용 : 2 순비용 :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폐지 완화	연간균등순비용 : △2,711 순비용 : △21,561

※ 산업부, 해수부, 중기청은 비용분석 검증 진행 중으로 상기 목록에는 미포함

12 동 건은 개별조문을 모은 정책 프로그램 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나) 심사처리제 안건

규제비용총량제가 적용 대상 중 심사처리제를 적용한 건은 국토부 2건[13](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기준,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기준)이다. 동 건은 면허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운송사업 면허를 얻고자 하는 피규제대상을 사전에 한정하기 어렵고 지역별 노선에 따른 면허기준 차량대수도 추정하기 어려워 비용분석이 어렵다고 판단, 심사처리제를 적용하였다.

부 처	법령명(대상 규제)	유형	산정 점수
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기준)	신설 강화	15점
	주자창법 시행령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기준)	폐지 완화	26점

(3) 규제순비용 현황

비용분석이 완료된 7건 중에는 신설·강화 규제가 5건이고, 폐지·완화 규제는 2건으로 나타났다.(〈비용분석 안건 목록〉 참고)

이들의 총비용을 산출한 결과, 연간균등순비용 기준으로 1,468백만원이 감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연간균등순비용 △8,241백만원)와 산림청(연간균등순비용△2,709백만원)의 감축이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 : 백만원)

부 처	신설·강화	폐지·완화	규제비용 변동총량
문체부	4 (36)	–	4 (36)
농식품부	5,867 (46,652)	△878 (△10,102)	4,989 (36,550)
환경부	△8,241 (△65,539)	–	△8,241 (△65,539)
국토부	900 (13,900)	–	900 (13,900)
산림청	2 (19)	△2,711 (△21,561)	△2,709 (△21,542)
합 계	**△1,468(△4,932)**	**△3,589 (△31,663)**	**△5,057 (△36,595)**

※ 숫자는 연간균등순비용(괄호안은 규제순비용)

13 동 건은 개별조문을 모은 정책 프로그램 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3.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주요 사례

(1) 비용분석 주요 사례

(가) 돼지 이력관리제

사례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돼지고기 이력관리제 도입 관련)	소관부처	유형
		농림부	IN규제

규제내용

- 쇠고기의 경우처럼 돼지고기에도 이력제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그 이행주체인 사육농가, 도축장, 포장가공업체 등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거래신고 등 이행의무를 부여
  * 돼지고기 이력관리제 도입 취지 : ▲안전한 축산물 제공 ▲구제역 등 질병에 선제적 대응 ▲수입산과 차별화된 관리로 국내양돈산업 경쟁력 제고 등

분석개요

-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에 따른 피규제자인 '돼지사육농가', '종돈장',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을 분석
- 문신비용 등 직접비용은 50,625백만원, 정부보조금 등 편익은 3,973백만원으로 순비용은 46,652백만원으로 산출
  ⇨ 이에 따른 연간균등순비용은 5,867백만원으로 산출
  * 순비용 : 규제존속기한중 합산 개념 / 연간균등순비용 : 연간 개념

시사점

❶ 분석과정에서 '농장별 문신표시 방식'과 '개체별 전자칩 부착 방식'을 비교하여 비용, 효과 등에서 비교우위의 대안(농장별 문신표시)을 선택
⇨ 총량제는 부처가 제안한 규제대안외 다른 다양한 대안도 검토토록 하여 품질 좋은 최선의 대안이 선택되도록 하는 기제임을 확인

❷ 동 분석에서의 피규제자는 사육농가, 도축장, 포장가공업체 등
⇨ 총량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규제대안이 선택되도록 할 수 있음을 확인

❸ 분석과정에서 국조실·전문연구기관, 소관부처·산하연구기관간 뿐 아니라 돼지사육농가 등 피규제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현장확인도 이뤄짐
⇨ 총량제를 통해 규제를 둘러싼 여러 주체간 커뮤니티 형성 유도

현 행		총량제 비용분석 도입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를 만드는 소관부처 중심으로 이뤄짐	⇨	• 규제영향분석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주체들간 커뮤니티 구조가 형성 국조실 ⇆ 소관부처 ↘↖ ⇅ ⇅ 피규제자 전문연구기관 ⇆ 산하연구기관 ↗↙

(나) 통합허가 배출기준 설정 등

사례 2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합허가, 허가신청, 실태조사, 이행점검)	소관부처	유형
		환경부	IN규제
규제내용	• 환경 매체별 허가·관리체계를 통폐합하고 환경리스크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선진적 환경허가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 현재 최대 9개 인허가 필요 등 불필요한 부담 유발, 허가권자별 중복하여 적발식 단속하여 환경개선도 어렵고 기업은 연평균 20회 수감 부담 등 – (통합허가·허가신청) 매체별로 분절된 허가·관리체계를 통폐합하여 중복서류 배제, 허가권자 단일화 등 – (최적가용기법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산업계가 참여하여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작성, 허가배출기준 설정기준으로 활용 – (허가사항 확인 및 이행점검) 허가권자 단일화에 따라 점검권한도 단일화		
분석개요	• 동 법률 제정안에 따른 직접비용은 실태조사 지원 직원 인건비 등 200백만원, 반면 허가대행비용 절감, 지도점검 지원하는 인건비 절감 등 비용절감에 따른 직접편익은 65,740백만원으로 산출되어 순비용은 △65,539백만원 ⇨ 이에 따른 연간균등순비용도 △8,241백만원으로 산출 * 순비용 : 규제존속기한중 합산 개념 / 연간균등순비용 : 연간 개념		
시사점	❶ 동 법률 제정안은 환경 매체별 허가·관리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비용 절감효과가 매우 큰 사례 ⇨ 신설·강화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편익이 훨씬 클 경우 순비용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음을 확인 ❷ 소관부처는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감축할 필요가 없을 뿐 더러 '마이너스'된 만큼 '적립(Banking)' 해두고 이후 신설·강화규제 도입시 활용 ❸ 환경개선 관련 규제는 기업에 부담주는 경우가 많아 그 도입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총량제를 통해 규제로 인한 편익이 더욱 크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필요한 규제가 무리없이 도입되는데 기여 가능		

(다) 친환경 주택의 설계 및 성능기준

사례 3	친환경 주택의 설계 및 성능기준 고시 (친환경 주택의 설계 및 성능기준)	소관부처	유형
		국토부	OUT
규제내용	• 친환경주택(30호 이상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30→4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설계기준을 강화 – 창호단열, 벽체단열, 보일러 성능 등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창면적비, 발코니 창호 단열 등 기준을 추가 * 2025년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의 달성 및 '17년도 60% 에너지 절감률 목표 달성의 중간단계 절감률을 설정		
분석개요	• 에너지절감률 달성을 위한 피규제자인 건설사(LH 공사, 민간기업)의 직접비용 및 직접편익을 분석 • 직접비용은 건설비 상승액으로 3,275,600백만원, 분양주택의 임대료 회수비인 직접편익*은 2,637,900억원으로 순비용은 637,700백만원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산정기준이 국토부 표준건축비 및 주변시세에 좌우되므로 직접비용증가분을 임대료 상향을 통해 회수할 수 없는 구조로 직접편익을 0으로 봄 ⇨ 이에 따른 연간균등순비용은 80,200백만원으로 산출함.		
시사점	❶ 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주택의 경우 증가된 직접비용만큼 분양가에 포함, 회수할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 진행 ⇨ 민간기업과 공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규제의 경우 각 피규제 기업의 비용 및 편익 산정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 ❷ 직접비용·직접편익 분석뿐만 아니라, 각 세대당 에너지 절감률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을 간접 편익으로 제시 ⇨ 피규제자에 대한 직접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 등에 대한 간접편익 고려시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라) 배합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

사례 4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배합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	소관부처	유형
		농림부	OUT
규제내용	• '양축용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제조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별도의 사료제조시설(분쇄·배합·정선·포장시설) 설치의무를 폐지함. * 현행 농식품부 고시(사료공정서 및 범위와 기준) 및 지자체 관리감독을 통해 사료원료의 혼입예방 가능		
분석개요	• 동 개정안의 효과는 '양축용 배합사료 제조업'과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의 별도의 사료제조시설 설치비용 절감(직접편익)으로 나타남. • 별도 제조시설을 기설치한 사업자의 개보수비용 절감분 9,225백만원, 신규 진출 사업자의 별도 시설 설치비용 절감분 878백만원으로 동 개정안에 따른 직접편익은 총 10,102백만원이며 순비용은 △10,102백만원 ⇨ 이에 따른 연간균등순비용은 △1,270백만원으로 산출		
시사점	❶ 현행 사료관련 규정 및 지차체 감독을 통해 사료원료 혼입의 방지·관리가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제조시설 설치의무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폐지 추진 ⇨ 동일한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수의 규정이 있는 경우 기업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줄 수 있는 차선의 규제를 선별·해소하는 동기부여 ❷ 추가적인 사료제조 설비구축 비용의 절감은 사료업체의 생산비용부담 및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완화에 기여 ⇨ 과도한 기업부담을 경감시켜 궁극적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2) 심사처리제 주요 사례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기준

〈개 요〉

○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면허기준대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운송 부대시설 등 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내용 (신설·강화 규제)

○ 면허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운송사업 면허를 얻고자 하는 피규제대상을 사전에 한정하기 어렵고 지역별 노선에 따른 면허기준 차량대수도 추정하기 어려워 '심사처리제' 적용한 사안

〈판단 기준〉

○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총점관리제'를 적용

• 모든 규제를 입지·진입 / 거래·가격 / 품질·사회 / 행정규제로 나누고 각 카테고리별로 행위강도(특허〉인허가〉신고〉사후보고 등)와 적용범위(적용되는 기업 등 비율 : 75%초과, 75%이하, 50%이하 등)를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

〈최종 결과〉

○ 운송사업 면허 기준은 운송사업 승인권자가 운송사업면허권자의 면허 승인시 행정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행정적 규제로 분류되며 유사 법령* 수준(E1)으로 분석

⇨ 규제총점제 적용 결과, 15점 (신설·강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기준'의 폐지·완화규제도 함께 제시

⇨ 규제총점제 적용 결과, 26점 (폐지·완화)

* 노후화된 2단 단순승강식과 경사승강식의 경우에는 총 주차대수와 상관없이 철거후 새로 확보하여야 하는 법정 주차대수의 절반 감면 등

4.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

6개월간 시범사업을 결과를 토대로 규제비용총량제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에 따른 비용을 관리함으로써 피규제자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비용분석·검증이 완료된 7건의 총 규제비용은 마이너스(연간균등순비용 총계 △5,057백만원)로, 비용측면에서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수 기준에서 살펴보면 7건 중 5건이 신설·강화 규제이고 2건이 폐지·완화 규제이나, 비용측면에서는 오히려 감축된 것이다.

둘째, 규제의 신설·강화시 최적의 대안을 선택토록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부처에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질적인 면에서 피규제자에게 부담이 덜 되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선택토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식품부의 돼지 이력관리제 사례를 보면, 돼지 이력관리 수단으로 문신방식과(두당 약 200원)과 전자칩 방식(두당 약 2,300원)을 비교하여 규제목적은 달성하면서도 피규제자에게 비용이 훨씬 덜 드는 문신방식을 채택하였다.

셋째, 부처로 하여금 기존 규제를 개선토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실제로 시범사업 과정 중에서 현실적으로 피규제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 중복적인 규제 등을 발굴·개선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이 감축되었다. 예를 들어, 농식품부의 배합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등이 그 예이다. 기존에는 양축용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그 밖의 어류용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을 하고자 할 때 별도로 사료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여타의 사료 관련 규정이나 지자체 감독을 통해 사료원료 혼입 방지 등 관리가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제조시설 설치는 과도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넷째, 규제 도입시 새로운 정책대안 개발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규제비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규제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피규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항목들이 무엇이며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규제자와 직접 면담, 설문조사를 하거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향후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관 부처 중심이 아닌 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간 커뮤니티 구조(정책논의의 장)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제3절 규제개혁신문고

강 희 정 사무관
T 044-200-2634 E caroline@pmo.go.kr

1. 운영 취지

규제개혁신문고는 지난 3월 20일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개설된 온라인 중심의 원스톱 규제건의 처리 창구이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개선 건의는 청와대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건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떤 건의들이 수용되어 개선되었는지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건의가 수용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규제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2014년 한 해 총 6,500여건(중복건의 제외)의 규제건의가 접수되어 각 부처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검토를 거쳐 2,300여건이 수용되는 등 규제개혁신문고는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산시키는 핵심적인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건의 처리 절차

가. 3단계 검토과정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된 건의처리 시스템의 핵심은 합리적인 건의가 사장되지 않도록 "부처 답변 → 소명 → 개선권고"의 3단계 검토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1단계로 소관부처에서는 규제건의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내에 담당 국·과장 실명으로 답변해야 한다. 2단계로 국무조정실에서는 소관부처 답변의 적절성 여부를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소관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았으나 '합리적 측면'이 있는 건의에 대해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규제존치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소관부처에 소명을 요청한다. 3단계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처에서 규제존치로 소명한 건의에 대해 그 타당성 및 관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나. "답변실명제" 및 "소명제도" 도입

그동안 각종 민원이나 규제 건의처리 등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답변하거나 국민의 입장이 아닌 소관부처 입장에서 규제의 필요성 등을 자의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이다. 이에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소관부처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였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제도가 "답변실명제"이다. 소관 부처에서는 규제건의에 대한 답변시 반드시 규제를 소관하고 있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의 실명을 걸고 답변해야 한다. 소명시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소관부서의 1급(실장)의 실명을 걸고 소명해야 한다. 실무자 선에서 답변하는 것과 책임자 실명을 걸고 답변하는 것은 책임성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또한, 소관부처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검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소명 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명제도에서는 각 부처에서 답변시 수용하지 않았지만 "합리적 측면"이 있는 건의를 선별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과정에서는 민간자문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민간자문단은 국토·농림·산업·금융·안전·교육·복지·노동·환경·법제 등 11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처 답변의 타당성 등을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므로 총리실 규제신문고팀에서 소명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소명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소명 필요성 등을 첨부하여 소관부처로 전달된다. 때문에 소명절차는 해당 규제에 대하여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소명통보를 받은 부처는 심층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규제건의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규제존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를 소상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 :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및 처리과정 확인

1. 규제 건의

2. 나의 건의 처리현황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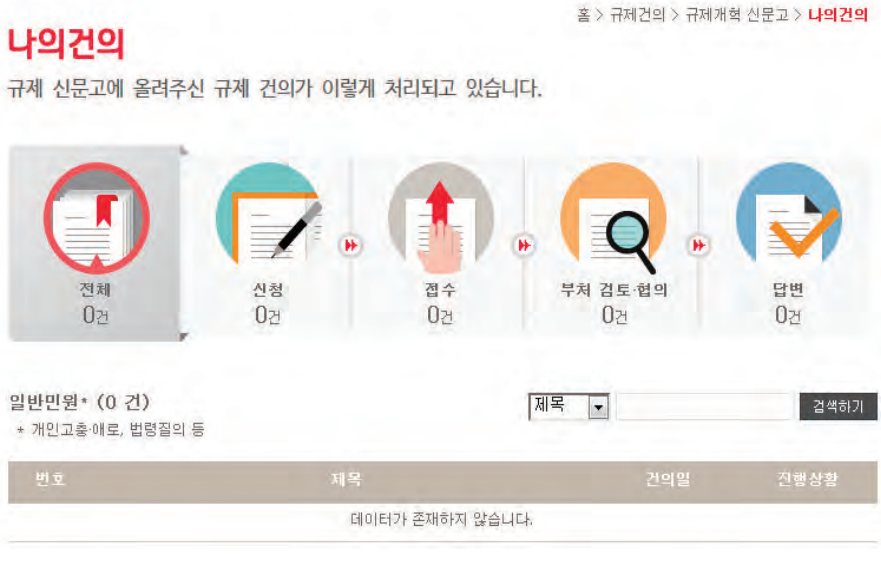

3. 전체건의과제 처리현황

홈 > 규제건의 > 규제개혁 신문고 > 처리현황

처리현황

규제 신문고에 올려주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 (13188 건)

* 개인고충·애로, 법령질의 등

제목 검색하기

번호	제목	건의일	진행상황
23768	텔레뱅킹 N	2015-03-17	신청
23767	텔레뱅킹 N	2015-03-17	신청
23766	과속방지 대책은 없을까요. N	2015-03-17	일반민원
23765	도로 공사중 차량에 노란색 페인트가 묻어 피해를 본 피해자 N	2015-03-17	일반민원
23764	인제군 건축규제에 관하여... N	2015-03-17	부처 검토·협의
23763	공권력의 상소제한 N	2015-03-17	일반민원
23762	노무사시험규제하는공무원징계하라 N	2015-03-17	신청
23761	감사외면하는공무원징계하라 N	2015-03-17	일반민원
23760	노무사활동규제하는공무원징계하라 N	2015-03-17	신청
23759	해마다 반복돼는 썩지않은 거름 토양에 투척 냄새고통 N	2015-03-17	일반민원

1 2 3 4 5 6 7 8 9 10

4. 건의 수용과제 현황

홈 > 규제건의 > 규제개혁 신문고 > 수용과제

수용 과제

국민께서 건의한 사항 중 소관부처에서 수용하기로 한 과제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모아보기 [전체보기]

[재정·금융] [국토·해양] [농림·수산] [교육·문화] [고용·복지] [보건·식품]

[교통·안전·환경] [과학·기술] [바이오·에너지·기후] [정보통신] [산업·무역] [외교·국방·기타]

제목 [검색하기]

번호	제목	건의일	주관부처	이행여부
3419	건축물 인허가시 신청서 날인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요.	2015-03-09	국토교통부	이행완료
3418	그린벨트해제 훈령 변경	2015-03-09	국토교통부	진행중
3417	1년이 넘게 잘못된 규제로 신부가 한국에 못오고 있습니다	2015-03-05	법무부	진행중
3416	이축을 포함한 20호이상 취락지구 해제	2015-03-03	국토교통부	진행중
3415	스크린스포츠 (승마,야구,사격 등)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5-03-01	문화체육관광부	진행중
3414	용역제안서 평가항목 세부기준안 건의	2015-02-28	농림축산식품부	진행중
3413	개특법 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수리점	2015-02-27	국토교통부	진행중
3412	도로사선제한 폐기에 관한 건	2015-02-26	국토교통부	이행완료
3411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융자제도(의료비) 완화해주세요	2015-02-26	고용노동부	진행중
3410	번역회사는 외국인이 필요합니다.	2015-02-26	법무부	이행완료

1 2 3 4 5 6 7 8 9 10

5. 건의 소명과제 현황

홈 > 규제건의 > 규제개혁 신문고 > 소명과제

소명과제

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았지만 국무조정실의 소명요청을 받아 재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소명완료 | 소명준비중

분야별 모아보기

전체보기

제목 | 검색하기

번호	제목	부처	소명일자	소명결과	이행여부	조회수
288	과채가공품류의 함량 표시 개선 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3-12	개선	진행중	3
287	다자녀 가구에 대한 중학교 입학시 근거리 우선배정 정책 필요	교육부	2015-03-10	개선	진행중	8
286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소득요건 중 부동산 평가방법 규제개혁 요망	법무부	2015-03-09	개선	진행중	14
285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일부시설 콘크리트 타설 허용 건의	국토교통부	2015-03-04	규제존치	-	53
284	기초연금의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기부 제외 요청	보건복지부	2015-03-03	규제존치	-	2

3. 2014년도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성과

2014년 12월말(14.3.20~12.31)까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의는 총 18,033건으로, 이중 일반민원을 제외한 규제개선 건의는 총 6,505건(중복건의 제외)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3년도 규제건의(300건)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각 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로 접수된 규제건의에 대한 수용률(36.7%, 2,303건)은 전년도(8%, 24건) 대비 4배 이상 대폭 상승하였다. 수용된 건의 2,303건 중 1,738건은 규제개선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과제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각 부처에서 답변시 수용하지 않았지만 합리적 건의로 판단된 285건(중복제외)을 소명조치 시켰으며, 이중 53.0%에 해당하는 151건에 대해 각 부처에서는 건의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건의 내용을 피규제자별로 분류해보면 ❶ 일반국민의 건의가 46.9%로 가장 많았고 ❷ 자영업자 건의 31.5% ❸ 기업 건의 19.4% ❹ 기타 건의 2.2% 순이었다. 수용이 되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건 중에는 ❺ 국민생활 관련 규제개선이 43.5%으로 가장 많았고 ❻ 자영업자 관련 규제개선 30.9% ❼ 기업관련 규제개선이 23.0% ❽ 기타 규제개선이 2.6%를 차지했다.

4. 주요 규제 개선 사례

가. 국민생활규제 개선

(1) 장애인 LPG승용차 보유 규제 완화

종전에는 LPG승용차를 보유한 장애인이 장애등급이 조정되어 탈락하는 경우, 장애인 혹은 그 보호자는 LPG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6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귀책사유 없이 예기치 못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경증 장애인들이 향후 장애등급의 상실 가능성을 우려하여 LPG 승용차를 구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규제신문고에 장애인의 LPG승용차 보유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가 접수되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에 대한 LPG 사용제한 업무

지침」을 개정하여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14년 7월 1일 이후 장애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부터는 본인 혹은 그 보호자가 판정당시 적법하게 소유·사용하던 LPG승용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도로 사선규제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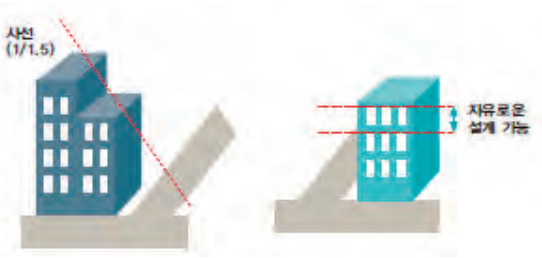

도로 사선규제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접수되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획일적인 형태의 건축물을 양산하고, 건축물의 가치를 하락시켜 건축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동 사안에 대한 검토 후, 도로 사선규제를 철폐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는 용적률 기준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동 규제 개선으로 연간 1조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 사선규제 폐지를 담은「건축법」개정안은 2014년 10월 22일에 발의,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3) 해외 직구 상품 반품시 직접 수출신고 가능

최근 해외 직접구매가 1조원 규모로 급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551건으로 31%나 증가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해외 직접구매 물품을 반출하고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판매자와 협의 후 제품 환불을 진행한다는 각종 증빙서류(수입면장, 반송사유서, 물품목록 등)를 구비해야 하고, 또 구비서류를 받아 관세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는 건의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 직접구매 물품 반품시 개인 화주가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14년 7월 1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014년 7월 14일부터 '인터넷 통관포탈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세 환급절차를 간소화했다.

(4) 공장 인접 공동주택 건립 관련 규제 개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인접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건립 시 인근 공장과 50m이상의 이격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격거리 내에 입지하고 있던 아파트에도 같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니, 아파트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주민들이 관련규정의 개선을 규제신문고에 요청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개정 계기시 관련 규정도 개정할 것인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무조정실에서 소명절차를 통해 주민 불편 및 안전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2014년 10월 28일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나. 자영업자규제 개선

(1) 타투 규제 완화

타투이스트(문신사)를 중심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문신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허용해 달라.'는 건의는 2014년에만 약 140건이 규제신문고로 접수되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 보건위생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타투를 예술적 행위로 보는 국제적인 추세 및 음성적으로 행해지는데서 오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합리적 소명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으며, 복지부는 미용문신을 제외한 예술문신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시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관련법인 「문신사법」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2) 메이크업 자격 신설

네일샵은 독립적인 영업장 개설이 가능하지만, 메이크업의 경우에는 메이크업 전문샵의 개설이 불가능했다. 이에 규제신문고로 메이크업(화장, 분장)에 대해 '미용업(일반, 피부)'에서 분리하여 메이크업 자격도 별도로 신설해 달라는 건의가 제기되었다. 당초 신중한 입장이었던 보건복지부는 소명절차에 따른 심층 검토 후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2014년 10월 15일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2015년 7월 1일부터 '미용업(화장, 분장)'에 대한 분리 영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중 메이크업 분야를 신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업한 결과, 2015년 1월 21일자로 관련규정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종전에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화학과나 생물학과 같은 화장품 관련분야를 전공해야만 했다. 그러나, 관련 학과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건의가 접수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9월 24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화학이나 생물학 외에도 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 다양한 전공분야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비전공자인 경우,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경력이 학사 2년, 전문대 3년, 고졸 4년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비전공자의 업무경력을 학력 구분 없이 2년으로 단일화하였다.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택배 배달 허용

규제신문고로 떡집, 수제어묵가게 등에서도 택배 배달 판매를 허용하게끔 조치해달라는 건의가 접수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10월 13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제품의 택배 배달 판매를 허용하였다. 동 조치로 전국 77,000여개소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가 판매활로를 넓히게 되었다.

(5) 막걸리 용량제한 개선

그동안 막걸리는 무자료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2 *l* 이하의 용기만 허용하면서 대용량 판매 용기의 사용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시장활성화를 저해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규제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국세청은 2014년 7월 1일,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2 *l* 를 초과하는 대용량 용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하였다.

다. 기업규제 개선

(1) 외국인 투자기업의 벤처기업 확인대상 포함

외국인 투자의 경우, '벤처확인 대상 투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현행규정이 불합리하므로,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가 접수되었고, 중소기업청에서는 당초 동 건의에 대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국내 벤처기업의 경우, 국내 투자자로부터 ❶ 5천만원 이상 투자, ❷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투자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규정의

충족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반면, 외국인 투자의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어려워 동 규정의 적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에서는 현행 일반 기업이 벤처인증을 통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혜 받고 있는 만큼 최근 벤처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및 해외투자 유치 확대 추세에 맞추어 동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중소기업청에 소명을 요청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벤처기업 확인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2015년 1월 6일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 포함시켰다.

(2) 소프트웨어업체 직접생산확인 요건 완화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을 위해서는 개별 출입구가 필요하고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의 경우, 독립적인 작업 공간이 필수적이지 않고 동일공간에 여러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건의가 접수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2015년 5월 9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정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SOHO사무실 등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출입구 및 격벽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3) 상급종합병실 외국인환자 제한 완화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외국인 입원환자에 배정할 수 있는 병상수를 전체의 5%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외국인 환자유치가 제한되었다. 이와 관련한 규제개선 건의가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14년 9월 19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내 환자의 이용률이 낮고 외국인 환자의 선호도가 높은 1인실을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 병상수의 5% 이내에서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었으나, 외국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한 경우는 병상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변경한 것이다.

(4) 산업단지 내 복합입지 허용

규제신문고를 통해 산업단지내 용도지역 구분에 따른 입주가능시설 제한에 따라 관련 시설간 융복합 입주가 어렵고, 작업장과 생활편의시설이 격리되어 근로자 생활여건이 열악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접수되었다. 이에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4년 7월 15일부터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의

복합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의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복합용지내 입주건물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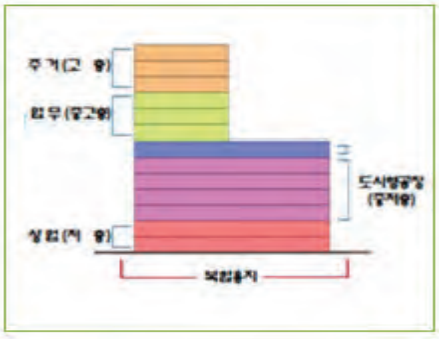

5. 향후계획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인 만큼, 향후에도 각 부처가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 내실있게 검토하여 한 건의 건의라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수용된 건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건의자 등과 함께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제4절 규제기요틴

송 지 영 주무관
T 044-200-2437 E yonha999@pmo.go.kr

1. 규제기요틴의 정의 및 의의

규제기요틴은 기존 규제의 필요성, 적정성, 적합성 등을 재검토하여 존속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제거하거나 단순화하는 작업을 신속하고 대규모로 진행하는 전(全)정부적 규제개선 방식을 말한다.

기존의 규제개선은 각각의 개선과제별로 추진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떨어지고 장시간이 소요되어 규제개선의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고, 개개의 과제별, 개별 부처별 규제개선 추진방식으로는 경제 전반에 대한 충분한 활력을 부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규제기요틴 방식의 규제개선 작업을 통해 대규모의 규제를 일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제거하므로써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기업 부담 완화, 미래산업 촉진 및 국민 불편 해소 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2. 규제기요틴 추진체계

규제기요틴은 크게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와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추진한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는 소관부처 차관과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실무작업반의 실무검토안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간사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맡는다.

실무작업반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사회규제작업반'과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경제규제작업반'으로 나뉘며, 반원은 소관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다. 실무작업반의 총괄역할은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한다. 실무작업반은 규제기요틴 과제 발굴·선정, 과제 개선에 대한 부처의견 검토, 수용곤란 과제에 대한 소명회의 개최, 부처간 협의·조정 및 실무검토안 수립을 담당한다.

규제기요틴 추진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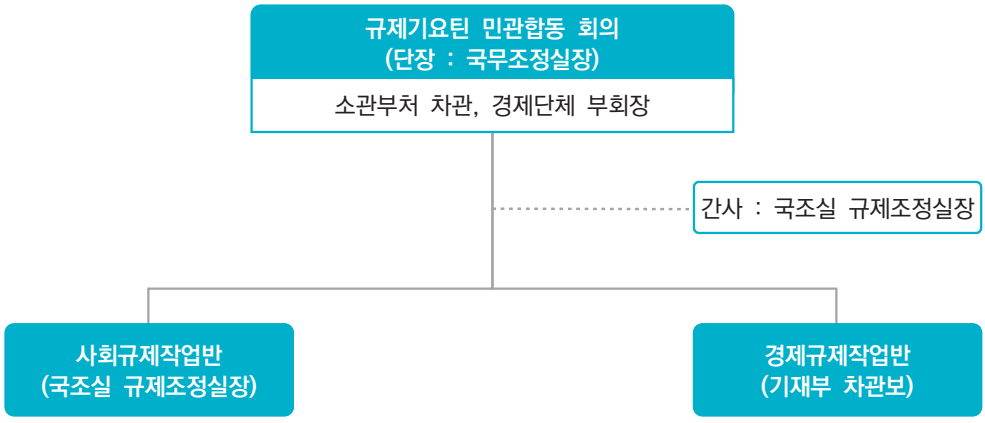

3. 규제기요틴 추진경과

규제기요틴 작업반은 '14년 11월 8개 주요 경제단체*로부터 153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접수하여 각 과제의 개선필요성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검토를 실시하였다. 각 부처에서 개선건의에 대해 수용이 곤란하다고 검토한 과제에 대해서는 각 실무작업반 주도로 총 16차례에 걸쳐 부처소명회의를 개최하여 건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건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협의·조정하였다.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결과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심의하였으며 2014년 12월 28일 총 114건(74.5%)의 과제를 수용(수용, 부분수용, 대안마련)키로 확정하였다. 건의과제 중 규제를 강화하거나 경쟁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 및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 등 16건은 수용곤란과제로 분류하였으며, 정책목적이 서로 상충되거나 경제주체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건의 23건은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별도로 추가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114건의 수용과제 개선조치의 철저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해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실시간 관리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를 '1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규제기요틴 건의과제(153건) 검토결과

총 계 (건수)	수용(114건)			수용곤란	추가논의 필요
	전부수용	부분수용	대안마련		
153	61	18	35	16	23
경제(84)	37	11	21	4	11
사회(69)	24	7	14	12	12

4. 규제기요틴의 성과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과제들은 입지·서비스·환경 등 핵심분야의 규제가 다수 포함되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라는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제단체의 건의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규제기요틴 과제의 수용률은 약 75%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신문고에서의 건의 수용률이 4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개선키로 한 114건 중 18건의 건의과제는 그동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개선요구가 접수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수용되지 않았던 과제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 규제기요틴 방식 규제개혁의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5. 규제기요틴 과제 검토결과

가. 수용 : 114건 (전부수용: 61건, 부분수용: 18건, 대안마련: 35건)

연번	과제명	부처	검토 의견	법령 여부	구분
1	국유재산 유휴지를 지자체가 관광목적으로 활용시 사용료 감면	기재부	수용	시행규칙	경제
2	공공 발주 SW 지식재산권 개발자의 권리 강화	기재부 행자부	수용	법률 비법령	경제
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제정	기재부	수용	법률	경제
4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대상 확대	미래부	수용	비법령	사회
5	공인인증기관 등록 및 인증방법 평가 관련 규제완화	미래부 금융위	수용	시행령 감독규정	경제
6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연구원 겸직요건 완화	미래부	수용	시행규칙	사회
7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이익배당 허용	미래부	수용	법률	사회
8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허가 관련 군 협의기간 단축	국방부	수용	법률	사회
9	비행안전 제1구역 내 도로 확·포장 등 허용	국방부	수용	법률	사회
10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등 다양한 시설입지 허용	문체부	수용	법률	경제
11	학교환경정화구역내 호텔설립 허용	문체부	수용	법률	경제
12	지자체 소유 경기장의 장기임대, 민간투자 허용 등 규제완화	문체부	수용	법률	경제
13	메디텔의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완화	문체부	수용	시행령	경제
14	농지전용 규제 완화	농식품부	수용	비법령	사회
15	밀양 농공단지 부지 부족으로 인한 공장증설 애로	농식품부 국토부밀양시	수용	비법령	경제

연번	과제명	부처	검토 의견	법령 여부	구분
16	노후산단 리모델링 추진단지에 대한 건축·업종·시설규제 완화	산업부 국토부	수용	법률	사회
17	지능형 전력망 산업자 등록요건 폐지 및 신고제 전환	산업부	수용	법률	사회
18	전력신기술 지정제 폐지	산업부	수용	법률	사회
19	디지털복합기를 재제조 대상품목으로 추가	산업부 환경부	수용	비법령	사회
20	가구판매밀집지역이 상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 완화	산업부	수용	시행령	사회
21	지식서비스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개선	산업부	수용	비법령	경제
22	국가핵심기술 이전신고 관련 사전협의 등 신고절차 개선	산업부	수용	비법령	경제
23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입주자격 제한 완화	산업부	수용	시행령	경제
24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및 실시계획의 통합심의	산업부	수용	법률	경제
25	경제자유구역 내 준공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시 절차간소화	산업부	수용	법률	경제
26	e-러닝에 대한 독자적 산업분류 및 개발대가 산정기준 마련	산업부	수용	비법령	경제
27	미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분류 신설	복지부	수용	법률	사회
28	경자구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규제 완화	복지부	수용	시행규칙	경제
29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복지부	수용	법률	경제
30	4대보험료 연체금 산정방식 개선	복지부 고용부	수용	법률	사회
31	상수원입지규제완화(L사 천안퓨처일반산단내 공장설립)	환경부	수용	비법령	사회
32	경제자유구역 '환경영향평가' 대상 용지의 포괄적 규정	환경부	수용	시행령	사회

연번	과제명	부처	검토 의견	법령 여부	구분
33	지자체의 상위법 위임범위 초과한 폐기물처리업체 입지제한 규제 개선	환경부 행자부	수용	비법령	사회
34	주유소 상호 등 변경시 법령마다 주유소 시설 변경 신고 요구개선	환경부	수용	법률	경제
35	플라스틱제품 폐기물부담금 부과 완화	환경부	수용	시행령	사회
36	시험 및 연구 목적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규제 완화	국토부	수용	시행령	사회
37	청약통장 통합추진에 따른 지방은행의 주택청약종합 저축 판매 허용	국토부	수용	비법령	사회
38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상위법에 없는 지자체 규제 개선	국토부	수용	법률	사회
39	산단내 직장어린이집 건립 관련 공원시설 면적 규제 완화	국토부	수용	시행규칙	사회
40	물류부지에 대한 조경의무 완화	국토부	수용	법률	사회
41	산단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배관시설 확장애로 해소	국토부	수용	비법령	경제
42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지연으로 인한 공장설립 지연 개선	국토부	수용	법률	경제
43	물류센터간 화물이동로(컨베이어벨트)를 건축법상 용적률 적용대상에서 제외	국토부	수용	시행령	경제
44	화학물질 수송용 탱크로리 등 신규화물차량 공급 확대	국토부	수용	비법령	경제
45	대형 항만하역장비의 항만·배후단지내 일반도로 운행제한 규제개선	국토부	수용	비법령	경제
46	김포공항 국제선 자가이용 전세편 좌석 기준 상향 (19석→50석)조정	국토부	수용	비법령	경제
47	전문건설업자 복합공사 수주범위(현행 3억원) 확대	국토부	수용	시행규칙	경제
48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가능 면적확대 (10%→30%)	국토부	수용	법률	경제

연번	과제명	부처	검토 의견	법령 여부	구분
49	선원 승하선 허가시 민간보험 가입자 차별대우 시정	해수부	수용	비법령	사회
50	역외지역 차별하는 지자체의 경쟁제한조례 개선	공정위 행자부 지자체	수용	비법령	경제
51	IT기업의 금융업 진출막는 진입규제 개선	금융위	수용	법률 시행령	경제
52	보증기관의 주류도매업에 대한 신용보증 취급제한 해제	금융위	수용	비법령	경제
53	투자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제한(70%) 완화	금융위 국토부	수용	법률	경제
54	사물인터넷 활용 저해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방통위	수용	비법령	사회
55	디지털 헬스기기 등 융합신제품에 대한 선제적 인증제도 개선	식약처	수용	비법령	경제
56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검증절차 개선	관세청	수용	법률	경제
57	숙박 및 음식점에 대한 벤처기업 인정과 정책자금 융자 허용	중기청	수용	시행령	경제
58	중소기업 창업계획 승인취소시 청문절차 폐지	중기청	수용	법률	경제
59	지역 신용보증 재단 간 보증연계 허용	중기청	수용	비법령	경제
60	개인기업 입주를 제한하는 창업보육센터 관행개선	중기청	수용	비법령	경제
61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선	중기청	수용	비법령	경제
62	정보보호인증의 법적 의무 완화	미래부	부분 수용	법률	사회
63	공공기관의 종이문서를 전자화 문서로 보관 허용	행자부	부분 수용	시행령	사회
64	영사기사 자격완화 및 상영관 고용기준 명시	문체부	부분 수용	법률	사회

연번	과제명	부처	검토 의견	법령 여부	구분
65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경사도 기준 개발행위 제한 완화	문체부 국토부	부분 수용	비법령	경제
66	비세척란에 대해서도 등급란 판정 허용	농식품부 교육부	부분 수용	시행규칙	경제
67	화장품 소매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중기적합업종 지정	산업부 중기청	부분 수용	비법령	경제
68	무인경비업 공동브랜드 우선구매지원 및 중기적합업종 지정	산업부 중기청	부분 수용	비법령	경제
69	벤처기업의 정부 R&D과제 참여시 재무기준 요건 완화	산업부 중기청 미래부	부분 수용	비법령	경제
70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복지부	부분 수용	법률	사회
71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 24시간 운영 소매점 이외의 장소로 확대	복지부	부분 수용	비법령	사회
72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의 잉여열을 지역 냉·난방용으로 공급허용	환경부	부분 수용	시행령	경제
73	부산신항만 부두내 벌크선 접안부두 설치	해수부	부분 수용	비법령	경제
74	민간 마리나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비율 확대	해수부	부분 수용	시행령	경제
75	증손회사·공동출자 허용 등 지주회사 규제 완화	공정위	부분 수용	법률	경제
76	업종 특성과 거래에 맞도록 기업 공시제도 합리화	금융위	부분 수용	비법령	경제
77	주유소 내 무인주차 설비 등 고객편의시설 설치허용	안전처	부분 수용	비법령	사회
78	중소기업에 대한 방사청의 물품적격심사 기준 개선	방사청	부분 수용	비법령	경제
79	문화재를 이용한 관광허용	문화재청	부분 수용	비법령	사회
80	대기업의 면세점(총 점포수의 60%미만) 진입제한 완화	기재부 관세청	대안 마련	비법령	경제

연번	과제명	부처	검토 의견	법령 여부	구분
81	통신요금인가제 개선	미래부	대안 마련	비법령	경제
82	법령보다 민원이 상위법으로 작동하는 관행 개선	행자부	대안 마련	비법령	사회
83	외국인에 대한 관광사업등록증 발급요건 완화	문체부	대안 마련	시행규칙	경제
84	기존유원지의 관광단지 전환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 생략	문체부	대안 마련	법률	경제
85	한복 문화 알림과 발전 프로젝트 실시	문체부	대안 마련	비법령	사회
86	공공기관 도서 구입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방안 마련	문체부 행자부	대안 마련	비법령	경제
87	주거지역 등에 위치한 숙박업소의 증축·개축 등 허용	문체부 국토부	대안 마련	비법령	경제
88	법령에 근거 없는 지자체 LPG 충전소 허가기준 개선	산업부	대안 마련	비법령	사회
89	건설현장 내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기 차량주유 허용	산업부	대안 마련	시행령	사회
90	창세트 부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인증방식 개선	산업부	대안 마련	비법령	사회
91	축사용 가스난방기기 수입절차 간소화	산업부	대안 마련	비법령	사회
92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정기안전검사 개선	산업부	대안 마련	비법령	사회
93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처리' 개선	산업부	대안 마련	시행령	경제
94	중견기업에게 산업기술단지내 도시형공장 설립허용	산업부	대안 마련	시행령	경제
95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복지부	대안 마련	비법령	경제
96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보관의 편의성 제고	복지부 미래부	대안 마련	법률	경제
97	음식물쓰레기의 건조 후 재활용품 인정	환경부	대안 마련	시행령	사회
98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제 합리화	환경부	대안 마련	비법령	사회

연번	과제명	부처	검토 의견	법령 여부	구분
99	방폭 전기기계 안전인증 규제 완화	고용부	대안 마련	비법령	사회
100	계획관리지역내 비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 허용범위 확대	국토부	대안 마련	시행령	사회
101	그린벨트 및 녹지관리지역 내 물류시설 건축규제 완화	국토부	대안 마련	법률	경제
102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시 건폐율 규제 완화	국토부	대안 마련	법률	경제
103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개발업 신청요건 완화	국토부	대안 마련	시행규칙	경제
104	녹지·관리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 한시적 건폐율 규제 제한 완화	국토부	대안 마련	법률	경제
105	자동차정비업 표준공임제 도입	국토부	대안 마련	비법령	경제
106	지하수, 문화재 보호 등으로 인한 신규개발 제한 규제 완화	문화재청 환경부	대안 마련	비법령	사회
107	가맹점이 법규위반으로 이미지 훼손시 계약갱신 거절허용	공정위	대안 마련	시행령	경제
108	부채비율 위주의 주채무계열 재무평가방식 등 개선	금융위	대안 마련	비법령	경제
109	펀드 운용시 시총비중 10%이상 종목의 편입제한 완화	금융위	대안 마련	법률	경제
110	면책채권을 이유로 한 보증기관의 보증거절 등 차별대우 금지	금융위 법무부	대안 마련	법률 시행령 비법령	경제
111	테마파크 내 식당의 구조 제한 개선	식약처	대안 마련	비법령	경제
112	화장품 KCGMP 인증 발급제도 개선	식약처	대안 마련	비법령	사회
113	PC방 출입시 위조신분증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	경찰청	대안 마련	비법령	사회
114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소급적용	중기청	대안 마련	비법령	경제

나. 수용곤란 : 16건

연번	과제명	부처	법령여부	구분
1	비영리단체의 단체 수의계약 참여 허용	행자부	시행령	경제
2	광고물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행자부	법률	사회
3	출판사의 도서공급 차별 철폐를 위한 독일식 도서공급가격 정가제도 도입	문체부	법률	사회
4	화원인증제 시행	농식품부	비법령	사회
5	고압가스 처리설비 등 설치 관련 지자체 고시기준 일원화	산업부	시행규칙	경제
6	중소기업에게만 주류중개업 허용	산업부 국세청 중기청	비법령	경제
7	중기적합업종에 중견기업 참여 허용	산업부 중기청	비법령	경제
8	독립 미용사법 제정	복지부	법률	사회
9	세탁업 신고체계 강화	복지부	시행령	사회
10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 허용	복지부	법률	사회
11	소상공인을 위한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복지부	비법령	사회
1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 시행방향 재검토	환경부	법률	사회
1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고용부	법률	사회
14	제과점영업 자격증 소지자 매장운영 요청	식약처	법률	사회
15	대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배정 요청	병무청	시행령	사회
16	정보처리업에 한해 학사출신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 허용	병무청	비법령	사회

다. 추가논의 필요 : 23건

연번	과제명	부처	법령여부	구분
1	공공기관 급식 대기업 입찰제한 완화	기재부	비법령	경제
2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제한 완화	미래부	법률	경제
3	중견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 확대	미래부	법률	경제
4	배임죄 구성요건에 경영판단원칙 도입	법무부	법률	경제
5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확대	법무부	법률	경제
6	기업 자산규모별 대기업 규제 개선	법무부 공정위	법률	경제
7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산업부	시행령	경제
8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산업부 중기청	법률	경제
9	물류산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동포 고용제한 규제 완화	고용부	비법령	사회
10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	고용부	법률	사회
11	파견 업종 및 기간 규제 완화	고용부	법률	사회
12	근로시간 단축 규제 유연화	고용부	법률	사회
13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 요건 확대	고용부	비법령	사회
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고용부	비법령	사회
15	경영상해고 요건 완화	고용부	법률	사회
16	대체근로 사용 제한 규제 개선	고용부	법률	사회
17	통상임금 부담 완화	고용부	법률	사회
18	임금피크제 법제화	고용부	법률	사회
19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고용부	비법령	사회
20	지나치게 까다로운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요건 완화	고용부	법률	사회
21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국토부 산업부	시행령	경제
22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시행령 (잠정)	경제
23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도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국토부 산업부	법률	경제

라. 규제기요틴 수용과제 중 규제신문고 중복건의 과제

연번	과제명	구 분	
		규제기요틴	규제신문고
4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대상 확대	수용	중장기검토
23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입주자격 제한완화	수용	중장기검토 (유사건의)
30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방식 개선	수용	불수용
49	선원 승하선 허가시 민간보험 가입자 차별대우 시정	수용	불수용
52	보증기관의 주류도매업에 대한 신용보증 취급제한 해제	수용	불수용
53	투자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제한(70%)완화	수용	불수용
63	공공기관의 종이문서를 전자화 문서로 보관허용	부분수용	불수용
65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경사도 기준 개발행위 제한 완화	부분수용	불수용
66	비세척란에 대해서도 등급란 판정 허용	부분수용	불수용
71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 24시간 운영소매점 이외의 장소로 확대	부분수용	불수용
77	주유소내 무인주차 설비 등 고객편의시설 설치허용	부분수용	불수용
84	기존유원지의 관광단지 전환시 관계기관 협의절차 생략	대안마련	불수용
89	건설현장내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기 차량 주유 허용	대안마련	불수용 (유사건의)
100	계획관리지역내 비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 허용범위 확대	대안마련	불수용
102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시 건폐율 규제완화	대안마련	불수용
108	부채비율 위주의 주채무계열 재무평가방식 등 개선	대안마련	중장기검토
110	면책특권을 이유로 한 보증기관의 보증거절 등 차별대우 금지	대안마련	불수용
114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소급적용	대안마련	불수용

제5절
핵심규제 개선

박 권 종 사무관
Ⓣ 044-200-2912 Ⓔ kjpark@pmo.go.kr

1. 추진배경

핵심규제 개선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당시 목표달성 방식의 양적감축을 질적 측면에서 규제개선을 통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방식 및 경과

가. 핵심규제 개선 대상 과제 선정

투자·일자리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민부담 경감 측면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핵심규제로 선정하기 위해 규제감축기관 및 자율추진기관 중 희망하는 부처를 대상으로 1차, 2차에 걸쳐 과제를 발굴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류제출간소화, 장부비치의무 폐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개선 난이도 등이 낮은 일부 과제(약 30%)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핵심규제 개선 관리

최종 선정된 과제는 34개 부처에 통보하고 정상적인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월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였으며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유발, 일자리창출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다수부처의 이견이 많은 정도 등에 따라 과제를 관리·운영하였다.

3. 핵심규제 개선 주요 성과

가. 투자·일자리 창출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캠핑카(승합)와 푸드트럭(화물)에 대해 안전검토 등을 거쳐 구조변경을 허용하고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는 구조변경 승인면제 등을 통해 자동차 튜닝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중소부품·정비업체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12년, 0.5조원/1만명→'17년,2.7조원/2만명→'20년, 4조원/4만명)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14.6)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숙박업,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수리업 등을 추가해 시설투자, 일자리 창출 및 해외환자 유치에 기여하였다.('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 목표 달성시 진료수익 1조2,000억원, 고용유발효과 2만여명 달성 전망)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4.9)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는 승마산업을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초지내 승마장 설치를 허용하고, 말산업 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17년까지 말산업 특구 5개소를 지정하여 승마산업 활성화 및 약 3,500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
*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14.8)

○ 환경부와 산림청은 육상풍력단지 영향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일부 능선부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입지제한을 완화시켜 국내 육상풍력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치하여 현재 추진중인 7개 프로젝트(208MW 규모) 개발시 고용창출 3천명, 5,000억 상당의 투자유발 효과, 연간 3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소나무 7천만그루 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 '육상풍력환경성 평가지침' 제정(환경부, '14.10),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산림청, '14.8)

○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유흥장이나 카지노와 같이 학생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없는 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학교 경계 50m~200m)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향후 23개 호텔 4,300여실 증가로 7,000억원 투자 및 1만7,000여명 일자리 창출예상)
* '관광진흥법' 개정('12.10 국회제출)

나. 국민불편·부담 경감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

○ 자동차 연비 측정기준과 사후관리를 국토교통부, 산업자원통상부, 환경부에서 각각 운영관리하며 부처별로 연비측정 절차가 통일되지 않고 중복규제가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비 시험방법을 통합하고, 판매된 자동차의 연비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연비 신고를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공동신고포털을 운영하여 업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연비관리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소비자의 혼선을 줄여 주었다.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고시' 제정('14.11)

○ 미래창조과학부는 3G 서비스 가입자뿐만 아니라 LTE 서비스 가입자도 단말기 교체없이 유심칩 교체만으로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LTE서비스 이용자의 단말기·이동통신사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에 따른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개정('14.7)

○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에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를 통해 외국인들의 온라인 쇼핑결제 불편을 해소하고 거래절차의 간소화로 소비자들의 결재편의성,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14.5),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14.8)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떡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에 대해 퀵서비스, 택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배달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국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7만7천여개) 영세영업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뷔페영업자가 빵을 구입할 때 동일 행정구역 내 5km 이내 빵집에서만 빵을 구입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거리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뷔페영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4.10)

○ 경찰청은 사이버경찰청, 안전드림 등 기존 대국민 시스템(8개)의 분산된 민원처리 기능을 모두 통폐합하여 민원접수 및 처리창구를 일원화하여 그동안 범죄경력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필요했던 각종 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사이버경찰청, 안전드림 등 8개 시스템에 분산된 민원처리 기능통합('14.12)

다. 신산업 창출

○ 국토교통부는 수소연료 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입지확보가 용이한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여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대규모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15.10)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의사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의료인들이 정보통신기기로 자문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으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노인이나 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도 의사와 원격으로 상담하며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의료법' 개정('14.4 국회제출)

○ 미래창조과학부는 온라인쇼핑몰 이용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내 인터넷 사이트 이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 온라인쇼핑몰 활용이 증가되고 디지털 콘텐츠 활용도 증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연간 12억5,000만건에 달하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자 3,000만명의 편의성 제고)

*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방침 가이드 라인' 개정('14.12)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에 통신모듈을 결합하는 변경 기기중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보고로 전환하여 운동·레져용 심(맥)박수계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해 별도 허가 없이도 제품출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모바일 의료용 앱과 이를 탑재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대상에서 면제를 시켜 스마트 의료기기의 조기시장 진입 및 휴대전화 수출증진으로 국익창출에 기여하였다.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14.4),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4.8)

○ 특허청은 법 개정을 통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정리한 연구노트와 같이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게 하였고 특허출원 서류 작성을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수, 연구원들이 빠르게 특허출원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규정을 개정해 그동안 무형자산인 특허권을 담보로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것을 해결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고충도 덜어 주었다.

* '특허법' 개정('14.6),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14.9) '등록사무취급규정' 개정('14.12)

4. 향후계획

투자·일자리 창출 및 기업활동 애로 관련 규제 등 분야별 부처 핵심과제 자체발굴을 개선하고 특히, 금융·물류·환경 등 각 부처 업무계획 등에서 제시한 규제개혁 핵심분야 과제 또는 다수 부처 연계 과제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6절
기존규제 감축 ❶ 기존규제 10% 감축

강 보 람 사무관
Ⓣ 044-200-2419 Ⓔ gelsomino@pmo.go.kr

1. 추진배경

규제비용총량제가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 기업과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기존규제 감축은 현재 수준의 규제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가치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시스템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기존규제를 일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여 기업과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2. 기존규제 감축목표 설정

등록규제수는 규제등록제도 시행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1998년 1만여건에서 출발하여 2013년 1만 5천여건 수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규제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2014년 내에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제의 10%를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1998년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폐지한 바 있으며 50%에 달하는 감축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당시와 같은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제시스템개혁을 추진하는 단계이며, 핵심규제 개선 등의 질적 감축도 병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축목표를 10%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2014년에는 동 감축목표율에 따라 감축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 이후부터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3. 기존규제 감축 추진

기존규제 감축목표율은 '경제활동 관련 규제의 10%'를 기준으로 하되, 부처별 특성을 감안한 권장목표율이 제시되었다. 경제활동 관련 규제가 15건 미만인 기관은 제외하고 경제부처 12%, 사회부처 8%, 질서·안보부처 4%의 목표율을 참고하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대상 규제를 선정하였다.

그룹별 권장목표율

분 류	해당 부처	권장목표율
경제 부처 (11개)	기재부,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공정위, 중기청, 특허청, 관세청	△12%
사회 부처 (11개)	교육부,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식약처, 방통위, 산림청, 문화재청	△ 8%
질서·안보 부처 (7개)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원안위, 보훈처, 안전처, 경찰청,	△ 4%

* 국세청, 농진청, 외교부는 자율부처(경제활동 관련 규제가 15건 미만인 기관)

** 안전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재청과 해경청 과제 인수

경제활동 관련 규제는 기업의 경영활동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반경제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각 부처에서는 국민·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였으며, 투자활성화, 기업부담 경감, 행정부담 완화, 국민불편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규제감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경쟁제한적 규제 △국제기준에 동떨어진 규제 △과도한 선택권 제한 규제 △불필요한 서식·자료제출 규제 등을 선정하여 감축을 추진하였으며,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부처가 제출한 감축대상 규제를 검토, 부처와 협의하여 단순 조문정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감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규제가 존속되는 것이 국민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감축과제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이후 국무회의 보고, 규제개혁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으며, 추가 과제도 발굴하였다. 또한 시행령 일괄개정, 입법절차 단축(Fast-Track) 등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규제감축을 위한 법령 개정작업을 뒷받침하였다.

4. 기존규제 감축 결과

경제활동 관련 규제 9,876건 중 32개 부처소관 995건의 규제폐지를 완료하였다. 법률의 경우 정부내 조치가 완료된 시점인 국회제출을 기준으로 하며, 시행령 이하 법령은 공포·시행을 기준으로 하였다.

주요 감축규제

연번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국토교통부
2	중복인증제도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3	먹는 샘물 증명표지 의무제도 폐지	환 경 부
4	중학교 입학시기 제한 폐지	교 육 부
5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의무 폐지	미래창조과학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재건축 조합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환수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폐지하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시장 과열기('06년)에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점을 감안하여, 투기억제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비상조치적인 제도였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있으며 가격 급등이나 투기 발생의 가능성이 낮으므로, 과도한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폐지하게 되었다

산업부 소관의 인증제도 중 중복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현재 기술혁신·산업진흥 등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정부인증제도를 다수 운영중이나, 당초 목적과 달리 중복인증·시장진입장벽으로 기업부담 초래 및 소비자 혼란 등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법, 이러닝법, 지능형로봇법, 부품소재법 등 6개 법률상의 12개 인증제도를 검토하여 3개를 폐지하고 3개는 KS로 통합하였으며, 6개는 민간 소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제출함으로써 다수의 인증획득에 소요되던 기업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먹는 샘물 증명표지 의무제도를 폐지하였다. 2008년 3월에 이미 부담금 부과기준이 판매량 기준에서 취수량 기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증명표지 제도*를 유지하여 먹는샘물 업체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폐지토록 하고,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표지 인쇄 비용을 절감하였다.

* 판매량을 파악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먹는샘물등의 병마개에 증명표지를 인쇄토록 함

중학교 입학시기를 학년초로부터 30일로 제한한 규제를 폐지하였다.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므로 학년초로부터 30일이 경과하고 입학해도 출석 최소기준일수를 확보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수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입학시기 제한은 과도한 규제로 보아 폐지토록 하였으며, 당해 학년이 아닌 그 다음 학년 입학으로 발생하는 학업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또래연령 학생과 같은 학년에서의 교육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의무를 폐지하였다. 이는 최초 등록이후 매 3년마다 최초 등록 신고시와 동일한 서류를 광역지자체에 신고토록 하여 정상적이고 건실한 공사업체를 보호하고자 2004년에 도입한 제도였다. 그러나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고 공사업을 적법하게 경영하는 공사업체도 예외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경제적·행정적 비용만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였다.

제6절
기존규제 감축 ❷ 일몰 설정

이 상 민 사무관
T 044-200-2415 E lsmin79@pmo.go.kr

1. 규제 일몰제의 개요

가. 개념 및 근거법령

규제 일몰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각의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 및 존속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현재 일몰제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일몰기한 도래 시 해당규제가 자동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존속기한 설정)이며, 다른 하나는 일몰기한 도래 시 당해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규제의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재검토형 일몰(재검토기한 설정)로 현재 대부분의 일몰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서는 규제의 신설·강화 및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일몰을 설정하여 법령 등에 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나. 운영경과

규제 일몰제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효율적 규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1997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과 함께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운영 초기에는 재검토형 일몰에 대한 근거가 없고 적용대상이 신설·강화규제로 한정되는 등 실질적인 제도운영이

어려워 많은 규제가 일몰제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2009년과 2010년에는 등록규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1,602건(재검토형 1,522건, 효력상실형 80건)의 규제에 일몰을 설정했으며, 2013년에는 일몰이 도래한 816건의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존속여부를(규제폐지 26건, 일몰삭제 223건, 일몰연장 567건) 결정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013.8.17.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동안 관보게재를 통한 고시 형태로 운영되어온 재검토형 일몰규제 총 1,814건의 기한 및 내용을 법령에 명시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하였다.

2. 규제 일몰 설정 추진

가. 목표설정

전년까지의 사전 준비작업을 바탕으로 정부는 가급적 많은 규제에 일몰을 설정하여 시한부 규제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에 따라 2014년 모든 등록규제에 대하여 연내 30%, 2017년까지 50%를 일몰 목표로 정하고, 경제·사회·질서안보 등 그룹별 특수성을 감안한 권장목표율을 제시했다. 권장목표율은 경제부처 33%, 사회부처 27%, 질서·안보부처 20%이며, 경제활동 관련 등록규제가 15건 미만인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이를 기준으로 각각 자율적 일몰설정 목표를 설정하여 부처별 설정목표와 현재 설정 수준과의 차이만큼 일몰을 추가 설정하였다.

일몰 설정 적용 기준(예시)

구 분(규제 유형)	일몰유형
1)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규제	효력상실형
2) 특별한 시장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져 추후 폐지 필요성이 높은 규제	
3) 선진국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4) 행정여건에 맞지 않거나 규제의 준수도가 저조한 규제	
5) 특정 위기상황, 공공적 압력으로 서둘러 도입된 규제	
6) 정보 등이 불완전하나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된 규제	
7) 신기술 관련 규제,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규제	재검토형
8) 통계치, 사회적 인식 등 가변적 판단기준을 근거로 한 규제	
9) 행정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한 행정적 규제	

나. 추진결과

2013년 말 당시 등록규제 15,265건의 약 15.2%(2,316건)에 대하여 일몰이 기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중 효력상실형 일몰은 57건, 재검토형 일몰은 2,259건이었다.

이 수치는 2014년 정부가 기존규제 일몰설정 추진을 통해 12월말 기준 2,451건(효력상실형 일몰 13건, 재검토형 일몰 2,438건)의 등록규제에 대하여 추가 일몰설정을 완료함에 따라 2014년 일몰 목표인 30%를 넘어 31.2%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완료여부는 법률의 경우 정부내 조치가 완료된 시점인 국회제출을 기준으로 하며, 시행령 이하 법령은 공포·시행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룹별 권장목표율 및 일몰설정률(2014년 말 기준)

분 류	해당 부처	권장목표율	실제 일몰 설정률
경제 부처 (11개)	기재부,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공정위, 중기청, 특허청, 관세청	33%	34.0%
사회 부처 (11개)	교육부,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식약처, 방통위, 산림청, 문화재청	27%	29.2%
질서·안보 부처 (7개)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원안위, 보훈처, 안전처, 경찰청,	20%	20.4%

* 국세청, 농진청, 외교부는 자율부처(경제활동 관련 규제가 15건 미만인 기관)

** 안전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재청과 해경청 과제 인수

3. 향후계획

향후 정부는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향한 규제품질개선책의 일환으로 기존규제에의 일몰설정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특히 2015년도부터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부처별 자율목표를 설정하여 일몰 설정을 추진할 것이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규제 심사 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몰을 설정하여 법령 등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노후된 규제의 주기적 재검토를 통한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6절
기존규제 감축 ❸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개선

이 상 민 사무관
T 044-200-2415 E lsmin79@pmo.go.kr

1.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개요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극대화하는, 즉 국민 중심의 규제방식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은 기업의 창의 및 자율성 향상, 기술과 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으로 이어져,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을 야기하는 토대가 된다.

이는 '원칙금지·예외허용'방식의 포지티브 방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금지되지 않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라는 법언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준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구분	포지티브 규제방식	네거티브 규제방식
특징	열거된 것만 제한적 허용	열거된 금지사항 외에 모두 허용
예시	예)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예)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다.

2. 추진실적

가. 목표설정

국무조정실은 전체 등록규제 15,265건(2013년말 기준)을 원점에서 검토한 뒤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또는 유사한 수준의 규제완화를 유도하였다.

특히 新기술·新시장·新산업 및 투자저해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다만, 안전·환경·국방 등 공익적·非시장적 규제의 경우 일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규제되어야 할 부분이 규제되어지지 않는 규제의 역설(Paradoxes of Regulation)이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였다.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유형(예시)

구 분 (전환 유형)
1) 진입규제 방식 변경
2) 영업활동 규제 수준의 완화
3) 사전관리 방식의 사후관리로의 전환

* 단, 안전·환경·국방 등 공익적 규제는 선별 적용

나. 추진결과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등록규제 15,265건 중 28개 부처소관 804건의 규제개선 작업을 완료했으며, 그 중 27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한 것이었고, 나머지 777건의 경우는 네거티브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완화 조치를 완료한 과제였다. 완료여부는 법률의 경우 정부내 조치가 완료된 시점인 국회제출을 기준으로, 시행령 이하 법령은 공포·시행을 기준으로 하였다.

개선과제 중 파급효과 및 체감도가 큰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네거티브 전환사례

연번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1	국가산업단지내 입주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	국토교통부
2	산업기술단지 내 건물·시설 입주제한 네거티브 방식 전환	산업자원부
3	선박수리 허가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	해양수산부

기존에는 개발계획 수립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유치업종을 계획하고 명시함으로써 입주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으나, 개정 이후 기존방식 외에 입주제한업종을 명시함과 동시에 제한업종 외에는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계획 방식을 선택 또는 혼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산단 내 입주 수요나 업종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산업기술단지 내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규정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택하고 있었으나, 개정 이후 법령상 유흥시설(식품위생법), 웨딩홀, 쇼핑몰, 기타 소관부처 장관이 고시하는 건물 및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물 및 시설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기본틀을 전환함으로써,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사업 진입의 자유를 확대하여 창조적인 산업기술단지 운영이 기대되고 있다.

선박수리허가 신청이 들어온 경우, 화재·폭발 위험성있는 방식, 수리작업 자격 부적절, 인근 선박 및 항만시설 안전에 지장 초래 우려 존재, 인화성 물질 등이 인근구역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 안전과 밀접한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였다.

3. 향후계획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단순한 법형식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 규제는 실질적인 금지사항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포지티브 방식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된다.

2015년에는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 제한 행정규제를 법령 등에 규정하거나 기존규제를 정비하는 경우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규제에 대하여 부처별 자율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및 그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완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7절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

이 상 민 사무관
T 02-6050-3393 E my177117@pmo.go.kr

1.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

가. 개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과 소상공인 및 일반국민의 경제 활동에서 규제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왔다.

현장간담회, 홈페이지 건의,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조정을 거쳐 손톱 밑 가시로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부처의 중장기검토 과제와 수용곤란 과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유사한 산업분야 또는 제도 내 연관성이 높은 규제인 넝쿨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규제개선의 성과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아울러,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그 진행결과를 건의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규제개선이 완료된 주요 손톱 밑 가시 과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 보고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수시로 발표하고 있으며,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과제 이행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적극 보완 및 개선해 나가고 있다.

나. 손톱 밑 가시 개선 실적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출범 이후('13.9~'14.12) 총 3,529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2,264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이중 755건(33.3%)을 개선하였다.

분야별로는 영업 99건(13.1%), 자금·금융 96건(12.7%), 재정·세제 75건(9.9%), 기술·인증 62건(8.2%), 판로·조달 59건(7.8%), 환경 57건(7.5%) 등이다.

계	일반민원 (이첩)	부처 협의중	처 리 결 과				
			소계	수 용	기시행	중장기검토	불수용
3,529	983	282	2,264	352	403	323	1,186
			100.0%	15.5%	17.8%	14.3%	52.4%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영업 99건(13.1%), 자금·금융 96건(12.7%), 재정·세제 75건(9.9%), 기술·인증 62건(8.2%), 판로·조달 59건(7.8%), 환경 57건(7.5%) 등이다.

계	영업	자금·금융	재정·세제	기술 인증	판로 조달	환경	위생·안전	공장 입지	인력	국민 불편	대·중소상생	교육 의무	창업	기타
755	99	96	75	62	59	57	50	47	45	43	15	12	7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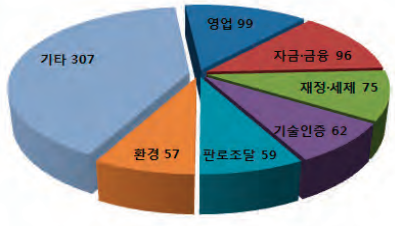

부처별로는 환경부가 81건으로 가장 많고, 금융위 77건, 국토부 74건, 고용부 68건, 중기청 59건, 산업부 56건 순으로 개선하였다.

계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산업부	식약처	중기청	환경부	기타
755	68	74	77	56	51	59	81	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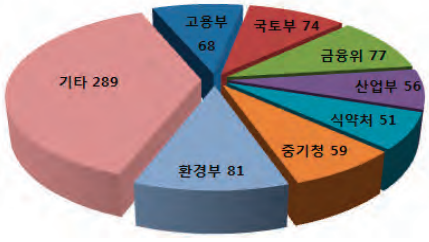

다. 2014년 분기별 주요 개선 사례

분기별	주요 개선 사례
1분기	• 전통시장 주변 주차 확대 및 주정차 단속 완화(1월) • 뿌리산업의 외국인근로자 20%추가 고용 허용(1월) • 공공기관 용역 수행 컨텐츠 저작권의 합리적 배분(1월) • 보험사의 비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채권 매입 허용(1월) • 우체국쇼핑몰 공급권의 제3자 양도 허용(1월) • 우수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2월) •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과시 합산배제 기간 연장(2월) • 산업단지 내 분양최소면적(1,000평 이상) 적용 관행 개선(2월) • 중소기업의 특허 연차수수료 부담 완화(3월) • 임대전용산업단지 실수요자의 입주기회 확대(3월)
2분기	• 지구단위계획구역 연계 건축 허용(4월) • 기존 입주 사업장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완화(4월) • 상호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받던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4월) •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4월) • 뷔페음식점, 5km 밖 제과점 빵도 구입·판매 가능(5월) •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5월) • 주유소 부대시설에 허용되는 점포 확대로 주유업계 활성화(6월) •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무료 발급(6월) • 수출용 목재팔레트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및 수출실적 인정(6월)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일원화(6월, 10월)
3분기	• 신의료기기 심의기간 단축으로 의료기술 발전 촉진(7월) • 수출용 치아미백제의 과산화수소 함유량, 수입국 기준 적용(7월) • 굴 껍질, 매립지 성토재로 재활용(7월) •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차량의 도로운행 제한적 허용(7월) • 푸드트럭 이용 식품판매 허용(8월)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 유치 의무 완화(8월) • 스마트 의료기기, 의료기기 신고 제외(8월) • 미생물제조 업종의 농공단지 입주 가능(9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인허가 비용·기간 단축(9월) • 사업장내 초대형 문 수동개폐 조치의무 개선(9월)
4분기	• 떡 등 즉석제조식품 배달판매 허용(10월) • 개별포장 안 해도 생닭 판매 가능(10월) •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증축 허용 및 건폐율 완화(10월) •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용 수소자동차 충전소 허용(10월) • 공장 등 기숙사 내 독립주방 설치 허용(11월) •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생산 허용(11월) • 약국 외에서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구입 가능(11월) • 계획관리지역 공장 부지면적 하한(1만㎡) 폐지(11월) • 녹지·관리지역 내 입주한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12월) •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12월)

라. 손톱 밑 가시 주요 개선 사례(10選)

(1) 떡, 김치 등 즉석제조가공식품의 배달 판매 허용

그동안 업소에서 덜어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15개 종류의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배달과정에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업장 밖에선 판매할 수 없었지만, 올해 5월부터 규제가 풀리면서 영업자나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14.5.9,「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공포 및 시행)

그런데 여전히 허점이 남아있었다. 실제 배달 현장에서 영업자나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가 더 많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위법 상태가 지속된 셈이다.

이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판매 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결국 택배나 퀵서비스 등 제3자를 통한 택배가 가능토록 개선하였다.('14.10.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공포 및 시행)

개선 전	개선 후
• 전통시장 떡, 빵, 김치, 젓갈 등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업소 내에서만 판매	• 즉석식품을 인터넷으로 주문 받아 퀵서비스나 택배로 배달판매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식약처, '14.5월, '14.10월)

(2)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토지에 동일건물 연계건축 허용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 구역(지구단위계획)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서로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걸쳐 하나의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계획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추진단은 2014년 1월 기업현장을 찾아 산업단지와 인근 택지개발지구에 걸쳐진 공장용지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서로 다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부처에 개선을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4월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도시계획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 구역 간 연계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관련 법령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기존의 건축물과 용도가 같다면 구역을 넘더라도 건축을 허용한 것이다.

개선 전	개선 후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이 구역 밖에 맞닿은 토지까지 걸쳐 있어선 안 됨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구역 밖에 맞닿은 토지의 소유권과 건축 용도가 같으면 구역을 넘어서는 동일 건축물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유권해석(국토교통부, '14.4월)

(3)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생산 허용

그동안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 없는 설비는 공장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서 탄산수를 생산하려면 먹는샘물 제조공장 외에 별도의 공장을 세워야 했지만, 규제가 풀리면서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가스 주입기만 추가로 설치하면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먹는샘물 공장의 탄산수 생산 허용은 추진단이 발굴한 '손톱 밑 가시뽑기'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14년 8월 정홍원 국무총리가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먹는샘물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환경부가 11월 28일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하면서 해결되었다.

현재 국내 탄산수 시장은 195억원 규모('13년 기준)로 해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음료업계는 이제 막 탄산수 시장이 기지개를 편 시점에서 발 빠르게 규제가 완화된 것에 대해 반기고 있다.

개선 전	개선 후
• 먹는샘물 공장에는 먹는샘물 외에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탄산수 생산이 불가능	•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탄산수 생산 가능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환경부, '14.11월)

(4) 우수창업자의 연대보증 부담 완화

보증이라는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까운 친인척간에도 '보증은 절대 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성행했다. 이에 우수한 기술력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이들이 사업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력이 있는 창업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2월부터 일정 수준 이상 기술력과 개인요건을 갖춘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이 면제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전에 창업에 실패한 기업인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되지 않고 사장되는 상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2월부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제도는 2014년 2월 이후 설립된 법인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그 창업자가 실제경영자인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번 연대보증인제도 개선은 창업기업이 자금지원 신청 시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이전 창업에 실패한 사업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창업의 안전망 확보 및 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도덕적 해이 및 보증기관 건전성 훼손방지를 위하여 대상기업은 투명경영 이행약정을 해당 기관과 체결해야 하고, 이후 대상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대상 기업이 투명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책임이 부과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적용대상 기업이 2014년 2월 이후 설립된 법인창업기업으로 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까지 99건, 약 85억원 상당의 연대보증이 면제되었다.

개선 전	개선 후
관련제도 부재	• 우수기술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 보증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갖춘 경우 연대보증 부담 5년간 면제 – 대출금액 중 신·기보가 보증하지 않는 부분(15%)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자율협약을 통해 연대보증 면제 지원 •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도입(금융위, '14.2월)

(5) 기존공장과 접한 농업진흥지역에서 공장증설 허용

경기도 고양시의 냉동·냉장 쇼케이스 부품 제조업체인 S사는 2012년부터 세계 최초로 '상품진열 무동력 자동정열대'를 제작하여 미국과 유럽, 일본, 러시아 등지로 매년 225만불 가량 수출해왔다. 그러다가 2014년 3월에는 영국 테스코사와 157억원의 수출계약을 비롯하여 미국과 유럽지역 회사로부터 232억원의 대규모 납품을 요청받았지만 결국 포기해야 했다. 이런 경우를 예상하여 이전부터 공장증설을 추진했지만 관련 규제에 막히는 바람에 물량 납품에 도저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3천㎡ 이내 범위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풀어놨지만 S사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에 접한 공장은 정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제한(20%)으로 증설이 불가능했다.

2014년 8월 국무총리가 주재한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본 과제가 논의되었고, 당시 국무총리는 업체의 사정을 듣고 정부에 전향적인 방안마련을 지시하였다.

추진단은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바로 공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제품의 생산과정을 들여다보니 매연·악취 등 공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공장을 나와 주변을 둘러보니 농업진흥지역인 공장 앞마당에는 공장증설이 안되어 창고로 쓰이는 가설건축물이 있었다.

이후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과 연접한 농지에 대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였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경기도 고양시 등 4개 시군 농림지역에서만 5개 기업으로부터 94억원 규모의 투자와 14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파악되었고, 전국적으로는 70여개가 넘는 중소기업들도 규제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선 전	개선 후
• 공장이 연접한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 증설을 제한(건폐율 20%)	• 2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과 연접한 농업진흥지역의 건폐율 완화(20%→4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국토교통부, '14.12월)

(6) 신의료기기 심의기간 단축

한 의료기기업체는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해도 오랜 기간 제품을 출시하지 못했다. 새로운 의료기기를 출시하려면 허가절차와 평가절차 등을 받느라 20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제품 출시가 늦어져 해외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 시장을 넘겨주는 사례가 많았다.

R사는 실명의 원인이 되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을 획기적으로 치료하는 안과용 레이저수술기를 개발하여 '13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 허가를 받았다. 위 질환을 앓는 국내 환자는 6만3,000명에 이르고,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임상시험 결과 이 수술로 84%의 환자가 시력을 회복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기로 국내 환자가 치료를 받기까지는 1년 반에 가까운 시간이 걸려야 했다.

추진단은 '14년 2월 강원지역 한 의료기기 업체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당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14년 7월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등재심사'를 순차적으로 거친 제품만 출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가 완료되기 전에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면 총 소요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 전	개선 후
•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허가(식약처) → 신의료기술평가(보건의료연구원) → 요양급여 결정(심평원)의 3단계 절차가 별도 진행돼 약 20개월 이상 소요	•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동시 진행(3~12개월 단축) •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보건복지부, '14.7월)

(7) 공장 등 기숙사 내 독립주방 설치 허용

그동안 공장 기숙사는 종업원의 숙소 개념으로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어서 가족생활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지방 취업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추진단은 이러한 건의사항을 접수한 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였다, 최근 기숙사에서도 가족 중심의 생활이 요구되고 주변에 식당과 같은 편의시설이 많지 않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2014년 11월「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체 세대의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기숙사에도 독립 주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개선 전	개선 후
• 공장 등 기숙사 내 독립주방 설치 불허	• 공장 등 기숙사 내 전체 세대수의 50%미만까지 독립주방 설치 허용 • 「건축법 시행령」 개정(국토교통부, '14.11월)

(8)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일원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고용변동신고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했었다. 추진단은 이러한 현장 건의를 받아 고용변동신고는 2014년 6월부터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어느 한 곳에만 신고해도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EPS 홈페이지(eps.go.kr)와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ikorea.go.kr)에 배너를 게재해 더 많은 국민들이 개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 고용변동 신고건수 156,154건 가운데 방문(오프라인) 신고가 147,418건(94%)을 차지했는데, 이에 따르면 금번 시스템 개선으로 약 14만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고용변동신고보다 더 복잡한 고용개시신고도 한곳으로 일원화 해 달라는 추가 건의가 있었다. 그동안 방문취업 비자 등을 소지한 동포근로자가 취업할 경우, 동포근로자는 취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사업주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이중으로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2014년 10월부터 동포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14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고용센터 중 한 기관만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도록 개선되었고, 온라인 신고도 함께 일원화되었다.

개선 전	개선 후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개시신고를, 법무부에 취업개시신고를 각각 해야 함 – 근로개시신고 10일 이내, 취업개시신고 14일 이내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전산시스템 연계로 한 곳에서만 신고하면 되도록 절차 간소화 •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부, '14.9월), 시스템 개편(고용부, 법무부, '14.6월, '14.10월)

(9) 초대형 문 수동개폐 의무 개선

최근 비행장이나 조선소, 그 밖에 대규모 작업이 이루어지는 산업현장에서 빅도어를 볼 수 있는데, 빅도어는 폭이 10미터부터 50미터까지 제작되고 있는 초대형 자동문으로서 동력으로 문을 열고 닫는 구조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해왔다. 공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화재나 정전 발생 등의 요인으로 빅도어 안에 갇힐 경우 신속히 구조하기 위해서이다.

문제는 수십 톤에 이르는 빅도어를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추진단이 2014년 3월에 경남 거제도에 있는 한 조선소를 방문하였을 때, 기업 관계자는 "조선소와 같이 대규모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설치된 빅도어는 현실적으로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없어 자구책으로 빅도어에 별도의 문을 설치하고 있다"며 "기업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고용노동부 감독 시 지적을 받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애로를 호소하였다.

추진단은 동 사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와 즉시 협의에 들어갔고, 결국 2014년 9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비상시 탈출 가능한 작은 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수동개폐를 위한 별도조치 의무를 면제토록 개선하였다.

개선 전	개선 후
• 동력으로 작동되는 초대형문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설치	•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소형문을 설치해 근로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제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고용부, '14.9월)

(10) 미용사에서 분리한 메이크업 자격시험 신설

추진단은 그동안 뷰티산업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건의를 수용하여 먼저 네일 분야를 일반 미용업에서 분리하여 미용사(네일) 기능사 자격종목을 2014년 7월에 신설하였고, 지난 11월 16일 첫 시험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메이크업 미용업은 여전히 일반 미용업에 포함되어 있었다. 추진단은 관련 건의를 접수한 후 업계의견 수렴 및 내부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한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2014년 10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미용업 분류에 미용업(화장·분장) 항목을 추가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메이크업을 미용 기능사 자격종목에서 따로 분리한 자격증이 신설되어 메이크업 시술 습득만으로 국가기술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과거 미용사란 큰 틀에 함께 들어갔던 업종들을 따로 분리하여 뷰티산업의 성장과 전문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개선 전	개선 후
• 메이크업은 미용사(일반) 기능사 자격종목에 포함 – 메이크업 시술을 위해서는 미용사(일반) 기능사 자격 필요	• 메이크업을 미용사(일반) 기능사 자격종목에서 분리해 미용사(메이크업) 기능사 자격종목 신설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보건복지부, '14.10월, '15.7월 시행)

2.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성 하 영 사무관
T 02-6050-3364 E shy1673@pmo.go.kr

가. 총괄

추진단은 규제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 수요자중심에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일자리확대,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신사업 창출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비롯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손톱 밑 가시 및 국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기업·민생 현장을 찾아가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하였다. 이를 위해 다각적인 방식으로 규제애로를 청취하였다.

먼저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인천 등 대도시권을 비롯하여 화성, 안산, 구미, 춘천, 거제, 제주, 용인, 진주, 강릉, 전주, 천안, 여수 등 전국 30개 지역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업종별 협회와 개별기업이 추진단을 방문하는 형식인 업종별간담회(마중톡Talk)를 개최하여 규제애로를 청취하였다. 특히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 경영여건이 어려운 업종, 성장기반 확충이 필요한 업종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다. 자동차, 조선, 금융, 폐기물, 인삼, 풍력, 건설, 관광, 석유화학, 정보통신 등 다양한 업종 관계자들과 68회에 걸쳐 마중톡Talk을 실시하였다.

나. 국무총리 현장간담회 개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중에서 국무총리가 2회에 걸쳐 현장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청취하였고 이중 불합리한 규제가 상당수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1) 경기용인 간담회('14. 8월)

8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용인시 (주)제일약품에서 지역 기업인들과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각 부처 차관과

경기도 행정부지사, 용인시장 및 추진단 관계자를 비롯하여 제일약품(용인), 세대산전(주)(고양), (주)신승(수원), 리지디스크(서울 송파) 등 9곳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 유치의무 부담 완화, 먹는 샘물 공장에서의 탄산수 제조 허용, 관광숙박시설 확충 시 경사도 기준 완화, 기존 공장에 인접한 농업진흥지역 건폐율 완화, 자동차 휠 광고 허용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정 총리는 이날 현장의 다양한 건의와 고충을 들은 뒤 해결책 마련을 즉각 지시하였고, 추진단이 관련 부처와 협의한 결과 7건 중 외국인 투자금액 유치의무 부담 완화, 먹는 샘물 공장에서의 탄산수 제조 허용, 기존 공장에 인접한 농업진흥지역 건폐율 완화 등 4건이 개선되었다. 3건은 관련 부처에서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통해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일약품의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하는 기회가 주어져 관심을 모았다.

(2)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14. 10월)

10월 2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내 외투기업 대표를 초청해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우디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인텔, BNP파리바, 알스톰 등 25개사 대표가 참석하였고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관계자가 함께했다.

이날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 25곳을 대표해 틸로 헬터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은 '2013년 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통상임금의 정확한 범위를 입법화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티브 더크워스 ERM그룹 한국지사장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투자도 늘고 고용도 증가할 것"이라며 32개로 한정된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

외투기업들은 이 밖에 △외투기업에 대한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제외 △외투기업의 중소기업 판단 기준 완화 △금융정보 해외 이전 규정 구체화 △수입 화장품 평균원가 공개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날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논의한 결과 현장에서 건의된 15건 중 외투기업의 중소기업 판단 기준 완화, 금융정보 해외 이전 규정 구체화 등 10건이 개선되었다.

다.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14. 10월 ~ 11월)

(1) 추진배경

추진단은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규제개혁 랩핑버스를 제작하여 기업·민생 현장을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투자·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과 기업에게 정부가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 노력과 성과를 알리고, 지자체 등 일선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간담회 개최실적과 내용

2014년 10월 8일 판교 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11월 28일 제주지역까지 총 17개 지역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기간 추진단이 개최한 현장 간담회에는 지역 기업·협회·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7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일자	간담회명	참가 인원	과제 건수	일자	간담회명	참가 인원	과제 건수
10. 8	성남 판교IT·벤쳐산업 간담회	50	1	11. 5	여수 석유화학산업 간담회	40	14
10. 10	경기지역 전통시장 간담회	29	26	11. 7	충북지역 바이오산업 간담회	19	18
10. 16	에너지산업 간담회	18	14	11. 11	광주 광(光)산업 간담회	70	12
10. 22	울산 선박, 중공업 간담회	40	13	11. 13	대전지역 벤처산업 간담회	19	12
10. 23	강원지역 산업 간담회	50	13	11. 18	창원 기계산업 간담회	40	10
10. 24	전북지역 식품산업 간담회	17	13	11. 19	대구·경북 기계산업 등 간담회	90	16
10. 28	구미 전자클러스터 간담회	30	10	11. 26	인천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 간담회	70	16
10. 30	부산 해양비지니스산업 간담회	100	20	11. 28	제주지역 산업 간담회	24	8
10. 31	천안지역 농기계산업 등 간담회	24	14	소 계		730	230

현장간담회는 '테마간담회'와 '솔(직)담(백)톡Talk'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테마간담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거나 전통시장, 축제, 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하나의 테마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기업·단체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솔(직)담(백)톡Talk'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기업과 국민의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듣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약 2개월에 걸쳐 17회의 간담회를 통해 230건의 다양한 현장애로를 발굴하였다. 이들 건의과제는 내부 검토를 거쳐 관련 부처에 전달하였고, 이후 부처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보다 심층적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처와 기업인 간의 실무협의를 통해 최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현장간담회 주요 건의과제

-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발전설비 설치(대구)
- 천일염 생산시설의 농사용 전력요금 적용(광주)
- 수출 확대를 위한 '먹는 해양심층수'유통기한 연장승인 서류 완화(강릉)
-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기업부설연구소 안전점검 완화(부산)
- 개발제한구역 내 가압설비 설치 허용(서울)
- 이륜자동차(4륜형 이륜자동차) 인증 완화(울산)
- 일반식품 품목신고 온라인 보고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전주)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및 자가 측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여수)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설비 기준가격 산정주기 개선(서울)
- 영세율 적용 농기계 판매 관련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천안)
- 가구판매점에 대한 상점가 지정(2,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요건 조정(수원)
-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감면 제도 연장(광주) 등

추진단은 규제개혁 랩핑버스와 지역 교통방송 활용, 홍보부스 설치와 같은 새로운 홍보 방식을 통해 대국민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규제개혁 랩핑버스를 간담회 행사장 근처에 배치하여 홍보와 함께 누구나 현장에서 건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사 5일전부터는 TBN한국교통방송을 통해 각 해당 지역인들에게 간담회 행사를 안내하고, 생방송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 규제개혁 진행상황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면서 건의과제 청취와 동시에 홍보동영상 상영 및 홍보 리플렛 배포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간담회와 더불어 해당 지역의 지자체 워크숍을 병행하여 추진단과 지방정부의 협업을 강화하여 규제개선 성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지자체 공무원은 규제 집행과정에서 국민과의 최접점에 있어 지자체 공무원과 해당 지역의 규제애로를 공유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규제개혁 관심을 독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지자체 규제개혁 워크숍은 16회 개최되어 총 2,325명(평균 145명)의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3) 시사점 및 향후계획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하여 규제애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듣는 정부', '소통하는 정부'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수용 가능한 과제를 사전에 선정하여 청취하는 형식이 아닌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솔직하게 논의함으로써 이전의 간담회와 차별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역별 특성 및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주제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규제애로를 심도 있게 파악한 것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룬 성과 중의 하나였다.

앞으로도 이번 간담회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과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현장 밀착형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역단위의 지역간담회 외에 시군지역 간담회 개최, 업종별협회, 지역별 기업협의회 등을 활용하는 업종별 간담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촉진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제8절
규제정보화 추진

이 용 하 사무관
T 044-200-2406 E yujin700@pmo.go.kr

1. 추진배경 및 경과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핵심 아젠다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국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창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 지원시스템으로는 국민과의 소통기능에 한계가 있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규제개혁을 이끌어가는 국민참여형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통하였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규제개혁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정보시스템 구축이력

- '08년 : 규제개혁차관회의 시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정보화 시스템 구축 결정
  규제정보화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09년 : (1단계) ▸규제심사지원시스템 ▸규제등록관리시스템 ▸규제과제관리시스템 구축
- '10년 : (2단계) ▸부처자체심사시스템 ▸규제건의관리시스템 구축
- '11년 : (3단계) ▸규제사무에 대한 업종별·활동별·분야별 규제정보서비스 실시
- '12년 : (4단계) ▸규제통합정보시스템(rims.go.kr) 구축
- '13년 : ▸행정조사시스템을 구축 ▸기술규제 정보시스템을 구축
- '14년 : ▸규제정보포털(better.go.kr) 개통

2. 규제정보포털의 주요 기능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은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개선해 가는 규제개혁 쌍방향 소통창구로, 규제건의 및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보완을 추진하는 국민 맞춤형 규제개혁 One-stop 서비스 제공 포털 시스템이다.

규제정보포털은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에서 이용하는 내부시스템인 규제정보화시스템(ris.go.kr)의 규제개혁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의 건의사항을 접수·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규제개혁신문고, 대통령주재회의 건의사항, 규제기요틴, 손톱밑 가시 안건을 등 규제개혁 건의안건, 규제현황, 법령관리 등 다양한 규제정보 제공·건의, 홍보영상, 웹툰 등을 통한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규제정보포털 화면

3. '14년 규제정보화 중점추진 내용

가. 규제정보 포털 서비스 개편

〈정부중심으로 운영되던 규제정보포털을 개편, '수요자' 즉, 국민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전환〉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개선해 가는 규제개혁 쌍방향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규제건의 및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실시간 공개, 이를 기반으로 기관별 규제등록정보(14,928건), 손톱 밑 가시(288건), 대통령 주재회의건의(105건), 규제기요틴(114건), 규제개혁 신문고(23,338건) 등의 규제개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보완을 추진하는 수요자 맞춤형 규제정보를 One-stop 서비스 하는 규제정보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어떤 규제가 신설되고 어떤 규제가 완화되고 개선되었는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키워드 검색만으로 원하는 규제정보를 찾을 수 있는 개방형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안심하고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을 폐지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 하는 등 사용자 메뉴체계를 개편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강화하였다.

* 규제정보포털 개선내용은 1,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직접 시연('14.3.20, 9.3)

나. 규제관련 주요포털 연계를 통한 통합 규제정보 제공

기재부, 법제처, 중소기업 옴부즈만, 대한상공회의소 등 규제개혁 유관기관별 주요 포털과의 연계를 통해 규제관련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연계된 주요 정보

- ▸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정보지도 ▸ 기획재정부 경제활성화법안,
- ▸ 법제처 의원입법 규제신설 정보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체감도, 경제활동 친화성 정보

다. 규제정보포털 홍보기능 강화

규제정보포털을 통하여 규제개선 사례 전파 및 부처연계 공동 홍보기능을 강화하였다. 우선, 규제개선 사례를 동영상, 포토툰, 웹툰 등으로 제작·홍보, 각 부처 포털과 연계하여 규제개선 사례의 공동 홍보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아울러, 규제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VIP 주재회의 건의는 개선완료시 즉시 규제정보 포털에 POP-UP 되어 실시간 홍보되도록 하였다.

라. 규제 건의과제 관리 기능 개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건의 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14년에 신설된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견 접수-답변, 소명 등 국민 참여확대와 속도감 있는 규제민원 건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대통령 주재회의' 현장건의, 손톱 밑 가시, 규제기요틴 등의 추진상황을 실시간 관리·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규제개혁 건의에 대한 처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규제건의에 대한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규제개혁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기능도 구현 하였다.

4. 향후계획

규제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를 통해 규제 등록체계 개편, 규제심사 개선,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 정보 제공 등 규제개혁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 및 포털과 지속 연계를 통하여 규제개혁의 효과적 지원 및 국민참여형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되도록 추진 예정이다.

제9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조 해 린 사무관
T 044-200-2431 E chohaelini@pmo.go.kr

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배경

가. 입법연혁

행정규제기본법은 1997년 8월 22일 제정된 이후 타법 개정을 제외하고 3차례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 2005년 법률 제7797호는 규제사무목록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규제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를 강화하였다. 2010년 법률 제9965호는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2013년 법률 제11935호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규제가 주기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추진

정부는 그간 기업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고 분야별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각 부처의 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기업의 규제애로 호소도 계속되었다. 이에 규제개선의 기본 틀을 전면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산업계·학계의 전문가로부터 제기되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지난 1997년 제정된 이후 실질적인 개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그간 변화된 규제환경과 규제개혁의 이념·제도상 발전을 반영하여 규제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2. 개정 추진경과

2013년 12월 산업계·학계·정부 전문가가 모여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연구원은 2014년 3월부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국무조정실은 2014년 6월 17일부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입법예고하였고, 7월 16일 학계·언론·국회·경제단체·시민단체 등 관련 인사를 초청하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4년 8월 14일 차관회의 및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현재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3.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 개정

법 제정 당시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의 영향 아래 규제완화(Deregulation)가 중심이었다. 이후 전세계적으로 규제개혁의 방향이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완화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를 설계하며 규제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중시하는 규제 품질제고 및 총체적 규제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목적조항도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 뿐 아니라 행정규제 품질 제고 및 행정규제의 통합적·신축적 관리로 확대하였다.

나. 규제비용 총량제

국민의 규제부담을 줄이고 규제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제순비용의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였다.

다. 규제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1) 행정규칙상 규제관리 엄격화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을 통한 행정기관의 자의적 규제(상위법령의 위임근거 미비, 위임범위 일탈, 포괄적 위임 등) 생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제사무의

범위를 축소하고(전문적·기술적 사항 및 경미한 사항 → 전문적·기술적 사항), 사전 행정예고 및 법제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2) 규제의 사후 평가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 및 규제정책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를 시행한 결과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 등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3) 규제정비의 요청

정부는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이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라. 국민의 생명·안전 규제 관리 강화

규제를 신설·강화함에 있어 특히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경우에는 규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규제의 원칙을 개정하여 동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생명·안전에 미비한 규제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부담 경감

과도하고 일률적인 규제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부담하는 지나친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바. 기타

그 밖에 △사업활동제한규제 등에 대해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모든 규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되 예외적으로 3년 이내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술 발전·융합,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의 탄력적 적용에 관한 조항을 두었다.

4. 국회 심의경과

가. 심의현황

정부 발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2014년 8월 27일 국회로 제출되어 8월 28일 정무위원회로 회부되었다. 11월 2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소위로 회부된 이후 법안소위에서 심의 중이다. 2015년 3월 1일 현재까지 3차례(2014년 12월 1일, 2015년 1월 6일 및 2015년 2월 23일) 논의되었다.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대두된 주요 쟁점은 규제비용 총량제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기능이다. 규제비용 총량제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제외 대상의 범위 축소 필요,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의 도입 곤란 우려, 입법권의 지나친 제한 등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정부 발의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으나 함께 심의 중인 의원입법과 관련하여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된 위원회가 정부입법과정에 참여하여 철회·개선 권고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지 혹은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권한을 강화하여야 하지 않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나.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비용 총량제 및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도입 등으로 규제개선의 방법을 전면 개편하고,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의 관리 및 규제 사후평가제 도입 등으로 규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규제 적용여부 신속회신, 규제의 탄력적용,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차등적용 및 연관규제의 통합관리 등으로 규제의 통합적·신축적 운영체제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규제비용 총량제의 경우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밖의 일부 사안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 관련 의원입법 발의

2015년 3월 1일 기준 정부 발의 개정안은 규제와 관련된 의원입법 6건과 함께 법안소위에서 심의되고 있다. 각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식 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상 규제법령에 대하여 법정심사기구 역할을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임의자문기구 기능을 하도록 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에 대한 자체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편향적 결정과 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 중 3명 이상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위촉한다.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기존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도 신설·강화되는 규제와 마찬가지로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3)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및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및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의 혁파를 실천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범위를 행정부, 국회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를 규제개선청구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 3명(부위원장 1인 포함)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규제개혁연구원을 설립한다.

(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독립규제기관의 성격을 가진 기관은 독자적으로 규제를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균형 잡힌 규제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 25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증원하여 규제개혁심사의 전문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5. 향후계획

행정규제기본법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의 규제부담을 줄이고 규제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제10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조 해 린 사무관
T 044-200-2431 E chohaelini@pmo.go.kr

1. 개 관

규제개혁 국제협력의 가장 큰 부분은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를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제도·정책·수단의 현황과 추진성과를 정확히 알리고 선진국의 규제개혁 논의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외에 APEC 경제위원회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기타 국제회의 참석과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경험전수 및 선진국 규제개혁 경험공유 등의 대외협력 업무가 있다.

OECD 회의와 관련하여 규제정책위원회('14.11월)에 참석하였으며 그 외에 APEC 경제위원회('14.8월), 세계은행 컨퍼런스(5.24), 한국행정연구원 국제학술세미나(11.11) 등에도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를 적극 소개하였다.

또한 규제개혁 관련 대외협력도 강화하여 몽골, 베트남, 태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경험을 전수하고, 영국, 일본을 방문하여 선진국의 규제개혁 정책을 연구하였다.

2. 국제회의 참석

가. OECD

(1) 제10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

(Regulatory Policy Committee, 2014년 4월 14일~15일, 프랑스 파리)

2014년 4월 14~15일 개최된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는 규제개혁 분야의 국제협력,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그간 작업성과, 향후 작업계획 및 러시아 OECD 가입심사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신규가입 대상국가에 대한 가입심사

– 러시아에 대한 가입심사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당분간 중단하기로 하였다. 콜롬비아 및 라트비아에 대한 가입심사에 참수할 예정이며 2015년 4월 가입검토회의 개최를 목표로 향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규제정책 전망(Outlook) 작성계획 보고

– 각국에서 진행되는 규제정책의 현황과 OECD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정리할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약 200~250 페이지의 분량으로 작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뒷부분에 각국의 규제정책 개요와 주요 데이터를 국가당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게재하고 4년마다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 규제순응비용 평가 가이던스 발간

– 사무국은 규제비용 특히 순응비용(Compliance Cost)의 세부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비용측정절차를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독일, 호주 등은 규제비용에 대한 평가작업 진행경험을 소개하며 규제관리에서 비용평가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회원국들은 이 보고서가 규제개혁 작업의 진행에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OECD Regulatory Compliance Cost Assessment Guidance(2014)

○ 규제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원탁회의 진행

– 국가간 규제의 다양성과 중복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규제대상자의 순응비용

증가와 규제효과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국제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관련 전문가를 초대해서 첫째, 무역원활화, 비관세무역방벽의 해소 등 무역정책의 관점에서 본 규제협력 필요성, 둘째, 호주-뉴질랜드, 북미, 남미 등 각 지역에서 진행 중인 협력 사례에 대한 소개, 셋째, 효과적인 규제분야 국제협력의 수단 및 체계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2) 제11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

(Regulatory Policy Committee, 2014년 11월 3~4일, 프랑스 파리)

2014년 11월 3~4일 개최된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는 국제 규제협력, 보다 나은 규제에 대한 각국 사례 발표, 규제정책 전망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국제 규제협력(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 사무국은 IRC의 메커니즘을 유형화하고 다양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IRC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책자로 발간*하였다. 전문가를 초대해서 규제협력의 한 수단인 상호승인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s)의 개념과 기대효과, 사례를 공유하였다. OECD 무역위원회 및 경쟁위원회가 참석하여 글로벌 무역,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였다.

  *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2013), IR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2014)

○ 더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에 관한 각국 사례 발표

- 호주는 최근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규제영향평가의 강화와 규제 담당자들 간의 의사교환 활성화를 특히 강조하였다. 일본은 2013년 총리자문기구로 설치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그간 성과와 향후 작업 계획을 소개하였다. 프랑스는 올랑드 대통령의 중점 추진사항인 정부규제 간소화(Simplification) 작업의 성과와 추진시스템 및 향후 진행방향을 설명하였다. EU는 새로 취임한 Junker 집행위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을 소개하면서 EU 자체는 물론 각 회원국의 규제개혁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OECD 규제정책 전망에 관한 보고서 초안 논의

- 사무국은 최근 회원국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세계 각국의 규제개혁 정책 현황과 주요이슈를 정리한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동 보고서에 관해

2015년 4월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2015년 여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 관련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규제정책의 동향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였다. 마틴 로지 교수(LSE)는 규제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인 조직 하에서 법적, 분석적, 조정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가운데 문제해결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안드레아 렌다 박사(CEPS)는 규제영향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알베르토 알마노 교수(HEC)는 규제정책의 각 단계마다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규제성공의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였다. 로렌조 알리오 교수(HEC)는 규제에 대한 시스템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규제 사이클을 완결할 수 있으며 향후 규제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 신규 대상국에 대한 가입심사

- 콜롬비아 및 라트비아에 대한 가입심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콜롬비아는 현재 다양한 규제개혁 작업과 규제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인 바, 사무국은 지방정부와의 규제개혁 협력 시스템, 정부기관간 조정 시스템 등을 추가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라트비아는 규제영향평가(RIA)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규제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사무국은 앞으로 규제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및 지방정부 규제개선 독려 정책 등을 추가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동남아시아 네트워크 관련

- 사무국은 그간 말레이시아의 31개 규제제안서 및 28개 규제영향분석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까지 지원작업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말레이시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개혁 프로젝트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과 목표 설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OECD, APEC, ASEAN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가 공동의장에 선출되었다.

나. APEC 경제위원회 (2014년 8월 17~18일, 중국 베이징)

○ APEC 경제정책 보고서(APEC Economic Policy Report, AEPR)

– AEPR 2014 작성주도국인 미국, 일본, 중국은 보고서 초안을 회람하고 향후 작업일정을 설명하였다. 사무국은 2015년 AEPR의 주제로 ❶ 구조개혁과 혁신 ❷ 직업규제 ❸ 규칙제정의 투명성 ❹ 민관파트너쉽을 위한 APEC 내 규제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국제 규제협력 워크숍(8.13, 베이징) 결과 보고

– 뉴질랜드는 규제 일관성 및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s) 이행을 위해서는 규제정책의 조율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한 규제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규제담당자간 신뢰 형성 및 경험 공유가 규제수렴을 촉진하여 역내 상품·서비스·자본 이동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제도적 및 인적 연계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인터넷 시대의 규제안에 대한 공공협의 워크숍(8.14, 베이징) 결과 보고

– 미국은 규제절차상 협의개시시점, 제출의견의 효과적인 분석 및 활용방안 등이 논의되었음을 보고하고 지난 고위관리자회의(SOM1 및 SOM2)에 제출했던 '인터넷 시대의 규제안에 대한 공공협의, APEC actions on Public Consultations on Proposed Regulations in the Internet Era' 제안서를 수정하여 회람하였다.

3. 규제개혁 경험전수 및 양자간 규제개혁 협력강화

가. 규제개혁 경험전수

몽골, 베트남, 태국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규제개혁 경험공유를 요청해옴에 따라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목표·추진체계·주요사례 등 규제개혁 경험을 전수하고, 규제개혁 성과를 홍보하였다.

몽골은 '스마트 정부 실현을 위한 한국의 규제개혁 사례' 연구를 위해 아시아재단을 통해 국무조정실 방문을 요청하였고, 2014년 6월 19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몽골 공무원·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경제분야 규제개혁 사례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베트남은 2014년 10월 8일 중앙공무원교육과정인 '베트남 핵심지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였고,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베트남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태국은 2014년 12월 18일 한국OECD정책센터의 '규제개혁 및 입법에 관한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하였고,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정책경험을 공유하였다.

나. 양자간 협력 강화

2014년 8월 및 12월에는 각각 영국, 일본을 방문하여 선진 규제개혁 체계, 정책사례 등을 공유하고 규제개혁 당국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규제개혁 경험 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국의 규제개혁과 규제총량제 관련 정책협의 및 제도연수를 위해 규제선진국(BRE)를 비롯하여 9개 기관을 방문하였다. 동 연수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행정연구원은 "영국의 규제개혁시스템"을 공동 발간하였고, 영국의 'One-in, One-out' 제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비용 총량제를 실시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영국과는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7월 규제비용 연구센터 개소식에 스콧 와이트먼 주한영국대사가 참석하였고, 번영기금(Prosperity Fund) 사업에 참여하여 영국의 'One-in, One-out' 제도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며, 11월 영국 규제선진국(BRE) 부국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경험을 강의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

일본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규제개혁의 동향과 성과를 조사하기 위해 수상실 등 4개 기관을 방문하였다. 동 연수결과 일본의 규제개혁 체계 및 정책추진현황(전국단위/지역단위/기업단위)을 조사하였으며, 현재 일본의 규제개혁 정책은 추진초기단계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제11절
규제개혁 홍보

김 남 기 사무관
T 044-200-2407 E namki3369@pmo.go.kr

1. 추진배경

가. 검토배경

정부는 2013년도 규제정비과제 852건 중 765건을 개선하고, 또한 손톱 밑 가시 과제 238건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 성과에 대한 국민·기업의 성과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렇듯 국민·기업의 체감도가 미흡한 원인은 '안한 것이 아닌, 못 알린 것이 문제'라는 인식하에 개선된 내용이 실제 국민·기업에게 전달되고 활용되기 위한 성과 전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다.

* 2013년도 규제개혁 만족도조사 결과 67.9%로 저조

나. 현황 및 문제점

규제개선 성과 전달체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공급자 중심) 정부 관점의 행정편의적 홍보가 보편적이고, 국민과 소통하며 눈높이를 맞추어 가는 수요자 중심의 홍보 노력 부족

(성과확산 미흡)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 및 제도개선에 행정역량이 집중되어 개선성과 홍보 등 사후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

(통합적 홍보 미비) 부처별로 규제개선 추진시 이루어지는 산발적 홍보로는 국민체감 및 성과 확산에 한계

2. 주요내용

가. 추진방향

정부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례 위주로 대중공간, 방송·신문 등 언론, 뉴미디어, 사례집,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반복적으로 홍보 하였다.

규제개선 성과 전달체계 패러다임 전환

정부중심의 행정편의적·일률적 홍보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
정부 선정·획일적 전달	→	국민이 직접 선정·체험
부처별 산발적·형식적인 홍보	→	범부처 공동홍보, 협업 홍보

나. 추진내용

(1) 대중공간을 활용한 홍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규제개선 사례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형식의 동영상 및 포스터를 제작하고, 편의점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대형마트 쇼핑카트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 CU·GS 편의점 3,700개소 5,100개 모니터 / 서울·수도권·주요 광역시 596개 아파트 단지 1만여개 엘리베이터 모니터 / 전국 이마트 59개 점포 6,000개 쇼핑카트

편의점 모니터 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광고

대형마트 쇼핑카트 광고

또한 회사원, 취업준비생 등이 출퇴근시간에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서울-수도권 주요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버스 외벽에 랩핑 광고를 게재하고, KTX 객실 모니터와 지하철 역사 모니터를 통해 동영상 광고를 송출하였다.

* 서울-수도권 광역버스 56개 노선 100대 / KTX 경부선·호남선 등 46회 편성 3,496개 모니터 / 서울지하철 1·3·4호선 70개 역사 876개 모니터

광역버스 랩핑 광고

KTX 객실 모니터 광고

지하철 역사 모니터 광고

(2) 방송, 신문 등 언론 홍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개혁 TV 캠페인 광고 '규제개혁, 내일을 위한 도약입니다'를 제작하여 지상파 3사 및 종편, 케이블 TV 등 각종 매체에 송출하였다.

또한,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에서 규제조정실장이 "규제개혁버스로 뽑아낸 2014년 손톱 밑 가시들"이란 주제로 인터뷰를 하였으며, KBS2 라디오 〈당신의 아침 박은영입니다〉 방송 후에 "살 맛나는 대한민국, 규제개혁으로부터!"라는 소재로 1개월 동안 캠페인 광고를 진행하였다.

KBS 라디오 인터뷰

KBS2 라디오 캠페인 광고

(3)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국민생활 및 자영업자·기업 등의 경제활동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규제개선 사례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포토툰*으로 제작, 총 19편을 규제정보포털에 연재하였다.

* 실사(스냅사진)와 만화를 결합하여 콘트 형식으로 제작한 온라인 홍보물

또한, 흥미를 유발하는 사례를 웹툰·포토툰 형식으로 제작하여 2차례 페이스북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였으며,

페이스북 스폰서 광고(1차)

페이스북 스폰서 광고(2차)

네이버와 규제정보포털을 연계하여 규제개혁 국민참여 이벤트*를 실시하고,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5선을 선정하여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였다.

* 국민체감도가 높은 15개 규제개혁 대표사례 중 3개 사례를 투표, 총 12,000여명 참여

네이버 광고 및 국민 추천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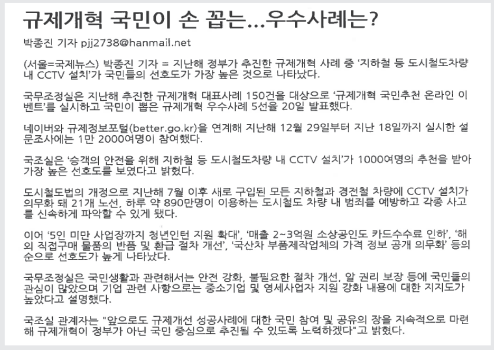

규제개혁 국민이 손 꼽는...우수사례는?

박종진 기자 pjj2738@hanmail.net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사례 중 '지하철 등 도시철도차량 내 CCTV 설치'가 국민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추진한 규제개혁 대표사례 150건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국민추천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5선을 20일 발표했다.

네이버와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연계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1만 2000여명이 참여했다.

국조실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차량 내 CCTV 설치'가 1000여명의 추천을 받아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법의 개정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새로 구입된 모든 지하철과 경전철 차량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돼 21개 노선, 하루 약 890만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사고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 '매출 2~3억원 소상공인도 카드수수료 인하',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반품 및 환급 절차 개선',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생활과 관련해서는 안전 강화, 불필요한 절차 개선, 알 권리 보장 등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으며 기업 관련 사항으로는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지원 강화 내용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선 성공사례에 대한 국민 참여 및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규제개혁이 정부가 아닌 국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우수사례 5선 선정·보도

(4) 사례집 및 리플릿 제작·배포

규제개선 대표사례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150선, 40선*을 제작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전국 관공서·지자체·경제단체, 도서관 등에 각 1만부를 배포하였고,

* ▲투자 활성화 ▲신산업 창출 ▲창업·중소기업 활력 제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국민 불편 개선 ▲안전한 사회 구축

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규제개혁 핵심사례 40선

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이 확산·홍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유관단체와 온라인 민간 커뮤니티*에 관심분야별 개선사례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였으며,

*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 실패 기업인 ▲여성 기업인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농·어민 ▲귀농·귀촌인 ▲주유소·튜닝업체 등 관련 업계 및 단체 등 총 208개 커뮤니티 발굴·제공

자동차 튜닝 관련 카페

귀농·귀촌 관련 카페

규제개혁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찾아가는 규제개혁 버스, 규제개선 간담회 등 홍보 활동시 배포하였다.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리플릿(전면)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리플릿(후면)

(5) 찾아가는 규제개혁 버스 운영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진행하는 전국 각 지역별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및 “솔(직)담(백)톡Talk” 행사에 맞춰 18개 지역에 규제개혁 버스를 운영하고, 규제개혁 버스 내부 및 행사장 인근에 부스를 설치하여 홍보를 추진하였고,

규제개혁 버스 제막식

건의자 현장상담(버스 내부)

건의자 현장상담(홍보 부스)

규제정보포털 내 ‘찾아가는 규제개혁’ 사이트를 구축, 규제개혁 버스 방문지역 소개, 버스 운영 일정, 현장 건의사항 등을 소개하였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메인 페이지

‘찾아가는 규제개혁’ 서브 페이지

(6) 각 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개혁 공동 홍보

우체국 창구 및 전광판 홍보(우정사업본부), 서울지하철 등 내부 광고, 농협 모니터 광고(문체부), 각 부처 소유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전방위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우체국·농협 창구 모니터

전국 주요도시 전광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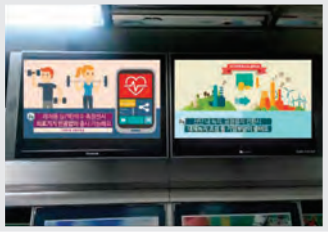
지하철 승강장 모니터

3. 향후방향

박근혜 정부 3년차 규제개혁 성과 창출기의 효과적 홍보를 위해 규제개혁 수혜자를 발굴·활용한 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통합적·체계적 홍보를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홍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홍보전략 수립, 홍보 추진상황 점검 및 월별 중점홍보 대상과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 관련 언론 오보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언론대응 Hot-line를 구축·운영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 방향

✓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규제개선 홍보 시스템 확립
✓ '국민 중심·소통·참여'의 홍보 패러다임으로 전환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맞춤형 홍보 강화

제12절 미등록규제 정비

김 창 용 사무관
T 044-200-2450 E ckim@pmo.go.kr

1. 추진배경

정부는 규제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의 모든 규제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등록제도를 1998년「행정규제기본법」제정 시에 도입하였다. 규제등록제도는 국민과 피규제자에게 규제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정부 규제를 감시하는 동시에 규제 총량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생성을 억제하고 정부 규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1999년에는 등록된 규제정보를 통해 5천여건의 규제를 정비한 사례처럼 규제등록제도는 규제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하며, 대상규제의 명확화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효과적인 정부의 규제관리에 기여하였다.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각 부처는 소관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왔으나, 시간이 지나며 소관 규제를 등록하여야 하는 각부처 공무원은 규제등록에 대한 인식부족,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등록을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여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상당수 존재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규제등록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규제의 실질적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미등록규제는 정부규제개혁 추진 시 검토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규제비용총량제와 부처별 감축목표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어둠속의 규제까지 햇볕 밑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미등록규제가 존재하는 한 규제를 당하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규제개혁 체감도는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규제개혁 무용론'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결국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관리 등 규제시스템 개편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비용총량제와 같은 규제시스템 개편방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규제사각지대인 미등록규제를 발굴하여 등록하면 당장은 규제총수가 늘어났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나 숨겨져 있는 규제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규제 대상인 국민에 대한 도리이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한 것은 이러한 미등록규제의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숨겨져 있는 규제를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각 부처 담당자들의 규제 이해도를 높여 미등록규제를 누락없이 찾아낼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규제여부 판단기준, 위임의 적절성 및 규제타당성 등의 신고지침을 배포하고, 2014년 6월까지 미등록규제를 부처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하였으며, 신고된 미등록규제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였다.

2. 추진경과

지난해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숨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 국토부, 산업부 등 37개 부처에서 4,747건*의 미등록규제를 발굴하였다.

* ▲법률 1,402건 ▲시행령 809건 ▲시행규칙 999건 ▲행정규칙 1,537건

발굴된 규제에는 주택 분양가격 제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산정, 어린이제품 안전신고 등 국민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주요 신고 사례		
기업활동	• 원산지 국명 표기(관세청) • 게임제작업 등록(문체부)	• 근로자 임금채권 시효(고용부) • 주택 분양가격 제한(국토부)	• 벤처기업 요건(중기청)
진입·입지	• 주류중개업 면허(국세청) • 석유판매업의 등록·신고(산업부) • 농지 전용신고(농림부)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식약처) • 재건축부담금 부과·산정(국토부)	
국민생활	• 모범택시 요금결정(국토부) • 운전면허증 휴대·제시(경찰청)	• 이사물품 수입통관 범위(관세청) • 운전면허 적성검사(경찰청)	• 여권 유효기간(외교부)
국민안전	• 어린이제품 안전신고(산업부) • 감염병 오염지역 지정·해제(복지부)	•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여가부) • 승강기 설치신고 의무(행자부)	

37개 부처에서 발굴된 4,747건의 미등록규제에 대하여, 국민 생명·안전 분야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되지 않도록 국민안전, 안보·질서·공익 등 1,773건*은 감축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2,974건에 대하여 기존규제 감축과 동일하게 폐지·완화 등의 정비를 적극 추진하는 등 규제정비에 있어 신중을 기하였다.

* 국민안전(471건), 안보·질서·공익 등(375건), 소비자보호(335건), 공정경쟁(67건), 과태료 등 위반시 제재(394건), 특례사항(131건)

그 결과,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정비대상(2,974건) 중 316건(10.6%)은 폐지·삭제 및 효력상실 일몰을 설정하였으며, 209건(7.0%)은 완화* 등 총 525건의 정비를 완료하였다.

* 규제 완화·법근거마련·상향입법화 등 209건

미등록규제의 주요 정비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미등록규제 정비사례
폐지·삭제	• 입학금 미납시 유치원 입학허가 취소, 수업료 체납시 출석정지 처분 규정 폐지(교육부) •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준·산정 규정 폐지(국토부) • 주택거래신고 절차 등의 규정 폐지(국토부)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연령 제한사항 삭제(문화재청) • 유스호스텔 수용정원의 10% 이상 침대 설치 의무사항 삭제(여가부) •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 규정 폐지(미래부)
완화 등	• 분양가 상한제 의무를 탄력적 적용으로 완화(국토부) • 산업단지 내의 경우는 건축물 임차로도 대학캠퍼스 운영 가능토록 허용(교육부) • 잘못 기재하여 아파트 당첨이 취소된 경우 신규 신청제한 기한(1~2년→3개월) 완화(국토부) • 개발제한구역의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 → 1·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허용(국토부) • 국내 학교법인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완화(교육부)

미등록규제 정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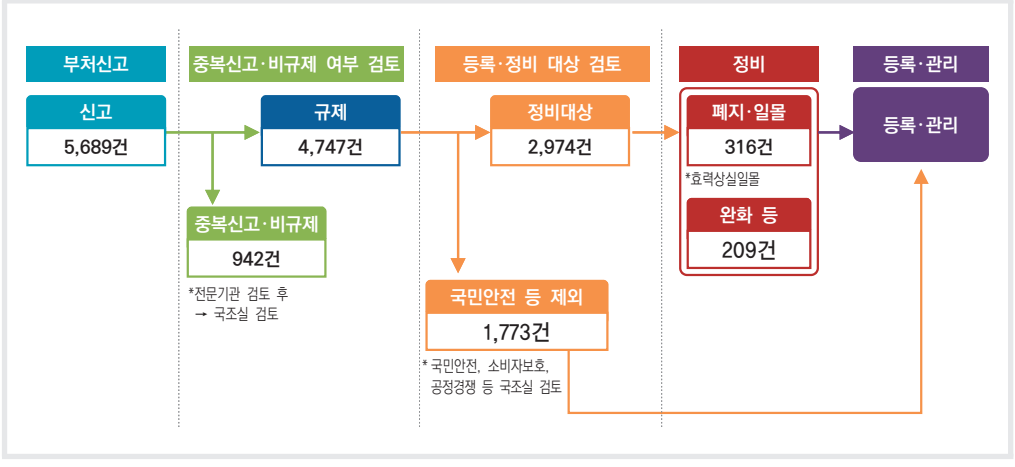

3. 향후계획

정부는 앞으로 미등록규제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규제등록제도 개편 및 규제여부 판단기준 보완 등의 제도개선과 규제등록·관리시스템 보완을 추진 중이며, 또한 법률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강화 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규제가 있는 행정규칙의 경우는 반드시 법제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2015년에는 규제등록·관리시스템을 개편하여 기존 규제 등록체계 개편과 병행하여 미등록규제도 일괄 등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정비, 부처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정부 규제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행복지수를 높이는 규제개혁

Part 03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 166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 기획재정부 ····· 168
2. 공정거래위원회 ····· 182
3. 금융위원회 ····· 203
4. 금융감독원 ····· 257
5. 관세청 ····· 267

제3절 산업·에너지 분야
1. 산업통상자원부 ····· 269
2. 중소기업청 ····· 301
3. 특허청 ····· 309

제4절 국토·해양 분야
1. 국토교통부 ····· 311
2. 해양수산부 ····· 387

제5절 농림축산 분야
1. 농림축산식품부 ····· 413
2. 산림청 ····· 430

제6절 방송통신 분야
1. 방송통신위원회 ····· 434

제7절 노동·환경 분야
1. 고용노동부 ····· 444
2. 기상청 ····· 463
3. 환경부 ····· 465

제8절 교육·과학기술 및 문화 분야
1. 교육부 ····· 512
2. 미래창조과학부 ····· 520
3. 문화체육관광부 ····· 537
4. 문화재청 ····· 554
5. 원자력안전위원회 ····· 560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1. 보건복지부 ····· 568
2. 여성가족부 ····· 588
3. 식품의약품안전처 ····· 593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1. 통일부 ····· 625
2. 외교부 ····· 628
3. 국방부 ····· 629
4. 국가보훈처 ····· 631

제11절 일반행정·안전 분야
1. 행정자치부 ····· 632
2. 인사혁신처 ····· 639
3. 국민안전처 ····· 642
4. 법무부 ····· 657
5. 경찰청 ····· 660
6. 국민권익위원회 ····· 664

제12절 규제영향평가
1.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요 ···· 666
2. 평가항목 및 요소 ····· 668
3. 작성 대상 및 절차 ····· 669
4.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672
5. 향후계획 ····· 678

제1절 개요

한 아 름 사무관
T 044-200-2414 E hanarum@pmo.go.kr

규제개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경제분과 및 행정사회분과) 및 본위원회를 거쳐 2014년도에 각 부처가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총 1,148건 (비중요규제 포함)을 심사하여 이중 138건에 대해 철회를 권고하거나 개선을 권고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철회 또는 개선권고된 대상규제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삭제 또는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였다.

'14년 부처별 신설·강화 규제 심사결과

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2014년도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B)	중요				원안동의 (G=B+F)
				계 (C=D+E+F)	철회 권고 (D)	개선권고 부대권고 (E)	원안 동의 (F)	
기획재정부	10	15	14	1	0	1	0	14
공정거래위원회	9	13	13	0	0	0	0	13
금융위원회	32	133	103	30	2	22	6	109
금융감독원	9	23	21	2	0	0	2	23
관세청	3	3	3	0	0	0	0	3
산업통상자원부	36	87	85	2	0	2	0	85
중소기업청	4	6	5	1	0	0	1	6
특허청	1	1	1	0	0	0	0	1
국토교통부	92	182	170	12	3	6	3	173

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2014년도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B)	중요				원안동의 (G=B+F)
				계 (C=D+E+F)	철회 권고 (D)	개선권고 부대권고 (E)	원안 동의 (F)	
해양수산부	44	74	74	0	0	0	0	74
농림축산식품부	12	52	52	0	0	0	0	52
산림청	7	8	8	0	0	0	0	8
방송통신위원회	13	23	15	8	0	5	3	18
고용노동부	16	48	35	13	0	9	4	39
기상청	2	2	2	0	0	0	0	2
환경부	46	143	106	37	0	22	15	121
교육부	9	17	13	4	1	1	2	15
미래창조과학부	30	43	37	4	0	1	3	40
문화체육관광부	17	35	33	2	0	2	0	33
문화재청	5	14	13	1	1	0	0	13
원자력안전위원회	4	13	13	0	0	0	0	13
보건복지부	24	50	44	6	1	0	5	49
여성가족부	3	11	10	1	0	1	0	10
식품의약품안전처	40	79	73	6	0	3	3	76
통일부	3	3	3	0	0	0	0	3
외교부	1	1	1	0	0	0	0	1
국방부	2	2	2	0	0	0	0	2
국가보훈처	1	1	1	0	0	0	0	1
행정자치부	10	13	13	0	0	0	0	13
인사혁신처	2	5	2	3	0	0	3	5
국민안전처	13	33	30	3	0	0	3	33
법무부	2	5	4	1	0	1	0	4
경찰청	5	9	8	1	0	0	1	9
국민권익위원회	1	1	1	0	0	0	0	1
계	**508**	**1,148**	**1,008**	**138**	**8**	**76**	**54**	**1,062**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 기획재정부

최 병 근 사무관
T 044-200-2398 E cbk3095@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10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3건, 강화 2건으로 총 1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5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 14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27)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4) 공기업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관세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9.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담배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4.09.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8)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9)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9.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회의 (2014.12.26)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계	–	**원안의결 14 개선권고 1**	**신설 13,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4)**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일반 맥주 제조장과의 구분을 위해, 소규모(하우스)맥주 제조시설 기준 상한* **신설**

*(現) 발효조 5㎘ 이상 → (改) 발효조 5㎘ 이상 75㎘ 미만

심사결과 규모맥주제조자는 영업장內 판매만 허용되었으나 외부유통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일반맥주제조자와의 구분 필요 인정됨

– 소규모맥주는 일반맥주와 달리 상이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나, 제조시설규모 外에는 일반맥주제조자와 내용상 차이 없음

구 분		현 행	개정안
일반맥주	시설기준	• 발효조 150kl이상	**• 발효조 150kl → 75kl**
	경감률	• 신설	• 과표 30% 경감
소규모맥주	판매방법	• 외부유통 금지	**• 외부유통 허용**
	시설기준	• 발효조 5kl이상	**• 5kl~75kl**
	경감률	• 과표 20% 경감	• 300kl까지 40% 경감 • 30kl초과 20% 경감

시설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규모맥주 시설상한기준(75kl)은 일반맥주제조자의 최소시설기준과 동일하여,

- 개정안 시설기준은 '소규모맥주 제조면허'를 득한 자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이며, 그 이상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맥주 제조면허를 득하여야 가능한 바, 과도한 기준이라고 보이지 않음

  * 현재 소규모맥주제조자 시설규모는 평균 30㎘로 75㎘이상의 시설을 갖춘 자가 없어 개정안 시행으로 시설을 축소해야 하는 자 없음

또한 소규모 맥주는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등 음주문화 변화에 대응한 틈새시장(Niche Market)에 적합한 업태의 특성을 고려할 때,

- 소규모맥주 제조시설 상한 기준은 외부유통에 따른 포장·위생설비, 일반맥주 제조시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수준으로 판단,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2)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지난해 관세법('14.1.1)을 개정하여 면세점 특허특례 중견기업 범위를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중 매출·자산 및 지분소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규정

강화

*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공기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됨

* 현행 면세점 특허특례 비율(관세법§176의2, 시행령§192의2): 중소·중견기업은 20%('18년부터 30%)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60%미만 부여

-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중견기업 기준을 ①직전 3년 평균매출 5천억원 미만, ②자산 1조원 미만, ③자산 1조원 이상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로 규정

심사결과 관세법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참여확대를 위해 대기업/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특허비율*을 정하였으나,

* 현행 면세점 특허특례 비율(관세법§176의2, 시행령§192의2): 중소·중견기업은 20%('18년부터 30%)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60%미만 부여

- 최근 신규 특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대두

– 국내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되면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나, 외국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견기업으로 분류

*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13.8.22) : Dufry (세계 2위 업체, 매출 4조4천억원)

매출·자산규모가 큰 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간 실질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중견기업의 범위 조정 필요

– 구체적인 중견기업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 중견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주식·지분 보유비율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판단의 타당성이 인정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면세점 참여 기회 확대로 실질적 경쟁 제고 및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 매출·자산의 규모가 큰 중견기업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인정되고, 중소·중견기업을 규율한 유사입법례의 기준,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음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원안동의

(3)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5)

(가) 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및 설립신고 반려요건 신설

심사내용 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창립총회 공고절차 및 의결사항 등 창립총회 절차관련 규정 신설

–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7일 이상 공고

– 창립총회에서 정관,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

협동조합 설립신고의 반려 요건에 대한 규정 신설

– 시·도지사는 ① 설립절차, 정관·사업계획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② 보완요구 기한 내에 보완 불이행시 반려가능

※ (제6조 제3항) 총회의사록 작성과 의장 및 설립동의자 3인의 날인(서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 제30조상 의무를 반복한 규정

심사결과 창립총회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를 설립하기 위한 필수절차이지만, 이에 대한 절차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개정안의 창립총회 절차 및 의결사항은 타법* 설립절차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규제 부담 최소화 노력

*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또한 설립신고 반려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방지 가능한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반려시 법 위반인 경우 및 보완요구 미이행인 경우에만 반려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

(나) 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흡수합병 및 조직변경 신고 신설

심사내용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에 따라 변경신고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관련절차 규정

협동조합이 인가를 거쳐 상법상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인가절차 규정

* 법 개정 전에는 협동조합간의 흡수합병만 허용

다른 법령상의 영리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신고절차 규정

심사결과 **(변경신고)** 설립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절차가 부존재하여 신고확인증 재교부 등 관할관청의 실무적 판단에 애로,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협동조합의 예측가능성 제고하고, 시·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 신설 필요

(흡수합병)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이 상법상 회사* 흡수합병 가능해짐에 따라 인가신청 절차 필요

*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자료보완 요구 등 설립신고시 절차와 동일하여 최소 필요한 규제이며, 동 규정으로 국민의 실질적 권리 이행 가능

(조직변경) 법 개정에 따라 타법상의 영리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신고절차 필요

개정안은 설립신고 반려 및 보완요구 요건을 명확히하여 협동조합의 예측가능성 제고 가능,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동의

(다) 연합회의 공제사업 인가요건 신설

심사내용 법 개정(제80조의2)으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이 허용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인가기준 마련

– 회원수 10개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1억원 이상

심사결과 소규모 협동조합은 대외신용도가 낮아 일시적 자금경색 등 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생적 수단으로 연합회의 공제사업 허용

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은 금융업 및 보험업이 불허, 사회적 기업 등 여타 사회적 경제 조직과 달리 별도의 재정지원 없음

다만, 공제사업을 하는 소규모 연합회 난립으로 인한 협동조합 금융부실화 방지를 위해 일정한 허용기준 설정 필요

회원수 및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참고하여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동의

(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조직변경 인가 신설

심사내용 법 개정(제101조 제7항)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 (일반)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하는 것이 가능해 짐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인가절차 규정

법 개정(제105조의2)으로 다른 법령상의 협동조합, 비영리 사단법인, 법인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인가절차 규정

심사결과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조직변경 관련 절차는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사항이므로 대체할 기존 규제 부재, 법(제101조 제7항, 제105조의2)에서 인가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규정 신설 필요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및 조직변경 인가절차는 협동조합의 절차와 유사, 혼란 및 시행착오 방지 가능한바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마)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제한 사업 신설

심사내용 법 개정(제95조)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규제가 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게 시행령 정비

- 법에서 위임된 비조합원의 이용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 규정 필요

  * 소액대출, 상호부조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

심사결과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에 따라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

협동조합기본법은 상호부조 및 소액대출 사업은 이용대상을 조합원으로 한정, 개정안은 법상*의 제한을 재확인하는 규정

* 협동조합기본법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50% 범위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제한했던 것을 일부완화,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비조합원 중 지역주민*의 이용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해 허용되었으나, 동 요건 폐지

*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4) 공기업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공공기관은 同기관에서 퇴직한 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① 퇴직자 본인 또는 ②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과 수의계약 금지 신설

- 직함,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임원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임원으로 간주하여 수의계약 금지

심사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과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만연

* [例1] '09년~'13년동안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는 자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와 6,466억원 규모(가스공사 매출의 90%)의 수의계약 체결

** [例2] 한국수자력원자력은 지난 5년간 자회사 한전 KPS와 전체 계약 중 93%(1조 6,547억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또한 퇴직자 채용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자회사 등에 수의 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심각하여 남동발전은 '11년 1월 자회사 한국발전기술(남동발전 지분 52%) 설립,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와 총 862억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남동발전 정년퇴직자 25명을 고용하도록 함

*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09년~'13.9월까지 총 15조8008억원의 계약체결액 중 한수원 퇴직자 영입업체 44개사와 1,557건(6조 3,991억원)의 계약을 체결(42.4%)

이 규칙 시행일 전에 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기업과도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는 것과 관련하여, 이 개정안 시행 전에 체결된 수의계약을 무효화하는 등 제한하는 아니며, 향후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원칙적 계약방식인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로 보이지 않으며 해당업체 이외에 제조자가 존재 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 규제의 타당성 확보한 바 비중요로 원안동의

(5) 관세사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징계종류)** 업무정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도입 **강화**

(제재수단) 징계 회피 목적으로 징계 전 폐업 후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징계위원회 의결로 5년 범위 내에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징계 종류 확대 관련

- 관세사간 통관물량 유치 경쟁이 치열하여 수출입 허위신고, 세관명령 위반, 명의대여 행위 등 불법통관행위 지속 발생*
  * 관세사 징계현황 : '07년 7건 → '13년 상반기 13건 (86% 증가)
- 관세사는 타 자격사에 비해 최대 징계 수위가 낮아 관세법령에 대한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이행 강제력 제고 필요

구 분	관 세 사	세 무 사	변 호 사
징계의 종류	1. 등록취소 2. 업무정지(1년 이내) 3. 일부업무정지(6월 이내) 4. 견책	1. 등록취소 2. 직무정지(2년 이내) 3. 과태료(1천만원 이하) 4. 견책	1. 영구제명, 제명 2. 정직(3년 이내) 3. 과태료(3천만원 이하) 4. 견책

(업무정지) 타 자격사의 업무정지 수준*과 비교하여, 관세사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할 필요 인정되며,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한 후, 불법(부정)행위의 고의성 및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징계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

* 업무정지 기간 : 관세사 최대 1년, 세무사 최대 2년, 변호사 최대 3년

(과 태 료) 고의·중과실 징계사유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처분만 가능하여 불이익 있을 수 있으므로 징계 다양화 필요하며 최근 5년간 내려진 징계처분 종류 중 상당수가 '업무정지(78.5%)'에 해당

※ 참고 : 관세사 징계 현황

구 분	'09	'10	'11	'12	'13	'14.7
견 책	3	11	1	5	–	–
업 무 정 지 (업무일부정지)	6 (2)	14 (3)	12 (5)	3 (1)	12 (8)	6 (6)
등 록 취 소	–	1	–	–	–	–

징계회피자 등록제한

– 현행 법령상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내에 재등록 금지되어 있으나, 징계 절차前 자진폐업한 자에 대한 제재수단 없어 형평성 문제 발생

* 벌금이상의 형을 받았으나 자진 폐업을 통해 징계 회피한 경우 9차례 발생('06년 이후)

– 타 자격사의 경우 징계 회피목적의 폐업자에 대해 재등록 거부기간을 두어 징계회피 방지 필요성 인정 비중요로 원안동의

* 세무사법§17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6) 담배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後 담배 판매량 급증이 예상되어, 폭리예방 및 물가안정을 위한 매점매석행위 고시 마련 **신설**

– 제조·수입업자의 월 반출량 제한 : '14.1~8월 평균 반출량의 104%

– 소매인의 월 매입량 제한 : '14.1~8월 평균 매입량의 104%

– 제조·수입업자·도매업자 및 소매인의 판매기피 행위 금지

심사결과 담배 가격 인상 발표 시 담배판매량 급증이 예상되는바, 제조·판매자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하여 유통업자의 폭리 방지가 필요하며 담배값 인상방침후 발표(5.30 금연의 날) 후 판매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담배값 인상안 확정 후 급증 예상

(단위 : 억갑)

'12	'13	'14. 1.~8.	1/4	2/4	4	5	6	7	8
44.2	44.4	28.8	9.7	11.2	3.9	3.6	3.7	4.2	3.7

– '04년에도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의 국회 제출('04.10.19)등 가격인상이 가시화된 후 10월중 판매량이 전월 대비 17%p 증가, 매점매석행위방지 고시를 통해 유통업자의 폭리 방지 필요

* '04년 담배값 인상(+500원)시에도 매점매석방지고시를 시행

9~12월 소비량의 5년 평균이 1~8월의 104%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매월 반출·매입량을 금년 1~8월간 월평균 반출·매입량의 104%로 제한하였는바 적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또한 금번 조치에 따른 담배가격 인상안 시행 후 매점매석고시를 폐지할 계획으로 규제로 인한 국민부담 최소화 노력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7)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담배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담배소매인의 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영업정지처분 기준을 마련

신설

–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제4조의2 관련)
– 담배판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제6조의2 관련)
–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제11조제4항 관련)

심사결과 개정된 담배사업법 제11조의4 및 제15조의 위임에 따라 담배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영업정지처분 기준마련 필요 인정되며 담배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소매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 마련 필요법적 예측가능성 제고 및 영업정지처분의 일관성 도모 가능

각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로 비중요로 원안동의

(8)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및 행정처분 기준규정 신설

심사내용 **(지정기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12863-담배의 발화성능평가'를 위한 표준시험방법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공공기관을 규정

(취소기준) 화재방지성능 인증기관의 의무 준수를 위해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마련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요건 미달한 경우, 거짓 인증서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심사결과 **(지정기준)**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화재방지성능 인증업무를 수행할 화재방지성능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담배사업법 제11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11조의5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등의 요건과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제11조의5제4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담배에 대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기준 방식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담배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채택한 FCTC*에서 권고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지정기준의 적정성 및 객관성 확보

  * 담배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채택한 국제협약(FCTC :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으로 '14년 3월 현재, 176개국 비준 (한국 '03년 서명, '05년 비준)

(취소기준)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인증기관의 의무 준수를 위해 위반행위의 유형을 규정, 하위법령에 행정처분 기준 위임

-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고의성, 위반횟수를 감안하여 처분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비중요로 원안동의

(나) 오도문구의 범위 신설

심사내용 담배값 및 광고에 사용을 금지하는 '오도문구'를 규정

– ① 라이트(light), ② 연한, 마일드(mild), ③ 저타르(low tar), ④ 순(純), ⑤ 기타 위 각 호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 도형, 그림,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표시하는 것

심사결과 개정된 담배사업법 제25조의5에 의거 담뱃갑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오도문구'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대한 검토 필요하며 오도문구는 FCTC에서 사용을 금지한 문구*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언어의 차이를 감안하여 유사한 의미를 가진 문구(순純)를 포함

* ① 라이트(light), ② 연한, 마일드(mild), ③ 저타르(low tar)

담배규제기본협약 내용

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1.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다음 각호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시행한다.

가.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은 허위·오도·기만적이거나, 제품의 특성·건강에 대한 영향·위험성 또는 배출물에 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개연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제품을 홍보하여서는 아니되며, 여기에는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제품보다 덜 유해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기타 표시가 포함된다. "저타르",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또는 "마일드" 등의 용어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오도문구는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을 왜곡하거나 미미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를 금지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WHO가 채택한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오도문구를 설정하여 규제의 적정성 및 타당성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9)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되어 과태료 부과·징수기관인 금융위·관세청의 행정규칙*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외국환거래법시행령으로 상위 입법화 규정 신설

*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관한 제재규정(금융위 고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일반기준〉

– **(가중사유)** 금융위, 관세청 가중 비율(40%) 종전과 동일

* 벌칙,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이내 과태료 사유 발생시

– **(감경사유)** 금융위 40%, 관세청 20%/40% → 20%*로 조정

* 주로 위법행위 자진신고, 신고기관 미신고, 자본거래 미신고 조정

** 중소기업의 경우 법령의 부지로 위반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감경사유에 추가

부과금액 : 최대 600만원 한도내(기존 동일)

심사결과 금융위, 관세청에서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영역별 동일업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해 시행령으로 하여 법체계 정비·운영실태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개선

※ 과태료 금액 통합 사례

과태료 사유	금융위	관세청	개정안
법 제32조 제1항제2호 (지급절차 위반)	•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및 불법목적인 경우 :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높은 금액 • 기타 : 5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1 중 높은 금액	• 위반금액의 100분의 1 • 단, 거짓으로 증빙한 경우 : 위반금액의 100분의 2	• 5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 다만, 거짓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법 제32조 제2항제4호 (2년 이내 경고사유 위반)	100만원	• 제19조제1항제1호 : 50만원 • 제19조제1항제2호 : 위반법조별로 제32조 제1항 각호의 부과금액 준용	100만원

과태료 한도가 5,000만원(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1항, 거짓자료 제출), 1,000만원(제2항, 지급절차 위반)임에도 과태료 기준상의 최고액 (정액금액 기준)은 600만원으로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 등의 기준(가·감경)을 통합, 보완

※ 제32조제2항제6호 위반의 경우(검사거부·방해·기피한 자)

금융위	관세청	개정안
600만원	1회 600만원 최근 2년 이내 2회이상 : 1,000만원	600만원

현행 위범자의 자진신고의 경우까지 40% 감경(금융위 고시)은 다소 과도하다는 측면을 반영하여 관세청 훈령기준(20%)으로 통일하고 현행 감경 40%규정은 주로 위법자의 자신신고에 초점을 둔 점을 개선하여 하향 조정 반영 필요

과태료 부과기준은 타 법률의 처분기준*과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으며 외국환 거래의 특성을 고려, 적정성을 이루어 비중요로 원안동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외국환 거래법은 600만원이 최대)한 경우 (1차)600, (2차)1,500, (3차 이상)3,000만원

(10)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담배 제조업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전월에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 1갑당 5원씩 산출한 출연금을 '연초생산안정화재단'에 납부 **신설**

심사결과 국내 연초생산 안정화를 위한 공익적 취지가 인정되며 부담금 수준 또한 담배 제조사 마진 인상분의 1/10이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배소비 추이, 금리변동 등에 따른 여건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검토 일몰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것을 개선권고* 함

*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부대권고

2. 공정거래위원회

최 병 근 사무관
T 044-200-2398 E cbk3095@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6건, 강화 7건으로 총 1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4.01.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계속된 거래판매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4.03.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4.05.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5.18)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5)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405.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4.06.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6)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9)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3**	**신설 6, 강화 7 (비중요 13)**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가중범위 확대 **강화**

(현행) 과거 3년간 '3회 이상' 조치를 받은 사업자의 벌점 누계가 '5점 이상'인 경우 가중 → **(개정)**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벌점 누계가 '3점 이상'인 경우 가중

과징금 감경사유 및 감경 재량 축소

2차 조정단계의 감경사유 및 감경비율 조정

–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감경사유를 일부 폐지하고, 감경대상· 감경률 등을 조정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의 감경 요건을 강화

–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을 엄격히 제한

– '시장·경제 여건'은 별도의 감경사유가 아닌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을 위한 참작사항으로 규정

– '이득 규모', '시장에 미친 효과'에 따른 감경은 부과기준율 결정 등 앞 단계에서 이들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경우에 한해 허용

⇒ 과징금은 기본액의 산정, 기본액의 조정(1·2차), 최종 과징금의 결정이라는 3단계를 거쳐 산정

※ 참고 : 과징금 산정과정

산정과정	① 과징금 부과기초 (산정기초액)	② 가중·감경 조정 (1·2차 조정)	③ 결정 과징금 (부과과징금)
고려요소	• 위반행위 유형 • 중대성	• 가중 : 위반기간·횟수 등 • 감경 : 조사협조, 행정지도 등	• 회사재무상태(자본잠식·파산), 경제여건 등

심사결과 과징금 조정과정을 거치며 대부분 감경되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외부 비판에 직면, 가중·감경요건을 조정할 제도적 필요성 인정

–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피심인의 92.5%(572/618)가 감액, 평균 감경률은 49.3%로 매우 높은 수준

– 과징금의 위법행위 억제기능을 제고하기 감경사유 및 감경률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외부지적 누적을 반영하여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시장퇴출을 방지할 수 있어 타당한 규제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12년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조사처, '13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등

(2) 계속된 거래판매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계속적 재판매거래시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신설

연번	행위 유형	조 문
1	구입강제로 금지되는 행위유형 지정	안 제4조
2	경제상이익 제공 강요로 금지되는 행위유형 지정	안 제5조
3	판매목표 강제로 금지되는 행위유형 지정	안 제6조
4	불이익 제공으로 금지되는 행위유형 지정	안 제7조
5	경영활동 간섭으로 금지되는 행위유형 지정	안 제8조
6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안 제9조
7	자료제출 의무 명시	안 제10조

심사결과 본사 직원의 폭언 등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인정

* 남양유업은 대리점 전반(1,849개)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임의 공급 방식으로 구입 강요('07~'13.5)

(가) 구입강제로 금지되는 행위유형

- 판매업자가 청약·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
-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무관한 비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부당한 구입강제 행위는 본사-대리점간 불공정행위 심결사례*에서 문제되었던 행위유형으로, 구체적 위반행위로 규정할 필요하며

* 배상면주가는 '우리쌀 생막걸리'를 출시하면서 전속 도매점(74개)에 주문외 잔여물량을 배당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900만원·고발 조치('13.9)

특히 본사-대리점 거래관계 서면실태조사* 결과, 응답자(86명)의 25.5%(22명)가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받은 경우가 있다'고 응답

* 8개 업종(주류, 유제품, 화장품 등) 상위 23개 업체 대상으로 거래유형, 계약내용 등을 조사 ('13.6.3~7.8.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구입강제행위는 이미 법률에서 금지*되고 있어 동 조항 신설로 인하여 피규제자에게 추가적 규제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며 부당한 구입강제 행위에 대한 심결례 및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검토

* 배상면주가 역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받음 ('13.9)

관련법령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경제상이익 제공 강요로 금지되는 행위유형

-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판촉비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인건비 부담을 강요하거나 파견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공급업자가 실시하는 판촉행사 비용 부담을 강제로 판매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인건비 부담을 강요하여 판매업자의 경제적이익을 부당하게 수취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대리점의 수입은 위탁수수료(점포매출 8.5%)로 판촉사원의 임금 부담시 대리점의 위탁업무 마진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구조

* 남양유업은 대형 유통업체에 총 397명의 진열 판촉사원을 실질적 고용·관리하였음에도, 사전합의 없이 진열판촉사원 임금의 63%를 대리점에 전가('12년)

또한 대형 유통마트 등 진열 판촉사원의 파견·고용은 본사의 제품매출 증대*와 직결되는 것으로 대리점과의 제품 매출 증대와 직접적 관계 없는바, 대리점이 파견·고용인력의 임금을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

* ① 점포 내 진열상태 개선으로 소비자의 제품 호감도 증진 효과, ② 유리한 매대위치 확보 및 진열 품목 수 증대, ③ 핵심품목 중점관리로 추가매출 창출

따라서 거래와 무관한 판촉비·인건비·기부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필요 인정

(다) 판매목표 강제로 금지되는 행위유형 지정

- 판매업자와의 계약 중도 해지
- 정당한 사유없이 제품 공급 중단
- 지급 의무가 있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 제공

공급업자는 전속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만연하고 판매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제품공급을 중단하여 판매점의 영업기반 위축 발생

* 배상면주가는 전속 도매점(74개)에 생막걸리 제품('우리쌀 생막걸리')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여 임의 출고('10.2.~'12.3.), 이의를 제기한 전속 도매점에는 인기제품인 '산사춘'의 공급을 축소·거절하거나 도매점 계약 갱신거절로 임의배당 관철

유제품·라면·화장품·제과·음료 등 업종분야를 불문하고 판매목표 강제행위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올바른 거래관행 확산 필요 인정

* 「본사-대리점 거래관계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사가 설정파는 판매목표액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율 55.2%(전체 76건 중 42건)에 해당됨

판매목표 강제 금지는 이미 법률에서 금지*되고 있어 동 조항 신설로 인하여 피규제자에게 추가적 규제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 배상면주가 역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받음 ('13.9)

따라서 대리점 거래에서 빈발하는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대한 개선 필요성 및 심결례를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검토

(라) 불이익 제공으로 금지되는 행위유형 지정

-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
-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훼손되었음에도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본사는 제품 밀어내기 등을 강제하기 위해 일방적 계약해지 등 일방 우위의 거래조건을 악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정되며 개정안은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서 실제 문제될 수 있는 불이익 제공행위의 세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문제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고 사전에 위반여부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바 건전한 거래문화 형성 가능함

따라서 위반행위의 신설이 아니라 기존의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피규제자 부담이 적어 비중요규제로 검토

(마) 경영활동 간섭으로 금지되는 행위유형 지정

- 판매촉진행사에 판매업자가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임직원·판매원의 선임·해임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강요하는 행위
- 판매업자의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 동 시행령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1유형으로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고시(안)에서는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서 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영간섭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본사와 대리점의 경영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문제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어 비중요규제로 검토

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제23조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바)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 금지

- 판매업자의 정당한 주문내역 확인·요청을 거부회피하는 것이 불이익 행위에 해당함을 명시

본사에서는 판매업자의 주문내역을 일방적으로 변조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구입강제(밀어내기)를 관철, 이를 규제할 필요 인정되고 대리점 주문 마감 후 영업사원이 주문량을 임의수정·강제 할당하여 초과생산 재고부담을 대리점에 전가

*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최초 주문량 등을 검색할 수 없도록 주문시스템(PAMS21)을 변경하여 회사 주문 담당자의 최종 주문량 임의 수정

따라서 판매업자가 자신의 주문내역에 대한 확인 요청을 거부·회피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리점의 주문량 임의 수정을 방지하고 개정안 제4조에서 부당한 구입강제 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제9조에서 이를 관철시키는 방식을 제재함으로써,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비중요규제로 검토

(3)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대기업 집단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 위반행위에 대한 산정기준 마련 **강화**

* 현행: 5종의 위반행위 유형 → 개정: 6종의 위반행의 유형

이익제공행위 위반액에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산출

※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2.2 이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80%
1.4 이상 2.2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50%
1.4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20%

심사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고 통행세 관행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과징금 고시 개정 필요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신설 및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실제 이득을 얻은 수혜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과징금부과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 다른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해야 하며 개정안은 행위의 의도·목적 및 기존 거래 관행, 위반액 정도,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 비율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중대성 정도를 판단,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을 결정하며, 위반행위의 유형 및 의도가 유사한 '부당한 지원행위*'와 동일한 부과기준율을 규정하여 위반행위별 균형을 갖춤

부당한 지원행위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적정성

(위반행위 내용) 위반행위의 내용은 행위의 의도, 목적, 경위,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하되, 부당성의 정도별로 등급별 점수[상(3점)-중(2점)-하(1점)]를 구분

(위반액) 200억원 이상, 50억원~20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을 구간으로 기준을 설정, 과징금고시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의 세부평가기준표상의 위반액 기준구간과 동일

(총수지분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규제대상 208개 회사를 분석한 결과를 반영, 기준구간 설정

*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 비율이 80% 이상은 86개(41.3%), 50~80%는 43개(20.7%), 50% 미만은 79개(38.0%)를 반영

개정안은 금지행위 위반시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 및 위반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며 또한 위반행위의 고의성 및 위반액 정도를 고려하여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고, 타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맞춰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바,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3)

(가) 순환출자현황 공시 신설

심사내용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순환출자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에 추가, 순환출자 공시 의무 위반시, 탈법행위 유형·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심사결과 〈비중요 논거〉

[순환출자 공시]

상위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개정*('14.1.24, 7.25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필요

* 공정거래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중략) 회사는 제9조의2에 따른 순환출자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순환출자 현황 등 공시를 통해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동반부실 위험을 차단하고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와 강화,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돼 사실상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어 비판 직면

구체적인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기존의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절차와 동일*하여, 규제준수를 위한 부담 최소화 가능한 바,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공시대상회사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 신설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필요, 산정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 및 유형이 비슷한 상호출자행위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는바, 기준 산정의 타당성 인정

- 상위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바,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함

(나)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 신설

심사내용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순환출자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에 추가

순환출자 공시 의무 위반시, 탈법행위 유형·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심사결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 이에 대한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을 마련 필요

-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거나,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신규 순환출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바 살피건대, 특정금전신탁·타인의 명의 도용 등은 실질적 주식 취득·소유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들이 종종 사용하며,

  * '96년 8월 'LG전자-LG 계열사'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상호출자
    '03년 7월 'SK글로벌-SK(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공정위로부터 제재

-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 가능한바, 규제 적용을 면탈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

  * 실질적 소유자는 특정금전신탁 가입자임

– 공정거래법상 주식의 취득·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법 제7조의2)함을 감안할 때, 타당한 규제로 검토

* 공정거래법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심사내용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순환출자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에 추가하고 순환출자 공시 의무 위반시, 탈법행위 유형·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심사결과 위반행위 신설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필요, 산정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 및 유형이 비슷한 상호출자행위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는바, 기준 산정의 타당성 인정하고 상위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바, 비중요규제로 판단

*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함

(5)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기획여행* 업종의 중요정보 항목 추가·보완 강화

* 여행업자가 여행목적지·일정 등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실시하는 여행, 일반적으로 '패키지 여행'으로 불리고 있음

유류할증료를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하고, 선택 관광은 대체일정 등을 명시하도록 함

가이드 경비는 여행상품 가격에서 별도 표시하되 현지에서 지불해야 함을 명시

* 가이드 팁은 가이드 경비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

심사결과 기획여행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임에도 선택적으로 지불가능한 경비로 광고 후, 현지에서 지불을 강요하며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바,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중요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할 필요 인정

*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1372)의 소비자피해 상담건수 꾸준히 증가
: '11년 6,922건 → '12년 7,701건 → '13년 11,591건

선택 가능한 경비로 표시되는 추가비용은 전체 여행상품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바, 왜곡된 가격정보 제공으로 인한 그릇된 소비자 선택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사업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 기획여행의 가격 표시 방법을 규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타당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패키지 상품에 추가비용(세금, 가이드 팁, 선택관광 비용 등) 포함된 경우 17%에 불과, 상품가격 대비 추가비용 비율 34.4%(2013.7. '해외패키지 여행상품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한국관광공사)

(6)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14.2.14)으로 과징금 제도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산출방법 마련이 필요하며 **신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준용하여 △기본산정기준, △1차 조정, △2차 조정 후 부과과징금 결정

※ 과징금 산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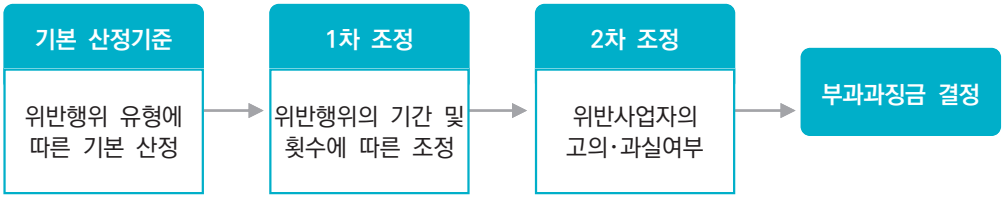

심사결과 **(규제필요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14.2.14시행)으로 종전의 공정거래법 준용조항 삭제됨에 따라, 가맹사업법상의 별도의 과징금 고시 제정 근거기준 마련 필요

(기본산정기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산정)을 곱하여 기본 과징금을 결정하도록 설계

부과기준율 및 세부기준,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은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과 동일하게 설계

중대성의 정도	세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정액과징금 부과시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6%이상 2.0%이하	4억원이상 5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0.8%이상 1.6%미만	2억원이상 4억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이상 0.8%미만	5백만원이상 2억원미만

(세부기준표) 가맹사업법상 11개의 위반유형에 대해 각각 과징금 부과율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표를 마련(별표)

세부평가기준표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4~6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각 항목별로 상·중·하 배점 기준을 마련

평가항목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행위 정도
세부평가항목	• 위반행위 중대성 • 피해발생정도 • 부당이득 발생정도	• 위반 건수 • 위반액 (위반가맹금 규모, 위반행위 관련 상품 규모 등) • 가맹본부 규모

'위반행위의 내용'의 세부평가항목(3개)은 대부분 계량화가 어려운 만큼 질적인 평가기준을 제시, 단, '위반행위 중대성'의 항목은 위반유형별로 가급적 평가기준을 계량화·구체화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높임

구 분	평가 기준
위반 건수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2] – 상(30건 이상), 중(10건 이상 30건 미만), 하(10건 미만)
위반액	• 가맹금 예치의무 관련 위반 예치 가맹금 규모[3] – 상(5천만원 이상), 중(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하(2천만원 미만)
가맹본부 규모	• 위반 가맹본부 매출액 규모(11개 위반행위 유형 공통)[4] – 상(500억원 이상), 중(5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하(50억원 미만)

1) 최근 2년간 시정명령한 71건 분석결과
정보공개서 미제공 횟수 30건 이상 12.7%, 10~30건 36.6%, 10건 미만 50.7%

2) 최근 3년간 시정명령한 82건 분석결과
가맹금 미예치 횟수 30건 이상 11.0%, 10~30건 34.1%, 10건 미만 54.9%

3) 3,691개 가맹본부(13년말 기준)의 예치 가맹금 규모 분석결과
5천만원 이상 4.4%, 2천~5천만원 18.9%, 2천만원 미만 76.7%임

4)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상 불공정거래행위유형의 위반사업자 매출액 규모 기준으로 가맹분야 사업자 규모가 영세함을 고려하여 설정

* 3,691개 가맹본부(13년말 기준)의 12년말 기준 매출액 규모
: 500억원 이상 6.8%, 50억~500억원 13.7%, 50억원 미만 79.5%임

(규제타당성)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부과기준과 동일한 구조로 설계하여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준수율 확보 가능, 또한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 심결례를 반영하여 평가기준을 설정, 가맹사업의 사업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바 규제 타당성 인정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7)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 중 신규출자 현황 추가 **강화**

- 대표회사의 순환출자 현황 중 중복되는 부분 통합 공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의 모든 순환출자 현황(계열사간 순환출자현황,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추가

-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한 상위법(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시 항목 추가

심사결과 **[신규출자 현황 공시]**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상위법(공정거래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시 방법 등 위임사항*을 고시에 반영할 필요

* 순환출자 형성 회사 및 해당기업집단 대표회사의 공시범위, 빈도, 내용 등

※ 공정거래법률('14.1.24 개정, '14.7.25 시행) 및 시행령('14.7.24 개정, '14.7.25 시행): 순환출자 현황에 관한 사항 공시 의무 신설

현행 공시는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장치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 인정됨

- 총수있는 집단(39개)의 내부거래비중이 12.6%로 총수없는 집단(8개) 11.46%보다 높고,
- 특히 비상장사의 내부거래비중이 특히 높아 부의 우회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적 견제장치 도입 필요

※ 민간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비중 현황

('13년 말 기준, 단위: %, 개사, 조원)

구 분	모든 계열사		상장사		비상장사	
	내부거래비중 (금액)	회사수	내부거래비중 (금액)	회사수	내부거래비중 (금액)	회사수
전체집단(47개)	12.46 (181.5)	1,351	7.75 (79.3)	238	23.53 (102.2)	1,113
총수있는 집단(39개)	12.60 (160.5)	1,217	7.65 (68.4)	217	24.31 (92.1)	1,000
총수없는 집단(8개)	11.46 (21.0)	134	8.51 (10.9)	21	18.22 (10.1)	113

'대표회사'는 개별회사의 순환출자 현황 중 중복부분을 통합하여 고시하도록 한 바, 이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순환출자는 기업집단 소속회사간 형성되고 회사별로 중복되어 발생하므로, 대표회사가 중복부분을 통합하여 기업집단 전체의 순환출자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할 필요

'공시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의 모든 순환출자 현황(계열회사간 순환출자현황,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기업집단 공시제도의 공시항목* 및 방법과 유사하게 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존 공시제도에 '순환출자 형성집단'만 추가되는 사항으로 새로운 비용 발생은 미미한 반면, 순환 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음

* 계열사간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또한 '공시빈도'는 변동현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년에 1회로 정하고 있어 공시의무 이행 비용 최소화를 하여 비중요로 원안동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일감몰아주기)을 금지('14.1.24 시행)하면서,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인간 자금·자산·상품·용역을 제공·거래 현황'을 공시하도록 개정('14.7.25 시행),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간 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현황 공시방법을 정함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법 제23의2) 적용 대상 회사의 거래상대방 회사 (총수일가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20%) 이상인 회사

개정안은 각 공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내용을 거래종류(상품·용역/자금/자산)별로 구분하여 거래현황(거래상대방, 금액, 비중)과 대표거래 항목(업종·품목·자산유형)등을 공시 하도록 하는바, 적정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거래현황' 및 '거래종류'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시항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현재도 공정거래법은 계열사간 내부거래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으로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 현황만 분류하여 공시토록 하는 것으로 기업의 추가부담은 미미함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하여, 일부 대기업의 사익편취행위를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의무이행 비용은 낮은바, 적정·타당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현재 고시로 규정된 사건처리절차 중 '증거조사제도'를 상위법령에 법률 근거 마련 **신설**

* 공정위 고시(사건처리절차규칙)에 증거조사 관련 조항(제41조)이 있으나, 방법·절차 등은 불비

증거조사 시 자료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하는 경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심사결과 '증거조사제도'는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되어 법원이 심리과정에서 증거의 진실성을 규명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제도로 공정한 사건처리 진행을 위해 공정위 고시(사건처리절차규칙)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음. 다만 본질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증거조사제도에 대하여 사건처리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 인정

증인 불출석 또는 자료미제출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증거조사 제도의 실효성 갖출 필요 인정되며 개정안은 민사소송법(제311조) 및 형사소송법(제151조)을 토대*로, 과태료 상한액을 산정하였는바 타 법과의 형평성 및 적정성 갖춤

* 민사소송법(제311조) 및 형사소송법(제151조),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 500만원

사업자 단체를 통한 법위반 행위는 다른 단독행위에 비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대함을 감안하여, 다른 불공정행위 과태료 부과수준을 감안하여 사업자 단체와 사업자를 구분,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별화하였는바 구체적 타당성 확보 가능하여 비중요로 원안동의

※ 과태료 부과 금액

구 분	사업자단체	임원 및 종업원등	비고
증인미출석 등	**5천만원**	**5백만원**	**개정안**
공시의무위반	1억원	1천억원	타위반행위
기업결합신고 의무위반	1억원	1천억원	타위반행위

심사내용 대기업집단 현황공시(제11조의4) 항목 추가 **강화**

①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회사 현황자료

지주회사의 계열사 중 지주회사 체제 內/外에 있는지 여부

* 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 재무상황 등은 旣 공시하고 있음

②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의결 내용이 아닌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공시항목으로 추가

• 현행 대기업집단은 현황 공시의무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주식소유 현황*'을 공시해야함
*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항목)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①일반현황, ②주식소유현황(소속회사별 소유지분 현황, 계열사간 주식소유 현황), ③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 (분기별 또는 연1회 공시)

심사결과 현재 상태로는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집단 전반의 소유구조, 특징,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자발적·점진적 소유구조 개선 유도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공시사항에 포함]

지주회사 제도는 대기업 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 개선하여 지분 소유구조의 단순·투명화*,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가능

* 일반 대기업 집단은 평균 5.29개의 출자구조,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은 3.07단계의 출자 구조로 수직적 출자구조 유지

– '99년 제도도입 이후 지주회사 수는 꾸준히 증가, 전체 대기업 집단(62개)의 25.8%(16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13.11월 기준),

– 지주회사 평균 부채비율은 37.2%로 매우 낮고(법상 제한 200%), 지주회사로 전환 대기업 집단의 평균 부채비율(32.4%)도 전체 대기업 집단 평균 부채비율(108.6%)보다 훨씬 낮아, 제도도입 취지에 따라 작동

연도	10년	11년	12년	13년
일반지주회사	54.9	43.3	44.8	39.3
금융지주회사	19.0	15.4	23.0	19.4
전체	50.4	40.0	42.5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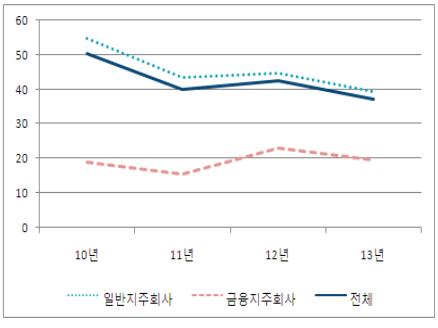

– 그러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은 계열사의 약 30%를 체제 밖*에 두고 있는 바, 지주회사 체제 내 계열사를 공시함으로써 자발적 개선을 유도할 필요

*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를 의미

– 전체 652개 계열회사 중 456개를 지주회사 체제 내에 보유, 나머지 196개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보유('13.9월 기준)

– 행위제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체제밖에 계열사를 두고 지주회사를 지배하거나(예: SK C&C), 총수일가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체제 밖에서 다수 보유하고 있어 터널링*, 부당지원 가능성도 상존**

* 소액주주나 채권자의 富가 지배주주에게로 이전되는 현상(tunneling), 특히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계열기업의 가치를 증대시켜 지배주주의 부를 증가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87개 중 63개사는 지주회사 체제밖 계열사

※ 지주회사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단위: %)

총수일가 지분율	20% 미만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100%
내부거래 비중	9.53	12.0	16.82	40.47	51.33

또한 추가 공시항목은 이미 공시되고 있는 자료에 각 '계열회사가 지주회사 체제 소속 회사인지 여부'만 분류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안으로 인한 기업 추가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지주회사는 소속회사 등에 대한 주식소유 현황 매년 공시

※ 전자 공시화면 (예시, (주)LG)

출자회사 \ 피출자회사			비금융회사							
			(주)엘지		(주)엘지화학		(주)씨텍		(주)행복누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장부가액		2,385						
	(주)엘지	보통주	93,789	0.05						
		우선주	6,810	0.21						
		합계	100,599	0.06	0		0		0	
		장부가액		1,277,994		15,484				
	(주)엘지화학	보통주	22,219,326	33.53	359,792	0.54				
		우선주			5,519	0.07				
		합계	22,219,326	30.07	365,311	0.49	0		0	
		장부가액				58,416				
	(주)씨텍	보통주			3,325,680	50.00				
		우선주			0	0.00				
		합계	0		3,325,680	50.00	0		0	
		장부가액				600				
	(주)행복누리	보통주			120,000	100.00				
		우선주			0	0.00				
		합계	0		120,000	100.00	0		0	

한편 소유지배구조 현황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두는 것은 과하다는 이해관계자 의견(전경련)을 반영하여 공정위는 공시범위를 축소조정*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견 없음

* (입법예고안)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 (수정안) 지주회사 체제밖 계열사 현황

따라서 지주회사 체제밖 계열사를 자발적으로 체제內로 이동시켜 대기업 집단의 소유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규제부담 수준에 비하여 규제 필요성 및 편익이 큰 바, 비중요로 검토

[금융보험회사의 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공시]

금융보험사가 타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기본목적은 지배목적 보다는 수탁자산의 수익성 제고에 있는바,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금융보험사가 계열회사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주회사로 운영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개요

- **(원칙)**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 행사를 금지
- **(예외)** ①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 ②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③상장계열사의 임원임명, 정관변경, 다른 회사로의 합병 등 결의시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15% 이내인 경우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 보험사 수 및 금융 보험사의 계열사 출자 규모는 지속 확대되어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증가 추세

– 20개 대기업 집단 소속 69개 금융보험사가 148개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1,771회의 의결권 행사, 이중 32회는 법위반('10.6.1~'13.3.31)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업 진출 증가*로 금융·보험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확장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공시 규정은 부재

* 대기업집단 금융·보험계열사 수 ('10) 98 → ('11) 136 → ('12) 162 → ('13) 164 → ('14) 145

공정위에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실태를 조사·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후 공표하고 있으나(2~3년 주기), 자본시장 참여자들에 의한 자율적 감시 장치로 작동하기에는 일정한 한계

* 공정위 점검결과에는 집단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횟수(합계)만 공표되고, 개별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는 공표되지 않음

주총별·안건별 '의결권 행사 현황(지분비율 등)'이 아닌, '의결권 행사 여부(주총시 의결 여부)'만 공시토록 하고 있어 기업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금융보험사는 의결권 행사 실태를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어 실제 공시의무 이행비용은 극히 제한적(공정위 조사결과 공개)

의결권 행사 여부 공시에 따른 추가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위법한 의결권 행사를 예방하고, 고객자금을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행사·확장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바, 적정·타당한 규제임을 감안하여 비중요로 검토

심사내용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강화**

* 과징금 부과 근거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旣 규정(법 제17조2 제4항)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법 제26조제1항제2·3·4호)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심사결과 **[금융사 보유금지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지주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억제를 위해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에 대한 행위를 규제(법 제8조의2)

* 지분율 및 출자단계 제한, 지배회사와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수직적 출자구조 유지), 금융보험사 지배 금지 등

행위제한 위반시 시정조치, 과징금,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과근거는 마련하였으나(법 제17조의2 제4항), 자회사의 금융보험사 보유를 금지하는 경우에만 구체적 부과기준이 누락되었는바, 입법불비를 보완할 필요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규정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유추 적용하였으나,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 발생

「SK Networks의 자회사 행위제한 위반」건

-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부과기준에 대한 근거규정 없는 상태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2012두20007, 2014.7.24 선고)

과징금 산정기준의 적정성·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회사의 금융보험사 보유금지'와 규제목적 및 부담수준이 유사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금지'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적정성 확보

※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또한, 법적 흠결상태를 개선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단순·투명한 소유구조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바, 규제의 타당성 갖춘 것으로 보임

[정액과징금 조정]

사업자단체는 복수의 사업자가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결합체로, 개별사업자보다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큼을 감안하여 제재수단 마련 필요

*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수 제한, 사업활동 방해, 불공정거래행위 조장

* (사)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및 의료 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단휴진을 결의하여,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진료여부 결정을 부당하게 제한함 →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원) 부과 ('14.5.2)

공정거래법은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 차등 적용, 이에 비례하여 정액과징금 산출하고 사업자단체를 통한 법위반 행위는 공동행위의 특성이 있어 다른 단독행위에 비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제재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 다른 법위반 유형과 비교할 때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정액과징금 상한이 낮게 정해져 있어 제재의 형평성·일관성 미흡

※ 법위반 유형별 정률·정액 과징금 비교

위반 유형	과징금 부과기준율	정액과징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24조)	위반기간 매출액 2% 미만	5억원 미만
재판매가격 유지행위(31조의2)	위반기간 매출액 2% 미만	5억원 미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28조)	**위반기간 매출액 5% 미만**	**5억원 미만**
부당한 공동행위(22조)	위반기간 매출액 10% 미만	20억원 미만

사업자단체의 특수성 및 위반행위의 파급력, 타 위반행위와의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정액과징금과의 비례관계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정액과징금은 상향은 제재의 형평성 및 일관성 제고 가능한 바, 타당한 것으로 보임

(9)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세부사항 고시 **강화**

- 위반액은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
- 위반유형은 '경제력 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로 분류

* 위반유형(6종) : 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②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③ 부당한공동행위·사업자단체금지 행위 ④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행위 ⑤ 부당한 지원행위 ⑥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단한 이익제공 행위

심사결과 공정거래법(순환출자 금지) 및 동법 시행령(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기술적인 세부규정으로 규제 필요성 인정

* 동양그룹이 건설 업종의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동양의 유상증자에 동양파이낸셜 대부가 참여하여 총수일가 등의 실권주를 인수('11.3.17), 순환출자를 형성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약 1,6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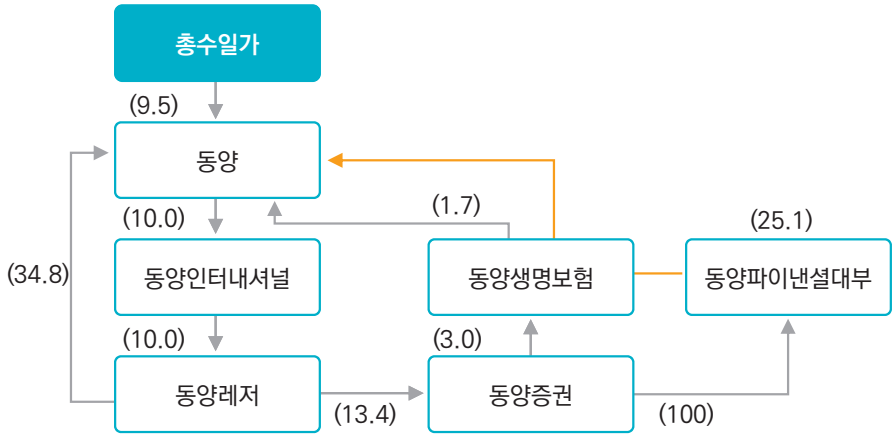

- 기존 순환 출자 공시의무부과와 함께 신규 출자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악화,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치·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 차단억제 효과 도모

* 순환출자 고리수('14.7.24, 법 시행일) : 97,658개→ 483개(△99.5%)

공정거래법(의원입법) 개정시 신규순환 출자의 예외범위*에 관해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참고 : 신규 순환출자 예외범위)하고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도 합의된 내용으로 이해 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동의

3. 금융위원회

한 아 름 사무관
T 044-200-2414 E hanarum@pmo.go.kr
이 경 환 전문위원
T 044-200-2413 E leekh0503@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감독규정, 여신금융전문업법 및 동 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32개 법령 개정안, 신설 85건, 강화 48건 등 총 13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33건 중 109건은 원안의결, 19건은 개선권고, 3건은 ·부대권고, 2건은 철회권고로 의결하였음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경제분과위원회 2014-01-10	원안의결 13 개선권고 4	신설 17 (중요 4, 비중요 13)
(2)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경제분과위원회 2014-02-07	원안의결 2 개선권고 2	신설 1, 강화 3 (중요 2, 비중요 2)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4-02-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경제분과위원회 2014-02-21	원안의결 7	신설 6, 강화 1 (중요 2, 비중요 5)
(5)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보험감독규정 개정안	경제분과위원회 2014-02-21	원안의결 11 개선권고 1	신설 3, 강화 9 (중요 3, 비중요 9)
(6)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4-03-14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7)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4-04-1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4-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5–0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본위원회 2014–05–16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신설 4 (중요 2, 비중요 2)
(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05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1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12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4–07–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은행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18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27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19)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1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본위원회 2014–10–10	원안의결 4 부대권고 2	강화 6 (중요 2, 비중요 4)
(2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경제분과위원회 2014–10–31	원안의결 6 개선권고 1	신설 2, 강화 5 (중요 2, 비중요 5)
(2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4)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본위원회 2014–11–14	원안의결 1 부대권고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위원회 2014-11-14	원안의결 7 개선권고 3	신설 7, 강화 3 (중요 3, 비중요 7)
(28)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고시 등 개정안	본위원회 2014-12-12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철회권고 1	신설 7 (중요 3, 비중요 4)
(29)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본위원회 2014-12-12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30) 보험업법 및 시행령·고시 등 개정안	본위원회 2014-12-12	원안의결 10 개선권고 4	신설 4, 강화 10 (중요 5, 비중요 9)
(31)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4-12-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2) 금융기관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4-12-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09 개선권고 22 철회권고 2**	**신설 85, 강화 48 (중요 30, 비중요 103)**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신설 17)

심사내용 상호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영위요건과 취급한도 **신설**

- 상호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근 2회계연도 연속 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2년간 "기관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25%까지만 할부금융업 취급 가능

심사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신규 취급업무로 할부금융업이 도입됨에 따라 건전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기준이 요구되며 특히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할부금융업자와 달리 수신을 기반으로 하므로 다소 엄격한 영위요건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개정안에 원안동의하되, 향후 업계의 환경변화 및 제도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일몰(3년) 설정

심사내용 감사(위원회)의 직무활동보고서 제출 **신설**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정기적으로 작성·제출해야 하는 직무활동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매분기 종료 후 익월말로 설정

심사결과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내부통제가 취약하여 대주주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감사(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운영기준 등 **신설**

-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되는 저축은행을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으로 함
- 여신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여신실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감리부서는 여신취급 및 심사 부문과 분리되어야 함

심사결과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가 실질적 독립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만 위원회 설치의무를 적용함으로써 규모가 영세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준 점도 감안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예금 등 및 후순위채권 권유 시 설명의무 강화 **신설**

- 거래자 보호, 신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예금 등이나 후순위채권을 권유할 때 고객에게 예금 등의 경우 이자·계약해지·거래제한 관련 사항을, 후순위채권의 경우 상품 주요 내용·투자위험·이자·계약해지 및 거래 제한·재무건전성지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함

심사결과 후순위채권 등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안할 때 저축은행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제한 **신설**

- 동일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유가증권 매입·보유 한도를 적용할 때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함

심사결과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현재와 같이 개별 저축은행 단위로 적용될 경우 무분별한 유가증권 투자 확대로 계열 저축은행들이 동반 부실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PF대출 취급기준 강화 **신설**

- 신용공여 한도가 적용되는 동일 부동산 PF사업 참여자를 동일 부동산 PF사업장 내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정하고, 동일 부동산 PF사업장을 감독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심사결과 동일한 부동산 PF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자들은 당해 PF사업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출한도를 제한하여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후순위채권 발행·판매기준 마련 **신설**

- 공모발행시에는 상호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에 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BIS 기본자본비율 8% 이상 및 신용평가 결과 투자적격등급 이상(BBB-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
- 사모발행시에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이들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법인(주로 계열회사)으로 정함

심사결과 후순위채권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선의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발행자격 및 판매방법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후순위채 발행·판매기준을 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하되, 향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일몰(3년) 설정을 개선권고 함

심사내용 집합투자자산 운용기준 등 **신설**

- 사모펀드 투자자가 저축은행 및 그 특수관계인(주로 계열회사)만으로 구성되거나, 사모펀드 내 저축은행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의 집합투자자산 운용기준을 마련
- 저축은행이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 또는 저축은행 및 그 특수관계인(주로 계열회사)이 펀드 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수익의 50% 이상을 수취할 수 있는 경우에 집합투자자산 운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저축은행이 집합투자재산을 사실상 직접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한도 제한 및 행위금지 규제가 적용하는 대상에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금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포함

심사결과 사모단독펀드 등만 규제하는 현행 규정을 악용하여 형식적으로 사모공동펀드를 설립하여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거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회피하는 편법사례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품광고시 세부 준수기준 마련 **신설**

-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신설된 상품광고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자율의 범위 등 거래조건을 확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왜곡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광고내용 등 기록을 보존토록 하는 등 세부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저축은행의 상품광고 규제를 신설하여 불완전 판매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기준 신설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해 원안의결

심사내용 광고자율심의 기본준칙 마련 **신설**

- 저축은행이 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앙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 시정조치 또는 사용중단을 요구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저축은행 중앙회의 사전 자율심의를 의무화한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광고자율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해 원안의결

심사내용 경영지도 대상 확대 등 **신설**

– 불법행위의 발생 또는 뱅크런의 우려가 있거나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를 받은 경우 사전적으로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경영지도를 위하여 파견, 상주하는 경영지도인에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을 추가

심사결과 불법대출에 대한 제보·정황이 포착된 경우 또는 뱅크런 등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경우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경영지도인을 파견하여 관리감독하기 곤란한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해 경영지도 대상 및 경영지도인의 자격조건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해 원안의결

심사내용 저축은행 중앙회의 자율규제 기능강화 **신설**

– 저축은행 중앙회의 업무범위에 저축은행 자율규제업무, 경영분석 및 지도 업무를 신설하고 자율규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의 확보,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

심사결과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부실이미지를 탈피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그간 역할이 미흡했던 중앙회에 자율규제 업무를 부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데다 전문이사를 증원(現 2명이내→개정 4명이상)하는 등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한 점을 감안해 중요규제로 분류해 원안동의하되, 중앙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향후 상향입법 조치를 할 것을 개선권고(재검토형 일몰(2년) 설정)

심사내용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 금융감독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요구 또는 감봉요구(감봉의 제재조치 포함)를 받은 날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저축은행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임원 결격사유를 추가

심사결과 타업권의 경우 문책경고 조치는 임원, 감봉 조치는 직원에 한정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 개정안은 문책경고 및 감봉 대상자에 임·직원 모두를 포함하여 타업권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개정안의 조문을 정비하여 '문책경고의 경우 → 임원'으로 '감봉의 경우 → 직원'으로 조문을 명확히 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신설**

– 현행 저축은행의 과징금은 금융기관의 검사·제재 규정 및 저축은행 과징금제도 운영 방안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

심사결과 통칙에 의해 주요 용어 및 적용방식을 설명하고 가중·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전체적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한 데다, 기준금액 산정시 최종 확인된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는 등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을 기준금액으로 적절히 산정하고 있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해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신설**

– 현행 저축은행의 과징금은 금융기관의 검사·제재 규정 및 저축은행 과징금제도 운영 방안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

심사결과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규제의 목적(저축은행의 건전성, 소비자보호, 감독기관 협조 등) 및 피해 정도(높음~낮음)에 따라 개별 위반행위 기준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적 금전대부 제재근거 마련 **신설**

– 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임직원에 대한 경고·문책 및 임원 해임권고 등 저축은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사금융 알선죄'를 추가

심사결과 저축은행 및 임직원의 의무부담은 경미한 반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다 두텁게 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기준 강화 **신설**

–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해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대주주적격성 심사시에도 동 방지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

심사결과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업의 인·허가,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승인 등 일반적으로 금융업법에서 요구되는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2)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신설 1, 강화 3)

심사내용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신설**

– 은행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거래상대방(법인·단체 및 임직원)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준법감시인에 사전보고하고 5년간 관련 기록을 보유토록 함

– 거래상대방(개인 포함)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익 제공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심사결과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시 5년간 기록보유 및 준법감시인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경영건전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부당한 이익거래 방지에 실효적으로 작용할지 여부 및 공시대상 이익의 기준 10억원이 적절한지 여부가 의문이며 공시를 통해 오히려 은행간 경쟁이 과열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음

⇒ 개정안에 원안동의하되, 향후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의 반응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효력상실형 일몰(3년) 설정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 **강화**

–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결과 등을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고려하도록 함

* 예외적이나 가능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기법

심사결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은행감독핵심준칙(The Basel Core Principles)에서 정하고 있는 위기상황분석 및 이사회·경영진의 참여 등 관련사항을 금번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연배상금 공시 강화 **강화**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또는 비교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연배상금 관련 사항(지연배상금률·지연배상금액 등)을 추가

심사결과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거래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연체시 예기치 못한 비용부담을 방지하고 은행간 비교공시를 통해 선택권이 제고되는 편익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 **강화**

– 주채무계열 편입기준을 현행 0.1%에서 0.075%로 하향 조정하여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

심사결과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적 및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추가부실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현행 기준상 주채무계열에 해당되지 않은 대기업의 부실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주채무계열 편입기준은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부분을 관리하고자 설정한 문턱(threshold)으로서 이를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지는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향후 경제상황 및 기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적 및 재무건전성 악화 등 추가부실의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경제상황 및 기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준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재검토형 일몰 설정(4년)을 개선권고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신설**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효력이 2013.12.31일에 상실되고 새로이 제정(시행 2014.1.1일)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령안은 舊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을 변경사항 없이 再제정한 사항임

심사결과 실질적으로 구법 시행령의 내용을 변경사항 없이 반영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4)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신설 6, 강화 1)

심사내용 출자금 환급시 조합 경영실적 반영 **신설**

-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조합 부실에 대해서 출자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금번 도입하는 규제 적용 대상을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규제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임이사의 직무 명시 **신설**

-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신용·공제사업을 상임이사가 위임·전결 처리하도록 명시

심사결과 타업권(농·수·산림조합)의 경우에도 상임이사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는 데다 특히 대형조합(총자산 1,500억 이상)의 경우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을 감안할 때 신용·공제사업에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외부감사 대상 조합 확대 **신설**

- 당해연도 금감원 검사를 받은 경우 외부감사를 면제하던 단서를 삭제하여 일정규모 이상(총자산 300억 이상)의 조합은 예외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심사결과 금감원 및 중앙회 검사(업무와 재산에 대한 검사로 법령준수여부 중심)와 외부감사(회계처리 적정성 등)는 그 방법과 내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데다, 상호금융은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외형확대·고위험 여신 취급 등으로 잠재적인 부실가능성 증가하고 있어, 당해연도에 금감원 검사를 받은 신협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확대 **신설**

- 중앙회가 부실관련자(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현행 대위변제에서 합병·경영정상화·계약이전을 포함하도록 개정

심사결과 현행법령상 중앙회는 조합의 대위변제, 합병, 계약이전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대위변제'에 한정하고 있어 중앙회 지원자금의 회수 가능성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가 미약한 실정이며, 타업권(농·수·산림조합 등)의 경우에도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중앙회의 자금지원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신설**

- 중앙회 이사회의 전문이사(단위조합 이사장이 아닌 이사) 비중 확대 (現 1/3 → 1/2)

심사결과 중앙회장은 중앙회 운영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인사 및 예산권 등)하고 있으나 내부견제 및 통제수단 미비하므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보 및 상호 견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신설**

- 타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신협법 준용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에 대해서도 금융위(금감원)가 감독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현재 금융당국은 중앙회와 조합간의 신용사업 관련 지도 및 감독업무의 적정성에 대하여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은 감독기능의 법상 근거를 명확화·구체화하고 금융당국의 사후감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강화**

–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금전·향응 제공 금지의 대상을 조합원(現 선거인)으로 변경하고, 임원선거의 선거운동 제한사항을 법률에 규정

심사결과 조합원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조합원의 권리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규정함은 타당하며,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 방지를 위하여 선거인을 조합원으로 변경할 필요성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5)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보험감독규정 개정안 (신설 3, 강화 9)

심사내용 보험중개사의 부당 중개 방지 **신설**

– 보험중개사(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료, 보유율 및 출재비율*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

* 보험회사는 보험판매에 따라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자기의 책임으로 보유하고(보유율) 일부는 재보험사에 출재(出再)하여 위험을 분담(출재비율)

심사결과 최근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을 중개하면서 원수보험사에 대하여 보험료, 출재비율 등을 강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신설**

–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보호법상 동의 취득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확인 의무 면제하는 한편 동의없이 타인에게 정보 제공시 제공사실 및 이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함

– 보험개발원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 현황을 제공·열람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Do-Not-Call)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처리결과 및 제3자(정보 제공자 및 수령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심사결과 금번 개정안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시 신용정보보호법상 동의취득 여부를 확인토록 하면서 각 호에서 불가피하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인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넘어서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정보주체를 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보험업법 및 시행령의 위임범위인 '개인정보의 제공절차 및 방법 등'을 넘어서 '불가피하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9-5조제1항에 대하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Do-Not-Call 제도를 규정한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는, 정보처리 정지 요구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통 및 이를 이용한 과도한 판촉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자기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써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하되, 향후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에 따른 시장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일몰(3년) 설정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신설**

-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법정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심사결과 보험업법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및 과태료 상한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법 §207④)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과태료 관련 규정이 없어 금번 시행령을 통해 위반행위별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퇴직자에 대한 임원결격 기간 차등화 **강화**

- 제재조치 상당통보*를 받기 전에 사임·사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임원의 선임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

*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보험업법 제135조)

	현 행	개정안
유 형	사임·사직	퇴임·퇴직
결격기간	사임·사직일로부터 3년	• 징계 종류별 결격기간을 준용 * 징계 종류별 결격기간 (감독규정) – 직무정지 종료일부터 4년 –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 – 정직기간 종료일부터 4년 – 감봉처분일부터 3년

심사결과 퇴직자의 내심의 의사가 반영된 개념인 사임·사직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임직원의 임원 선임을 적절히 제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에 비추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다, 은행 등 타업권의 경우에도 퇴임·퇴직을 임원의 결격사유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예탁 상시화 **강화**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가 예탁하는 영업보증금*을 영업 개시요건에서 영위요건으로 강화하고 영업보증금으로 예탁한 보증보험이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영업보증금을 재예탁하도록 의무화

* 영업보증금이란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가 모집 또는 중개를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심사결과 보험모집에 따른 손해의 일차적 배상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으며, 중개에 따른 손해배상은 영업보증금에서 우선변제 함에 따라 보험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의 과정에서도 예탁 필요성 인정되며, 또한 증보험 가입기간 만료시 대리점 및 중개사의 영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여력이 담보되지 못하므로 재예탁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영공시 확대 **강화**

–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현행 법인대리점의 공시항목 외에 공시사항 확대*

* 회사의 조직 및 경영지표, 보험회사별·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소속 보험설계사 현황 및 정착율, 최근 5년간 '주의' 이상 지적내용 및 사유

심사결과 법인보험대리점이 대형화하면서 보험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일부 대형 법인대리점에 대한 공시사항을 확대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다 의무부담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안내 **강화**

- 현재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대하여 중복계약 확인 의무에 예외를 두었으나 개정안은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도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보험업법 시행령은 단체 실손보험을 중복가입 확인의무의 예외로 규정함에 따라 보험료 중복 납부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체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납부를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험 통신판매 규제 강화 **강화**

- 통신판매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변액보험 및 저축성보험계약 외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중요사항 설명여부를 확인토록 함

심사결과 보험의 권유, 중요사항 설명 및 계약의 체결 등 보험계약의 모든 절차가 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신판매시 일정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및 불완전판매의 소지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험 모집광고 준수사항 강화 **강화**

- TV 등을 통해 보험상품 모집광고를 하는 경우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가 보험사에 불리한 사항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준수사항 신설

심사결과 보험상품 모집광고 시 보험사에게 불리한 사항은 설명 속도를 빠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에 비추어 광고 준수사항의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승환계약시 의사 증명자료 보관 의무화 **강화**

– 현행 보험업법은 승환계약*을 금지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증명되는 경우 또는 기존 계약과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본인의사 증명 및 비교안내 입증이 가능한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관리토록 함

*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

** 1개월 이내의 승환계약 :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승환계약 : 기존계약과 중요한 사항을 비교안내 하는 경우

심사결과 승환계약의 특성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계약체결이 허용된 이후에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보관·관리 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구속성 보험계약 규제 강화 **강화**

–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및 보험회사의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꺾기")에 대한 규제 강화

심사결과 금번 개정안은 예금의 구속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은행법령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구속성 예금 규제에 대한 은행법 관련규정 규제심사 결과 해당 내용에 대하여 원안동의(재검토 일몰 적용)로 심사한 데다 금융위도 보험업감독규정에 재검토 일몰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한도 확대 **강화**

– 보증보험*에 대한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한도 확대를 (현행) 50% 이내 → (개선) 150% 이내로 확대

* 보증보험이란 채무 불이행 또는 법률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채권자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신원보증, 채무이행보증, 선급금보증, 신용 등)

** 비상위험준비금이란 거대손실 발생시 당기 보험료 수입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우므로 매년 보험료수입의 일정액을 적립하는 준비금(화재 50%, 해상 50%, 자동차 40%, 보증 50% 등)

심사결과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증보험의 특성상 경기악화 시 다수의 보험금 지급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적절한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6)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신설 7)

심사내용 적격발행기관의 요건 설정 **신설**

- 발행기관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 또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목적으로 하면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마련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을 적격발행기관의 요건으로 설정

심사결과 커버드본드 발행목적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커버드본드 시장의 조성이 국내 장기물 채권시장 발전과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및 평가 **신설**

- 법 제5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에서 정한 커버드본드 기초자산집합(Cover Pool) 적격요건 중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각 자산의 평가방법을 정함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의 적격요건

구분(법 제5조)		시행령(안) 제3조
기초자산	주택담보 대출채권	1. 1순위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담보 대출 2. DTI 70% 이하 대출의 비중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1] 이상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위험관리를 위해 따로 정하는 사항 4. 고정금리 대출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 포함하도록 정할 수 있음
	선박, 항공기 담보 대출채권	1. LTV 70% 이하 2. 「(담보대출잔액+이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인 채권잔액)×1.1」 이상의 금액으로 보험계약에 부보 3. 금융위원회는 경영실태평가[2] 결과와 최소담보비율[3]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완화 가능
	기 타 우량자산	1. 위 적격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 또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2. 위 적격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3.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산
유동성자산		1. 만기 3개월 이내의 예·적금, 당좌대출, 어음, 신용카드 채권 등 단기에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가의 중앙정부 국채 3.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금융회사가 발행한 만기 100일 이내 양도성예금증서 4.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산

주: 1) (감독규정 예고) 20% 이상. 단, 지방은행은 적용 예외
2) 은행업 감독규정 제33조에 따름
3) 커버드본드 총채권액의 105% 이상(법 제5조제2항)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의 자산별 평가기준

자산	시행령(안) 제4조
적격요건을 충족한 주택담보대출채권	• 평가일 현재 원금잔액에 대해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함 – 3개월 미만 연체 : 10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체 : 70% – 6개월 이상 연체 또는 회수의문/추정손실 채권 : 0%
기타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산[1]	• 등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경우 최종시가 •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다음을 고려한 공정가액 – 취득가격, 거래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 제2항제3호에 열거된 자[2]가 제공한 가격, 평가당시 환율
파생상품거래계약을 한 외화표시 발행 커버드본드	• 파생상품거래계약에서 정한 환율. 단 커버드본드 일부에 대해서만 체결된 경우 나머지 기초자산집합에 대해서는 평가시 환율을 적용

주: 1) 단, 커버드본드 발행계획에 따라 환율 또는 이자율 변동, 그 밖의 기초자산집합 관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취득하는 채권은 평가액을 零(0)으로 함

2)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업자, 인수업 영위 투자매매업자 등

3)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산의 평가가치는 零(0)으로 함

심사결과 커버드본드의 우선변제권과 파산절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발행기관의 파산시에도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상환 받을 수 있도록 기초자산집합의 건전성이 긴요하며,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우량한 주택담보대출채권, 선박 및 항공기담보대출, 국공채 등이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집합을 구성하는 주요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발행계획의 등록 및 공시 **신설**

– 법 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의 커버드본드 발행계획 및 기초자산집합의 등록, 열람 및 공시 관련 위임사항을 구체화

심사결과 커버드본드의 우선변제권 보장을 위해 기초자산집합이 발행기관의 파산으로부터 절연될 수 있도록 기초자산집합의 등록·공시 등이 공적인 절차를 밟아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규제내용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채권발행 한도 **신설**

– 법 제7조(발행한도 등)에서 발행기관은 커버드본드 발행한도를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8%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시행령(안)은 이를 4%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위원회는 기초자산의 담보유지비율, 발행기관의 자기자본 규모, 수신현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커버드본드 시장이 아직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 시행령(안)에 발행한도를 하향조정한 것은 일반 채권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며, 금융위원회가 커버드본드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도 도입 초기 탄력적 운용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초자산집합의 관리 및 유지 등 **신설**

– 법 제8조(기초자산집합의 관리·유지)에 규정된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① 기초자산집합의 관리방법, ② 기초자산집합의 실사확인서 교부 등 관련 사항, ③ 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열람 방법 및 ④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업무 등을 규정

심사결과 동 규제는 법에서 정한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 관리방법, 실사 및 실사증명서, 증빙서류의 보관 및 열람 방법,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관련 업무 등을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기초자산집합의 분리관리 및 열람·공시, 기초자산의 담보가치 유지 등을 통해 커버드본드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험관리 및 공시 **신설**

– 법 제17조(위험 관리 및 공시)에서 발행기관이 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 사항 중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무를 구체화하여 발행기관은 ①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파생상품거래의 종류와 비율, ② 발행기관의 채무불이행, 등록 기초자산집합의 처분 또는 우선변제권자의 채권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가능성, ③ 그 밖에 커버드본드의 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하도록 함

– 아울러 발행기관은 분기보고서를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확인 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보고서 내용을 발행기관 결산보고서에 주석사항으로 분기별 기재하도록 하고 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기관은 중요사항발생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토록 함

심사결과 법에 규정된 위험관리 관련 사항 이외에 위임에 따라 파생상품거래 포함 여부와 비율, 채무이행 등 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사채 발행시 전자공시시스템(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sfer System) 공시 등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위험사항 공시 등에 따른 추가 부담도 미약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신설**

–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제26조(과태료)의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 금액, 방법 등을 정하고 경감·가중 사유를 구체화

심사결과 법에서 정한 과태료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경감·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7)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설정 **신설**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3조의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

(ⅰ) 총부채상환비율(DTI) : 20% (지방은행은 적용 제외)

(ⅱ)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최소 채권최고액 : 대출금의 1.1배

(ⅲ)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발행기관에 대해 상계할 수 있는 채권액의 기준 : ① 상계 가능 채권액이 주택담보대출채권액의 50% 이상인 대출의 비중이 ②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의 10% 이하

(ⅳ)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될 수 있는 외국 국채증권의 기준 :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표준신용등급 AAA~AA- 등급인 국가가 발행한 국채증권

(v)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될 수 있는 외국 금융회사 발행 양도성예금증서에 준하는 자산의 기준 : (iv)를 충족하는 국가의 은행 또는 증권회사로서 Fitch, Moody's 및 S&P로부터 부여받은 신용등급이 A등급 이상인 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것

(vi)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중 고정금리 대출의 최소 비중 : 30%

심사결과 커버드본드의 우선변제권과 파산절연 보장을 위한 기초자산집합 건전성 조항 중 제도도입 초기 탄력적 운용을 위해 시행령에서 위임한 기초자산(담보)의 건전성 조건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대출 상환으로 인해 커버드본드의 상환재원이 감소할 위험에 대비하여 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는 채권액의 최소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등록신청서류 및 변경등록신청서류의 제출 **신설**

–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발행기관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기재 사항을 열거

심사결과 발행기관이 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사항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 및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자격요건 **신설**

– 감시인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수탁관리인,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채권관리 등 여신관리 등의 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설정

심사결과 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다목 1)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을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실무경력의 범위와 기간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커버드본드와 유사한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에도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서 상기 요건과 거의 같은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중요사항 발생시 보고 **신설**

– 시행령 제9조(위험 관리 및 공시)에서는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여 채권 변제에 충당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발행기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감독규정에서는 ① 해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개요,

② 중요사항 발생일시 및 발생내용, ③ 조치사항 및 향후 처리계획을 금융위 보고사항으로 규정

심사결과 동 보고사항은 기초자산집합의 처분이 불가피한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보고내용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의무 등 **신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4.1월)으로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동 시행령 개정안은 '본인확인조치'의 방법 및 제외되는 사유 등을 정함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본인확인조치'의 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서, 현재에도 인터넷·전화(ARS) 등을 통한 대출신청, 예·적금해지의 경우 유선전화 또는 SMS를 통해 '본인확인조치'가 시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의 범위 조정 **신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대상중 가입기준(일반, 저소득)이 불명확한 임차농, 양식어업인, 선원 등의 가입기준을 명확히 설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일반/저소득 농어민 분류기준 변경

구분	현행	개정안	
		일반	저소득
임업인(산림·토지면적)[1]	가입대상 아님	10ha 이하	5ha 이하
임차농(임차농지면적)	모두 저소득	2ha 이하	1ha 이하
어업인(보유어선 규모)	무동력선 저소득	20톤 이하	5톤 이하
타인 농업종사자, 동력선 없는 천해양식	모두 저소득	모두 일반	

주: 1) 가입범위 확대로 비규제임

심사결과 농어민 재산형성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임업인)하는 한편 근거가 미약한 일부 가입대상의 기준을 법령으로써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저축가입제한 요건 **신설**

- 농업외소득이 있는 농어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 겸업 농어민의 저축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농업·어업·축산업·임업 외 분야의 상시근로자, 농업·어업·축산업·임업 외 다른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농어민의 신규가입을 금지

심사결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축가입이 배제되는 농어업외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정가입 여부를 둘러싼 분쟁소지 차단 및 특별장려금리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계약금액 설정 **신설**

- 특정금전신탁 계약금액의 건당 한도를 5억원 이내로 하고, 최소 계약금액을 5천만원(계약체결시 수탁액 기준)으로 설정

심사결과 상위법률의 위임근거가 불명확하여 금융위 스스로 위임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예고 중인데다,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도 최소 계약금액 제한이 투자자보호에 적합한 수단인지 소액신탁이 펀드처럼 '집합운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철회권고

심사내용 특정금전신탁의 운용 지정 방법으로 자필기재를 의무화 **신설**

-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을 취급할 때 반드시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금전 운용대상 상품의 종류와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특정금전신탁이 투자대상 자산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판매됨으로써 잦은 분쟁과 큰 피해의 요인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므로 투자자가 투자대상 상품의 위험성과 성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운용지시권을 보다

확실히 인식하게끔 하는 조치는 필요는 인정됨

그러나, 의무사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할 경우 위탁자의 신탁방법 결정에 대한 자율권과 운용지시권 행사의 효율성이 훼손되므로 불완전판매 방지와 효과적인 운용지시권 행사 간에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자필기재 대상은 원안을 유지하되 최초 계약시에만 적용하도록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개선권고

심사내용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계약에 대한 적정성 원칙 적용 **신설**

– 특정금전신탁에 파생상품 등을 편입할 경우 이를 적정성의 원칙*의 적용대상으로 명시

*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할 의무

심사결과 현행법상 특정금전신탁에 파생상품 등을 편입할 경우에는 동 원칙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데, 적정성의 원칙이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되었으므로 파생상품등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됨이 타당한 점을 감안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투자성 보험계약(변액보험)의 부당권유 금지 **신설**

–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이하 변액보험)의 '불초청권유 금지*' 예외인정 조항을 삭제하여 투자권유에 대해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힌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투자권유를 금지

*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법 제49조제4항)

심사결과 변액보험은 고객의 납입보험료 중 필요 사업비 및 최소 보장금액 보장을 위한 일부 보험료를 제외한 상당부분이 주식, 채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되는 고수익 추구의 非보장형 상품으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중도해지시 가입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저축성 보험 자체로서도 금융소비자의 보다 신중한 판단과 자발적 의사가 중시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3, 강화 1)

심사내용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 대상 확대 **신설**

-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사전제출할 때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주권상장법인 이외에 법 제7조 제3항이 시행령에 위임한 증권선물위원회앞 재무제표 제출의무 회사를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로 규정

심사결과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는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주총 6주전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령(안)은 법이 위임한 증권선물위원회앞 재무제표 제출 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로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의 외부감사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재무제표 제출에 따른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증권선물위원회 제출대상 재무제표 규정 **신설**

- 법 제7조 제3항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체화

심사결과 회사로 하여금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모니터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사인에 연대책임이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소득 기준금액 설정 **신설**

- 법이 감사인의 연대책임이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청구인 소득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訴 제기일 전 12개월간 1억원'으로 구체화

심사결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피해자의 편익이 보호되는 반면 감사인의 경우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손해배상 책무가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사인을 지정해야 하는 주식회사에 우회상장 및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상장을 예정하는 회사를 포함 **강화**

-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명할 수 있는 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를 포함하고 있는 바, 여기에 ① 우회상장을 하려는 주식회사 및 ②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장을 하려는 주식회사를 추가

심사결과 우회상장 예정 기업 등은 상장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 의무 및 지정감사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신규상장 예정 기업에 비해 투자자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는 있으므로, 투자자보호 강화와 함께 신규 상장기업과 규제정도에 있어 균형을 도모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1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노후실손보험 사업방법서 신고기준 **신설**

-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75세 이상을 보장하는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판매 또는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연령이 실질적으로 60세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존가입자 갱신시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빈발한 데다 고령층의 의료부담에 대한 민간영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75세 이상의 고령층을 보장할 필요성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노후실손보험 보험약관 신고기준 **신설**

-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험약관 신고기준을 설정하고 동 기준과 다르게 보험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함

심사결과 금번 개정안은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도입취지에 맞게 보험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보상한도 및 공제금액을 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실손의료보험 위험률 산정시 급여/비급여 구분 **신설**

- 실손의료보험 위험률을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함

심사결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로 인하여 비급여부분 본인부담률이 증가하는 등 비급여 의료이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위험률 구분의 필요성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응조치 기준 **신설**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사기이용계좌 발생 금융회사에 대해 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
  ① 반기별 총 계좌수 대비 사기이용계좌 발생 건수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및 피해환급금액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경우 및
  ③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아울러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고 근거를 마련

심사결과 금번 제정안은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별 발생건수가 아닌 총계좌수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금융회사별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상기 비율의 점검주기를 반기로 하여 시정조치의 적시성과 피규제자의 부담에 조화를 도모한 것에 비추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14) 은행법 개정안 (신설 2, 강화 2)

심사내용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이익제공 금지 **신설**

- 은행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해 다음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① 자기앞수표 선발행 등 은행이용자의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거나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② 은행이 거래상대방에게 통상적인 기준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 건전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 등

심사결과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현행 감독규정상의 불건전행위를 법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취지의 개정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금융사고 예방대책의 내부통제기준 반영 **신설**

- 은행이 지점 등의 관리, 은행의 자체 검사, 이용자 정보 보호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직원에게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아울러 금융사고 등 발생시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공시를 의무화

심사결과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현행 감독규정상의 자체 금융사고 예방대책 수립·운영을 법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및 은행의 손실가능성 축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은행의 자본금 감소행위시 승인 의무화(제10조) 및 보유자산의 유동성 제고 요구근거 마련 **강화**

- 은행이 자본금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기존 금융위 앞 사전신고에서 승인으로 자본금 감소요건을 강화
  - 자본금 감소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①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② 불가피하며 ③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심사결과 자본금 감소의 승인사항 전환 및 유동성 규제 근거 마련으로 인한 피규제자의 직접적인 추가부담은 없는 반면, 국제규약 이행에 따른 대외신인도 개선*, 위기대응능력 제고 등 기대편익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 현행법이 자본금 감소를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2013년 IMF/세계은행의 우리나라 금융부문 평가(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서 이를 금융감독원 승인사항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심사내용 은행 합병시 금융위원회 인가대상 확대 **강화**

- 은행이 다른 은행과 합병하고자 할 때와 마찬가지로 非은행회사와 합병하고자 할 때에도 금융위원회 인가를 의무화

심사결과 은행이 非은행회사와 영업을 합할 때 '영업 양수'의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한 반면 '합병'의 형식을 취할 경우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있게 되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합병시 예금자보호를 위해 합병은행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합병후 은행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은 법률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정하면서, 그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지 않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금융위 고시, 이하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일률적인 기준으로 과태료를 산정·부과해 왔음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행정벌 부과에 투명성·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과기준 을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률에서 정한 법정 최고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였고 규제의 중요성, 부과대상(법인/개인) 및 예상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별 가중치를 산정 후 이를 반영하여 부과금액을 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산정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16)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퇴직연금사업자의 금리 차별, 수수료 수취 금지 및 상품제공 금리 공시 의무화 **신설**

- 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제공기관으로서 타사업자에게 자신의 상품을 제공할 때에는 i) 타사업자 고객에 대한 금리차별 및 ii) 해당 사업자에 대한 상품제공 수수료 수취를 금지
-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하는 원리금보장 상품별 제공금리를 매월 공시하도록 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공시금리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시장왜곡 해소를 통한 건전한 시장구조 형성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퇴직연금신탁에 대해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의 예외적 허용 조항 적용을 배제 **신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퇴직연금신탁)도 원칙적으로 i)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ii) 신탁업자 및 계열회사 발행 증권 대상 투자한도가 적용되도록 함
- 단, '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퇴직연금신탁의 경우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 신설

심사결과 고금리 보장 위주의 유치경쟁 해소, 신탁업자의 건전성 훼손 방지, 불공정거래 등 퇴직연금 시장의 구조왜곡 시정 등을 위해 동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탁의 성격, 운용상 특징 등을 감안하여 퇴직연금신탁에 대한 규율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4)

심사내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자격 설정 **강화**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펀드)는 투자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일반 사모펀드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헤지펀드)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통합하면서 적격투자자 요건을 정함

사모펀드의 적격투자자 요건

(현 행)		(개 정)	
일반 사모펀드	•제한 없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헤지펀드)	• 전문투자자[3] •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3]
헤지펀드	•국가, 금융기관, 기금, 상장법인 등[1]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투자자[1]		
사모투자 전문회사 (PEF)	•법인 20억원, 개인 10억원[2]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주: 1) 시행령 제271조의2제1항 2) 시행령 291조제3항
3) 상세 자격은 대통령령에 위임

심사결과 사모펀드 활성화 조치 과정에서 손실 감내능력이 취약한 일반 투자자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며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에서 배제되는 일반 투자자의 대체 투자수단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순자산대비 차입금·보증액 및 파생상품투자위험 평가액 비율 규제 **강화**

- 헤지펀드의 금전 차입비율 한도 산정시 분모를 현행 자산 → 순자산(자본)으로 변경하고 분자에 기존 차입금 외에 채무보증액·담보가액 및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추가

심사결과 금번 개정안은 현행 규제가 규제로서의 실익이 없고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용인하게 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모펀드 재산의 신탁기관 신탁의무 부과 **강화**

- 현재는 사모펀드중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고객의 자산을 신탁업자에게 보관토록 하는 의무가 부과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PEF를 포함한 모든 펀드로 하여금 고객 자산을 신탁업자에게 보관토록 규정

심사결과 펀드로 하여금 고객 자산을 신탁업자에게 분리 보관토록 한 것은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재산을 유용하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인출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객 자산 유용 등의 방지는 공·사모펀드 여부를 불문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이며, 기존에 신탁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PEF도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재산을 유용하거나 동의 없이 인출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펀드와 동일하게 규율해야 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원 제한 **강화**

- 현재 사모펀드 중 '일반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계열사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PEF'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실정으로, 개정안은 PEF에 대해서도 업무집행사원의 이해관계인과 PEF간 거래를 제한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PEF를 통한 계열사 지원을 원칙적으로 제한

심사결과 PEF의 계열사 지원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기업집단이 PEF를 활용하여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우회지원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운 데다, 최근 일부 대기업이 계열사 경영권을 PEF에 매각하면서도 재매수 기회를 노려 계열사 매수자인 PEF에 투자자로 참여해 우선매수권을 확보하는 이른바 '파킹성 매각'이 발생한 사례 등에 비추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19)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의무화 **신설**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금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 등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협약 의무가입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심사결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미가입한 금융기관 보유 채권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협약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설**

- 동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外에는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사용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 및 제도 등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

심사결과 서민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 지원상품의 명칭을 도용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오해를 악용한 피해가 우려됨을 감안할 때,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필요성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강화 6)

심사내용 회계감사인에게 연대책임이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청구인 소득의 기준금액 설정 **강화**

- 자본시장법 개정(2014.1.28일)으로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종전의 '연대책임'에서, 고의가 있는 경우 연대책임을 유지하되 고의가 없는 경우는 귀책비율에 따른 '비례책임'을 지는 것으로 변경하되, 동 변경으로 손해 입은 자의 배상청구권이 제약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배상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대책임을 유지하도록 함

심사결과 회계감사인의 연대책임이 유지되는 기준금액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무는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완화되면서도 소득이 낮은 피해자의 편익은 보호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금중개회사의 콜거래 중개범위 제한 **강화**

- 현재 자금중개회사가 금융기관의 콜거래를 중개·주선·대리하는 데 있어 일부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데서, 은행과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콜거래 중개 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

심사결과 장기적으로 콜시장을 은행의 지급준비금 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경로를 다양화하여 특정 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큰 점이 인정되는 데다 정부가 은행간 지급준비금 시장으로서 콜시장의 기능을 확립하고 여타 단기자금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랜 검토를 거쳐 2010.7월 이후 콜시장 개편(증권사 콜차입 제한)을 포함한 단기금융시장 개편을 추진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해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하되, 중소형 증권사들의 자금조달비용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콜시장의 여건변화 및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일몰(3년)설정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신탁업자와 그 대주주 간 불공정거래 차단 **강화**

-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금지되는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정

◦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업무절차나 기준, 시공사 등 선정 관련 기록의 보관·유지에 관한 사항

◦ 금지되는 불건전영업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신탁업자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를 신탁사업 관련 시공사 또는 용역업체로 선정하거나, 대주주의 임·직원을 임원으로 교류하게 하는 행위

심사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의 대주주와의 부당거래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건설계열사를 보유한 회사가 신탁업자의 대주주인 경우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등 이해상충 개연성이 상존함에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한 바, 이에 대한 보완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기준에 레버리지비율 등을 추가 **강화**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기준으로,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과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에 '당기순손실' 및 '레버리지 비율'을 추가

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조치	기준	현 행	개 정 (안)
경영개선권고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미만	100% 미만[1]
	경영실태평가	3등급(보통) 이상이지만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 이하	좌동
	레버리지비율	–	**'900% 초과 & 2회계년 연속 당기순손실' 또는 1,100% 초과**
경영개선요구	영업용순자본비율	120% 미만	50% 미만[1]
	경영실태평가	4등급(취약) 이하	좌동
	레버리지비율	–	**'1,100% 초과 & 2회계년 연속 당기순손실' 또는 1,300% 초과**

주: 1) 금융위원회는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순자본비율'로 개편할 예정이며 개편된 순자본비율을 기준으로 변경예정인 적기시정조치 기준 참조)

심사결과 증권사에 대해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수준도 현 증권사 영업관행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하되, 증권사의 영업환경·행태 변화 가능성, 타업권(은행) 및 주요국의 도입 논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적 규제수준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 (2년) 설정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계열사 증권 거래의 공시 강화 **강화**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 기재사항으로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하는 경우 그 내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심사결과 계열사 증권 취급내역을 상세히 공개토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해당 증권의 리스크 등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계열사 증권 취급행태가 자율적으로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금융투자업자 및 그 계열회사 발행 후순위채권의 판매·운용 제한 **강화**

- 현재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을 '투자권유' 하거나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신탁·일임재산에 편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고위험 채무증권 등'의 범위에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채권도 포함

심사결과 후순위채권은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 채무변제가 후순위로 이뤄지므로 변제 가능성이 낮아 신용위험이 그만큼 높은 채권이므로, 후순위채권의 발행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동 채권을 판매할 경우 채권 특성에 기인한 신용위험 정보는 축소 제공하고 고금리 등 장점만을 부각시키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2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고객정보제공절차의 구체화 **신설**

-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목적에 한정하여 그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안)은 내부 경영관리의 정의, 고객정보 관리 방법·절차를 정하는 대상,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주기·방법 및 동 법상 금융지주회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감독규정(안)에서는 고객정보제공의 방법 및 절차 및 업무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

심사결과 금번 시행령(안)의 개정내용은 대부분이 법이 제한한 바를 구체화한 것으로 그 자체로서 피규제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감독규정 개정(안)도

법 개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한을 두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2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신설 2, 강화 5)

심사내용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신설**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요건 중 제재조치 대상이었을 퇴임·퇴직 임직원의 임원 임용 금지 기간을 현행 통보된 날로부터 '3년'에서 '4년'으로 확대

심사결과 재직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는 임원 자격 요건을 바로잡고자 하는 개정으로서, 규제회피 가능성을 없애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 구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신설 **신설**

- 법에 규정된 과태료(제72조제1항) 부과에 대해 위임 범위(500만원 이하) 내에서 규제목적, 위반행위 발생 빈도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아울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제72조제1항)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 위법행위 및 최고한도(500만원)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 일률적으로 법정 최고액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산정해오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반행위별로 법이 정한 최고한도 내에서 과태료 수준을 정하되 동기와 결과에 따라 가중·감경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합리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非신용카드업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강화**

- 현행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신용카드업자'로 한정된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자산 2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체로 확대

심사결과 할부금융업자, 캐피탈사 등 비신용카드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영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비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부과는 규제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타 입법례 등에 비추어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출광고 기준 강화 **강화**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광고시, 광고내용에 최저·최고 대출금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표시방법에 있어 대출금리, 연체료율, 취급수수료 등 요율과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 및 노출시간을 신설

심사결과 대출상품 광고가 소비자의 이해 제고 및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신용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일반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대출상품의 이자율이 은행권에 비해 현저히 높아 광고 내용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신용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조치 위반시 제재 강화 **강화**

- 금융위원회가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신용카드 이용한도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제재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강화
  ◦ (업무정지 기간) 3개월 → 6개월, (과징금) 5천만원 → 1억원

심사결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의 최대 영업정지 기간(3개월) 및 과징금(최고 5천만원) 등 행정제재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규제수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조치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요건 강화 **강화**

-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 조건을 천재지변 또는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 또는 제휴업체의 도산 및 경영위기, 그 밖에 부가서비스 유지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한정

심사결과 부가서비스 유지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서비스를 지나치게 짧고 과도하게 변경하는 것은 소비자의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이를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하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부가서비스의 전반적인 축소 등에 따른 비용이 과도한 것으로 여겨져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아래사항을 개선권고

1.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의 산정기준을 '유효기간'이 아닌 '신용카드 출시일'로 하되 의무유지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2. 신용카드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게될 경우를 서비스 변경 가능 조건으로 추가
   - 다만 이 경우 변경사유 및 내용을 변경예정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고지하도록 함
3. 카드발행시 출시일자, 의무유지기간을 공시하도록 함

심사내용 영세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의 상한 세분화 **강화**

- 신용카드업자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를 확대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 확대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 (변경)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과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인 "중소가맹점"
  ◦ 우대수수료율 인하

  (영세가맹점)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 이하 ⇒ 평균 수수료율의 80%와 수수료율 1.5%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

  (중소가맹점) 수수료 제한 없음 ⇒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과 2.0%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

심사결과 신용카드 가맹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월적 지위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형 가맹점과의 요율 격차 축소, 영세-일반 가맹점 간의 단계적 수수료율 체계 정립 등 기대편익이 우월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2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별화·구체화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금융회사 임원 또는 직원이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시	3,000만원
금융회사 임원 또는 직원의 실명확인의무 위반시	500만원
금융회사 임원 또는 직원이 금융실명거래법상 금지행위 설명의무 위반시	50만원
금융회사 임원 또는 직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의무 위반시	300만원
금융회사 임원 또는 직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기록·관리의무 위반시	500만원
금융회사등에 대한 과태료	1,000만원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력 제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24)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신탁계약에 의한 퇴직연금 운용시 자사 고유계정 편입금지 **신설**

– 현재 퇴직연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용하도록 계약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위탁 적립금의 50%를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데서, 2015.1.1일부터 6.30일까지는 자사상품 편입비율 한도를 적립금의 30%(개정안 부칙)로 한 후, 2015.7.1일부터 이를 금지

심사결과 원리금 보장 퇴직연금신탁의 자사 상품 편입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 수익권 보호, 연금 수익률 제고, 퇴직연금 시장의 불공정성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25)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중소기업 여신운용시 기술신용정보 반영 의무화 **신설**

- 은행이 여신을 위한 신용리스크 평가에 있어 기업의 기술력을 거의 반영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갖추고 있더라고 열악한 재무여건 등으로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운용시 신용리스크 평가에 있어 기술신용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심사결과 기술정보DB 구축을 통해 기업이 가진 기술과 신용리스크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은행의 여신취급시 기술신용정보 활용 의무화를 통해 공신력을 가진 평가지표가 확보된 점 등을 감안해 도입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2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 **강화**

- 일정한 재무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토록 규정토록 하는 한편, 감리결과 분식비율이 높은 유형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

  * ①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
    ②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200% 초과
    ③ 이자보상배율(영업수익 ÷ 이자비용) 1 미만

심사결과 외부감사 대상법인 현황 및 재무구조에 따른 분식회계 유인을 감소시키려는 제도의 취지 및 실효성을 고려할 때 규제의 적정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개정안에 대해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하되, 향후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운영 현황 및 기업의 재무상태 등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무기준(개정안 제4조제7항)'에 대하여 재검토일몰(1년) 설정을 부대권고함

심사내용 감사보고서 제출 강화

- 감사보고서 첨부서류에 외부감사 참여인원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직급별 감사시간 및 총 감사시간을 기재토록 하는 한편 감사내용은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재

심사결과 감사보고서에 감사인의 감사 실시 내용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이해관계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감사실시 내용을 공개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 취지로 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7, 강화 3)

심사내용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가입 의무화 신설

-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이행이 담보되도록 대부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

심사결과 사금융 이용자 증가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수취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부업자에 대한 보증금(또는 보험) 도입 취지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업태에 따라 적용대상을 달리하여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요규제로 분류

⇒ 보증금 예치 및 보험가입제도에 추가하여, '공제가입'방식을 도입하고, 보증금 제도의 필요성이 낮은 '대부전문업'은 보증금(또는 보험)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신설

- 광역대부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요건을 기존 대부업자의 자격에 추가로 규정하고, 「대부업법」(제12조제1항 각목)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후 대부업자(지역·광역)의 임원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을 확대(2년 → 5년)

심사결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광역대부업자의 경우 복수의 시·도에서 영업하거나 대기업·금융기관 계열의 자금조달·운용회사이므로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여 규제함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부업 이용자 보호 기준 신설 **신설**

– 광역대부업자에 대해 법령 준수, 고객보호 등을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하고 감사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두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광역대부업자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건전한 영업 및 고객보호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도록 한 것은 대부업자의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책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광역 대부전문업자에 대한 총자산 한도 설정 **신설**

– 광역대부전문업자에 대해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총자산 한도'를 설정

심사결과 대부업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형 대부업자가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 상존하므로 자기자본 확충 노력 없이 자산규모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대부전문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산규모 규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신설**

– 대기업에 속하는 대부업자가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액의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

심사결과 계열 대부업체가 규제를 회피하여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창구로 기능할 수 없도록 이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와 대주주 및 그 계열사 간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사상호 사용금지 **신설**

– 대부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에 '대부', '대부중개', '대부추심', '소비자금융'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심사결과 등록된 대부업자가 그 상호명에 '대부', '대부추심', '대부중개' 등 특정문자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대부업자가 일반 금융기관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한 반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들 문자를 사용하는 데 대한 규제조항이 없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협회 검사 및 제재 **신설**

- 법률에서 정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① 협회에 대한 주의·경고,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 요구
②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③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요구, 직원의 면직 요구
④ 6개월 이내의 업무 일부정지

심사결과 대부업협회에 대한 검사 및 임·직원 제재의 근거 등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협회의 역량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

다만 대부업협회는 설립 목적 및 업무의 공공성에 따른 협회 및 임원에 대한 검사·감독권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는 협회 내에서의 직원의 책임과 역할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제외할 것을 권고함

심사내용 대부업의 등록요건 강화 **강화**

- 순자산액 또는 자기자본 등을 대부업 등록 요건으로 도입
  ① 등록업무 단위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순자산액 또는 자기자본
  ② 대부업 관련 교육 이수 등 인적요건 및 고정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도록 함
  ③ 임직원 자격요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을 규정
- 또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광역대부업자의 대부업 외 겸업을 제한

심사결과 대부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전국을 영업단위로 하는 대형 대부업체의 증가로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게 감독·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중요규제로 분류

⇒ 법인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시장 여건 및 타업권의 등록요건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개인대부업자의 경우 법인대부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바 개인대부업자와 법인의 자본금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개선권고

⇒ 아울러 대부중개업은 업태의 본질적 성격 및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최소자본금 등록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대부중개업자는 최소 자본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업무보고서 제출 **강화**

– 대부업자로 하여금 현행 영업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가 아닌 업무보고서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

심사결과 현행 영업행위 위주의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위원회가 등록기관으로 포함된 데 걸맞은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대부업자 현황 및 경영실적 등을 포함하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 강화 및 과징금 신설 **강화**

– 금융위원회에 대해 동 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및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행정조치 또는 조치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에게 총자산 한도 초과 광역대부업자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신설

심사결과 광역대부업자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28)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고시 등 개정안 (신설 7)

심사내용 기업대상 여신전문금융업 외의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제한 **신설**

– '기업여신전문금융'은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을 대상으로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는 자로 영업대상을 제한하고, 기업이 아닌 자에 대한 시설대여, 할부금융, 대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개정안의 '용어(제2조제9호)' 및 '정의(제2조제9의2호)'는 기업만을 위한 여신 금융으로 지나치게 한정하여 해석될 수 있으므로 중요규제로 분류

⇒ '기업여신전문금융'을 '기업지원여신금융'으로 하고, 그 정의는 '기업을 대상으로'에서 '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는 자'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현행과 같이 개인대출에 대해서만 적절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중요규제로 분류

⇒ 개정안 제46조제2항제2호는 '기업지원이 아닌 시설대여, 할부금융 또는 대출'로 하고, 현행법 제47조제2항은 별도 항을 신설하여 '제2항제2호에 따른 대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신용카드업자와 기업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겸영 금지 **신설**

- 신용카드업을 허가받거나 기업여신전문금융업으로 등록한 경우 허가 또는 등록한 업무 외의 여신전문금융업 허가 또는 등록 금지

심사결과 카드사와 非카드사 간의 겸업제한 및 금융위원회 등록을 통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었던 자의 신용카드업 겸업제한은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라는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규제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경쟁제한 성격이 강하여 여전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철회권고함

심사내용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자격 강화 **신설**

- 신용카드 회원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모집인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5년간 제한

심사결과 일부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큰 사회적 파장이 야기된 가운데 정보유출 과정에 모집인이 연루되거나 해당 정보가 모집인에게 전달되어 영업에 이용된 것으로 분석된 바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신설**

- 대주주 발행증권 보유한도 신설 및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축소
  - **(증권보유)** 여전사가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여 대주주 발행 증권 보유하는 것을 금지
  - **(신용공여)** 여전사가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 에서 50%로 축소
- 해당비율을 위반하여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을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심사결과 대주주가 여전사를 사금고화하는 경우 여전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광고의 자율심의 의무화 **신설**

- 여전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려는 경우 계획서와 광고안을 여신협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여신협회에서 여신전문금융사의 광고에 대하여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심사결과 과장 허위광고는 이용자에게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을 축소시켜 바람직한 소비자 선택을 저해하는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광고내용을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여신금융 상품 설명의무 강화 **신설**

- 여전사와 모집인은 상품의 신청인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약관, 수수료율 등 중요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여전사는 신청인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함

심사결과 여신금융상품의 특성에 비추어 채무이행 등 소비자의 이행의무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는 바 금융소비자는 반드시 해당상품에 대한 내용 및 위험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나, 상품 가입단계에서 고객에 대한 혜택 등을 강조하고, 대출금리 등 주요거래조건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는 우발적 상품 가입 등 합리적이고 신중한 선택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동산리스 취급 제한 **신설**

– 부동산 리스를 취급할 수 있는 여전사의 범위를 '기계·설비의 리스 잔액이 총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업체로 제한

심사결과 부동산리스 활성화 대책 이후, 변경된 제도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고려하려는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적정한것으로 판단해 원안의결하되 다만 규제도입 이후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존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 일몰(2년)을 설정하도록 개선권고

(29)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조합설립 인가 **강화**

– 신용협동조합은 설립시, 인적·물적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출자능력 등 재무상태 기준과 같은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이 중 '전문인력'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모에 따른 인원 확보와 實경력자 채용, 직원에 대한 교육 의무를 규정

◦ 조합설립 교육과정 이수대상 : 임원 → 직원으로 확대

◦ 전문인력 요건 구체화

심사결과 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규모에 따른 적정 인원 및 실경력 기간 등은 규정이 모호하고, 자의적 판단 소지가 있어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중요규제로로 분류하고 신용협동조합 감독규정 개정안 제4조의2 제1호 및 제2호 가, 다목*의 삭제를 권고함

* 감독규정 개정안 제4조의2(전문인력의 세부요건)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확보할 것

가.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

다. 기타 경력이나 능력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30) 보험업법 및 시행령·고시 등 개정안 (신설 4, 강화 10)

심사내용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신설**

-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 등을 외부의 제3자(독리계리업자, 보험요율산출기관)로부터 검증받도록 의무화함

심사결과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하여, 보험업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간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기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가정기준이 상이하였으나,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II)가 2018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사의 혼란을 방지하고, 검증수준을 객관화하여 대외적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험금 지급 공정성 제고 **신설**

-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권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정의하고 보험금 청구 및 지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씩의 과태료 부과하는 한편, 법률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제3자도 보험가입 정보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개정안의 불공정행위의 금지사항은 보험계약 당사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공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 상대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피보험자가 치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경우 이를 제3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협의 및 공동검사권 신설 **신설**

- 공제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협의요청 요건에 재무건전성을 추가(현행 기초서류 관련 사항)하고, 공제 소관 부처와의 공동검사 요구권의 근거를 마련

심사결과 공제의 재무건전성 유지, 공제 부실화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선제적 예방 등을 위해 적정 수준의 관리·감독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요규제로 분류

다만 주무부처와의 갈등소지 차단을 위해 '공동검사 요구'의 이유를 '공제업의 재무건전성'으로 제한(안 제193조제2항)하도록 개선권고하는 한편 중복검사로 인한 공제협회의 부담방지를 위해 주무부처와의 관련 협의 및 조정장치를 마련하도록 부대권고함

심사내용 공인계리사에 대한 교육 의무화 **신설**

– 공인계리사 고용기관의 공인계리사에 대한 보험계리 관련 교육 의무화

심사결과 국내 공인계리사가 저성장, 인구 고령화 등 국내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연수를 통해 자질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개발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강화**

– 특정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 의무, 보험계약 이전시 계약자 통지 의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 안내의무를 신설

심사결과 현행법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동 의무를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험광고에 관한 보험협회의 책임 및 과장광고 규제 강화 **강화**

– 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 작성시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협회의 광고심의를 마친 광고가 위법하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협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사의 모집광고시 과장광고 및 금품제공사실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행위를 금지

심사결과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기준을 사전인가 받도록 하는 것은 보험광고 심의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심의한 광고가 위법하다고 하여 '협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금품제공사실의 음성안내를 금지하는 것은 정책효과의 실효성이 불확실한 바,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철회권고

심사내용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 및 이력확인 의무화 **강화**

-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를 위촉·등록시 모집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위촉 여부 결정에 반영토록 함

심사결과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현황 및 제재 이력 등 모집이력을 확인하여 보험모집 위탁계약 체결 시 확인·반영하도록 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보험 모집 질서를 건전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험상품 및 보험대출의 비교공시 강화 **강화**

-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중요정보로서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하고 청약철회비율 및 보험회사별 소송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추가

심사결과 금번 개정안은 대출금리 등 중요 조건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왜곡된 선택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대출금리에 대한 비교·공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또한 선택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출상품에 대한 적절한 금리 설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험이해도 평가 범위 및 대상 확대 **강화**

- 보험약관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한 약관이해도 평가제도 시행 중이며, 이해도 평가 대상을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까지 확대·적용

심사결과 주로 모집인의 가입권유 및 설명을 통해 계약을 하게 되는 보험상품의 특성을 감안할 때 권유단계부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도 이해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소비자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거나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 등이 미흡한 경우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험회사, 대리점, 설계사 등에 대한 제재 강화 **강화**

-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등록제한 사유를 추가
-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이 금지행위를

규정한 조항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건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자료 제출 및 검사, 경고 및 주의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해 제재를 강화
- 기타 손해사정사의 명의대여 금지 및 위반시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 마련 등

심사결과 제재 실효성 강화 및 입법상 불비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주주 등과의 거래 규제 강화 **강화**

-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거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 거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거래를 금지하는 요건을 강화
- 대주주와의 거래시 이사회 재적 전원의 찬성을 요구하는 거래의 대상을 현재의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 채권·주식 취득뿐 아니라 용역 및 자산 거래를 추가
- 대주주와의 부당거래시 보험회사에 대한 형사처벌 상한 및 과징금 한도 강화

심사결과 현행 규정의 '뚜렷하게 불리한'의 조건을 '불리한'으로 개정하는 것은, 거래당사자의 자유적 판단에 따른 거래까지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상당히 또는 현저히 불리한 경우'의 거래를 제한하려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공정거래법 등 타 법 사례를 참고하여 개정할 것을 개선권고 함

자산 및 용역거래시에도 '이사회 전원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제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전원의결'보다 '완화된 의결요건'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 함

심사내용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보험사 설립 인수시 주요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대주주요건 심사 의무화 **강화**

-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보험사를 설립 또는 인수하고자 할 때, 현행 PEF의 업무집행사원뿐 아니라, 주요 유한책임사원(LP)에 대해서도 대주주 요건 심사 근거를 마련

심사결과 동 규제는 보험회사 설립 또는 인수에 따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우회여지를 차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험 해약 환급금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강화**

- 저축성보험의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험료 환급금)이 반드시 납입보험료를 초과해야 하는 시점을 새로이 설정
- 연금저축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 산출시 적용하는 연납순보험료 대비 비율을 4%(무배당 연금저축보험은 3%)로 신설

심사결과 보험계약자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보험회사의 판매위축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환급률 100% 도달 기간을 '1년이내'에서 '1년을 초과하도록 정하되 사업비 축소비율이 절반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다만 표준해약공제액 산출시 적용비율을 4%로 한 것은 현행 비명시적규제에 따른 표준해약공제액이 일반 저축성보험의 50% 수준인 데 반해 70% 수준에 해당하여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완화된 것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설계사의 적정 취급유인 보장 등을 통해 가입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연금저축보험에 부과되는 세제혜택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적립기준 강화 **강화**

-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 및 한도를 상향조정해 비상위험준비금이 경과보험료의 150%(현행 50%)에 이를 때까지 보유보험료에 15%(현행 6%)씩 곱한 만큼 적립하도록 함

심사결과 현재 비상위험준비금은 5천억원 수준으로 손해율 악화에 대응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며, 보증보험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손해율이 크게 악화되는 만큼 충분한 보험금지급여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31)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경영지도비율에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도입 **강화**

- 은행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지도비율 중 유동성 관련 비율을 현행 "원화유동성비율 100% 이상"에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100%(외국은행지점은 60%) 이상"으로 변경
  - 다만, 2015년에는 외국은행지점과 산업은행·기업은행·농협·수협은 각각 20% 및 60%, 여타 은행은 80%를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2019년부터 위 100% 및 60%를 적용

심사결과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2013.1.7일 LCR 기준서 최종안을 발표하여 2015년부터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최저 60% 수준에서 도입하고, 2019년부터는 100%를 적용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금번 개정은 이러한 국제기준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의 생존여부는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뿐만 아니라 단기 현금소요에 대한 대응력에도 크게 좌우되는 점 등을 감안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32) 금융기관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금융기관 분담금 추가징수 **신설**

-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특정회사에 투입된 검사 인력이 금융 권역별 평균을 크게 초과(상위 0.1%)한 경우 금융회사의 해당분담금을 추가 징수

심사결과 최근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특정 금융사에 검사인력 집중투입됨에 따라 검사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바, 해당기업이 이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징수(수익자 부담원칙)하거나 관련 비용의 사후적인 정산을 통해(비용보전의 원칙) 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4. 금융감독원

한 아 름 사무관
T 044-200-2414 E hanarum@pmo.go.kr
이 경 환 전문위원
T 044-200-2413 E leekh0503@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등 10개 시행세칙 개정안, 신설 17건, 강화 6건 등 총 2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3건에 대해 원안의결로 의결하였음

금융감독원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1-0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3-21	원안의결 5	신설 4, 강화 1 (비중요 5)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고시 등 개정안	경제분과위원회 2014-04-04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05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5)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경제분과위원회 2014-06-13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6)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0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7)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18	원안의결 8	신설 8 (비중요 8)
(8)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2-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23**	**신설 17, 강화 6 (중요 2, 비중요 21)**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금리연동형 상품 듀레이션 산정방식 개선 **신설**

RBC(Risk Based Capital)제도* 하에서 금리위험액 산정에 적용되는 부채듀레이션 중 금리연동형품의 듀레이션을 공시기준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간 금리차를 기준으로 현행 2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

*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위험(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위험)을 정교하게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RBC 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자본적정성 평가

심사결과 국내외 저금리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이 낮게 형성되면서 금리연동형 상품의 듀레이션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부작용 해소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험위험액 산출기준 개선 **신설**

- RBC제도 신뢰수준 상향조정(現 95% → 개정 99%)의 일환으로 지급여력기준금액 中 보험위험액(보험부채 보유에 따른 위험을 평가한 금액)의 산출방식 개선

심사결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규제는 보험사들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기는 하나 건전한 재무구조를 통한 부실 방지 및 보험계약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며, 개정안의 신뢰수준 조정으로 인하여 다수의 손보사 및 재보험전업사 RBC 비율이 하락하고 요구자본이 증가하게 되나 신뢰수준 99%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권고수준(99.5%)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뢰도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2)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신설 4, 강화 1)

심사내용 보안성 심의 세부기준 및 절차 **신설**

-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위임한 보안성 심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기 위해 업무 유형에 따라 보안성심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보안성 심의 절차를 규정

심사결과 금번 개정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전자금융 등 업무유형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보안성 심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금감원 업무참고자료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보안성심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으로 인한 실질적인 의무부담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간이 취약점 분석·평가의 내용 **신설**

- 감독규정(고시)에서 일정규모(총자산 2조원,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등)에 미치지 못하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취약점 분석·평가의 내용을 하위규정에 위임함에 따라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내용을 정함

심사결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분석·평가의 세부 내용에 대한 규정 필요성 인정되며, 동 개정안은 정식 취약점 분석·평가 내용(3개 부문, 52개 항목)에 비해 완화된 수준(3개 부문, 20개 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문별 평가항목도 금융회사의 IT보안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적절한 수준으로 여겨지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국외사이버몰 판단 기준 **신설**

- 국외 사이버몰의 상거래를 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해외 결제대행업자(PG)는 이용계약을 체결한 해외 계열사가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개정하였으며 금번 세칙 개정안은 감독규정 개정안의 위임에 따라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의 판단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금번 개정을 통해 국외 사이버몰 여부(사무소·시설 소재지), PG업무의 실질적인 수행 및 안정성 여부(상거래 대상 국가, 거래 비중), 적절한 거래이용자 보호(감독·규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사이버몰'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항목조정 **신설**

-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시 평가부문으로 'IT보안 및 정보보호' 부문을 신설하고, 현행 평가부문 중 IT경영부문에 'IT인력 및 예산의 적정성'을 세부항목으로 추가

심사결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전자 금융거래를 수행하므로 IT보안 점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IT 인력 및 예산'도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자금융 업무보고서 신설 **강화**

– 전자금융 업무보고서에 '경영지도기준 보고서', '전자금융업무 수행현황'을 신설

심사결과 경영지도기준 보고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지도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아울러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주요 의무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업 수행여부의 판단을 위한 보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고시 등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정보제공약정 제도 신설 **강화**

–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결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부실 우려가 높은 일부 주채무계열에 대해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함

* 제공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 정보제공의 방법에 관한 사항, 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변제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의사결정에 대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간 기업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심사결과 주채무계열 제도는 재무구조 평가결과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약정(이하 '재무약정') 체결 대상 여부로 양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재무약정 체결 대상이 아닌 기업이 급격한 부실을 경험하거나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무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보제공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므로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하되, 향후 '정보제공약정 제도'도입으로 적용대상 계열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과 함께 상위규정인 「은행업감독규정」의 개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 시행세칙 개정안의 상위규정(「은행업감독규정」)에 위임근거가 불명확하므로 2014년 내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부대권고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제공시 공시되는 사항 **신설**

– 은행이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시토록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4)」에 따라, 금번 시행세칙 개정안은 제공일자, 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등 공시되는 사항과 제공한 이익의 가치산정 등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으로 '10억원 초과 이익제공의 공시'가 시행된 만큼 공시할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금융감독원이 '제공받은 자'를 특정하지 않고 업종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시제도의 부작용(경쟁과열, 높은 이익의 요구 등)이 완화된 점을 감안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심사내용 금융사고 수시공시 기준 강화 **강화**

– 「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사고 발생시 관련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은 금융사고 공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

◦ **(현행)** 손실(예상)금액이 전월말 자기자본 총계의 1%(최저기준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 **(개정)** 사고(피해예상)금액이 10억원(최저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심사결과 현행 최저기준금액이 실제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기준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5)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강화**

– 가계대출의 상환구조 개선, 시스템 리스크 완화 등을 위해 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하고 ② 은행별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 하한을 도입·적용

◦ 연장·대환시 원금의 10% 이상이 상환되지 않은 대출을 '고위험2 주택담보대출'로 정의하여 동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수준을 추가 상향조정

◦ 주택담보대출 전체의 위험가중치(=위험가중자산/익스포져)가 15% 미만인 경우 위험가중자산 규모를 15% 수준으로 조정

자기자본비율 산출관련 주거용주택담보대출 익스포져

구분	일반	고위험	고위험2
표준방법 (위험가중치)	35%	50%	70%
내부등급법 (소요자기자본율 함수식 상관계수)	0.15	0.30	0.35

심사결과 주택담보대출 상환구조 건전화, 주택시장 위축 등 예기치 않은 리스크에 대한 은행의 대응 여력 제고, 사상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 부담의 연착륙 도모 등을 감안할 때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6)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이행확인 **신설**

- 보험업감독규정(제4-35조의2제7항)은 일부 보험계약(변액보험, 저축성보험, 금감원장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을 설명받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토록 하고 있는바, 금번 개정안은 그 설명 및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보험계약을 정하고 중요사항 설명의무 이행확인 사항에 '상품 특성별 중요내용', '보험약관 등 수령여부', '자필서명 여부 등'을 추가

심사결과 경로우대자 및 전화를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우 중요사항 설명 누락 또는 보험계약자의 충분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청약 이후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양식 개정 **신설**

- 보험업감독규정(제4-12조) 개정으로 법인보험대리점 경영공시 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동 시행세칙에서는 그 공시양식을 개정

심사결과 공시양식은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7)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신설 8)

심사내용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 또는 유출행위 제재양정기준 **신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 또는 유출행위'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을 신설

심사결과 현재에는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및 유출행위에 대한 공표된 제재 기준없이 종전의 조치사례에 따라 제재하였으나, 관련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명시적인 제재양정기준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구속행위 금지위반 제재양정기준 **신설**

– 은행법 및 감독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속행위(이른바 '꺾기')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을 강화하고 구속행위 금지위반에 대하여 감독책임이 있는 임원 및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재하도록 함

◦ **(현행)** 금융상품 유형(적립식, 거치식)을 기준으로 수취비율에 따라 최대 '견책이상' 제재

◦ **(개정안)** 수취비율(월수입금액/대출금) 기준으로 최대 '감봉이상' 제재 (보험·펀드 등 일부상품의 경우 제재양정 강화)

심사결과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중소기업, 저신용 개인 등)의 의사에 반하는 구속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제재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구속행위 판단기준인 '차주의 의사 부합 여부'는 불분명하여 실제 규정 적용시에서는 객관적 기준(1%룰)에 따라 구속행위 여부를 판단함을 감안할 때 수취비율을 기준으로 한 개정안 제재양정도 합리적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금융투자부문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제재 양정기준 **신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상품 거래관련 자료의 기록·유지의무 위반시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금번 시행세칙 개정안은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시 제재 양정기준을 신설

◦ 제재기준 : 거래금액 또는 주문건수 기준 중 중한 기준으로 제재. 단, 문책경고(감봉) 이상 제재는 거래금액과 주문건수가 주의적경고(견책)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거래금액	주문건수	제재양정
100억원 이상	500건 이상	문책경고(감봉)이상
10억원 이상	100건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10억원 미만	100건 미만	주의

심사결과 불완전판매방지 및 분쟁발생에 적절한 대응 등을 위하여 거래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있으나, 관련 위반사례가 지속·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함으로써 제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행위 제재양정기준 **신설**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집합투자증권에서 금융투자상품 전체로 확대

* ① 적합성 원칙(일반투자자의 투자경험 등 파악, 이를 투자자에게 확인받아 유지·관리) 위반, ② 설명의무(금융투자상품의 설명 및 이해여부 확인 등) 불이행, ③ 부당권유 금지(거짓 등을 알리거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 등) 위반, ④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심사결과 금융투자상품의 고위험·고수익 또는 원금비보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한 바, 제재기준의 설정으로 제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험상품판매시 불건전영업행위 제재양정기준 **신설**

– 현행 제재대상인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및 '특별이익 제공'의 제재양정기준을 강화하고, 타인명의 또는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행위에 대한 제재양정기준 신설

심사결과 일부 제재 양정기준(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특별이익 제공 등)의 경우 타 위반행위에 비해 고질적·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제재 양정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신용협동조합의 무자격가입 제재양정기준 **신설**

– 「신용협동조합법」(제1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 조합원 가입'에 대한 제재양정기준 신설

심사결과 조합의 설립취지와 달리 무자격 조합원을 가입시키는 행위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조합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동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시 제재양정기준 **신설**

– 「신용협동조합법」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당해 사업연도 신규대출의 1/3로 제한한 바, 금번 개정안은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취급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을 신설

심사결과 비조합원 대출한도 제한은 조합대표의 사적 자금이용 방지 또는 조합원의 정상적인 이용 보장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최근 위반행위가 지속 적발되는 등을 감안할 때 제재 양정기준의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호금융조합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제재양정기준 **신설**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은 재무구조 및 자산 등의 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금번 개정안은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의 경우 제재양정기준을 신설

심사결과 최근까지 상호금융종합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및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등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을 감안할 때 제재 양정기준을 정하여 제재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8)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은행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 지표 설정 **강화**

– 은행지주회사의 경영공시 항목 중 자본적정성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 은행지주회사의 자본공시 항목에 ⅰ) BIS기준 자본항목 내역, ⅱ) 자본항목과 연계

된 연결재무상태표(연결목적 및 감독목적), iii) 자본증권의 주요발행 특징을 추가

심사결과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본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시자료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설정한 규제로 바젤III 기준 자본규제를 이행하는 데 불가피한 필수요건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9)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제도 개선 **강화**

- 보증준비금의 산출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① **(예상손실액 산출의 정확성 제고)** 예상손실액 추정기간을 만기까지로 확대하고 추정에 사용하는 시나리오 개수를 1천개로 통일

② **(할인율 산출기준에 시나리오 도입)** 할인율을 1천개 금리 시나리오 기준으로 변경하여 예상손실액의 현재가치 추정에 금리변동 가능성을 반영

③ **(리스크별 표준 적립비율 세분화)** 변액보험상품의 보증수준 및 주식보유 비중에 따라 표준적립비율을 세분화

④ **(내부통제 강화)**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을 세부적으로 문서화하고 모델검증, 민감도 분석 등을 의무화

심사결과 금번 개정안은 현재의 불합리한 보증준비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적정 적립금 확보로 보험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등 편익이 기대되는 반면 보험회사의 회계상 부채가 다소 늘어날 뿐 실제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5. 관세청

최 대 범 사무관
T 044-200-2425 E dbchoe@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3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등 총 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관세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405회 예비심사 (2014.01.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430회 예비심사 (2014.07.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435회 예비심사 (2014.08.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강화 1)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 대상물품 기간연장 및 신규지정 등 **강화**

– 기간 연장 : 7개 품목

◦ 1년 연장('14.2.1~'15.2.28) : 3개 품목(황기, 지황, 천궁)

* 원료한약재의 원산지, 재배·수집, 살충제 등의 관리사항 기록유지 의무화 '15년부터 전면시행(약사법 제31조, 시행규칙 제4조·제48조)

◦ 3년 연장('14.3.1~'17.2.28) : 4개 품목(건고추, 향어, 활낙지, 사탕무당)

– 신규 지정('14.3.1~'17.2.28) : 2개 품목(냉동꽁치, 김치)

- 지정 제외 : 2개 품목(안경테, 선글라스)

※ 품목의 시급성, 수입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속 운영여부 '17년 재검토

심사결과 최근 수입식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수역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바, 시장에서 유통되고 수입식품 및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유통이력제 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이용 통관요건을 강화 **강화**

- 자체시설 통관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최근 6개월간 특송업체의 평가결과가 '개선대상업체' 및 '관리대상업체'로 평가받은 경우
-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특송물품
- 세관장이 화물의 감시·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결과 매년 국정감사와 각종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특송업체 자체시설통관의 허술한 화물관리로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이며, 동 제도 시행에 따른 업체의 추가적인 인력확보는 필요 없으며, 비용발생도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3)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기간이 만료('14.8.22) 되는 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입물품 중 2개 품목에 대해 기간연장(1년), 신규 지정(식염) **강화**

- 기간연장 : 가리비(2014.8.23~2015.8.22, 1년)
  돔(2014.8.23~2015.8.22, 1년)

심사결과 세계 각국에서도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수입식품에 대해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추세이며, 금번에 연장(추가)되는 가리비·돔·식염은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행위가 빈발하여 언론에 다수 보도되는 등 집중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수입업체,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제3절 산업·에너지 분야

1. 산업통상자원부

한 아 름 사무관
T 044-200-2414 E hanarum@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외무역 관리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 36개 법령, 신설 34건, 강화 53건 등 총 8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87건 중 85건은 원안의결, 2건은 개선권고로 의결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1-03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3 (비중요 4)
(2)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4-01-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1-23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2-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4-02-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경제분과위원회 2014-03-07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7)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3-1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4-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4-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4-04-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5-16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1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1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12	원안의결 6	강화 6 (비중요 6)
(17)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정안	예비심사 2014-06-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12	원안의결 6	신설 1, 강화 5 (비중요 6)
(19)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12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2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4-06-2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1) 에너지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	예비심사 2014-07-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4-08-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6)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7)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14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2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9)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0)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27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비중요 5)
(3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02	원안의결 11	신설 4, 강화 7 (비중요 11)
(3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31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비중요 5)
(3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28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3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2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28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36)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경제분과위원회 2014-12-26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계	–	**원안의결 85 개선권고 2**	**신설 34, 강화 53 (중요 2, 비중요 85)**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3)

심사내용 자가소비용·직수입의 용도규정 **신설**

– 천연가스의 자가소비용 직수입 허용범위를 발전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전용설비용**으로 정함

* 열병합용 : 천연가스로 증기터빈을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그 폐열을 이용, 발전·난방(열공급)을 동시에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용

** 열전용설비용 : 동절기 열수요가 증가할 경우 부족한 열을 추가 공급하기 위한 열병합발전시스템의 보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용도

심사결과 직수입 허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용 등은 현실적으로 직수입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의 부과기준 **강화**

– 가스공급시설 개선명령 미이행시, 도시가스 충전사업자의 수요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기록 작성 및 보존의무 위반시 과태료 처분 기준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이미 신설된 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과태료 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임범위內에서 위반횟수(1~3차)별 차등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합리적 수준에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공감리·완성검사 **강화**

– 건축물內 매립되는 모든 가스배관 설치·변경 공사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건축물의 벽 또는 바닥에 매립설치 되는 가스배관은 최초 시공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지 않으면 사후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노출시공보다 가스누출 등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초 설치단계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통한 안전 확보가 필수적임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심사내용 허가의 취소 등 **강화**

–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안전기준 유지의무 신설에 따라 안전기준 유지의무 위반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정함

* 1회 위반 (사업정지 3일) → 2회 위반(사업정지 20일) → 3회 위반(사업정지 60일) → 4회 위반(허가 취소)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범위內에서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기준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2)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경제자유구역 장기임대산업단지 운영·관리에 관한 상세 규정 강화 **신설**

– 경제자유구역內 장기임대산업단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임대료 징수, 계약갱신 절차, 임대보증금 및 철거이행보증금,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을 정함

심사결과 경제자유구역內 장기임대산업단지가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운영됨에 따른 업무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며, 동 개정안의 각 세부규정(안)은 국토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임대산업단지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정함

* 과징금(원) = 기준 미달성량(km/L) × 과징금 요율(원/km/L)

심사결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연비향상 기술개발 비용보다 다소 높게 하되, 선택형 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 과징금요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한 것임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 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조정(500만원→2,000만원)함에 따라, 위반 횟수별 세부처분 기준 정함

구 분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현 행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개 정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심사결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허위표시 전자·전기제품 증가 추세임을 감안, 위반 횟수별 세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심사내용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신설**

-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에너지효율 관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리대상 기자재를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으로 정하고, 적용대상 건축물과 건축업자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심사결과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는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대표적인 제품이며, 동 제품군의 에너지효율등급 지수는 평균 2.6등급으로, 일반 제품 평균 1.8등급 비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사전심의 요건 **신설**

- 외국기업합작 증손회사 설립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인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요건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증손회사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이라는 정책목적과 대기업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간 조화 유지를 위한 것으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및 대상기준 변경 **신설**

- 신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발전원가, 전력수급 안정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REC 가중치 및 적용대상 규정

심사결과 RPS제도 도입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바이오에너지(우드펠릿 등)에 치중됨에 따라 일부 원목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펄프 및 제지 제조업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성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태양광에너지 의무공급량 확대 **강화**

- 연도별 태양광에너지 의무공급량을 '14년 1,156GWh에서 1,353GWh으로, '15년 이후 1,577GWh에서 1,971GWh로 확대

심사결과 지난 2년간 RPS를 운영해 본 결과, 태양광에너지 보급여건은 양호한 반면, 非태양광에너지는 보급여건이 좋지 않아 이행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태양광에너지 별도 의무공급량'은 오히려 태양광에너지 보급촉진을 제약하는 규제로 작용함. 非태양광에너지는 환경·입지규제 등으로 보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보급여건이 그나마 양호한 태양광에너지는 별도 의무 공급량이 보급 확대를 제약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RPS를 원활히 이행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음. 다만, 현재 산업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RPS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① 연도별 태양광에너지 의무공급량 확대(안)은 원안동의하되, ② 효력 상실형 일몰(일몰기한 '15.12.31)을 설정하도록 개선권고

(7)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기초조사 및 의견청취 **신설**

- 발전사업자의 발전소 건설예정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대기·수질·토지환경 영향 등)와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규정

심사결과 기초조사 항목은 건설예정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이며, 14일 이상 열람토록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사업의 허가 **강화**

–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에 공익성 요건을 강화하고 재원조달 계획 등 실현가능성 여부 추가

심사결과 전력수급차질로 인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의 공익성 심사 강화가 필요하며, 발전소 건설 지연·취소에 따른 전력수급 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행성 기준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행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적용해 오던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추가 비용이 사실상 없는 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강화**

– 안전·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안전·품질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및 표시방법 외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위반행위	기업 규모별	1차	2차	3차
안전·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상시 근로자 300 ~	150만원	170만원	200만원
	상시 근로자 100 ~ 300	130	150	180
	상시 근로자 50 ~ 100	100	120	150
	상시 근로자 10 ~ 50	80	100	130
	상시 근로자 ~ 10	50	70	100
법 제22조제1항 따른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상시 근로자 300 ~	130	260	390
	상시 근로자 100 ~ 300	100	200	300
	상시 근로자 50 ~ 100	80	160	240
	상시 근로자 10 ~ 50	50	100	150
	상시 근로자 ~ 10	30	60	90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이미 신설된 규제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사항으로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상시근로자 기준으로 5단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강화**

-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권한이 소멸하였음에도 그 산업 기술의 삭제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유출 금지행위'에 추가

심사결과 산업기술 불법 유출은 외부침입(해킹 등)보다 내부자(퇴직직원 등)를 통해 주로 발생하나, 현행법은 내부자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행위를 제재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동 규제는 금지행위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강화**

-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권한이 소멸하였음에도 그 산업 기술의 삭제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유출 금지행위'에 추가

심사결과 산업기술 불법 유출은 외부침입(해킹 등)보다 내부자(퇴직직원 등)를 통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금지행위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4)

심사내용 석유제품 가격표지판 근거조항 **강화**

- 석유판매업자에의 구체적인 가격표시방법을 신설, 가격표시의무 불이행 및 거짓표시기의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심사결과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기 운영중이던 동일한 내용을 상향입법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음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송유관의 석유제품 절취 및 절취품 판매행위 금지 **강화**

- 석유 판매업자가 송유관의 석유제품을 절취하거나 그 절취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행위 금지 대상인 석유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새로이 추가

심사결과 송유관 도유행위 및 그 제품의 판매금지는 사회통념상 당연한 규범(規範)적 성격의 규정으로, 이미 현행법상 석유제품의 절취행위는 등록취소사유로 금지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양수·임차하여 사용 하는 등 정량미달 판매행위의 유형을 재분류하고, 과태료 처분기준(별표1)과 과징금 처분기준(별표2)을 조정함

심사결과 정량미달 석유의 정량미달 판매 적발건수 및 적발률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일괄적 '삼진아웃제'를 고의 유무, 관리의무 이행여부, 정량미달량에 따른 새로운 행정처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부정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적절한 수단임을 감안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짜석유 원료물질 공급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상위법에서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와 더불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원료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하는 행위금지에 따라 행정처분 부가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본 시행규칙 개정안은 처벌의 요건을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만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처분수위 또한 가짜석유 '제품' 적발시 처분기준과 비교해도 강하지 않은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안전확인시험기관 확대에 따른 수수료 **강화**

- 새로운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에 따른 지정 심사 수수료와, 안전확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검토* 수수료를 신설

심사결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추가 지정을 위한 심사 비용(시험·인증기관 지정 심사수수료)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3)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전문무역상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

-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를 위하여 전문무역상사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전문무역상사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정함

심사결과 정보·마케팅 등 수출역량 부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의 직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해 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지원 및 해외시장개척을 통해 새로운 수출 성장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전문무역상사의 지정과 운영을 민간(무역협회)에 위탁함으로써, 자율적 시장기능에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강화**

- 상위법령에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와 저장탱크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진단·평가 항목 등을 규정하면서 그 외의 세부적 절차·방법 등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고시 제정안에서는 LNG인수기지 및 저장탱크의 관리자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제출 또는 열람하도록 해야 할 자료를 명시

심사결과 정밀안전진단 대상인 LNG인수기지 5개소(저장탱크 76기) 중 대부분은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서 설치·운영중이며, 신설 행정규제의 대상*은 제한적이며, 또한 요구하는 자료들이 이미 시설관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출석·자료제출 등 불이행시 과태료 **신설**

- 상위법 제49조는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 거짓으로 진술·자료제출한 자, 그리고 현장실태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구체적 부과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률의 위임범위인 100만원 내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일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타 법령과 비교시에도 과태료가 과중하지 않은 수준으로 검토,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연구개발비 유용시 제재부과금 부여 **강화**

-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미납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규정(상위법 제11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가산금의 금액 산정기준 등을 정함

심사결과 연구비 부정사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산금제도의 도입은 연구비 유용을 막고 제재부가금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임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6)

심사내용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확대 **강화**

- 상위법 제3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의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그 수요자가 70개소 미만이어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도록 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농어촌 지역 연료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한 정부지원제도인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안전관리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도 시범사업 1곳의 가스판매사업자만이 강화되는 규제의 대상으로, 추가 규제수준이 미미함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 보존의 세부적인 방법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강화**

– 상위법에서 시공기록 등의 보존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가스시공업자 및 가스공급저장자와 저장자의 보존의무를 구체화

심사결과 당해 규정은 가스시설시공업자의 책임시공 확립으로 시설미비로 인한 LP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긴급한 사고발생시 가스공급자 등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킴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해당 기준은 유사법령인 도시가스사업법령과 동일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 검사대상 추가 **강화**

–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를 제조·수입한 자도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가 이동식 부탄 연소기의 '대체재'로 제조가 허용되었으며, 사고위험성*이 높아 '09년부터 검사대상에 포함**된 이동식부탄연소기와 이동식 프로판연소기는 기능과 용도가 유사함을 감안할 때, 규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용시설 완성검사 대상 확대 **강화**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 완공시 건축물내의 이용업소, 미용업소, 사무실 등 소규모 비주거용 시설도 완성검사 대상에 새로이 포함

심사결과 최근 5년간 LP가스 사용시설 사고의 91.1%(396건)가 완성검사 비대상 시설에서 발생했으며, 동 개정안 시행 후 최초 또는 변경 설치하는 시설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권리침해를 최소화 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충전사업자가 용기운반자동차에 충전용기 적재시 용기 운반자동차의 등록여부 확인 **강화**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 하여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용기운반차량에만 충전용기를 적재하도록 함

심사결과 판매사업자 명의로 보유되지 않은 운반차량(지입차량)을 이용한 불법 판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없는 반면, 충전용기 운반시 안전확보 및 유통질서 문란행위 방지 등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심사내용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업무용대형 연소기용 노즐콕 추가 **강화**

- 업무용 대형연소기용 노즐콕을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새로이 추가

심사결과 종전에는 같은 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밸브가 사용되었으나, 최근 신기술 개발로 '밸브'를 대체할 수 있는 '콕'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신기술 적용 제품을 수용함과 동시에 업무용대형연소기의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 증대

(17)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확대 **신설**

- '문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 금지('14년 6월 23일 ~ '14년 8월 29일)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심사결과 금년 하절기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는 작년 하절기와 비교시 최소화된 것으로서, 이를 한정된 기간(68일) 동안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에너지사용 문화정착과 전력피크 감소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5)

심사내용 고압가스 충전·판매기록의 작성 및 보존의 세부방법과 불이행시 과태료 등 **신설**

- 충전 및 판매기록의 보존의무를 신설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자와 판매자의 보존의무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심사결과 당해 규정은 사용된 충전용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가스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충전기록을 작성·보존하는 것은 판매에서 회수까지 용기추적관리를 통한 유통용기의 안전관리 실현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공급자의 수요관리에 수반*되는 내용으로, 추가비용 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용기 운반차량의 등록대상 지정 및 운반기준 마련 **강화**

- 용기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운반하는 차량을 고압가스 운반등록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등록을 한 차량에 한하여 용기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적재, 소비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운반차량의 시설·기술기준을 마련, 기준위반 또는 비상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차량에 부착된 경계표지 내용에 상호 및 안내문(등록관청 전화번호 포함)을 추가

심사결과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고압가스(LPG포함) 용기운반 차량 사고는 도심에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미 관련법령에 의해 판매사업자들은 가스시설과 용기의 안전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음. 또한 차량 운행자의 가스안전 책임의식 확보와 비상상황 발생시 초기대응을 통한 사고예방이라는 사회적 편익이 크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확대 **강화**

-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에 시설을 개보수하는 업체의 안전관리 지휘·감독업무를 새로이 추가

심사결과 시설 보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은 사업소 내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원청업체와의 관계적 특성상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요청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협력업체가 고압가스 시설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여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고압가스 제조·저장시설 등의 안전거리 기준 **강화**

- 고압가스 일반제조 시설기준을 제조설비 및 저장설비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일정 안전거리(12~20m)를 유지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완성검사 시에는 안전거리 기준을 만족하였으나, 사후적으로 가스시설 인근에 보호시설이 신설되면서 안전거리가 미확보 됨에 따른 것으로 지속되는 관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임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LPG 용기 차단기능형 밸브 부착대상 확대 **강화**

– 현행 차단기능형 밸브의 부착대상 LPG용기의 범위를 확대
(기존: 40L~50L → 개정안: 30L~50L)

심사결과 LPG사용자의 고의·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향후 40L이상 LPG용기와 동일한 환경에서 같은 용도로 사용될 33.5L 용기의 수입·유통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가스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여지는 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독성가스 안전관리자 전문교육 **강화**

– 독성가스 안전관리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별도의 교육과정을 신설

심사결과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독성가스 사고는 최근 여타 고압가스 사고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3년의 경우 공급자 및 사용자 취급부주의 등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가 큰 비중(약 33%)을 차지함을 감안할 때, 독성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독성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전문교육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보여지는 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9)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3)

심사내용 천연가스반출입업자 신고 등 **신설**

– 상위법에서 국내외 기업들의 해외 LNG트레이딩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설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에 규정한 것임

* 보세구역내 설치된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외국반출을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반입하는 사업

심사결과 사업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민간 사업자들의 원활한 사업진출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천연가스반출입업 사업신청을 위한 자격요건, 별도비용 등이 수반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혜택이 더욱 큰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도시가스사업 허가 **강화**

–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의 범위에 새로이 추가하고 합성천연가스제조업을 도시가스사업으로 규정하고,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이 도시가스사업의 범주에 새로 포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에 규정

심사결과 사업허가절차와 방법, 제조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민간사업자들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안전관리자 수, 변경허가사항, 검사기준, 수수료 등 규제의 내용 또한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와 같거나 완화된 수준임. 또한 민간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지원함과 더불어, 업체가 생산하는 가스품질과 시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임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변경허가사항 추가 **강화**

–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변경허가 사항에 '상호 및 대표자'를 새로이 추가

심사결과 변경허가 절차규정의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자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신고서식을 통해 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자 부담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강화**

– 상위법에서 가스사업자가 계획·제출하여야 할 자료를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기준을 위임함에 따라 각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위임범위인 3천만원 및 1천만원 내에서 부과하고 있고,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 등을 고려한 감경규정을 두고 있음 유사 처분기준*과 비교하여도 동일하거나 완화된 수준이므로 비중요로 판단, 원안의결

(2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신설**

- 매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구체화

심사결과 송·변전설비 대부분을 한전이 소유하고 있어 동 행정규제의 객체는 2개 사업자(0.5%)이며, 동 법령의 목적이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범위를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향후 송·변전설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므로, 필요최소한의 장치라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신설**

- 위법 제14조에서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보고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안에서는 구체적 부과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률의 위임범위인 500만원 내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일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과태료 수준 또한 유사법령과 비교시 적정한 것으로 보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21) 에너지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도시가스사업 허가 **신설**

-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을 전매·전용하는 등 부정사용할 경우,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심사결과 이용권의 부정사용 가능성이 상존하는 바우처제도의 특성상 부당이득 환수는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또한 본 개정안은 이용권을 판매·대여·권리이전한 경우 그 가액만큼만 환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벌금부과, 이용권 재발급 중단 등 규제대안에 비해 당사자의 권리침해를 필요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비례의 원칙 준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2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 **신설**

- 상위법 제22조에서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에 따른 준수사항을 의무화하며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 및 고시에 위임함에 따라, 본 고시 개정안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신설, 적용확대와 더불어 각 시설별 기준의 통일성 확보

심사결과 본 개정안의 신설·강화된 감염물질 운반시 밀폐용기 사용, 실험복 착용, 안전한 저장공간, 공기조절설비 기준, 안전교육 등의 규제들은 LMO 개발 및 실험의 인체와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가능성을 보다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2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등 **신설**

-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기준과 완성검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정부는 유원시설 내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이하 '푸드트럭')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자동차 내 조리용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검증절차와 기준이 없으므로, 본 제정안을 통해 유원지 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며 이동이 잦은 자동차 내 가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 큰 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HCNG자동차 충정소의 시설·기술기준 등 **신설**

- HCNG* 자동차 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천연가스(CNG)에 수소를 혼합한 가스

심사결과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기준 강화*에 따라 정부는 기존 CNG버스를 HCNG버스로 전환하려 하고 있으나, HCNG를 자동차에 충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며, 동 규제의 기한은 시범사업 기간('16.12.31까지)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25)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안전기준 **강화**

- 예초기 '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안전기준에 '보호덮개'의 안전요건을 새로이 추가

심사결과 일반가정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휴대용 예초기는 칼날에 의한 자상, 비산물에 의한 타박상 및 안구손상 위험성이 높은 제품임에도, 이미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관리 중인 '칼날'과 달리 '덮개' 관련 규정이 없어 비산물질로 인한 신체위해 가능성 상존하고 있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 다양한 형태의 보호덮개를 인정하고 있는 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26)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 **강화**

- 자동차 어린이보호장치(이하 '카시트')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ECE R 44)수준으로 변경하고, 재료 유해성시험을 추가

심사결과 후방추돌 및 전복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고와 카시트 유해물질로부터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서, 신규 유해물질 기준 또한 이를 섭취하기 쉬운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필수적 사항이라 보여는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27)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안전성조사의 범위 확대 **신설**

– 제품자체가 가지는 위해성에 대해서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리콜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품 자체의 위해요인으로 인한 완구류나 아동용섬유제품 등의 리콜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안전성 조사의 범위를 넓혀 결함 외에 제품자체로 인한 위해성으로부터도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바, 비중요규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성조사 결과 등의 공표 **신설**

–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및 사고발생시 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심사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은 매우 저조한 현실에서, 중대사고시 사업자의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위해정도를 감안해 사고조사 및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한 것은 신속한 사고대응, 소비자 정보제공을 통한 불안감 해소와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라 보여지는 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고발생시 사업자의 보고의무 **신설**

– 제품이 사망사고, 의료사고, 화재·폭발사고 등을 발생시킨 경우, 당해 제품의 정보 및 사고내용을 48시간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사고보고의무화를 통해 제품안전 확보 중이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의 위해방지라는 사회경제적 편익이 커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신설**

– '사고발생시 사업자의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

심사결과 사고발생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3천만원 이하)는 기존 처분기준 및 유사입법례와 같은 수준이며, 아울러 산업부는 규제사항 중 과태료 및 사고보고의무 조항을 재검토형 일몰

로 설정, 규제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2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석유판매업자 공제조합 **신설**

- 상위법에서 석유판매업자의 협동과 자주적 경제활동을 위해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안에서는 인가신청절차, 정관기재사항, 등기내용, 사업범위 등을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타 입법례를 감안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기간 연장 **신설**

- 석유정제·판매업자등이 품질기준과 각종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방법을 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품질기준 위반시 공표기간을 연장

심사결과 당해 규정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짜석유 및 정량미달 판매, 품질기준 위반 등 행정처분 대상 행위는 불특정다수에 위해를 주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공표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정지 기간이 끝나 소비자가 주유소를 이용하는 시점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29)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및 대상기준 변경 **신설**

- 경제성과 신재생 정책방향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REC* 가중치 및 그 적용대상을 조정

심사결과 RPS제도 도입 이후 위장건축물(버섯재배시설 등)의 등장*, 발전소 분할 건설, 타인명의 운영** 등의 폐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본 규제는 기존 건축물(옥상 등 유휴부지)의 활용을 장려하는 가중치 제도의 악용을 방지함과 더불어, 일부 원목을 연료로 사용할 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펄프 및 제지 제조업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정이라 판단되는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30)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강화 3)

심사내용 수수료 기준 마련 **신설**

- 전력거래 수수료(상위법 근거: 제40조) 산정을 위한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 계산 시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량도 반영하도록 추가

심사결과 현행 수수료 산정기준(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에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절감량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전력시장의 등장에 따라 전력거래 수수료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이라 보여지는 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차액계약 **신설**

- 차액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계약서의 내용 및 인가신청시 제출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발전사와 판매사간의 전력거래가격은 기업·국민이 지불하는 전기요금의 원가이므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발전기 중 상당수를 한전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어 실제 피규제대상 수는 적으며, 향후 사업자입장에서도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사업 양수, 법인의 합병·분할시 인가 강화 **강화**

- 산업부 장관 인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취득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전기사업 허가 이후의 지분 변동으로 실질적 경영주체가 바뀌는 경우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심사결과 최근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발전사가 증가하고 있으나, 발전소 착공 전에 사실상 사업허가권을 매각하는 사례도 늘어, 전력은 공익성이 크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실질적 사업주체가 바뀔 경우에도 경영안정성 및 건설이행력 등을 살펴, 발전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큰 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료제출 대상기관 추가 **강화**

- 상위법 제31조에서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시장거래를 새로이 허용함에 따라, 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위한 자료요청(상위법 근거는 제25조)이 가능한 기관에 수요관리사업자를 추가

심사결과 동 규제는 국민의 자발적 전기절약 실적을 사회갈등이 빈번한 전력설비(발전소, 송전망 등) 건설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수요관리사업자의 자료제출비용은 미미한 반면, 전력설비 건설을 줄임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기업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량 비율 기준 설정 **강화**

- 수요관리사업자가 동일 계열사에서 확보한 전력감축량이 총 전력거래량의 100분의 30미만이어야 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동 규제는 대기업과 중소 수요관리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수단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수요관리사업자의 자사 계열사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에너지 시장인 전력 수요관리시장에의 대기업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전력거래량 비율 기준도 대기업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을 규정한 유사입법례*와 비교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 판단되는 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3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4, 강화 7)

심사내용 사후관리 **신설**

– 수거 등이 필요한 중대결함의 기준과 그 시정방법, 수거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비용 징수방법을 정하고, 위반사실 공표의 대상과 방법, 주체별 보고사항도 구체화

심사결과 사업자가 제품결함을 발견할 경우 이를 공개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소비자기본법상의 기본적 의무이며, '중대결함'의 명확한 기준 제시(시행령 별표12)는 리콜 등을 둘러싼 혼란 예방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도 신체위해·화재·심각한 오차 등에 한정된 필요최소한의 규정이라 보여지는 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신설**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각종 법위반행위를 할 경우의 행정처분을 새로이 도입함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행정처분 규정은 계량기 관리의 자율성 및 효율성 확대를 위해 새로이 도입된 자체정기검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적 사항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기준미달 시설 및 검사설비를 갖춘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필요·적절한 수단이며, 의도치 않은 위반에는 완화된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당사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비례의 원칙 준수하고 있는 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기적합성선언 **신설**

– 제거명령 받은 자의 구체적인 보고 및 시정조치기간과 방법을 규정

심사결과 개정 전 상위법에서 자기적합성선언표시 제거의 상세한 절차를 정하지 않은 입법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거나 관련 기준을 미달한 상품에 부착된 자기적합성선언표식의 신속한 제거를 위한 적절한 수단임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징금 **신설**

– 과징금 부과기준과 금액을 규정함(시행령)과 동시에 부과 및 납부절차를 구체화

심사결과 계량기 조작에 따른 불법이익이 벌금(현행 3천만원이하)보다 커 계량기 불법조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규모 불법이익금의 추징으로 계량기 조작의 유인을 제거하는 것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보여지며, 형식승인기관 등 승인·지정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를 갈음할 과징금도 승인·지정업무의 지연에 따른 업체의 생산·판매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 규정임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량표시 **강화**

– 정량표시상품 1종(위생용품, 생활용품 등)을 추가함과 동시에, 시행규칙에 결과보고의 내용을 구체화

심사결과 면적 및 개수단위 표시 상품에서의 정량관리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정량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이라는 사회적 편익은 크고, 국제기준 및 OECD 국가의 정량표시상품 관리기준에도 부합하는 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법정단위 **강화**

– 상위법에서 법정단위를 사용한 자가 법정단위 표시명령을 받으면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결과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을 규정

심사결과 면보고기간 및 내용규정은 보고의무를 정한 상위법의 시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며, 보고의무 또한 시정명령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로서, 타법과 비교하여도 적절한 수단이라 판단되는 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업자관리 **강화**

– 제조업자등의 부정한 행위, 기록보존기간, 행정처분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 등의 경우 신고서식을 제시

심사결과 계량기는 한번 제조·유통되면 장기간 사용되며 상거래의 근간을 이루는 기기이므로, 제조·수리업자 등의 부정행위를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케 함으로써 제조 및 유통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형식승인기관 **강화**

– 형식승인기관의 부정한 행위, 기록보존기간, 행정처분기준을 구체화

심사결과 형식승인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금품수수 및 결과조작 금지'라는 규범적 수준의 준수사항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위 준수사항 위반 시(금품수수, 시험의뢰자의 정보누출) 처벌규정은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하여 추가된 조항이라 보여지는 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검정기관 **강화**

– 검정기관의 부정한 행위, 기록보존기간, 행정처분기준을 구체화

심사결과 검정기관*은 국가위탁업무(검정제도**)의 수행기관으로서, 검정업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금품수수 및 결과조작 금지'라는 규범적 수준의 준수사항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적합성확인기관 **강화**

– 적합성확인기관의 부정한 행위, 기록보존기간, 행정처분기준을 구체화

심사결과 자기적합성확인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금품수수 및 결과조작 금지'라는 규범적 수준의 준수사항은 반드시 필요하며, 위 준수사항 위반 시(금품수수, 시험의뢰자의 정보누출, 지정기준 위배) 처벌규정은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하여 추가된 조항이라 보여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강화**

– 각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적으로 정함

심사결과 위임범위인 1백만원 및 3백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부과하고 있고,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 등을 고려한 감경규정을 두고 있으며, 타 법률의 처분기준*과 비교하여도 동일하거나 완화된 수준이므로 비중요로 분류, 원안의결

(3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강화 3)

심사내용 국제석유거래업자 과징금 **신설**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로 제한되어 있는 석유사업자의 종류에 국제석유정제업자를 신설함에 따라 그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기존 석유사업자와 동일한 정도로 규정

심사결과 석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석유사업자와 같이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하여 구체적 타당성 및 효과적인 행정제재 수단 확보 필요하고, 오일허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의 유지가 필요한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내릴 필요가 인정되는 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국제석유거래업자의 과태료 **신설**

- 제석유거래업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보고 한 경우 또는 그 사업의 변경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함

심사결과 등록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수출입·판매업자와 동일하나, 보고의무 위반은 국제석유거래업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판매업자 보다 높은 바, 그 영업 특성이 석유수출입업·석유정제업과 유사함을 감안, 일부는 판매업자보다 높은 수준의 과태료 부과 필요한 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국제석유거래업자 등록 취소 **강화**

-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거짓·부정신고 등의 의무 위반시 영업장 폐쇄 또는 사업정지의 행정처분 부과근거 마련

심사결과 '국제석유거래업자*' 신설에 따라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및 기준 마련 필요하며, 기존 석유사업자의 처분정도와 동일하거나 완화된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국제석유거래업자 보고 및 검사 **강화**

– 산업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다른 석유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보고 및 검사의무를 신설된 국제석유거래업에도 부여 필요하고, 보고 및 검사의무의 내용 또한 기존 석유사업자와 동일하게 정하여 국제석유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제 아님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국제석유거래업자의 행위 금지 **강화**

–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기존 석유사업자가 부담하는 가짜석유제품 제조목적 영업시설 설치·개조행위, 정량미달 판매행위 등 국내 석유시장 품질·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동일하게 부담

심사결과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기존 석유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금지의무를 부과, 규제의 적정성·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기존 석유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금지의무를 부과, 규제의 적정성·형평성에 부합하는 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3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안전인증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화**

– 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4~5차 안전기준 위반'에서 '2~3차 위반'으로 강화

심사결과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감사실시(산업부 감사관실)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원시데이터 관리 미흡 등 부적합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으며, 안전인증(시험·검사) 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법률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강화 **강화**

- 최근 3년간 연속 4회 안전기준 위반 시 적용하는 기관지정취소 기준을 2회~3회 위반으로 강화

심사결과 자율안전확인대상 시험·검사기관은 안전인증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인증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내 제조·수입 공산품의 안전·위해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험해야 함에도 불구, 안전기준 미준수, 원시데이터 관리 미흡 등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강화 필요성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범위조정 **강화**

- '기름난로'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추가하여 기름난로의 제조,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확인된 제품만을 시중에 유통해야 함

심사결과 최근 3년간 기름난로에 의한 소비자 피해 23건이 보고, 이 중 20건(87%)이 화재·화상사고로 기름난로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은 주요 선진외국으로 수출되는 반면, 국내에는 불안전한 제품이 판매·수입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3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안전인증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화**

- 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기준 중 1차 안전기준 위반 시 업무일부정지 처분 3개월, 2~3차 위반 시 인증기관지정취소로 강화

심사결과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산업부), 시험검사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거나, 시험결과와 달리 시험성적서를 기록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기준 또는 절차를 미준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타 법령의 행정처분 기준과 유사하게 설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확인시험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화**

- 안전확인시험기관이 1차 안전기준 위반 시 업무일부정지 처분 3개월, 2~3차* 위반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취소 할 수 있도록 강화

심사결과 3개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시험인증 업무 규정을 위반하고, 부실하게 시험검사 성적서를 작성·관리하여, 인증기관의 공신력 위협하고 있음. 안전인증기관과 마찬가지로 시험기관의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벌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3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민간검사기관 지정요건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화**

- 검사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의 지정 제외기준을 마련하고, 검사기관의 위반행위 중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1차 위반행위로 한정하면서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선권고 없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함

심사결과 LP가스는 노후·불량용기 유통 등으로 관련 인명피해 사고가 잇달아 국민들의 불안감 가중되는 상황에서 검사기관은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피검사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검사기관이 재검사 업무를 수행하여 공정성 시비 논란 지속, 이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필요하며, 개정안은 타법 사례 및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마련하고 있는 바,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강화**

- LPG용기 재검사기관의 검사행위 적정여부 및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 → 3년으로 변경

심사결과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도시가스와는 달리 용기에 충전하여 유통되는 LP가스는 유통용기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유통 중인 LPG용기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재검사기관에서 일부 검사항목을 누락하는 사례 발생하는 바, LPG용기 재검사기관

의 지정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검사시설 적정유지 및 검사행위 적정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강화**

- LPG용기의 품질강화를 위해 파괴적 방법으로 용기성능을 검증하는 설계단계검사를 정기적으로(매3년) 실시하여 용기 안전성 강화

심사결과 제조설비의 노후 및 마모에 따른 LPG 용기의 품질 저하 및 생산 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만으로는 정밀품질 확인 곤란하며, 미국·일본 등 해외사례 검토결과 주기의 차이는 있으나, 정기적으로 확인·검사 등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36)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표시의무 **강화**

-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품목에 HS 7214(철근), 7225(합금강 열연철판 광폭), 7226(합금강 열연철판 협폭), 7228(기타 합금강 소재 강재) 추가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으며, 국산으로 둔갑한 제품으로 인한 시장가격 교란 방지 등 공정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부적합 제품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임. 다만, 원산지 표시의무 도입 이후 철강재 유통구조 변화 등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규제대상 및 이행방법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일몰(3년) 설정 권고

2. 중소기업청

최 병 근 사무관
T 044-200-2398 E cbk3095@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신설 3건, 강화 3건으로, 총 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14.03.24)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24)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계	**–**	**원안의결 6**	**신설 3, 강화 3 (중요 1, 비중요 5)**

나. 2014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중소기업 기준 **신설**

– 상시근로자·자본금 기준 폐지,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개정안 요약표

(현 행)

업종	근로자	자본금	매출액
제조업	300인	80억원	–
건설,운수업등	300인	30억원	–
출판,시설관리등	300인	–	300억원
농림,도소매등	200인	–	200억원
폐기물,교육등	100인	–	100억원
부동산,임대등	50인	–	50억원

(개 정)

업 종	매출액
6개 제조업(전기장비·의복 등)	1,500억원
12개 제조업(자동차·화학 등)	1,000억원
6개 제조업(음료 등), 정보서비스 등	800억원
5개 서비스업(개인서비스 등)	600억원
4개 서비스업(숙박·음식 등)	400억원

– 중소기업 졸업 유예

(현 행) 중소기업 졸업 유예* 무한반복 인정

* 중소기업 졸업 기업은 3년간 중소기업 지위 유지 가능

(개 정) 중소기업 졸업 유예 최초 1회로 제한

예 시

• 중소기업 졸업 → 1차) 졸업 유예 → 중소기업 복귀 → 중소기업 졸업 → 2차) 졸업 유예 : (현행) 가능 / (개정) 불가

심사결과 중소기업 기준과 관련, 매출액 기준은 기업의 실질적 성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표로 판단되며, 금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 등의 인위적 왜곡 유인이 제거되어,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금번 중소기업 기준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수는 많지 않으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제도 개편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음

* 현행 중소기업 323만여 업체 중에서, 759개社(0.024%)가 제외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중소기업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

또한, 동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규정을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쳐 마련한 개편안으로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안)에 대해 원안동의

동 개정안 제3조의4(중소기업 범위기준 적정성검토)

신 설

- 제3조의4(중소기업 범위기준 적정성검토)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상의 전문가 및 중소기업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간의 의견수렴 과정

- (연구용역) 연두 업무보고(3.25일)시 중소기업 범위 개편 방향을 제시한 이후, 중소기업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 실시('13.4~10월)
- (토론회) 중기중앙회·경총·벤처협회·기은연구소·중기학회 등 참여('13.10.8)
- (공청회) 중기청 및 중기중앙회 주관으로 총 4회 개최(10~11월)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반복적으로 허용시 의도적으로 성장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세한 중소기업에게는 불이익으로 작용

* 공공구매 등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4년 단위로 상시 근로자 축소(정규직의 일용직 전환) 등 악의적 방법을 활용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에 대한 해외 입법례는 없는 점을 함께 고려시 필요·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동의하며, 참고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준'은 재검토 일몰 규제*로 이미 설정되어 있으며 다만 '14년 內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의 매출액 기준 단일화를 명확히 하도록 부대권고함

* 중소기업 졸업으로 인한 충격 완화를 통한 피터팬 증후군 해소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

- 시행령 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중견기업의 범위와 관련 상위법 제2조에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으로 중견기업의 정의를 규정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이나 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구체화 신설

상위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마련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 이러닝사업에 제한을 받는 대기업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 가업승계지원 대상 중견기업 등 특례 시책별로 중견기업의 범위를 각각 규정

심사결과 중견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은 지원, 대기업은 배제'하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인해 발생된 기업의 성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중간 기업군을 의미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규정하여 산업적·통계적 기준을 확립하고, 기존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면 바로 대기업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이 받게 될 규제부담을 줄임으로써, 추가 성장의 유인을 제공하고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발굴

* 그동안은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77개 정부지원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대기업으로서 20개의 새로운 규제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성장 기피 현상이 만연

참고 1 : 중소기업을 졸업할 시 직면하는 지원배제 및 새로운 규제

- 졸업 시 지원이 제외되거나 차별되는 제도 : 총 77개
  - (세제)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접대비 한도 혜택 등 33개
  - (금융) 신성장기반자금(6,350억원), 생산전환자금(1,700억원) 등 7개
  - (R&D·정보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13, 2,293억원),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13, 1,389억원), 상용화기술개발('13, 1,165억원) 등 10개
  - (인력) 외국인고용허가제,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 9개
  - (수출·판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수출역량강화사업 등 10개
  - (기타) 컨설팅 지원(240억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조건 우대 등 8개
- 중소기업 졸업시 새로 발생하는 부담 : 총 20개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고령자고용촉진법 제20조) 등

특례대상 중견기업에게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완화가 적용되며, 해당 기업들에의 추가적 비용부담 요구나 권리제한은 없고 경쟁영향평가에서도 공급자나 소비자에 미치는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고 당해 범위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관련 법령 및 기존 지원제도를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참고 2 : 특례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설정 근거

• 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최근 3개년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1. 관련업계(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 연합회, 전경련 등)의 의견 수렴
2. 중견기업 2,505개 중 약79%가 연매출 3,000억원 미만

•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최근 3개년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미만)
1. 중소기업기본법 상 해당업종 중소기업 연평균 매출액 상한이 800억원
2. 공공사업에의 참여의존도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졸업이후 3년간 한시적 지원

• 가업승계지원 특례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1. 상속증여세법 상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의 매출기준(매출액 3,000억) 참고
2.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및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기준도 매출 3,000억 미만임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 상위법 제31조에서 중견기업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시책에 참여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안에서는 구체적 부과기준을 규정

상위법률의 위임범위인 500만원 내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일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유사법령과 비교시에도 과태료가 과중하지 않은 수준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3)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14년 1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취업유인을 위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법 제18조의2를 신설되어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위법의 위임에 근거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정함 **신설**

심사결과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부족과 실업문제가 공존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에의 부정적 인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기피하고 있으나, 기 운영 중인 우수기업 관련 제도들은 차별성과 신뢰도 부족으로 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25만명 수준, 그러나 실업자('13년말 기준) 또한 80.7만명

'인재'에 초점을 둔 당해 제도는 인력양성과 성과보상에 힘쓰는 중소기업을 지정·지원하고 그 정보를 채용시장과 연계시킴으로써, 「구직자 신뢰성 제고→인재유입→중소기업 성장→인력양성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반면, 지정 및 운영과정에서 심사비·지정비 등을 요구하지 않아 신청기업에의 추가적 비용부담은 전혀 발생하지 않음. 또한 지정기업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평가기준*을 통과할 경우 모두 인재육성형 전문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이해관계자인 중소기업들도 본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인재육성투자(1인당 교육훈련비 등)와 인재확보노력(인턴제 운영실적 등), 성과에 따른 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구직자들의 신뢰성제고 및 인식 전환

(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와 관련 동법에 개인투자조합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사항이 규정되면서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 위반 시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당연히 함께 규정되어야 했음에도 그 일부가 불비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법상 의무위반시 등록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그보다 경미한 처분인 시정명령·경고 등의 근거도 마련

강화

개정사항 요약

- 개인투자조합을 등록취소 할 수 있는 사유 추가
  - 사모**가 아닌 방법으로 조합가입을 권유할 경우(법 제13조제9항 위반)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상 재산관리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 위반)
  -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산서 제출을 않은 경우(법 제13조의2제4항 위반)
  - 중소기업청의 시정명령(법 제28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26조제4항 위반)
-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신설*
  - 개인투자조합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시정명령, 경고, 주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능

*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취소의 선행조치로서 업무집행조합원(법적 대리인)에 경고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사모(私募)펀드 : 비공개적으로 소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운영되는 펀드로서, 공모펀드와는 달리 회원구성이 제한적

심사결과 최근 세제혜택 증가로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증가하고 있으나, 브로커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도 증가(한국경제 8월24일자 보도)

참고1 : 개인투자조합 설립 현황

구 분		'99~'07	'08	'09	'10	'11	'12	'13	'13.8.	'14.8.
조합결성 (신규)	조합수(개)	3	0	1	1	0	11	19	13	16
	금액(억원)	10	0	2	7	0	36.2	291.09	143	52.8

* 예) 공개 설명회를 통한 투자자 모집 →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반

이처럼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를 시정할 수단은 부족한 현실에서, 개정안은 투자자 개인에 대한 규제가 아닌, 수수료 받고 펀드를 운용하는 조합과 업무집행조합원*에의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판단됨

* 조합의 자금모집과 투자결정을 담당하는 자로서, 기타 조합원과 달리 조합운용에 책임이 큼

이번 개정안은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조합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이행을 담보함과 더불어,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정보 및 법령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 보여지며, 또한 등록취소의 사전단계인 경고, 시정명령, 주의처분의 법적근거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됨. 한편 입법예고 및 공청회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인 한국엔젤투자협회 또한 투자조합의 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통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에 찬성하여 비중요로 원안동의

행정처분과 관련 한국벤처투자조합에의 행정처분 사유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금사용 관련 의무*위반을 추가하고, 행정처분(법 제28조)시 업무집행조합원 및 임직원에도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금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 법(법 제4조의3제5항)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

참고3 : 한국벤처투자조합

- 개념: 벤처캐피탈이 49인 이하의 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허용한 형태의 펀드
- 설립 및 운용: 벤처캐피탈이 개인으로부터 공적 연기금까지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 중소·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운용
  - 업무집행조합원: 자금운용을 통해 관리보수·성과보수 등을 수수
- 규제: 업무집행조합원에 투자금을 맡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무집행조합원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 등을 금지하고 보고의무 부과
- 운용현황: 현재 총 91개 조합 48,845억원이 등록 운용 중

개정안은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 및 공공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할 경우 자신의 이득을 위한 불건전 자금모집 및 투자를 행할 우려가 큼

* 개인투자조합과 달리 한국벤처투자조합에는 연기금 등 공적자금이 투자될 수 있음

또한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유사한 성격의 벤처펀드인 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경우에도 법 위반시 조합의 등록취소와 업무집행조합원 및 임직원에 대한 시정명령·경고 등의 조치가 가능한 바, 개정안은 업무집행조합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규정의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조합의 투자금이 특정개인(업무집행조합원)에 의해 유용되지 않도록,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 판단됨. 한편 이해관계자인 한국엔젤투자협회*도 벤처투자시장의 건전성·투명성을 강화하여 민간자금을 유입시키고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동 개정안 제13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을 추가

*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의 개선권고를 따른 개정안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투자조합의 시정명령 위반에도 한국벤처투자조합 시정명령(법 제28조) 위반시*와 동일수준의 처분기준을 두는 것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며, 개인투자조합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분기준을 두지 않을 경우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라는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참고4 : 국민권익위 개선권고(1건) 내용

•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임직원이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태료부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안)	개선내용
제32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4제2항·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4. (생 략)	제32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4제2항·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13조의3 및 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4. (좌 동)

* (현행)법 제32조제1항2호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중

3. 특허청

최 병 근 사무관
T 044-200-2398 E cbk3095@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특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를 심사, 신설 1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특허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특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특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미생물 기탁에 관한 전문기관(국내 기탁기관) 지정기준 **신설**

1. 대한민국 영토 내에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
2.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에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갖출 것
3.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4. 수탁된 미생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5. 특허청장이 정하는 국내기탁기관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을 것

미생물 기탁 지정기관 지정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월, 3차 업무정지 6월, 4차 지정취소

심사결과 미생물 기탁 지정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2013-28호) 에서 규정한 적용기준을 상위 입법화하여 법적 안정성 도모하여 미생물과 관련한 바이오산업 특허권 분쟁예방 및 LMO(유전자 변행생물체)에 의한 환경유발 사전차단 효과가 있으며 국제기준에 적합한 미생물기탁·분양에 관해 필요한 최소기준을 반영하여 대외 공신력 제고가 가능하고. 또한 미생물 기탁 전문기관으로 지정시 인력, 시설 등 일정수준의 구비조건을 갖추기 위해 비용(4억원)은 수반되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그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편익은 상당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 등 4개 기탁기관(10,000여 미생물 관리, 연평균 600여건 특허출원)

제4절 국토·해양 분야

1. 국토교통부

추 대 운 사무관
T 044-200-2423 E boriboa1@pmo.go.kr
최 인 기 사무관
T 044-200-2424 E cyc1512@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철도안전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92개의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신설 123건, 강화 59건 등 총 18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82건 중 173건 원안의결, 6건은 개선권고, 3건 철회권고(자진철회 2건 포함)로 의결하였음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4-01-0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1-0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1-03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1-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5)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인의 범위 및 신청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안	경제분과위심사 2014-01-06	자진철회 1	신설 1 (중요 1)
(6)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1-0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7) 철도안전법 개정안	경제분과위심사 2014-01-13	원안의결 4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8)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14-01-13	원안의결 6 철회권고 1 자진철회 1	신설 6, 강화 2 (중요 3, 비중요 5)
(9)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1-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1-29	원안의결 11	신설 11 (비중요 11)
(11)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	경제분과위심사 2014-02-04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1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14-02-10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1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4-02-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4-02-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7) 주거급여 조사의 의뢰 및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4-02-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3-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14-03-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3-21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비중요 5)
(21)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시행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14-03-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2)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4-03-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3-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4)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4-04-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4-2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6) 건축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4-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4-05-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8)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14-05-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9)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4-05-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4-05-18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3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경제분과위심사 2014-05-20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32)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4-05-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3)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5-23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4)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5-2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5-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6)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14-05-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7)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5-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8)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14-05-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9)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4-05-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0)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4-05-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5-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4-05-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3)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05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4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4-06-12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4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본위원회 2014-06-15	개선권고 2	신설 2 (중요 2)
(50)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경제분과위심사 2014-06-16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5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2)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3)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2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54)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2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5) 주거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4-06-2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56)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7)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27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58)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27	원안의결 6	신설 5, 강화 1 (비중요 6)
(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27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60)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1)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4-07-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1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63)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4-07-1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11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65)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4-07-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6)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7)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8)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9)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0)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1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73) 공공주택건설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4) 항공레저스포츠등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14-08-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6) 항공안전기술원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4-10-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1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79)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27	원안의결 5	신설 1, 강화 4 (비중요 5)
(8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4-10-2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8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27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8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84)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07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8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17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86)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17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87)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17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8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4-11-24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8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2-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1)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안	예비심사 2014-12-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경제분과위심사 2014-12-29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계	–	**원안의결 173 개선권고 6 철회권고 1 자진철회 2**	**신설 123, 강화 59 (중요 12, 비중요 170)**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지정을 위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실적 평가방식 등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선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직접적 환경규제에 비해 기업부담이 적으며, 상위법에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에 관한 위임근거가 있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실적제출 등은 녹색물류를 실천하는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소요비용도 크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 수수료(300만원) 및 재심사 수수료(150만원) 납부 규정을 정하고, 수수료의 환불사유, 반환범위, 납부기간 등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심사 수수료가 여타 인증 심사제에 따른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며 우수녹색물류기업 지정 시 기업에 일정한 행·재정적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책임보험 가입의무 대상 확대 **신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적용대상에 건설기계(지게차,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추가 규정, 해당 건설기계 보유자는 책임보험 및 대물배상보험 의무 가입

심사결과 지게차 등은 도로운행이 빈번하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보유자는 일반 개인사업자 등 영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차량은 보험가입 의무 대상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심의회에 대한 심사청구의 대상 **신설**

–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진료비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한 결과에 보험회사 등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의료기관 등이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다만, 청구자가 심사수수료의 일부를 부담)

심사결과 동 개정안에 대한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심사수수료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될 수 있는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모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무분별한 심사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국토부장관이 연수교육을 감정평가협회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동 개정안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국토부장관이 수행할 연수교육업무를 감정평가협회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에게 교육규칙을 인가받도록 하는 것은 업무위탁에 따른 감독을 위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심사내용 감정평가업자가 해산 또는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서류를 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하거나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체계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부담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심사내용 국토부장관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타당성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감정평가서가 부감법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이 통보한 감정평가서가 부감법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다른 법률의 절차·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 국토부장관이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 및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된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절차, 조사사유 등을 정하는 것으로, 그 사유를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조사범위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른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의 위반여부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조사요구 또는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심사에 따른 수수료(300만원 이하) 및 점검수수료(150만원 이하)의 상한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인증신청 여부는 피규제자의 임의적 선택사항이고 인증을 받는 경우 자금의 우선지원 등 행·재정적 혜택을 주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심사 수수료(출장비, 심사비)산정이 종합물류기업 인증 및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5)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인의 범위 및 신청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시행령에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한 토지소유자·이용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신설**

- (토지소유자)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른 소유권 확인자, 소유권 양수 후 미등기자, 민법·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가등기권자
- (토지이용자) 민법에 따른 점유권자, 임차인, 지상권·지역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소유자와의 법률관계에 따라 토지를 사용·수익·점유한 자
- (법률상 이해관계인) 해당 표준지가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로 활용된 경우로서 그 개별토지의 소유자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에 따라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심사결과 자진철회

(6)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를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및 납부기간 등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과징금의 부과기준도 철도운영자 등의 연간 매출규모, 항공운송사업자, 도시철도운영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등과 비교해 볼 때 과중하지 않으며 입법 예고시 철도공사 등 운영기관의 의견을 수렴반영 하였고,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성실히 이행 하려는 노력 등이 있을 경우에는 1/2의 범위 내에서 경감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철도차량 제작자가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 승인제도 위반시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과징금도 해당 철도차량 제작사의 연매출액의 규모와 이행력 담보수준, 입법예고 과정서 제작사의 의견 등을 반영(입법예고시 최고 1억원 → 8천만원 하향조정 등)하여 산정하였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성실히 이행 하려는 노력 등이 있을 때 1/2의 범위 내에서 경감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철도용품 제작자가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 승인제도 위반시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과징금은 해당 철도용품 제작사(139개 업체)의 연매출액의 규모(44억~25조)와 이행력 담보수준, 입법예고 과정서 제작사의 의견 등을 반영(입법예고시 최고 5천만원 → 2천~4천만원 하향조정 등)하여 산정하였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성실히 이행 하려는 노력 등이 있을 때 1/2의 범위 내에서 경감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7) 철도안전법 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관제업무, 철도차량정비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에 대한 자격증명제 도입하고 자격증명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신설 규정함 **신설**

심사결과 관제, 철도차량정비 분야에 대한 안전성 강화,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활용, 채용재원의 저변확대, 업무 수행시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자격증명제의 도입 및 시행이 필요한 만큼, 국토교통부가 수정 제출한대로 법 시행 당시 제22조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실무경력 2년 미만자에 대한 자격시험 일부면제와 관련해서는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관제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원안 동의

심사내용 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하지 않으면 효력이 정지되고,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증명의 효력은 상실되는 신설 규정 **신설**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같은 법 제19조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갱신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 다른 자격증명의 경우도 갱신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자격증명의 효과적 관리, 자격증명의 신뢰성 강화 등의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등으로 자격증명을 취득 했을 때 그 자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자격증명의 취소 처분의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신설 **신설**

심사결과 자격증명에 대한 질서유지, 자격증명 취득자의 업무상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자격증 취소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유사 입법례(항공법, 선박지원법 등)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제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자격증명 취득은 물론 실무수습 이수 등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규정 강화 **신설**

심사결과 이론중심의 자격증명 취득만으로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무수습 이수 등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추가 요건을 갖추도록 별도 규정한 한 것은 철도안전과 직결된 관제업무 특성상 필요한 내용이며 현재도 관제업무 수행에 앞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8)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6, 강화 2)

심사내용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규정 **신설**

- (등록대상) 자기관리형: 100호 이상, 위탁관리형: 300호 이상
- (등록요건) 자기관리형: 자본금 2억원 및 전문인력 2명 이상, 위탁관리 : 자본금 1억원 및 전문인력 1명 이상 보유

심사결과 수정안에 동의하되 재검토일몰(3년) 설정, 아울러 ①주택법 ②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

심사내용 주택임대 관리업 등록절차 및 등록 시 제출 서류 **신설**

- 주택임대 관리업 등록 희망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시장 등은 등록증을 교부(시행령)
- 신청서 첨부해야 할 서류: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재외국민인 경우 한), 자본금 증빙서류(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전문인력 자격 증명서, 사무실 확보서류 등(시행규칙)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등록신청자의 등록요건 적합여부확인 등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에 한정하고 있으며,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유사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주택임대관리업자 대한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

-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을 말소,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를 하도록 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동 시행령의 주택관리업에 대한 現行 행정처분 기준과 거의 같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의무화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증의 종류 및 가입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신설**

- 임대인 보호 목적: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
- 임차인 보호 목적 :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
- 보증가입 기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금융기관
-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증서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포함)할 것

심사결과 동 개정안에 대한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경우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 모집, 임대차 계약 체결, 주택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자이므로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동 개정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인과 관리업자간 및 임차인과 관리업자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에 따른 보증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주택임대관리업 실태 조사 **신설**

- 국토부 장관은 등록대상자의 등록여부, 등록요건 적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등록된 관리업자의 업무나 재무관리상태에 대한 보고를 명할 수 있음
- 또한,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 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심사결과 동 개정안을 법 제53조의7(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독)의 집행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 취지와 맞지 않는 등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은 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이므로 등록요건 적합여부는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이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등록여부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철회권고

심사내용 주택조합사업 추진관련 공개대상자료 추가 **신설**

-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월별 공사 진행 사항,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변경, 사업비 변경,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심사결과 동 개정안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사업시행에 관한 자금운용 세부내역 등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설정 **강화**

-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및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심사결과 동 개정안에 대한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보증상품 가입의무는 자기관리형 관리업자로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므로 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법정 최고한도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며,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에 대하여는 관련 부분은 주택임대관리업과 유사한 주택관리업의 과태료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강화 **강화**

- 건축분야 기술자 1명 이상을 추가

심사결과 국토부에서 주택건설경기 회복 등 추이를 보아 다시 재검토할 것을 이유로 금번 개정에서 자진철회

(9)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강화**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및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 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가능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강화

심사결과 당초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들이 조기에 이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촉진하고자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 적용하였으나, 최근 일부 특별분양을 받은 자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입주 전 미등기 전매를 하는 등 편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투기차단이 필요.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더라도 특별공급에 한하여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실수요 공무원의 조기정착과 주거안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며, 그 기간이 취지에 비해 과하지 않으며,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무지 이전, 질병치료나 결혼, 해외 이주 등의 합리적 사유에 따라 전매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1)

심사내용 철도운영자 등(한국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등 15개 운영기관)이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개시 90일전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제출서류도 현행 안전관리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로 과도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및 모의운영 과정 등을 통해 운영기관의 의견을 수렴 반영했고, 승인절차 간소화와 신고할 경미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9개사)가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가 도입시행('14.3.19)됨에 필요한 제출 서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운행차량의 경우는 동 개정 안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제작될 신모델 철도차량의 경우에도 제작당시 최초 1회만 형식승인을 받으면 됨으로써 철도차량 발주시 마다 성능검사를 받고 있는 현행 제도보다 절차 면에서 오히려 간소화 된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고자 하거나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경미한 사항은 신고)을 받아야 하며, 제작자 승인검사는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 검사, 제작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검사기준 등 세부적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제작사와 사전 업무협약, 모의시범 운영 등을 통해 제출서류 및 검사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철도차량 완성검사는 완성차량검사, 주행시험 방법으로 실시하고 검사 및 시험기준 등 세부적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검사방법과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철도차량 제작검사 중 최종검사(완성차량검사) 및 성능시험의 운행선로 시운전(주행시험)과 거의 유사하며, 동제도 시행에 앞서 제작사의 의견을 수렴 반영,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도 최소화하였고, 비용도 현행제도에 비해 오히려 적게 드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철도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아야하는데 따른 제출서류, 승인절차 등 규정하고 승인검사는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용품형식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그 세부적 기준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함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현재 사용 중인 철도용품의 경우, 별도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신모델 제작시 최초 1회만 받으면 되므로 형식승인 신청 등에 따른 제작사의 비용부담은 현재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철도용품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승인, 변경승인, 신고에 따른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작자 승인검사는 제작사 신청에 따른 적합성 검사, 제작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세부적 검사기준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작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를 최소화했으며 철도용품 제작시 최초 1회만 받으면 되므로 현행보다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오히려 적게 드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은 형식승인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준도안은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품질인증품의 표시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동 제도 도입시행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철도차량과 용품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지위승계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현행 품질인증품 생산자 지위승계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며, 제출서류 또한 제작자 승인 지위승계를 확인 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서류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승인된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에 대하여 항시 유지여부를 매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검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제작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시정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현행 검사제도(발주계약별 검사) 보다 오히려 간소화되었으며, 1년 주기 정기검사는 이미 유럽 등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입법예고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제작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사)가 시정조치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할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시정조치 상황은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 시정조치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고해야함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제작사의 시정조치계획 이행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입법과정 및 모의운영을 통해서 제작사의 의견을 수렴 반영했으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보고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철도차량 등을 운행하려는 자는 관제기관으로부터 철도교통 관제허가를 받고 사전 승인된 운행계획에 따라야 하며, 철도시설 내에서 사람, 자동차(건설기계 및 장비를 포함한다) 및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철도종사자 또는 철도운영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함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철도교통 관제업무의 대상과 내용 및 운영절차 등에 대해 상위법 위임에 따라 구체화하는 것으로, 그동안 철도관제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해 오던 업무와 절차 등을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11)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이전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 **신설**

- '13.12월 개정된 「인감증명법」에 따라 매수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사용
- 또한, 자동차 매매업자 등이 매수한 자동차를 이전등록 신청 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동 개정안을 적용하여도 거래당사자간 사전담합이 있는 경우에는 위장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우나, 매도·매수인이 기재된 인감증명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거래관계가 한층 투명해지고 불법거래를 추적하기 용이해지므로 미등록 전매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인감증명서 제출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나 과도하지는 않음. 다만, 상위법에서는 대통령령에 개정안과 관련 사항을 위임하고 있어 법 형식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동의하나, 법 체계상 동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법령 개정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재검토형 일몰(2년)을 개선권고 함

(1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건설기술자의 범위 **강화**

- 현행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로 나누어진 인력 분류체계를 "건설기술자"로 단일화
- (자격+경력), (학력+경력)의 이원화된 산정방식 폐지,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 평가한 역량지수를 활용, 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산정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Two Track으로 이어오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등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부처 정책 결정사항임을 감안하여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동의하나, 상위법 위임근거가 불명확하며 피규제집단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종합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검토형 일몰 2년 개선권고

(1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현행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제도'를 '철도이용자 서비스기준 평가제도'로 바꾸고 이의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서비스 기준을 제정·고시·평가할 수 있고, 서비스 유지·향상을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동 제도 시행에 따른 피규제 대상자(철도공사 등 4개 운영기관)가 적고, 국내외 유사사례가 있으며 추가비용 또한 미미한 데 반해 서비스 개선의 효과에 따른 수혜자는 철도이용자 다수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유가보조금 지급심사 또는 반기별 일제조사 과정에서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 **강화**

(현 행)	(개 정)
• 주유횟수 일 5회 이상 주유	• 주유횟수 일 4회 이상 주유
• 같은 톤급 월평균 1회 주유량의 15배가 넘는 유류를 일 2회 이상 구매한 경우	• 1회 주유시 탱크용량 초과 주유, 같은 톤급별 월평균 1회 주유금액의 10배가 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기준을 강화

(현 행)	(개 정)
• 3회 위반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영구정지	• 1회 위반 후 5년 내에 2차 위반 시 거래 기능 영구정지

심사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패턴은 부정수급을 의심할 만한 기준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부정수급 의심거래 패턴으로 적발된다 하더라도 유가보조금 청구내역 심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부정수급이 아님을 소명하거나 입증하면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한 1회 위반 후, 5년 이내 추가 위반시 거래기능의 영구정지도 세금누수방지 및 운송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15)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타면조종형비행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프로펠러, 낙하산 등의 기술기준을 강화하고, 경량항공기 소유자의 경우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의 등급의 종류 및 운용범위를 항공기 객실내부 등에 표시토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경량항공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미국재료학회규격서(ASTM)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레저 및 교육용 경량항공기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경량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성을 국제기준에 맞춰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인(경량항공기 소유자, 관련 기관 등)의 이견이 없었으며, 현재 국내외서 통용되고 있는 기술기준을 법제화하려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16)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02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기본수수료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강화**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장기간 동결되었던 감정평가 기본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인상폭이 과하거나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중요로 분류

(17) 주거급여 조사의 의뢰 및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조사의뢰기관(LH)이 주거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의 종류(신청조사, 방문조사)와 급여의 내용(임차료, 수선유지비)에 따라 조사하는 사항 규정 **신설**

심사결과 동 제정안은 주거급여 실시를 위해 수급권자에 대한 주거현황 조사를 위탁함에 있어 그 조사내용 등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 맞춤형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조사내용 및 방식 등 주거급여 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바,
- 조사내용이 법률상 주거급여(임차료,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가구규모, 거주여부, 소득인정액, 임차료 부담수준,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파악하는 데 국한된 것으로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로 분류

(1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탑승승객에 대한 운송정보 항목을 명시하고, 운송정보의 제공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공항운영자 검색요원에게 탑승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를 탑승권 구매와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현행 육안식별 중심의 항공보안 검색기능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유사 입법례가 있으며, 제공받은 운송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관리와 이륙 즉시 전산시스템상 자동 폐기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분류

(19)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및 추가 제출자료를 명시하고,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사용자료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철도용품 제작자 승인에 따른 절차와 방법 및 추가 제출자료를 명시 **신설**

심사결과 철도용품 관련 형식승인·제작자 승인 제도도입 시행(2014.3.19)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 추가 제출자료 등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동 시행지침 마련시 철도용품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과정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20)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3, 강화 2)

심사내용 동별 대표자 선거 시 선거관리위원 자격제한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기존 동별 대표자 외에 후보자나 동별 대표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제한 규정을 추가

심사결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기존 동별 대표자 외에 그 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를 제척하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 시 사업자 선정주체 변경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 위탁·대행 용역을 추가로 규정

심사결과 전기사업법상의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의 주체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이를 명확화 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자투표제 방법과 절차 등 규정 신설 **신설**

- 동별 대표자 선출 등의 경우 전자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전자투표 통지 시 전자투표 방법, 전자투표 기간,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밝히도록 하며, 운영의 일부에 대한 위탁근거를 규정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전자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본인인증방법·통지내용·위탁근거 등의 절차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인증방법의 실시가능성, 통지사항의 적정성 등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주택관리업자가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강화 **강화**

- 현행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3차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4차 이상 반복된 위반행위도 가능하도록 강화

심사결과 신설된 처분기준은 법 제54조 제1항 각호 위반에 대해 등록취소를 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위반행위의 정도·횟수에 비해 처분기준이 과하지 않고, 현행 기준의 문제점인 1년 이내 3차 이상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의 부재, 2회 이상 동일·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누락으로 인한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비중요로 분류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법률에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위반자, 회계장부 미작성자,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그 세부기준 규정

심사결과 위반행위의 정도·횟수에 따른 부과기준과 금액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정도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로 분류

(21)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시행지침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철도차량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신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및 추가 제출자료를 명시하고,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에 사용된 자료 보관의무를 규정 **신설**

심사결과 철도차량 관련 형식승인·제작자 승인·완성차량 검사 제도도입 시행(2014.3.19)에 따른 세부 절차와 입증방법, 추가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동 시행지침 개정시 철도차량 제작사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으며, 모의시험 적용기간)을 두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22)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내화충전구조 시험성적서의 항목 추가 및 현장검사 **강화**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내화충전구조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항목에 충전재(보온재) 밀도를 추가 검사하고, 공사 시공자와 감독·관리자는 준공 전에 시험성적서에 명기된 보온재 밀도와 시공된 보온재 밀도를 비교·확인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내화성능 기준을 통과한 시험체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시험성적서 항목(밀도)을 추가하고, 감독자 등에게 비교·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됨. 또한, 동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건축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없고, 공사 감독·관리자 등이 확인해야 하는 항목 및 방법을 마련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라 볼 수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부적격당첨자 소명기간 단축 **신설**

-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소명기간을 기존 1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단축

심사결과 소명자료가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부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과거에 비해 제출자료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치 않으며, 소명기간 단축에 따라 적격 당첨자의 편의와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 규제강화에 따른 비용에 비해 편익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적절.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입주자모집 조건 **신설**

-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하여야 하는 저당권 등의 대상에 가압류·가처분을 추가하여 규정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승인 시 사업주체로 하여금 저당권 등 입주자 권리보호를 위해 말소해야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새로 포함되는 가처분·가압류 또한 저당권 등과 같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에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입주자 권리보호를 위한 동 규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비중요규제 원안의결

(24)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신설**

-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가설건축물 기준, 높이 제한 규정, 대지 분할제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건축법」 등에 따른 하위 건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그 세부 기준 역시 관련법령의 범위 이내이며 기존 3개 시·군의 건축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받는 1종·2종 시설물의 범위 확대 **강화**

- 항만 외곽시설(방파제), 연장 300미터(現, 500미터) 이상의 시·군·구도로, 공동구, 국가·지방 하천 수문 및 통문의 배수펌프장(또는 빗물펌프장), 절토사면((現) 연장 200m이상, 높이 50m이상 → (改) 연장 100m이상, 높이 30m이상)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시특법」상 관리되는 1·2종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간 종외 시설물의 붕괴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되며, 1·2종 시설물이 개정안과 같이 늘어날 경우(4,500여개 증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70억원 추가 발생하나, 동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물의 대부분은 관리주체가 공공으로 민간에 부담되는 직접적인 비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측면 편익에 비해서도 비용부담은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 **강화**

- 「시특법」에 따라 제출되는 시설물 정보(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행확인 및 점검 근거 규정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하는 시설물 정보에 대하여 불성실한 입력으로 인한 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를 방지토록 하기 위해 이행확인 및 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동 제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당연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또한, 개정안에 따라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반발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26) 건축사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신설**

-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공제조합의 업무·회계 상황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법률로써 마련하는 것으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계약자의 권리보호·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이와 유사한 법률에도 대부분 도입하고 있는 규제로 타입법례를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7)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격 중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기존 규정의 내용 부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관련 법규의 해석(법제처 '13.12.12)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으로 비중요로 분류

(28)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신설**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에 대한 세부 관리지침 규정
- PQ(사업수행자 평가) 대상 전문분야 일괄 하도급 제한 및 하도급 계약 시 서면계약서 발급하도록 강행규정
- 하수급인의 자격을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한정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공정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괄 하도급을 제한하고, 계약 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됨. 자재나 장비 등의 재하도급이 불가피한 건설공사와는 달리 건설기술용역은 그 특성상 기술인력이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재하도급 불허는 타당한 규정으로 판단됨.

또한, 하수급인의 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중소기업 보호 및 동반성장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동등수준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적합하지 않음.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9)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신설**

- (현장점검강화) 기술지원기술자(감리원) 전원이 시행하는 합동점검을 반기별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하고, 공사관리관이 입회하도록 규정
- (청렴의무강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해당 기술자를 교체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내실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공사관리관 등 관련 인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면서 그 주기를 단축하는 것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를 위한 관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현장점검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에 비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사고예방의 편익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청렴의무를 위반한 해당 기술자의 교체는 당연·필요한 규정으로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건축서비스 산업 실태조사 **신설**

- 건축서비스 산업의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 대상 등을 규정(실태조사 주기는 매년이며, 조사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및 인력 현황, 임금실태 등으로 규정)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동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동일하게 규정한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유사입법례를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역량 있는 건축사 자격요건 **신설**

- 법률에서 공공사업을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역량 있는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임의규정), 제정안에서는 역량 있는 건축사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제공모전 또는 국내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최근 10년간 UIA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심사결과 본 제정안은 공공사업에 한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른 그 세부요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역량 있는 건축사"를 국내·국외 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로 규정하여 요건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쟁영향평가(공정위) 및 부처 자체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국내공모전을 추가함으로써 자격제한 및 경쟁제한을 최소화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됨. 또한, 동 제도는 법에서 국가·지자체가 자체판단을 하여 공모대상제한 사업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재량행위로써 규제의 범위가 과도하지 않음.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신설**

- 5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할 것(서울시는 10이상)
- 건축서비스사업자 中 중소기업자가 30% 이상일 것
- 진흥시설 中 산업시설 및 지원시설 면적이 50% 이상일 것

심사결과 본 제정안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및 설비제공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진흥시설로 지정될 경우 이는 「벤처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간주됨에 따라 지자체의 시설비지원 및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이 존재. 중소기업 비율은 균형있는 발전과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요건으로 필요·타당하며, 진흥시설 中 산업·지원시설 면적요건 역시 동 제도의 취지 및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적정수준임. 또한, 진흥시설 지정요건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법」 등의 타입법례를 비추어 볼 때 과도하지 않음. 사업자 입주요건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타 도시보다 기준이 엄격하나, 전체 건축사의 30%이상이 서울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면 동일하게 5인 기준 적용 시 진흥시설이 과도하게 밀집·지정됨에 따른 예산한계, 세수부족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진흥시설 지정 취지가 흐려질 수 있음. 따라서 동 제도의 실효성 차원에서도 서울시와 타 지역을 구별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비중요규제로 분류

심사내용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위 반 행 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1.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건축주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2. 설계자의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시공자 또는 감리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심사결과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이내로 타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지 않으며,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의무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법령 집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재처분으로써 위반횟수 별로 차등 적용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 비중요규제로 분류

(3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현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중개업자에 대한 실무교육(32~44시간)만 규정하고 있으나, '13.6월 법 개정으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대한 실무(직무)교육 및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의무화함에 따라 교육 내용·절차 및 교육 시간을 규정함 **강화**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정안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내용
개설 및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32~44시간	직업윤리 전문지식	실무교육 28~32시간 연수교육(2년마다) 12~16시간	법률지식, 중개·경영실무, 직업윤리 등
소속 공인중개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중개보조원	〃	〃	직무교육(고용전) 6~8시간	중개실무, 직업윤리 등

심사결과 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와 공제사고율 감소와의 상관관계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나, 국토부가 중개업자등에 대한 교육 강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교육내용·시간을 최소화하거나 교육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함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은 원안동의하나,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타 유사전문직에 비해 과도하도록 보이므로 교육시간을 추가 축소(3~4시간)하도록 개선권고

(32)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건설기술자의 등급 부여 기준의 세부사항 규정(자격, 경력, 학력) **강화**

- (경력지수) 로그함수를 이용하여 산정하되, 업무난이도를 고려하여 가중치 적용
- (자격지수) 자격증 등급별 차등적용하여 점수 부여
- (학력지수) 학위별 취득 소요년수를 감안하여 점수부여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자격·경력·학력의 세부점수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시행령)은 지난 본 위원회에서(제321회) 원안의결(재검토형 일몰 2년)하였으며, 각 영역별 세부점수 산정방법 및 기준 역시 시행령 규제심사 시 충분한 검토·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금번 심사 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3)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면허를 받기 위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할 사항 등을 명시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 세부 면허기준을 신설함 **신설**

심사결과 그동안 국철 등 일반철도에 적용되는 철도사업법을 준용해 오던 것을 법제화 하려는 것으로, 제출서류 및 면허기준 또한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도시철도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을 휴·폐지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제출시기 등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그동안 준용해 오던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을 법제화 하려는 것으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또한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명시 **신설**

위반행위	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사업면허 취소			
2. 면허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3. 법 제2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4. 시·도지사가 정한 날짜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5.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6.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7.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8.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심사결과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유사입법례가 있으며, 기존의 처분기준을 개정된 도시철도법 체계에 맞춰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검토

(34)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허가 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지할 경우 게시할 내용 및 장소, 시기 등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그동안 도시철도가 정상운행이 안 될 경우, 철도사업법을 준용하여 인터넷, 역사 등에 그 사실을 미리 공지해 왔던 사항이며, 동 제도 시행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추가 비용부담도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도시철도운영자가 '14.7.8부터 신규 도입하는 도시철도차량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CCTV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안내판의 표시내용과 표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설치기준은 물론 표시내용과 방법도 개인정보법 등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3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산업단지 지정해제 요건 구체화 **강화**

- 법률에서 규정한 지정해제의 요건 中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 ◦ 시행자 지정을 위한 입찰실시 등에도 다른 시행자가 없는 경우
  - ◦ 실시계획 승인 후 3년 이내에 산단 면적의 30%이상 소유권을 미 확보한 경우로서 미확보 부지 소유자의 2/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때
  - ◦ 실시계획 승인 후 5년 이내에 산단 면적의 5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미확보 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장기 미개발 중인 산업단지의 지정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지정해제의 구체적인 요건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타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6)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특성화대학원 협약해지 사유, 장학금 지원중단 및 환수 사유·방법 등 절차를 명시하고, 대학원 장학생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부과 및 제출의무면제 사유, 연구결과물 제출절차 등에 대해 규정 **신설**

심사결과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선정된 운영기관과의 협약 해지 사유, 장학생의 의무, 지원 장학금의 환수 사유 등은 양성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상 필요 범위내의 사항이고, 장학생의 연구결과 제출 의무 및 의무면제 사유 등도 합리적인 범위내의 필요 규정임을 감안하여 비중요로 분류

(37)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양성기관 지정 시 협약체결, 협약체결 시 명시사항으로써 해지할 수 있는 사항과 해지 시 집행잔액과 부당 징수액 반환을 명시하고, 협약 해지 시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금 집행 중지 및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해 규정 **신설**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인력양성기관 지정방법(협약체결), 해지사유 및 지원금 반환 사유 및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협약체결, 해지사유요건이나 지원금 환수 및 반환 사유 등의 규정은 운영상 필요 범위내의 사항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38)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특성화고 협약해지 사유,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 사유, 환수 불이행 시 조치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성화고의 보고사항과 연차평가 방법, 결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대해 규정 **신설**

심사결과 특성화고 육성을 위해 선정된 운영기관과의 협약 해지 사유, 지원중단 및 환수사유, 환수불이행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 등은 양성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상 필요 범위내의 사항이고, 연차평가나 이의신청을 위한 절차 등도 합리적인 범위내의 필요 규정임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39)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신설**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범위 등에 대한 구조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검토기준 등을 규정(세부 기준 생략)

심사결과 동 제정안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를 위한 안전성 검토 내용, 설계도서 변경사항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내용상 안전진단을 위한 기술적 절차와 방법·정도에 관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0)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신설**

- 증축형 리모델링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및 수직증축 가능여부 등에 대한 판정기준 등을 규정(세부기준 생략)

심사결과 동 제정안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안전성 평가방법과 수직증축 가능 판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내용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안정성 평가와 판정에 필요한 기술적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건설기계범위 확대 **강화**

-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에 포함
- 다만,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건설기계 범위 확대를 통해 정비와 조종을 면허취득자가 하게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타워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 회피 목적으로 3톤 미만으로 구조 변경하여(8톤→3톤) 사용하는 등 시장질서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도 동 규제의 강화 필요성이 있음. 동 개정안에 의해 상기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등록 수수료 및 검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나(대당 20~30만원), 지게차의 경우 도로가 아닌 제조업현장 또는 물류단지(창고) 내에서만 이용할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지게차 대부분이 물류단지 또는 제조업 현장에서 이용) 발생 총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신설**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시 구조설계도서 작성 시 적용되는 구조해석, 구조보강 설계 등에 대한 구조기준을 규정(세부기준 생략)

심사결과 동 제정안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해석, 구조보강 설계 등 구조기준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내용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설계 도서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3)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5)

심사내용 도로보전 입체구역에 있는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토질 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 설치를 통해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 등을 금지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제한하는 내용이 일반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동 규제로 인한 점·소유자의 부담 보다 공익적 편익이 큰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자동차전용도로는 최소 5km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2km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그동안 적용해 오던「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의 지정기준과 동일하며, 지자체·교통공단 등 관련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장기적으로 도로굴착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업계획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변경하는 것을 허용 **신설**

심사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5년 단위 굴착계획 수립 공유 의무화)코자 하려는 것으로, 피규제 대상자가 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이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운전자가 차량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신설**

- 차량의 승강조작장치를 장치하여 조작하는 행위
- 차량의 가변 축을 조작하는 행위
- 차량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
- 차량의 축간 거리 또는 차축 높이를 조절하는 행위
-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차량을 감속 또는 가속하는 행위
-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심사결과 그동안 훈령(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개정된 도로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하려는 것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일반화된 규정인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도로법상 도로와 연결허가를 먼저 받은 자와 새로 연결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공동사용하려는 자간의 분담금액 결정방법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그동안 지침으로 제정, 시행해 오던 사항을 개정된 도로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상향입법 하려는 것이며, 입법예고 시에도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4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내진성능평가 미 실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

위 반 행 위	과태료
라. 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부과액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 이내이며, 의무행위와 위법의 정도가 비슷한 동법 시행령의 입법례를 비추어볼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신설**

– 운송비용 전가(轉嫁)금지 위반 시 과태료(기속) 및 사업면허취소 등(재량)의 구체적인 처분 기준 규정(특별시·광역시는 '16.10월, 그 외는 '17.10월 시행)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1,000만원	과태료 1,000만원
–	사업일부정지 90일	감차명령

심사결과 운송비용 전가금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세부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사항으로, 과태료는 이전과 동일수준임. 다만, 3차 위반 시 감차명령 또는 면허취소 등으로 강화됨. 운송비용 전가금지의 입법취지가 과속, 난폭운전 및 승차거부 등 택시운송서비스 저하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동 제재처분의 강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1년 내 3차례 적발됐다는 사실은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상기 안과 같은 처분(감차 또는 면허취소)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도급택시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사업자에 대한 처분) **신설**

– 도급택시 금지의무 1차 위반 시 면허취소

심사결과 도급 금지 위반에 대한 처분의 경우 현행 여객법령에 비해 강화되었나, 탈세·반사회적 범죄 예방 및 운송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택시를 도급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면허제를 무력화시켜 운송질서를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실제 단속 및 적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불법행위 발각에 따른 처분이 미약할 경우 법규 준수율이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판단됨. 또한, 위법의 정도 및 입법 목적이 유사한 「여객법」상 명의이용금지에 대한 행정처분이 "1차 위반 시 면허취소"임을 고려할 때 동 제정안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승차거부 금지에 대한 제재처분(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 **신설**

– 승차거부 금지 위반 시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기속)·면허취소(재량) 등의 세부기준 마련(자격취소는 운행자격의 취소를 의미하며, 면허취소란 사업면허에 대한 취소를 의미)

처분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 전 자	20만원	40만원, 자격정지 30일	60만원, 자격취소
법인택시사업자	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면허취소
개인택시사업자 (대리운전인 경우)	운행정지 90일	운행정지 180일	면허취소

심사결과 승차거부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작년 법률 규제심사 시 본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준으로 입법예고안에 비해 완화(입법예고: 1차 50, 2차 100, 3차 100). 다만, 자격취소 관련하여 △누적 위반횟수 산정기준이 강화되고(1년내 → 2년내), △처분 수준도 다소 강화됨. 상기 규제는 여객법을 통해서도 시행되고 있으나, 택시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위반행위이며 승객들이 가장 불만을 느끼는 불법행위로 택시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재처분 강화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현행법상 자격취소가 旣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취소까지 간 사례는 거의 없어 사실상 동 규제가 신설되더라도 경각심 제고 차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법인택시사업자의 경우 법률에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처벌이 되는 면책조항이 있어 과도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당요금·합승·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제재처분 **신설**

- 부당요금·합승·카드결제 거부금지 위반 시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기속)·면허취소(재량) 등의 세부기준 마련

처분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 전 자	20만원	40만원, 자격정지 10일	60만원, 자격정지 20일
법인택시사업자	일부정지 60일	일부정지 90일	일부정지 180일
개인택시사업자 (대리운전인 경우)	운행정지 60일	운행정지 90일	운행정지 180일

심사결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③ 승차거부 제재처분과 같이 법률 규제심사 시 본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준으로 입법예고안에 비해 완화(1차 50, 2차 100, 3차 100).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여객법에 비해 오히려 완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수위에 대해서는 택시업계와의 의견조율을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입법예고안에 비해 완화됨.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법률에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 작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100만원 → 300만원)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상향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법률에서 개정된 과태료를 적용하고, 그 동안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대해 횟수별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부과액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 이내이며, 상승된 금액 역시 일반적인 입법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비중요규제로 분류

(4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바닥 마감재 미끄럼 방지 기준 **강화**

- 욕실, 화장실, 샤워실, 등의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건조 마찰계수 0.5 이상, 습윤 마찰계수 0.5이상)

심사결과 상기 안은 작년 규제심사 시('13.12) 원안의결하여 통과한 바 있으나, 법제처 심사단계에서 규제대상 건축물의 법적 위임근거 불명확을 이유로 再 입법예고('14.3.18~28)를 권고하여 금번 심사를 요청. 바닥 마감재 기준은 지난 번 심사와 동일하나 규제 대상이 분양 건축물·다중이용업소에서 전체 건축물로 확대. 다만, 한국건설자재연구원 및 타일업체에 문의한 결과 현재 타일을 생산함에 있어 한국산업표준(KS)에 맞추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타일생산업체에 부담되는 추가 비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되며 통상 타일의 가격은 상기 기준인 마찰계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에 의해 결정, 건축주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됨. 해당 규제의 법정 시행일이 이미 지난 점('14.1.17), 이해관계자 반발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화물운송사업자가 불법으로 화물자동차의 구조 및 물품적재 장치를 변경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지급정지 할 수 있는 규정 추가 **강화**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화물자동차의 불법개조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의 판단기준이 되는 다른 행위금지사항에 비해서도 과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4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 **신설**

-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발부받아 표시해야 할 대상이 되는 호수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

심사결과 주택성능등급의 의무화는 기존 녹색건축물 인증제와의 중복·변질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동 개정안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준세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함. 1,000세대 이상으로 의무화 대상을 하향할 경우 전체 사업계획승인의 12%이나 세대수로는 전체의 36.2%에 해당하는 반면, 인증수수료 비용은 당초 발생예상 비용의 1/3수준('11~'13년 평균 4억2천여만원)으로 감소. 또한, 500세대 이상으로 의무화하게 되면 '13년 기준(2.28~12.31)으로 108건(500세대이상 사업계획승인실적(179건)-녹색건축물 자발적 예비인증실적(71건))정도가 추가 인증이 필요하나, 1,000세대로 하향 할 경우 27건(1,000세대이상 사업계획승인실적(53건)-녹색건축물 자발적 예비인증실적(26건))정도만 추가 인증이 필요해 인증기관의 수용능력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1,000세대 이상으로 개선권고 함

심사내용 장수명 주택 인증대상 **신설**

5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중 일반이상의 등급을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주택수요의 다양성, 새로운 패턴의 주거문화 등에 대응하고 아파트의 장기적·체계적 관리로 자원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변성과 수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장수명 주택 도입취지는 이해되나,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대해 장수명주택 인증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자율 인증에 비해 업계와 잠재 입주자의 선택의 기회를 대폭 제한하여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동 개정안이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기준세대의 적정성 중심으로 판단함. 1,000세대 이상으로 의무화 대상을 하향 할 경우 전체 사업계획승인의 12%이나 세대수로는 전체의 36.2%에 해당하는 반면, 전체 건설 비용 및 인증 수수료 비용은 당초 발생예상보다 감소하고, 또한, 최소기준 일반등급 의무화는 비용절감효과 차원에서 기존 공동주택과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장수명 주택 건설에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1,000세대 이상으로 하향하여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자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인증기관의 수용능력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제도도입 초기인 만큼 시행 가능 한 세대수에서 시작하여 착오를 최소화하고 향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확대 또는 자율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500세대 이상을 1,000세대 이상으로 개선권고 하고 아울러 재검토 일몰 3년을 권고함

(50)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 의무 창고의 대상 확대 **강화**

- (現) 바닥면적 3천㎡ 이상(자동식 소화설비 설치한 경우 6천㎡ 이상)
  → (改) 바닥면적 6백㎡ 이상(자동식 소화설비 설치한 경우 1천2백㎡ 이상)

심사내용 중기청 및 발포플라스틱 협동조합에 따르면 난연성 마감재 사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글라스울 패널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스티로폼 패널”을 생산하는 중소업체의 경영악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이나 동 개정안은 난연성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순히 스티로폼 패널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연성 제품의 사용을 막고자 하는 것임을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인. 관련 전문기관(기표원, 방재시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스티로폼 패널 중에는 가공처리 방법에 따라 가연성 및 난연성 스티로폼 패널이 존재하며, 동 규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스티로폼 패널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일반적인 패널 제조社는 강판과 심재를 구입하여 단순 조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스티로폼·우레탄·글라스울 패널을 같이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라인의 변화 등 추가되는 비용부담은 적을 것으로 추정. 따라서 중기청 및 발포플라스틱 협동조합이 주장하는 스티로폼 패널 생산 중소업체의 경영악화와 동 개정안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동 개정안에 따라 피규제 대상이 크게 증가하며 이로 인한 규제비용이 발생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안전에 대한 편익을 감안할 때 필요·적정한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5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매매계약 체결 전 매수인에게 알선 및 이전등록대행의 수수료 또는 요금 고지 의무 규정(법률), 이를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시행령 개정안)
-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이 실제지불비용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통지 의무 규정(법률), 이를 위반 시 30만원 과태료(시행령 개정안)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이며, 부과액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100만원) 이내로, 일반적인 입법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52)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매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알선하는 행위 금지(법률), 이를 위반 시 1차(30일 정지), 2차(90일 정지), 3차(등록취소)
-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행위 금지(법률), 이를 위반 시 1차(30일 정지), 2차(90일 정지), 3차(등록취소)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매매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며, 위반횟수별 제재처분은 위법 정도 및 목적이 유사한 동법의 입법례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53)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수납공고 이전까지 받아야하는 통합채산제 승인시기를 수납공고 7일전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통행료 수납기간을 유료도로 전체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 **신설**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유료도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1980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통합채산제의 승인절차를 명확히 하여 제도시행의 적정성과 규범력을 높이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입법예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시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합채산제 승인의무(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정하고 그 위반행위이 경미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1/2 감경 규정을 둠 **강화**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경우	법 제28조	500	700	1,000

심사결과 현재, 피규제 대상자는 한국도로공사만 해당되며 향후 민투법에 의한 법인이 승인대상 유로도로관리권자가 된다하더라도 유료도로를 운행하려는 법인의 자산규모(수천억~수조원), 1일 평균 통행료 등을 고려할 때 의무위반자에 대한 1천만원 범위 안에서의 과태료 부과(1/2 범위內 감경)는 과도한 수준이 아님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54)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임대보증금 증액분 분할납부 이율가산 **신설**

- 은행법에 따른 전년도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분할납부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분할납부로 인한 금융비용 등에 대한 임대 사업자의 추가부담과 적기 납부한 임차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미납 보증금에 대한 최소한의 이자는 필요하고, 이에 그 이율이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하지 않은 점 등에서 비중요로 판단

심사내용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신설**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처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개인정보보호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임대주택의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한 자산,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는 확인에 필요성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해 많은 타 유사 법률에서도 근거규정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비중요로 판단

(55) 주거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주거급여의 조사 **신설**

-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시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주민등록번호 3. 외국인등록번호"를 규정
- (시행규칙)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시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아래와 같이 각 호를 규정

구 분	임차료(제1항)	수선유지비(제2항)
신청조사 (제7조)	1. 임차료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주택등의 유형, 시설상태, 환경 등 주택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실제 거주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차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	1. 주택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2. 최근 수선유지 이력에 관한 사항 4. 실제 거주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선유지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확인조사 (제8조)	1. 주거지 변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의 차임의 연체여부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심사결과 맞춤형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신청조사 또는 확인조사 시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이며, 내용은 성명, 주소, 주민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필요 개인정보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또한, 맞춤형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조사내용 및 방식 등 주거급여 조사에 관한 세부 위임사항을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조사내용이 법률상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데 국한된 것으로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심사내용 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신설**

- 수급자가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월차임을 3개월 이상(국토교통부령) 연체하였을 경우 급여는 중지되며, 조사에 다시 응하거나 임대인이 주거급여를 대신 지급받거나 임대인에게 연체된 주거비를 지급한 경우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중단은 주거급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임근거도 명확함. 내용상 다른 유사 사례와 같이 주거급여 조사에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하는 경우와 지급받은 급여를 타 용도를 사용하여 임대료가 3개월 연체 된 경우 등은 급여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수급권자가 다시 조사에 응하거나 임대인에게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지급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 수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범위 내에서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로 분류

심사내용 금융기관등의 정보제공 **신설**

- 주거급여 실시 중 필요한 수급권자의 금융정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 그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

심사결과 동 제정안은 수급권자의 대상 결정의 충실화를 위해, 수급권자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및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법상 수급권자의 확정을 통한 재산 등 금융정보의 파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유사법률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

(56)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택지비 산정기준 **신설**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택지비 가격은 택지의 취득시점인 분양전환 승인 전에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동 규정은 '13.6. 도입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시 택지비의 산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정책적 사안인 만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특성상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택지비 가격은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시점(분양전환 승인신청 시)의 감정평가액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57)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7)

심사내용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신설되어 초경량항공장치의 사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신고제외 대상이었던 초경량비행장치 중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대상 비행장치에 포함 **신설**

심사결과 최근 초경량항공장치의 보유대수와 동호인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고 또한 매년 누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관리 및 안전보호 대책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항공레포츠사업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활용범위 확대는 그동안 영리목적의 불법사용 등 음성적 활용을 예방하고, 항공레포츠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운항자가 이착륙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이착륙 허가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착륙 장소 이외에서의 이착륙 허가신청 방법(무선통신 등)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 **신설**

심사결과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 등이 일반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비행할 때마다 비행계획을 제출 하여 승인을 받던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착륙하려는 경우에만

무선전화 등의 신청방법으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존 규제를 오히려 간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국토부장관 이외의 자가 이착륙장 설치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착륙장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제출 요구서류가 이착륙장 설치 허가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규정되어 있고,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도 공항·비행장 설치기준 등을 준용하여 (초)경량비행기의 이착륙장 특성에 맞게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도하지 않으며, 항공법 개정으로 사설 이착륙장 설치허가제 도입시행은 경량항공기 등의 사고를 줄이고, 항공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항공운임 등의 총액에 포함해야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항공운임 등의 총액에 관한 정보를 항공교통을 이용하려는 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신설**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국적 8개 항공사의 경우, 2012년부터 도입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를 개정된 항공법 위임에 따라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추가비용 발생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신설되고, 이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항공레포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을 하위법령에 규정 **신설**

심사결과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 다른 항공사업의 등록요건 등을 참고하여 항공레포츠 사업 특성에 맞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규정했으며, 등록시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확보, 전문인력 및 장비구축, 보험가입 요건 구비 등은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함 **신설**

- 무등록, 사업계획서 미신고 및 무단변경 등(500만원)
- 거짓보고, 검사거부, 거짓답변 등(200만원)
- 운임 및 요금표 미제공, 경미한 신고의무위반 등(50만원),

심사결과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업 등 유사 항공사업에 대한 과징금을 참작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반 내용이 경미하거나 성실히 개선 보완하려는 경우 1/2 감경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신설 **신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법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1) 국제항공운송사업자	300	400	500
2) 국내항공운송사업자	150	200	300

심사결과 과태료가 사업자의 사업규모, 허위 표지·광고시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했으며, 그 위반이 부주의, 오류에 의한 것이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1/2감경 규정을 두고 있어 과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58)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5, 강화 1)

심사내용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직권말소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 등을 조정하려는 자의 경우 조종자 증명대상에 추가 포함 **신설**

심사결과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법률에서 정한 최고기간(30일 이상) 안에 이의가 없거나 각하한 경우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볼 때 과도하지 않으며, 인력활공기, 낙하산류를 항공레포츠사업용으로 조종

하려는 자의 경우 일정 조정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인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연구·개발 중인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의 경우도, 사전에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인증 등급1)을 4종으로 세분화 하고 그 등급에 따라 운용범위[2)]를 구체화 함 **신설**

심사결과 사람탑승 등 경량항공기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험비행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술기준(고시)을 갖추고 비행하도록 비행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연구·개발 중인 경량항공기 경우, 그동안 합법적 시험비행이 어려웠으나 그 허가 요건이 법제화됨으로써 현행 제도상 미비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검토

심사내용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하고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7일 이내 보완조치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 다른 유사 항공사업의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항공레포츠사업 특성에 맞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출서류를 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시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중 항공운임등 총액 표시제(항공법 제117조제4항)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 신설 **신설**

위반행위	처분내용
12의2.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 운임 등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일부 정지(7일)

심사결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임등 총액표시제'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상위법 위임범위 내에서 구체화 하여 동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려는 것으로, '항공운임등 총액표시제'를 위반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나 여행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동일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1만원) 규정 추가 신설 **신설**

심사결과 다른 유사 항공사업 허가 또는 등록 신청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와 동일하고 등록신청서 접수, 검토, 처리 등에 따른 실비 수준으로 산정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의무위반 행위 및 항공운임등 총액표시제를 위반한 여행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및 행정처분 기준 추가 신설 **강화**

면허취소 및 행정처분의 기준

주 요 위 반 행 위	사업종류별 처분내용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여행업자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 한 경우	등록취소	–
등록범위를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사업전부정지(30일)	–
운임표를 갖춰두지 않은 경우	사업전부정지(5일)	–
항공운임등 총액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사업일부정지(7일)
인가 없이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	사업전부정지(30일)	–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	–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위반	사업전부정지(7일)	–
사업 개선명령 미이행	사업전부정지(30일)	–
사업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록취소	–
인가·신고 없이 사업의 양도양수	사업전부정지(20일)	–
상속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전부정지(20일)	–
사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등록취소	–
업무보고 또는 서류제출의무 위반	사업전부정지(7일)	–
항공기등 출입거부, 서류등의 검사거부	〃	–
관계인의 답변거부 및 거짓답변	〃	–

심사결과 다른 유사 항공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보다 과도하지 않으며,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행위별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검토

(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신설 2, 강화 2)

심사내용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신설**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신청 시 제주도민 우선고용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토록 규정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지역 일자리창출·소득증진을 위해 "제주도민 우선 고용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허가 시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부담정도도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또한, 「새만금특별법」의 지역기업우대나 「산업입지법」의 인근지역 주민우선 고용정책에 비춰볼 때도 과도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심사내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자 확대 **신설**

– 지하수원수대금 납부자에 지하수 공동이용자, 온천수 공동이용자를 추가(現,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받은 자 및 온천이용 허가받은 자)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지하수원수대금 납부 대상을 확대하여 지하수 공동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현재 지하수원수대금은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1차 납부 후 공동이용자에게 이용량만큼을 정산하여 다시 받는 실정으로, 사실상 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지하수 이용자 등이 부담하는 원수대금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추정. 또한, 현재 지하수원수대금은 누진제 시스템으로 사용량이 크면 당초 이용허가 받은 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는 반면, 개정안 적용 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축 등 전염병 방역대상의 확대(강화, 법률 개정안 제284조) **강화**

– 검사·주사·격리·반출반입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확대

◦ (現) 가축·수산물·식물 → (改) 가축·수산물·식물, 가축의 생산물 등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한 규제로 축산업 피해 및 관광객 감소 등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결과 농장 간 가축·축산관계자·차량의 이동에 대한 차단방역

미흡, 가축 밀집 도축시설에서 교차오염이 주요 원인임을 감안할 때 가축의 생산물, 가축 운송차량 및 종사자를 방역 대상으로 추가하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비중요 규제로 분류

심사내용 과태료 **강화**

- 제주흑우 반출제한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 제주흑우 수정란 및 정액 반출제한 위반한 자에게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제주흑우 반출제한 등의 의무(旣 규정)에 대한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으로써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주흑우가 멸종 위기임을 감안할 때 반출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의 필요성은 인정됨. 동 과태료 처분의 금액은 위법의 정도가 유사한 동법의 "가축 등의 방역 미실시자"에 대한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음. 비중요규제로 분류

(60)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예정지역의 일반공급 당첨자 특별공급 대상 제외, 주택특별공급 시행기한 설정 **신설**

- 이전기관 종사자가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에 일반공급으로 당첨 된 사실이 있는 경우, 현행은 주택 특별공급 재당첨에 제한이 없으나 당첨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주택특별공급의 기간을 설정하여 기간 이후에는 특별공급을 제한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정부정책에 따라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공동주택 대상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특별공급은 다른 무주택 이전종사자의 당첨기회의 박탈을 초래하므로 일반공급 당첨자에게 대한 특별공급 제한하는 것이 무주택 이전종사자에 대한 주거안정이라는 특별공급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로 판단

(61)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이착륙장 등급 구분, 활주로 안전구역 및 보호구역 설치기준, 운항 관련 시설, 이착륙장 관리기준, 이착륙장 검사 및 시정조치 등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설치기준은 미국 표준화기관 중 하나인 ASTM F 2507의 기술적 기준, 영국의 활주로 안전계수 등을 반영했으나 국내 여건 등을 실사,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외국의 기준에 비해 완화 적용하고 있으며, 관리기준은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자가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로 '비행장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참고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어, 그 규제정도가 과중하지 않음. 또한 이착륙장의 규모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이착륙 할 수 있는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달리 정하도록 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 및 이착륙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26개의 이착륙장 중 3등급 구분에 미포함 되는 이착륙장이 한 곳도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검토

(6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인공인중개사(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금액 지급을 완료한 때로 규정하고,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중개의뢰인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때로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이 시행령으로 보수지급 시기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의뢰자간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에 보수지급을 하도록 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의무를 좀 더 부과하는 것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적자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심사내용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중개사에 대하여 400~500만원의 과태료를 규정 **강화**

-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20~100만원의 과태료 규정

심사결과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부과기준액(400~500만원)은 계약체결 시 중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위반은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므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점, 연수교육 이수위반에 대한 부과 기준액(20~100만원)은 법률상 한도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되 타 전문직에 비해 과하지 않은 점, 두 기준 모두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법률상 최고 한도액 내에서 위법행위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시 행정재량의 여지를 줄여 예측가능성을 높인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63)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및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신설**

심사결과 동 제정안은 부동산 거래 시 허위신고 등 위법행위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처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한 것으로 관련법(개인정보보호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 계약자 인적사항 등의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는 확인에 필요성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해 많은 타 유사 법률에서도 근거규정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비중요로 판단

심사내용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내용·정도에 따라 법률 상한액(취득세의 3배 또는 권리취득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규정 **신설**

심사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 공평과세와 정당한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음에 이를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한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세부 기준액 또한 현행 취득세 연동 과태료 부과수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 취득세 인하비율에 상응하는 부과배수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여 과태료 부과액이 가중된 것은 아닌 점, 법률상 최고 한도액 내에서 위법행위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시 행정재량의 여지를 줄여 예측가능성을 높인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강화 1)

심사내용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조절 및 증차제한 등 **신설**

- (법률 개정내용) 국토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며 수급계획에 따라 신규 등록 및 증차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시행령 개정안) 신규 등록 및 증차제한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심사결과 상기 안은 법률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취지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불법 지입차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을 감안할 때 필요성은 인정됨. 또한, 수급조절을 위한 방법으로 감차가 아닌 신규 등록 및 증차만을 제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려움. 비중요규제로 분류

심사내용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소화물 운송 등 **신설**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대상 및 그 규격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
  - (운송가능 소화물) 농수산물류, 축산물류, 식품류, 음료류, 생활용품류, 의료용품류, 스포츠용품류, 전기·전자제품류, 자동차 부품류, 종이류, 공구·기계류, 악기류 등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 (운송제한 소화물) 가연성 물품, 무기, 마약, 밀수품, 동물이나 변질 가능성이 있는 물품, 수·발신인, 소화물의 내용 등이 불명확한 물품 등
  - (소화물의 규격) 20kg 미만, 부피 4만㎤ 미만일 것
- 부령에서 정하지 않은 소화물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소화물을 운송할 경우 일부정지 10일(1차), 20일(2차), 30일(3차)
- 소화물 운송 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일부정지 30일(1차), 60일(2차), 90일(3차)

심사결과 상기 안은 시외·고속버스를 이용한 소화물 운송을 합법화하는 법이 신설됨에(의원발의, '14.1.28 공포)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민 편익 차원에서 필요성은 인정됨. 운송가능 소화물의 대상 등은 본래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업계와의 이견 조율을 통해 결정하여 업역간 발생하는 갈등은 없을 것으로 파악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심사내용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에어백 설치 **신설**

-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옆 좌석의 정면에 에어백을 설치하도록 규정
-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택시운송사업자는 일부정지 30일(1차), 60일(2차), 90일(3차) 및 과징금 180만원

심사결과 택시 교통사고가 전체의 11.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에어백 장착률은 운전석 29.8%, 동승석 3.6%에 그치고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 및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운전자와 생명에 직결되는 에어백의 설치 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 현재 출시되는 자동차의 경우 운전석 및 보조석에 에어백이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동 제도의 적용 대상이 신규 등록 차량에만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비중요규제로 분류

심사내용 사업의 양도·양수 등 **강화**

- (법률 개정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
- (시행규칙 개정안)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한 지역 범위를 주사무소가 있는 동일한 시·도 내로 한정

심사결과 양도·양수의 지역적 제한(동일한 시·도로 한정)은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의 실효성 제고측면에서 부가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수급계획에 따른 신차·증차 제한이 시·도를 기반으로 한 것임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지입제 등 적발 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타 시·도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타당한 규정으로 판단됨. 다만, 양도·양수의 지역적 제한을 둘 경우 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양도·양수가 전면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공익상 필요(여객시장 질서확립)와 비교형량 하였을 때 과도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 비중요규제로 분류

(65)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신설**

- 새만금사업지역 내 사업추진을 위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계획 승인과 절차, 원형지 개발승인, 선수금, 공급대상자 자격제한 등을 규정(세부규정 생략)

심사결과 동 제정안 새만금개발 사업에 따라 조성 된 토지에 대한 공급과 관련한 계획 승인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조성된 토지의 개발계획 승인, 공급기준은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토지이용계획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내용상 공급계획 승인·공급방법과 기준·원형지 개발계획 승인·공급대상자 자격제한 등은 법률과 시행령에 준하는 점, 토지공급에 관한 타 유사입법 사례를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66)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등록 **신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자(국가, 지자체, LH 등)가 임대차 계약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법령으로 정한 자료를 등록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일 또는 임대조건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시 또는 신고 시 제출하는 자료를 등록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임대주택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사업자 및 지자체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임대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을 위해서는 필요정보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제공정보의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주택관리주체 자료에 관한 것으로 정보체계 구축의 필요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67)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의 관계에 대한 부기등기 **신설**

- (법률 신설내용)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표시하는 내용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하도록 규정
- (시행령 개정안) 부기등기 신청방법, 내용 및 말소방법 등을 규정

심사결과 상기 안은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공시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부기등기의 방법 및 내용, 말소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동 제도의 도입으로 건당 등기수수료(6,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그 편익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비중요규제로 분류

(68)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자동차 등록 등(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 확대) **강화**

- △등록명의인이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명의인이 법인으로 「상업등기법」 등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경우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의 운행 및 유통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영구 출국한 외국인과 청산종결된 법인의 차량은 법적 의무 이행(보험가입, 세금납부 등)이 불가하므로 이를 행정청이 직권 등록말소하는 것은 필요·타당한 규제로 판단됨. 비중요규제로 분류

(69)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강화**

- 하자심의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정한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률상 상한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를 규정

심사결과 신설된 과태료 기준은 법 제101조 제2항에서 새로이 규정 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 대한 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위반행위의 정도·횟수에 따른 부과기준과 금액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정도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70)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강화**

-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등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여 규정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이나 임대주택 매각·분양전환 등의 업무와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도·전대 동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선정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처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개인정보보호법)의 근거가 명확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등기사항 확인, 임대사업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의 조회에 필요성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해 많은 타 유사 법률에서도 근거규정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7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신설**

- 대체부품성능품질 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의원발의, '14.1월 공포) 법률에서 위임한 인증기준·방법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대체부품인증제가 부품자기인증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는 민간 자율인증이라고는 하나,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판매가 어렵게 되어 사실상 의무인증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따라 부품 사업자에게 인증을 위한 비용지출이 초래될 것임. 다만, 인증 비용과 인증제 도입에 따른 부품업체 및 소비자의 편익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규제비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과도한 규제라 보기는 어려움. 비중요규제로 분류

(7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영업소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사업일부정지(30일) 등의 행정처분 규정조의4) **강화**

심사결과 법제처의「합법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과제」의 일환이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상향 입법하여 법체계를 정비코자하는 것으로, 동 행정처분제도는 1998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것으로, 입법예고 및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시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검토

심사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화물운송사업자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위·수탁 차주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액 규정(300만원) 강화

심사결과 화물운송 사업자와 차주 간의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적 약자인 개별 화물차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신설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과태료 부과기준(300만원)은 상위법의 위임범위(500만원 이하) 안에서 정하고 있으며, 유사입법례와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검토

(73) 공공주택건설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행복주택의 건설기준 강화

- (도시공원 및 녹지계획) 공공시설부지는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기준의 1/2범위 내에서 완화, 공공시설부지 외는 법률상 기준 적용
- (주차장) 행복주택 면적·위치에 따라 0.35~0.7대 적용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써 '행복주택'이 신설됨에 따라 건설 시 필요한 공원·녹지비율과 주차장 확보기준 등 기준을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건설기준의 신설 필요성이 인정,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입주자의 특성과 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관련 법령상 기준을 완화 한 특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74) 항공레저스포츠등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항공법」의 위임근거에 따라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항공안전 감독의 점검주기, 점검내용 및 점검결과에 따른 처리절차 등 세부 업무처리기준 마련 신설

심사결과 항공안전 관련 감독의 점검주기는 동 제정안에 흡수 통합되어 공포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는 기존의「경량항공기등 안전관리 기본지침」과 동일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어 기존 규제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점검내용은 상위법에 규정된 항공레포츠사업자 등이 준수해야할 사항 중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발췌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처리절차도 일반적 관리규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검토

(7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전기부문 의무사항 기준 강화 **강화**

-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 설치 시 LED 조명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대상기기가 항시 점등상태로 전력낭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 다만, 적용대상이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로 피규제집단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나 △전기요금 절감에 따른 건축주의 이익, △에너지 절약 등의 국가적 편익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76) 항공안전기술원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항공안전기술원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규정(100만원)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 범위 안에서 과태료 부과금액(100만원)을 정하고 있고, 유사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과중하지 않으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경미한 사유로 인하여 위반했을 경우 1/2감경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검토

(7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건설업의 등록기준 강화 **강화**

- 지방계약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할 것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근거 법령 누락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뿐만이 아니라 유사 계약법령까지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또한, 업종 등록기준을 개정안과 유사하게 명시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7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시설물의 지정 및 안전관리(2종 시설물의 범위 확대) **강화**

- 연면적 5천㎡ 이상의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을 2종 시설물 범위에 새로 포함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시특법」상 관리되는 2종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2종 시설물이 개정안과 같이 늘어날 경우(1,450여개 증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측면의 편익 및 사고 발생 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시설물 주체의 부담비용이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비중요규제로 분류

심사내용 취약시설물의 정기점검 주기 강화 **강화**

- 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기점검의 주기 강화((現) 반기 1회 → (改)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년 3회 이상/단, A·B·C 등급은 반기 1회 동일)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관련 후속 대책 중 하나로 정기점검 주기를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계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됨. 또한, 주기 강화 대상은 모든 1·2종 시설물이 아닌 정밀점검 결과 취약 시설물(D, E급)로 한정하여(현재 49개소),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비중요규제로 분류

(79)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4)

심사내용 공작물의 구조안전 확인 **신설**

- 공작물 축조 신고하는 때에 공작물의 ① 구조안전 점검표, ② 구조안전 및 내풍(耐風) 설계확인서를 첨부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공작물 축조 신고 시 구조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 일정 공작물에(높이 13미터 이상) 대해서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그간 공작물이 별도의 구조안전 확인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됨에 따라 안전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공작물(높이 13미터 이상)의 경우

건축주에게 건당 50~100만원(추정) 비용부담이 발생하나, 공작물 붕괴 등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방지 측면의 편익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비중요규제로 분류

심사내용 공사감리자의 보고 의무 **강화**

- 철골조의 경우 '3개 층 또는 높이 20미터 이내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감리 중간 보고서를 작성(보고서 제출시기 변경 /現,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심사결과 현재, 철골조 건축물의 감리중간보고서는 철근 콘크리트조 중간보고서 제출시기를 준용하고 있으나, 그 시기가 철골조 건축공법에 맞지 않아 불분명하여 혼란 발생. 따라서 동 개정안에서는 철골조 건축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간감리보고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철골부재의 최대길이가 18m인 점, 3개 층마다 주요 접합점이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시기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심사내용 건축물의 유지·관리 **강화**

- 특수구조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유지관리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규정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고층 건축물, 장경간 건축물 등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물에 대해 사용승인 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최근 마우나 리조트 후속대책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할 필요. 또한, 현행 법령이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위주로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이 규정되어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할 때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유지관리계획서 작성은 전문 기술 분야가 아니라 제설 및 홈통청소 등 통상적인 유지관리 수준으로 규정하여 전문가를 고용하는 등의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 비중요규제로 분류

심사내용 구조안전의 확인 **강화**

- 구조안전 확인서류(설계자 또는 구조기술사 확인증 필요) 제출 대상에 특수구조 건축물 확대
-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착공신공 전에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마우나 리조트(PEB 특수공법) 사고('14.2.17) 후속대책으로 특수구조 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설계자 또는 구조기술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건축위원회 구조분야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타당한 규정으로 판단됨. 안전 확인 및 심의를 위한 전문기술자 고용으로 인해 건축주에 비용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측면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편익에 비해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비중요규제로 분류

심사내용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강화**

-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및 감리 수행 시에는 건축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 확대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구조안전 확인 및 감리업무 수행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한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최근 구조기법 및 컴퓨터 등의 기술 발전으로 재료·공법·구조 등이 복잡·다양해짐을 감안할 때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구조기술사의 협력 시 안전 확인을 받을 경우 약 335만원, 감리 업무의 경우 약 100만원의 비용부담이 건축주에게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나, 국민의 생명 과 재산보호 측면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편익에 비해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비중요규제로 분류

(8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과태료 **신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
가. 법 제3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	400	600
나. 법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	400	600
다. 법 제4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조성토지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 등을 사용한 경우	200	400	600
라.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	400	800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이며 부과액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1000만원) 이내로, 유사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설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등의 유사입법례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비중요규제로 분류

심사내용 위탁 수수료 요율 **신설**

- 지역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매수·손실보상·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에 따라(법 제21조) 이에 대한 "위탁수수료 요율"을 구체적으로 마련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위탁사업에 대해 업무별 수수료 요율 상한을 마련하는 것으로, 과도한 수수료 설정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및 분쟁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위탁 수수료 요율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령」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을 감안할 때 적정수준으로 판단. 비중요규제로 분류

(8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신설**

-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를 6개 계층으로 분류하고, 각 계층별 지역·자산 및 소득 등 세부 입주자격 요건 규정
- 일반공급 방법(추첨),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미달분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운영 중 퇴거로 발생하는 주택의 처리 방법 규정
- 각 계층별 거주기간 설정하고, 거주 중 취업 또는 결혼 시 10년까지 연속거주 허용
- 대학생은 1년 이내로 휴학하는 경우에만 계약갱신 가능
- 같은 계층의 자격으로 행복주택에 재입주 불가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행복주택 공급 시 필요한 입주자 선정기준과 절차·운영방법 등을 신설 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내용상 입주대상 계층 구분과 각 계층별 소득·자산에 따른 자격기준·거주기간 등이 기존 임대주택인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에 비해 과하지 않음. 또한, 거주기간 제한은 젊은 계층의 입주자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행복주택 공급취지에 부합되어 적절함. 비중요규제로 분류

(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시 수반되는 비용을 위·수탁 차주(지입차주)에게 전가시키거나 직접운송의무제 등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등에게 60일 이내의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위반 행위의 종류 및 횟수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명시 **강화**

심사결과 위수탁 차주의 권익보호와 직접운송의무제의 안정적 시행정착을 위해 필요한 규제로, 위반정도에 따른 처분수위도 상위법의 위임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고, 유사처분례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어 과중하지 않으며, 화물운송 시장의 여건 등을 반영, 허가취소 처분 가능시점인 2018년 이전에 동 개정안의 행정처분기준을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재검토 기한 3년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검토

심사내용 화물운송 관련 위수탁 차주보호 의무와 직접운송의무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금액 규정 **강화**

- 일반 운송사업자 500만원, 개별 및 용달운송사업자 250만원, 직접운송의무 위반 사업자 500만원 등

심사결과 위수탁 차주의 권익보호와 직접운송의무제의 안정적 시행 정착을 위해 필요한 규제로,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수준도 상위법 위임범위(2천만원)내에서 정하고 있어 유사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과중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및 화물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시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검토

심사내용 화물운송 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 명시 **강화**

- 차주 동의 없이 차량을 매도한 경우(500만원), 차주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300만원),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실적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300만원) 등

심사결과 위수탁 차주의 권익보호제도의 안정적 시행 정착을 위해 필요한 규제로,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수준도 상위법 위임범위(5백만원) 안에서 정하고 있어 유사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과중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및 화물협회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시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검토

(8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항목 추가 **강화**

–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의 파손, 누수 또는 이에 따른 지반침하

심사결과 지하시설물 파손 및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지상건축물 붕괴로 이어져 대형 사고를 야기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대한 결함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안전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및 그에 따른 보수·보강조치 등의 이행 의무가 발생하나 안전관리를 강화함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측면의 편익에 비해 그 부담이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비중요규제로 분류

(84)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대한 보고대상 대형항공기 소유자등의 범위를 국제기준(ICAO 부속서)에 맞춰 신설 규정함 **신설**

심사결과 항공기 사고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항공기 기기결함 등에 대한 사전적 보고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현행 항행안전 의보무고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형 항공기 소유자등의 범위를 ICAO국제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및 항공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시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검토

심사내용 항공기 사고 등 안전의무 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6개월(180일) 이내의 운항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위반행위의 종류(66종)와 횟수에 따라 상위법 위임범위(100억원) 안에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강화**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항공기 사고, 안전관련 의무규정을 위반한 항공사들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위법 위임범위 안에서 상향조정하여 항공사들의 안전의식과 항공기 사고 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과징금 상향조정의 필요성,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검토

심사내용 항공법 개정('14.11.29시행)으로 항공안전 관련 보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되고, 항행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관리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 및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강화**

심사결과 항행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항공안전 관련 보고의무와 항공장애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 관리 의무 이행의 중요성 등을 감안 할 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의 신설,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항공장애표시등 미설치시 얻는 경제적 이득(설치비만 약 1천~1천5백만원) 등을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규제가 아니며,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검토

(8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강화 2)

심사내용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신설**

–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구 분	준 수 사 항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 고속국도·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제반 규정(안전띠 착용, 승차정원 준수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 시·도지사로부터 운행기록증 2부 발부받아 1부는 자동차에 부착, 1부는 2년간 보관
	• 인도대금, 운송수입금 입금현황, 유류비·급여 지급현황 등의 서류 보관
	• 대열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종사자 지도·감독
	• 여객이 음주가무행위를 하지 않도록 종사자 지도·감독
	• 여객이 차량 내 설치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란 등 안전운행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종사자 지도·감독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 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전에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실시하도록 의무 부과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구 분	준 수 사 항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 여객이 음주가무하는 행위 제지
	• 여객이 차량 내 설치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란 등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행위 제지
	• 대열운행 금지

심사결과 각종 서류 보관의무는 지입차량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수단으로, 보관해야 할 서류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갖추어야할 수준에 불과하여 과도하지 않으며, 전세버스 지입제 근절에 따른 운송질서 확립 및 안전 확보 등의 편익에 비해서도 그 부담이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안전띠 착용, 대열운행 금지, 여객의 음주가무 행위 제지, 안전 사항 안내방송 실시 등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필요·타당한 규정으로 사료되며 종사자 지도·감독, 교육, 안내방송 실시 등 동 의무이행을 위한 사업자 및 종사자의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제재처분 기준 강화) 신설

– 대열운행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자격정지 50일

–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 미 이수 시 자격정지 5일

심사결과 대열운행으로 중대한 교통사고 야기 시 처분은 입법예고안에 비해 완화되었으며(입법예고 시: 자격취소), 동 위반행위에 대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처분(자격정지 40~60일)과 유사하여 적정수준으로 판단됨. 교육 미 이수 시 행정처분의 경우 교육 이수율 제고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자격정지 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유사사례를 비춰볼 때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강화**,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규정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과징금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대열운행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감차명령	등록취소		–
• 여객이 음주가무행위를 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 지도·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일부정지 (30일)	일부정지 (60일)	일부정지 (90일)	180
• 여객이 차량 내 설치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사용하여 안전운행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 지도·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일부정지 (30일)	일부정지 (60일)	일부정지 (90일)	180
•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일부정지 (30일)	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180
• 타인 명의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고 운행하거나 자기 소유의 운행기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일부정지 (30일)	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180
• 인도대금 및 할부금 납부기록, 운행기록증, 운송수입금 입금현황, 유류비·정비비·급여지급 현황,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일부정지 (30일)	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180

심사결과 대열운행이 대형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을 감안할 때 동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1차 감차, 2차 등록취소) 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동 법령 내에 '기준 건수 이상의 중대한 교통사고 시' 등록취소(1차) 처분이 旣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각종 서류 미 보관, 안전운행을 위한 종사자 지도·감독 미 준수로 인한 처분의 경우 위법행위 및 처분의 정도가 유사한 동 법령의 타 규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86)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항공기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대형항공기 소유자 등(97개사)이 항공기 등을 운영·정비 하던 중 발생한 고장, 기능장애 또는 결함에 대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시기 등을 신설 규정함 **신설**

심사결과 보고내용은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6〕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 안전장애의 범위' 중에서 필요사항을 발췌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의무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며, 보고방법과 시기 등도 현행 '항공안전 의무보고제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검토

심사내용 개정 항공법 시행('14.11.29) 이후 조종사가 운항자격 인증을 받아야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의 범위 명시 **강화**

심사결과 '14.11.29 이후부터 운항자격 증명을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의 범위를 상위법 위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해당 항공기사용사업체에 종사하는 조종사(23개업체 178명)의 경우 이 법 시행이후 1년 이내에 운항자격 증명을 받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초 운항자격 증명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조종사 1인당 135,000원)에 비해 헬기사고 예방,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기능 강화 등 공익적 기대효과가 크고, 운항자격 취득 이후 별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검토

심사내용 '14년 11월 29일부터 운항증명을 받아야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명시 **강화**

심사결과 운항증명 대상사업의 범위, 심사기준 등을 항공기사용사업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 캐나다 등 항공 관련 선진 외국에서도 동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고, 최초 운항증명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780,000원/1개 사업체)에 비해 헬기사고 예방,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기능 강화 등 공익적 기대효과가 크며,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검토

(87)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강화 2)

심사내용 실내건축 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 규정 **신설**

–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실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가 법률에 도입됨에 따라 그 기준의 적용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것으로, 現 건축법령상에는 마감재료에 대한 방화기준 및 욕실·화장실의 바닥 미끄럼 방지기준 등으로 국한되어 그 외 실내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상기 안에서 규정하는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분양법에 따른 대규모 건축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비중요규제로 분류

심사내용 범죄예방 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대상 건축물 규정 **신설**

- 공동주택, 24시간 편의점,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도서관 제외),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범죄예방 설계 제도가 법률에 도입됨에 따라 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상 건축물은 범죄발생률 및 범죄 취약 지역 여부 등을 고려, 공동주택·편의점·고시원 등으로 한정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재 범죄예방 설계기법(CPTED)을 통한 설계 가이드라인이 旣 운영 중으로 규제의 집행에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파악됨. 다만, 범죄예방 설계기준 적용 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비상벨 설치, 조명기구 설치 등 건축주에게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나, 건축비의 1% 내로 추정되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비중요규제로 분류

심사내용 층간소음 방지 기준 적용대상 용도 건축물 규정 **강화**

-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제외),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법률에 도입됨에 따라 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상 공동주택 이외에 소규모 주택 등의 건축물에는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기 안에서 규정하는 대상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하여 동 규제의 목적에도 부합,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적용될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 비용부담이 발생하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방지 및 삶의 질 향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비중요규제로 분류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금액이 상향(3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됨에 따라 위반 횟수별 금액 조정
  - 1차(10 → 30만원), 2차(20 → 60만원), 3차 이상(30 → 100만원))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법률에서 과태료의 상한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그 세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84년 이후 변동이 없어 집행의 실효성 담보가 곤란하다는 점, 법률에서 규정한 금액 이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음. 비중요규제로 분류

(8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송사업 면허기준 **신설**

- 면허기준 대수: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정한 차량 대수
- 보유차고 면적기준: △신교통형 버스는 차량종류 별로 국토부 장관이 고시, △일반버스는 36㎡~40㎡(대당 면적)
- 부대시설: 사무실, 정류소, 차고설비, 휴게실, 교육훈련시설 등

심사결과 동 제정안은 간선급행버스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기 면허기준은 여객법에서 규정하는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실상 규제가 강화된 바는 없음. 비중요규제로 분류

심사내용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규정 **신설**

-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 1년 이상일 것, △적합 운전면허 보유, △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심사결과 상기 안은 간선급행버스의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나이·운전경력·정밀적성검사·자격시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 여객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요건과 동일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비중요규제로 분류

심사내용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신설**

–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이상 유무 확인, △고장 발견 시 운행 중지, △사업용자동차 內 금연 등 안전운행·여객편의와 관련된 사항 등 규정

심사결과 상기 안은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를 위해 간선급행버스 운수종자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여객법상 운수종사자 준수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실상 규제가 강화된 바 없음. 비중요규제로 분류

심사내용 운전자격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 기준 **신설**

– 간선급행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규정

- 법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자격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취소
- 법 제30조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자격취소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자격취소
- 운전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자격취소

심사결과 상기 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운수종사자의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 여객법상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사실상 규제가 강화된 바가 없음. 비중요규제로 분류

(8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세대 간의 경계벽 **강화**

– 세대 간 경계벽에 화재 발생 시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조 또는 경량구조 등을 설치한 경우 피난시설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식을 설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피난용도로 사용되는 세대간 경계벽 등에 표식을 설치하여 재해·재난 시 대피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한 점, △동 규정에 의해 표식설치 비용이 발생하나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측면의 편익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함

(9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고령 운전자 정기 운전적성 정밀검사 제도 도입 **강화**

-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운전종사자 中 고령 운전자는 주기적(65세 이상: 3년, 70세 이상: 1년)으로 자격유지를 위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최근 고령운전자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사업용 차량(고령자)의 사고 발생증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 관리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며, 고령운전자 사고가 법규위반보다는 순간적인 판단착오나 실수 등 신체적 역량 부족에 기인하는 특징에도 불구, 사상사고자 및 법 위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자의 자격점검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 또한, 국회와 언론에서 고령운전자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대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지적한 바, 사회적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됨. 일정 연령에서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하는 일본·미국·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역량이 떨어진다는 실증연구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타당성 및 적정성은 확보되며,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야하는 두 가지 정책 목표 아래 일률적 정년제 도입이 아닌 개인의 신체능력을 감안한 운전자격의 적격검사는 적절한 선택으로 판단됨.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령 운전자는 검사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밀적성검사를 통해 신체적 역량이 갖춰진 고령운전자의 재취업 기회 확대 유도 및 안전사고 예방 기여 측면의 편익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그 부담이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비중요규제로 분류

(91)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친환경 주택의 설계기준 강화 **강화**

-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세대이상)의 에너지 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의무사항) 비율 강화
  - (現) 30%이상(60㎡이하 25%이상) → (改) 40%이상(60㎡이하 30%이상)

심사결과 동 고시의 목적은 '25년 「Zero Energy 주택건설」 선언(제6차 녹색위)에 따라 주택부문 에너지소비량 감축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개정안은 '12년(30%)과 '17년(60%)의 절감률 변화폭을 최소화하여 건설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40%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에너지 절감률 달성을 위한 설계기준(안 제7조제2항)등 기술규제는 전문기관인 기술표준원의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건축비 증가에(46㎡: 64만원, 84㎡: 104만원) 따른 분양가 상승 등 입주민에게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에너지 절감에 따른 난방비 절약(46㎡: 87천원/1yr, 84㎡: 137천원/1yr) 및 온실가스감축 등의 편익을 감안할 때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됨. 비중요규제로 분류

(9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상하수도 시설과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시설을 갖춘 85㎡이하의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을 주택(0.3%~0.6%)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조정 **강화**

(현 행)	(개 정)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이내 (의뢰인과 중개사間 협의결정)	• **매매·교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이내** • **임대차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이내** ※ 업무용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이내 (현행과 동일)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기대효과가 큰 만큼,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대상범위 설정 및 인하 조정의 폭도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적정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되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 등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고 주택거래시장의 변화요인을 보다 탄력적,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재검토기간 3년을 2년으로 단축할 것을 개선 권고함

2. 해양수산부

최 대 범 사무관
T 044-200-2425 E dbchoe@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항만법 개정안, 어촌어항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수산업법 개정안 등 44개의 법령·고시에 대해 신설 47건, 강화 27건 등 총 7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4건 모두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관상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404회 예비심사 (2014.01.23.)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2)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개정안	제405회 예비심사 (2014.01.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정안	제406회 예비심사 (2014.02.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정안	제410회 예비심사 (2014.03.0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제정안	제411회 예비심사 (2014.03.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제411회 예비심사 (2014.03.1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7)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정안	제417회 예비심사 (2014.04.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선박만재흘수선기준 개정안	제417회 예비심사 (2014.04.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선박방화구조기준 개정안	제417회 예비심사 (2014.04.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안	제420회 예비심사 (2014.05.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1) 선박설비기준 개정안	제420회 예비심사 (2014.05.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강선의 구조기준 개정안	제422회 예비심사 (2014.05.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안	제424회 예비심사 (2014.06.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연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24회 예비심사 (2014.06.12)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15) 어장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제427회 예비심사 (2014.07.0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6) 어장환경기준 및 어장환경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427회 예비심사 (2014.07.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축전지 추진 어선설비기준 제정안	제427회 예비심사 (2014.07.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431회 경제분과 (2014.08.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안	제432회 경제분과 (2014.08.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33회 예비심사 (2014.08.14)	원안의결 6	신설 5, 강화 1 (비중요 6)
(21)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435회 경제분과 (2014.08.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35회 예비심사 (2014.08.2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3)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제435회 예비심사 (2014.08.28)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2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436회 예비심사 (2014.09.0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5)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436회 예비심사 (2014.09.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6) 선박설비기준 개정안	제436회 예비심사 (2014.09.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제442회 예비심사 (2014.10.2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8)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43회 예비심사 (2014.10.24)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9) 수산생물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443회 예비심사 (2014.10.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444회 예비심사 (2014.11.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45회 예비심사 (2014.11.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45회 예비심사 (2014.11.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46회 예비심사 (2014.11.17)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4)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447회 예비심사 (2014.11.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448회 예비심사 (2014.12.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449회 예비심사 (2014.12.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7) 고속선 기준 개정안	제450회 예비심사 (2014.12.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8)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안	제450회 예비심사 2014-12-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9) 국제선박의 외국인 승무 기준 및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451회 예비심사 (2014.12.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0)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51회 예비심사 (2014.12.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1)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51회 예비심사 (2014.12.22)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안	제452회 예비심사 (2014.12.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3)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452회 예비심사 (2014.12.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4) (해양수산부)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개정안	제453회 예비심사 (2014.12.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74**	**신설 47 강화 27 (비중요 74)**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관상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6)

심사내용 관상어산업육성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사유를 정함 **신설**

심사결과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효율적인 종합계획집행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상어산업육성 전문 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사유를 정함 **신설**

심사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 관상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사유를 정하는 것으로, 관상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과 선진화, 관상어산업의 우수한 품종 개발·개량을 위해서는 양식기술과 더불어 기존 양식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BT·IT 등 첨단기술의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어 이러한 신기술의 지속적인 보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이 필요성이 인정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어양식업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우수사업자 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 **신설**

심사결과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의무 위반과 우수사업자 인증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신고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우수사업자 인증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법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고 의무화를 통해 관상어양식업의 통합적 관리와 질병 등 각종 위해 요소를 예방하고 우수사업자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하며 유사입법례를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상어 중 어류를 양식하려는 경우 실내 수면적(水面積) 33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 어류를 제외한 생물은 16.5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기준 설정 **신설**

심사결과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종전 내수면어업법 규정 내용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 이관하는 것으로, 관상어산업의 육성·지원 등을 통해 관상어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상어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상어양식시설 기준 마련이 필요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신설**

심사결과 신고자의 자격 여부, 관상어 양식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 확인을 통한 각종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로 관상어산업의 통합적 관리,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상어양식업자의 우수사업자 인증 기준 을 마련 **신설**

* ① 관상어의 수입대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수품종을 양식·생산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설비를 갖출 것 ② 건강한 관상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장 위생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③ 법 제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④ 관상어산업 활성화 기여에 큰 공로가 있을 것

심사결과 관상어산업의 조기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상어 우수품종을 양식·생산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하려는 것으로, 우수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는 인증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 기준을 강화 **강화**

- 해면과 내수면의 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등과 뱀장어에 대한 국내반입 및 국외반출, 종류, 양식방법, 종묘 승인수량, 종묘 크기 등

심사결과 해당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각 품종별 국내수급동향, 외래 질병유입 차단, 대량 폐사 예방 등 현안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종묘생산협회 등 관련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과 승인기준을 재조정할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인증기관의 조직 및 인력관리, 인력·시설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신설**

* 인증심사원 운영 및 기관운영재원 확보 기준(6개월 이상), 인증심사원 교육,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의 업무위탁시 인증기관 준수사항

심사결과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기수산물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유기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기수산물 인증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의무 등 준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천일염 인증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인증기관의 객관적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또는 생산자 등의 권익보호가 필요하고,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천일염 인증 이후 사후관리 의무, 인증 받은 자가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 조치 의뢰, 조직·인력·인증업무 규정 유지, 천일염 품질인증 현황 보고의무 등

심사내용 인증기관의 장은 매년 인증심사원을 대상으로 8시간 이상의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신설**

심사결과 인증심사원의 기본적인 소양과 인증업무의 전문적 내용 교육 등을 통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증심사원의 기본적인 소양과 전문교육과정이 필요하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5)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항타기 또는 지반개량장비가 설치된 선박 중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받지 않는 부선을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선박검사(복원성, 선체강도 등)를 받도록 함 **신설**

심사결과 선박검사 시행을 통해 대형건설기계 설치 부선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선박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대형건설기계 설치 부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명 및 대형사고 예방 등을 위해 대형건설기계 설치 부선들의 안전검사가 필요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6)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수상항공기 등에 대한 음주운항 금지기준 상향 **강화**

심사결과 음주운항을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일반선박과는 다른 속력 및 조정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마련하는 것으로, 수면비행선박에 대하여는 운항속력 및 조종특성 등을 고려하여 음주운항을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항공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강화가 필요하고,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음주측정 거부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강화**

심사결과 음주운항 예방·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여 적발된 자와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의 과태료 부과액을 형평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선박 종사자의 음주 관련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음주운항 예방·단속체계의 실효성 확보와 음주측정 거부 풍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고,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7)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신기술로 인증된 해양수산 기술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기술 인증을 취소함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 관리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심사결과 신기술 인증의 신뢰성 확보 및 해당 신기술 관련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등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고,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8) 선박만재흘수선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건현 지정 요건 중 소비품* 및 평형 수**에 대한 초기적재상태 조건 등 개정 **강화**

* 소비품 : 음료, 식품, 연료 등 선박에서 소모되는 품목

** 평형수 :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실려 있는 물

심사결과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만재흘수선협약의 개정 사항을 국내기준에 수용하는 것으로, 건현지정 시 만족해야하는 평형상태요건을 구하기 위한 초기적재 상태 조건을 실제적으로 개선할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9) 선박방화구조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문턱 없이 승인된 A급방화문 설치 시 문 아래 간극은 12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불연성 문턱을 설치, 갑판피복재가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국제협약 개정내용을 수용함 **강화**

심사결과 국제해사기구(IMO)의 협약 개정사항을 국내 기준에 수용하는 것으로, 선박의 화재안전성을 제고하고 화재사고 시 인적·물적 손실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0)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정비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요 정비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토록 하고, 선주가 요구시 기록제시 의무화 **강화**

심사결과 기존 서면으로 정비사실을 기록 관리하던 방식을 개선, 정비과정을 사진으로 기록 관리하여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명뗏목 우수정비사업장과 선박소유자간 정비사실에 대한 점검·확인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선박사고에 대비한 구명뗏목의 안전

성을 제고하고 선박사고시 인적·물적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1) 선박설비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선속거리계 및 항해장비기록장치에 대한 성능기준 개정사항을 수용 **강화**

심사결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사항을 국내 기준에 수용하는 것으로 선속거리계 및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성능요건 개선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인명안전 확보 및 정확한 해상사고 원인분석으로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사고 시 인적·물적 손실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2) 강선의 구조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결의서로 신규 채택된 해상인명안전 협약(SOLAS)의 개정사항(소음수준, 도장기준)을 국내기준에 수용 **강화**

심사결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사항을 국내 기준에 수용하는 것으로, 선내 소음에 관한 국제기준 강화요건을 반영하여 선원에게 근무하기 좋은 환경여건을 조성하고 해수로 인한 선체부식방지 기능을 갖춘 도장(페인트)을 사용함으로써 선체 및 화물, 선원의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국제규정 미준수로 인한 선박의 운항금지 및 화주의 클레임 제기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3)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식염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나 수산물에 단순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경우, 원산지표시 의무제외규정을 폐지하고 의무대상에 포함시킴 **강화**

심사결과 국민 식생활의 안전과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내산 염장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염장 수산물 등에 사용된 식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내수산물거래 활성화와 국내천일염 소비 증대 안전하고 건전한 식생활 보급을 위해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4) 연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5)

심사내용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 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입목·대 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사구식생의 훼손 또는 변형행위를 제한 **신설**

심사결과 입목·대나무, 사구식생 등은 연안침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연안침식관리구역 내에서 훼손·변형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연안침식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입목·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과 사구식생의 훼손 및 변형 금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리구역의 지정·행위제한으로 인해 토지 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토지 등의 매수청구요건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연안침식관리구역 내의 행위제한 등으로 토지 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되는 경우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일종으로,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등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와 청구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 있는 행정을 수행하고 침식피해 복구·사전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연안침식 확산으로 인한 바닷가 인근 토지유실과 시설물·건축물 훼손으로 국민생활 안전 위협요인과 재산피해 우려가 있어 사전예방적이고 체계적인 침식관리를 위해 침식관리구역 지정 및 기준설정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리구역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을 제한한 자에게 제출, 관리구역 내 출입제한구역에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신설**

심사결과 관리구역의 출입제한은 인명·재산상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긴급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재해예방, 응급복구 등을 위한 구호, 군사목적, 각종 조사 등을 위하여 출입제한구역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입허가(신청) 및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고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연안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을 정하고 지정신청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 **신설**

심사결과 연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 연안관리를 위해 연안교육센터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등을 정하는 것으로, 연안침식 및 피해예방을 위한 연안관리 자료조사·연구 등 공공성을 확보하고 연안관련 교육·홍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가 지정 운영하는 연안교육센터에 대해 적합한 시설 및 장비, 전문인력 등을 갖추도록 하고, 효율적인 연안관리와 연안침식피해의 최소화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5) 어장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어장환경평가를 받아야하는 어장의 종류는 가두리식 양식 어업과 같고 평가항목은 퇴적물의 유기물, 저서동물로 하며 어장환경평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신설**

심사결과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어장환경평가대상 및 평가항목·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어장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생산성 유지를 위해 어장환경평가의 결과에 따라 어장의 등급을 설정하고 무분별한 면허 연장을 방지하며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어장환경평가대상 및 평가항목·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외국의 유사제도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어장환경평가결과를 고려한 등급에 따라 어장환경개선 권고, 어장내시설물 위치이동 등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연장여부를 결정 **신설**

심사결과 어장환경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고, 등급간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조치의 객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어장환경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장환경평가 결과의 등급을 설정, 각 등급 간 조치의 내용을 규정하고 어업면허 10년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1년 전에 어장의 환경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어장환경의 관리 및 개선 등의 조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외국의 유사제도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6) 어장환경기준 및 어장환경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수산생물 서식환경기준과 어장환경평가기준 설정 **신설**

심사결과 어장환경기준을 설정, 어장관리해역 지정제도 운영 및 어장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위한 것으로, 어장의 장기적·지속적인 이용으로 인하여 어장환경 오염이 점점 악화되고 병해 발생이 빈발하는 등 어장생산성이 저하되고 있고, 특히, 오염된 해역은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관리토록 되어있어,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식환경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오염된 어장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관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어장환경평가기준을 설정할 필요하고 외국의 유사제도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7) 축전지 추진 어선설비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어선법 제3조(어선의 설비)에 따라 축전지추진어선 건조 시 축전지추진어선에 대한 설비기준을 마련 **신설**

심사결과 축전지추진어선 건조에 따른 설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축전지추진어선 건조시 어선의 안전확보를 위해「축전지추진어선 설비기준」마련이 요구되고 1톤 미만 어선들이 축전지어선으로 대체할 수 있음에 따라 어업경영개선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며 향후, WTO의

면세유 지원중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해양사고 발생 시 '증거보전 의무'를 강화하고, 증언·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 개정('14.3.24, 시행일 '14.9.25)됨에 따라 신설·강화된 '증거보전 의무' 및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해양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심판을 위하여 항적·항해일지·항해기록자료 등 증거보전을 의무화하고 원활한 증거제출 및 진술 확보를 위해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된 바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객관적인 해양사고의 조사·심판을 담보할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9) 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어항시설을 설계하거나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주요 어항시설에 대해 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외에 기술기준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범위 내에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하는 어항시설을 정한 것으로, 어항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요 기능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5, 강화 1)

심사내용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신설**

1. 적합성·환경·육상·선상시험별 품질관리체제(ISO 9000이상 등) 인증의 유지
2. 관련분야 학력·근무경력 등 전문인력 보유기준
3. 형식승인 시험에 필요한 장비 등의 제조 또는 재료 공급처가 아닐 것
4.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심사결과 동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독립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형수 형식승인 업무는 전기·기계·전자·전파 및 생물 등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품질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이 대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형식승인 업무의 전문기관 대행을 통해 정부 형식승인 시험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가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독립시험기관 지정신청의 절차 및 지정취소 처분의 기준, 지도·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독립시험기관 지정신청에 수반되는 의무부과 사항(신청서 첨부서류 제출 등)은 지정요건에의 부합여부, 운영계획에 관한 것으로서 지정신청의 적격성 심사에 필수적인 사항임 형식승인 업무는 전기·전자·전파·기계 및 생물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품질관리를 해양분야 전문기관(독립시험기관)에서 대행할 필요성이 있고 타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을 원하는 자가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의 품질관리체제인증(ISO/IEC 17025)을 획득하는 경우 품질관리체제 인증을 부여하도록 함 **신설**

심사결과 품질관리체제 인증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공인된 국제표준에 따른 품질관리체제(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건))로 단일화함으로써 중복인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형식승인시험이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시험(육상·선상시험)의 품질관리체제인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마련이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선박평형수관리 지정교육기관 지정요건 및 행정처분 기준 등 **신설**

심사결과 개정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선박평형수 처리업자(평형수 탱크 청소 또는 수거·처리업자) 및 선박평형수관리 업무담당자(선박내 평형수관리 담당자)의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처분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법률에서 선박평형수 관련 종사자의 교육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여 행정업무의 투명성 및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선박평형수 처리업자의 교육사항 및 교육주기(5년마다 1회 이상)를 정함 **신설**

심사결과 선박평형수 처리업자 또는 업무담당자는 선박평형수 처리의 최종단계에 있는 자로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평형수 취급 및 처리, 장비의 활용, 설비 및 시설의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형식승인시험(육상·선상시험에 한함) 신청시 '형식승인시험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심사받도록(독립시험기관이 대행) 승인절차를 강화 **강화**

심사결과 육상·선상시험은 육상시험시설 및 실제크기의 선상시험을 통해 평형수 처리설비의 처리기준 부합여부를 검증하는 시험으로서 상당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며 그 결과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승인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형식승인시험(육상·선상) 이전에 시험계획을 심사받도록 하는 것으로, 국제협약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사용하는 처리물질은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부의 형식승인과 연계할 필요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1)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의 부과 및 납부,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태료의 금액을 신설 **신설**

심사결과 법률에 하역 운임 및 요금의 인가와 관련하여 보고·검사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태료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의 인가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입·검사하는 절차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성이 필요성이 있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해양시설을 정하고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방법,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해양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적용 시설과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는 것으로,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과 관련된 해양시설의 경우 정기적으로 안점점검을 실시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할 필요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체 안전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

심사결과 법률에서 추가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해양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한 해상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법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3)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6)

심사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대상 이외의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시기,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작성 등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안전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던 항만시설에 대하여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기 마련)와 그에 따른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항만법 개정('14.3.24)에 따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대상 이외의 항만시설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등에게 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 이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대행에 의한 항만재개발사업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행의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활한 대행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행 절차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선수금을 받고자 할 경우 이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선수금수령 후 사업시행자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토지대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정부의 승인 후 상호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대금을 미리 받는 자에 대한 신뢰성 제공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확보가 필요하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원형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원형지 공급·개발 절차 등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항만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원형지 개발방식이 항만법상 도입됨에 따라 원형지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급 및 개발절차를 정한 것으로, 원형지 개발방식으로 공급된 토지가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급 및 개발절차가 필요하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만재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공급계획 신청, 공급방법 등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조성 토지의 공급 기준, 절차 등에 대해 민간투자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공급 기준,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을 감안하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 후 공익적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재투자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하위법에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 개발이익 재투자의 구체적인 시행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수입 유기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를 규정 **신설**

심사결과 현재 사전 신고절차 미비로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수입 유기식품에 대해 사전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세부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유기식품을 수입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될 경우 수입식품에 대한 적합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불량 유기식품이 유통될 경우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유기식품 수입시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된 유기식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경력기준, 인증심사원 교육을 수료한 후 심사원증 발급신청, 자격취소·정지 등 세부적인 행정처벌 기준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현재,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수산물 인증업무는 민간인증이나 인증심사원을 지정하지 않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민간인증기관의 지정이나 인증심사원 지정에 대비하여 세부기준·절차를 규정할 필요하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5)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카페리선박(여객선)이 손상을 입어 일부가 침수되는 경우를 가정한 손상시의 복원성 조건, 계산방법 등을 명확히 함 **강화**

심사결과 기존 「선박구획기준」상의 '손상시의 복원성' 규정* 준용만으로는 준용기준 개정에 따른 조문체계 변경시 적용에 있어 혼선 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복원성 기준을 명문화하여 직접 적용하는 것으로,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해상인명안전조약(SOLAS : Safety of Life at Sea)」의 관련 규정을 수용한 내용이고, 해양사고 시 갑작스런 침수 등에 따른 선체의 경사가 발생하는 경우 선박의 복원성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카페리선박의 구획 배치시 횡격벽의 굴절부, 계단부 등에 대한 기준과 손상 시의 복원성 계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6) 선박설비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해양사고 발생 시 여객의 안전한 탈출을 위해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연안여객선에 사다리, 수밀손전등 등 탈출설비를「선박설비기준」제48조에 따른 탈출설비에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세월호사고 이후 언론, 국회, 국민 제안 등의 요구사항 반영하는 것으로, ▲공공구역과 탈출로에 설치된 가구 등 고정, ▲모든 탈출경로에 비상표시등 설치, ▲객실 및 공용실에 수밀손전등 설치, ▲객실 및 공용실에 사다리 형태의 구조 또는 설비 비치, ▲객실 사이의 복도에 사다리 형태의 구조 또는 설비 비치, ▲객실 및 공용실에 창문을 깨트릴 수 있는 망치 비치 등 탈출설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승객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조치 의무화 **강화**

심사결과 구명조끼 비치의무*는 현행과 같으며, 그 착용만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낚시승객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낚시어선업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항 중 '인명안전에 관한 구명설비, 소화설비 등의 설비의 비치'를 추가 함 **강화**

심사결과 현재 인명안전과 관련한 설비는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해당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낚시어선 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낚시승객의 안전관리 조치 강화가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8)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강화 2)

심사내용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감독 수행에 필요한 경력 등 자격요건을 감독관 자격으로 규정 **신설**

심사결과 법률에 '해사안전감독관제'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과 직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감독 수행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성을 감독관 자격기준으로 마련이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효력기간, ▲지정 기준, ▲평가지수, ▲지정의 취소 및 효력정지 기준, ▲지정취소·효력정지 절차 등을 정함원형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원형지 공급·개발 절차 등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할 필요가 있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선박운항자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강화 **강화**

심사결과 항공 및 철도 분야 수준으로 음주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음주운항 금지 기준을 다른 분야의 입법례와 같이 강화하여 선박운항자의 음주 관련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항 행위 근절이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음주운항 금지 기준 강화사항을 반영하여 음주운항 금지행위시 과태료 부과기준도 혈중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부터 구분하여 정비 **강화**

심사결과 음주금지 기준(혈중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 강화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9) 수산생물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진단능력관리를 위해 연1회 이상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실시하고, 진단능력이 미달된 기관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민원인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정도관리를 통한 검사능력을 표준화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12개 병성감정실시기관이 지정되었으며, 기관별 검사방법 또는 진단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어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정도관리를 통한 검사능력 표준화가 필요하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관리청 등으로부터 시설의 정비·보수명령을 받은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비·보수 계획 제출을 의무화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시설 소유자 등에게 정비·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의 실행을 위해 정비·보수계획을 제출하고 계획기간 내 조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청 등이 해수욕장 시설의 정비·보수 등과 관련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별, 미이행 횟수별로 구분하여 정함 **신설**

심사결과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미이행 정도(횟수)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는 것으로, 장관의 재량범위(6개월 이내 업무정지)가 예측가능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신설**

심사결과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안전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던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공유수면관리청은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강화**

심사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그 밖의 경미한 사유와 구분하여 당연 취소하게 하는 것으로, 동 규정 신설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강화**

심사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와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그 밖의 경미한 사유와 구분하여 당연 취소하게 하는 것으로, 동 규정 신설로 공유수면 매립면허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4)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원양어업 조업상황 보고 주기를 월단위에서 조업일단위로 단축하고, 전자조업일지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 전자조업일지에 의한 보고 근거를 마련 **강화**

심사결과 첨단위성을 활용한 전자조업일지 보고시스템을 도입하고, 조업실적 보고주기를 조업일단위로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에 방현재(防舷材) 설치, 방제장비 비치 및 보험가입 의무 추가 **신설**

심사결과 방제장비 비치 등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선박급유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선박등록 기준에 안전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필요가 있고 유사업종 사례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방제분담금 요율 조정

- 선박(총톤수 1톤당, 매 입항시마다)
  - 유조선 (내항선) 4.8원 ⇒ 4.77원, (외항선) 13.6원 ⇒ 14.32원
  - 비유조선 (내항선) 2.4원 ⇒ 2.48원, (외항선) 6.8원 ⇒ 7.45원
- 기름 저장시설 : 7.2원 ⇒ 8.66원(유류수령량 100 *l* 당)

방제분담금의 부과금액 산정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함 **강화**

심사결과 방제분담금의 부과금액을 5년마다 다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2008년부터 적용하던 방제분담금을 다시 현실에 맞도록 산정하려는 것으로, 법정방제능력(기름회수능력) 충족을 위한 분담금 확보가 필요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7) 고속선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국내 '국제항해 고속선' 선상에서의 밀폐구역 진입 및 구조 훈련의 수행에 대한 요건 신설 **강화**

심사결과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고속선 코드(2000 HSC Code)의 개정 (2015.1.1 발효)에 따라 국내 '국제항해 고속선'의 밀폐구역 진입 및 구조 훈련 관련 요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훈련을 통해 비상 시 선원들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인명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8)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비상 시 해상에서 인명구조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여객선의 구명설비 요건을 강화함 **강화**

- ▲카페리여객선에 탑재된 기존 '팽창식구명뗏목'을 '자동복원구명뗏목'으로 단계적으로 교체, ▲여객선에 비치하는 구명조끼 비치수량 추가, ▲항내 운항선박 구명설비 강화, ▲강하식 탑승장치 추가 비치, ▲구명부기 탑재장소 접근수단 추가 등

심사결과 국제협약 개정사항((SOLAS(Safety of Life at Sea)협약 개정(1998.7.1. 발효)) 누락사항(국제항해 카페리여객선 구명조끼 5% 추가)을 반영하고, 안전행정부 주관 범부처 총체적 안전점검('14.4.28-5.9)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국민신문고 및 민원을 통한 제안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내 운항 카페리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여객선의 구명설비요건 등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9) 국제선박의 외국인 승무 기준 및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 및 범위를 규정 **신설**

심사결과 동 규제는 단체협약을 체결('07)하여 이미 적용해오던 것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등에 대한 법규화가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0)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선박직원의 교육과정에 '여객선 직무교육(3일)' 과정을 추가 **강화**

심사결과 여객선 선원의 직무 능력향상을 통해 비상시 신속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해수부에서 마련한「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방안('14.6)」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여객선 선원의 직무 능력향상을 통한 비상 시 신속한 대응능력 내재화 필요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1)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선장의 비상훈련 기록방법을 다양화하고, 보고의무를 추가 **강화**

심사결과 해수부에서 마련한「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방안('14.6)」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등의 반영을 위해 선내비상훈련기록사항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 항해일지에 훈련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훈련 실시 여부를 확인·감독하기 어려워 관리·감독 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최근 5년 이내에 1년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 기초안전교육·구명정 조종사 교육·상급소화교육 및 응급처치담당자교육의 재교육 면제조항 폐지, 교육대상 및 기간 확대, 교육 유효기간 설정 등 **강화**

심사결과 해수부에서 마련한「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방안('14.6)」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등의 반영을 위해 안전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것으로, 선박 비상시 선원의 신속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안전재교육 면제 폐지, 교육대상 및 기간 확대, 교육 유효기간 설정 등 선원의 교육 훈련 강화가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컨테이너 등에 냉각제와 같은 위험물 투입시 주의 표시의무 신설 **신설**

심사결과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위험물 수출업자가 타국의 항만청으로부터 제재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위험물(냉각제) 주의 표찰을 위험물에 부착함으로 인하여 위험화물 취급시 경각심 고취 및 안전성 제고가 필요함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3)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화물적재 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을 국내항간 운송화물로 확대 **강화**

심사결과 현재 화물적재고박에 관한 적용기준이 있는 '국제항간 운송화물'과 '카페리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과 달리 적용기준이 없었던 국내항간 운송화물에 대해서도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화물적재 및 고박 등의 부적절함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대규모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4) (해양수산부)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상향 조정 **신설**

심사결과 조합으로 하여금「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소한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급여력 개선을 통해 고객 보호 강화 및 신뢰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음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제5절
농림축산 분야

1. 농림축산식품부

남 승 헌 사무관
T 044-200-2421 E hanarum@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료관리법, 식물방역법,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14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4건, 강화 18건 등 총 5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1-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4-05-04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0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 비료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11	원안의결 7	신설 2, 강화 5 (비중요 7)
(5) 식물방역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18	원안의결 9	신설 6, 강화 3 (비중요 9)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6)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14-07-24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7)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27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8)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2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17	원안의결 11	신설 11 (비중요 11)
(10)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4-12-0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4-12-13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계	**-**	**원안의결 52**	**신설 34 강화 18 (비중요 52)**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동물 운송자 및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

- 동물 운송 차량에 동물을 싣고 내릴 때 그 동물에게 충격과 상해를 입히거나 운송 중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동물운송자 및 판매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동물의 생명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부과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동물운송자·판매자 및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6)

심사내용 정비구역내에서 행위제한 **신설**

–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에서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규제이행에 따른 추가비용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설**

–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위치도,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정비사업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시행계획서의 적정성과 자금조달능력 등을 검토하여 농어촌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지자체, 농어촌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인가 및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설**

–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을 설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조합추진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지역주민인 토지등소유자가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을 설립하여 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 하였고,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농어촌주택 분양 및 우선매각 **신설**

–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어촌주택을 소유토지 등이 사업구역에 편입된 자 등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정비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기존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마을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이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사업시행자, 농어촌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농어촌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인가전 사용허가 **신설**

– 사업시행자가 농어촌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한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인가 및 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완공된 건축물 등이 사용에 안전한지,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설물을 설치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입주예정자인 농어촌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의 부과 **신설**

– 정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사·측량을 방해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정비사업의 이행력 확보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별로 처분수위를 상향하여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있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신설**

– 농·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은 설립등기 시 등기신청서에 조합원 5인 이상의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영농·영어조합법인 설립등기 시 설립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여 허위·부실법인의 설립·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규제이행에 따른 추가비용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신설**

– 농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농어업인(농어업생산자단체)은 설립등기 시 등기신청서에 농어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어업회사법인의 설립·운영시 투명하고 건실한 회사법인을 육성하여 선량한 농어민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영농·영어회사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규제이행에 따른 추가비용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 비료관리법 개정안 (신설 2, 강화 5)

심사내용 영업 승계시 새로운 비료업자가 종전 영업정지 행정 처분의 승계 및 신고(30일이내) 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관련 법 위반 비료업자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하여 불량비료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인 비료업체의 추가비용은 없으며,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고 농민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생산 또는 수입하는 비료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비료의 효과·효능 등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농가 피해예방, 비료 오·남용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비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규제이행에 따른 추가비용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료공정규격의 설정 **강화**

- 부산물 비료 지정을 현실에 맞게 공정규격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무상 유통·공급하는 경우도 공정규격 설정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무상으로 공급되는 음식물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등 폐기물 비료로 의한 농업환경 및 농가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비료의 공급을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비료협회 및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규제이행에 따른 추가비용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강화**

- 위해성 검사대상에 수입 비료 및 원료를 확대 포함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수입 비료에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이 유입되어 토양 환경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해당 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도록 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비료공업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수입업 신고 **강화**

- 비료업자 등이 휴업을 명분으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어 해당 사업장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비료업자가 폐업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농업환경 및 수질오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비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규제이행에 따른 추가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규제와 관련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료생산업자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법 위반 비료업자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가 피해 예방 및 법 집행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협회 및 농민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료업자 등의 휴업 및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기준을 규정 **강화**

심사결과 비료업자가 휴업 및 영업승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비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5) 식물방역법 개정안 (신설 6, 강화 3)

심사내용 병해충을 전염하는 물품에 대한 검역 **신설**

- 국내 유입 시 재해수준의 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외래 흰개미 등 유해 곤충 등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현행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중 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목재가구류, 이사물품 등)에 대해 검역을 시행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목재가구류, 이사물품, 폐지, 침목 등)에 대한 검역을 실시함으로써 국내 유입 시 재해 수준의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외래 흰개미*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내 농림산물, 자연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검역은 기존의 통관진행 과정 중에 식물검역관이 현장에 출장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목재, 이사화물 등 수입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고위험 흰개미(2종) : Coptotermes formosanus, Cryptotermes domesticus
  - 전 세계적으로 가장 피해가 크다고 알려진 종으로 재해수준의 피해 유발
- 미국·호주·일본은 흰개미 피해는 재해수준에 준하여 관리

심사내용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하여 검역관련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불이행 등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식물검역신고 대행업체의 부실한 검역 대행, 검역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수입업자들에게 양질의 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대행관련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출입식물 검역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시설, 전문인력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식물병해충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고 부정한 방법, 중대과실을 한 경우 취소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국가식물검역기관 중심의 검역체계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전문검사기관이 참여하여 식물수출업자에게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수입업체 및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식물검역관은 꼬리표(tag)를 부착하지 않은 격리재배대상 묘목 등에 대하여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격리재배대상 식물 중 병해충 잠복 위험성이 가장 큰 묘목류의 수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꼬리표(tag)를 부착하도록 하고 미부착시 폐기·반송 등의 처분을 명하여 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묘목류 수입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출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려는 자는 소독처리,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된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소독처리는 처리업자 또는 방제업자가 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위법 행위로 인한 수출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목재 방역에 대한 국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규제비용 발생은 없으며, 열처리업체, 훈증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출입 검역요건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산물수출검역단지를 지정하고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수출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시장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우리농산물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농산물 재배농가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제한, 금지 및 검사 **강화**

-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금지품은 개인 등이 소지할 수 없으며, 허가 받은 장소 이외로 유출·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물검역관은 금지품을 유출·반출한 자에 대해서 수입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수입금지품을 소지하거나 유출·반출되는 경우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입금지품의 허가부터 최종 종료시점까지 안전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기관 및 연구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별도의 비용 발생은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격리재배 중인 식물의 불법 반출·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격리재배대상 식물 중 묘목류에 대해 품목명 등 수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tag)를 부착토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격리재배 중인 식물은 검역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불법 유출·반출 시 외래병해충의 전파·확산으로 농업생태계 및 자연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묘목류 수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격리재배명령 위반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이사물품 및 특급탁송물품 등의 검역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검역질서 확립, 신속한 통관업무 지원 및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 차단 등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질서벌 집행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6)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직거래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직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인증하고 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부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우수 직거래사업자 인증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산물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고 유통구조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해외사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직거래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직거래인증을 받지 않고 직매장, 직거래장터 등에 직거래인증표시나 유사 표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규정 **신설**

심사결과 우수 직거래 인증에 관한 부정행위를 금지하여 직거래 사업자를 지원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행위 금지 등은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준수 시 별도의 비용은 없으며 직거래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직거래 인증사업자에 대한 유통, 판매 및 취급 과정을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직거래인증관련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우수직거래사업자에 관해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자료제출 등을 의무화하여 인증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직거래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직거래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변경, 농산물의 판매금지,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농산물 직거래 인증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직거래인증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직거래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7)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강화 2)

심사내용 수입 유기식품과 비식용유기가공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수입 유기식품을 신고하도록 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수입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경력기준, 인증심사원 교육을 수료한 후 심사원증 발급신청, 자격취소·정지등 세부적인 행정처벌 기준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교육 및 행정처벌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고, 유기식품 인증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및 단체는 인증심사 교육을 수료한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심사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위해 인증심사원을 보강하고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인증심사원을 3년간 점차적으로 증원하도록 하여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인 민간인증기관 등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인증업무 '13년 25,310건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 민간기관(76개소80%)

심사내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심사·재심사의 처리·절차·방법 또는 인증갱신·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 **강화**

심사결과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고 유기식품 등의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증기관 지정·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사)친환경농업인증기관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8)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중도매인간의 거래를 전년도 연간 거래액의 20%미만으로 제한,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한 농수산물 품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도매시장 활성화, 도매시장 이용 소비자의 one-stop 쇼핑 지원 등을 위해 중도매인간 거래를 허용하되 중도매인간 담합과 이에 따른 도매시장 내 유통비용 상승 등의 우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거래가능 금액을 제한하고 도매시장 관리자에 거래내역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도매시장법인, 출하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중도매인 명의대여, 중도매인간 거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비리경매사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도매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처분기준을 설정하였고,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출하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1)

심사내용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소·돼지를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이력관리를 위해 농장식별번호를 발급받도록 하는 규정 **신설**

심사결과 소, 돼지의 사육농가의 가축질병 확산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영국, 호주, 미국 등 해외사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으로, 돼지사육농가의 연간균등기업순비용은 321백만원(비용 368백만원-편익 47백만원)소요되나

질병발생 및 불량 돼지고기 유통시 신속한 추적과 대처가 가능하여 사회적 후생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소·돼지 사육농가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농장경영자에게 소, 종돈, 돼지의 출생·폐사, 양도·양수 또는 수입·수출할 때 신고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국내에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의 사육농가의 가축질병 확산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종돈업자, 가축시장개설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규제이행에 따른 추가비용도 발생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소, 종돈에 기한을 정한 날까지 귀표를 부착하도록 규정 **신설**

- 종돈의 귀표부착기한은 출생(혈통·고등 등록 등) 후 7일이내
- 소는 출생신고후 30일이내(다만, 방목지의 경우 출생한 소를 찾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 90일 이내)

심사결과 돼지고기의 위생·안전성 제고 및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존 쇠고기이력제도의 사육단계 출생 등 신고 및 귀표의 부착 기한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유지하였고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연간균등기업순비용은 10백만원(비용102백만원-편익92백만원)으로 미미하였고 소·돼지 사육농가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농장경영자는 도축을 위해 출하하는 돼지,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에 대하여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국내에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가축질병 확산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돼지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 해소 및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종돈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도축업자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거나 경매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도축한 이력축산물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국내산이력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도축되는 돼지에 이력번호 표시 등 순비용 29억(비용 32억, 편익 3억)이 발생하나, 이미 쇠고기이력제를 전산신고하고 있어 적용에 문제는 없으며,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도축업자 및 도축장경매시장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쇠고기를 수입하는 축산물수입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수입쇠고기에 대하여 검역·통관신고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수입업자 및 판매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입쇠고기를 수입하는 축산물수입업자는 국내 유통을 위하여 양도 또는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 양도 또는 수출한 날부터 3일 이내 거래를 신고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이미 쇠고기 수입 업소에 전산 인프라가 구축되어 별도의 비용은 소요되지 않고, 축산물수입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 또는 포장처리 및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쇠고기, 국내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 하고,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판매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입산 이력축산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도록하고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대상자 등이 이력번호를 각 종 거래명세서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번호 발급대상자를 규정 **신설**

심사결과 수입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였으며, 수입 쇠고기에 대한 판매시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유통되므로 추가 비용 발생도 없고 수입 쇠고기 판매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에 대하여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을 인증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국내 유통되는 국내산 및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위해축산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매차단 시스템을 통한 이력관리로 소비자의 축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였고 기 구축된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별도의 비용은 소요되지 않으며, 축산물수입업, 식육판매업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에 따른 농장식별표시, 사육현황보고, 유통업체 등의 이력표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소·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위한 것으로 축산물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이력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필요하며,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처분기준을 설정하였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차등 적용시켜 소규모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양돈농가, 유통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0)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농협의 명칭보호규정에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와 조합 또는 중앙회 임원 등이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 공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농협의 명칭보호와 중앙회 임원 등이 업무수행을 해태 할 경우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는 필요하며,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처분기준을 설정하였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차등 적용시켜 이해관계자의 부담은 크지 않으며,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으로, 조합·품목조합·중앙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경매사의 임면 및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경매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과 경매사 자격시험 관련 실비 부과 근거 규정마련 **강화**

심사결과 경매사는 도매시장에서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자격시험을 엄격히 하여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경매사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경매사가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순위 임의로 결정한 경우, 농수산물의 가격평가를 고의로 낮추거나 높게 한 경우, 경락자의 결정을 부당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면직권고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도매시장 개설자가 경매사에게 공정한 가격결정 등을 잘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명하여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농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에 대하여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업무수행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부여함이 타당하며, 도매시장법인, 경매사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부정행위의 금지 대상에 검사·검정기관이 검사 및 검정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고 금지행위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검사·검정기관이 거짓으로 검사·검정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 안전성검사 및 검정기관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근거가 없어 법 집행에 실효성 확보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 할 때 필요성은 인정되며,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자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거짓표시 등 금지사항으로 포장 농산물 권장품질표시를 하는 경우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추가 **강화**

* 금지사항 위반시 시정권고만 규정하고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은 미부과

심사결과 포장 농산물에 대한 권장품질표시제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이를 표시한 농산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거짓표시 금지규정의 필요성 인정되며, 포장 농산물 권장품질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위반행위시 시정권고 수준으로 하여 피규제자(유통·판매자 등)에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아울러, 출하·유통·판매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농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제한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국가자격증의 공신력 확보 및 시험관리의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험 응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산림청

남 승 헌 사무관
T 044-200-2421 E na85049@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 고시등 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4건, 강화 4건 등 총 8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8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산림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4-0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합판 규격·품질 기준 고시 개정안	에비심사 2014-03-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4-05-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1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6)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8**	**신설 4, 강화 4 (비중요 8)**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신설**

– 친환경 우수 목제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우수 목재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우수 목재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품질인증 기준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품질인증"제도로 생산자의 자발적 품질관리를 통한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과 제품의 우선구매를 통해 목재제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목제품 생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규제이행 비용은 실비수준의 수수료로 피규제자의 부담이 크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합판 규격·품질 기준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합판의 규격·품질 기준 **강화**

– 합판의 품질 미표시 및 저급 수입제품의 유통으로 선량한 국내 생산업체들의 불이익이 증가되는 추세로 3종의 합판(보통, 콘크리트거푸집, 구조용 합판)에 대하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실내사용금지 표기'를 하도록 하고 표준두께를 추가하는 등 합판의 규격·품질 기준을 강화한것임

심사결과 상위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합판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세부적으로 고시한 것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와 합판의 품질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격·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합판의 생산·유통업체 등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가결

(3)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신설**

*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업체의 시설 및 장비보유, 인력현황 제출서류

심사결과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법령에서 지정하는 기관 외에 업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로 자체검사공장 기준조건에서 일부고가의 시험장비는 법정 검사기관의 시험기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업체의 비용부담도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임업후계자의 요건 기준을 교육이수실적, 재배포지 소유유무,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신규로 임업을 재배하려는 자에게 임업후계자 선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 근거가 명확하고, 유사입법례와 비교해도 과도한 규제가 아니며, 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비는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 신고시 벌채후 조림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조림비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조림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 벌채수반 산림사업 신고시 자부담 분을 사전 납입토록 하여 자부담분 미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부담액 납입 증빙서류 발급 등 별도 집행비용이 없으며, 이해관계인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입목벌채 벌채 후 조림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 “조림비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의 벌채에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에 한정 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도시지역의 경우 재해예방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골라베기만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규제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없으며, 이해관계인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6)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의 미이행 정도에 따라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규정 **강화**

심사결과 산림청장의 재량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법 집행의 투명성 및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 위임사항 범위 내에서 위반내용 및 그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피규제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이 없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산림탄소관리사는 학력 및 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거짓 부당한 방법 등으로 업무를 수행 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신(新)기후변화 체제와 국가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탄소관리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필요하며,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제6절 방송통신 분야

1. 방송통신위원회

노 용 환 사무관
T 044-200-2420 E nyhwan@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6건, 강화 7건 등 총 2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3건 중 5건에 대해서 개선권고하고,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477회 경제분과 (2014.2.21)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2) 방송법 개정안	제479회 경제분과 (2014.3.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22회 예비심사 (2014.5.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22회 예비심사 (2014.5.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430회 예비심사 (2014.7.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483회 경제분과 (2014.8.22)	원안의결 2 개선권고 2	신설 4 (중요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제436회 예비심사 (2014.9.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개정안	제436회 예비심사 (2014.9.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제436회 예비심사 (2014.9.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334회 본회의 (2014.9.24)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11) 긴급중지명령의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제334회 본회의 (2014.9.24)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12)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제334회 본회의 (2014.9.24)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36회 본회의 (2014.10.31)	원안의결 7	신설 3, 강화 4 (중요 1, 비중요 6)
계	–	**원안의결 18 개선권고 5**	**신설 16, 강화 7 (중요 8, 비중요 15)**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가 방송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렙*)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율 수준(방송광고판매액의 15%~19%)을 규정 **신설**

*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 미디어의 대행자라는 의미로 미디어(방송사 등)를 대신해서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하는 회사

심사결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지상파 3사, 종편 4사 이견 없음)을 거친 안으로서 종편 미디어렙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방통위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종편 미디어렙은 금번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실제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수수료율을 재검토하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3년)로 설정토록 개선권고

(2) 방송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방송사업자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재정**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고, 방송사업자간 분쟁에 대하여 직권으로 개시된 '조정'의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① 콘텐츠 공급, 수급과 관련된 분쟁, ② 방송 송출에 필요한 설비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 ③ 방송사업구역과 관련된 분쟁, ④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⑤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분쟁 등에 있어 사업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재정(裁定) : 소송으로 다투지 않는 한 재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심사결과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호를 위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방송사업자 간 분쟁은 '재정 제도'를 통해 조속히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사업과 유사한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도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도입 필요성 인정됨. 다만 재정절차 직권개시 권한은 방송사업자 간 사적자치영역을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소지가 있고 또한 재정결정 효력 발생요건을 '30일이내 소송이 제기 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한 것은 재정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재정 제도의 신설은 동의하되 재정절차 직권개시 권한은 삭제하고 재정결정의 효력발생 요건은 '60일이내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로 수정토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해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 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재산상황(회계자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재산상황 제출 및 공표는 종합적인 방송시장 현황 및 금지행위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모든 방송사업자에 대해 동 의무가 부과되고 있고, IPTV는 통신산업보다는 방송산업의 일환으로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권리주장자*의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정보 임시조치 후 권리주장자와 정보게재자에게 임시조치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분쟁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분쟁조정위에 송부하고 이의제기 사실 등을 권리주장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강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심사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시 준수할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보장(정보게재자)과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권리주장자)라는 법익을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통지·자료송부 의무 등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부담이 다소 증가되는 측면이 있으나 관련 절차의 투명성 확보로 정보게재자와 권리주장자의 편익이 제고된다는 점 및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본인확인기관의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신설**

심사결과 본인확인기관에 업무정지 명령 시 다수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업무정지를 대신할 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최대 과징금 1억원은 상위 사업자 매출액 규모를 감안할 때에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업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타 법령에서도 유사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5)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은 시정명령 불이행시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여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행위가 비교적 경미하여 사업정지·과징금이 사업자에게 오히려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적합한 제재수단으로 판단되며 이행강제금 상한은 과징금과 비교시 적정한 수준에서 설정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함

(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상위법에서 이통사·대리점·판매점·제조업자의 지원금 관련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시정명령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장려금 지급 수준, 번호이동 상황 등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부당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통신시장 질서교란을 조속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동 시행령 제정안에 원안동의 하되, 법 제정 취지 명료화 등을 위하여 재검토형 일몰(1년)을 설정할 것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상위법에서 단말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통사·대리점·판매점·제조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별 상한액 및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신설**

심사결과 시행령 제정안의 과징금 수준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동의하되, 향후 단말기 유통시장 여건 변화 및 제도운영 경과 등에 따른 과징금 상한 및 산정기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규제에 대한 재검토형 일몰(3년) 설정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이통사·대리점·판매점에 대한 방통위의 시정조치명령에 대한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신설**

심사결과 이행기간 규정 등을 통해 시정조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충분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이통사·제조사·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횟수(1~4차), 고의·과실 여부, 동기·내용, 위반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범위 및 상한 금액 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1차 부과 금액을 1/3 미만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가중·감경 부과 및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부과 또한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상위법에서 이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 위반행위 종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상한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 법령에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보다 과징금 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횟수에 따라 적정 수준에서 차등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8)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의무이행 대상 사업자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을 추가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단말기 유통법에 규정된 규제대상자가 시정명령 공표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이동통신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공표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음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9)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자료 등 제출명령, 현장조사, 출석요구 및 사실확인 대상 사업자에 대리점·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을 추가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단말기 유통법에서 신설된 규제대상자와 금지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 등의 규제대상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절차를 규정하였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음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상위법에서 위임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액을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고한 상한액은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지원금 상한액을 일정 범위로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한액 범위 및 조정주기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하되, 상위법(제4조제1항)에 상한액 기준에 대한 효력상실형 일몰(3년)이 설정되어 있는 바, 동 고시도 동일하게 효력상실형 일몰(3년)을 설정하도록 부대권고

(11) 긴급중지명령의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상위법에서 정한 이통사·대리점·판매점·제조사의 지원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요건을 그대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중지명령을 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통신시장 질서를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한 긴급중지명령의 취지 감안시 중지에 필요한 명령의 적용범위를 전체 시장으로 정하되 특정 지역이나 유통망을 세분화하여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 고시안에 원안동의하되, 향후 단말기 유통시장 여건 변화 및 제도운영 경과 등에 따른 기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규제에 대한 재검토형 일몰(3년) 설정을 부대권고

(12)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단말기 유통법은 이통사와 유통망에서 이용자에게 단말기별 지원금과 실제 판매가 등을 공시토록 하고 구체적 기준을 고시로 위임하고 있어, 이통사는 단말기명·출고가 및 지원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가입기간·요금제 등 세부기준별로 공시하도록 하고 이때 지원금 중 '이통사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과 '단말기 제조업자가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 중 지원금에 포함된 금액'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고시제정안의 분리공시는 상위법인 단말기 유통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상위법 관련 규정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토록 개선권고하고, 기타 세부기준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단말기 유통시장 여건 변화 및 제도운영 경과 등에 따른 기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검토형 일몰(3년)을 설정하도록 권고

* 지원금 지급 및 지급요건에 대하여 공시(단통법 제4조), 제조업자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된다(동법 제12조)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3, 강화 4)

심사내용 상위법에서 수신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해 수신동의,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수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알리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그 처리기한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수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알리는 내용은 ①전송자 명칭 ②수신동의 등의 내용 및 의사표시일자 ③처리 결과를 포함토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처리기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의사표시 즉시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영세사업자는 자동처리를 통한 즉시 통지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감안하여 14일로 설정한 것이며, 통지와 관련된 유사 사례를 고려할 때에도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위법에서 수신동의를 받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함에 따라, 확인주기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으로 규정하고 확인을 하려는 자는 ①전송자의 명칭, ②수신동의일자 및 수신에 동의한 내용, ③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의사유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불필요한 광고수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확인주기와 관련하여 2년이 넘어가는 경우(예 : 3년 이상) 광고수신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당초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고 유사사례를 감안할 때에도 2년은 적정한 기간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을 반영하여 당초안을 수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개인정보 누출행위 등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의 과태료 부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상한액 범위의 타 위반행위를 준용하고 있어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위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동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규정 **강화**

심사결과 정보통신사업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 최소화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1년의 정보보유 유효기간은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안동의하되, 현재 규정에 따른 파기대상 개인정보에 대해 개정된 유효기간 적용시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 규정 파기대상 개인정보는 개정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부칙에 표기하도록 부대권고

심사내용 기존에는 정보통신서비스업자가 개인정보 취급시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일방향 암호화하고 주민번호·금융정보는 양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토록 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은 바이오 정보*를 양방향 암호화 대상으로 변경하여 규정 **강화**

* 지문·홍채·음성·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심사결과 정보통신서비스업자는 본인인증 등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되므로 개인정보 누출시에도 이용자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는 암호화 저장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바이오정보는 일방향으로 암호화할 경우 숫자 등의 비밀번호와 달리 매 입력시마다 100% 동일한 값이 나오지 않아 인증수단으로 활용이 곤란하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타 법령 사례를 고려할 때 양방향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스팸) 전송시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여 규정 **강화**

심사결과 기존 거래관계를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간접적 동의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정기간 내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자들의 경우 현재에도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6개월 기한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동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위법에서 개인정보 누출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방법을 타 위반행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개정됨에 따라, 기본과징금 산정시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기준율을 구체적으로 규정 **강화**

심사결과 법률상 과징금 상한이 상향(3배, 1→3%)됨에 따라 기본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율을 상향(3배)하는 것으로서 법위반시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증가하여 대상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나, 개인정보보호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제7절
노동·환경 분야

1. 고용노동부

김 해 영 사무관
T 044-200-2447 E geneve2@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 16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6건, 강화 32건 등 총 48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8건 중 9건은 개선권고를 하였고, 나머지 39건은 원안의결하였음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사회 분과위 (2014.02.24)	원안의결 15 개선권고 5	강화 20 (중요 8, 비중요 12)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특정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사회 분과위 (2014.08.22)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4)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9.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9.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9.26)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7)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14.10.31)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9) 최저임금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2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4.11.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고용보험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4.12.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4.1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사회 분과위 (2014.12.12)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15)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14.12.16)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16) 근로기준법 개정안	행정사회 분과위 (2014.12.3)	원안의결 3 개선권고 2	신설 2, 강화 3 (중요 2, 비중요 3)
계	–	**원안의결 39 개선권고 9**	**신설 16, 강화 32 (중요 13, 비중요 35)**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0)

심사내용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확대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제41조의2, '13.6.12)으로 사업자의 의무에 포함(구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되어 있던 위험성평가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함에 따라, 안전·보건관계자* 들의 업무에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를 포함

심사결과 고시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던 사항을 상위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규제수준도 종전과 동일하여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확대 **강화**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을 서비스 업종 등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全업종으로 확대(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

*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 +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 1차 금속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심사결과 지정에 따른 별도의 고용비용이 없어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조치의무 **강화**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사용·운반하는 등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 작업(시행령) 및 정보제공 방법(시행규칙) 규정

심사결과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제공된 정보에 따라 적절한 지시를 받고 있는지 여부는 도급인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급인의 의무로 규정해야 할 사항임 정보를 제공받은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기록하거나 도급인에게 보고하도록 개선 권고

심사내용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강화**

- 수급인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는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구체적 내용 및 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 시 제출 서류·절차 규정

심사결과 전문가 검토 등에 따른 규제비용이 87억원으로(설계변경 비용 미포함) 규제비용이 과도하여 중요규제로 분류, 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을 통해 건설공사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 및 고위험군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설계단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대형사고 예방 및 공사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강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업종에 ①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②반도체 제조업, ③전자부품 제조업을 추가하여 기존 10개 업종에서 13개 업종으로 확대

심사결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해왔고, 최근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업종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해관계자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2개 사업장 → 8개사업장으로 확대('11. 11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2.9.27. 구미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누출로 5명 사망, 18명 부상 및 인근지역에 큰 피해

심사내용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및 범위 확대 **강화**

- 공정안전관리*(PSM) 적용대상을 유해·위험물질 21종에서 30종을 추가하여 51종으로 확대 하고 제조·취급·저장물질의 변경, 제조·취급·저장량의 증가 등으로 가동 중 유해·위험설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제출대상 확대에 따른 규제비용이 크고,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담이 과도할 수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 유해·위험 물질 확대(21종 → 51종)에 따른 동시다발적인 규제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행 시기를 1년 유예('14.9.14 → '15.9.14)하도록 개선권고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내용 홍보 및 교육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부대권고

심사내용 지도사 등록 취소 사유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지도사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사유를 규정하고 사유별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심사결과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가 과도하지 않으며 피규제자 수는 등록된 34명('13.9.2. 기준) 및 자격보유자 234명으로 한정되어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경영지도사의 경우 등록한 경영지도사가 법으로 정한 5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

심사내용 과태료부과기준 **강화**

- **(특정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이 해당 재해 발생과 관련이 있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에서 1~3차 모두 300만원으로 조정

심사결과 과태료 금액을 1~3차 모두 동일하게 하는 것과 감독관 재량으로 3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적용 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할 수 있으므로 중요규제로 분류

- **(특정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재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고, 위반 횟수별로 차등하도록(1차 : 200만원, 2차 : 250만원, 3차 : 300만원) 개선권고

심사내용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강화**

- 사업주의 법위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일반부상자의 5배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부여하고 사망재해 등 산업재해에 대해 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환산재해율* 산정에 포함되도록 현행규정 삭제

  * 현장 내 건설기계·장비에 의한 안전사고

심사결과 해당 재판의 최종확정시까지 재해율 산정을 유예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 건설현장 내의 재해 예방을 통해 현장의 안전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기준 확대 **강화**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자를 정수이상으로 증원·교체하도록 명할 수 있는 기준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표 12의2)중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추가

  * 유기화합물(108종), 금속류(19종), 산 및 알카리류(8종), 가스상태 물질류(14종),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13종), 금속가공류(1종)

심사결과 발병원인에 대한 규명이 불명확한 직업성 질병자는 포함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고 요양승인시기와 작업환경 개선 시기 차이 등으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 작업환경이 개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증원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토록 개선권고하고 산안법 개정 시 증원명령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부대권고

*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전문가 집단이 평가하여 증원명령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

심사내용 도급사업 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강화**

-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수급인 간 및 관련 수급인 상호간의 해당 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방법', '연락 및 조정'업무 추가

*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작업환경측정,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심사결과 이미 지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대상 장소 확대 **강화**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장소에 4개** 장소 추가(총 20개)

*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합동안전보건점검, 작업환경측정 등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소, 방사선업무를 하는 작업장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심사결과 최근에 빈발*하는 정비·보수작업시의 화재·폭발·누출, 방사선피폭에 의한 백혈병 등 직업병 발생, 차량계 건설기계 등에 의한 사고 및 현장 내 감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장소로 추가 지정하여 해당 도급 업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작업)** 1996년에서 2013년 사이에 발생한 총 142건의 중대산업사고 중 정비·보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총 36건
- **(비파괴검사 등 방사선업무)** '09년 이후 방사선 피폭에 따른 산재 신청건수는 총 18건, 승인된 7건 중 비파괴검사 관련 건은 4건(백혈병)으로, 비파괴검사 작업과 관련하여 매년 1건의 재해가 발생
- **(차량계 건설기계 등의 사용작업)** '12년~'13.9월까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과정에서 총 51명이 사망
- **(전기기계·기구 등의 사용작업)** '12년~'13.9월까지 사업장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과정에서 총 8명이 사망

심사내용 방호조치대상의 합리적 조정 **강화**

- 지게차의 방호장치로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를 추가 설치

심사결과 방호조치는 기존 고시(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참고1)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규칙에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인증대상의 합리적 조정 **강화**

- 주요 구조 부분 변경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등을 규정
  - 설치·이전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기계·기구 및 설비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주요 구조 부분 변경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기계·기구 및 설비
    *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

심사결과 고시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 발생 비용이 없고, 규제 수준도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대상 추가 **강화**

-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대상 위험 기계·기구에 기계톱을 추가하고 기계톱의 안전인증을 위한 장비*를 정함

  * 손잡이강도시험장비, 손보호판강도시험장비, 균형시험장비, 브레이크시험장비, 자동체인브레이크작동시험장비, 체인잡이강도시험장비, 조속레버기능시험장비

심사결과 안전인증대상(시행령 제28조제1항)임에도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대상(시행규칙 별표 9의3)에 누락되어 있어 기계톱에 대한 안전인증을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안전인증기관의 건의로 기계톱을 안전인증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입법예고 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율안전확인대상의 합리적 조정 **강화**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경우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는 규정 삭제

  * 제품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자 스스로 제품에 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신고하는 제도

심사결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을 받는 경우는 일부 시험성적서(전자파, 전기)에 한정되어 있어 방호장치 부분(비상정지장치, 방호울, 날접촉예방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어 면제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이견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조사 **강화**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방법 및 시기 규정

◦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은 45일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심사결과 유사사례*와 비교할 때 규제가 과도하지 않으며, 중대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일부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45일 전까지 제출(산안법 시행규칙 제86조)

심사내용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 **강화**

– 환산재해율이 우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된 건설업체의 자체심사 및 확인에 대해 공단이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추가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되기 위한 기준(별표 15의2) 강화

◦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있는 건설업체는 제외

–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제외

심사결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자체심사 및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법 제48조)과도 상충되며, 공단에게 자체심사확인업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사업주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중요규제로 분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기준기간에서 중복되는 기간 삭제 및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산안법 제 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③ (생략) 다만,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한 후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심사내용 지도사 재등록 시 지도실적 또는 보수교육 **강화**

- 지도사 등록 시 3개월 이상의 연수교육 이수
- 갱신등록 시 산업안전·보건 관련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을 합하여 3년 이상의 지도실적이 있어야 하고, 지도실적 부족 시에는 보수교육(20시간) 이수

심사결과 유사사례와 비교할 때 등록 전 3개월 이상의 연수교육 및 갱신등록을 하기 위한 관련기관에서 3년 이상의 지도실적, 또는 20시간의 보수교육은 적정하며 피규제자는 자격보유자 234명 및 등록된 34명(13.9.2 기준)으로 한정되며, 이해관계자 협의 및 입법예고 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공인노무사 : 연수교육[6개월(집체 1개월, 실무수습 5개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
* 경영지도사 : 갱신등록[지도업무 담당부서 근무경력(3년이상), 120시간 보수교육]

심사내용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관련 보존서류 명확화 **강화**

-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검사기관이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안전인증·안전검사 관련 서류 지정
  - 안전인증기관 : 안전인증 심사종류별 제출서류 및 심사서류
  - 안전검사기관 : 안전검사 신청서 및 검사결과서류

심사결과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관련서류를 보존함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없으므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으며 피규제자는 안전인증·검사를 행하는 7개 기관에 한정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강화 (제3조제1항, 별표 1) **강화**

- 2년 경과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에서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2년 경과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공개기준 확대

심사결과 제재의 수준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새로이 발생하는 규제비용도 없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타 사회보험 공개기준 : 국민연금(5천만원 이상, '13.4.23 시행, 160명 공개), 건강보험(1천만원 이상, '12.9.1시행, 979명 공개)

(3) 특정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특정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 **신설**

– '중대재해' 및 '주요 유권단체장'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3차 위반에 해당(최고금액)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26개로 규정

심사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중대재해 발생과 같은 특정사업장에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 신설규제로 일정기간 운영 후 중대재해 발생현황, 과태료 부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수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3년 효력상실형 일몰설정을 권고

(4)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과태료부과 기준 **강화**

–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 신청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심사결과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500만원으로 규정하였으나, 유사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으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감안하여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감안하여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감경(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출산전후휴가 미허용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생리휴가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보험사무대행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강화**

– 개인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가기준을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

심사결과 세무사협회의 '개인노무사 및 개인세무사에 대한 경력요건 철폐 또는 1년으로 축소하자는 주장'에 대해 당초 개정(안)을 완화(3년 → 2년)하였으며, 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 개인세무사는 신규 진입으로, 보험사무 대행현황, 지원금 예산, 시장상황 등을 종합 검토 후 규제수준을 재설정(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년 재검토 일몰을 설정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6)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안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신설**

- 체불근로자가 체불임금,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기재한 '체불금품확인원'을 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체불 근로자의 민사소송 제기 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조치로써 체불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또한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체당금의 지급 및 대위권 행사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임금 등(체당금)의 회수절차를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

  * 납부요구 → 보전처분(압류) → 강제환가 절차 이행

심사결과 근로자에게 체불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을 다시 사업주로부터 돌려받는데 민사소송 시 장시간* 소요(최소 6개월 ~ 1년 소요)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사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국세체납처분 절차 시 : 통상 2개월 소요

** 구상권 행사 사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장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조치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소요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구상권은 국세체납절차에 따름)

심사내용 부정행위에 따른 체당금 반환 요구 **강화**

– 거짓보고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하도록 한 부정수급 행위자(주로 사업주)에게 추가 징수 금액에 대해서도 연대책임부과

심사결과 부정수급 근로자와는 달리 행위자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연대책임만 지고 추가 징수에 대한 연대책임은 없어 부정수급 예방에 한계가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7)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신설**

– 과정평가형 지정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 기준 마련

*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거나 교육·훈련생의 이수처리를 한 경우(지정취소)

②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1·2차(시정명령), 3차(지정취소)
③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1·2차(시정명령), 3차(지정취소)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격 취득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된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동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강화**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9년 3.1%로 결정하고 연도별로 단계적 상향

* '15년~'16년(2.7%), '17년~'18년(2.9%), '19년 이후(3.1%)

심사결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체 중 사업자(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부담금 납부 비용 및 향후 부담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고 의무고용률 상승은 사업주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중요규제로 분류, 장애인에 대한 고용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며 의무고용률은 법정요소를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한 사항으로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9) 최저임금법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사업장 최저임금법 적용 **강화**

– 최저임금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감경)

심사결과 규제의 실효성 및 예방효과를 위해 제재방식을 전환(벌칙 → 과태료)하는 것으로 규제수준도 적정하며 법위반행위 시정 시 과태료(50%) 감경을 통해 법준수율을 제고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최저임금 감액적용 **강화**

–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단서 신설

심사결과 단순노무종사자는 1~2주의 직무훈련만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일반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신설**

– 해당 사업주의 성명·사업장의 명칭·주소(해당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당해 연도의 여성 근로자 현황 및 관리자 현황 및 법 제 17조의4 제5항에 따른 이행촉구를 따르지 아니한 이유를 공표

심사결과 이해관계자인 경영계(경총), 노동계(한국노총)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에서 심의('14.11.6)한 결과로 명단공표 대상이 3회 연속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로 한정되고, 공개 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새로이 발생되는 규제비용은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채용절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횟수에 따라 250만원 ~ 500만원
-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횟수에 따라 250만원 ~ 500만원
-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300만원
-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 ~ 300만원
- 시정명령 불이행 횟수에 따라 150만원 ~ 300만원

심사결과 특히 최근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으로 취업을 위해 수차례 입사 지원으로 반복적 채용서류 준비 → 채용서류 반환으로 구직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이고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 등을 고려한 감경 규정을 두어 구인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2) 고용보험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합리화 **강화**

- 일정기간 내에(대통령령으로 정함)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이해관계자인 경영계(경총), 노동계(한국노총)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14.8.25) 및 고용보험위원회*('14.8.27)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이며 부정수급자의 재기 가능성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3년 범위내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강화**

-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만큼 사용(최대 2년)
- (분할사용 횟수) 1회 분할 사용 → 2회 분할 사용 가능

심사결과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을 유지*하여 사업주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였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지원금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 규제 수준도 적정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육아휴직(최대 1년), 1회 분할(2회)

(14)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교육대상: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수행 중인 사람(안 제7조)
- 교육시간: 전체 교육 16시간 이상, 집체교육 8시간 이상(안 제9조)
- 교육시간 인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아래 교육에 인가교육의 세부과정과 동일한 과정이 포함된 경우 4시간의 범위에서 인정(안 제10조)
  1. 「세무사법」 제12조의5제2항의 보수교육
  2. 「변호사법」 제85조의 연수교육
  3. 「공인회계사법」 제46조제1항의 연수교육
- 집체교육 정원: 학급당 60명 이내, 다만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300명 이내(안 제11조)
- 유효기간: 인가교육을 마친 날부터 2년(안 제18조)

심사결과 동 제정(안)이 개인 세무사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중요규제로 분류, 타대행기관과의 형평성, 영세사업자의 불편해소, 현재 개인세무사가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장의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간) 16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축소, (인정교육) 세무사법상 보수교육에서 '연수교육'으로 변경, 교육대상(교육신청 자격)에서 직무경력 2년이상 요건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15)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7)

심사내용 학습기업의 지정 및 취소 **신설**

- **(지정요건)** 해당 직종의 일학습병행을 위한 기술력, 시설 및 장비 구비, 도제식현장교육

훈련 및 현장외교육훈련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여건, 기업현장교사 확보 등

- **(지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기업의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받은 이후에 구비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심사결과 기술력, 시설 및 장비요건 미비시 일정 수준 이상의 일학습병행 과정을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지정요건도 적정지정된 학습기업의 요건미비 시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외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음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신설**

- 일학습병행 수료 후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를 학습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계속 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규제 수준도 적정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음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신설**

- 교육과정 개발, 기업현장 교사 지정, 교육훈련 및 평가에 필요한 시간 보장, 훈련교재,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등 학습근로계약에 따른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규정

심사결과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최소한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외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음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학습근로시간 및 휴식 **신설**

- **(학습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금지
- 학습근로시간 산정 시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외 교육훈련시간은 학습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 **(휴게시간)** 학습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 야간 및 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 훈련 금지,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을 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휴일 보장

– 미성년자인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제69조) 준용

심사결과 '도제식 현장훈련'이라는 학습근로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학습근로자 보호 및 사업주 부담 완화측면에서 적정하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에서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음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대여금지 및 취소 **신설**

– **(자격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경우

–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 내 자격 정지)**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

심사결과 유사 입법례 및 해외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 공청회 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도·점검 **신설**

–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 대상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등의 지도·점검 실시 규정 마련

심사결과 훈련기관 및 지원금 지원 대상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은 국내 및 해외에서도 유사 규정이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신설**

– 학습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학습기업 사업주 준수사항 불이행, 자료제출 요구 불응 등의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심사결과 독일(직업훈련법 제102조) 등 도제식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에서도 유사사례 규정이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16) 근로기준법 개정안 (신설 2, 강화 3)

심사내용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부가금 **신설**

– 법원이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심사결과 임금체불에 대한 다른 제제 수단에 비하여 체불액과 동일한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중요규제로 분류,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지급명령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기간을 3년 내로 제한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체납사업장 자료요청 **신설**

- 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관련 기관·단체에 국세 등의 체납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건강보험료나 국세 등을 체납하였다고 하여 잠재적 임금 체불자로 간주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 및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이견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 체납사업장 자료요청은 임금체불 예방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나 요청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임금체불과 연관성이 높은 사회보험료 체납정보로 한정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악덕·상습·고액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금융제재, 정부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 **강화**

-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위하여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시 등에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공공기관 등의 발주공사에서는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하고 있으므로 정보 제공을 통한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는 타당하고 체불사업주 정보제공에 따른 발생비용은 없으며, 이해관계자 이견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금의 원칙 및 금품청산 의무 **강화**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연 20%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에 위임)

심사결과 사업주의 임금체불 유인을 감소시키는 사전적인 수단으로 장기적인 임금 체불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 근로자와의 형평성 고려 및 해외사례, 타 입법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무의부 위반시 5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 행정벌(과태료)은 법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제재수단으로 즉효성이 강하고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유사 입법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2. 기상청

김 해 영 사무관
T 044-200-2447 E geneve2@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항공기상법 제정안 등 2개 법령에 대해 신설 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건 중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기상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항공기상법 제정안	예비심사 (2014.05.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4.1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항공기상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비행장에 항공기상 관측시설 설치 의무화 **신설**

– 「항공법」에 따른 비행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항공기상 관측장비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규정

심사결과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비행장'(공항 등)을 旣설치 의무화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을 포함하여 이외의 비행장(육상비행장·헬기장 포함)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항공기상 관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 동 규제의 신설에 따른 규제영향비용*과 피규제자 수를 고려하고, 관계부처(국토부 등) 또는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 기 설치·운영되고 있는 비행장은 항공기상 관측시설 설치의무에서 제외

비행장 구분	현황	비고
① 항공교통업무 수행 비행장(공항 등)	18개소	공항15, 기타3(울진, 정석, 태안)
② 육상비행장	29개소	영암비행교육원 등
③ 헬기장(육상, 옥상, 선상 등 포함)	66개소	사설 : 대기업, 병원

(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등의 출입 또는 일시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마련
- 거부·방해 횟수에 따라 125만원(1차 위반) ~ 500만원(3차 이상 위반)

심사결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 등을 고려한 감경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 없고 유사 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30조 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자(400만원)

3. 환경부

안 호 사무관
T 044-200-2443 E stephen119@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6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86건, 강화 57건 등 총 14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43건 중 2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12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환경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제402회 예비심사 (2014.01.0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03회 예비심사 (2014.01.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04회 예비심사 (2014.01.23)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4)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404회 예비심사 (2014.0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05회 예비심사 (2014.01.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06회 예비심사 (2014.02.0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7)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18회 예비심사 (2014.05.04)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8)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504회 행정사회분과위 (2014.05.19)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개정안	제421회 예비심사 (2014.05.23)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10)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제422회 예비심사 (2014.05.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22회 예비심사 (2014.05.30)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1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22회 예비심사 (2014.05.3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22회 예비심사 (2014.05.3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422회 예비심사 (2014.05.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22회 예비심사 (2014.05.3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6)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제505회 행정사회분과위 (2014.06.0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1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505회 행정사회분과위 (2014.06.02)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강화 3 (중요 1, 비중요 2)
(18)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24회 예비심사 (2014.06.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9)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424회 예비심사 (2014.06.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508회 행정사회분과위 (2014.06.16)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2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정안	제508회 행정사회분과위 (2014.06.16)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제426회 예비심사 (2014.06.27)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제508회 행정사회분과위 (2014.06.16)	원안의결 13 개선권고 5	신설 18 (중요 7, 비중요 11)
(24)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제427회 예비심사 (2014.07.04)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비중요 5)
(2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제427회 예비심사 (2014.07.04)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26)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	제427회 예비심사 (2014.07.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7)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	제509회 행정사회분과위 (2014.07.28)	원안의결 6 개선권고 1	신설 7 (중요 2, 비중요 5)
(28)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제정안	제509회 행정사회분과위 (2014.07.29)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2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509회 행정사회분과위 (2014.07.28)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신설 2, 강화 3 (중요 1, 비중요 4)
(3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정안	제509회 행정사회분과위 (2014.07.29)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3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정안	제509회 행정사회분과위 (2014.07.29)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신설 4 (중요 2, 비중요 2)
(32)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정안	제509회 행정사회분과위 (2014.07.29)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3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509회 행정사회분과위 (2014.07.29)	원안의결 14 개선권고 4	신설 18 (중요 6, 비중요 12)
(34)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제431회 예비심사 (2014.08.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5)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 개정안	제433회 예비심사 (2014.08.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6)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510회 행정사회분과위 (2014.08.25)	개선권고 2	강화 2 (중요 2)
(3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36회 예비심사 (2014.09.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제511회 예비심사 (2014.09.15)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39)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440회 예비심사 (2014.10.0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4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41회 예비심사 (2014.10.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1)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36회 본위원회 (2014.11.17)	원안의결 6	신설 6 (중요 6)
(4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516회 행정사회분과위 (2014.12.15)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43)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516회 행정사회분과위 (2014.12.15)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4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452회 예비심사 (2014.12.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5)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452회 예비심사 (2014.12.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453회 예비심사 (2014.12.31)	원안의결 6	신설 1, 강화 5 (비중요 6)
계	–	**원안의결 121 개선권고 22**	**신설 86, 강화 57 (중요 37, 비중요 106)**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대기오염물질(탄화수소, 석면 등)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 명세서"를 추가 **강화**

심사결과 대기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서 검토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적정 방지시설 종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원료 및 연료에 대한 자료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상위법 개정('13.4.5, 7.16)에 따른 의무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강화됨에 따라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 **강화**

- (신설) △ 제조기준에 맞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촉매제 사용,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거짓 표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강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공급·판매·사용시 과태료 부과기준

심사결과 법률로 정한 과태료 상한액 범위 내에서 위반내용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위반행위자에 대해 경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정성이 인정되어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대기배출시설, 이륜자동차 검사기관 및 운행차 소유자에 대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과징금 산정방법·금액 및 자동차 범위를 정함 **강화**

심사결과 대기배출시설 부정허가·부정신고시 세부 처분규정을 마련하여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한 사항으로 상위법의 위임 범위내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므로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4)

심사내용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받은 시설에 대한 변경신고 사유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를 추가 **강화**

심사결과 당초 허가·신고시와 다른 유해물질이 발생될 경우 이를 신고함으로써 대기유해물질을 적정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의무 대상시설에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방지시설을 지정, 방지시설 설치기준 등 준수의무 규정 **강화**

심사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검사의무 규정 개정('13.7.)에 따라 인체 및 대기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유증기)을 배출하는 주유시설을 검사의무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자동차 사용연료(휘발유, LPG, 천연가스) 항목에 대한 제조기준을 강화 **강화**

- 휘발유 : 방향족 화합물 함량(%) 24(21)이하 →22(19)이하
- LPG : 황함량(ppm) 40 이하 → 30 이하
- 천연가스 : 황분(ppm) 40 이하 → 30 이하

심사결과 자동차 증가로 자동차 연료가 대기오염 배출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발암물질·대기오염 유발물질 등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자동차 제작자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무상수리 대상 확대 **강화**

-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연료공급장치, 흡기장치 등 무상수리 부품 확대

심사결과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무상수리를 정하고 있으나, 기술 및 부품 개발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국제기준 부합 및 서비스 제고 등의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4)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제작차 인증시험 대행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강화**

- 대상기관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부과사유 : 인증절차 위반, 부정인증시험, 인증시험대상 허위작성 등
- 부과금액 : 1일당 부과금액(20만원)×업무정지일수

심사결과 제작차 소음인증시험 업무 중단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인증업무 공백 등을 막기 위해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방법, 검사항목, 검사기준 등 세부절차를 정하고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기준을 마련 **강화**

심사결과 이륜자동차는 전체 도로이용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中 CO는 30%, VOC는 23%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적정관리를 위한 동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6)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운행차 소음확인 검사대행자의 장비 요건을 규정 **강화**

- KS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기타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심사결과 '07년 시행규칙 개정시 착오로 장비규정이 삭제되었으나, 현재까지 확인검사 대행자 등록업무 처리시 이전 장비요건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등 정비요건을 다시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소음기준 초과 건설기계에 대한 제작·수입·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13.8)됨에 따라 소음발생 건설기계의 소음관리기준 및 대상기계(4종)를 정함 **강화**

- 대상기계 : 굴삭기, 롤러, 로더, 공기압축기

심사결과 공사장 소음의 주요원인인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한 관리기준을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7)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4)

심사내용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기준을 규정 **강화**

- 먹는물관리법 제61조에 규정된 과태료 처분가능 금액(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에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규정함

심사결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과태료 기준도 동법의 다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되어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개정법에서 환경영향조사서 및 기초자료 (이하 '조사서등')를 보존하게 함에 따라 그 보존기간 5년을 설정, 개정법에서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설정 **강화**

심사결과 조사서등의 거짓, 부실작성 여부 판단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부실자료 작성을 방지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개정법에서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먹는샘물 등이 수질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먹는샘물 등을 회수토록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자발적 회수절차 규정 **강화**

심사결과 오염된 먹는샘물 등에 의한 국민건강위해 방지를 위 먹는샘물 등에 대한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자발적 회수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오염된 먹는샘물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상 위해 방지를 위한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법령 위반(조사서등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부실 작성하는 등) 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 **강화**

심사결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위반행위 경중 및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구체화된 처분기준도 타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되어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8)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마련 **신설**

- 층간소음의 범위
  -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 문, 창문 등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 망치질, 톱질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 헬스기구 등 운동기구 사용시 소음
  - 텔레비전/라디오/악기 등 공기전달소음
  -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소음
- 층간소음기준

구 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 충격소음(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	1분등가소음도 (Leq, dB(A))	43	38
	최고소음도 (Lmax, dB(A))	57	52
TV, 라디오, 악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 (제2조 6호 적용)	5분등가소음도 (Leq, dB(A))	45	40

심사결과 층간소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경우 분쟁우려가 있으므로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하여 욕실·화장실 급배수 소음을 제외한 모든 소음을 층간소음의 범위로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환경부, 국토부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합의안인 점으로 존중하여 원안동의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상위법 개정으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도가 도입되어 그 기준과 주기를 규정 **강화**

심사결과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로 제조되므로 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며,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시설당 비용(270만원)에 비하여 국민안전의 편익이 매우 크므로 환경부의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상위법 개정으로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제품에 품질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품질표시의 항목을 규정 **강화**

심사결과 해외사례 및 타 입법례에서도 품질표시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관리를 유도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환경부의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상위법 개정으로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규정함에 따라 그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화함 **강화**

심사결과 타 입법례에서도 영업정지·사용금지 등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부담하는 과징금에 비해 국민 건강·안전 보호라는 편익이 매우 크므로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10)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상위법 개정으로 물절약전문업 등록이 의무화되어 그 기준을 규정 **강화**

- 기술사 1명, 기사 3명, 기타 장비 등

심사결과 물절약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의 참여가 중요하며, 타 입법례와 비교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1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상위법 개정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의 수변구역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그 기준(입소정원 30인 이상)을 규정 **강화**

심사결과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30인)의 오수발생량*은 기존 행위제한 시설인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오수발생량과 유사하고, 신규입지시설에만 제한하므로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상위법 개정으로 하천구역 농약 및 비료사용 기준을 정함에 따라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주민지원사업 부동산을 부기등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강화**

심사결과 하천구역은 강우시 하천수가 유입되어 상수원수질에 직접영향이 있고, 비점오염원의 중요원인인 농약·비료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며, 타 수계법과 타 입법례도 유사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상위법 개정으로 하천구역에서 농약·비료 사용의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함 **강화**

심사결과 하천구역은 강우시 하천수가 유입되어 상수원수질에 직접영향이 있고, 비점오염원의 중요원인인 농약·비료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며, 타 수계법과 타 입법례에도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1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상위법 개정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의 수변구역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그 기준(입소정원 30인 이상)을 규정 **강화**

심사결과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30인)의 오수발생량*은 기존 행위제한 시설인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오수발생량과 유사하고, 신규입지시설에만 제한하므로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상위법 개정으로 주민지원사업 부동산을 부기등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강화**

심사결과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공정한 관리가 필요하며,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부기등기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1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상위법 개정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의 수변구역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그 기준(입소정원 30인 이상)을 규정 **강화**

심사결과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30인)의 오수발생량*은 기존 행위제한 시설인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오수발생량과 유사하고, 신규입지시설에만 제한하므로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상위법 개정으로 주민지원사업 부동산을 부기등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강화**

심사결과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공정한 관리가 필요하며,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부기등기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1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상위법 개정으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정기검사 주기를 규정(2년)하고,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표시항목을 추가(제조자, 판매자, 인증번호, 제조일자, 인증기관) **강화**

심사결과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적발건수 및 적발율*이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외국사례 및 타입법례에 비추어 검사주기 및 표시항목이 적정하여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1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상위법 개정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의 수변구역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그 기준(입소정원 30인 이상)을 규정 **강화**

심사결과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30인)의 오수발생량*은 기존 행위제한 시설인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오수발생량과 유사하고, 신규입지시설에만 제한하므로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상위법 개정으로 주민지원사업 부동산을 부기등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강화**

심사결과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공정한 관리가 필요하며,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부기등기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16)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환경유해인자노출을 평가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 범위에 초등학교 도서관과 운동장을 추가함 **강화**

- 현행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실, 초등학교 교실, 특수학교의 교실
- 추가 : 초등학교 도서관 및 운동장

심사결과 도서관은 규제를 받고 있는 교실과 같이 밀폐공간이므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의 필요성·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 운동장은 개방된 공간으로 유해물질 흡수의 개연성이 적고, 인공잔디에 대한 KS규격 적용을 통해 유해물질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현행 유지하되 재검토시 포함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선권고함
- 동 개정조항에 대한 3년 재검토형 일몰설정 권고

심사내용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환경유해어린이용품 판매금지 등 요청시 공표내용 범위를 규정함 **강화**

– 공표내용 : 어린이용품명, 제조·수입자, 환경유해인자 명칭 및 용도, 요청사실 등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범위 내에서 공표내용 범위를 정하였으며, 어린이용품 사업소(피규제자)는 5천개 정도에 불과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1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상위법 개정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대상으로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이 추가됨에 따라 그 규모기준을 정함 **강화**

대상시설	신축	증개축, 재축
공동주택	건축면적 6,000m^2 이상	건축면적 6,000m^2 이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대학·대학교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건축 면적이 당초대비 100퍼센트 이상
골프장	부지면적 100,000m2 이상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부지 면적이 당초대비 100퍼센트 이상

심사결과 저층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가 적어 민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4층이하인 공동주택은 건축면적 1만m^2이상인 경우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개선권고하고, 5층이상인 공동주택은 원안동의함

심사내용 상위법 개정*으로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이용시설 설치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추가함 **강화**

– 현행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 개정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 동법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용

* 발전소 온배수는 수질이 양호함에도 근거가 없어 재이용 하지 못하였으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재이용이 가능하게 됨

** 발전소 온배수 :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6의2)

심사결과 기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며, 관련기업도 온배수 재이용을 적극 환영하는 등 규제의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상위법 개정으로 재처리수 수질검사 대상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추가함 **강화**

심사결과 재이용이 가능해진 온배수의 처리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처리수 수질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 하·폐수처리수 수질검사 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18)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악취배출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함 **강화**

* 1~3차 위반시 개선명령, 4차 위반시 조업정지명령

심사결과 악취배출신고대상시설의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증가하여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의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어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19)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배출권 등록부 정보의 지속적·체계적 관리 및 배출권 거래 계정의 등록·정지·폐쇄와 관련한 절차사항을 규정함 **신설**

- **(계정등록 관련)** 신청서류(주민등록 등본 등 본인입증서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자격(만 18세이상, 법인 등), 반려사유(서류미비, 금융관련 범죄혐의 조사 등)
- **(계정사용정지)** 계정을 자금세탁 목적 등으로 사용, 잘못된 ID와 비밀번호 반복 사용, 잔고 배출권 없는 상태 1년 이상 지속 등
- **(계정폐쇄)** 계정정지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심사결과 법령 위임에 따라 배출권 거래 계정의 등록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배출권 보유 및 거래의 실명화를 보장하고, 배출권 거래의 범죄목적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므로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시 양수인도 양도신고 의무화, 상위법 위임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소유, 진열할 경우 적법한 개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관을 의무화함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사항인 이행서식, 구비서류 등에 관한 규정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사후관리가 가능하므로 적정성과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경우, 인공증식허가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종류를 규정하고, 인공증식허가신청시 제출서류·허가적합기준·허가증발급 및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증명서 교부의무 등을 규정함 **신설**

심사결과 CITES 이행하기 위해 상위법 위임에 따라 인공증식허가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증식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20종만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기관도 60여개에 불과하며 별도의 비용은 소요되지 않는 등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상위법 위임에 따라 사육시설등록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리대상 사육시설**, 사육시설 설치기준, 사육시설 등록절차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함 **신설**

* 총 92종 지정(1.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2. 자연생태계 방출 시 생태계교란우려종, 3. 가축질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주요질병 매개체역할을 할 수 있어 특별관리필요종, 4. 특정 시설 장치 및 관리 여부가 개체의 생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동물의 복지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종)

** 사육곰 농가 47개소, 서식지외 보전기관 24개소, 생물자원보전시설 10개소, 기타 동물원등 타법령에 의한 시설 약 120개소 등 총 200여 개소 추정

심사결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 국민생명 보호 등을 위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록 및 관리의 필요성 및 타당성 인정, 외국 사육시설 관리기준 고려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다만, 신설되는 규정인 점을 감안 3년 재검토형일몰을 설정하고, 국내의 사육시설설치기준은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1마리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개선권고함

심사내용 상위법 위임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및 사육시설 등록 등에 관하여 수수료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면제요건, 특별회계관리 등을 규정함 **신설**

심사결과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업무는 전문인력 검토 등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대다수 해외 선진국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등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2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업체들이 배출권 할당신청시 제출하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규정 **신설**

- 할당신청서 내용 : 할당대상업체의 총괄 정보 및 업종 구분,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및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소량배출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 증빙서류 : 신설·증설된 시설의 가동개시일, 증설된 시설의 증설 전·후의 설계용량, 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에 신설·증설된 시설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심사결과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의 배출시설별 할당량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할당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므로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업체들이 배출권 추가할당신청시 제출하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규정 **신설**

- 추가할당신청서 내용 :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술도입에 따른 감축실적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증빙서류 : 해당 추가할당 사유의 발생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자료(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보고서 첨부)

심사결과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의 배출시설별 추가할당량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할당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므로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배출권의 할당취소 사유가 되는 시설의 폐쇄, 시설의 미가동 및 가동정지, 업체의 분할 및 일부 시설 양도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신설**

- (전체시설의 폐쇄의 기준) 법원에 해산등기를 제출한 경우, 폐업신고의 경우 등
- (미가동의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 예정일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등
- (가동정지의 기준) 일부 시설의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등
- (분할 및 양도의 기준) 할당대상업체 또는 할당대상사업장이 분할되어 비할당대상업체 또는 비할당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등

심사결과 배출권의 할당취소 사유를 업체에게 명확히 제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업체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할당대상업체의 합병 및 분할, 소속 사업장·시설의 양도의 경우에 권리와 의무의 승계 근거를 마련 **신설**

- (합병)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업체와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게 권리와 의무가 승계
- (분할, 양도 등)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시설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전 받은 업체에게 권리와 의무가 승계

심사결과 권리의무 승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대상기업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환경부 원안에 동의하며, 권리의무 승계규정은 입법원칙상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3년 효력상실형 일몰설정을 권고함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제도 등 세부내용을 규정 **신설**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거짓·과장 광고, 기만 광고, 부당비교광고, 비방광고 등)
- 표시·광고 실증의 대상, 실증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실증자료 제출방법 등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14.3.)으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구체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제조업자 등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경부의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실증을 위해 제조자등에게 실증자료 요청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강화**

- 1차위반 200만원, 2차위반 2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유사입법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환경부의 원안에 동의함

(2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18)

심사내용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양 등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매년 보고,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 **신설**

- 보고방법 : 전년도 1.1~12.31일까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현황을 매년 4.30일까지 한장의 서식으로 보고
- 보고내용 : 보고자는 ①보고자, ②화학물질 명칭·고유번호, ③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량, ④용도 등을 보고하되, 판매자는 상품명, 구매자, 확인된 함유성분을 보고하면 ②화학물질 명칭·고유번호, ③제조·수입·판매량, ④용도 등의 내용 생략 가능
- 변경보고 : 보고자 변경사항 발생시 1개월 이내, 용도분류체계 내 변경시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보고

심사결과 외국 입법례를 참조,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존화학물질을 보고 제외대상에 포함시키고, 제조 등의 보고의무자의 보고기한은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해 4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개선권고함

심사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방법 및 등록 신청자료 등을 규정 **신설**

- 환경부장관은 3년 마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하고 등록유예기간은 고시한 시점부터 3년으로 함
- 실험분석연구용, 연구개발용,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등을 등록면제확인대상으로 하며, 등록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청서 및 관련자료 제출
- 화학물질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전에 신청서에 등록신청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자료를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분류·표시, 특성·유해성, 위해성에 관한 자료 등으로 구체화

심사결과 제출서류 및 등록면제 절차 등은 민관협의회 논의를 통해 최소화하고 기존 절차 등을 개선하였으므로 원안동의하되,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시험자료 공동 제출 당사자간 대표자 선정 불합의시 다수결을 도입할 것을 개선권고함

심사내용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환경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규정함 **신설**

- 인체건강 및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당 화학물질의 파기
- 등록의무 이행계획의 보고
- 등록의무 불이행 사실에 대한 공개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등록의무 불이행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에 대한 조치명령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로 적정성과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유해성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자에게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명령을 할 수 있음 **신설**

- 등록 및 변경등록시 제출되는 자료의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보완이 필요하거나, 인체·환경에 노출 우려가 있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지정 가능성이 있거나, 살생물제(Biocide)로 사용되거나,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되는 경우 등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 가능
-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에 관한 자료 제출 명령 가능

심사결과 유해성심사결과 등록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유해성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 필요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화학물질 독성피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의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UN의 분류기준(GHS)에 맞추어 반복노출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이상 건강유해성), 수생생태급성독성, 수생생태만성독성(이상 환경유해성) 분야 유독물질의 지정기준 마련 **신설**

심사결과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보완할 필요성 및 타당성 인정, 현행 규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국제기준에 따라 보완하였으므로 원안동의함

심사내용 위해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자에게 유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명령을 할 수 있음 **신설**

- 제출명령사유 : 위해성평가 과정에서 등록·변경등록시 제출자료의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보완 필요성, 등록물질이 유해화학물질 지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 제출명령자료 : 화학물질의 용도, 위해성,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관련 자료, 노출정보 등
- 위해성평가 결과 화학물질의 위해성 최소화를 위한 관리방법 권고 등 조치 가능

심사결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시 등록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위해성 및 안전사용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필요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화학물질로 인한 독성피해 사고 예방 등 적정성과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내분비계 장애, 생물축적성, 잔류성 분야 등에 관한 허가물질의 지정기준 구체화 **신설**

- 발암성 :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주로 사람에서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등
- 변이원성 :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연구에서 양성인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등
- 생식독성 :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람에 대한 증거가 있는 물질 등
- 내분비계장애 : 사람의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등

심사결과 허가물질 지정기준 마련을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필요성 및 타당성 인정, 허가물질 지정절차·지정기준 등은 업계와의 협의 및 외국 입법례를 토대로 마련하여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제한·금지물질의 지정시 대체 가능성 여부와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고, 제조·수입·사용자 등의 의견을 청취토록 함 **신설**

심사결과 제한물질·금지물질은 특정 또는 모든 용도로서 사용을 금지해야할 만큼 위해성이 큰 물질이므로 철저한 지정·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체물질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비용도 크지 않아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정보제공 내용을 규정 **신설**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정보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소재지·전화번호
  - 사용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용도
  -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정보
  -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정보 등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는 제조·수입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하위사용자·판매자의 상호 또는 성명
  -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총칭명) 및 상품명
  - 화학물질의 노출정보 등

심사결과 화학물질안전정보는 양도·양수간, 제조·수입자와 하위사용자간 제공·전달됨으로써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활용되므로 동 규정의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요건 등을 규정함 **신설**

- 요건 :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중량비율이 0.1%를 초과하여 함유된 경우, 유해화학물질별로 신고
- 내용 : 신고자 정보, 제품에 관한 정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알려진 분류 및 유해성 정보 등
-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제출

심사결과 화학물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파악하여 생활화학제품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 요청시 제품의 양도자는 요청시부터 45일 이내에 제품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함 **신설**

- 제품명,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량, 사용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등 정보 제공

심사결과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는 등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미고시 품목의 생산수입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승인방법·승인여부와 위해우려제품 회수명령시 사전 제출 서류 및 회수조치후 제출 서류에 관해 규정함 **신설**

심사결과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 설정, 미고시 품목의 수거회수 및 시정조치 등은 국민건강과 환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해성 평가 결과에 기반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이므로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국외 제조·생산자의 선임자가 수입자를 대행하여 수행할 업무범위, 피선임 요건 등을 마련 **신설**

- 피선임자의 업무범위 : 변경보고, 등록면제확인 신청, 변경등록·신고,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등
- 피선임자의 요건 :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지식 갖춘 자,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3년 이상의 업무 실적이 있는 자

심사결과 선임자의 요건은 외국 제조자 등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화학물질 정보지식, 화학물질 관리의 3년이상 업무실적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안에 주소를 가진 자(법인의 경우 영업소)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함

심사내용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정시 제출 서류를 규정함 **신설**

- 지정요건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시설 및 운영규정, 전문인력 8명 이상 보유, 최근2년간 업무수행실적
- 제출서류 : 기관 내 별도 조직 및 정규인력 현황, 연구기자재·연구시설·장비 등 확보 현황, 최근2년간 녹색화학분야 업무실적 및 근거,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녹색화학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장 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센터의 지정요건을 정한 것으로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시험기관 및 녹색화학센터으로 지정된 기관의 부정지정·고의중대 과실로 시험결과를 다르게 작성·업무정지기간 중 시험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규정함 **신설**

심사결과 시험기관·녹색화학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업무취소 이외 대안이 없고, 유해성정보의 정확도를 위해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므로 적정성과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등에 대한 보고, 제출명령 및 출입·검사, 서류의 기록·보존의무, 자료보호 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신설**

심사결과 화학물질관리협회가 '06년 이후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영정보 노출 사례 등이 없었으므로 화학물질 자료보호 등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도록 한 것에 원안 동의하되,

○ 자료보호 요청시 추가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신청서에 보호대상 자료의 목록 및 이유를 기재하도록 개선권고함

심사내용 상위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및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신설**

- 변경신고 미이행(1차 3백만원, 2차 5백만원), 개별제출확인 없이 자료 공동으로 미제출, 정보의 변경사항 미제공,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1차 6백만원, 2차 8백만원)
- 화학물질 등록시 20만원(중소기업 특례 10만원),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시 10만원(중소기업 특례 5만원), 등록면제확인시 5만원(중소기업 특례 3만원)

심사결과 법률상 최고금액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성격, 위반횟수 등에 따라 차등부과하므로 과태료는 원안동의, 수수료는 대응력이 취약한 영세소기업 배려차원에서 소기업의 수수료 금액을 기준금액에 80% 감면하는 방향으로 개선권고함

심사내용 종전「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 또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신고나 등록을 유예함 **신설**

심사결과 산업계 적응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24)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신설 3, 강화 2)

심사내용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영업양도·법인합병시 양수인·존속법인이 등록관련 권리의무, 환경영향평가 등 영업실적을 승계하고, 권리의무승계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의무 부여 **신설**

심사결과 피규제자수가 333개 업체에 불과하고, 영업실적 승계로 발생되는 추가비용이 없으며, 이해관계단체의 이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의무 승계규정을 명확히 하여 대상기업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확보하는 등 적정성과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관리필요사항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심사결과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고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개념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무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신설**

심사결과 기술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체계적 관리규정은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이므로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시 대행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료 및 예측결과를 거짓 또는 부실·작성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강화**

심사결과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작성 책임은 평가대행자는 물론 평가를 의뢰하는 사업자에게도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였던 규정₩을 대행계약 체결·해지·준공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강화**

심사결과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도 운영시 영업실적 미입력으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고주기를 연간 1회에서 건별 30일 이내로 단축할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2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측정기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기기 종류·부착방법, 운영·관리기준, 측정항목 및 측정기기부착 등 필요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위임 **신설**

심사결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착시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면제 등 인젠티브를 부여하는 등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쾌적한 실내환경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 근거 등 마련 **신설**

- 사업필요비용을 국가에서 전부/일부를 지원, 센터 지정 및 운영에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거짓/부정지정시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취소 또는 6월내 업무정지 근거 마련

심사결과 신청을 받아 센터를 지정하고, 지정시 예산 지원되며 타 법령도 국가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을 센터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등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등의 사용제한 대상 확대 및 제한방법 변경 **강화**

- 제한대상 확대 : (현행) 건축자재 → (개정) 목질판상제품 및 목질가공제품 추가
- 제한방법 변경 : (현행)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 고시 (사용금지) → (개정)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등 사용금지

심사결과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건축자재(페인트, 접착제, 벽지 등)에 대한 제조·유통 방지 필요성을 인정, 2010년 정부안으로 국회 기제출되었던 사항이라는 점 등을 감안,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26)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한국 고유종으로 국내분포가 한정되어 희소성이 있고 학술적 연구 등 잠재적 가치가 있어 생물자원 281종(참고4)을 추가(2,798종 → 3,079종)하여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 **강화**

심사결과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추가고시로 인한 추가 비용은 없으며, 21세기 생물자원확보를 위해 체계적 생물자원 보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27)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 (신설 7)

심사내용 폐기물이 순환이용 과정을 거쳐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거나 순환자원 인정 물질 또는 물건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순환자원 인정을 취소함 **신설**

심사결과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외국사례, 언론, 타입법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단서조항 등을 감안할 때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적정성 등이 인정되어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일정기준 이상의 폐기물 배출 사업자는 자원순환목표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출하여야 함 **신설**

- 순환자원 제품에 품질표지의 인증을 하고, 그 인증표지를 표시
- 매립가능폐기물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매립

심사결과 폐기물 소각·매립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재활용가능 폐기물이 약 56%이므로 규제의 필요성 인정, 현행법(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을 이관하여 개선하는 사항으로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순환이용지정사업자는 순환제품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순환자원의 전년도 사용실적, 해당 연도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함 **신설**

심사결과 현행법(자원재활용법)의 내용을 이관하여 인센티브를 추가, 개선하는 사항으로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도록 함 **신설**

심사결과 다른 업종에서도 의견 수렴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사업자단체가 설립되어 활동중이며, 타입법례에서도 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감안, 적정성을 인정하여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폐기물을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단,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등은 부담금 감면 **신설**

심사결과 폐기물 매립·소각 증가 추세, 외국사례, 언론 등을 감안할 때 규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되나,

- 부담금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효력상실형 일몰(5년)을 설정하고,
-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물배출량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부과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 현행 폐기물부담금과 중복 부담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재촉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매립대상 폐기물을 배출한 자, 폐기물을 매립처분한 자는 에너지 회수·활용 실적, 폐기물의 발생 및 처분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신설**

심사결과 동 규정으로 자원순환촉진 시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행법(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등)에 이미 규정, 관련사업자에게 공통 적용되고 있으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등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동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1천만원, 3백만원,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신설**

심사결과 제도의 실효성 및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 조항은 필요하며, 그 수준이 타입법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으므로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28)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산정시 고려할 인정기준과 인정예외 기준 마련 **신설**

- 인정기준 : 국내에서 실시한 행동에 의한 감축분,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 할당대상업체 단위에서의 감축분 또는 사업단위에서의 감축분, 감축이 실제적·지속적이며 정량화되어 검증이 가능한 실적
- 인정예외(불인정) 기준 : 인정기준에 해당하여도 추가적인 노력에 의한 감축분이 아닌 자연 감소분 등은 조기감축실적으로 불인정 (생산량 감소, 배출시설의 폐쇄, 조직경계 외부로의 배출시설 이전, 국외로의 배출시설이전, 조직경계 외부 위탁운영 등)

심사결과 자발적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하기 위해 감축실적 인정기준 마련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고, 배출권거래제의 시행목적,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때 조직경계내에서 추가적인 노력에 의해 발생한 감축분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동의

(2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2, 강화 3)

심사내용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환경부 등록요건, 등록의 결격사유 및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관리대행업자의 교육·준수사항 등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대상 사업장 및 위탁 사업장이 증가추세이므로, 위탁자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였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관리 등 필요성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수경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시·도지사에 신고 의무 **신설**

- 물놀이형 수경시설 :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이용하여 분수, 연못,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에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수영장, 유원시설 제외)
- 신고대상 수경시설의 규모, 신고절차, 관리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

심사결과 외국사례, 타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의 필요성과 타당성 인정하나, 행정집행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위해 시도지사가 아닌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수경시설 신고를 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과징금 처분 사유 중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추가함 **강화**

- 측정기기 고의 미작동,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으로 작동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방치, 측정 결과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심사결과 수질자동측정기기로 전체 수질오염물질 방류량의 96%를 모니터링하므로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타 입법례에서도 과징금으로 조업정지를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가 폐수배출업소에 출입하여 시료채수 및 관계서류·시설·장비 등 검사 근거 마련 **강화**

심사결과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대상 사업장 및 위탁 사업장이 증가추세이므로,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과 추가비용이 없음을 고려,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수경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강화**

심사결과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설치·관리자에게 신고의무, 관리기준 준수의무 등을 부여하였으므로 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수단 마련은 불가피하며, 타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으므로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3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검증기관은 지정받은 후 적격성 유지의 확인을 위해 3년 주기로 재지정을 받아야 하며, 검증기관 지정기간 내 휴업기한은 6개월로 제한 **신설**

심사결과 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인증기관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지정 및 휴업기간 제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인정되고, 유사입법례,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때 인증기관 재지정 주기 및 장기휴업 제한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며, 2개 이상의 분야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실무경력 또는 심사경력을 갖추어야 함 **신설**

심사결과 법령에서 검증기관의 전문인력 등에 대해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자격요건을 정하였으며,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KVER 검증심사원 및 CDM 검증심사원에 대해서 유사교육을 이수한 자는 내용의 중복성 검토 후 교육과정 일부 경감규정 마련하고 있는 등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3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할당대상업체는 모니터링 계획 제출시, 환경부장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며,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14일 이내에 모니터링 계획을 변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추가 검토를 요청하여야 함 **신설**

심사결과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모니터링 계획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에 제출 등 EU 등 외국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하므로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위반행위 횟수 등에 따른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신설**

-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천만원
- 관리업체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백~천만원

심사결과 배출량 미보고 및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대상기업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원안동의하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입법원칙상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3년 효력상실형 일몰설정을 권고

심사내용 배출량의 인증기준을 적합·부적합·미보고시로 나누어 구체화하며, 미보고시 직권산정의 요건 및 기준에 대해 구체화 **신설**

- **(적합 평가시)**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보고한 배출량을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배출량으로 인증
- **(부적합 평가시)** 할당대상업체가 과거에 보고한 내용이나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내용 등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배출량을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배출량으로 인증
- **(미보고시)** 과거온실가스 배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

심사결과 세부 인증기준을 통해 배출권거래 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고, 법령의 위임범위내이고, 외국사례 등과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되므로 원안동의

심사내용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배출량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를 보유한 제3자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자료 요청 **신설**

심사결과 배출량의 오류 또는 배출량 미제출시에도 인증을 위한 배출량 산정을 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의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32)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외부사업 타당성평가와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검증기관 및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신설**

심사결과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와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업무를 최대한 정확히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자료 요청의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을 갱신형(7년 이내, 연장 2회 가능)과 고정형(10년 이내)으로 구분 **신설**

심사결과 외부사업은 감축 활동의 추가성, 지속가능성, 계량화 가능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의 인증유효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유효기간 설정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전제가 되는 사항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규제이므로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승인된 외부사업의 승인취소 요건과 인증된 외부사업 인증실적 취소 요건 마련 **신설**

심사결과 법령에 승인 및 인증에 대한 취소규정이 없으므로 고시에서 취소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대상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원안동의하나, 취소규정은 입법원칙상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3년 효력상실형 일몰을 설정하도록 개선권고함

심사내용 승인된 외부사업의 사업계획 사후 변경 및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을 신청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설**

심사결과 승인된 외부사업의 경우, 중요 정보 변동발생 가능성이 높아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 소유권, 사업규모, 방법론 및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승인절차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3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8)

심사내용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방법 및 절차 마련 **신설**

심사결과 법률위임에 따라 통계조사,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통계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부처·산업계·전문가·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큰 이견이 없어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마련 **신설**

- 유해화학물질에 공통 적용되는 준수사항 45개와 370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물질별 개별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취급기준중 설비보완이 필요한 경우 2016년말까지 충족하면 됨

심사결과 화학사고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구체적 취급기준 마련은 필요하며, 기존 고시의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한 사항이며,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일정량을 초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운반시 일정량 규정 및 진열·보관·운반 계획 작성제출방법 마련 **신설**

- 유독물질의 경우 5,000kg,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의 경우 3,000kg 이상시 운반계획서 등 작성 제출대상

심사결과 현행 유해법은 일정량 이상의 유독물이나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진열·보관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나, 진열·보관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가능하도록 완화하였고, 관련부처·산업계·전문가·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큰 이견이 없어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금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의 허가요건 등을 마련 **신설**

심사결과 화평법 제정으로 허가물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화관법에서 허가·재허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부처·산업계·전문가·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큰 이견이 없어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운영시 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내용 및 제출 방법 등 규정 **신설**

심사결과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에 대해 유예기간 부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도 유사입법례 등과 비교할 때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 다만, 신규로 도입되는 규제이므로 3년 재검토 일몰설정을 개선권고함

심사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 검사·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 마련 **신설**

심사결과 시설노후화로 인한 화학사고가 전체 화학사고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취급시설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기 설치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함에 따라 취급시설별 매출액 기여도 자료와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준수 및 명세서를 추가 제출토록 함 **신설**

심사결과 법률에서 허가제 도입으로 영업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장비, 인력기준 마련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면제규정,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어 적정성도 인정되나,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제출 시, 취급시설별 매출액 기여도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허가 기준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동 내용은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유해화학물질 신고방법, 수급자격요건 및 도급시 요구금지사항 등 마련 **신설**

심사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에 대한 관리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환경부 원안에 동의, 다만, 신규로 도입되는 규제이므로 3년 재검토 일몰설정을 개선권고함

심사내용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을 정함 **신설**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과목 이수자 또는 3년이상 현장종사자 중 32시간 이상 안전교육이수자 등
- 선임기준 : 사업장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에 따라 1~10명을 선임

심사결과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별 유해화학물질관리지 인원확대 및 자격요건 강화의 필요성과 타당성 인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인원을 정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관리자 자격기준을 정하는 등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절차 및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설**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운반자 등은 매2년마다 16시간 교육, 통계·배출량조사표 작성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시 16시간의 추가 안전교육, 그 외 모든 사업장 종사자는 매년 2시간 교육(화학물질안전원, 협회 등 실시)

심사결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부실은 화학물질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격한 교육기관 지정기준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동 규제의 교육시간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영업자가 휴업·폐업시 유역(지방)환경청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물질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신설**

심사결과 그간 법제도적 공백으로 취급중단 또는 휴업 기간 중 관리가 소홀하였으므로, 영업자의 휴업·폐업시 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26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세부 처분기준 마련 **신설**

- 행정처분기준 :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최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의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일수×일 부과금액으로 산정

심사결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경우 중과실의 경우 1차 사고시 피해액이 90억원인 경우에도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초래하는 등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중과실로 인한 사고(2차)의 경우에는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영업정지 6개월)을 유지하되, 과실로 인한 사고(2차)와 중과실로 인한 사고(1차)시 영업정지 최대일수를 2개월로 제한하도록 개선권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는 법률 위임범위내에서 타 입법례를 따르고 있으므로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규정 공통 준수, 사제폭발물 제조가 가능한 도난·전용 위험 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신설**

심사결과 폭발성이 있거나 폭발 잠재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구체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위해관리계획서를 매 5년마다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작성·제출하고 지역주민에게 고지함 **신설**

심사결과 위해관리계획은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화학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활동이며, 이를 통해 화학사고로부터 지역주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는 필요,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영업자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의무자의 연간실적보고서 제출의무와 사업장 또는 시설 등의 출입·검사 실시요건 규정 **신설**

심사결과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행 유해법의 실적보고제도를 유지하고, 유역(지방)환경청·화학물질안전원이 사업장 현장을 확인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정기·수시검사·안전진단 수수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하고, 허가물질의 허가신청·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신청, 유해화학물질, 취급도급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폐업·휴업개시신고 수수료 마련 **신설**

심사결과 일부 신설되거나 조정되는 수수료가 있으나, 관련부처·산업계·전문가·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11개 위법사항에 대해 1천만원 이하, 2개 위법사항에 대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심사결과 화관법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에 정확히 비례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방식은 최소한 현행 유해법 수준을 유지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

○ 다만, 현행 규정과 같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준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토록 개선권고

○ 아울러, 동 감경규정이 자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세부 감경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개정 법령 적용시기 및 적용 간주시기에 관한 유예기간을 정함 **신설**

-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 등,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의 도급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심사결과 업계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제도별 유예기간을 설정·운영하는 것으로, 경과규정 마련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34)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현행법상 허용된 재활용 용도·방법은 그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재활용도 할 수 있도록 완화 **신설**

- 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 등을 토양이나 지하수·지표수 등과 직접 접촉하여 재활용할 경우, 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함

심사결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재활용도 할 수 있도록 재활용 방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한 사항이며, 일정 경우에 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한 규정은 재활용방법 완화에 따른 최소한의 안정성 확보수단이므로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35)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환경품질등급평가 적용대상에 알뜰주유소 자동차 연료공급자인 한국석유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추가하고, 환경품질등급 검사 및 평가 실시기간을 조정하였으며(매분기→매월), 기준도 상향조정함 **신설**

심사결과 추가되는 연료공급자가 2개사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규제비용도 발생하지 않아 규제가 과도하지 않으며, 국내 정유사 모두 별 4~5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변별력 강화를 위해 공급기준 상향이 불가피하므로 타당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36)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 33㎡이상 증축 또는 70㎡이상 수선할 경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 (변경)인가 전에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지 기본검사, 정밀검사를 받아야 함 **강화**

심사결과 검사대상 규모는 어린이들이 교실단위로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실 1실당 면적 기준으로 하고 있고, 검사방법도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이원화하여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및 불만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

- 다만,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가정이라는 특수성과 검사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등을 위해 증축의 경우에도 수선에서와 동일하게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하고, 아울러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3년 재검토형 일몰설정 권고

심사내용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용도로 사용되거나 판매하는 것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환경유해인자 물질을 사용하는 어린이용품에 대해 포장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량 등을 표시 **강화**

심사결과 표시대상 용품이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환경유해인자 물질 사용품목으로 한정하고 있고, 표시방법 및 표시내용도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사항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동의, 다만,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3년 재검토형 일몰설정 권고

(3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휘발유·가스자동차의 차기('16.~'25.)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인증시험 모드 추가, 입자상물질 기준 적용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 **강화**

심사결과 국제협정(한-미 FTA)에 따라 국내 휘발유·가스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미국과 동등 수준(캘리포니아 LEVⅢ)으로 설정하는 것이며, 피규제자(자동차 제작사)와 협의하였으며,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시 이견이 없었으므로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3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상향조정(250원/㎡ → 300원/㎡)하고,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토지에 과수원, 목장용지 추가 **강화**

심사결과 부과단가 인상은 '01년 설정된 후 조정되지 않았고, 연구결과 등에서도 부과단가 인상을 제시, 규제편익도 크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하나, 부과대상토지에서 과수원, 목장용지를 추가하는 것은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현행유지하고, 부과단가 인상은 2년 재검토형 일몰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함

심사내용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출입이 제한·금지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 **강화**

심사결과 과태료처분 대상 피규제자수는 미미하고, 자연환경보전법상 다른 위반행위와 비교할 때 규제수준이 적정하여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39)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외국인 등이 이용을 목적으로 국내 유전자원 및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시 신고의무 부과(신고방법, 수수료 납부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 **신설**

심사결과 생물다양성협약(CBD) 부속의정서(나고야 의정서)에서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제기준에 비해 규제가 완화된 수준이며, 내국인에 대해서는 자율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국내 유전자원 보전 등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접근과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책임기관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공고 **신설**

-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관련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률 위반을 초래하거나 우리의 조약상의 의무에 반하는 경우

심사결과 별도의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피규제자수도 100명에 불과, 단순 신고만으로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해외 유전자원 등의 국내이용자에 대해 제공국의 절차 준수를 증명하기 위해 신고의무를 부과, 국가점검기관장이 필요시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조사하고, 절차준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신설**

심사결과 나고야 의정서에서 관할지역 내에 이용되는 유전자원이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여 접근되고 이익 공유가 이루어졌는지 각 당사국이 점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내법적 절차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제기준에 부합, 적정성과 타당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심사결과 법령 준수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유사 법령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태료 수준과 동일이므로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4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중 PCBs(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에 대한 수집·운반·보관 등 처리기준을 강화하고, 기타 PCBs에 대한「폐기물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서의 규정을 대체하여, PCBs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기준 마련 **강화**

심사결과 스톡홀롬 협약에 의거 PCBs특성에 맞게 PCBs함유 폐기물 처리의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성이 있고, 국제수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인체 위해성이 큰 PCBs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오염 예방 및 취급자 안전에 대한 일원화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41)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6)

심사내용 환경영향이 큰 업종 중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은 통합 환경허가를 받음 **신설**

심사결과 중복허가를 통합·간소화, 입지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및 완화하는 사항이며, 신규 제도 적응비용에 비해 통합허가로 인한 기업의 부담경감 등 편익이 크므로 적정성이 인정되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출을 통한 정책결정이므로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통합허가·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시 신청서와 함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신설**

심사결과 중복된 허가서류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으로 규제완화에 해당되며, 통합허가제의 집행력 확보수단 마련, 허가대행비용 절감 등 규제의 적정성 인정,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논의결과 합의된 사항으로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최적가용기법을 적용, 배출되는 오염물질 최대치를 정하고 이를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하고, 엄격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 허가 **신설**

심사결과 획일적 배출허용기준을 개선하여 환경개선 및 업체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최대배출기준은 업체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규제로 개선하여 기술발전을 반영한 규제인 점 등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환경부장관이 최적가용기법 선정을 위한 기술 현황 등 파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함 신설

심사결과 최적가용기법의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한 사항이므로 규제의 필요성 인정, 실태조사 지원비용에 비해 업종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 편익이 상당하므로 규제의 적정성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환경부장관은 허가사항에 대한 적정성 점검(1회/5년)과 허가사항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함 신설

심사결과 현행 허가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을 위한 필요성 인정, 사업자의 비용절감,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변경신고 등 통합법에 규정된 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최고 1천4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신설

심사결과 통합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 인정, 통합관리법에서 현행 개별법상 상한액의 총합만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것이므로 적정성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4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기준 강화 강화

- 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악취 발생, 폐기물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 운반하도록 규정
- 단, 폐가전제품 등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하거나, 흩날림 등의 우려가 적은 경우,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도 수집·운반 허용

심사결과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개선은 폐기물의 비산·누출 또는 악취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개선의 필요성 인정, 업계 현실 반영, 유예기간 설정, 사회적 편익, 해외사례 등을 고려, 적정성도 인정

다만,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규정 중 일부 이중적 밀폐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과정의 문제점도 방지하면서 업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개선 권고함

(43)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동 고시의 적용대상 자동차 확대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 **강화**

- 적용대상 자동차 확대 :
  (현행) 총중량 3.5톤 미만의 승차인원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
  (개정) 총중량 3.5톤 미만의 승차인원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 총 중량 3.5톤 미만 화물자동차로 확대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강화)
  (현행) 연비(17km/ℓ) 또는 온실가스(140g/km), 선택적 준수
  (개정) 연비(24.3km/ℓ) 또는 온실가스(97g/km), 선택적 준수
  ◦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추가)
  (신설) 연비(15.6km/ℓ) 또는 온실가스(166g/km) 선택적 준수

심사결과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강화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으로 정부 내 고위 협의체를 통해 합의된 점, 국제통상관계,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순편익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어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4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현행 20개비 당 7원인 담배 품목의 폐기물부담금을 20개비 당 24.4원으로 인상 **강화**

심사결과 담배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를 위해 부담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폐기물부담금 인상으로 제조사에게 추가되는 부담보다 순이익이 훨씬 크고, 담배소비 억제로 국민건강 증진 편익 등을 고려,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하여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45)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착용해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및 성능기준을 정함 **신설**

- (사고대비물질) 물질별(69종) 개인보호장구 종류 규정(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장갑), 성능기준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준용
-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및 성능기준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준용
- (보호장구의 비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장구 비치

심사결과 화학사고는 초기대응시간을 단축하여 2차 피해방지가 가능하므로 화학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 규제의 필요성 인정, 전체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 69종에 한정하는 등 적정성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4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5)

심사내용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는 가축분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임시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또는 처리업시설 등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신설**

심사결과 피규제대상은 10개소 미만에 불과하지만 정화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규제의 필요성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허가대상 배출시설과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규모를 정함 **강화**

- 허가대상 : 닭·오리 사육시설의 경우 3천㎡이상
- 신고대상 : 닭·오리 사육시설의 경우 2백㎡이상 3천㎡미만, 사슴 사육시설의 경우 2백㎡이상

심사결과 닭·오리 축사의 대규모화로 현실에 맞는 허가대상·신고대상 배출시설 규정 마련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등 필요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시설의 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추가함 **강화**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며,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는 등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1일당 부과금액 : 30만원, 폐수배출시설·대기배출시설의 경우 300만원)

심사내용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기준을 추가·보완하고, 위반행위의 종류, 가축분뇨관련영업의 종류·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화함 **강화**

심사결과 퇴비·액비 및 바이오에너지를 기준에 맞게 생산해야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환경오염 예방이 가능하며, 기술능력기준 등을 추가하여 인력풀의 폭을 넓혀주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시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추가함 **강화**

- 시설·장비 : 퇴비·액비의 부숙도 및 중금속 측정기, 총고형물·휘발성 고형물·바이오성분 및 발열량 측정기
- 기술능력 : 축산기사·유기농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자격

심사결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기 위해 약 6천만원이 추가 소요되나, 처리시설이 부실할 경우, 연간 약 7천5백만원 내지 1억5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간접편익(손실방지액)이 크므로 적정성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퇴비·액비화기준 초과시 과태료 부과 기준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정하 **강화**

- 과태료 : 1차(25~600만원), 2차(35~800만원), 3차(50~1천만원)
- 설치기준 :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가축분뇨연료 제조시설 추가
- 관리기준 : 방류수 수질 자가검사 또는 위탁 측정(분기1회~연1회), 가축분뇨의 하천 등 공공수역 유출 방지 의무, 액비살포시 살포동의서 수령 후 살포

심사결과 질 낮은 퇴비·액비 살포로 인한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생활환경과 수질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타법의 유사 규정과 과태료 수준이 동일하며, 검사 또는 측정시기도 반기 1회 또는 연 1회로 과도하지 않는 등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 환경부 원안에 동의함

제8절
교육·과학기술 및 문화 분야

1. 교육부

김 한 필 사무관
T 044-200-2442 E kimhanpil@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 9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3건, 신설14건, 총 1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7건 중 15건은 원안의결, 1건은 개선권고, 1건은 철회권고로 의결하였음

교육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4-01-13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2)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4-05-29	철회권고 1	신설 1 (중요 1)
(3)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0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4-08-21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5)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심사 2014-12-30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 2)
계	-	**원안의결 15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신설 14, 강화 3 (중요 4, 비중요 13)**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교과용도서 가격사정 **강화**

- 현재 검·인정교과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가격 조정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출판사가 교육부장관의 가격 조정 권고를 따르도록 새롭게 의무 부과

심사결과 민간에서 제작·발행하는 검·인정교과서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경쟁제한적 성격의 규제이고, 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는바, 중요과제로 검토. 가격조정 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출판사의 가격결정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조정 권한을 인정하되, 이를 제33조제1항*의 단서 규정으로 두도록 하고, 피규제자인 출판사가 어떤 경우 가격조정이 이루어질 지 알 수 있도록,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 에 대한 기준을 각 호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①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

(2)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퇴직 후 취업제한 **신설**

- 고위공무원단 이상의 교육부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립대학 총장으로 취업 제한

심사결과 개정안은 퇴직한 교육부 고위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훈령의 적용범위 및 위임 근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중요규제로 검토하였으며, 행정사회분과위 심사중 자진철회

(3)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요건 **신설**

–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시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하도록 함

* 전문인력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평생교육사 등을 포함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등 전반적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심사결과 실질적 설치요건이 없어 시민사회단체 또는 언론기관은 누구나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어 일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기관의 난립으로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학습자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시설과 유사*한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기준을 따라 5명이상의 전문인력을 규정하여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 개발사업 관련

심사내용 평생교육시설 등록·신고·인가 사항의 변경 **신설**

– 시행령은 변경등록·변경신고·변경인가가 필요한 항목을 규정, 시행규칙은 변경등록 등에 사용될 서식 및 첨부서류 등 절차를 규정

심사결과 현재 시·도 교육청별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자체지침(업무편람 등)을 통해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명확한 업무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는바, 항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과도한 변경등록 등의 의무로 보이지 않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신설 7)

심사내용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범위 **신설**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범위*를 정함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사실상 해당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심사결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교육 조장과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범위를 정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학 예정자에게 입학 예정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수업)하는 것은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현행법령에도 위반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신설**

– 학교의 입학전형 준수 대상 학교 및 입학전형 반영금지 사항 등을 정함*

* 입학전형 반영 금지 대상 학교의 범위 구체화(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일부 자율고 등)

* 입학전형시 생활기록부에 작성되지 않는 활동 추가(학교 밖 야영, 모둠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

*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 제출

심사결과 특목고, 자사고 등은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 면접심사 등으로 상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어 선행학습과 이를 위한 사교육을 유발하므로 규제가 필요하며, 고비용의 취미활동, 사설기관 주최 활동 등은 현행 고교 입학전형에서도 반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추가비용 발생 없어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학 입학전형의 영향평가 **신설**

–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대학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심사결과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경우, 과중한 학습부담과 사교육비의 지출을 초래하기 때문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필요한 규제임. 또한, 대학의 입학전형이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대학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대학은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므로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학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은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보고·조사 등 **신설**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여부, 학교 및 대학 등의 입학전형에 관한 보고 및 조사에 대해 규정함

심사결과 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여부, 학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 및 영향평가에 대한 보고와 조사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초중등교육법 등 기존법령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수준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동 규제는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정 이행 및 보고 **신설**

– 「공교육정상화 촉진법」 제8조 내지 제10조* 위반시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학교 및 대학등)에 대해 위반사항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대한 이행 및 이행사실 보고의무 사항을 정함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학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 금지사항

심사결과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이 실효성을 갖도록 피규제기관의 이행 의무와 이행 사실에 대한 감독기관에의 보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항이며, 감독기관의 명령에 대한 이행 및 보고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 타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듯 일반적 수준의 지도 감독권에 해당하므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인 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원 징계 **신설**

– 교육관련기관이 교육부장관(또는 교육감)의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시, 관련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부장관(또는 교육감)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불이행할 경우 관련 교원을 징계의결 요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 동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이며, 명령 불이행에 따른 관련 교원 징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 제14조제2항의 내용을 위반의 경중을 나누어 구분하였으며,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등과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등 규제의 적정성 인정

심사내용 행정처분 **신설**

– 교육부장관(또는 교육감)의 시정·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할 경우, 교육관련기관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규정함*

*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과 감축·폐지, 모집 정지 등

심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부장관(또는 교육감)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불이행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동법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공교육정상화 촉진법 제1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 타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과 같은 수준의 처분기준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적정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함

(5)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선정한 검·인정도서 변경 시,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찬성요건 신설 **신설**

– 기선정된 검·인정도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함

심사결과 교과서 재선정에 따른 학교현장 혼란을 방지하고 교과서 적기 공급을 위해 기선정 검·인정도서 변경요건 명문화 및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재심의 사항은 당초 심의절차보다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 건은 학교장 자신이 결정한 사항을 스스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재심의 요건보다 강화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집행에 별도의 인력·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강화**

– 시행령 제10조 제1항(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등) 관련 별표1(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의 내용을 보완*함

* 교실 출입문 중간에 유리창 설치, 출입문 문턱 제거, 복도 등의 유리창 필름 부착 등 안전관리 기준 강화

* 외부창문 학생 추락 방지를 위해 창대 높이가 1.2m 이하인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매년 학교 내 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 보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는바, 학생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기존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강화 및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7)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강화**

- 학교의 장은 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수여된 모든 학위에 대해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명문화*

  * 학위수여 취소 대상이 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에서 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로 확대됨

심사결과 최근 학위논문 표절이나 대필, 학위장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사례들이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학에서의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는 상황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회 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것은 취소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에 규제의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함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신설**

-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주기, 대상, 절차등을 규정
  - ◦ **(점검주기)** 학교장 직접 실시는 매학기 前, 위탁 실시는 계약체결 前
  - ◦ **(점검사항)** 교육활동 내용 및 도구의 안전성,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등 안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점검·확인
  - ◦ **(보고의무)** 교육활동 실시 前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심사결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것 사항이며, 학교 밖 수련시설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많고,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교장에게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조치 의무 부과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학교장의 안전대책 점검주기, 점검사항 등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규제비용은

교육활동 점검·확인사항으로,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등이 아니므로 별도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8조의2제4항('14.5.14. 본조 신설)

(9)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요건 강화 **신설**

–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대학 설립에 관한 사항 심의 時 기존 심의내용*에 '국가교육정책, 학령인구, 사회적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는 내용 추가

* 교사(건물),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심사결과 대학의 무분별한 신설로 인해 부실대학의 남설 등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사회 정책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토록 한 심의요건 고려요소의 추가는 적정함, 규제개혁본위원회 결과 원안의결 함

심사내용 수익용기본재산 기준 상향 조정 **신설**

– 대학 설립 時 수익용기본재산 최소기준을 상향 조정*

* (현행) 대학 100억원, 전문대학 70억원, 대학원대학 40억원

* (개정) 대학 300억원, 전문대학 200억원, 대학원대학 100억원

심사결과 출연재산 기준의 상향조정을 통해 재정능력 갖춘 자가 학교를 설립·운영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 인정되고, 운영적자의 규모 등을 근거로 산정한 수익용기본재산 최소기준이 과도하다 보기 어려운바, 규제개혁본위원회 결과 원안의결 함

2. 미래창조과학부

노 용 환 사무관
T 044-200-2420 E nyhwan@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 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 30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1건, 강화 10건 등 총 4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1건 중 1건에 대해서 개선권고하고, 나머지 40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중요한 전기통신설비(고시) 개정안	제421회 예비심사 (2014.5.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전자파 보호기준 개정안	제422회 예비심사 (2014.5.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전자파 장해 방지기준 개정안	제422회 예비심사 (2014.5.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423회 예비심사 (2014.6.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제482회 경제분과 (2014.6.13)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6)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429회 예비심사 (2014.7.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432회 예비심사 (2014.8.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483회 경제분과 (2014.8.22)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9)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제정안	제436회 예비심사 (2014.9.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0)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436회 예비심사 (2014.9.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	제438회 예비심사 (2014.9.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38회 예비심사 (2014.9.1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3)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정안	제334회 본회의 (2014.9.24)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14)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 제정안	제335회 본회의 (2014.10.10)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15)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443회 예비심사 (2014.10.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443회 예비심사 (2014.10.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제443회 예비심사 (2014.10.2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8)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	제443회 예비심사 (2014.10.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9)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제443회 예비심사 (2014.10.2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0) 기술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443회 예비심사 (2014.10.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443회 예비심사 (2014.10.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445회 예비심사 (2014.1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3)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447회 예비심사 (2014.11.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4)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안	제447회 예비심사 (2014.11.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제447회 예비심사 (2014.11.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48회 예비심사 (2014.11.28)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7)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및 가입금액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제448회 예비심사 (2014.11.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8)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51회 예비심사 (2014.12.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9)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	제452회 예비심사 (2014.12.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0)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제452회 예비심사 (2014.12.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40 개선권고 1**	**신설 31, 강화 10 (중요 4, 비중요 37)**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중요한 전기통신설비(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기간통신사업자*가 미래부장관에게 설치·변경을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 추가하도록 규정 **강화**

* 기간통신사업자 :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을 송·수신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사업자 (KT, LGU+, SK브로드밴드 등)

심사결과 국가차원의 관리가 요구되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에 대해 설치·변경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통신설비의 교체·폐기·매각 등의 현황을 관리하여 통신망 장애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는 등 중요한 통신설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판단되고, 전체 기간통신사업자 중 국가적으로 중요한 통신설비를 갖춘 일부 기간통신사업자(KT 등 7개사)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경과규정을 두어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 전자파 보호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벨트컨베이어 시스템 등 가변속 전력구동기기*가 다른 기기의 전자파로 인해 오작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주파 대역에 대한 전자파 보호 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의 고주파 대역에 대한 기준은 세분화하여 규정 **신설**

* 전동기의 전력, 속도 등을 제어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기

심사결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IEC 61800-3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가변속 전력구동기기의 내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동 규제에 따라 해당 기기 제조업체는 1차적으로 시험비용이 다소 증가하나 국내-국제표준 불일치에 따른 중복시험 문제를 해결하여 제품 수출 시 해외기관 시험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 전자파 장해 방지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벨트컨베이어 시스템 등 가변속 전력구동기기*가 다른 기기의 전자파로 인해 오작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주파 대역에 대한 전자파 장해 방지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의 고주파 대역에 대한 기준은 세분화하여 규정 **신설**

* 전동기의 전력, 속도 등을 제어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기

심사결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IEC 61800-3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가변속 전력구동기기의 내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동 규제에 따라 해당 기기 제조업체는 1차적으로 시험비용이 다소 증가하나 국내-국제표준 불일치에 따른 중복시험 문제를 해결하여 제품 수출 시 해외기관 시험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기타 연구기관 등이 상위법에서 동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동일한 명칭 사용시 300만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동일 명칭 사용에 따른 혼돈을 방지하고 연구기관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과태료 금액은 적정 수준하고 유사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비교 시에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5)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자녀·배우자에 대한 지정승계 폐지하고,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에게 부여하는 추천국장제도를 폐지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지정승계제도 및 추천국장제도는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사유재산 투입 유인이 되었으나, '92년 이후 20여년간 국가가 인건비 등을 부담하여 사유재산 투입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피지정인에 대한 신뢰보호가 충분히 고려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의결함

(6)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상위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 사항을 고시에 위임함에 따라, 통계의 작성방법 및 서식·제출방법·보고기한 등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통계보고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고시로서 사업자가 실제 제출가능한 통계종류 및 기한을 명시하고 현재 사업자가 제출중인 통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통계보고 절차상 사업자 부담 경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7)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상위법에서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발주자가 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로 기준 설정 **신설**

심사결과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적정성 심사 기준이 되는 금액(82%)은 하도급자의 실제 공사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준으로서 실제 공사원가 분석 및 업체 조사에 근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상위법에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에 대해 차별적 지원금의 유형 및 기준을 규정(가입유형·거주지·나이·신체적 조건을 사유로 동일 공시 기간 내 동일 단말기에 대해서는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또는 지급 제안 금지,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은 요금수준·요금제별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도록 함) 신설

* 단말기 구매가 할인, 현금지급 등 단말기 구입비 지원을 위해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

심사결과 상위법인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는 단말기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위주 경쟁에서 요금과 서비스 위주 경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인 바, 가입유형은 요금제와 달리 각 유형간 기업의 기대수익의 차이가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토록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동일 공시기간 내 동일 단말기에 대한 서로 다른 지원금 지급을 부당한 차별로 규정한 기준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되, 향후 단말기 유통시장 여건 변화 및 제도운영 경과 등에 따른 기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규제에 대한 재검토형 일몰(3년) 설정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이통사·제조사가 미래부장관·방통위에 제출할 자료의 구체적 항목 규정(매월 종료후 45일 이내 제출하며 제출일로부터 3년간 보존) 신설

심사결과 단말기 지원금 관련 현황 파악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이통사·제조사의 의무를 정하고 있고 제출·보존 자료의 항목 및 기한은 단말기 유통질서 현황파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9)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상위법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이통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통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통서비스 정액제요금의 24개월 약정이 적용된 금액에 기준요금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일 것, 적용대상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하되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요금할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요금할인의 주체가 이통사임을 고려하여 지원금 중 이통사 재원만을 할인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지원금은 약정기간 동안 가입자에게 얻을 기대수익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기준요금할인율은 적정한 기준으로 보이고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단말기를 요금할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0)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출업자")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분실도난 조회 신청서 등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수출을 위해 협회가 발급한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동 규제로 수출업자는 단말기의 분실도난 여부 확인시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분실도난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중고단말기 수출업체 등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음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1)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을 상향 또는 신설(법위반 서신송달 위탁시 그 차익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늘려 부과) **신설**

심사결과 상위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 및 추가적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비교시에도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2)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상위법에서 서신송달업자에 대해 사업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요건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 **신설**

심사결과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사업개선명령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서, 변경사항 미신고 및 취약한 작업시설 등에 따른 서신송달업 이용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고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에도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위법에서 서신송달업의 영업소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 및 절차 등을 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 **신설**

심사결과 서신송달업자의 위반행위 제재를 위해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3)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상위법에서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기준은 요금수준, 요금제별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 취지는 지원금 지급시 요금제에 따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금제 간 기대수익 차이를 반영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기준 및 예외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되, 향후 단말기 유통시장 여건 변화 및 제도운영 경과 등에 따른 기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규제에 대한 재검토형 일몰(3년) 설정을 부대권고

(14)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 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으려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래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제도는 정부지원 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나, 동 제정안에서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요건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개선권고하고, 하위법령 제정시 민간의 자율적 운영과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진작하기 위하여 신고요건 완화를 검토할 것과 향후 연구개발서비스업 여건 변화 및 제도운영 경과에 따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고제도에 대한 재검토형 일몰(3년) 설정을 권고

심사내용 연구기획평가사의 결격사유, 자격취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신설**

심사결과 연구개발서비스업법 제정에 따라 현재 이공계지원특별법의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제도를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연구기획평가사는 국가연구개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활용하는 자격제도이므로 응시제한, 자격정지 및 취소 등은 최소한의 규제이며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에도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연구개발서비스협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연구개발서비스협회가 수익사업을 통해 특정 회원사에 이득을 주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균형있는 사업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공정한 지원을 위해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는 미래부장관 인가를 받고 설립되어 공익법인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는바 동 규제 집행 또한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에게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신고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또는 각종 지원과 같은 수익적 행위의 신청시 신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신고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에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5)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상위법에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한도 증액시 미리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동의내용·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강화**

심사결과 이용자가 휴대폰 소액결제의 이용가능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내용 및 동의방법 모두 이용자 동의의사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규정되었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상위법에서 종업원·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신고 의무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자 정보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관련 사항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신고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를 부과함에 따른 것으로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7)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주파수 분배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무선마이크, 무선전화기 등)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제조자, 수입자 등)는 기자재 및 포장에 ①변경되는 주파수 대역 ②사용기간 ③지원센터를 표시하고 포장에는 사용자안내문을 넣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표시·고지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이용자가 비면허무선기기를 구입·대여하는 경우 사용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규정한 것이며, 비면허무선기기 판매·수입자는 안내문 표시(스티커 부착 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그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이용자 지원 및 주파수 분배변경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이라는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무선국 설치장소가 자동차, 선박 등 이동체인 경우 미래부장관은 이동체의 소유자가 무선국의 시설자와 동일함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소유자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무선국 허가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으로서 무선국 시설자와 무선설비가 설치되는 이동체의 소유자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서류는 신청자의 별도제출 없이 원칙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등 무선국 시설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8)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이동통신시장이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터넷망 상호접속 범위에 무선인터넷망을 포함하고, 사업자간 주고 받는 접속통신료의 정산방식을 용량기반 정산방식에서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정산방식으로 변경하고 동일 계위간 무정산을 상호정산으로 변경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종전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무선인터넷망을 포함한 접속범위 확대에 따라 통신망의 안정성 제고가 가능하며 접속통신료를 사전에 계약된 최대 수용량이 아닌 네트워크 사용량에 비례하여 정산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9)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번호에 관한 약관을 변경한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우편 또는 모사전송·전자우편·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인터넷 홈페이지·방송자막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이용자 통지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그 통지방법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한 것은 이용자에게 채널번호 약관변경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에도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채널번호 약관 변경시 해당 가입자에게 자율적으로 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채널번호에 관한 약관변경 통지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고, 채널에 관한 약관변경 재통지 명령 위반시 업무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유료방송사업자는 상위법상 약관 신설뿐만 아니라 그 변경시에도 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이용자의 알 권리 보호 및 사업자의 이행의무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규정되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음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0) 기술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상위법에서 기술사 자격의 등록 및 갱신등록이 취소된 자가 자격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규정 **강화**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타 위반행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태료 부과액을 규정하고 있고, 유사 입법례와 비교 시에도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상위법에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별로 차등부과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조정가능하도록 하여 부가금 수준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할 때에도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매출액의 1%→2%)하여 규정 **강화**

심사결과 현행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상향되어 사업자 부담이 증가하나,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과징금 수준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에 대한 사후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징수강화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으며, 통신사업자의 규모·사업정지 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차등하여 부과율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3)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주파수 분배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등 표시사항을 기자재 전면 및 그 포장·홍보물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고, 이용자 안내문을 별도로 동봉하도록 하고, 판매·대여하는 자는 기자재를 구매하거나 대여 받은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두로 설명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이용자에게 구매기기에 대한 사용정보 등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수단으로 표시하게 한 것으로서, 표시사항 부착과 별도 안내문 동봉을 위해 사업자에게 일부 비용이 발생하나 안내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예방 편익(분쟁비용 등)이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전자상거래 등 구두설명이 어려운 경우 게시의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재검토 일몰(3년)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4)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과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거나 하도급 심사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저가하도급 수급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법령상 하도급 낙찰비율(82%)에 미달한 수급자(원도급자)에게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및 하수급인의 수행능력을 심사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전체 정보통신 공사에서 하도급 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고 이 중 심사대상인 낙찰비율(82%)에 미치지 못하는 공사는 더욱 작아 적용대상자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하수급인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변경 요구기준인 90점 설정 기준이 과하지 않아 업체간 진입 제약의 우려가 거의 없으며, 건설분야의 저가 하도급 방지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의 유사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5)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클래식·국악 등 전문 음악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의 표준음량은 평균 음량을 −24 LKF(허용오차 ±2dB)로 규정 **신설**

심사결과 비표준화 된 현 디지털 TV 방송 음량에 대해 그 기준을 표준화한 것으로, 동 기준안은 ITU 국제권고 기준으로 세계적 음량기준에 부합되는 점, 동 기준안 준수로 인한 기업 부담비용이 없는 점, 이해당사자들의 조정을 거쳐 이견이 없고 재검토 일몰(3년)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5)

심사내용 현재 임의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임의적 운영에서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의무적 운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연구실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되고 있어 의무화를 통해 연구원의 생명·안전을 예방 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학 연구실 연구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상 사각지대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과 비치방식,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신설**

심사결과 물질안전보건 자료 비치 및 관련 교육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연구실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물질안전자료를 비치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물질안전자료 비치와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유사 입법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 이행현황 서류의 기록과 보존을 의무화하고, 기록보존 대상 서류 및 보존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물질안전교육자료 비치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파악 등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기록과 보존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전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유사 입법례가 있고 이해관계자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 관련자들의 각종 법위반행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시정명령 및 지시 근거 규정 마련 **신설**

심사결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근거와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시정명령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 등 이 법 준수사항에 대한 사후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 위반사항을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나열함으로써 시정명령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어 자의적인 집행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사용하지 않거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추가하여 규정 **신설**

심사결과 안전관련 예산 미편성 및 용도사용 위반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서 추가된 과태료 부과사항은 안전예산 확보나 시정명령 이행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안전예산 확보의 경우 실제 전체 연구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 연구주체의 부담이 적고 안전예산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사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7)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및 가입금액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미래부 장관의 임시허가를 받아 선불로 신규 정보통신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자의 전년도 순자산 규모·매출액·예상이용요금총액을 고려하여 가입금액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나 잠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규모·매출액 등을 법령상 고려요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마련하였고, 불확실한 장래의 시장상황을 예측하여 마련 된 기준금액인 만큼 시행 후 적용상 발생될 수 있는 특수상황에 대비해 필요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재검토 일몰(2년)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8)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공인인증서 온라인 (재)발급을 가입자가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신원확인 방법으로 현행 인증방법 외에 추가인증을 도입 **강화**

심사결과 현행보다 온라인을 통한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어서 소비자 이용불편이 예상되나,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기존 인증방법만으로는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금융사기피해를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고, 피해예방 편익이 크다고 판단되고 공인인증서 이용기관(은행 등)이 추가인증(SMS, ARS 등)의 수단을 이미 제공하고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9)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주요 시설설비의 안전운영을 위한 절차·매뉴얼 마련 및 설비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안전성 검토 실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와 정전·화재 기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업무기능 중단없이 수행하기 위한 업무연속성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건물외부로부터 발생한 화재 예방을 위해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준)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함 **강화**

심사결과 집적정보통신시설이 재해·재난 발생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 될 경우 국가·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 및 피해가 크게 미치는 만큼 현 보호지침에 미흡한 제도사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물리적 보호조치 강화나 시설 변경 시 안전성 점검 등을 위한 조치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나, 절차·매뉴얼 마련 등에 따른 기업부담은 크지 않고 신설 된 외벽마감 기준도 현재 운영 중인 IDC가 모두 충족하고 있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0)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중요 통신국사간에는 방송통신회선 이상 발생 시 다른 전송로를 통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분산 수용 규정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전체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 일정 수준의 통신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트래픽 분산 관련규정 의무사항 신설 **강화**

심사결과 중요 통신설비의 피해발생 시 국가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분산수용·트래픽분산·응급복구를 위한 통신사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미 대부분의 통신국사가 이에 대해 적용하고 있어 추가 비용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임차국사의 내진적용은 통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6개월)을 두는 한편 재검토 일몰(3년)을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 문화체육관광부

이 성 용 사무관
T 044-200-2445 E leesy@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지침 제정안,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고시)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등 1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2건, 강화 13건 등 총 3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5건 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3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제407회 예비심사 (2014.0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제407회 예비심사 (2014.0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지침 제정안	제408회 예비심사 (2014.02.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제411회 예비심사 (2014.03.1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제422회 예비심사 (2014.5.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제423회 예비심사 (2014.6.5)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424회 예비심사 (2014.6.12)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8)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제424회 예비심사 (2014.6.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424회 예비심사 (2014.6.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제509회 행정사회분과위 심사 (2014.7.28)	개선권고 2	강화 2 (중요 2)
(11)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33회 예비심사 (2014.8.14)	원안의결 5	신설 1, 강화 4 (비중요 5)
(12)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고시) 개정안	제435회 예비심사 (2014.8.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제442회 예비심사 (2014.10.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제447회 예비심사 (2014.11.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48회 예비심사 (2014.12.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450회 예비심사 (2014.12.1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50회 예비심사 (2014.12.1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33 개선권고 2**	**신설 22, 강화 13 (중요 2, 비중요 33)**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2014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을 고시 **강화**

심사결과 개정안은 저작권법 제25조의 위임근거에 따라 보상금 세부기준을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보상금 지급개선 연구'('09.11) 결과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6.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도 보상금 세부기준을 '13년도 대비 6.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총 보상금 규모는 약 19억 25백만원(전년 대비 약 1억 25백만원 증가), 대상자는 17천명 수준이므로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고등교육법」상 학교 등에서 수업 목적상 필요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보상금 기준 완화 **신설**

심사결과 개정안은 저작권법 제25조의 위임근거에 따라 보상금 세부기준을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 입회하에 이용자(대학협의체)와 보상금 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간 합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총 보상금 규모는 약 33억원, 대상자는 17천명 수준이며, 1개 대학 당 평균 7백만원의 비용부담이 예상되므로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지침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를 위해 지정된 특별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자선정', '특구개발사업실시계획수립' 및 조성토지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본 지침은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직·간접 시설 및 여건 조성을 위해 민간의 활발한 개발사업참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종 부담금 감면, 인·허가 의제 등 혜택과 함께 민간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이고, 지침상 절차와 조성원가

산정 방법 등은 유사 법령 및 지침과 비교시 동일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4)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를 정기조사(3년 주기)와 수시조사(특정분야 또는 사안)로 구분, 조사범위는 성별·나이 등 일반적 특성, 소득 등 경제상태, 취업상태 등 직업실태,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보험가입실태 등, 실태조사시 문체부가 예술인과 계약한 법인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액수를 위반차수(1~3차)에 따라 100만원~300만원으로 함 **신설**

심사결과 동 실태조사 규정은 문체부가 '88년부터 시행중인 국가승인통계인 '문화예술인실태조사'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 기존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통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정하고, 실태조사 범위도 예술인의 성별, 나이, 소득수준, 취업상태, 4대보험 가입상태 등 예술인의 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타 실태조사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으며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액수에 있어서도 유사입법례를 감안하면 적정한 수준이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기실시 중인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마련조항이므로 추가적인 비용부담도 없어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계약강요, 수익배부 거부 등, 예술창작활동 방해, 정보의 부당이용), 과태료 액수를 위반차수(1~3차)에 따라 금지행위시정명령 위반시 300만원~500만원, 금지행위 관련 자료요구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200만원~400만원 **신설**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관련 과태료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은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그 취지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입법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유사하고 문화예술기획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유형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규제의 명확성도 유지되었으며, 금지행위관련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액수도 다른 부과기준과의 비교시 적절한 수준

이고 과태료액수는 유사입법례에서 벌칙(2년이하 징역 또는 1.5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예술인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상위법의 위임한도(500만원)내에서 최대수준으로 과태료를 부과(3회 위반시 500만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추가적 비용부담도 없어 원안의결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사재기를 통해 판매량을 올린 출판물의 경우 그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경우, 문체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그 행위에 사용된 전단, 팸플릿, 포스터 등에 대한 폐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사재기 등 출판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광고물 폐기 명령은 상위법 취지 및 위임범위 내에 있고, 출판사 등이 사재기를 하는 목적은 그 판매량을 홍보하여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적발시 과태료부과(현행 200만원)만으로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광고물 폐기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목적 달성가능성도 충분하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거짓·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 폐기 명령이 과도하지 않고 전단·팸플릿 등의 경우 수거 및 수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폐기가 더 적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사재기 등 간행물유통질서 위반 및 조치사례는 연간 10건 미만으로 규제순응비용은 미미한 반면, 양서를 믿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호 및 작가의 양서 저작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여 출판·유통·작가·소비자단체 및 업계대표 등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13.10.29)하는 등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

(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3, 강화 1)

심사내용 현행 시행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지도자자격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자격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통해 응시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도 인정되고, 신설 지정기준이 자격 관련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검정기관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며, 현재 자격검정기관 지정단체 모두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재지정 될 수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자격검정 필기·실기·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촉해야 함 **신설**

심사결과 현행 법령상 시험위원 위촉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시험위원의 자격기준이 미비한 상황으로, 검정기관이 자체 직원 등 충분한 자격이 없는 자를 시험위원에 위촉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여 시험위원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가기술자격법」에서도 자격이 있는 시험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체육지도자 자격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및 부당한 합격/불합격을 방지하여 자격검정기관, 응시자 및 소비자의 편익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관련 자격 보유자가 21만명에 달하므로 규제집행가능성이 충분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현행 시행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지도자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상위법개정에 따라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연수기관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상위법상 연수기관이 될 수 있는 대학,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정기준을 정하였으므로 위임범위 내에 있으며 지정기준을 신설하여 연수생에게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연수생 및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도 인정되고 현재 연수기관 지정단체 모두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재지정 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적정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심사내용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학력이론위주에서 지도경력실기위주로 전면 개편하면서 자격요건이 대체로 완화되나 일부 자격의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일부 자격이 신설되며, 자격요건 전체에 대해서는 3년 재검토일몰 설정 **강화**

심사결과 체육지도능력과 학력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체육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본질적 능력인 지도능력 위주로 제도가 개편되므로 규제신설강화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이 인정되고, 유사자격제도에서 현장에서의 지도경력을 최소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격요건 중 지도경력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일부 자격요건이 강화되지만(1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지도경력 1년→3년), 실제 응시자가 갖춘 자격이 개정안보다 대부분 상회하고 있고, 제도개편에 따라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기존 자격요건 충족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통해 모든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고, 연수과정이 개편되면서 응시자들의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신설자격(유소년·노인·장애인스포츠지도사)도 기존 유사자격의 자격요건과 동일한 자격요건 수준이며 자격신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유사자격자에게 각 대상자 (유소년·노인·장애인)에 대한 체육지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응시자의 전체 비용은 상당히 감소될 예정인 반면, 체육지도자의 지도능력 향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편익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검토 일몰을 설정하여 제도개편 이후 매 3년마다 제도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사회변화를 반영하도록 하였고, 제도개편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용하여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

(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6)

심사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한 자가 대표자, 사무소 및 상호가 변경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시 등록요건(경력 4년, 독립된 사무소)을 증명하기 위해, 종사경력 증빙서류 등을 제출 **신설**

심사결과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원칙에 따라, 고시에 직접적인 규제를 정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게임물 제공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부과를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회권고

심사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영업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와 등록증을 문체부에 제출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영업재개를 신고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위임범위 내에 있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신고서, 등록증)는 신고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자의 행정처분(등록취소, 영업정지)에 대한 세부기준을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정함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범위 내에 있고 상위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에 맞게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차등화하고 있으며 타 입법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고,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해 위반행위의 종별·정도에 따라 금액을 정하되,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고,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범위 내에 있고, 타 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과징금기준(등록위반 등 10만원, 성매매알선 등 15만원)으로 판단되며,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유형 및 위반 정도(1차~3차 등)에 따른 부과기준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범위 내에 있고 각 과태료 부과기준별로 타 입법례와 비교한 결과, 대체로 유사하거나 완화된 수준으로 판단되며,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시행령안 상 타 유형의 과태료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연 3시간(등록 이후 최초 교육은 10시간)으로 함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시기·시간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범위 내에 있고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책,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교육실시를 위해 연간 3시간은 필요최소한의 시간으로 판단되며 규제순응비용은 낮은 반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성 제고 및 대중문화예술인의 피해방지 등 사회적 편익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8)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문화지구 내에서 영업 및 시설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사행행위 및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범위 내에 있고 문화지구는 지역특화 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해 지정된 것으로, 영업제한 및 과태료 부과 없이는 문화지구의 특장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업종진입을 막을 수 없으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구 내의 용도 및 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 타 입법례에서는 동 위반사항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다루고 있고, 이보다 경미한 행정절차 위반(영업미신고 등)에 대해서는 통상 200~5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동 규제는 상당히 완화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9)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범위 내에 있고,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제도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0)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중 기존 자동차야영장업을 '야영장업'으로 변경 신설하고, 세부 업종을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 **강화**

심사결과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함

다. 야영장업

(1) (개정안과 같음)

(2) 자동차야영장업 : 야영장비 또는 시설 설치가 가능한 야영공간과 주차공간을 1개의 야영지에 하께 조성하고 야영·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심사내용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공통기준 및 세부업종별 개별기준(1개 야영지 규모 등)으로 나누어 규정, 기존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타 법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야영장에 대해,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에 불부합시도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허용 **강화**

심사결과 개정안 별표1을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함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개정안과 같음)

(나) (개정안과 같음)

(다) 안전장치 : 안전기구(전체 야영장에 긴급상황을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장비, 소화기 등), 안전 게시물, 관리요원, 대피공간 등을 갖출 것

(라) 입지, 시설, 안전장치, 안전관리, 위생 등과 관련하여 시설의 규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세부기준에 부합할 것

(11)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4)

심사내용 여행업자가 기획여행* 광고시 표시해야하는 사항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단계'를 추가 **신설**

심사결과 현행 법령에서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 체결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외여행의 특성상 여행에 임박한 계약 체결시 위험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여행일정을 포기하기 어려워 여행을 강행하게 되므로, -국민의 위험국가 및

지역 여행에 따른 위험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대안으로 현재 여권법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인 경우에만 여행금지 조치를 하는 것을 3단계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으나, 헌법상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외국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음, 기존 여행상품광고에 여행지 안정정보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매출 하락 우려가 있음, 다만, 풍선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서의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여행지 안전정보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것을 고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소비자보다 사업자가 여행지의 안전정보 및 현지 상황을 보다 정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동 조치가 사업자가 여행위험지역에 대한 상품기획·판매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점을 감안하여 불수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내용 관광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세부기준을 정함 **강화**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역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거짓·과장광고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논의과정에서 과태료가 아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입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동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소비자와의 계약과 다른 수준·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행자의 사전동의 없이 여행일정을 변경하거나,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와 비교할 수 있고 호텔등급을 다르게 표시·광고의 경우는 위 위반행위보다 소비자피해가 보다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현재 호텔등급(특1~2, 1~3급)결정 신청을 해야하는 호텔업자가 호텔등급결정 미신청시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함 **강화**

심사결과 동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행정처분기준완화(입법예고시 2차위반시 사업정지 1개월, 3차위반시 사업정지 2개월) 의견을 제출하여 문체부에서 그대로 수용하였고 문체부와 피규제자간 협의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진흥법상 타 행정처분 기준과 비교하여도 특별히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호텔업의 세부업종에 의료관광호텔업이 신설되었고, 호텔등급표지허위 표시·광고 및 호텔등급 미신청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위 사업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의료관광호텔업에 대해서는 타 호텔업의 과징금 부과기준 중 가장 낮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호텔등급표지 허위 표시·광고 및 호텔등급 미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강도가 비슷한 타 위반행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되, 세부업종에 따라 차등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함 **강화**

심사결과 호텔업 특성상 영업정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여 행정처분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관광진흥법상 행정처분기준에 비해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고, 호텔등급표지 허위 표시·광고 및 호텔등급 미신청에 대한 처벌은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시 당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동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해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수정통과된 점을 감안하여 입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동 시행령상 타 과징금 부과기준과 개정안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비교하여도 특별히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서 분양인원의 제한(1객실당 최소 5인 이상에게 분양)을 받지 않고 외국인에게 판매한 콘도에 대해서는, 내국인에게 전매시 공유자를 5인 이상으로 제한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토록 함 **강화**

심사결과 일반인이 대중적으로 사용가능한 '관광숙박시설'로서의 콘도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내국인에 대한 분양인원 제한에 따라 외국인의 내국인 전매를 일부 제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외국인 규제완화에 따라 발생하는 현행 법령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규제유지'로 볼 수 있음, 내국인 전매가 허용되어 대부분의 객실이 1인 분양화 될 경우 사실상 주거시설로 변질 운영되어 관광숙박시설로서의 영업이 곤란해지므로 타 분양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됨, 또한, 외국인, 법인, 5인 이상의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전매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됨,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며, 일부 거래지연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됨

(콘도 시설유지·관리비용 관련 사항 공개범위 확대) 현재 공유자·회원 대표기구가 아닌

일반회원에게는 객실요금 인상 관련 내용 등 전달이 의무화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일반회원도 객실요금 인상 내역 등을 인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음, 콘도 시설유지·관리비용 변경 협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유자·회원 전체에게 공개하기 위한 규제순응비용은 우편물 발송비 등 미미한 수준이나, 사업자에 대한 민원 및 소송 등 분쟁을 줄여 사업자의 관련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동 규제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음

(12)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고시)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신설하는 실내 타가다디스코의 허가전 안전성검사기준에 기기운행시 천정(승용물 바닥에서 2미터)과 벽면(회전승용물로부터 0.6미터)의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신설하는 에어바운스(공기막장치, 공기막연결장치)의 허가전/정기 안전성검사 기준에 이동식 풍속계 비치 및 지지구조물 등을 기존보다 보강하도록 추가 **신설**

심사결과 실내 타가다디스코 안전성기준관련 신규 실내 설치시에만 적용되며, 현재 운영 중인 기기도 대부분 동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천정(2m)·벽면(0.6m)과의 이격거리는 이용자의 신장, 운행방식 및 정비 등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으로 판단되며 에어바운스 안전성 기준관련 신규 설치(실내/실외)시에만 적용되고 실외 에어바운스에 이동식 풍량계(1기당 10만원) 비치 의무는 규제순응비용이 미미한 수준이며 지지구조물(기둥 등) 및 보조구조물(난간 등)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바운스의 일부분이며, 튜브 고무를 더 두껍게 하거나(지지구조물) 튜브 난간을 만드는 방식(보조구조물)으로 이루어 짐, 현재도 '허가전 안전성검사 공통기준'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이미 규정되어 있어 실제 검사를 하고 있으나, 개별기준에서 구체화하는 내용이므로 가격상승요인은 제한적이므로 원안의결

(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시 정가변경 2개월전 유통사업사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정가 변경사실(변경가격/적용일 등)을 공표하고, 정가 변경 1개월 전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정가 변경사실을 통지 **신설**

심사결과 문체부에서 정가변경절차를 위한 온라인 입력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출판업계의 연간균등 기업순비용은 456만원 수준으로 100억원 미만의 규제이고, 유사한 내용에 대해 2번의 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해 일부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으나, 유통사업자 등에 대한 정가변경 정보 공유(진흥원)와 국가서지정보관리(국립중앙도서관)라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문체부에서는 출판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흥원에 제출된 정가변경 정보를 출판업자를 대신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고지하도록 조치하여, 결과적으로 1번의 절차(진흥원 공표)만으로 정가변경절차가 끝나도록 함으로서 출판업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고 공표시점(정가변경 2개월 전)에 대해서는 정가변경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출판업계와 유통업계가 합의하여 정한 사항이므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14)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횟수 산정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통일, 카지노 사업자의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사업정지 10일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대상 확대 **강화**

심사결과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피규제자수는 총 17개 업체이며,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현행 행정인력활용 시 규제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카지노업은 형법이 금지한 도박개장행위를 '관광진흥', '외화획득' 등의 공익실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특허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특수한 분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외국도 카지노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허가, 영업활동, 준수사항 등에 대한 법·제도로써 강하게 통제하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사실상 규제완화에 해당되고, 이해관계자인 (사)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및 업계와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하여 마련된 안으로 별도 이견 없어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위원의 자격요건 마련 **신설**

심사결과 시행령 위임에 따라 자격검증 시험위원의 자격요건을 마련하는 것이며, 개정안에 따른 피규제자는 28,252명 수준이고, 비용편익측면에서 현재도 자격검증기관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며, 시험위원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참여하는 만큼 시험의 공정성 확보 등 편익은 클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시험위원의 자격요건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관계부처 협의가 되었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심사내용 문체부장관은 지정기관 지정 후 3년마다 지정기관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자격검정계획(연수계획) 등을 평가 **신설**

심사결과 법률위임에 따라 지정기관 평가의 세부사항(평가주기 및 평가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수는 55개 기관(자격검정기관 11, 연수기관 44) 수준이고, 지정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재지정하는 대신 지정요건 충족여부 등을 평가하여 시정권고 등을 하는 것으로 재지정에 비해 규제수준이 낮으며, 지정기관 평가주기 3년 및 평가내용(지정요건 충족여부 등)도 타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관계부처와 협의되었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정기관(자격검증기관 및 연수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운영시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신설**

심사결과 법률위임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수는 55개 기관(자격검정기관 11, 연수기관 44)이며,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으로 규제비용은 미발생하고, 위반행위 정도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항 등을 정하는 등 규제수준도 적정하며, 관계부처와 협의되었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스키장 안전시설기준에서 안전망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 시설기준이 없어 안전시설기준 구체화 **강화**

심사결과 피규제자수는 스키장 사업장 19개소이고, 기설치한 안전망, 안전매트 등이 기준에 부합시 추가비용발생은 없으며, 기준 미충족시 부분적 교체비용만 발생하고, 기존 스키장에서 부분적 교체 등에 따른 초기 규제비용은 스키장 1개소당 85백만원 수준으로 예상(5~10년 사용)되며, 스키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연간 1만명 수준)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이 있고, 스키장 사업자의 안전시설 설치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규제수준도 적정하며, 이해관계단체의 의견수렴 결과, 관계부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체육시설에서의 소화기설치, 피난안내도 부착 및 피난안내고지 등 체육시설업자의 공통 준수사항 추가, 스키장 및 수영장에 대한 안전위생기준 강화 **강화**

심사결과 피규제자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또는 신고된 전국 56,124개소이고, 이중 스키장은 19개, 수영장은 846개 수준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고 규제수준도 적정하며, 대표적 국민생활체육시설인 수영장의 수질오염 문제는 언론, 국정감사시 지속적으로 개선요구되고 있으며, 규제비용은 과도하지 않은 반면,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익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이해관계인의 이견수렴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호텔사업자의 신청등급 평가결과, 점수미달로 등급보류결정시 당초신청등급으로 재신청을 1회로 제한, 호텔등급 평가시 수수료 수준을 실비로 인상하고 구체적 기준은 고시로 위임 **강화**

심사결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호텔 등급신청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자가 당초신청한 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반복신청하여 등급결정을 회피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횟수 제한이 필요하고, 상향등급(예 : 4성 → 5성)신청에 대한 평가결과 점수미달로 보류결정시 이의신청을 거쳐 당초상향등급(5성)으로 신청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며, 등급평가 수수료는 구체적 기준은 고시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고시 규제심사시 검토예정이고,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결과 접수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심사내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에게 소화기 1조 이상 및 객실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의무 부과 **강화**

심사결과 피규제자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을 받은 587개 수준('13.12월말), 유사업종인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에서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별도 유예기간 설정없이 2005.11.5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법상 주택에 대해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 기존주택은 2017.2.4.부터 적용되므로, 2017.2.4. 이전 기존주택에서 도시민박업 영위하기 위하여 소화기 등 설치의무 마련이 필요하고, 신규설치비용은 소화기가 15,000원~23,000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10,000원~17,500원 정도 각각 소요되므로 미미한 수준이며,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결과 접수된 이견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4. 문화재청

이 성 용 사무관
T 044-200-2445 E leesy@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 5개의 법령의 신설 4건, 강화 10건 등 총 1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4건 중 1건은 철회권고, 1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문화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432회 예비심사 (2014.08.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36회 예비심사 (2014.09.0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1 (비중요 2)
(3)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436회 예비심사 (2014.09.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제446회 예비심사 (2014.11.17)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514회 행정사회분과위 (2014.11.17)	원안의결 5 철회권고 1	강화 6 (중요 1, 비중요 5)
계	–	**원안의결 13 철회권고 1**	**신설 4, 강화 10 (중요 1, 비중요 13)**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한국문화재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타 법령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위반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고 있으므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1)

심사내용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중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에 따른 유존지역을 해저와 하상외에 토지를 추가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법에서 매장문화재를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등으로 정의하므로, 발견신고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저와 하상 뿐만 아니라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 논리적이며 매장문화재법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하여 제정('11.2.5)된 법으로, 현재 운영상으로도 발견신고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에 '토지'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의 출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문가 입회조사에 참관하는 전문가중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조사요원 직접 고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조사기관을 통해서만 입회조사가 가능토록 함(조사결과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개인에 의한 입회조사는 현행대로 허용) **강화**

심사결과 위임범위내에 있고, 개인자격의 조사요원에 의한 입회조사시 매장문화재 출토여부를 거짓보고 또는 미보고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사례가 빈번하며, 입회조사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기록관리가 부실하여 입회조사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규제비용은 미미한 수준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

(3)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궁·능원 및 유적에서 관람 중지, 관련 물품 보관 또는 입장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에 텐트, 그늘막 등 야영용품 소지자 추가 **강화**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범위내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재 가치가 매우 높은 국가지정문화재(4대궁, 종묘, 조선왕릉 등)에서 야영용품사용으로 인해 문화재 관람질서가 훼손되고 다수의 관람객이 피해 방지가 필요하며,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없이 관람중지, 입장제한 또는 관련 물품 보관 등 필요최소한의 제재규정이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

(4)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신설 2, 강화 2)

심사내용 문화재매매업자가 영업양도나 합병시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는 규정마련 **신설**

심사결과 문화재매매업 양도·합병 규정은 문화재매매업 자격조건에 법인을 포함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이며, 양도·합병규정 마련으로 폐업·신규허가 등에 따른 불합리한 비용발생 방지하고, 문화재매매업자간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감안하여 변경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양도·합병 당사자 부담을 최소화하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등 유사입법례 다수가 있고,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매매업 양도·법인합병시 양도인의 행정처분을 양수인이 승계하는 규정마련 **신설**

심사결과 권리·의무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 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식품위생법 등 유사입법례가 다수이고,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폐업 등을 방지하며, 법률분쟁 방지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되고,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문화재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상호, 영업장소, 자격요건 임직원변경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변경신고하는 규정 마련 **강화**

심사결과 피규제자수는 문화재매매업자 949개소(124개 시·군·구) 수준으로 미미하고, 변경신고 절차가 없어 경미한 사항변경시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규제완화 측면) 및 행정낭비를 제거하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도 변경신고제도

운영(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 및 제55조)하고 있고,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법률개정안에서 신고등의 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의무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강화**

심사결과 피규제자수는 문화재매매업 949개(124개 시·군·구) 수준, 신고의무추가 등에 따른 것으로 신고의무 등 준수시 규제비용 미발생하고, 기존의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항목과 동등한 수준의 금액이므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6)

심사내용 문화재 수리시 종합공사시공업종으로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맡겨야 하는 문화재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 **강화**

- (현행)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리트구조이면서 건축면적 660㎡이상 또는 시설물 층수가 3층이상 시설물
- (개정)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리트구조인 시설물

심사결과 피규제자수가 문화재수리업만 보유한 업체 76개,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범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추가 발생비용은 없으나 문화재 수리의 품질향상 등 편익이 크며, 문화재수리업보유업체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나 문화재 부실수리 예방 특수구조 문화재 수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해당수리에 전문성 갖춘 업체참여가 필수적이고, 감사원 감사('14.2)에서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 등 문화재수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문화재수리현장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기준 강화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의 현장 배치기준 강화(업무범위 축소) **강화**

심사결과 피규제자는 문화재수리업자 192개사이며, 규제비용은 연간 최대 31억원~77.5억원이 발생하고, 수리현장에 배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1명 이상 배치가 원칙이며, 업체

편의를 위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중복배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규제강화(4개이하 → 3개이하) 측면은 미미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강화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문화재 수리공사의 대상, 규모 등에 따라 수리기술자의 경력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문화재 수리의 품질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며, 부처간 합의되어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리대상 문화재수리 범위 확대(지정문화재 : 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주변시설물 : 7억원이상 → 5억원 이상), 비상주 문화재감리원 1인이 감리할 문화재수리현장 수 축소(10개 이하 → 5개 이하) **강화**

심사결과 피규제자는 문화재수리업자 192개사이며, 문화재수리 발주처가 대부분 국가 등으로 민간에 대한 직접적 규제비용 발생은 없는 반면,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부실수리나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문화재 원형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편익이 매우 클 것이고, 의무감리 확대 및 비상주 감리원 현장배치 기준 강화(10개→5개)로 연간 최대 17.1명 추가 고용효과가 발생하며, 감사원 감사('14.2)에서도 문화재 수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감리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지적하고, 부처간 합의되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한 자를 보수교육대상자에 추가,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1년내* 보수교육 16시간 이수 **강화**

심사결과 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자격증 신규발급자에 대해 보수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체계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위임근거도 미약하므로 철회권고, 다만, 문화재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대여 등 방지를 위해 자격증 신규발급자에 대한 소양교육의 필요성은 있으므로 상위법 근거마련 등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

심사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자격정지) 신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자격정지) 강화 **강화**

심사결과 피규제자수는 문화재수리인력 9,500명중 활동중인 사람 2,500명 수준('14년)이며, 행정처분은 법적 준수의무 위반시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의 규제비용은 미발생하고, 문화재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 대여, 부실한 실측설계 등을 한 경우 법률위임범위내 처분기준을 강화하며 부처 및 이해관계단체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영업정지) 신설(실측설계도서를 부실작성하여 문화재를 훼손 : 영업정지 6개월~1년)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영업정지) 강화 **강화**

심사결과 피규제자수는 420개업체로 이와 관련된 문화재수리기술자중 활동중인 2,500여명('14년) 미만이고, 행정처분은 법적 준수의무 위반시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의 규제비용은 미발생하며, 문화재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 대여, 부실한 실측설계 등을 한 경우에 대해 법률위임범위내에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부처 및 이해관계단체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5. 원자력안전위원회

김 해 영 사무관
T 044-200-2447 E geneve2@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4개 법령 등에 대해 신설 5건, 강화 8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음
- 심사대상 13건에 대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및 고시 등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17.)	원안의결 10	신설 5, 강화 5 (비중요 10)
(3) 물리적 방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13**	**신설 5, 강화 8 (비중요 13)**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및 고시 등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방사능 재난대응시설의 확보 **강화**

- 현재 원전 반경 2㎞ 내에만 설치된 긴급 경보시설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3~5㎞)으로 확대 설치

심사결과 규제순응비용은 28.8억원~86.4억원 수준으로 100억원 미만의 규제이며, 피규제자는 기재부 지정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 한 곳으로 동 사안에 대한 별도 이견 없어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5, 강화 5)

심사내용 발전용 원자로 공급자 등 검사 **신설**

- 원안위가 실시하는 원전부품 등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검사의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함
-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제작·성능검증 관련 사항이 원안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이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제작·성능검증 관한 계약시 원안법 제15조의2에 따라 원안위에 신고한 계약 내용과 관련한 사항
-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설계자·제작자·성능검증기관 등이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 발견시 원안법 제15조의3에 따라 원안위에 보고한 사항 등

심사결과 동 규제는 원안법에서 대통령령에서 상세히 정하도록 위임한 원전부품 등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원안위의 검사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범위 내에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은 없으며, 원안법의 취지에 따른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심사내용 방사선관리자 선임 의무 **신설**

-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사업소별로 선임토록 하고, 안전관리자 변경·해임시 지체없이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함

심사결과 동 규제는 원안법상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며, 단지 표현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 규제 신설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은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심사내용 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신설**

– **(허가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방사선취급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종업원 중 보수교육이수 등 정상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근거법령	원자력안전법	기술사법
자격증 종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관리기술사
세부자격**	최근 3년 이내 자격 취득자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자 –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정지	기술사 등록 및 등록갱신한 자 – 미등록·미갱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업원 중 최근 3년 이내에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을 받은 자

심사결과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가진 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으므로 동 자격요건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으며, 이해관계자의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 (허가사용자) 동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사업자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음
(신고사용자)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음

** 입법예고안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사업소의 대표자가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삭제

심사내용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작업중단시 작업재개 요건 **신설**

– 발주자 등은 작업중단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 전후 대비표 등의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

심사결과 원안위에 제출하는 서류는 전후 대비표 등 발주자가 적정한 안전설비를 갖추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며, 제출서류의 양식자율화 및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개정된 원안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3,000만원)

심사결과 과태료 최대 부과액이 대폭 상향되었고, '99년 이후 부과기준이 변경되지 않은 점을 감안, 원안위는 부과기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원자력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경중, 위반에 따른 방사능 피폭량, 업종별 법규위반정도 등 업종특성을 반영한 부과기준을 도출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심사내용 원자로조종사 등 면허시험의 면제범위 및 기준 **강화**

- 원자로조종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자로의 운전제어 등 일부 필기시험 과목을 면제범위에서 제외

필기시험 면제범위 비교

면허종류	현행 면제 과목 (전부)	개정안 면제 과목 (일부)
원자로조종 감독자면허	1) 원자로이론 2) **원자로시설의 구조, 재료 및 설계** 3) **원자로의 운전제어** 4) 핵연료물질 등의 취급 및 관리 5) 방사선 안전관리 6) 원자력 관계 법령	1) 원자로이론 2) 핵연료물질 등의 취급 및 관리 3) 방사선 안전관리 4) 원자력 관계 법령
원자로 조종사면허	1) 원자로이론 2) **원자로시설의 구조** 3) **원자로의 운전제어** 4) 방사선 안전관리 5) 원자력 관계 법령 (핵연료주기시설과 핵물질사용 관계 법령은 제외한다)	1) 원자로이론 2) 방사선 안전관리 3) 원자력 관계 법령 (핵연료주기시설과 핵물질사용 관계 법령은 제외한다)

심사결과 응시 수수료는 현재 필기시험·실기시험 구분 없이 응시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경쟁제한적인 요소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심사내용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에 대한 교육·훈련의무 **강화**

-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에서 분리·강화하여 실시하되,
- 교육내용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장교육*에 대해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 '직장교육'의 이수의무는 삭제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시간 변경사항

구분		기본교육	직장교육
허가 사용자	일반분야	3 → 5시간 (2시간 증가)	3 → 0시간 (3시간 감소)
	방사선투과 검사분야	5 → 8시간 (3시간 증가)	5 → 0시간 (5시간 감소)
신고 사용자	일반분야	0 → 5시간 (5시간 증가)	해당없음
	방사선투과 검사분야	해당없음	해당없음

심사결과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시간 증가 및 직장교육 면제에 따른 종합적 규제순응비용은 약 6억원으로 100억원 미만의 규제에 해당하며 원안위에서는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자의 직장교육 면제를 일부 수용하여 개정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심사내용 허가 등 취소 **강화**

– 과징금 부과기준이 5천만원→50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개정된 원안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각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조정
(150만원 ~ 3,500만원 → 1,500만원 ~ 50억원)

심사결과 과징금 최대 부과액이 대폭 상향되었고, '99년 이후 부과기준이 변경되지 않은 점을 감안, 원안위는 부과기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원자력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경중, 위반에 따른 방사능 피폭량, 업종별 법규위반정도 등 업종특성을 반영한 부과기준을 도출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심사내용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 **강화**

–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 후 변경사항 중 신고로 갈음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 축소

경미한 사항 변경사항

축소 대상	구분	현 행	개 정 안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신고 사항	• 사고분석 및 기술지침을 제외한 모든 변경사항	•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정부 직제변경,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 조직변경, 행정구역 변경, 오·탈자 수정, 관련 서류 간의 불일치 사항, 변경의 근거가 분명한 개정사항
	신고 기한	변경 후 6개월 이내	변경 후 6개월 이내

품질보증 계획서	신고 사항	•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을 제외한 모든 변경사항	• 정부 직제변경,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 조직 변경, 행정구역 변경, 오·탈자 수정, 관련 서류 간의 불일치 사항, 변경의 근거가 분명한 개정사항
	신고 기한	변경 후 20일 이내	변경 후 6개월 이내

*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 원자로시설의 부지 특성, 원자로 설계기준 적합여부, 핵분열생성물의 제거,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포함

* 품질보증계획서 : 원자로 품질보증계획, 설계관리, 도면, 검사 및 시험, 감사 등 포함

심사결과 동 사안은 IAEA의 권고기준에 맞추어 '경미한 사항'을 축소하는 것으로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유일한 피규제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대부분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 조정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안전관련설비 외의 설비변경은 신고로 갈음 : 수용
품질보증 조직을 제외한 일반조직 변경사항은 신고로 갈음 : 수용

심사내용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강화**

– **(경미한 신고사항 축소)** 발전용원자로의 운영허가 후 변경사항 중 신고로 갈음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 축소

경미한 사항 변경사항

축소 대상	현 행	개 정 안
품질보증 계획서	•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을 제외한 모든 변경사항 • 정부 직제변경, 행정구역 변경, 오·탈자 수정, 관련 서류 간의 불일치 사항, 변경의 근거가 분명한 개정사항	• 정부 직제변경,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 조직 변경, 행정구역 변경, 오·탈자 수정, 관련 서류 간의 불일치 사항, 변경의 근거가 분명한 개정사항
운영기술 지침서	•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시설 순시점검, 비상시 운전원 조치사항 등) 변경사항 • 정부 직제변경, 행정구역 변경, 오·탈자 수정, 관련 서류 간의 불일치 사항, 변경의 근거가 분명한 개정사항	•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정부 직제변경,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 조직 변경, 행정구역 변경, 오·탈자 수정, 관련 서류 간의 불일치 사항, 변경의 근거가 분명한 개정사항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 사고분석 및 기술지침을 제외한 모든 변경사항 • 정부 직제변경, 행정구역 변경, 오·탈자 수정, 관련 서류 간의 불일치 사항, 변경의 근거가 분명한 개정사항	•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정부 직제변경,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 조직 변경, 행정구역 변경, 오·탈자 수정, 관련 서류 간의 불일치 사항, 변경의 근거가 분명한 개정사항

* 품질보증계획서 : 원자로 품질보증계획, 설계관리, 도면, 검사 및 시험, 감사 등 포함
* 운영기술지침서 : 원자로 시설의 운전, 방사성물질 등의 관리 등 포함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 원자로시설의 부지 특성, 원자로 설계기준 적합여부, 핵분열생성물의 제거,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포함

– **(주기적 안전성 평가 항목 확대)** IAEA 기준에 맞춰 주기적 안전성 평가 항목을 11개에서 14개로 확대

주기적 안전성 평가 항목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안
1. 원자로시설 평가 당시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1.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사항(수정)
2. 안전성 분석에 관한 사항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수정)
3.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3. (좌 동)
4.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4. (좌 동)
5.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5. (좌 동)
6.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좌 동)
7.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7. (좌 동)
8. 조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8.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수정)
9. 인적 요소에 관한 사항	9. (좌 동)
10.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0. (좌 동)
11.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11. (좌 동)
	12.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13.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14.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심사결과 '경미한 사항 축소' 및 '항목 확대'는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유일한 피규제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대부분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주기적 안전성 평가 항목을 확대하는 경우 연간 약 5.36억원의 규제순응비용이 발생하여 100억원 미만의 규제에 해당하므로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3) 물리적 방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물리적 방호 교육 및 훈련 **강화**

-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등의 물리적 방호훈련을 (기존) 전체훈련 연1회에서 (개정안) 전체훈련 연1회 + 부분훈련 연2회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

심사결과 규제순응비용은 약 28백만원~65백만원* 수준으로 100억원 미만의 규제강화에 해당하며, 경쟁제한적이거나 중소기업에 불리한 규제도 아니고 이해관계자 별도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 400명(참여인원) × 3시간(훈련시간) × 2회(훈련횟수) × 11,874~26,890원(참여자 시간당 임금, 참여 직종별 최저 평균임금~최고 평균임금)

(4)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강화**

-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가 방사선투과검사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
- **(안전한 작업환경)** 방사선장해방지 조치에 적합한 전용사용시설 또는 차폐물 등 제공, 용역계약이 안전관리계획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등
- **(발주자 제공 안전설비의 기술기준)** 방사선투과검사 안전설비(전용작업장, 차폐시설 및 차폐물 등)에 대해 동일한 방사선원 사용시설 기술기준을 준용
- **(일일작업량의 보고대상 및 방법)** 작업기간을 1개월 이상 발주한 발주자는 총 작업량(최초 1회 보고) 및 방사선투과검사작업자의 일일 작업시간·작업량 등(매월 보고)을 원안위에 온라인 보고 등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및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동 규칙 개정으로 추가발생하는 비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방사선투과검사시 사용하는 방사선원과 동일한 방사선원을 사용하는 타 시설의 방사선 차폐 기술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적정하고, 입법취지와 방사선투과검사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일일작업량의 보고대상(1개월 이상 발주자) 및 보고주기(매월)를 제한하여 온라인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1. 보건복지부

김 한 필 사무관
T 044-200-2442 E kimhanpil@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정안,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24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22건, 신설28건, 총 5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0건 중 49건은 원안의결, 1건은 철회로 의결하였음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4-02-24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2)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심사 2014-04-10	철회의결 1	신설 1 (중요 1)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5-0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5-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0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4-06-05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8)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1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4-06-16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10)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4-07-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14-07-24	원안의결 8	신설 8 (비중요 8)
(1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0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9-04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비중요 5)
(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심사 2014-09-16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 2)
(18)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1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4-12-01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비중요 5)
(23) 모자보건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4-12-16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4-12-16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계	–	**원안의결 49 철회의결 1**	**신설 28, 강화 22 (중요 6, 비중요 44)**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 **신설**

- ㉠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12시부터 18시에 실시하되,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같은 보육과정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등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 2/3 동의를 받아 특별활동 실시 가능
- ㉡ 보호자 동의 없이 특별활동실시 : 1차(운영정지 1개월), 2차(운영정지 2개월), 3차(운영정지 3개월)

심사결과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부담경감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실시대상연령과 실시시간을 한정하고 특별활동 규정 위반 시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행정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행 지침으로 시행하는 특별활동의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고, 이해단체와 협의된 사항으로 법률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적정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아동학대 행위자 예방교육 **신설**

- 아동학대행위자*가 결격사유 해당기간 만료 후 어린이집 설치·운영 또는 근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위임사항인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과목 및 이수시간 등 구체적 사항 마련(아동권리의 이해 등 4과목 40시간)

심사결과 아동학대자 교육명령제 시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연구용역 2013.11.~2014.2.) 근거법률(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의 시행시기(2014.2.14.)에 시행이 불가하므로 충분한 분석과 준비를 거친 후 시행이 필요한 시점에 개정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요과제로 검토.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법제처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수요는 교육명령제도 시행일부터 발생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원안 동의 하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명령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교육과목, 교육내용 및 교육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부대권고함

(2)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구급차의 운행연한(年限)을 9년으로 제한(2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최초 통보·신고·허가되는 구급차의 차령(車齡)은 3년 미만으로 규정 **신설**

심사결과 운행연한 및 차령제한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형태·표시·내부장치" 및 "시설"을 포괄적으로 보더라도 위임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예측 가능한 사항도 아니며 운행연한 및 차령제한은 형태·표시·내부장치 보다 중요한 사항으로서 "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사례인 택시·버스 등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의 경우 차령제한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자진철회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강화**

– 목욕장업 업소 내 발한실 뿐 아니라 편의시설·휴식실도 밀실 형태로 구획하는 것을 금지

심사결과 성매매 단속이 강화될수록 찜질방·목욕탕 등에서의 신종·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며, 목욕업소의 시설 중 특성상 반드시 밀실로 구획할 수밖에 없는 공간(목욕실, 탈의실)은 밀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적정성 인정. 한편,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기준 및 방법 **강화**

– 기존 숙박영업자에 대한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에 대하여 게시한 숙박 요금을 준수하도록 규정*

*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분

심사결과 현행은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게시된 숙박요금 미준수 시에도 처분 불가능,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 필요성이 인정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강화**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지정기간(3년) 중에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
- 중환자실에 전속하는 전담전문의 배치 의무 부과
- 의원 중점 외래환자 구성 비율 기준(외래환자의 17% 이하) 추가

심사결과 상급종합병원 지정시에만 기준을 만족하고, 지정 후에는 미준수해도 제재가 불가능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상급종합병원의 본래 기능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의무 부과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급종합병원은 경증·만성질환 보다 중증질환에 집중해야 함에도 경증·만성 질환의 비율이 상당하여, 개선이 필요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의료법)임에도 본래 기능 수행 미흡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5)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소득·재산의 변동신고 **신설**

-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는 근로상태 변동, 사업형태 변동, 재산 취득 또는 처분, 사업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의 발생 또는 소멸, 공적이전소득 수급권 취득 또는 소멸 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심사결과 성매매 단속이 강화될수록 찜질방·목욕탕 등에서의 신종·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며, 목욕업소의 시설 중 특성상 반드시 밀실로 구획할 수밖에 없는 공간(목욕실, 탈의실)은 밀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적정성 인정. 한편,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방해 기피하는 경우 위반 횟수(1~3차)에 따라 6만원, 12만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1~3차)에 따라 3만원, 6만원,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 종전 규정의 경우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해 지자체 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임의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이 경우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지자체마다 기준을 달리 규정·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에 위임의 근거가 있고(법 제27조제3항), 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과태료를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한 점,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달리 정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어,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6)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지급정지 **강화**

– ㉠「기초연금법」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천재지변 등으로 행방불명되거나 실종으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안 제18조 제1항), ㉡「기초연금법」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를 말함(안 제18조 제2항)

심사결과 연금액 증액(9.9만원 → 최대 20만원)에 따라 기초연금제도 운영을 위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수급자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정은 기초연금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동의함

심사내용 소득·재산의 변동신고 **강화**

– 「기초연금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신고해야 하는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의 세부 내용*

* 근로소득의 증가·감소, 사업소득의 증가·감소, 이자소득·연금소득·공적이전소득 수급권의 발생 또는 소멸, 재산의 취득·처분

심사결과 「기초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사유*를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보충해주는 사항으로, 기초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규제로 판단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 지급 정지 사유 소멸, 수급권 상실 사유 발생, 소득·재산의 변동, 결혼·이혼·배우자 사망 등

심사내용 과태료 **강화**

–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방해 기피하는 경우, 위반 횟수(1~3차)에 따라 6만원, 12만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1~3차)에 따라 3만원, 6만원,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 과태료 부과 규정은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 자료 제출 의무 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사항인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신설**

– 실종아동 등 신고시 신속한 조치를 규정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신설에 따라, 실종발생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정함*

- (1만㎡ 이상)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축제장,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 (5천㎡ 이상) 버스·공항·항만터미널
- (관람석 5천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 (관람석 1천석 이상) 공연장
- (규모 미고려) 경마장, 경륜·경정장

심사결과 실종사건은 조기발견을 위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나, 다수 시설은 정확한 행동지침 없이 현장근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 체계적 수색활동이 미흡하므로,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노력을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며, 2013. 2월 실종아동등 보호 지원법 의원발의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시설 규모와 종류에 비하여, 그 범위를 축소 설정하고 있는바, 과도하다 보기 어려워,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8)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국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또는 약사가 복약지도를 미시행한 경우의 과태료를 각각 30만원으로 규정 **신설**

심사결과 법률 위임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금액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필요성 인정되며 30만원의 과태료는 현행 약사법에 규정된 과태료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서, 유사사례와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면적 기준 미달시의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 **강화**

심사결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면적 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필요성 인정되며 의약품 도매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창고 면적기준 미달 시와 동일한 처분이므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유통질서 문란(리베이트)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제외하는 기준·절차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규정 **강화**

심사결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방안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한을 1년 내로 설정하고, 재차 (2회 또는 3회) 위반시에 요양급여 제외하고 있고 과징금은 요양급여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해외사례보다 완화된 내용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있어 중요규제로 원안동의

(10)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선택진료시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추가비용의 상한선을 축소
– 현행 진료항목별 20~100% 가산에서 15~50%만 가산하도록 개정 **강화**

심사결과 선택진료비로 인한 국민부담이 과도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선택진료 시 징수 가능한 추가비용을 축소하는 것이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태료 부과) **신설**

- 실종아동등 보호·지원법 제9조의3 신설('14.1.28./류지영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에 의해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사항임

  * (조기발견지침에 따른 미조치)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 (교육훈련 미실시 및 결과 미보고)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

심사결과 조기발견지침의 실효성과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동 시행령 제9조의 별표에 의해 지침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필요한 규제이며,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지침 위반시설에 한정해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12)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제정안 (신설 8)

심사내용 실종신고 담당부서 업무분장 **신설**

-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와 역할을 사전 지정하고, 시설의 특징을 고려한 자체 지침 마련*

  * 자체지침을 마련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음

심사결과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시설의 특징을 고려한 역할 분담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실종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며, 또한 이를 위한 관리주체의 인력증원이나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실종아동등 발생시 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

- 신고자 등으로부터 실종아동 등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록·관리하되,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

심사결과 실종아동 발생 시 아동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범죄관련성이 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조속한 수색을 위해 적정한 조치이며,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시설관리주체의 추가적인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실종아동등 발생상황전파와 경보발령 **신설**

– 실종아동 등이 신고되는 경우 즉시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을 위해 안내방송 등을 활용함

심사결과 실종아동 발생 시 시설 내 안내방송을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와 경보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안내방송만을 강제하지 않고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가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등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점 등 적정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출입구 감시 및 수색절차 **신설**

–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시설의 출입구 감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시설까지도 수색 실시

심사결과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나 이용객이 많고 시설면적이 넓어 실종아동등 발생시 출입구 감시와 시설 전체에 대한 수색절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설별 특성에 따라 근무자 배치나 수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여 시설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부담과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실종아동등의 미발견 **신설**

–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규정

심사결과 장기실종, 기타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초동조치 후 실종아동 미발견시 경찰에 신고할 경우에도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경찰신고의 부담과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경보의 해제 **신설**

– 실종아동등이 발견 또는 미발견시 경보해제 절차 마련

심사결과 실종아동의 발견여부에 따라 경보발령 해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실종아동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경보해제, 미발견 되었을 경우 다중이용시설 자체판단이 아닌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를 통해 경보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시설운영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복합시설의 실종아동 등 발생 및 조치 **신설**

- 1개의 건물 또는 장소에 2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된 시설인 복합시설의 조기 발견을 위한 협업체계 마련

심사결과 다중이용시설이 같은 건물에 있거나 인접한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 관리주체가 상이한 곳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한 경우, 시설별 협업체계를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실종아동의 발생과 그에 대한 초동조치에 따른 각 시설별 혼란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시설관리주체의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한 규정인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시 신속한 발견을 위한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규정

심사결과 대응매뉴얼이 있더라도 이를 평소에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상황발생시 실효성이 없으므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당 교육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자체 교육프로그램에 실종아동 등 발생시 대응요령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1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전공의 수련병원(기관)의 수련상황 감독을 위하여 전공의·수련이수자의 명부 및 수련규칙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 **강화**

심사결과 전공의 수련상황에 대한 감독은 전공의 정원 초과 임용 여부 및 수련환경 감독을 통한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며 전공의 수련상황 감독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위법령에서 수련병원(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정함에 따라, 각 시정명령 사유에 대한 시정명령 기간을 규정 **강화**

심사결과 최종 처분 전에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시정 기간은 시정명령 사유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기본입원료 외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비급여) 부과 가능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입원 시에도 기본입원료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이를 비급여로 전환 **강화**

- 현행은 상급병실료를 1~5인실 병상에 대하여 부과 가능하였으나, 이를 1~3인실 병상에 대해서만 부과 가능하도록 개정

심사결과 상급병실료는 건강보험의 혜택없이 환자가 전액 부담을 하며, 그 규모가 1조 147억원(총 진료수입의 4.2%, '12년 기준)이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상급병실료 부과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며, 상급병실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다른 대안을 검토하였을 때, 4·5인 병상을 일반병상에 포함하는 방안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상급병원 환자 쏠림을 방지하고, 상급병실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1인실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적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15)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기준에 필수 인력(의사·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에 대한 연간 최소 보수교육 4시간을 추가 **강화**

심사결과 완화의료에 대한 최신 의학적 처치 및 심리 관련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여 보수 교육 이수 시간을 정하는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사례 및 교육 체계를 감안할 때 연간 4시간은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교육 이수여부 등을 지속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16)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3, 강화 2)

심사내용 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신설**

– 교육감·교육장 및 초중등고등학교의 장이 학대피해아동의 취학 및 교환학습 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거부 시 1차 개선명령, 2차 6개월 사업 정지(시행령 별표13)

심사결과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부모 등 학대행위자로부터 일정기간 격리되어야 실질적인 보호와 치료가 가능하므로 주소지 이외 지역 취학이나 교환학습은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주소지 이외 지역의 학교 측이 피해아동 취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강제할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이에 따른 학교당국의 추가적인 비용도 없는바,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신설**

– 아동관련시설의 장은 직원 채용 시 관할 경찰서에 아동학대관련 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심사결과 아동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아동관련기관 등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할 경우, 피해아동들은 또 다시 학대 위험에 노출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당해 규제는 피해아동들의 안정적인 보호·양육·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되며, 타 법령에서도 동일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자 점검·확인 결과 공개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을 점검·확인하여 전력자를 취업시킨 기관을 인터넷에 공개함

심사결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을 공개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이용할 아동관련기관을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아동학대범죄전력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시군구명) 등 제한적 정보만 공개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유사 법령에서도 동일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강화**

–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의 장은 아동안전교육 계획과 실시결과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보고할 것을 규정

심사결과 현행 아동복지법 상, 유치원장·초중고교장·어린이집원장·아동복지시설의장의 아동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는 '유치원장'과 '초중고교장'의 교육 및 결과 보고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원장'과 '아동복지시설의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입법의 공백이 존재하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됨.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강화, 다만, 불가피하게 그 자격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음

심사결과 현행 규정상,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업무를 3년 내지 5년 이상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아동학대라는 특정 분야에 대한 경험으로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확보하기 어렵고,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피해아동 상담이나 보호 조치 등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가 어려우므로 경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함. 한편, 불가피하게 자격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사전에 관할 기관(복지부, 시도, 시군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운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담배의 유해성 또는 흡연 폐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경고 그림(사진) 부착 의무화 **강화**

심사결과 담뱃갑 포장은 핵심적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나, 현행 경고 문구 표시 규제로는 담배의 위해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여 개선 필요하며 경고 그림은 경고 문구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보 전달 수단이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도입을 권고한 사항이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은 있으나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예방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하여 불수용하였으므로 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궐련의 부담금을 354원→841원(20개비 당)으로 인상하고, 전자담배 등도 동일 수준으로 인상 **강화**

심사결과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흡연율 감소가 필요하며,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으로서 담뱃값을 인상할 필요가 있고 담뱃값의 인상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도입을 권고한 사항이며, 해외사례를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은 있으나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예방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하여 일부만 수용하였으므로 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8)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혈액원의 업무정지기간(6개월 범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신설**

심사결과 혈액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혈액원 운영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13.8.13.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규제의 필요성 인정되며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6개월의 범위"로 정하였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9)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신설**

-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양부모 조사, 입양의뢰 아동 권익 보호 등 중요 준수사항의 경우, 1차 위반시부터 업무정지 규정(7일, 15일)

심사결과 입양특례법상 의무 위반시 '1차 의무 위반 시 경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확보와 입양기관의 경각심 고취 곤란. 특히, 최근 2년 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심각한 위반도 2년 이상의 간격일 경우, '경고'만 가능하므로 처분의 강화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당해 규제는 입양아동 권익과 직결되는 핵심 의무사항 6가지*에 대해서만 1차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 국내입양 우선추진 조치·보고, 양자 자격증명 조사·확인, 양친 가정상황 조사·확인, 입양아동 상담 제공, 입양자 권익보호, 사후관리

(2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나 업무수행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 위반사항 :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자료 제출시

* 과 태 료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이상 300만원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과태료 최고금액을 정하여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과태료 세부기준은 상위법에서 정한 법정 최고 금액 300만원 범위내로 정하고 있고,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법의식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 법 준수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비용은 발생치 않고, 이해관계인 이견도 없어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강화**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시 유효기간 범위를 3년 설정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생산시설 지정 시 유효기간 도입을 신설*하고, 그 기간의 범위를 위임한 것에 대한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효기간 3년이란 범위는 생산시설 관리·점검 및 타 유사 사례로 볼 때 적정한 기간으로 판단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2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강화**

–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시행규칙 별표9)

* (의무위반) 보육교사 동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 (처분기준) 1차 운영정지 6개월, 2차 운영정지 1년, 3차 시설폐쇄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기준은 상위법 위임 범위내(운영정지 및 시설폐쇄)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처분에서 어린이의 생명·신체 손해가 발생할 경우

1차 위반시 시설폐쇄 하고 있는 처분 보다는 낮아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2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3, 강화 2)

심사내용 종사자의 지시·의뢰 제한 **신설**

- 부정수급, 성범죄 등의 종사자에 대한 지시·의뢰 금지 및 지시·의뢰 前 종사자의 자격 확인 의무를 제공자에게 부여

심사결과 성범죄자·아동학대자 등을 종사자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정부제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가담자의 종사제한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력조회에 따른 제공자의 업무 부담이 발생하나, 대면서비스의 핵심인 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임을 감안, 또한 부정수급에 가담한 종사자에 대한 활동제한, 부당수급 청구인에 대한 면허제한 등 유사 입법례도 존재함을 고려할 때 규제의 정도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이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부당이득의 징수 **신설**

- ㉠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받은 이용자' 포함, ㉡ 부당이득액에 이자를 포함시키고, 이것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비용 추가 징수 가능, ㉢ 종사자가 부당청구행위에 대해 거짓 보고·증명을 한 경우, 금전상의 이익을 얻도록 가담·담합한 경우 관련자와 연대하여 징수금 납부

심사결과 부정수급자 엄중 처벌을 통해 복지예산의 낭비를 막고,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부정수급시 부당청구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입법례는 다수 존재하는바, 과도하다 보기 어려움.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부당청구 사실의 공표 **신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제공자의 정보를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심사결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기관의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 공급자의 부정수급 유인을 차단하고, 이용자에게 공급자에 대한 선택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적발된 부정수급자 모든 대상자를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의 요건 하*에 공표하는 것으로 규제의 적정성 인정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 △ 부당청구액이 5백만원 이상, △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이 전체 청구금액의 10%이상 △ 2년동안 같은 사유로 1회 이상

심사내용 제공자의 준수사항 **강화**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사항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록 보관·작성 의무 추가

심사결과 사회서비스 제공기록을 통해 관련 연구 및 품질평가 기초자료, 부정수급 관련 내용 증빙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당 규제는 공급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나, 이미 바우처시스템을 통한 사회서비스 사업별 지침마다 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토록 하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 타 법률에서도 '기록'을 의무화 한 사례를 감안할 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규제비용도 특별히 발생치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과태료 **강화**

–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거나 제공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심사결과 의무조항을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조항을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공자(종사자)에게 변경내용 신고 및 제공기록 보관의 행위가 요구되나 이는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동 과태료 조항에 의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타 유사입법례의 과태료 상한은 대체적으로 500~1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과태료 상한(300만원)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23) 모자보건법 개정안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신설**

- 산후조리업자는 감염·안전 사고로 발생한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 할 수 있음

심사결과 산후조리원의 질병 감염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사고 발생 時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질병감염 등 안전사고 발생시 치료비 등 적절한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책임보험 가입은 유사입법 사례*로 볼 때 적정하고, 이해관계자인 산후조리원협회 차원에서도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의 필요성 인지하여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96%)으로 반대의견 없음.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생명·신체의 안전사고 대비 책임보험 가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화재보상책임보험),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도시가스사고발생시 보험가입), 궤도운송법 제26조(철도이용자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심사내용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등의 공개 **신설**

-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별 이용요금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함

심사결과 현재 이용 가격차이가 최대 9배 정도가 날 정도로 편차가 큰 실정임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요금 공개 의무화는 필요하며,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및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유사입법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및 중도해약 시 환불 기준 공개 의무화'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등의 과태료 **강화**

-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이용요금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심사결과 산후조리원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과 이용요금 공개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과태료 법정 최고액은 100만원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데 유사입법 사례*를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정.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 식품위생법(제101조제3항) 손님이 보기 쉽도록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 부착 미준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의료법(제92조제3항)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회복지사업법(제58조제1항) 책임보험 미가입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제25조제1항) 책임보험 미가입자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사업주의 위탁보육 비용보조 **강화**

–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대신하여 위탁보육을 할 수 있는 위탁보육 지원 비율 설정

* (현행)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해야 하는데, 다만 설치 할 수 없을 때에는 근로자 자녀의 위탁 보육을 지원 ⇒ 이에 따른 위탁보육 비율 규정은 없음
* (개정) 위탁보육비율 :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육지원 시 의무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 기준(30%)을 마련

심사결과 규제대상과 비용, 이해관계자 이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중요과제로 검토하였으며, 행정사회분과위심의 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의무 이행의 대체수단으로 위탁보육 비율을 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함

2. 여성가족부

김 한 필 사무관
044-200-2442 kimhanpil@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3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3건, 신설8건, 총 1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건 중 10건은 원안의결, 1건은 개선권고로 의결하였음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18	원안의결 9	신설 7, 강화 2 (비중요 9)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4-08-22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계	–	**원안의결 10 개선권고 1**	**신설 8, 강화 3 (중요 1, 비중요 10)**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감독기관의 종합안전점검 절차 등 **강화**

–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을 규정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조 개정에 따라,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의 시행주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심사결과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은 동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인력이나 비용의 추가부담이 크지 않고, 세월호 침몰 등 각종 사고로

안전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설운영자의 의견수렴으로 부담요소 최소화 등 고려,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함

(2)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7, 강화 2)

심사내용 숙박형등 청소년 수련활동 관련정보의 표시·고지 **신설**

– 청소년수련활동 모집 및 계약을 할 경우 표시·고지해야 할 내용, 범위, 방법 등을 정함

심사결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참가자 모집 시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각종 홍보매체에 표시, 참가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참가자들의 선택권과 수련활동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정의 취지, 대상요건의 기준 등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운영자 부담 요소를 제거하였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신설**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사항을 정함

심사결과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같이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대피요령 등 시설 이용자에 사전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자체적으로 기 배치된 청소년지도사가 안전교육을 실시, 추가 비용 없이 안전교육이 가능한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신설**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심사결과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사 배치, 수련활동배상책임보험 가입, 임직원 및 이용자 안전교육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각종 요소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며, 현재, 청소년들이 장기간 이용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참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종합평가의 실효성이 낮아 이를 의무화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가비용도 없어,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활동의 3개월 이내 운영 중지 명령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또는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의 안전미확보 또는 사고발생시 시설운영을 중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현행법상, 수련시설의 붕괴나 수련활동 중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정명령 수준의 조치만 가능하여, 사고 원인이 제거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운영을 재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였는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발생한 사고의 수습 및 원인 제거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 중지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정성도 인정. 추가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설운영자의 부담 요소도 제거하고 있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함

심사내용 사전인증 의무대상 청소년수련활동 **신설**

– 청소년수련활동 중 일정규모 이상 또는 고위험 활동에 대한 인증신청 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일정규모 이상의 청소년참여활동이나 위험도가 있는 활동의 경우, 실시 이전에 인증절차를 거쳐 활동의 수준과 안전성을 높일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도의 소요 비용도 없어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함

심사내용 인증수련활동 신청시 배치의무대상 전문 인력 **신설**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신청시 안전관련 전문가 등 배치의무대상 전문 인력을 정함

심사결과 현행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인증 신청시 청소년활동 기획 및 운영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해 왔으나, 활동현장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련 전문인력 배치 사항은 배제되어 있어 문제가 있었는바, 각 분야별 안전전문가 배치를 의무화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전전문가 의무배치는 모든 수련활동이 아닌 인증을 받고자 신청할 경우에 한정된 것이므로 과도한 규제는 아닌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청소년수련활동 위탁제한 대상 중요프로그램 **신설**

– 청소년활동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위하여 위탁할 수 없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종류와 내용을 정함

심사결과 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은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중요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청소년수련활동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청소년의 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모든 프로그램이 아닌 활동의 주요내용 또는 과반수 이상으로 편성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위탁을 금지하므로 과도한 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 **강화**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시 제출서류에 안전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 추가서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도시가스사업법」 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완성검사증명서

심사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지자체가 수련시설 등록업무처리 시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록한 사례가 적발되어 감사원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인·허가 및 등록시 전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확인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여 이를 보완한 것임. 한편, 전기안전점검, 가스시설 완성검사는 전기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것이므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함

심사내용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보고 **강화**

- 수련시설에 관한 보고 항목에 수련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 항목을 추가

심사결과 지자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자체안전점검 결과 제출여부 확인이 미흡하므로 결과보고를 의무화하여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내용 또한 최소한의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규제에 따른 별도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데 반해 안전예방의 편익은 크다고 보이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대상자인 디지털콘텐츠의 요건 **신설**

- 온라인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의 요건을 정함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의무 디지털콘텐츠의 요건

- 다음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디지털콘텐츠
  1. 불특정 또는 익명의 이용자 간 대화기능이 있는 디지털콘텐츠
  2. 부호, 문자, 음향, 화상 또는 영상에 의한 대화기능이 있는 디지털콘텐츠
     ☞ 불특정 또는 익명의 이용자간 채팅을 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등
  3.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내용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콘텐츠
     ☞ 조건만남, 화상채팅, 누드채팅, 애인대행, 엔조이파트너 이색만남, 화류계 등 성매매 알선 및 제공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

심사결과 온라인 성매매의 심각성과 위험성이 높아가고, 성매매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성매매 예방시스템 필요성 인정되며,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온라인 성매매 방지 및 예방의 편익 또한 인정되나, 성매매 알선·권유·유인 등의 내용 제공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콘텐츠의 대상개념이 불분명하여, 규제대상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 등 보완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개선권고 함*

* 개정안 제13조 中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디지털콘텐츠"를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디지털콘텐츠"로 변경

* 개정안 제13조의 3호 "강요하는 내용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콘텐츠"를 "강요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로 변경

* 경고문구는 이용자가 제거해야 없어지도록 하며, 큰화면에 문구를 게시하도록 협회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재검토일몰을 설정할 것.

3. 식품의약품안전처

김 한 필 사무관
T 044-200-2442 E kimhanpil@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약품등의 독성시험 기준 개정안, 축산물의 가공기준및성분규격 개정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등 40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50건, 신설 29건, 총 7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9건 중 76건은 원안의결, 3건은 개선권고로 의결하였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4-01-15	원안의결 5	신설 5 (중요 1, 비중요 4)
(2) 의약품등의 독성시험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4-0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1-23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4)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4-0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심사 2014-02-28	원안의결 3 개선권고 2	신설 1, 강화 4 (중요 2, 비중요 3)
(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4-03-0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8)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4-03-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4-03-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5-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5-3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4-07-18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14)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1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7)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8)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0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0)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0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1)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0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1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21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24) 약사법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4-08-25	원안의결 4	강화 4 (중요 1, 비중요 3)
(2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9-04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7)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8)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9)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0)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1) 의약품동등성 시험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3)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4)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5)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지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6)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12-08	원안의결 9	신설 6, 강화 3 (비중요 9)
(37)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12-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8)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4-12-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9)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4-12-16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4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4-12-30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계	–	**원안의결 76 개선권고 3**	**신설 29, 강화 50 (중요 6, 비중요 73)**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5)

심사내용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절차 마련 **신설**

- 식품위생법 개정('13.7.30)으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설정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부신청절차 마련

심사결과 독성자료, 잔류자료, 제외국 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설정현황 등은 식품내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규제비용은 미미한 반면,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설정을 통해 생산자는 사용할 수 없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을 기준치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편익이 크므로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신설**

- 영유아식 제조·수입·가공업소와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매출액 또는 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의무등록하고 위반시 등록취소 및 행정처분 규정 마련

심사결과 영유아식 제조·수입·가공업자와 일정규모이상 식품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의무등록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13.7.30)됨에 따라 법령위임사항인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대상을 마련하는 것으로 업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등록 하도록 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적정규제이므로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규정의 재검토기한 설정 **신설**

-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허위과대표시광고금지 및 배추김치 HACCP적용 재검토시한을 매 3년마다 3년 연장

심사결과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대광고 근절 및 배추김치에서 기생충알 검출이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표시광고금지 및 배추김치를 HACCP 적용대상에 포함여부에 대한 재검토시한 3년 연장은 식생활안전을 위한 적정규제이므로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성매매알선업소 등 행정처분 강화 **신설**

–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수입신고대행자의 행정처분기준 마련

* (현행) 가중처분 적용기간 1년, 1차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 (개정) 가중처분 적용기간 3년, 1차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심사결과 성매매 알선행위는 사회적으로 근절하여야 하는 행위임에도 행정처분 수준이 미약하여 그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수입식품신고대행자가 수수료 초과징수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13.5.22)되어 법령위임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 입법례보다 과도하지 않은 수준인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 품목확대 **신설**

– 식품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대상 확대*

* (기존) 어묵류등 7개 품목 ⇒ (확대) 어린이기호식품, 국민다소비식품, 특수용도식품,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식품

심사결과 식품유형이나 특성, 업체사정에 따라 약 1년의 준비기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규제확대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영세업체는 시설개선자금 지원, 기술지원 등 정부지원을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므로 식품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원안동의하되, 다음과 같이 부대권고*

* ① HACCP 의무적용 업체가 1년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할 경우 적용 시기를 1년이내 추가 유예가 가능하도록 고시개정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4조제2항, '14년 상반기중개정), ② 영세업체 시설개선자금 50%(1천만원) 지원, 무상기술지원, 기타우대조치이행 등 정부지원 확대

(2) 의약품등의 독성시험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약물투여기간이 1~3개월인 의약품등의 경우 반복투여독성시험에서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강화**

* 의약품등(의약품, 의약외품)은 허가 신청시 독성시험(반복투여독성시험, 단회투여독성시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

심사결과 국제기준(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약물을 투여한 국내 시험(3개월) 결과는 국제적 인정이 불가능하여 국내 신약의 해외 진출시 어려움 초래되므로 개선 필요성 인정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신설**

-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자중 품목류별 전년도 매출액(제조업은 생산액, 수입업은 수입액)이 50억원에 해당하는 자를 이력추적관리의무등록대상으로 하고,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및 등록취소 기준을 정함*

* 2회이상 시정명령 미이행시 해당품목 등록취소

심사결과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대상인 매출액 50억원이상 업체('12년 생산실적 기준)는 제조업체가 27개소로서 전체 435개소대비 6.2%이고, 수입업체는 12개소로서 전체 1,197개소대비 1.0%에 불과하고,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1년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14.12.1.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등록업체한테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우며, 연간 규제비용은 각각 제조업이 3억원, 수입업이 6억원으로 미미*한 반면, 식품안전관리로 인한 국민편익이 크며, 법률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적정규제로 보이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 등록번호 + 유통기한(숫자)으로 표시하는 경우 추가 비용은 경미하고, 바코드+유통기한(바코드)으로 표시하는 업체는 2% 미만(1개소/65개소)으로 연간 제조업 3억원(10개소*30백만원), 수입업 6억원(60개소* 10백만원) 정도 소요 추산

심사내용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 소분판매 허용시 유해물질이나 이물질 혼입, 기능성의 변질 및 유통기한이나 내용물 변조 가능성이 높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수입업/판매업자에게 포장제품 소분판매를 금지하고, 허위·과대·비방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

심사결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분판매금지 및 허위·과대·비방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규제비용보다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국민편익이 크며 다른 입법례보다 과도하지 않은 적정규제이므로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건강기능식품관련 행정처분 등 **강화**

-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허위·과대·비방광고시 광고중단의무 미이행시 행정처분 규정 마련 및 허위서류 제출 등 제재기준없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및 처분기준이 미약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심사결과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기능성을 인정하여 표시·광고할 수 있고 의약품 형태(캡슐, 정제)로 제조되어 허위·과대·비방 광고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고, 균일한 기능성분을 함유해야 하므로 일반식품이나 축산물가공품보다 표시·광고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 등 표시·광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이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등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 강화는 의무이행확보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적정규정로 판단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4)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설정 **강화**

- 국제기준(CODEX)에 부합되도록 축산물중 조제유류의 비타민 등 일부영양성분의 기준규격을 개정하고 셀레늄 기준규격 신설*

* 조제분유·조제우유의 최대권장기준 신설 및 기준·규격 개정 (리놀레산, 비타민 B1 등), 성장기용 조제분유·조제우유 기준·규격 단서 신설(비타민 B6·E, 인)

심사결과 영유아용 조제유류 제품의 원활한 수입과 수출 및 영양성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준과 규격을 국제적 기준 및 규격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현재도 국내 생산·수입 조제유류 제품의 셀레늄 등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영양성분의 기준과 규격을 조정시 규제비용은 매우 미미한 수준인 반면, 영유아용 조제유류의 영양성분을 국제적 기준과 일치시켜 식품안전을 도모하는 국민편익이 크므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적정규제로 판단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5)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 허가·신고한 의약품등의 안전성 정보(부작용 등 유해사례)의 수집·보고 대상 정보에 외국에서 발생한 중대한 약물유해반응도 포함, ㉡ 의약품등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품목허가사항 중 변경 지시 한 사항에 대하여 품목허가증 등을 변경·관리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 의약품 관련 시장이 국제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의 의약품 유해사례 피해의 수집을 통한 국제적 공동대응이 필요하고 국제기준(WHO·ICH 등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안전성 정보 평가결과에 따른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 사항 변경 지시를 할 경우, 지시에 따른 조치사항이 지침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상향 규정하는 것이고 변경허가(신고)를 갈음하는 조치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4)

심사내용 의료기기 회수 사실에 대한 환자 통보 의무 **신설**

- 의료기관이 의료기기 회수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치료받은 환자에게 회수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
- 회수사실 통보 후 통보확인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에 송부토록 규정

심사결과 의료기기 회수사실에 대한 환자 통보 의무는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은 인정하나 법률의 명확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효력상실형 일몰(2년)을 적용하고 통보확인서 제출 의무는 과도하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허가를 신청하는 의료기기가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본질적으로 동등한 경우에는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해왔으나,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이 큰 의료기기 중 일부(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강화**

*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동일한 제품

심사결과 인공심장 등 고 위험군 의료기기는 엄격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함에도 임상시험자료 제출이 면제되고 있던 상황으로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고위험군 의료기기를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 소요되는 임상시험 비용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완화된 내용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판매·임대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강화**

*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① 시설 및 설비, ② 관리책임자, ③ 품질관리 및 환경위생관리, ④ 문서기록 관리, ⑤ 자체교육 관련 기준

심사결과 임신진단키트 등 온도·습도에 따라 변질의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유통하기 위한 유통품질관리 기준이 필요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 기준은 국내 유사사례와 동등한 수준이며, 해외사례보다 완화된 수준이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련 기록 작성·보존 의무 **강화**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표준코드를 부착(기재)하도록 규정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취급자(판매·수입업자 등)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를 매월 식약처에 제출토록 규정

심사결과 표준코드 부착의무의 경우 법률 위임범위에 포함되며 필요성이 있고 유사사례 및 비용-편익 분석 결과 적정성이 인정되나 자료제출 의무의 경우는 취급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 위임이 필요하므로 효력상실형 일몰(2년) 적용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의무부과이며 법률 위임 범위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식약처장이 위해정도에 따라 회수·폐기를 명한 경우에 대하여 회수·폐기 등의 기준과 방법 및 공표 방법을 규정 **강화**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처리 기준·방법 등에 대하여 자발적인 회수·폐기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관련 지침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실효성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과징금 산정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 업무정지처분으로 영업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 처분(2억원

이하)으로 대신하는 법률(제20조)에 따라 법률위임사항인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
(연간매출액 1억원이하부터 100억원초과에 따라 23등급 설정)

등급	시험·검사기관의 연간매출액 (단위:백만원)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환수금액
1	100 이하	20만원	매출액의 10~70%
2	100 초과 ~ 150 이하	28만원	
	~		
11	750 초과 ~ 850 이하	94만원	
	~		
23	10,000 초과	166만원	

- ㉡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의 업무 태만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내용과 횟수에 따라 3단계로 마련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심사결과 소규모 업체일수록 부과금액이 적고, 성실한 기업은 영향이 없으며, 유사입법례와 비교해 과도하다 보기 어려운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설**

-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사무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개인정보보호법('11.9.30. 시행)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불가피하게 개인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동의서 없이 효율적으로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시 인정되며,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다 보기 어려운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8)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강화**

- ㉠ 발효식품과 혼용방지를 위해 합성식초(초산을 먹는물로 희석한 식초)를 희석초산으로 명칭변경 및 초산함량범위(w/v%) 축소조정 : 4.0~29.0 → 4.0~20.0

– ㉡ 영유아에게 필수영양성분 및 열량 제공, 국제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의 규격 신설 및 개정*

* 영아용 조제식(신설)
  - 열량(kcal/100ml) : 60~70 (성장기용 조제식은 60~85)
  - α-리놀렌산(mg/100kcal) : 50이상
  - 리놀레산과 α-리놀렌산의 비율 : 5:1~15:1
  - 탄수화물(g/100kcal) : 9.0~14.0

* 영아용 조제식(개정)
  - 조지방(g/100kcal) : 3.3~6.0 → 4.4~6.0

– ㉢ 국내 포획이 금지된 구판(남생이복갑)을 식품원료로 사용금지

심사결과 ㉠ 합성식초를 발효식초로 혼동하지 않도록 합성식초 명칭을 "희석초산"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명칭변경 표시비용은 미미 ㉡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 열량 등 개정사항은 영·유아 성장·발달에 필수적 영양성분과 열량 제공, 국제기준(CODEX, EU)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인정 ㉢ 구판은 국내포획이 금지되어 있고, 최근 5년간 수입실적이 없어 규제에 따른 비용이 없으며, 식품원료로 사용금지는 천연기념물 보호 및 멸종위기 동식품의 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9)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의무 추가 등 **강화**

– 신설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을 축산물 표시대상에 추가*

* 부정불량 축산물 발견시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축산물 용기·포장에 "부정불량식품신고는 국번없이 1399"문구 표시 의무화

* 카페인함량이 0.15mg/ml 이상 함유 액체식품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민감자는 섭취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심사결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신설업종의 식육가공품을 표시대상 추가 및 주의사항 표시의무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지정 **강화**

-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 틸레타민, 졸라제팜을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

심사결과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의 경우 임시마약류로 지정('12.12월)되어 있는 물질로서 불법적으로 흥분제·환각제로 사용되어, 오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물질로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므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외사례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마약류로서 관리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으며, 틸레타민, 졸라제팜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신종마약으로 사용되고 있어 오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물질로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므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외사례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동물유래의약품 중 주사제는 공정서에 수재된 경우에도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제조방법 등)를 제출하도록 함 **강화**

- 신약, 희귀의약품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해 위해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위해성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동물유래의약품은 동물로부터 유래되는 바이러스가 혼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바이러스 불활화 과정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고 대상을 주사제로 한정하고 있는 등 적정성이 인정되며,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임상시험의 한계로 인하여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자체적으로 위해성 관리계획을 수립·실시토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해외사례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상시험이 종료된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당 임상시험 책임자의 신규 임상시험 배제로 대체 **강화**

–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임상시험 관리기준 준수 의무(위탁받은 임상시험에 대한 품질보증, 자료 품질관리) 위반 시 행정처분 신설

심사결과 임상시험실시기관 처분기준 상 임상시험 업무정지 및 책임자 변경 처분은 임상시험 종료 시 실효성이 없어, 규제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및 책임자 변경' 대신 '임상시험 책임자의 신규임상 시험 배제'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적정성 및 실효성 인정되며, 임상시험수탁기관은 임상시험 관리기준 준수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해당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필요성·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 기구(PIC/S) 가입을 위하여 국내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PIC/S 규정 수준으로 강화 **강화**

심사결과 PIC/S 가입은 제약업계의 오랜 기간 숙원 사항으로 제약산업 국제 신인도 향상 및 해외 진출의 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PIC/S 규정과의 차이 분석 및 PIC/S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PIC/S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완하는 것이므로, 규제의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6)

심사내용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신설**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및 기구 등 지정요건 규정

* 조직 : 대표자(또는 운영책임자), 시험검사책임자, 품질보증책임자, 검사원
* 자격 : 고졸기능사(1년 경력), 전문대졸(6개월 경력), 대졸(관련학과 규정)
* 인원수 : 식품, 축산물(검사항목별 1인 이상), 의약품(1명 이상),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각 3명이상)
* 시설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최소시설 및 분야별 세부요건 규정
* 장비 및 기구 : 필요장비 목록(종류) 규정

심사결과 법에서 위임한 지정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시험·검사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구성요소인 인력, 시설, 장비 및 기구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종전 6개 개별 법령으로 운영되던 시험·검사기관* 지정 요건보다 현행과 동일 또는 완화 수준이고, 다만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부 강화 또는 추가된 규정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 위반사항별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식품, 축산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위반 및 거짓성적서 발급 등에 대한 처분기준 통일

* 위반사항별 기준은 사안의 정도에 따라 지정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으로 처분기준을 마련

위반사항별 처분기준

위반사항		처분기준
거짓성적서 발급 등		지정취소
지정요건 미준수		업무정지 1개월
그 외 준수사항위반	시험결과에 영향*	업무정지 15일 이상
	시험결과에 미영향**	시정명령~업무정지 7일

심사결과 그동안 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이 상이하여 혼란 및 형평성 불만이 있어 행정처분 기준 통일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부처, 시험·검사기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입법예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였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기준 및 준수사항 **신설**

– ㉠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실적 보고, 관계문서 보관 의무화

– ㉡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및 준수사항의 세부사항 마련

심사결과 시험·검사기관의 보고 및 관계서류 보관 의무는 검사 결과에 대한 문제발생시 해결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부처, 시험·검사기관, 이해관계자 대상 입법예고,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반영하였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험·검사 능력 평가, 관리 방법 및 절차 **신설**

– 시험·검사능력 평가방법·절차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 평가대상 : 식약처로부터 지정받은 모든 시험검사기관

◦ 평가주기 : 매년 1회(식약처 계획 수립·시행)

◦ 자료제출 :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간내 시험검사의 결과 제출 의무

◦ 평가방법 : 식약처장이 평가용 시료에 대한 '숙련도 평가' 실시

◦ 평가 후 조치 : 필요시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 수행, 재평가 실시 등

심사결과 지난 2008~2009년 일부 시험·검사기관에서 거짓 성적서를 발급한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는 만큼, 평가 대상 및 주기, 시험검사 결과자료 제출, 평가 후 시정조치 수행 의무는 타당한 것으로, 규제의 적절성도 인정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시험·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신설**

–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인력의 의무교육 이수시간

◦ 교육시간 : 매년 대표자 1시간, 검사인력 6시간(다만, 최초 교육 21시간)

◦ 교육내용 :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상호인정

◦ 교육경비 : 교육대상자 소속 시험검사기관에서 부담

심사결과 새롭게 바뀌거나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시험·검사업무 관련 이해도를 높이고 검사능력 표준화를 위해 법에서 위임한 의무 교육시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되어(의무 교육시간 축소) 현행보다 완화된 규제수준인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시험·검사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보고 의무 등 **신설**

–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교육기관 지정, 교육에 관한 사항(지정시 신청서류 : 운영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인적 현황 등, 보고 및 보존 의무 : 교육 실시 결과보고, 관련기록 보관), ㉡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변경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교육기관 명칭, 소재지, 교육 분야, 대표자, 수강료 등)

심사결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정 신청 시 교육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설·인력 등 현황 자료를 요구하고, 지정 후 교육결과 확인을 위해 의무화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의 적정성 또한 인정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14)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어 허가·신고의 제한이 되는 원자재 또는 해당 원자재를 함유한 의료기기를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원자재 및 해당 원자재 함유 의료기기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은·석면·프탈레이트류로 인한 보건·안전 위협을 감안, 규제의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현행은 OECD 회원국에 제출된 임상자료 및 SCI 등재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상시험 자료 제출이 면제되었으나, 다른 임상시험 자료 제출시와 동일하게 임상시험방법 및 임상결과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OECD 임상자료 및 SCI 등재 논문은 임상시험 자료로서의 인정이 곤란한 상황으로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임상시험 자료로서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자료의 제출을 명시하는 것이며, 유사사례와 비교할 때에도 적정한 수준이고 미국, 유럽, 일본 등도 임상시험의 방법·결과·평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해외사례와 동등한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어 허가·신고의 제한이 되는 원자재 또는 해당 원자재를 함유한 의료기기를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원자재 및 해당 원자재 함유 의료기기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은·석면·프탈레이트류로 인한 보건·안전 위협을 감안, 규제의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6)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강화**

- ㉠ 조제유류 검사주기를 품목별 매월 1회 이상 및 제품생산단위별로 검사하는 항목을 추가로 검사, ㉡ 가공유류의 가공유 제품에 한하여 유지방 검사항목 추가, 햄류의 생햄 및 발효소시지 제품에 한하여 대장균 검사항목 추가, ㉢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살균제품에 대한 세균 검사항목 추가

심사결과 ㉠ 영유아 다소비 제품인 조제유류의 검사주기 강화는 어린이가 주로 먹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제유류의 검사주기를 강화한다고 해도, 그 수준은 상위 근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주기의 한계를 넘지 않고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과도하지 않음. ㉡ 식품 안전을 위해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여부를 검사해야 하고,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항목 추가(조정)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규정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도록 하는 검사항목 추가는 적절하다고 봄. ㉢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상온에서 저장·유통되므로 세균에 노출될 수 있어 멸균제품뿐만 아니라 살균제품에 까지 확대하여 세균검사를 실시, 식품의 안전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살균제품'에 대한 세균검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해 타당하다고 봄. ㉠,㉡,㉢ 모두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17)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현행은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품목 허가시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출을 의무화 **강화**

심사결과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 기구(PIC/S) 가입을 위하여 국내의 GMP 관련 규정을 PIC/S 규정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PIC/S 규정과의 차이 분석 및 PIC/S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PIC/S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완하는 것이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8)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강화**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른 '대장균 검사항목' 범위 확대(식육 또는 알제품,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주스, 과·채음료 등의 대장균 검사항목을 '대장균 O157:H7'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확대), ㉡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생햄과 발효소시지에 대한 '대장균' 검사항목 추가

심사결과 (검사항목 확대)「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식품 유형에 식중독균(장출혈성 대장균) 유해물질 기준·규격이 확대됨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항목 범위 확대는 필요하고 적정하며, (검사항목 신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적용받는 식품유형이 있는 바, 이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항목의 신설은 필요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1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이수 의무 시간을 2년에 16시간으로 규정 **강화**

심사결과 법률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에 따라 교육 이수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사례를 감안할 때 2년간 16시간은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미준수시의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 **강화**

심사결과 의약품 품목허가자·수입자에 대하여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미준수시 처분이 없으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사례를 감안할 때,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0)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 이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50만원으로 규정 **강화**

심사결과 약사법의 위임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50만원의 과태료는 유사사례와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자·수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개정안은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중 일부(해당 품목 생산 금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를 상향조정 **강화**

심사결과 과징금과 생산(수입)금액 간의 연계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실제 매출 규모를 근거로 매출 구간을 재설정하고,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과징금을 조정한 것으로서, 적정성도 인정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모두 수용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1)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축산물이력관리제 **신설**

- ㉠ 축산물 가공품 중 영유아가 주로 먹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조제유류 등)에 대한 의무적 이력관리 등록하되, 영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 2015.12.1부터 2018.12.1까지 매출액 기준으로 단계적 시행*토록 규정

  * 50억 원 이상 : '15.12.1부터, 50억 원 미만 ~ 10억 원 이상 : '16.12.1부터, 10억 원 미만 ~ 1억 원 이상 : '17.12.1부터, 1억 원 미만 : '18.12.1부터

- ㉡ 등록자는 이력관리정보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하고,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관

심사결과 의무적용 대상인 "영·유아가 주로 먹는 축산물 가공품"은 어느 대상 식품보다도 안전에 최우선시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1년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15.12.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로 보기는 어려움. 한편, 규제비용은 이력관

리 '시스템' 구축과 '인쇄장비'(이력관리번호 표시)구입은 필요치 않고, 경미한 유지비용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과태료의 부과기준 **강화**

- 축산물이력관리 등록에 따른 미표시, 위변조, 변경 미신고 등의 경우에 과태료 부과 규정

* (500만원 이하 과태료)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위조·변조 또는 고의 훼손으로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록변경 미신고, 이력관리 정보의 목적 외 사용자

심사결과 축산물 가공품의 안전을 위해 이력관리제 등록 의무 미이행시 제재를 위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축산물 가공품 이력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동법 유사 위반사례* 및 동일 내용의 타 입법사례**를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은 규제수준으로 적정성 인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식품위생법 상 이력관리 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련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강화**

- 자동차 이용 영업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대한 준수사항(신고된 유원시설 외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

심사결과 규제개선 차원에서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자동차 이용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관리·점검이 가능한 유원시설업소 내의 장소에 대해서만 허용하여 무분별한 자동차 이용 식품 조리·판매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동이 용이한 자동차 특성상 신고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고,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게 되어 행인들에 대한 안전위협과 관할 관청의 지도·점검에서 벗어나 식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될 우려가 상존하는바 적정성도 인정.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식품관련 영업허가의 취소 **강화**

– 자동차 이용 식품접객영업의 신고된 유원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심사결과 무분별한 자동차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취지 인정, 같은 법 유사한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에 견주어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23](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4)

심사내용 마약류 취급 허가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자국의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 **강화**

심사결과 현행은 마약류 취급 허가시 외국인의 경우 국내의 신원 조회만 가능하여 결격사유 확인에 한계가 있으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사례와 동일한 수준이므로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마약류·임시마약류와 동일한 저장 기준에 따라 저장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한 저장기준을 마련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예고임시마약류의 위해성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며 예고임시마약류의 저장기준을 마약류·임시마약류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마약류 수출입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의 제출서류를 규정 **강화**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마약류 수출입 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제출서류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사례인 마약류 원료물질 수입시에도 동일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 인정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마약류 수출입 미(변경)승인 시 행정처분 기준 규정 **강화**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마약류 수출입 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반시 처분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마약류 수출입 시 승인을 받을 경우 별도의 규제영향비용은 없으며, 유사사례를 감안할 때,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4) 약사법 개정안 (강화 4)

심사내용 의약품 특허에 관한 사항의 보호를 위해 특허목록에 등재 가능한 특허의 범위를 제한하고 특허권자 등에 대한 통지 의무면제 대상 축소하며 통지의무 미준수시 제재 조치 마련, 판매제한 조치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강화**

* 판매제한 조치: 특허권자등이 후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특허 심판·소송 제기 등 일정 요건 만족시 식약처가 후발 의약품의 판매를 제한

*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재된 특허에 대한 도전을 통해 후발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조기에 성취한 자에게 일정기간 다른 후발 의약품보다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심사결과 한·미 FTA 필수 이행사항이며, 후발 제약사의 특허 도전 동기 부여 및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함이므로 필요성 인정, 제도의 취지, 규제영향비용-편익 분석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규제의 적정성 인정, 시민단체 등의 이견이 있으나 수용이 곤란한 사항이며, 피규제자의 의견은 모두 수용하였으므로 중요규제로 원안동의

심사내용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강화에 따라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및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검사 의무 부과, 특허권자·품목허가자-후발 제약사간 또는 후발 제약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 내용 등을 식약처·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특허권자 등의 신청에 따라 후발제약사의 진입을 제한하므로 제한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보고 및 검사 규정 필요하며 불공정 합의 또는 담합으로 다른 후발제약사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합의시 관련 내용을 제출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사례보다 완화된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제약사가 판매제한 기간 중에 판매가 제한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음을 규정 **강화**

심사결과 판매가 제한되었음에도 판매를 한 경우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며 유사사례를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고, 판매 제한 기간 동안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규제비용은 없으므로 적정성을 인정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특허권자·품목허가자—후발 제약사간 또는 후발 제약사간 합의가 있음에도 합의 내용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 **강화**

심사결과 합의를 제출하도록 규정(제69조의3)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위반 시 처분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사례를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고, 규제영향 편익을 감안할 때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4)

심사내용 동물실험시설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확대 **강화**

- 표준작업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구성 증명 자료, 관리자 자격 요건 증명 서류 (운영자가 관리자의 업무도 수행할 경우) 추가

심사결과 동물실험시설에 표준작업서 마련,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의 자료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표준작업서 및 운송차량 관련 자료 등을 추가 **강화**

심사결과 법률에서 실험동물공급자의 경우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등록기준이 없는 상황이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며, 추가 제출 서류는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에 '실험동물 생산·수입 또는 판매 현황을 기록·보관' 할 것을 추가 **강화**

심사결과 동물실험으로 인한 재해 예방 및 동물실험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물보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유사사례를 감안할 때 유사사례보다 완화된 수준이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동물실험 관련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시기를 규정 **강화**

-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 후 6개월 이내, 운영정지·영업정지 처분 시 처분 받은 후 6개월 이내

심사결과 현행은 교육의무는 있으나,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시기가 불분명한 상황으로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교육 이수 기간인 6개월은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유사사례의 경우보다 완화된 수준이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강화**

- ㉠ 과일류 및 어류 카드뮴 기준 신설*

* 과일류 : 0.05mg/kg 이하

* 어류 : 민물, 회유어류 : 0.1mg/kg 이하, 해양어류 : 0.2mg/kg 이하, 냉동식용 어류내장 : 3.0mg/kg 이하

- ㉡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단위 : mg/kg)

농약명	현행	개정
티캄바	옥수수 0.5	0.01
2,4-D	오렌지 2.0	0.05
	레몬 2.0	1.0
페니트로치온	가지 0.1, 감 0.2, 고구마 0.05, 귀리 5.0, 기타곡류 5.0, 기타과실류 0.2, 기타콩류 0.2, 당근 0.2, 딸기 0.2, 메밀 5.0, 멜론 0.05, 무(뿌리) 0.2, 밀 6.0, 밀가루 1.0, 바나나 0.2, 배 0.2, 보리 5.0, 수박 0.2, 수수 5.0, 시금치 0.2, 쑥갓 0.2, 아몬드 0.1, 양배추 0.5, 양상추 0.2, 양파 0.05, 오이 0.05, 옥수수 5.0, 은행 0.1, 참외 0.05, 체리 0.2, 카카오원두 0.1, 토마토 0.2, 파인애플 0.05, 피망 0.1, 피칸 0.1, 호도 0.1, 호밀 5.0 및 호박 0.2	삭제

심사결과 ㉠ 식품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카드뮴 적정 노출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 설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카드뮴은 유엔이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인체 노출시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 폐·생식기 손상, 가슴통증, 경련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기준설정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 사용된 농약 디캄바 등 3종의 인체위해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잔류허용기준의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살포 후 잔류시험, 일일섭취허용량, 외국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한 수준으로, 적정성 인정. ㉠,㉡ 모두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27)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어린이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 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영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조리·판매 대상 식품에 관한 고시 개정*

* (현행) '연간 90일 이상' 조리·판매하는 식품→(개정) 조리·판매하는 식품

심사결과 본 고시 규정 중 '연간 90일 이상'은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다는 지적도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고열량 저영양 식품인 햄버거 등은 특히 주 구매층이 비만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는 청소년 등임을 감안, 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제품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28)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을 추가 지정하여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강화**

- ①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②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졸제, ③ 0.5% 초과 퍼메트린 에어로졸제(기피제에 한함)

심사결과 살충 성분 3종에 대해 신규 품목허가 또는 신고 時 사용금지(제한) 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에서 위임한 것으로 식약처장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안전성 등을 검토한 사항으로 타당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9)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바이오레스메트린' 살충 성분을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에서 삭제하여 사용금지하는 것임 **강화**

심사결과 동 살충성분은 인체 위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EU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서도 철수된 것이고 「약사법」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사용금지를 위해 식약처장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위임 사항으로 타당성도 인정되며 그간 3년 이내에 생산실적이 없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원료 및 제품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0)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과태료 처분 및 특례규정 **강화**

-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추가
  * 위반사항 :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를 목적외 사용한 경우
  * 과태료 : 100만원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과태료 최고금액을 정하여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과태료 세부기준은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데, 이는 상위법의 최고 금액 300만원 범위내로 타당, 한편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추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기존의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 금액과 비교할 경우에도 과도한 규제가 아니며, 입법예고 시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31) 의약품동등성 시험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의약품동등성시험 분석기기의 제어시스템 설치 의무화 **강화**

- (현행)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 (개정) 비교용출시험 등의 시험 추가

치료영역이 좁은 의약품 2개 성분(시롤리무스, 플레카이니드) 추가

심사결과 의약품동등성시험 중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만 설치의무화가 되어있으나, 그 외 시험에서도 조작할 우려가 있고, 동등성시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제어시스템 설치 의무화는 필요하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전자제어시스템을 통한 자료의 변경·삭제가 자동적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있어, 국내 의약품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도 타당성도 인정됨. 또한, 치료영역이 좁은 성분은 작은 용량 또는 혈중 농도의 차이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미국, 유럽, 캐나다 등 규제 선진국에서도 치료영역이 좁은 성분을 별도 관리하여 의약품의 품질 동등성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사항 심사 시 활용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오리파빈등 15성분(마약 7, 향정 8)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엑고닌 유도체 및 메스케치논 유사체* 범위 확대 및 명확화 **강화**

심사결과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과 엑고닌 유도체 및 메스케치논 유사체는 오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물질로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므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규 지정 및 유사체 확대 물질의 경우, UN 및 선진국 사례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마약류로 관리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3)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과태료의 부과기준 **강화**

–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예시 : 학술연구용 도살처리 신고의무 위반

* 〈현행〉500만원 ⇒〈개정〉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심사결과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를 통한 상습적인 법 위반 영업자에 대한 법의식 제고하여, 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당해 개정안은 상위법 위임 최고기준액 범위내에서, 현재 과태료 금액을 기준으로 2, 3차 위반액을 신설하는 것이며,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결과, 이해관계자 이견은 없고, 법을 준수하는 영업자에게는 규제비용이 발생치 않아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34)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강화**

- ㉠ 학교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해썹 조사·평가의 강화
  * 전년도 평가결과, 보완(70%이상 85%미만), 미흡(70%미만)의 경우, 다음연도 조사·평가 : (현행) 연 1회 ⇒ (개정) 연 2회
- ㉡ 김치 등 비가열 섭취식품 제조업체에 해썹 조사·평가의 강화
  * 전년도 평가결과, 양호(90%이상 95%미만) 경우, 다음연도 조사·평가 : (현행) 면제 ⇒ (개정) 면제 제외

심사결과 ㉠ 해썹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중 학교 식자재 납품업체의 경우,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의 비용보다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 등 식품의 안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임. ㉡ 가열하지 않고 먹는 김치 등 비가열 섭취식품의 경우도 식중독에 취약한 면을 감안할 때, 전년도 양호 평가를 받더라도 다음년도 조사·평가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 모두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어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함

(35)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지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의약품동등성(생물학적 동등성시험) 확보가 필요한 16개 성분 추가 **강화**

- (현행) 식약처장 고시 의약품 총 46개 성분 → (개정) 식약처장 고시 의약품 1개 성분을 삭제하고, 16개 성분 추가 총 61개 성분

심사결과 국내 생산 의약품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제약 산업의 선진화(세계시장 진출) 및 국민건강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추가되는 성분은 모두 미국, EU, 일본 등 해외에서도 동등성 시험을 실시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규제의 타당성도 인정되고 시행시기를 '16.1.1로 유예기간을 두어 관련 업체의 부담 완화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6)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6, 강화 3)

심사내용 의료관리자의 준수사항 마련 **신설**

- 검사결과(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 등)를 포함한 모든 의학적 사항을 검토하여 분배 승인

- 인체조직관리기준(별표 3)에 적합하게 조직을 채취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 조직이 반환된 경우, 재사용 여부를 의학적으로 판단
- 분배받은 혹은 분배한 조직과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히 그 원인 및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실시

심사결과 의료관리자에 대한 책임·권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조직은행이 의료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직은행 내에서 의료관리자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확보해 주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마련 **신설**

- 부적합 조직 분배 금지, 조직은행의 시설 위생적 관리(곤충 침입, 교차오염, 외부오염 등 방지), 단계별 표준작업지침서 구비·운영, 사용기한 경과 조직 분배금지, 인체조직 관리기준(별표3) 준수 등
- 다른 의료기관 이용 시 준수사항: 허가받은 조직취급, 시설이용기관 역할 등 계약 체결, 채취 업무 세부운영절차 마련,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에 대한 적합 평가 후 이용 등
- 용기·포장의 봉함은 뜯지 않고서는 개봉할 수 없도록 하고, 개봉후 원상 회복시킬 수 없어야 함

심사결과 현재 가이드라인으로는 준수수준이 낮아, 조직은행 의무를 총리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인체조직 관리기준 등이 안전·위생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인 점, 의무화 시기에 차등을 둔 점, 타법·해외사례를 고려하여 규제의 적정성 인정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조직의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표시·기재해야 할 사항, 기재상의 주의사항 규정 **신설**

심사결과 인체조직의 표시·기재사항 표준화는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며 조직은행 별 표시·기재사항을 표준화하는 것이고, 유사법령·해외사례를 감안,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조직은행은 추적관리체계를 갖추고 각 인체조직마다 추적조사 실시·기록,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은 조직이식과 관련하여 부작용 발생시 식약처에 보고 **신설**

심사결과 인체조직은 한명의 조직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식 가능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므로, 추적조사체계 구축 및 부작용 보고가 필요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미국 등 해외사례를 감안,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체조직의 수입승인 절차, 변경승인 대상 및 절차, 수입조직 자료의 비치 등조직의 수입승인 및 변경승인 등 세부규정 **강화**

심사결과 국내에서 이식되는 인체조직의 7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입(변경)승인 등 수입절차 강화 조치가 필요하며 인체조직의 수입(변경)승인의 절차·제출서류 등에 대해 적정한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고 유사 및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조직은행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을 확인 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심평원'에 통보 **강화**

- 분배·이식금지 인체조직 발견 시 조직 폐기(폐기 전까지 별도 장소 보관) 및 내용 기록·보관, 식약처장에게(20일 이내) 보고

심사결과 조직은행이 혈액·세균학적 검사 및 문답을 통해 인체조직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병력·투약이력 확인(부적합 조직은 폐기 및 보고) 필요하며 조직은행의 조직 적합성 검사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부적합 인체조직의 폐기 및 보고도 인체조직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조직은행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의무 부과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조직은행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 및 변경허가 절차 및 허가갱신 제출서류 규정 **강화**

- 첨부서류 추가: 설립허가증 원본, 시설·장비·인력 현황,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표준작업지침서, 3년간 채취·처리·수입 등 조직 취급실적

심사결과 인체조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은행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는 점을 감안, 규제의 적정성 인정하고 유사법령에도, 제조업 허가 이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변경허가 제도를 두고 있고 허가갱신에 대한 제출서류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조직은행은 회수·폐기 명령 시 조치 계획(5일 이내) 및 결과 제출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이며, 국민보건 및 공중위생상 위해(危害) 인체조직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 인정되며 기존에도 회수·폐기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을 운영 중이었고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조직의 적합성 확인 및 폐기 의무 등 위반, 조직은행 허가, 의료관리자 준수사항, 조직은행 준수사항, 표시·기재 사항, 조직 채취 시 준수사항 등 관련 행정처분 기준 설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이며, 인체조직 기증·채취, 가공·수입 및 분배 과정 중 신설·강화된 준수사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위반내용의 경중 및 횟수에 따라 차등 처분하도록 한 것으로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하고 의약품 등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 법령과 비교 시에도 적정한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7)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조직은행 허가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경우,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허위로 작성·보고할 경우 과태료 기준 설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과태료 최고금액을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 인정되며 과태료 세부기준은 상위법에서 정한 법정 최고 금액(300만원) 범위내로 정하고 있고,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법의식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8)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화장품에 사용하는 살균·보존제 성분에서 '페닐(p-하이드록시벤조익 애씨드의 에스텔류)' 및 '클로로아세타마이드' 제외 **강화**

심사결과 국민 건강 위해 방지를 위해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화장품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금지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당 성분을 사용금지해도 다른 60개의 성분으로

대체 이용할 수 있고 해외 사례에서도 금지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9)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유기농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제조공정, 작업장 및 제조설비, 포장, 보관 등의 기준을 정함 **신설**

세부 규제 내용

원료조성 기준	전체 구성원료 중 10%이상 유기농원료로 구성
유기농 원료	유기농농수산물, 동식물 원료 및 동식물유래 원료, 미네랄 원료 등
제조공정	흡수·흡착·증류·추출 등 허용 / 방사선조사, 유전자재조합 원료 배합 등 금지
작업장·제조설비	청소 및 세척 의무 / 포름알데하이드 등으로 세척 금지
포장	폴리염화비닐, 폴리스티렌폼 사용 금지 등
보관	유기농 원료 및 화장품은 다른 원료 및 화장품과 구분하여 보관
자료 구비·보존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적합 입증 자료 구비(제조일로부터 3년 등)

심사결과 유기농화장품의 안전성 확보하고, 믿을 수 있는 유기농화장품의 시장 유통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영향비용-편익 분석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되나 국제기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미네랄 유래 원료(11종)는 식약처에서 조속히 안전성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중요규제로 개선권고

(4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금지 등 **강화**

-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하여 TV 광고시간 제한·금지 존속기한을 3년 연장(2018년 1월 26일까지 적용)

심사결과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요과제로 분류.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어린이에 대한 건전한 식생활 습관 유도 등 건강보호 필요성, 광고제한의 직·간접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하되, 차기 연구에서는 어린이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편성표 및 광고패턴, 시청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방송광고 제한 시간대의 이동·강화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1. 통일부

이 성 용 사무관
T 044-200-2445 E leesy@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3개의 법령의 신설 2건, 강화 1건 등 총 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건 중 3건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통일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402회 예비심사 (2014.01.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426회 예비심사 (2014.06.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444회 예비심사 (2014.11.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고용지원금부정수급 실태조사시 취업보호대상자의 근무상태 등 확인을 위해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강화 **신설**

심사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급액 증가와 더불어 부정수급 건수 및 수급액 증가추세, 현행 실태조사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부정수급 사례를 근절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생계지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있고, 실태조사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실제 최근 2년간 고용실태조사 현황 등을 감안하면 규제 강화시 실질적인 규제대상 및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유사사례인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제도를 시행중인 고용촉진 지원금 실태조사시에도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북한주민접촉신고, 교역보고 등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해 법률상 상한액(300만원) 범위내에서 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1.5~2배 상향 조정 **강화**

심사결과 남북관계 특수성으로 볼 때, 남북 주민간 교류협력은 엄격한 법적 규율하에 질서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특히,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따른 「5.24조치」, 북핵실험 등으로 현재 남북간 교류협력은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10년 5.24조치 이후 과태료 위반행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과태료 관련 준법의식이 뚜렷하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으로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가 있으며, 최근 법률 개정으로 벌금상한액이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과태료의 부과 수준이 낮아지게 되어 과태료 현실화 필요하며, 법률위임 범위내이고,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고, 피규제자가 미미하며, 규제비용은 새로이 발생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로 보아 원안의결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통일부장관에게 국·공립대학*으로부터 재학중 탈북대학생의 등록금 면제사실 등 현황자료 제출요구권 부여 **신설**

심사결과 피규제자수는 33개 국·공립종합대학중 16개 대학에 재학중인 탈북대학생이 연간 89명('12년)에 불과하고, 국·공립대학이 통일부장관에게 등록금면제사실 등 현황자료 제출로 인한 규제비용은 미미한 실정이며, 국공립대학은 재학중 탈북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면제함에도 통일부장관에게 면제자료제출의무가 없어 재학여부 등 현황파악 곤란하므로 통일부장관에게 탈북대학생 등록금 면제자료제출요구권 부여함이 필요하며, 유사입법례의 제출수준과 유사한 적정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 외교부

이 성 용 사무관
T 044-200-2445 E leesy@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해외이주법 개정안 1개 법령 강화 1건의 규제를 심사하여 1건을 원안의결하였음

외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해외이주법 전부개정안	제450회 행정사회분과 (2014.12.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해외이주법 전부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해외이주 신고대상에 '현지이주' 추가 **강화**

– **(현행)** 신고대상 : 연고이주자, 무연고이주자

– **(개정)** 신고대상 : 연고이주자, 무연고이주자, 현지이주자

심사결과 피규제자수는 현지이주자 8,416명 수준('13년)이고,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발급 제도 폐지(예정)에 따라 현지이주자에 대해 해외이주 신고제도로 대체되는 것이며, 규제 수준도 신고서류 제출에 불과하고, 현재 신고대상인 연고이주자, 무연고이주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며 재외국민등록증 발급 등을 위한 해외이주국민 현황 자료로 활용하여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 기대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 국방부

김 해 영 사무관
T 044-200-2447 E geneve2@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개 법령에 대해 신설 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하여 2건 중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방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4.10.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신설**

– 장교·장교후보생 등 군인 임용시험 부정행위 등에 대해 시험정지, 무효, 합격취소, 5년간 시험응시 제한 등 제재규정 신설

심사결과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는 건전한 시험 질서 유지 및 부정행위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의 규제이며, 제재의 수준이 유사사례*와 대부분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고 있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 공무원시험, 경찰·소방공무원 시험, 변호사시험 등

(2)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국방전직교육원 임·직원의 임무수행 거부·기피 횟수에 따라 300만원(1회 위반) ~ 1,000만원(3회이상 위반)
- 유사명칭 사용시 횟수에 따라 200만원(1회 위반) ~ 500만원(3회이상 위반)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이고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 등을 고려한 감경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 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검토, 원안의결

* 유사명칭 사용[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1회에 300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1회에 400만원)]

4. 국가보훈처

김 해 영 사무관
T 044-200-2447 E geneve2@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보훈기금법 개정안 1개 법에 대해 신설 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원안의결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보훈기금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4-10-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나. 2014년도 신설규제 세부심사내용

(1) 보훈기금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금융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신설**

– 사망한 채무자(국가유공자)의 결손처분 時 보훈처장의 금융정보 요청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의무 규정

심사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유사사례와 동일한 규제수준이며 규제도입에 따른 금융회사의 비용부담은 거의 없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제11절 일반행정·안전 분야

1. 행정자치부

이 상 훈 사무관
Ⓣ 044-200-2399 Ⓔ lsh@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등 10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8건, 강화 5건 등 총 1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3건은 원안의결하였음

행정자치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5-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5-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6-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4-07-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28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8-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11-2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4-12-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3**	**신설 8, 강화 5 (비중요 13)**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처분 전 사전통지 예외사유 **신설**

-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 사전통지가 원칙이나 의견청취가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사유 규정

  * 1) 의견청취로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기술적 기준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 사실을 이유로 처분하는 경우
    3)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4)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

심사결과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령해석 등 재량을 축소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전통지 예외사유는 처분의 전제, 내용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도 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여지가 없는 경우로 최소화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과징금 부과대상 및 기준 신설

금 액	사 유	주민등록번호 유출건수
3억 5천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	10만건 이상
2억 3천만원	ⅰ) 고의 또는 중과실	10만건 미만
	ⅱ) 경과실	10만건 이상
1억원	경과실	10만건 미만

- 과징금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 납부
-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심사결과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전예방 및 안전조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과징금 부과금액 및 산정기준은 안전성 확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 건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이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입법미비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고, 상담내용 및 보호실적에 관한 사항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이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제 폐지, 공소시효 배제 대상 확대 등 자료 보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조치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및 통보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설정

심사결과 최근 중요성이 강화된 개인정보 처리시 정보이용자가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과태료 처분기준을 명확히 규정

하고, 그 금액은 법률의 위임범위(3천만원 이하)내에서 설정(최대 2천만원)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신설**

- 임원·발기인 등의 주소·거소요건: 임원, 발기인, 금고 설립동의서 제출자는 창립총회 공고일 전일 현재 금고설립 지역에 6개월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여야 함
- 전문인력: 설립 필수 교육과정 30시간 이수, 교육이수 직원 4명이상 확보
- 물적시설: 금고 사무실은 전용면적(지역금고 99㎡, 직장금고 33㎡) 이상 확보, 사무실에는 방호시설, 사무기기, 금고 등 부대설비,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산설비 설치 등
- 발기인: 출자능력(출자좌수 기준 100구좌 이상 및 출자금액 기준 100만원 이상), 재무상태(설립인가 신청 직전년도 기준 연간 재산세 중 금고 설립 예정지 시도별 평균 부과금액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 등), 사회적 신용(임원의 결격사유에 미해당 등)
-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환원사업비로 계상 등

심사결과 법령에서 위임한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세부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새마을금고 설립인가의 세부적인 요건은 금고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시설 등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보행자·차마의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 **신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시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함

심사결과 제주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교통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구간에 대해서는 통행금지 및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제주지방경찰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강화**

– 풍수해 등을 대비해 시장 등이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심사결과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장 등은 매년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旣 실시하고 있어 집행의 실효성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강화**

– 옥외광고 사업자 및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심사결과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현행 시·군·구청장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행 규정상 시·군·구청장이 교육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반에 대한 시장 등의 조치 **강화**

– 전화번호 외에 연락처가 없는 불법 광고물 중 음란·퇴폐 전단지 등의 광고물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 요청

심사결과 전화번호 외에 연락처가 없는 불법 음란·퇴폐 전단지 등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단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보통신이용기기의 사용 정지·계약해지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출자·출연기관에서의 계약사무 처리 **신설**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계약사무 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용

* 제한입찰의 대상과 제한사항, 지역공동계약 의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공동수급체 중복 구성·참가 제한

심사결과 지자체가 재정적 보조를 하고, 지역경제 및 주민복리 증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계약비리와 부실경영 등에 대해 감사원('11.7) 및 권익위('12.6)에서 개선방안 마련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8)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제한 및 관리 **신설**

-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중요재산의 범위 규정

  * 중요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지방보조금 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해 증감률 기록 및 해당 지자체 장에게 보고(반기별)

심사결과 보조금 사업자의 횡령 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으로 규제 필요성이 있으며, 국가보조금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9)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중앙회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 **신설**

- 임원후보자는 중앙회의 다른 임원직에 동시에 입후보 금지, 임원후보자는 중앙회 임원 직 사임(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임원후보자는 공무원직 사임(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중앙회 임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직접 정하도록 한 것으로, 중앙회의 자의적인 선거규약 제정·운용 방지를 위해 규제 필요성 인정되며 농협·신협·수협 등의 피선거권 제한 관련 유사사례를 감안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금고의 상근이사 자격요건 **강화**

- 새마을금고의 상근이사 자격요건 중 금고나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를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로 강화

심사결과 금고의 실질적 관리책임자인 '상근이사'의 금융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요건을 '금고 또는 중앙회의 상근직 종사자'로 제한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농협·신협·수협 등 유사기관의 경우를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강화**

-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추가
- **(기술적 조치)**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연 1회이상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실시 의무화
-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규정 추가

심사결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킹에 취약한 홈페이지(구글링, 웹취약점 등) 및 내·외부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이 76% 차지하고 있어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반·출입 통제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인사혁신처

이 상 훈 사무관
T 044-200-2399 E lsh@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건, 강화 4건 등 총 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음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4-06-11	원안의결 3	강화 3 (중요 3)
(2)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09-1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5**	**신설 1, 강화 4 (중요3, 비중요 2)**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취업심사 대상자 중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소속부서에서 소속기관으로 확대(기관 업무기준의 취업제한 대상자)

* 재산공개 대상자, 2급 및 고위공무원 나급, 공직유관단체 임원,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등으로 정하는 공무원

- 취업제한기관의 대상을 영리분야에서 비영리분야까지 확대

  * 공직유관단체의 지정요건 중 위탁이외에 업무 대행 추가,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등과 직접 관련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을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 취업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는 것으로 개념 확대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 규정

  * 퇴직공직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 강화 근거 마련

- 취업심사 대상자의 10년간 취업이력 공시제 실시

심사결과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재임기간 시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회적으로 초래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회적으로 대두된 전관예우 관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규정만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미흡하여 취업제한 기간·업무관련성·취업제한 기관 및 분야·취업의 개념을 강화하고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므로 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강화**

-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취업사실을 전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행 과태료 부과 체계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고 그 금액도 법률 규정상 최저금액인 1천만원 이하로 설정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의 규모 및 범위 **강화**

-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대상기관 확대

  * **(사기업체)** (현행) 자본금 5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 (강화)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회계법인·외국법 자문 법률사업소) (현행)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 (강화)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탁 수행 협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장이 임원 임명 또는 임원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 추가

심사결과 현행 사기업체 등의 취업제한 기준만으로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취업제한 기관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기준은 민관유착으로 인한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하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므로 중요규제로 원안동의

(2)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공무원채용시험 원서접수 취소기간 **신설**

- 공무원 채용시험 원서접수 후 취소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

심사결과 공무원채용시험은 출원 대비 취소율이 최근 3년간 0.41%에 불과하나, 7일간의 기간으로 전체 시험일정에 지연을 초래되어 시험응시 취소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06년 인터넷 원서접수 시행 당시 시험응시 취소기간을 3일로 단축운영한 바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강화**

- 공무원채용 체력시험에서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금지약물 및 금지 방법을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근거 마련

심사결과 체력시험(철도경찰직(9급) 및 교정직 등)의 부정행위 유형에 대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일시적으로 신체능력을 향상시키는 약물 사용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 훼손이 우려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 국민안전처

이 성 용 사무관
T 044-200-2445 E leesy@pmo.go.kr
김 해 영 사무관
T 044-200-2447 E geneve2@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 유도등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 13개 법령에 대해 신설 7건, 강화 26건 등 총 3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3건중 33건 모두를 원안의결하였음

국민안전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	제416회 예비심사 (2014.4.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유도등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	제416회 예비심사 (2014.4.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422회 예비심사 (2014.5.3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422회 예비심사 (2014.5.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423회 예비심사 (2014.6.5)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423회 예비심사 (2014.6.5)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제506회 행정사회분과위 (2014.6.5)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제424회 예비심사 (2014.6.12)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9)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509회 행정사회분과위 (2014.7.25)	원안의결 6	신설 6 (중요 2, 비중요 4)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33회 예비심사 (2014.8.14)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1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제439회 예비심사 (2014.9.26)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1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제445회 예비심사 (2014.11.7)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13)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제452회 예비심사 (2014.12.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33**	**신설 7, 강화 26 (중요 3, 비중요 30)**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소방신제품설명회를 통해 채택된 동영상 피난유도방식이 유도등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험방법 신설 등에 따른 수수료 산정, 시야각시험(신설), 그림문자 색상 및 색도시험(패널식) 및 진동시험(개정)에 대한 수수료 신설 및 조정 **강화**

심사결과 새로 추가·개정되는 시험항목에 대해 기존 형식승인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 및 재조정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와의 수수료 협의결과 이견이 없고 개정에 따른 기존 유도등 수수료는 거의 차이 없으며, 동영상 방식 유도등 수수료는 기존방식보다 오히려 1,801천원 저렴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다른 소방용품의 수수료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2) 유도등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소방신제품설명회를 통해 채택된 동영상 피난유도방식을 유도등으로 추가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함. 제9조(피난유도표시 방법 등), 제16조(식별도 및 시야각시험) 제24조의4(진동시험) **강화**

심사결과 IT기술이 접목된 동영상 피난유도방식 유도등의 수용으로 기존의 인쇄방식(정지된 그림문자)에 움직이는 피난유도방식이 추가되어 피난유도에 대한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제품 설명회를 통해 채택된 동영상 유도등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구현하는 방식 등에 대한 시험방법 규정화가 필요하며, 강화된 진동시험은 국제표준인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60068-2-6(환경시험-진동)을 적용한 것으로, 다른 소방용품에도 이미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측면시야각 시험은 유도등에 적용할만한 국제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본의 유도등기구 및 피난유도등시스템용 장치기술기준에서 '각도 특성시험'을 준용한 것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기술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에서 기술기준을 이관한 것으로 실질적인 내용 변동이 없고 동영상 방식 도입을 반대하는 이견이 있으나, 동영상 방식 유도등은 '소방분야 신제품 설명회'를 통해 채택된 제품에 대한 방재청의 후속조치(제도권 수용 등)의 일환이고 동영상 방식으로의 강제사항이 아니라, 유도등의 구현 형태를 확대한 것으로 사업자는 기존 방식과 동영상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하지 않은 것이어서 원안의결

(3)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변경 **강화**

심사결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자의적 집행이 아닌 성능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여, 불법행위 근절효과가 있어 국민의 화재안전성을 높이기에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록 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수준도 과도하지 않으며 관계부처 또는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제2항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중대한 결함"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대한 결함에 대한 정의 및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중대한 결함이란 구조적 불량 등에 의하여 사용 목적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결함을 말하며 그 판단기준 마련 **강화**

심사결과 중대한 결함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이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오던 것을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중대한 결함에 대한 기준이 과하지 않다면 규제의 정당성은 확보된 것이며, 소방용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의 정도가 다른 것을 고려하여 규제대상을 차등화하고, 결점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규제대상의 명확성을 높였고 관계부처 또는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설정 **강화**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의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과태료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의무를 유도하는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정안은 과태료 처분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그 금액은 최저금액(10만원)으로 설정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되고 지방자치단체 및 검사기관에서 승강기 운행 실태점검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집행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승강기 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시 합격증명서 미부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추가하고, 검사기관 홈페이지 공지 등 홍보도 병행, 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까지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일몰을 설정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소방시설법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기준, 초기소화, 대피유도 등 조직편성 및 수행임무에 관한 사항과 조직의 점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강화**

심사결과 법률에서 자위소방대 편성을 의무화하고, 시행규칙에서는 그 세부기준 제시를 통해 안전관리기준을 체계화하는 것에 불과하고,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일본 등 외국사례와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 소방관서장에게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강화**

심사결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작동기능점검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고 전산망을 통해 점검결과보고서 전체가 아닌 약식 서식을 30일 이내 제출하게 되어 있어 추가 의무 및 비용도 미미하며, 현재는 실제점검 실시여부 및 고장난 소방시설등의 수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규제로 판단되고 이해관계자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연면적 5,000㎡, 16층 이상 →5,000㎡, 11층 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된 위험등급(2등급) 이상의 터널을 추가 **강화**

심사결과 층수가 11층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데, 아파트는 16층 이상의 경우에만 종합정밀점검 대상이여서 11층부터 15층까지의 아파트는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위험등급(2등급) 이상의 터널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터널은 다른 제연설비 의무 대상물에 비해 작동상태점검이 어려워 종합정밀점검이 요구되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며 해당 대상별로 보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터널의 관리주체는 국가·지자체) 화재예방으로 인한 편익은 일률적 측정 어렵고 이해관계자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법률에서 위임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가능 대상물의 범위 및 업무대행 내용 지정(업무대행 건축물의 범위 :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 미만, 대행 내용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사항) **강화**

심사결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대행할 수 있게 완화해 주었다가, 업무대행으로 인한 소방안전관리에 한계가 발생하여 업무대행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에 업무의 성격상 외부 인력에 의해 수행이 가능한 업무에 한하여 대행을 허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의 적정성도 충족되며 업무의 대행이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2급 대상물 → 2급 대상물, 1급 대상물 중 1만5천㎡ 미만의 건축물로 확대)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업무대행이 불가능해져도 대부분 방재실과 같은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가능한 조직을 갖추고 있어 추가고용비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종교시설중 사찰·제실·사당에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규정 삭제(목조인 것은 제외 유지), 요양병원의 자동소화설비 설치기준 강화, 공장·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강화, 자동화재속보설비(II형) 설치대상에 지하구 추가 **강화**

심사결과 사찰·제실·사당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제외시키고 있어 화재 안전과 타 종교시설인 교회, 성당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가 대부분인 요양병원은 화재시 대피가 곤란하여 자동소화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노인요양시설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최근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한 공장·창고의 화재로 인해 재산피해 및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공장·창고 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 필요성이 높으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방시설법」개정에 따라 방염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강화**

심사결과 법률 개정전에 방염업자가 통지의무 위반을 한 경우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던 것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제재를 완화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기준도 동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관리업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동일유형 업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리업자가 제출한 점검능력 평가자료는 평가결과의 결정과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단호한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점검 실시 의무화 **강화**

심사결과 1.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관리 : 원안동의하되 부대권고 (1) 민간의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규제대상자에 대한 예산지원검토, 2) 규제대상기관이 방대하므로 시설의 규모 및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 등의 방안 검토 필요)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훈련 : 원안동의하되 부대권고 (1) 재난관리에 실질적이 도움이 되는 매뉴얼이 작성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필요, 2) 매뉴얼에 따른 훈련대상에 시설물의 종사자 포함 범위 등에 대한 정치한 검토 필요)

(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4)

심사내용 상위법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시설 설치대상을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로 변경,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31개 개발사업에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저감시설의 의무가 있었고,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도 규제 대상으로 확대 **강화**

심사결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 및 우수의 단기 유출량 증가로 발생하는 도심지 침수피해 방지를 원인제공자인 민간 개발사업 시행주체도 담당할 필요성이 있고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단독주택에까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하고, 물순환 기본법 등에서 건설계획 수립시 빗물저류 및 침투시설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며, 피규제대상자는 1,780건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비용 개소당 1.2백만원 등 총 21억 36백만원 소요 예상되고, 피규제자는 저류시설내 저류된 빗물을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재활용하여 개소당 매년 상·하수도요금 등 2.4백만원 절감으로 단년도에 투자비용전액 회수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부처/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법률 개정으로 인해 대행자 대행업무가 4개에서 6개로 변경, 신규 2개 업무 대행자 등록요건에 필요한 기술인력 추가 **강화**

심사결과 피규제자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법인)의 수가 192개 업체로 적고, 대행자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늘어난 것으로 규제 강화가 아니고, 신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인력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법률 개정으로 대행자의 업무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이 가능하여져,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실태점검의 방법 및 대상 등을 규정 **강화**

심사결과 피규제자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법인)의 수가 192개 업체로 적고, 실태점검의 방법 및 대상이 방재관리대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인력사항을 점검하고 법상 의무사항들을 점검하는 수준이여서 과도한 실태점검이 아니고, 사전에 대행자에게 미리 통보하는 등 절차적인 규정도 마련하여 피규제자에게 비합리적인 요구가 없어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방재관리대책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소방재전문인력인증서를 발급일부터 3년마다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강화**

심사결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 발생 빈도 및 피해규모가 급증하는 등 재난환경 변화가 심해 최초에 합격한 이후 교육을 통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추가 보수교육이 필요하고, 피규제대상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업체(192개)에 소속되어 현재 일선에서 활동 중인 1,171명이고, 필요·최소한의 교육시간(대행업무 추가분야 교육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술인력 1인당 85천원 정도 교육비용이 소요되어 3년간 약 99백만원(매년 33백만원)의 규제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문화재 수리기술자, 영양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지속적인 지식함양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9)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6)

심사내용 연안체험활동 보험금액 **신설**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연안체험활동의 유형을 수상형 체험활동과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구분하고 보험금액은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이상, 부상의 경우에는 1급 1,500만원이상, 2급 800만원이상 등으로 정함

* 수상형 체험활동 : 선박·기구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수중형 체험활동 : 호흡용 공기통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심사결과 보험가입대상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지만, 실질적인 비용부담 주체는 체험활동 이용자일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사고발생우려가 높은 수상형·수중형 연안체험활동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고, 보험금액은 유사입법례를 따르고 있는 등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연안체험활동의 제한 **신설**

-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 ◦ 연안체험활동 중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 ◦ 연안체험활동 인근해상에서 선박 등의 조난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 ◦ 해상교통량이 복잡한 해역에서 연안체험활동을 하려는 경우
  - ◦ 그 밖에 관할 해양안전서장이 사고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결과 연안체험활동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판단이 중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체험활동 제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신설**

- 법에서 위임한 위반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마련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않은 자	50	100	300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다. 법 제12조의1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라.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50	150	300
마.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00	200	300
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0	200	300
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자	20	50	100

심사결과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시 이견 없으며 타입법례와 비교시 위반횟수별 부과체계는 낮은 수준이어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 일반적 부과체계 : 1차 위반시 50%, 2차 위반시 80%, 3차 위반시 100% 부과

심사내용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교육 **신설**

–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안전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 규정

(안전관리요원 자격)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심폐소생술 가능한 자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수상형 체험활동은 참가자 10명당 1명, 수중형체험활동은 참가인원 5명당 1명 등

(안전장비) 비상구조선은 참가자 인원의 100%이상 탑승가능, 구명조끼는 참가자의 110% 이상 등

(교육시간)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은 2년마다 4~6시간

심사결과 규제비용이 연간 약 171억원 수준으로 많고,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교육시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연안체험활동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등도 체험활동 참가자의 사고예방과 사고시 참가자 전원을 구조할 수 있는 규모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연안체험활동 신고 **신설**

– 연안체험활동의 신고 절차·방법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연안체험활동 중 위험도가 높은 체험활동*을 정함

◦ 연안체험활동 계획신고서를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안전관리요원·안전장비 배치내역, 보험가입 증명서류 첨부

심사결과 신고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하며(계획서 제출 등), 타입법례(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의 청소년활동 관련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와 유사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의결

심사내용 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신설**

–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연안체험활동 장소에 출입하여 안전점검을 할 사항* 및 시정명령을 받은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시정명령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구명조끼 착용여부(일반형 체험활동은 제외) 및 각종 안전장비 관리상태 적정 여부

심사결과 규제비용이 미미한 반면 사고예방을 통한 사회적 편익은 매우 크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구명조끼 미착용 등 발생 시 시정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안전을 위해 체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시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4)

심사내용 다중이용업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23조 별표6에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을 정함(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및 내부구조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완공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사용(영업)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부과) **강화**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범위 및 상한 금액 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설정하고,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와 완공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를 금액을 달리하고 영업장 내부구획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타입법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아 적정성을 갖추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실내장식물에 대한 조치명령 및 영업장의 내부구획관련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정함 **강화**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범위 및 상한 금액 내에서 이행강제금 금액을 설정하고, 다중이용업주 등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1차적으로 시정보완명령(조치명령)과 과태료를 병행부과하고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제재를 가해도 이를 보완하지 않은 업주에게 의무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금액이 필요하고, 소방시설법 등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시정보완명령 불이행시 행정

형벌을 내리는 것에 비해 완화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적정성도 갖추었으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다중이용업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장 내부구획시 불연재료 사용 및 천장 속까지 구획을 하게 되었고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대한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배관 및 전선관 등이 영업장 또는 천장속 내부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틈이 생긴 때에는 내화충전성능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메우도록 의무를 부과함 **강화**

심사결과 법에서 규정한 내부구획에 불연재료를 사용하였으나, 틈이 발생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화재취약요인 제거의 효과가 없는 바, 상위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내화충전성능 재료의 사용은 필요하고, 타입법례를 볼 때, 화재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해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틈을 메울 것을 동일하게 의무로 부과하고 있고 피규제대상은 앞으로 일어날 대상이므로 정확한 측정은 곤란하나 다중이용업소를 하려는 자 또는 영업 중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자(완비증명서 발급)로서 3년간 발생추이를 보면, 약 17,000개로 추정되며 내화충전제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업소별로 최대 약 6만원으로 규제비용은 크지 않고, 화재발생시 연소 확대 방지로 생명 및 재산 보호의 편익은 클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로 표기(상영)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방한 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외국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공항 및 숙박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외국어 등을 병기하여 피난안내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외국어 표기(상영)의 대상자는 신규업소 및 내부구조 변경업소 등 앞으로 일어날 일이므로 피규제자 측정이 곤란하고, 외국어 병기는 프로그램 수정사항으로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등으로, 유·도선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토록 규정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 **신설**

심사결과 양도·합병·상속과 경매·환가·매각이 물권 인수 후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하게 면허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여객선을 관할하는 해운법에 동일한 규정이 존재하고, 시설과 설비를 상실한 것은 면허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없어지게 된 것이므로 사업권을 승계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현행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출항·입항기록관리 선박의 경우 승객이 승선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 **강화**

심사결과 승선신고서 작성은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나,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제도시행의 실효성 저하 및 사업자 등의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도선과 비슷한 여객선에 대한 법률인 「해운법」에도 유사한 규정을 두어 승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도선사업법 제3조에 면허(신고)이후 면허(신고사항)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던 것을 과태료 부과사항에 포함시킴 **강화**

심사결과 면허(신고확인) 변경사항 대상은 유·도선 및 승객의 안전과 연결되는 사항이나, 변경사항 미신고 시 이에 대한 처분규정이 없어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재규정이 필요하고, 면허(신고확인)를 받지 않는 경우와는 차이를 두어 변경사항 미신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어서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유·도선 승객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유·도선 면허발급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률근거 마련 **강화**

심사결과 피규제자수는 440명 수준이고, 현재도 면허시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추가 규제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면허시 조건부여 요건 및 절차 등을 법령상 마련함으로써 면허조건의 실효성 확보 및 재량행위 투명화가 기대되며, 유사입법인 해운법 등에서도 면허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고, 관계부처나 이해관계단체와도 협의하여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휴업·폐업·운항중단의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휴업기간은 연간 도선사업은 6개월, 유선사업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피규제자수는 유·도선사업자 440명 수준, 휴업/폐업/운항중단의 기준이나 휴업기간 상한설정에 따른 규제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없는 휴업 방지를 통해 이용승객에 대한 편의제공 편익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며 유사입법인 해운법에서 휴업기간 상한을 설정하고 있고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한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관계부처나 이해관계단체와도 협의하여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 등을 위해 유·도선 사업자에게 행하는 개선명령 사항에 면허조건 이행 등을 추가 **강화**

심사결과 피규제자수는 유·도선 사업자 440명 수준, 법령에서 정하는 유·도선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제비용 발생은 미미하고, 의무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적 편익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면허취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개선명령을 통한 의무이행 기회 부여로 사업자의 부담 완화로도 작용하고, 유사입법인 해운법의 예를 따르고 있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관계부처와 이해관계단체와도 협의하여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13)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 및 5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의 종류를 정하고,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약물(인사혁신처장 고시 예정) 등의 복용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의 부정행위 종류를 정함 **강화**

심사결과 수험생의 예측가능성과 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행위의 유형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 법령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규정만 있고 부정행위의 구체적 기준이 없음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것이며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근거 마련은 필수적이고, 규제수준도 유사법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규정과 유사하며, 관계부처 협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4. 법무부

김 한 필 사무관
T 044-200-2442 E kimhanpil@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출입국관리법, 인신보호법 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5건, 총 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건 중 4건은 원안의결, 1건은 개선권고로 의결하였음

법무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인신보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4-02-06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4-09-24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신설 5 (중요 1, 비중요 4)**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인신보호법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수용자의 구제청구 고지 등의 의무 **신설**

– 수용자(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가 피수용자*를 수용할 경우

*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지자체·공법인·개인·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복지·수용·보호시설(수용시설)에 수용·보호·감금되어 있는 자(체포·구속된 자 등 제외)

심사내용 ㉠ 피수용자가 지정하는 구제청구자* 중 1인 이상에게 인신보호법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

* 법원에 위법한 수용 등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피수용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검사 등)

심사결과 구제청구자 중 피수용자가 지정한 1인 이상에게 구제가 가능함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시설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외부의 도움을 쉽게 요청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제청구자가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고지 의무의 적정성 인정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 정신병원피해자 인권찾기 모임에 접수된 피해사례 817건 중 지인이 인신보호제도를 알고 있던 사례는 8건, 구제청구 인용이 확인된 사례는 2건 (2건 모두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

심사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수용자가 고지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경우 고지 여부 확인·점검이 곤란하며, 명확한 내용 전달·인지가 어려우므로 서면 고지가 필요하며, 서면 고지 의무를 모든 수용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강제수용이 가능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정함으로써 규제 범위 한정하고 있으므로 과도하다 보기 어려운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 수용시설 내에 인신보호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위법하게 강제수용된 피수용자가 폐쇄적인 수용시설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은 기본적 사항이며, 피수용자가 서류를 구비하기 위한 대안(피수용자 모두에게 서류 배부)보다 완화된 수준이므로 규제의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규정

심사결과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는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며, 현행 인신보호법에서 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유사사례를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인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신보호관의 요구에 대한 협조의무 **신설**

- 인신보호관은 위법한 수용 여부, 고지 및 서류 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용자에게 다음 각 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피수용자 및 시설 종사자와의 면담, 피수용자의 수용·보호·감금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수용시설 내 출입 및 현장 확인 등

심사결과 위법한 수용 여부, 피수용자 등에 대한 고지 여부, 구제 청구를 위한 서류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사례(정신보건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보다 완화된 수준이므로 규제의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 시설의 주기적 업무보고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확인, 시설 출입·점검 및 환자 면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국가인권위는 구금·보호시설과 관련한 진정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 출석 요구, 진술 청취·제출, 관련 자료 제출, 시설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규정

심사내용 피수용자 수용의 임시해제 등 **신설**

– 수용자가 구제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에 ㉠ 피수용자를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피수용자를 수용해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신보호관에게 해제 일시·장소 및 사유를 통보하도록 규정, ㉢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규정

심사결과 관할법원의 인신보호 결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시설로 이송(또는 수용해제 후 재수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의 필요성 인정되며, 해외 유사사례보다 완화된 수준인바,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 과태료 부과의 경우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며, 유사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인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2)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사업장 등 출입 및 조사 **신설**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용의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 서류 또는 물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과 불법고용 예방을 위해 필요성 인정되며, 본 제도의 그 운용에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인권침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요건, 대상, 범위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수정·보완토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신설**

– 출입항보고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

심사결과 안전한 국경관리 및 사고 시 대비를 위하여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제재토록 하여 규제의 적정성 또한 인정되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동의

5. 경찰청

김 한 필 사무관
T 044-200-2442 E kimhanpil@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비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5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9건, 총 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건 중 8건은 원안의결, 1건은 개선권고로 의결하였음

경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예비심사 2014-01-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경비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예비심사 2014-04-25	원안의결 5	강화 5 (비중요 5)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4-05-16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4) 도로교통법 시행령	예비심사 2014-12-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예비심사 2014-12-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9**	**강화 9 (중요 1, 비중요 8)**

나.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강화**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의 '표시' 및 '조작'을 금지(법 제49조)하는 제한 규정과 이에 대한 벌칙규정*(법 제156조)을 구체적으로 마련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15점) 및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기준을 추가

심사결과 연구결과 DMB를 시청(58.1%) 및 조작(50.3%)하게 되면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이 음주운전의 경우(72.0%)보다 낮아져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운전자의 주의력 제고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른 유사사례에서도 범칙금과 벌점을 병과하고 있는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2) 경비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강화 5)

심사내용 경비업의 허가 **강화**

– '경비업(시설경비업 제외)의 경비인력 요건'에 경비지도사 1명이상 추가

심사결과 경비업법령상 경비인력 규정은 '상시고용'이 아닌 '확보'의 개념이며, 현재에도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체에서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이 신설되더라도 추가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결격 사유 **강화**

– 경비지도사 시험관련 부정행위자는 3년간 시험을 볼 수 없도록 배제

심사결과 선량한 시험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경비지도사 시험 부정행위자에게 일정기간 시험응시를 배제 필요가 인정되며, 타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시험 부정행위자를 결격사유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경비업자 준수사항 **강화**

– 경비업자에 대해 경비원의 근무상황기록부 작성(1개월 단위) 및 보존의무(1년간) 마련

심사결과 근무기록부 작성주기(1월), 보관의무(1년도)는 근무기록부 작성 및 보관의무를 부과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감안할 때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 판단되어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경비업자 지도·감독 **강화**

– 개정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정비*

* 개정법률에서 행정처분 사유 추가(6건)하고, 사유에 따른 처분기준 마련

심사결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위반행위 경중 및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신설 및 강화된 처분기준도 타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되어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 건축사법 시행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심사내용 기계경비 출동차량의 도색 등 **강화**

– 출동차량의 도색 및 표지 등 신고시 신고서 서식 및 시정명령 이행보고시 서식을 정함

심사결과 신고 및 이행 보고 시 서식을 마련한 것으로 개정 법률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적정하여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강화**

– 소음측정 방식과 관련, 5분씩 2회 측정에서 5분 1회 측정으로 조정

심사결과 측정횟수 조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은 인정되나, 집회소음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는 소음기준 강화를 통해 그 목적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고,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인 점, 측정기 기술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다른 분야의 측정기보다 정밀도가 낮은 점, 타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신뢰성, 예측가능성, 투명성과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시행령 별표2 비고 3의 5분을 10분으로 수정하고 확성기 소음측정방법에 대해서 10분 이상 1회 측정 평균값으로 하도록 개선권고

(4) 도로교통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요법규 위반시 과태료 가중처벌 규정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까지 확대

심사결과 현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법규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중처벌제도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감안할 때 교통약자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규제수단으로 판단됨, 또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간대에 한해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별도로 부담할 규제 비용은 없어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강화**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15점) 및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10점) 운전자에 대한 벌점을 각각 30점으로 상향

심사결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필요성 인정이 인정되며, 벌점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별도로 부담할 규제 비용이 없는바, 비중요과제로 원안의결

6. 국민권익위원회

김 해 영 사무관
T 044-200-2447 E geneve2@pmo.go.kr

가. 2014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4년도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개 법령에 대해 신설 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원안의결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4-3-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나. 2014년도 신설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 **신설**

– 공익침해행위 신고·처리 업무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 접수기관'**까지 추가하고,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사무도 현행 '공익신고,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에서 '조사기관'의 공익신고 처리'까지 확대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공익신고 접수기관 : 627곳 이상의 공공기관 등 (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접수기관	개소(수)	접수기관	개소(수)
중앙부처·청·위원회	23	수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244	국회의원	300
교육청	16	공직유관단체	44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보건소·소방관서, 교육지원청, 기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 등도 접수기관에 포함됨

심사결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공익신고 업무 수행을 위해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외에 '공익신고 접수·조사기관'도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 대상사무에서 조사기관의 경우 '공익신고 처리*'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상 공익침해신고의 업무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적정규제이므로 비중요과제로 분류, 원안의결

제12절 규제영향평가

문 유 진 사무관
T 044-200-2441 E yujin700@pmo.go.kr
최 병 근 사무관
T 044-200-2398 E cbk3095@pmo.go.kr

1.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요

가. 의의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이는 규제담당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설계시 복수의 규제 대안 및 비규제 대안을 폭넓게 비교·검토하고, 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의 비용·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제시토록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모하고 규제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나. 목적

(1)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 품질 제고

복수의 규제 대안 및 비규제 대안의 비교·검토를 통해 비용 효과적이고 품질 높은 최선의 규제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2)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 방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 등의 신설·강화를 방지한다.

(3) 규제담당자의 행정 책임성 제고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기존 규제의 정책목적 달성 정도, 규제 준수율, 규제비용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규제자가 납득 가능한 규제 대안을 설계하고 비규제 대안을 발굴하는 등 문제해결을 노력을 함으로써 규제담당자의 행정 책임을 제고한다.

다. 법적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제영향분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토록 규정(법 제7조1항)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시에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토록 규정(법 제7조2항)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관련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규정(법 제7조4항, 시행령 제6조 4항)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삭제 〈2006.3.3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1〉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1〉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연혁

우리나라는 1998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8년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2009년 경쟁영향평가, 2012년 기술영향평가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2. 평가항목 및 요소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분석서 기재사항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2. 규제의 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 사항
	4.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5. 규제의 존속기한

항 목	분석서 기재사항
	6. 현행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7. 규제체계도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 정의 – 정책목표 – 기대 효과 – 정부 개입의 필요성
	나. 규제 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
	– 규제 도입 목적
	– 규제의 타당성
	– 규제의 적정성
	다.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다.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2) 이해관계자 협의
	3) 규제집행의 실효성

3. 작성 대상 및 절차

가. 작성 대상

모든 신설·강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대상이 된다.(행정규제기본법 제7조1항)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여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술규제에 대한 중복성 여부의 3개 분야에 대한 규제의 적정성 및 규제 부담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경쟁영향평가(공정위), 중소기업영향평가(중기청), 기술영향평가(산업부)

나. 작성 절차

(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분석서를 작성한다.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은 규제 등록단위별로 실시하는 게 원칙이나, 2개 이상의 규제가 하나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연계 시행되는 경우 분석 내용을 통합하여 1개의 규제영향분석서로 작성이 가능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여야 하며,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시행령 제6조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수립·통보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 4항 및 5항)

(2) 규제영향분석서 공개 및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 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하고, 이 때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법 제 7조 2항, 시행령 제6조 3항)

(3) 자체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7조3항)

(4)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작성·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심사를 요청한다. 다만, 긴급하게 규제를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수 있다.(법 제13조 1항) 다만, 이 경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법 제13조 2항)

(5)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토대로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이 충실히 수행되었는지를 검토·심사한다.

- 문제가 정확히 정의되었는가?
- 규제의 신설·강화 등 정부의 조치가 정당한가?
- 복수의 대안을 검토하였는가?
- 규제의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 하는가?
-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춰볼 때 규제의 정도가 적정한가?
-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가?
- 규제 집행의 실효성이 있는가?

참고 : 규제영향분석 작성 및 심사 절차

법령절차	각 부처	규제개혁위원회
법령안 입안	• 법령 제·개정안 마련 및 규제 영향분석서 작성	
입법예고 및 입법예고안 등 송부	• 관련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 • 국무조정실에 입법예고안과 규제 영향분석서를 송부	•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규제개혁 작업단에 의뢰
각 부처 자체법령 심사	•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수정·보완 • 각 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규제개혁작업단)**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에 송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에 신설·강화 규제 심사 요청(규제영향분석서 첨부)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시 영향평가 결과의견 검토·반영 등
법제처 심사 등	• 법령 제·개정작업 진행	

4.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가. 개요

○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의 신설·강화규제 심사건에 대해 경쟁영향, 중소기업영향, 기술영향 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작업단에 분야별 규제영향평가를 요청·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심사시 작업단의 의견을 검토·반영한다.

○ 각 작업단은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에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규제심사 의뢰(부처→국무조정실), ②평가의뢰(국무조정실→작업단), ③의견수렴 및 평가(작업단), ④검토의견 제출(작업단→국무조정실), ⑤규제심사(국무조정실)

○ 분야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2013.4.15)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공정위) :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중기청) :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 기술규제개혁작업단(산업부) :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나. 경쟁영향평가

(1) 경쟁영향평가란

경쟁영향평가는 정부나 여러 규제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규제 또는 이미 도입한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평가하며,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한다.

(2) 추진경과

OECD경쟁위원회는 규제당국이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스스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며 2007년 경쟁영향평가 Toolkit을 제작하여 각 국가에 배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공정위가 담당토록 제도화

하였고 2010년 10월 OECD 경쟁위원회(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의 경쟁영향평가 제도 및 실제운용사례를 세계 최초로 발표하였다.

(3) 경쟁영향평가 목적

제안된 규제가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규제안의 도입단계에서부터 경쟁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신설·강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경쟁영향평가 대상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2014년도 경쟁영향평가 검토결과

국무조정실은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 23개 부처(청)의 246개 법령(시행규칙, 고시, 지침 포함) 614건의 규제에 대해 경쟁영향평가를 요청하였다. 작업단 검토결과, 총 15건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하고 3건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 미미' 의견 제시하였다. 작업단이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한 15건 중 9건이 규제조정실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반영(반영률 : 60%)되었다.

(6) 주요 사례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1	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국제설계 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은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음
2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수집·운반) 개정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일률적으로 모두 밀폐·압축·압착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건설폐기물과의 형평성, 신규진입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일부 보완 필요
3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품질책임자의 겸임금지	품질책임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정된 업무 외 겸임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혁신벤처기업 등에 대해서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바, 품질관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4	문화 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	간행물 정가 변경시 한국출판문화원 홈페이지 공표와 별도로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생산자인 출판사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영세사업자의 경우 경쟁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바, 이를 단일화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박사학위 소지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바, 석사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일정기간 있는 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란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평가하고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14,177건('13.6월 기준) 중 중소기업 관련 규제는 전체의 58.5%인 8,291건

(2) 추진경과

2008년 8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6차 회의를 통해 8개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중소기업 제도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중소기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개정을 개정하였다.

2013년 6월에는 중기영향분석 시 중소기업의 규제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였다.

(3)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목적

각 부처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및 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가 도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대상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법령(고시 등 포함) 중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을 피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소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며, 비영리 기업이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일부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5) 2014년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검토결과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에 26개 부처(청)의 240개 법령(시행규칙, 고시 포함), 627건의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하였다. 작업단 검토결과, 42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21건이 반영, 14건이 미반영되었다.(7건은 규제심사 진행중)

(6) 주요 사례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1	고 용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및 적용범위	소규모중소기업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안전관리이행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므로 일정규모 미만업체는 공정안전보고서 대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규제부담완화 필요
2	해 양 수산부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	선박평형수 관련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선박평형수와 관련한 독립시험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전문인력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인력지정요건을 전공분야별 최소한의 인력으로 규정하고, 그 이상은 시험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3	국 토 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 평가	본 안은 기술력있고, 책임감있는 회사가 감리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수행실적 등급을 세분화하고, 수행실적 금액을 상향한 것이나, 개정안의 수행실적 기준 금액(최소 30억 이상), 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5년)은 중소기업규제와 관련성이 크므로, 수행실적금액이나 수행실적 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4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 명령 (징벌적 과징금제도)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기존 과징금 근거 조항과 함께 이중규제에 해당하며, 타 위법행위(측정기기 미부착 등)에 비해 가중된 규제를 도입하여야 할 이유 없음
5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 부과 징수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대상 행위별 처분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등기준 채택 검토 필요
6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 기관으로 "식약처장으로부터 설립허가나 인가를 받은 의료기기 관련 법인중식약처장이 지정하였고 시한법인"만 지정하는 것은, 영세한 의료기기제조업체들의 교육기관(시간) 선택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관련 전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여 지정함이 바람직함

라. 기술규제영향평가

(1) 기술규제영향평가란

기술규제*영향평가는 각 부처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시에 기존·유사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이나 시험·검사·인증 등

(2) 추진경과

2012년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기술기준, 인증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시에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을 개정하고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기술규제개혁작업단' 신설하였다.

(3) 기술규제영향평가 목적

각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기술규제가 글로벌스탠더드에 적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

기술규제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과 시험·검사·인증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기준은 상품(농산품 포함)의 특성·공정·생산·유통·폐기 및 서비스의 제공·절차 등에 관한 기준으로 그 준수가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강제되는 것을 말하며, 시험, 검사, 인증 등은 제품, 시스템, 자격심사,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평가하는 활동을 뜻한다.

(5) 2014년도 기술규제영향평가 검토결과

국무조정실은 "기술규제개혁작업단"에 17개 부처(청)의 170개 법령(시행규칙, 고시포함), 409건의 기술규제영향평가 요청하였다. 작업단 검토결과 126건의 분야별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83건이 수용(65.9%)되었고 43건이 수용곤란(34.1)으로 처리되었다.

(6) 주요 사례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명령 및 조사보고서 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15.1.1)될 경우 제출 자료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양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
2	국토교통부	철도용품기술기준	차량	폐지되거나 번호가 수정된 국가표준을 인용하고 있음
3	미래창조과학부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본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KN 61800-3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기준
4	안전행정부	승강기 검사기준	승강기 검사기준	16.3.1.4 나) 에서 KS B ISO 4190-1의 치수를 참고하고 있으나, KS B ISO 4190-1에는 그러한 치수가 없음
5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부품자기인증제 적용대상 항목확대	확대도입할 품목 중 6개 품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공산품과 중복됨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6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신고 및 품질검사 등	국내제조품과 수입품의 품질기준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WTO TBT협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수입품의 품질기준을 국내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7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우수직거래사업자 인증에 관한 사항	정책 목적의 이행수단으로 인증제도(직거래인증)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향후계획

2015년에는 규제영향분석서가 보다 내실 있게 작성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필수 작성요소를 보강하고 규제심사단계에서의 처리절차를 강화하여 한 단계 더 발전될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우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필수요소인 대안의 검토, 비용·편익 분석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복수의 대안 검토를 의무화하고, 비용·편익 분석시 계량적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가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의 충실도를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규제영향분석서 수범 사례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대국민 이해도 제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2014
Regulatory Reform Book

안전을 생각하는
규제개혁

Part 04

제4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14년 규제개혁 평가
1. 규제개혁 평가개요 ····· 682
2. 2014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 683
3. 부처별 평가결과 ····· 683
4. 분야별 평가결과 ····· 684

제2절 2015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1. 기본방향 ····· 686
2. 중점 추진분야 ····· 687

제1절
2014년 규제개혁 평가

김 유 일 사무관
T 044-200-2452 E enogengi@pmo.go.kr

1. 규제개혁 평가개요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노력 및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특히 규제를 받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단순히 '몇 건 개선했나'보다는 '얼마나 좋아졌느냐'에 평가의 주안점을 두었다.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 중 등록규제가 5개 이하인 7개 기관(권익위,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새만금청, 행복청)을 제외한 3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북관계 상황·통일정책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는 결측 처리하였다. 35개 기관의 1년간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를 장관급 기관(20개)과 차관급 기관(15개)으로 구분하였으며,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처업무특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4개 분과(경제1·2, 사회1·2)로 범주화(Grouping)하여 평가하였다.

평가항목은 핵심규제 개선, 기존규제 감축, 규제신문고 등 2014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규제시스템 개혁 과제들을 대상으로 하되, 홍보실적 및 규제개혁 만족도 등 국민성과체감 관련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규제도입시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여 규제비용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한 관련 시범사업 실적이 평가항목으로 추가되었다.

2008년부터 규제개혁추진에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및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연구기관(리서치 기관, 한국행정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다.

2. 2014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기존의 규제개혁이 부처 단위의 부분적 접근방식이라면, 2014년 규제개혁은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 규제개혁의 기본 틀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현장건의 과제 신속해결 및 끝장 토론 등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기반 틀을 마련하였으며, 규제기요틴, 핵심규제 개선, 경제활동 규제 10% 감축 등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 **(규제시스템)**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실시, 미등록규제 정비 등 규제시스템 개혁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전면 개정 추진
* **(규제기요틴)** 경제단체 건의 153건 중 '부처소명회의'를 통해 114건 개선 추진

또한, 규제신문고, 손톱 밑 가시 등 현장의 시급한 규제애로해소를 통해 규제개혁 공감대를 확산하였고, 국민소통을 위한 규제정보포털 개편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 **(규제신문고)** '답변-소명-개선권고' 3심제로 운영, '13년 대비 수용률 4.6배 상승
* **(손톱 밑 가시)** '14년 신규 발굴 과제 196건 중 194건(98.9%) 정부내 조치 완료
* **(규제정보포털)** 업종별·분야별 규제정보 제공, 규제개혁 추진상황 실시간 공개 등

3. 부처별 평가결과

평가결과,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가지고 규제시스템 개혁을 추진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규제총점관리제와 같은 자체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하거나(국토부), 규제개혁 포럼 등을 통해 권장목표 이상의 기존규제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산업부, 미래부), 또는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등을 위한 효율적 제도운영 인프라를 구축한 기관(농식품부, 환경부)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자체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구성, 규제개혁과제 특별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한 기관(산림청, 관세청) 및 기관장 주재 규제신문고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민의 규제건의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기관(식약처, 중기청)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개혁 건의 수용율이 낮고, 규제일몰적용 등 규제시스템 개혁 노력이 저조한 기관이 미흡기관으로 평가되었다.

4. 분야별 평가결과

가. 경제적 파급력 큰 핵심규제 개선

정부는 내수부진·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해서는 고질적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경제적 파급력이 큰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하였다.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통해 입지·건축·서비스산업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어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과제는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월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였다.

주요사례

- **(입지)** 산업단지 녹지내 공장증설시 지가상승분 부담금 50%이내 감면(산업부)
  → 여수산단내 기업대상 572억원 부담완화, 투자 2조7천억원 창출 예상
- **(건축)** 도로에 인접한 건물의 높이제한(도로사선규제) 폐지(국토부)
  → 용적률 10% 추가개발이 가능하여 연간 1조원 투자유발 효과
- **(의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여행·숙박업 등 추가(복지부)
  → '17년까지 해외 환자 50만명 유치로 진료수익 1.2조원, 고용유발효과 2만명 기대

나. 불합리한 경제활동규제 10% 감축

기존규제로 인한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일자리창출 및 투자활성화 등을 위해 경제활동규제 10% 감축을 추진하였다. 단순 일률적 규제폐지가 아닌 부처 특성을 고려한 권장목표율(△경제 12%, △사회 8%, △질서·안보 4%, 경제활동 관련 규제가 15건 미만인 기관은 자율 추진)에 따라 각 부처별로 감축규제를 발굴하여, 총 995건에 대해 정부내 조치를 완료하였다(10% 감축목표(987건) 초과달성).

주요사례

- 임의인증 감축(20개→14개) 등 중복인증 폐지(산업부)
  → 기업 인증비용 경감 및 통합인증(KS) 운영에 따른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성 제고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등록기준 요건 미신고시 행정처분 규정 폐지(미래부)
  → 정보통신공사업체(약 8,300개사)의 등록기준신고에 따른 소요비용(매년 12.8억원, 업체평균 50만원) 경감

다. 규제현장애로 해소

정부는 규제신문고, 손톱 밑 가시,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현장 규제애로를 파악,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답변실명제, 불수용시 소명 제도 등을 통해 전년대비 규제건의 수용건수 95배, 수용률 4.6배 상승 등 규제신문고가 규제애로 해소 창구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30회) 등을 통해 손톱 밑 가시 '14년 신규 발굴과제 196건 중 194건에 대해 정부내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서도 규제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소하였다.

주요사례

- 빵, 떡 등 즉석식품 택배배달 허용으로 즉석제조·가공업체(7만7,000개)소득 증대(식약처)
-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을 허용해 기업의 연계투자 기회 제공(환경부)

라. 규제개혁 소통

정부의 성공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을 전면 개편하였다. 모바일 서비스 실시, 정부내 포털과 연계한 규제정보 One-stop 제공 등 국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부처에서도 주요 규제개혁 과제 발표 및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보도자료 배포, 간담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고, 특히 주요 규제개혁과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인포그래픽·웹툰·지역 전광판 활용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다.

제2절
2015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이 덕 희 사무관
T 044-200-2397 E dhlee@pmo.go.kr

1. 기본방향

유로존의 장기침체, 엔저지속 등 대외적으로 상존하는 경제 불확실성과 가계부처 누적 심화, 기업수익성 악화로 인한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 심리 위축 등 대내적으로도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여전한 가운데 '15년 한해도 우리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있어 정부재정지원 확충 등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추진과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5년 규제개혁도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투자와 일자리창출 등 경제혁신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혁파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국민 생명과 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는 보완·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및 일선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함으로써 규제개혁 성과를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2. 중점 추진분야

가. 금융, 입지, 환경 등 핵심분야 중심 기존규제 정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기업활동 애로와 관련된 규제개선을 위해 먼저 금융, 물류, 환경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에서 제시한 규제개혁 핵심분야 과제 또는 다수부처 연계 과제 등을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경제활성화·투자촉진을 저해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불합리한 기존규제는 규제폐지·완화 등 개선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일몰설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나.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 종합정비

그동안 정부는 규제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그에 비해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정책집행의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한다.

그 정비대상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규제 수가 많은 국토·산업·농업·환경·문화관광·해양수산·지방행정·보건복지·산림·교통 등 10대 분야이며, 분야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일괄조사 함으로써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 근거가 없는 지방규제 또는 위임사항이 소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방규제들을 집중 발굴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다. 융복합·신산업 규제혁신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으나, 기존 산업 틀에 한정된 부처별 규제시스템은 신시장을 창출하고 활성화하기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칸막이형 규제를 벗어나 새로운 접근으로 융복합·신산업 규제혁신을 하고자 한다.

창조·융복합 규제애로 해소 지원창구(Creative Business Regulatory Support Center: CBRS)를 신설하여 기업 또는 국민이 규제완화 또는 개선, 인증 신설 등을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CBRS 처리절차에 따라 검토·운영하여 융복합·신제품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현장사례를 신속히 해소하고자 한다.

하나의 부처에 해당하는 규제가 아닌 복합 규제의 경우도 온라인은 규제정보포털, 오프라인은 우편 및 팩스, 방문접수 등으로 규제조정실에 접수 가능하므로 칸막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라. 규제시스템 과학화·선진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14년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규제품질을 한층 높이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확대 및 규제등록관리체계 개편 등 규제시스템의 선진화를 병행 추진할 것이다.

또한, 규제심사에 있어서도 비용·편익 분석의 내실화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생명·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는 보완·강화할 것이다.

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기업과 민생의 현장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간담회'를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개최하고, 협력채널도 업종별 협회와 지역별 기업협의회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내실있게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도 개최하여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활성화를 더욱 촉진해 나갈 것이다.

'14년 국민으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았던 규제개혁신문고도 건의자 면담 및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창의적인 대안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고질적 규제를 더욱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규제개혁 토크쇼 제작·방영, 홍보 대상·장소를 고려한 맞춤형 홍보, 규제정보포털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께 규제개혁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할 것이다.

2014
Regulatory Reform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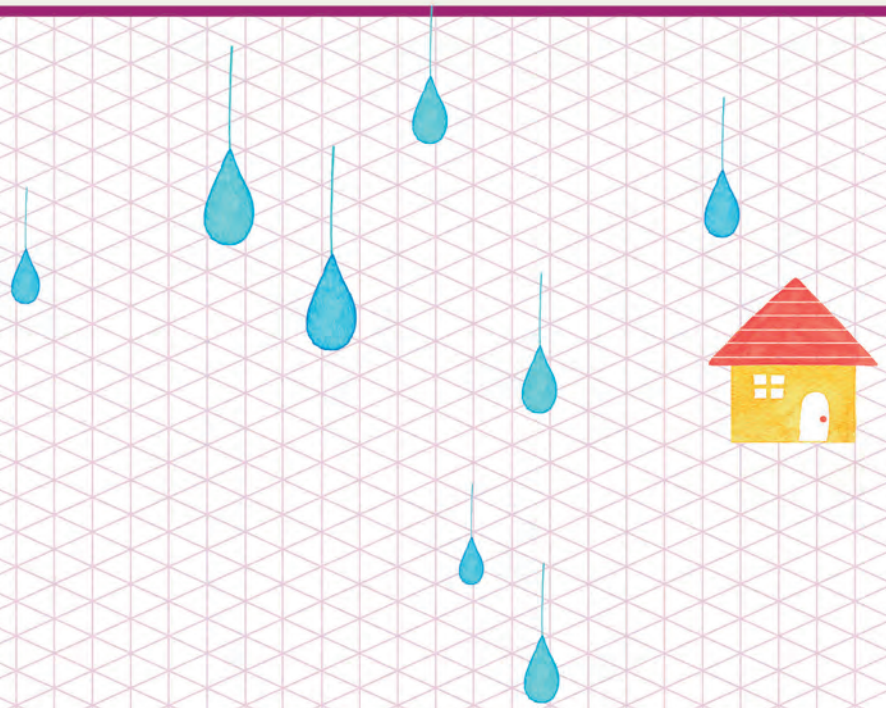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규제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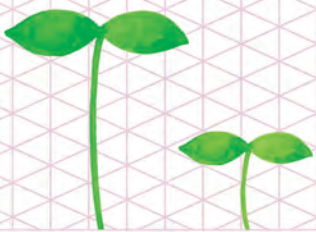

Part 05
제5장 부 록

제1절 규제개혁 관련 법령
1. 행정규제기본법 ····· 692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709
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 722
4. 규제개혁장관회의 운영훈령 ····· 728
5.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731
6.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733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일지
1. 본 회의 개최 일지 ····· 735
2. 경제분과위원회 개최 일지 ····· 737
3. 사회분과위원회 개최 일지 ····· 738

제3절 규제개혁 핵심사례 40선 ····· 740

제4절 2015년 행정규제 업무기준 ····· 754

제5절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매뉴얼 ····· 813

제1절
규제개혁 관련 법령

1. 행정규제기본법

□ 제 정 1997. 8.22 법률 제5368호

□ 일부개정 1998. 2.28 법률 제5529호

□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7호

□ 일부개정 2008. 2.29 법률 제8852호

□ 일부개정 2009. 3.25 법률 제9532호

□ 일부개정 2010. 1.25 법률 제9965호

□ 일부개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 일부개정 2013. 7.16 법률 제11935호

제1장 총칙 〈개정 2010.1.25〉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

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1.25]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개정 2010.1.25〉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7.1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7.16〉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전문개정 2010.1.25] [제목개정 2013.7.16]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5]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5]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0.1.25]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개정 2010.1.25〉

제17조(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2010.1.25〉

1.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삭제〈2009.3.25〉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1.25〉
[제목개정 2010.1.25]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7.16]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그 기존규제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끝낸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22조(조직 정비 등)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개정 2010.1.25〉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전문개정 2010.1.25]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5]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2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전문개정 2010.1.25]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5]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5]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5]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5장 보칙 〈개정 2010.1.25〉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5]

제35조(규제개혁 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5]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부칙 〈제5368호, 1997.8.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1年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法律 第4735號 行政規制管理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法 施行당시 旣存規制의 自體整備에 대한 特例)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 施行후 5年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月 31日까지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旣存規制의 自體整備에 갈음하여 이 法 施行당시 모든 소관 規制에 대한 年次別整備計劃을 수립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次別整備計劃 및 그 施行 결과를 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4條 (訓令·告示등의 再檢討)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 施行후 1年이내에 이 法 施行당시 施行중인 訓令·例規·指針·告示등에 規定된 規制에 대하여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令 또는 條例·規則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再檢討하여야 한다.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檢討 결과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令 또는 條例·規則에 근거하지 아니한 訓令·例規·指針·告示등에 規定된 이를 지체없이 廢止하거나 關係法令 또는 條例·規則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중 "다른 法令의 規定"을 "다른 法令(行政規制基本法을 제외한다)의 規定"으로 한다.

第42條중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通商産業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로 한다.

第62條第3號중 "制定 또는 改正"을 "改正"으로 하고, 同條第5號중 "行政規制"를 "企業活動에 관한 行政規制"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委員會는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調査·審査事項중 行政規制에 관한 法令·制度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行政規制基本法에 의한 規制改革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하며, 規制改革委員會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規制改革委員會가 審査할 것인지 여부를 決定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委員會는 規制改革委員會가 審査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關聯資料와 함께 規制改革委員會에 移送하여야 한다.

부칙 〈제5529호, 1998.2.28〉(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④ 省略

⑤ 行政規制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6條 중 "總務處長官"을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⑥내지 〈34〉 省略

第6條 및 第7條 省略

부칙 〈제7797호, 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 2008.2.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749〉 까지 생략

〈75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7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32호, 2009.3.25〉(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9965호, 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3〉까지 생략

〈70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7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35호, 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 일부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4호

□ 일부개정 2013. 3.23 대통령령 제2442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06.3.31〉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삭제 〈2006.3.3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06.3.31〉

④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1〉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

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2조(의견제출의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6.3.31〉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기타 참고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31〉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31〉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6.1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삭제 〈2006.3.31〉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 등)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실지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평가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점검사항
2. 확인·점검일정
3. 확인·점검자 인적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15681호,1998. 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규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의 규제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법령·조례·규칙이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규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 당시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정비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비계획에 다음 각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2. 법 시행일전 5년간 개정되는 아니한 규제
3.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9436호,2006. 3.31〉

이 영은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2〉생략

〈233〉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34〉내지 〈241〉생략

부칙 〈제20724호,2008. 2.29〉(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24429호, 2013.3.2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무총리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기획재정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으로 한다.

⑨ 생략

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2013. 5. 2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08.10.2. 개정)

②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1급 상당 고위공무원 이상인 관계공무원으로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2.7.6. 개정)

제2조의2 (분과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08.10.2. 신설)

제2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에 응한 경우 또는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회피한 위원은 관련 안건에 대해 법 제26조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의 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13.5.24. 신설)

제3조(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안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의 2(중요규제등의 결정)

① 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중요규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및 경제사회적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12.7.6. 개정)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정한다.('12.7.6. 개정)

1. 외국과의 협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입법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경우
2. 기타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3조의3(분과위원회에 안건위임)

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위임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2.7.6. 개정)

1. 안건내용의 특수성, 전문성 정도
2.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 각계의 다양한 시각이 고려될 필요성

제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08.10.2. 개정)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구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2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경제분과위원회
2. (삭제)
3. 행정사회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둘 수 있다.('08.10.2. 개정)

제6조(소관)

① 경제분과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행복도시건설청, 산림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13.3.23. 개정)

② (삭제)

③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해양경찰정,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기상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13.3.23. 개정)

④ (삭제) ('08.10.2.)

제7조(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08.10.2. 개정)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국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08.10.2. 개정)

제8조 (삭제) ('08.10.2.)

제9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08.10.2. 개정)

제4장 사무기구

제10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이 수행한다.

제11조(규제개혁실의 직무)

규제개혁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사항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인사·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08.10.2.)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제12조(심의안건 설명)

규제개혁실 실장과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발언할 수 있다.('12.7.6. 개정)

제5장 전문위원·조사요원 및 전문 연구기관 등

제13조(전문위원·조사요원의 구성 등)

① 전문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08.10.2. 개정)

③ 조사요원은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08.10.2. 개정)

제14조(공정위에 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08.10.2. 개정)

제15조 (삭제) ('08.10.2.)

제16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7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국무총리실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08.10.2. 개정)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규제개혁장관회의 운영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규제개혁을 효과적이고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규제개혁을 효과적·획기적으로 추진하고 그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개혁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규제개혁과 관련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산업 등 주요 분야의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4. 규제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관계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안건 및 보고 사항

제4조(회의의 구성 등)

① 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법제처장·중소기업청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기획 담당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9.〉

②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③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장의 직무)

①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7조(의견 청취 등)

회의의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제9조(조정회의)

① 관계 부처 간 이견 조율 등 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조정회의를 둔다.

② 조정회의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조정회의의 구성원은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국무조정실차장·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법제처차장·중소기업청차장 및 조정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부기관장을 포함한다)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9.〉

③ 조정회의의 의장은 조정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회의 또는 조정회의는 관계 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회의 또는 조정회의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00336호, 2015.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615호, 2013.8.16 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의 발굴과 규제 관련 건의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업 현장 애로사항의 발굴 및 규제 관련 건의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 현장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 관련 국민 건의사항의 접수에 관한 사항
4. 발굴·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5.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행 실태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 개선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추진단에는 공동단장 3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

② 공동단장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각각 겸임하고,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④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각자 대표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규제개혁위원회에의 보고)

추진단은 규제 개선의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추진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등의 개최)

추진단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제615호, 2013.8.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2.31] [국무총리훈령 제638호, 201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규제개혁작업단
3.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② 각 작업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각 작업단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각 작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2. 기술규제개혁작업단: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3.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규제관련 민원처리,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제4조(업무수행방법)

① 각 작업단은 국무총리실에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규제영향평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작업단은 국무총리실이 추진하는 일선 현장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개선방안 검토 및 현장 점검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각 작업단은 국무총리실에 반기별로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요청)

각 작업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작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일지

1. 본 회의 개최 일지

정 재 상 사무관
T 044-200-2416 E kkirri@pmo.go.kr

회차	부처명	안건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개선	철회	계
제339회 ('14.12.26)	권익위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	의결	계속심사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2	0	0	2
	기재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국조실	2014년도 규제신문고 운영성과	보고	0	0	0	0
제338회 ('14.12.12)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 고시 등 개정안	의결	0	2	1	3
	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의결	0	1	0	1
	금융위	보험업법 및 시행령, 고시 등 개정안	의결	1	4	0	5
	국조실	현장간담회 추진실적 보고	보고	0	0	0	0
제337회 ('14.11.14)	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0	3	0	3
	금융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의결	1	0	0	1
제336회 ('14.10.31)	방통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환경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6	0	0	6
	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고용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제335회 ('14.10.10)	미래부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 제정안	의결	0	1	0	1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의결	2	0	0	2
제334회 ('14.9.24)	방통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1	0	0	1
	방통위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의결	0	1	0	1

회차	부처명	안건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개선	철회	계
	방통위	긴급중지명령의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의결	1	0	0	1
	미래부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정안	의결	1	0	0	1
제333회 ('14.9.16)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	의결	1	0	0	1
제332회 ('14.9.12)	국조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보고	0	0	0	0
제331회 ('14.8.22)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보고	0	0	0	0
	국조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보고	보고	0	0	0	0
제330회 ('14.8.5)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보고	0	0	0	0
	국조실	규제개혁 홍보계획(안)	보고	0	0	0	0
	국조실	범정부 인증제도 개선방안	보고	0	0	0	0
제329회 ('14.6.13)	국조실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0	0	0	0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0	2	0	2
제328회 ('14.5.16)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부처재심사요청)	의결	0	1	1	2
제327회 ('14.5.2)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326회 ('14.4.18)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의결	0	1	1	2
	국조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촉안	의결	0	0	0	0
제325회 ('14.4.4)	국조실	규제시스템 개편 실행계획 보고	보고	0	0	0	0
제324회 ('14.3.21)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중기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제323회 ('14.3.7)	국조실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방안	보고	0	0	0	0
	중기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322회 ('14.2.21)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2	0	2
	국조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	0	0	0	0
제321회 ('14.2.7)	국조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	0	0	0	0
	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복지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0	0	0	
제320회 ('14.1.10)	국조실	2013년도 규제개선 평가결과	보고	0	0	0	0
	국조실	2014년도 규제정비계획 작성지침	보고	0	0	0	0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1	2
안건수 : 46				20	20	4	44

2. 경제분과위원회 개최 일지

최 병 근 사무관
T 044-200-2398 E cbk3095@pmo.go.kr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개선	철회	계
제485회 ('14.12.26)	국토부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안		0	1	0	1
	산업부	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안		0	1	0	1
제484회 ('14.10.31)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의결	1	1	0	2
제483회 ('14.8.22)	방통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2	0	0	2
	미래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0	0	1
제482회 ('14.6.3)	미래부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의결	1	0	0	1
	금감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의결	1	0	0	1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제481회 ('14.5.6)	국토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제480회 ('14.4.4)	금감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고시 등 개정안	의결	1	0	0	1
제479회 ('14.3.21)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의결	0	1	0	1
	금감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고시 등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478회 ('14.3.7)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산업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제477회 ('14.2.21)	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의결	2	0	0	2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보험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2	1	0	3
	산업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방통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제476회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0	2	0	2
제475회 ('14.1.24)	국토부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474회 ('14.1.10)	국토부	철도안전법 개정안	의결	1	0	0	1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의결	13	4	0	17
안건수 : 23				26	15	0	41

3. 사회분과위원회 개최 일지

안 호 사무관
T 044-200-2443 E anho1226@pmo.go.kr

회수	부처명	안건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개선	철회	계
500회 ('14.1.10)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교육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0	1	0	1
501회 ('14.2.7)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0	1	1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2	0	3
502회 ('14.2.21)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0	4
503회 ('14.5.2)	경찰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504회 ('14.5.16)	경찰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	0	1	0	1
505회 ('14.5.30)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506회 ('14.6.5)	안행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의결	2	0	0	2
507회 ('14.6.10)	안행부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	의결	3	0	0	3
508회 ('14.6.13)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의결	1	0	0	1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정안	의결	1	0	0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2	5	0	7
509회 ('14.7.25)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 실적 인정지침 제정안	의결	1	0	0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정안	의결	1	0	0	1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정에 관한 지침 제정안	의결	0	1	0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정안	의결	1	0	0	1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	의결	1	1	0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0	1	0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3	0	5
	해경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2	0	0	2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510회 ('14.8.22)	여가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식약처	약사법 개정안	의결	2	0	0	2
	고용부	특정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고시) 제정안	의결	0	1	0	1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511회 ('14.9.12)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512회 ('14.9.24)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결	0	1	0	1
513회 ('14.10.31)	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514회 ('14.11.14)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0	1	1
515회 ('14.11.28)	고용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0	2	0	2
	국민안전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516회 ('14.12.12)	식약처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0	1	0	1
	고용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0	1	0	1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환경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1	0	0	1
517회 ('14.12.26)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안건수 : 23				28	33	2	63

제3절
규제개혁 핵심사례 40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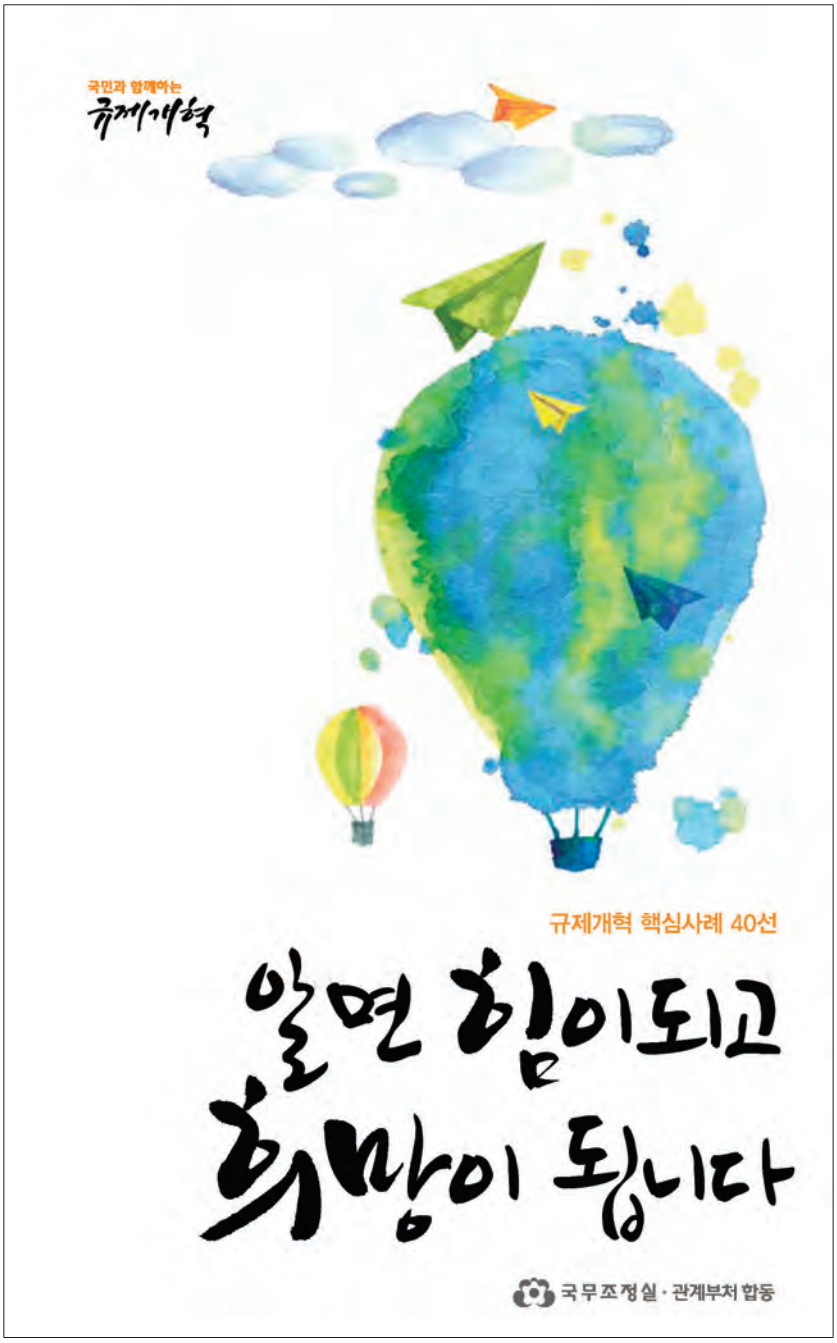

목 차

투자 활성화

01.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토지에 동일건물 연계건축 가능 (국토부, '14.4)
02. 산업단지 녹지 내 공장증설 시 지가상승분 부담금 50% 이내 감면 (산업부, '14.6)
03. 관광·산업단지 조성 시 지자체 보전산지 면적비율 초과 가능 (산림청, '14.9)
04. 산지에 10만㎡까지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산림청, '14.8)
05. 터미널·종합운동장 등에 도시계획 변경없이 복합시설 설치 가능 (국토부, '14.12 예정)
06.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국토부, '14.11)
07. 의약품, 해외 위탁제조 허용으로 사실투자 비용 절감 (식약처, '14.9)
08. 재이용 합판, 실외건축에 사용 가능토록 변경 (산림청, '14.4)
09.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가능 (환경부, '14.11)
10. 모든 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고용부, '14.9)
11.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 허용 및 건폐율 완화 (국토부, '14.10)
12. 공익용 산지에도 관광·휴양시설 설치 가능 (산림청, '14.12)

신산업 창출

13. 스마트 의료기기, 의료기기 신고 제외 (식약처, '14.8)
14. 제3국 간의 특송물품, 국내 반입 후 지연한 국제우편으로 환적 가능 (관세청, '14.5)
15. 주유소 부대시설에 허용되는 점포 확대로 주유업계 활성화 (안전처, '14.6)
16. 까다로운 자동차 튜닝규제 개선으로 튜닝산업 활성화 (국토부, '14.6)
17. 한글·영문, 출원서식 간편화로 특허출원 시점 단축 (특허청, '15.1 시행)

창업·중소기업 활력 제고

18. 창업기업의 공장 증설 시 부담금 감면 (중기청, '14.6)
19.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민간 이용을 통한 가치 재창출 (문체부, '14.7)
20. 소규모 식물가공업 허용으로 농가 소득 증대 (농식품부, '14.9)
21. 상수원 상류에 떡·한과·커피 공장 허용 (환경부, '14.12)
22.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 (고용부, '14.4)
23.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고용부·법무부 한곳에만 신고 가능 (고용부·법무부, '14.10)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24. 매출 2~3억원 소상공인도 카드수수료 인하 (금융위, '14.12 예정)
25. 빵·떡 등 즉석제조 식품 택배배달 공식 허용 (식약처, '14.10)
26. 개별포장 안 해도 생닭 판매 가능 (식약처, '14.10)
27. 휴일 예비군 훈련 인원 확대 (국방부, '14.1)
28.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억울한 과징금 1/2 감경 (여가부, '14.10)
29. 청문·입간판·처분뒷면 등 옥외광고 활성화 (행자부, '14.9)

국민 불편 개선

30. 추가합격한 대학 등록금도 대출 가능 (교육부, '14.1)
31. 부녀자 소득공제 받아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국세청, '14.2)
32.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무료 발급 (고용부, '14.6)
33. 국내에서 영어 등 외국어 어학연수 가능 (교육부·법무부, '14.5)
34. 공인인증서 없어도 온라인 결제 가능 (금융위, '14.8)
35. 국산치 부품제작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 (국토부, '14.5)

안전한 사회 구축

36.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환경부, '15.1 시행)
37. 원자력 사업자에 대한 배상조치액을 늘여 적정한 피해보상 가능 (원안위, '14.12)
38.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 불법사용 방지 (미래부, '14.2)
39. 승객 안전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차량 내 CCTV 설치 (국토부, '14.1)
40. 작업장 안전을 위해 사업장 내 대형문 설치 시 소형 수동문 허용 (고용부,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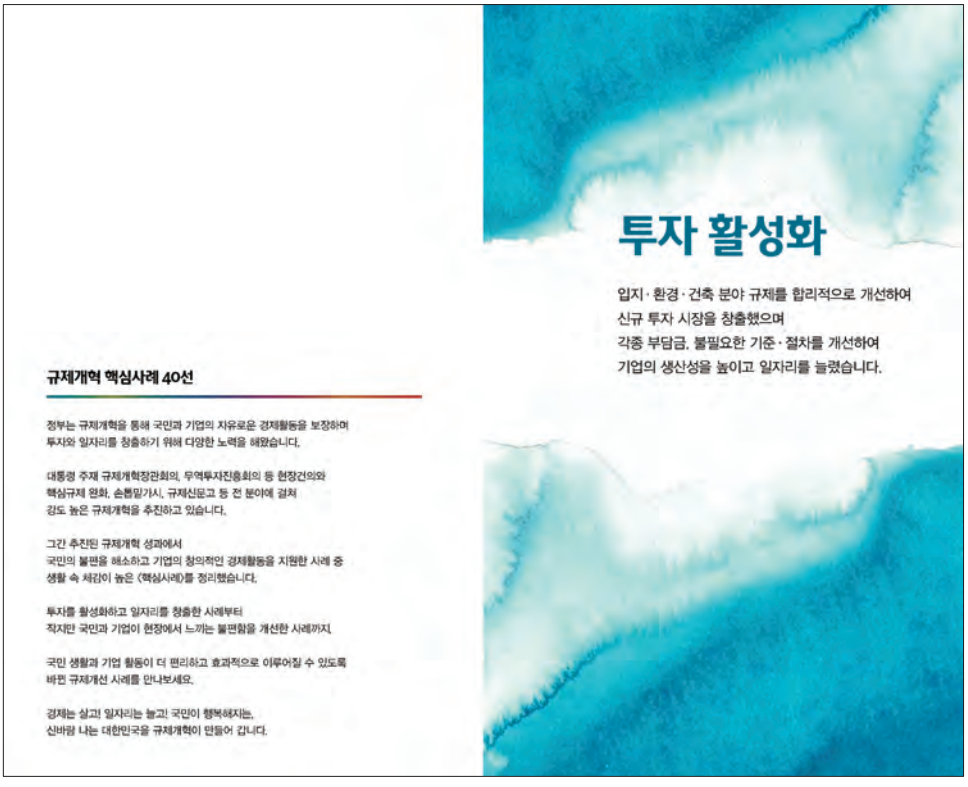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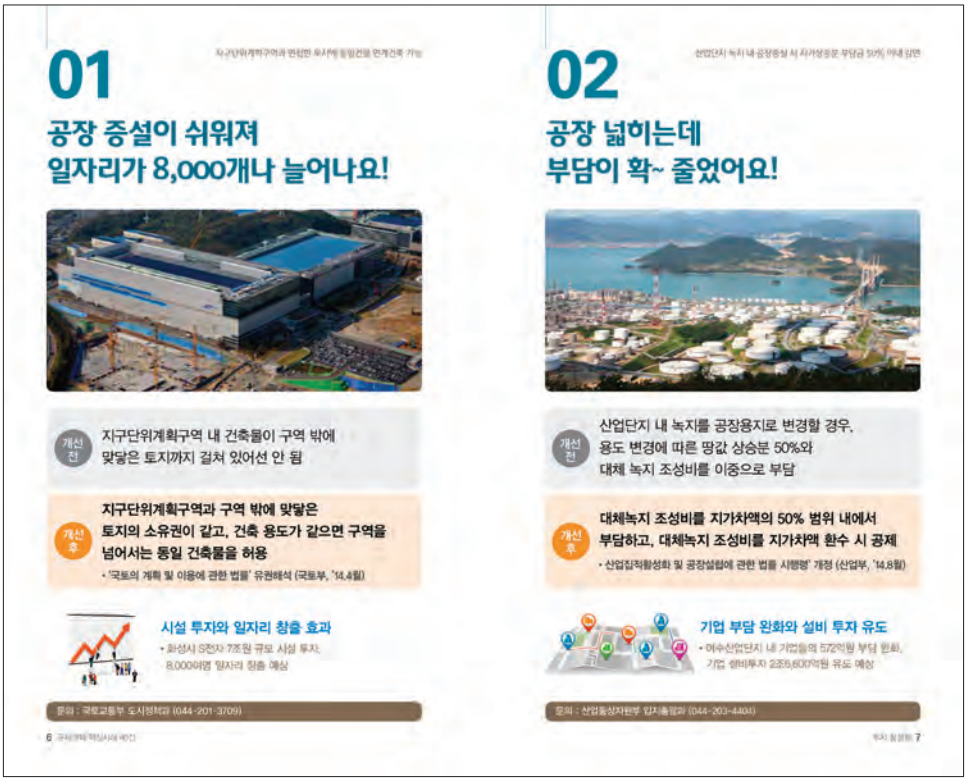
01
공장 증설이 쉬워져
일자리가 8,000개나 늘어나요!
개선 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이 구역 밖에
맞닿은 토지까지 걸쳐 있어선 안 됨
개선 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구역 밖에 맞닿은
토지의 소유권이 같고, 건축 용도가 같으면 구역을
넘어서는 동일 건축물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 ('14.4월)
시설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
• 화성시 S전자 7조원 규모 시설 투자,
8,000여명 일자리 창출 예상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6
02
공장 넓히는데
부담이 확~ 줄었어요!
개선 전
산업단지 내 녹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할 경우,
용도 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분 50%와
대체 녹지 조성비를 이중으로 부담
개선 후
대체녹지 조성비를 지가차액의 50% 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대체녹지 조성비를 지가차액 환수 시 공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산업부, '14.8월)
기업 부담 완화와 설비 투자 유도
• 여수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572억원 부담 완화,
기업 설비투자 2조6,600억원 유도 예상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0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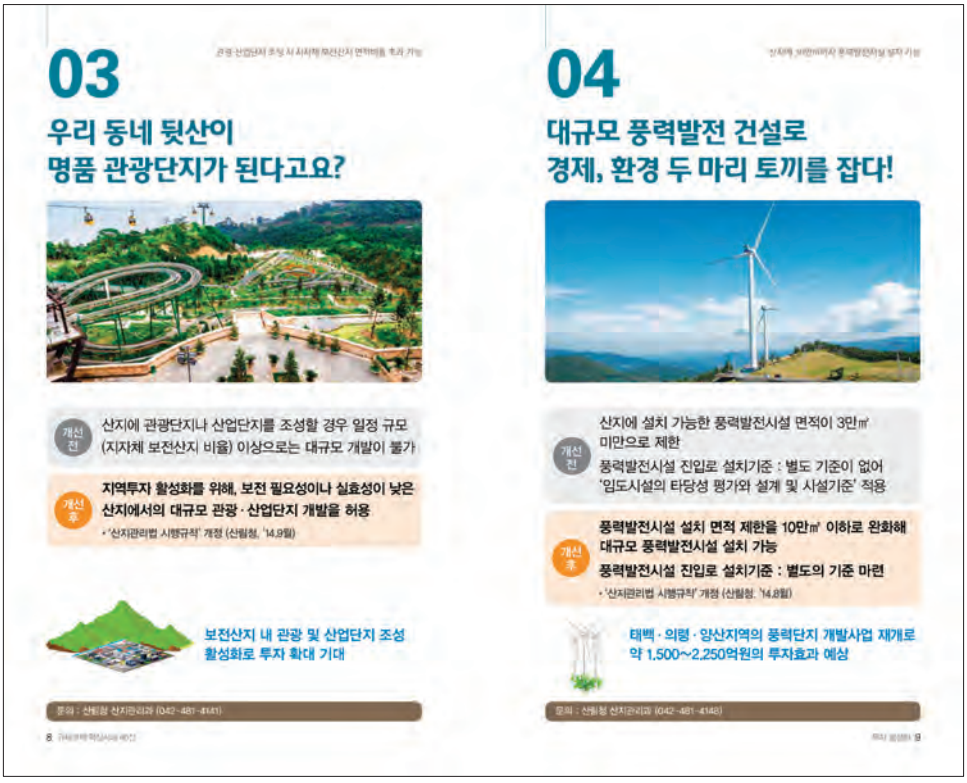
03
우리 동네 뒷산이
명품 관광단지가 된다고요?
개선 전
산지에 관광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일정 규모
(지자체 보전산지 비율) 이상으로는 대규모 개발이 불가
개선 후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전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낮은
산지에서의 대규모 관광·산업단지 개발을 허용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산림청, '14.9월)
보전산지 내 관광 및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로 투자 확대 기대
문의 :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8
04
대규모 풍력발전 건설로
경제,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다!
개선 전
산지에 설치 가능한 풍력발전시설 면적이 3만㎡
미만으로 제한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설치기준 : 별도 기준이 없어
'임도시설의 타당성 평가와 설계 및 사설기준' 적용
개선 후
풍력발전시설 설치 면적 제한을 10만㎡ 이하로 완화해
대규모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설치기준 : 별도의 기준 마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산림청, '14.8월)
태백·의령·양산지역의 풍력단지 개발사업 재개로
약 1,500~2,250억원의 투자효과 예상
문의 :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2)
9

05

진정한 멀티플렉스란 이런 것!

개선 전
터미널, 도서관, 종합운동장 등의 기반시설 내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매점, 화장실 등 제한적인 편익시설만 설치가 가능

개선 후
기반시설 내 소극장 · 어린이집 · 생활체육시설, 상점, 병원, 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 설치를 허용
•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법제심사 중 (국토부, '14.12월 예정)

전국 5,300㎢(서울면적 8.7배) 기반시설 투자 활성화 기대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10

06

도로변 규제 풀리니 '여의도 18배' 공간이 살아났어요!

개선 전
고속도로변과 도로변에 일정 너비의 접도구역을 지정해 건축을 제한
(고속도로 20m, 국도 · 지방도 · 군도 5m)

개선 후
고속도로변의 접도구역 폭을 10m로 축소하고 군 · 도 지역의 접도구역을 폐지해 도로변에서의 건축물 증 · 개축이 가능
• '도로법 시행령'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 (국토부, '14.11월)

여의도 면적의 18배(51.76㎢)에 상당하는 도로변 토지 이용이 활성화

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0)

11

07

공장 없는 제약회사, 글로벌 경쟁력이 자라는 요람이에요.

개선 전
국내제조업체 간 의약품 위탁제조만 허용

개선 후
특수설비가 필요하거나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특수제형 의약품에 대해 해외 위탁제조전문기업을 통한 제조를 허용
•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개정 (식약처, '14.9월)

글로벌 의약품 기술을 초기 시설투자(200~1,500억원) 부담 없이 상용화 가능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620)

12

08

저비용 합판 사용 허가로 건축·포장업계 비용이 줄었어요!

개선 전
국내 합판 유통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저비용 합판(E2)이 법적으로 유통 금지
각 장의 앞 · 뒷면에만 합판 품질표시를 할 수 있어 묶음 포장된 합판을 일일이 풀어야 하는 불편 발생

개선 후
저비용 합판(E2)의 실외 사용 허가
합판의 옆면에도 품질표시가 가능해져 업계 비용 절감
• '합판 규격 · 품질 기준 고시' 개정 (산림청, '14.4월)

건설업계 및 수출 포장업계, 연 5,894억원 부담 경감 예상

문의 :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4204)

13

09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가능

규제개혁, 탄산수 시장을 톡~ 쏘다!

개선 전
먹는샘물 제조공장에는 먹는샘물 외에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탄산수 생산이 불가능

개선 후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 시설을 허용해 탄산수 생산 가능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14.11월)

탄산수 생산의지가 있는 먹는샘물 기업(21개)의 연계투자 기회 제공으로 420억원의 신규 투자 유도

문의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5)

14 규제개혁 백서 사례 소개

10

모든 사업장에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카드로 냅니다!

개선 전
고용·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부재
-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회사의 체납보험료의 경우에만 허용

개선 후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고용부, '14.9월)

기업의 일시적 자금운용 애로개선 및 보험료 카드납부 200억원* 예상
- (추정) 고용·산재보험 납부총액 1조원, 신용카드 납부율 2% 가정시 200억원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1)

15

11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 허용 및 건폐율 완화

좁은 공장 넓히니, 답답한 속이 시원하게 풀리네요!

개선 전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 증축을 제한 (건폐율 20%)

개선 후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들어섰던 공장은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40%까지 증축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토부, '14.10월)

녹지·관리지역 내 4,000여개 기존 공장 시설 투자 시, 약 7,000억원 투자유발 예상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16 규제개혁 백서 사례 소개

12

공익용 산지에 관광·휴양시설 설치 가능

중복규제 폐지하니 지역 관광 살아나네!

개선 전
공익용 산지에 관광·휴양시설 설치 불가

개선 후
공익용 산지에 관광·휴양시설 설치 가능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예정 (산림청, '14.12월)

과도한 중복규제 폐지로 지역 투자·경제 활성화에 기여
- 양양국제공항주변 민자 유치사업 : 665억원 투자 유치, 500여명 고용효과 예상

문의 :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17

신산업 창출

신기술 상용화 등 새로운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었던
진입 · 업종 · 절차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지원했습니다.

13 나의 건강, 이젠 스마트폰으로 챙겨요!

개선 전
스마트폰에 운동 · 레저용 심(맥)박수계를 탑재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함
모바일 의료용 앱을 판매하려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필수

개선 후
운동 · 레저용 심(맥)박수계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해 별도 허가 없이도 제품 출시 가능
모바일 의료용 앱과 이를 탑재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면제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 (식약처, '14.4월)
-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식약처, '14.8월)

조기 시장 진입 및 스마트폰 수출 증진으로 국익 창출
- 통신기기 및 가전제품 소매점 약 4만451개소('12년 기준), 별도 신고 없이 판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06)

14 대한민국, 특송물품 물류허브로 거듭나요!

개선 전
공항으로 들어온 제 3국행 특송화물을 국제우편으로 옮겨 실을 수 있는 시스템 미비

개선 후
통관시스템을 새로 갖춰 제 3국간 거래되는 특송화물을 공항으로 반입한 후 우리나라 국제우편(EMS)으로 바꿔 보낼 수 있게 됨
- EMS 환적물품 시범운영 (관세청, '14.5월)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 및 신 부가가치를 창출, 고용창출 효과 확대
- 환적 물류 신규 유치를 통한 연간 3,6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

문의 : 관세청 통수통관과 (042-481-7835)

15 주유소에서 완성하는 헤어스타일! 놀랍지 않나요?

개선 전
주유소 내 물품 판매 · 대여업, 중개업 부대시설만 입점 가능
주유소 부대시설은 1층에만 입점
면적 500㎡까지 제한

개선 후
이 · 미용실, 운동시설, 피부관리실 등 주유소 내에 입점할 수 있는 부대시설 업종 확대
전 층에 부대시설 입점 가능
면적 1,000㎡까지 확대
-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 범위에 대한 업무지침' 개정 (안전처, '14.4월)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안전처, '14.6월)

주유소 경영 적자 해소 및 주유업계 경제 활성화 기여
- 약 1만3,000개의 주유취급소가 부대시설 활용을 통해 약 150억원 규모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

문의 : 국민안전처 법호조사과 (02-2100-0886)

16

자동차 튜닝 산업! 힘차게 달립니다!

개선 전 엄격한 튜닝규제 탓에 튜닝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함

개선 후
금지 대상이던 캠핑카, 푸드트럭의 구조변경 허용
전조등을 제외한 방향지시등과 안개등 등의 자동차 등화장치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튜닝 가능
• '자동차 구조 ·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 (국토부, '14.6월)

튜닝시장 규모 확대, 중소부품 · 정비업체 중심 새로운 일자리 창출
• 튜닝 시장 및 일자리 규모는 '12년 5,000억원(1만명)에서 '17년 2조7,000억원(2만명), '20년 4조원(4만명)으로 확대 전망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2)

22

17

소중한 내 아이디어! 쉽고 빨라진 특허로 지켜요!

개선 전 발명명세서를 작성해야만 특허출원 가능
특허출원 서류는 국어로만 작성 가능

개선 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정리한 연구노트와 같이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출원 가능
특허출원 서류 작성이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가능해져 교수, 연구원들이 빠르게 특허출원을 진행
• '특허법' 개정 (특허청, '14.6월 공포, '15.1월 시행)

쉽고 빠른 특허출원으로
국내 · 외 특허 획득 가능성이 높아져
국내 제조업 총생산액이 연 140억원 증가 예상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23

창업·중소기업 활력 제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 · 기술 · 입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창업 환경과 중소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8

창업 '7년차'지만, 처음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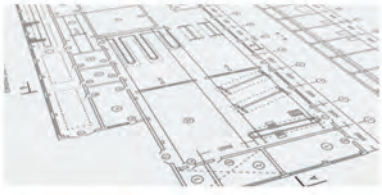

개선 전 공장을 처음 설립하는 창업기업만이 부담금 면제 대상

개선 후
7년 이내의 창업자가 공장증설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허용해 공장 증설 시 부담금 면제
• '창업사업계획승인 통합업무처리지침' 개정 (중기청, '14.6월)

창업 5~7년차 기업 증설에 따른 부담금 약 245억원 면제
• 1,303업체가 약 245억원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

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38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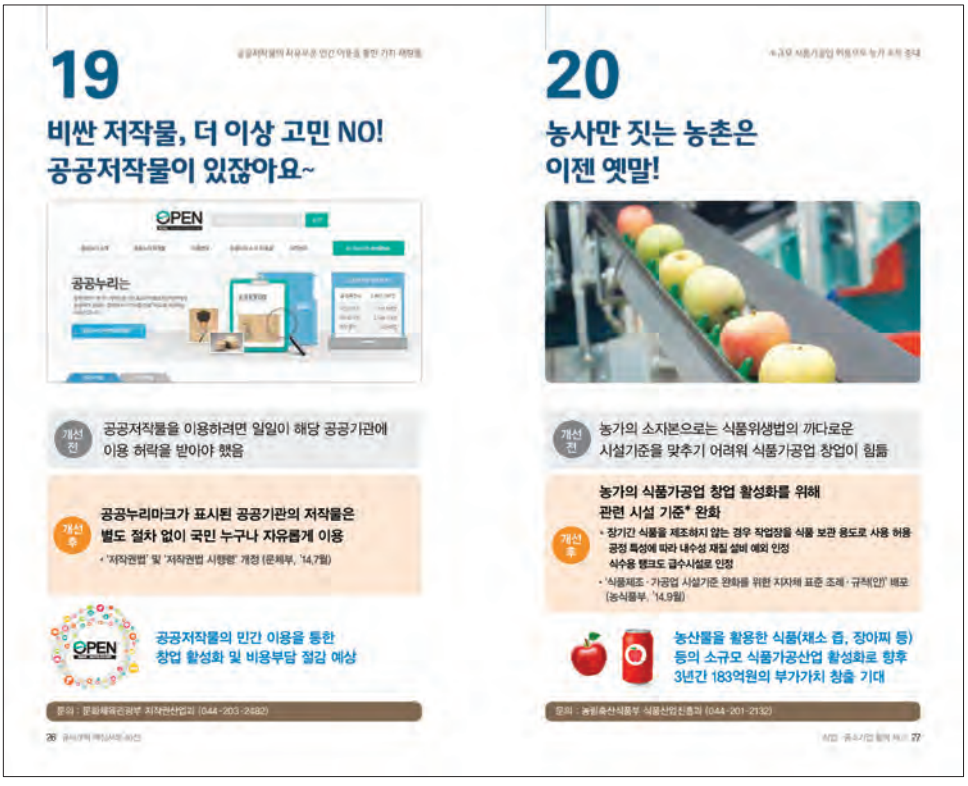

19

비싼 저작물, 더 이상 고민 NO!
공공저작물이 있잖아요~

개선 전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했음

개선 후 **공공누리마크가 표시된 공공기관의 저작물은 별도 절차 없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문체부, '14.7월)

OPEN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비용부담 절감 예상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044-203-2682)

20

농사만 짓는 농촌은 이젠 옛말!

개선 전 농가의 소자본으로는 식품위생법의 까다로운 시설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식품가공업 창업이 힘듦

개선 후 **농가의 식품가공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설 기준* 완화**
-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 작업장을 식품 보관 용도로 사용 허용
  공정 특성에 따라 내수성 재질 설비 예외 인정
  식수용 탱크도 급수시설로 인정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지자체 표준 조례·규칙(안)' 배포 (농식품부, '14.9월)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채소 즙, 장아찌 등)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활성화로 향후 3년간 183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기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2)

21

강가에 커피, 빵 향기가 솔솔~
지역경제는 술술~

개선 전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선 모든 제조업의 공장설립 제한

개선 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생계형 공장*은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의 설립 허용**
- ① 커피 가공업, ② 떡·빵류 제조업, ③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④ 면류제조업
- '수도법 시행령' 및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14.12월)

상수원 상류 거주주민 수익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의 : 환경부 정책총괄과 (044-201-7116)

22

작지만 강한 기업! 사람이 경쟁력이니까요!

개선 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

개선 후 **문화콘텐츠, 지식기반서비스 등 유망분야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인턴 시행지침' 개정 (고용부, '14.4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참여 인턴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 증대
- '14.10 기준 5인 미만 중소기업 380개소에서 420명 청년채용 진행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지원과 (044-202-7446)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고용부·법무부 중 한 곳에만 신고 가능

23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한 번이면 OK!

개선 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개시신고를, 법무부에 취업개시신고를 각각 해야 함

개선 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전산시스템 연계로 한 곳에서만 신고하면 되도록 절차 간소화**

-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 (고용부, '14.9월), 시스템 개편 (고용부, 법무부, '14.10월)

기업 부담 완화와 민원 편익 증대

- '13년 기준 13만 5,000명의 고용주 해택
신고 한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시
675억5,000만원 경제적 효과 기대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044-202-7147)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9)

30 규제개혁 백서(사례 40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영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금융 · 인력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
신바람 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매출 2~3억원 소상공인도 카드수수료 인하

24

카드수수료 줄어드니 장사할 맛 납니다!

개선 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에만 우대수수료율 적용

개선 후 **연매출 2~3억원 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율 적용,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법제심사 중 (금융위, '14.12월 예정)

연매출 2~3억원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5,280여억원 부담 완화 예상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56-9856)

32 규제개혁 백서(사례 40선)

방학 등 즉석제조 식품 판매행상 공무 적용

25

전통시장 명물음식, 클릭 한 번에 우리 집까지!

개선 전 전통시장 빵집, 떡집, 참기름집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업소 내에서만 판매

개선 후 **즉석식품을 인터넷으로 주문 받아 퀵서비스나 택배로 배달 판매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식약처, '14.5월, '14.10월)

7만7,000여개 ('13년 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체 소득 증대, 소비자 편의 증대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1)

33

26

식파라치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어요!

개선 전 닭·오리의 식육은 도축장에서 포장된 상태 그대로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해야 함

개선 후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소가 위생요건*을 갖춘 경우 닭·오리 식육의 포장을 뜯어 진열·판매 가능
- 위생요건 : 냉장온도 유지가 가능하고 소비자가 식육을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의 개폐형 냉장진열상자, 식육 전면의 표지판 등을 이용한 표시, 식육에 직접 접촉하는 업을 사용 금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식약처, '14.10월)

전국 1,372개 전통시장에서
연 7억5,000만원 포장비용 절감 예상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043-719-3208)

34

27

예비군 훈련! 회사 눈치 안보고, 생계 걱정 없으니, 좋지 아니한가~

개선 전 휴일예비군 훈련 가능 인원을 2만5,000명 운영
특정 지역과 시기에 신청자가 몰려서 영세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

개선 후
휴일예비군 훈련 가능 인원을 3만5,000명으로 확대
신청자가 많은 지역과 시기의 휴일 훈련 인원 비율 확대
- 2013년 휴일예비군 훈련계획 공고 (국방부,'13.1월)
- 2014년 휴일예비군 훈련계획 공고 (국방부,'14.1월)

평일에 훈련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생업에 대한 부담 경감 ('12년 대비 51.8% 증가)

문의 :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35

28

청소년유해업소 억울한 과징금, 반으로 줄었어요!

개선 전 청소년이 신분을 속인 사실과 관계없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부과

개선 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한 경우 과징금과 영업정지 기간이 1/2로 줄어듦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한 청소년유해업소 위반행위 행정처분 감경지침' 제정 (여가부, '14.10월)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경감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02-2100-6293)

36

29

광고면적 늘어나니 전화기에 불 납니다!

개선 전 법령과 상관없는 지자체 조례로 창문 광고 및 입간판 설치 금지
자동차·화물차의 옆면 1/2만 광고면적으로 활용 가능

개선 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창문 이용 광고 및 입간판 설치 가능
자동차·화물차의 광고물 표시면적을 옆면 1/2과 뒷면 1/2까지 확대
- 시·도 광고물담당 회의 개최, 내용 전파 및 재발방지 안내 (행자부, '14.9월)

자영업자 애로 해소,
광고물 산업의 활성화 기대

문의 :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 (02-2100-1765)

37

국민 불편 개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불합리한 수수료를 개선하여
가계 살림을 풍요롭게 하고
국민의 삶이 보다 편해지도록 지원했습니다.

30

추가합격한 대학 등록금도 대출 가능

학자금 중복 대출? 신입생이라면 OK!

개선 전
신입생 및 재학생 학자금 중복 대출 불가
학자금 중복 대출 금지로 인해 신입생이 추가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 다시 대출 불가

개선 후
신입생에 한해 학자금 중복 대출 가능
신입생의 경우, 1차 합격 대학에 납부한 대출금이 반환되지 않아도 추가 합격 대학 등록금 대출 가능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공포 (교육부, '14.1월)

연 3,000여명의 학교이동 대출자의 등록금 추가 마련 부담 해소

문의 :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71)

국민 불편 개선 39

31

부녀자 소득공제 받아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저소득 여성 지원 쑥쑥~ 일할 맛이 팍팍!

개선 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녀자 공제를 받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

개선 후
부녀자공제로 절감된 세금 액수를 차감한 뒤 근로장려금 지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국세청, '14.2월)

저소득층 지원 확대
• 약 7만7,000명, 800억원 수혜 추정

문의 : 국세청 소득지원과 (02-398-6116)

40

32

국가기술자격시험 무료 발급

합격해서 좋고, 수수료 없어 더 좋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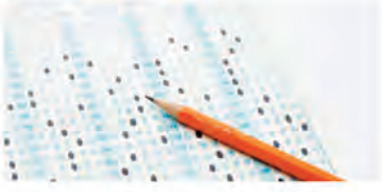

개선 전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발급 수수료 1,000원

개선 후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무료 발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고용부, '14.6월)

연 18만여건의 발급 수수료
(약 1억8,000만원) 면제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0)

국민 불편 개선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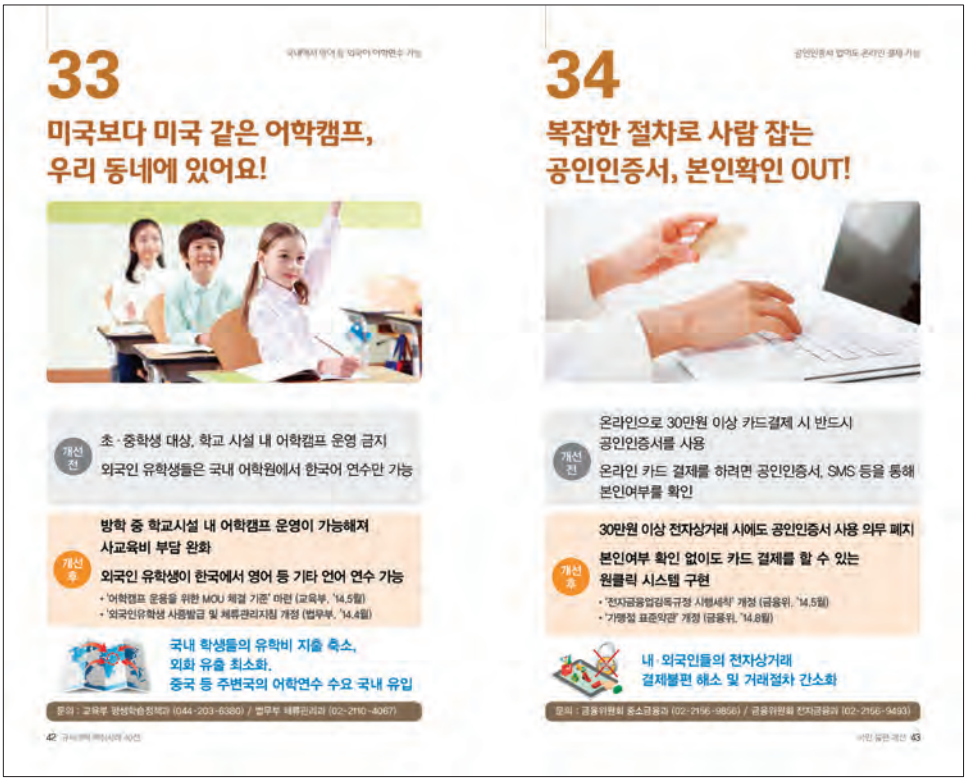

33

미국보다 미국 같은 어학캠프, 우리 동네에 있어요!

개선 전

초·중학생 대상, 학교 시설 내 어학캠프 운영 금지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내 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만 가능

개선 후

방학 중 학교시설 내 어학캠프 운영이 가능해져 사교육비 부담 완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영어 등 기타 언어 연수 가능

- '어학캠프 운용을 위한 MOU 체결 기준' 마련 (교육부, '14.5월)
-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개정 (법무부, '14.4월)

국내 학생들의 유학비 지출 축소,
외화 유출 최소화,
중국 등 주변국의 어학연수 수요 국내 유입

문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0)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7)

42

34

복잡한 절차로 사람 잡는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OUT!

개선 전

온라인으로 30만원 이상 카드결제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

온라인 카드 결제를 하려면 공인인증서, SMS 등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

개선 후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에도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본인여부 확인 없이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원클릭 시스템 구현

-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위, '14.5월)
- '기행정 표준약관' 개정 (금융위, '14.8월)

내·외국인들의 전자상거래
결제불편 해소 및 거래절차 간소화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56-9856)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56-9493)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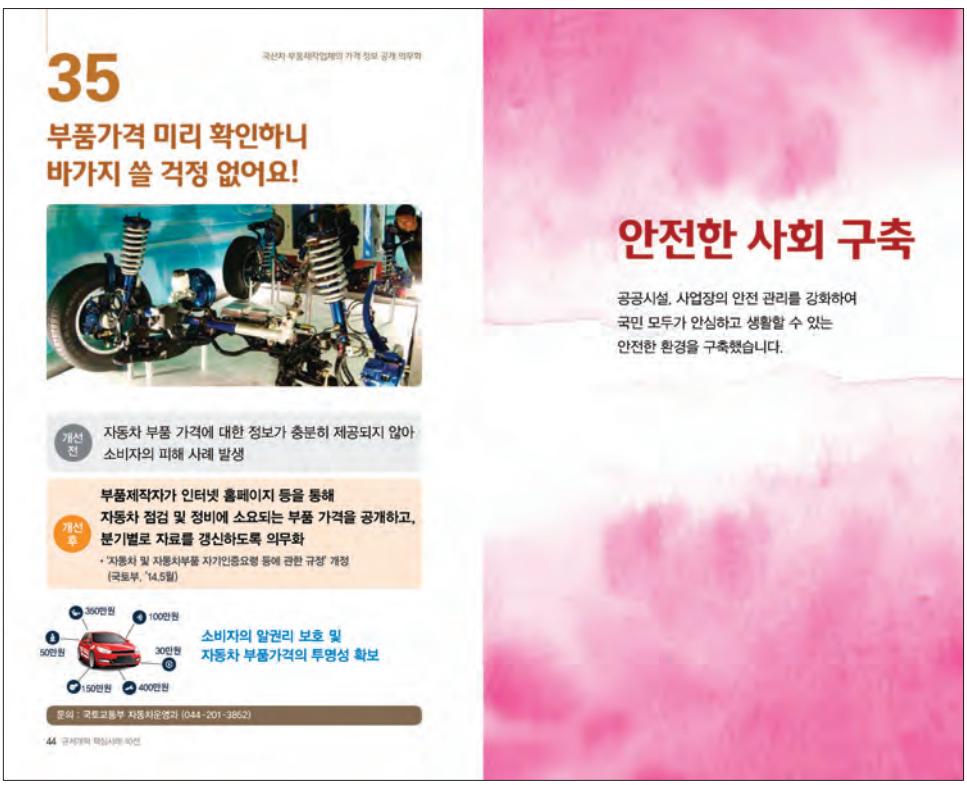

35

부품가격 미리 확인하니 바가지 쓸 걱정 없어요!

개선 전

자동차 부품 가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 사례 발생

개선 후

부품제작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차 점검 및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 가격을 공개하고, 분기별로 자료를 갱신하도록 의무화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국토부, '14.5월)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및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2)

44

안전한 사회 구축

공공시설,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36

안전한 대한민국은 기본, 늘어나는 일자리는 덤으로~

개선 전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개선 후

정부합동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이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

- 노후시설 개보수 융자·보조 사업,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 지원, 중소업체 방문교육·컨설팅, 집중기술지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환경부, '15.1월 시행)

화학물질 안전관리설비 투자 활성화로 비용편익 발생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17년까지 안전설비 투자펀드 5조원 지원 예정

문의 : 환경부 화학물질과 (02-6050-1303)

46

37

원전의 안전 책임감이 커졌어요!

개선 전

발전용원자로 사업자의 배상조치액*을 500억원으로 규정

- 배상조치액 :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금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금액, 공탁금액

개선 후

발전용원자로 사업자의 배상조치액을 5,000억원으로 올려서 원전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 확대

-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 (원안위, '14.12월)

원전사업자의 재정적 담보 능력 확보로 원자력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 가능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397-7357)

47

38

잃어버린 휴대폰, 나쁜 일에 쓰일까봐 걱정이세요?

개선 전

분실·도난 휴대폰 정보가 이동통신사 간에 공유되지 않아 휴대전화의 불법적 사용 가능성이 컸음

개선 후

모든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분실·도난 신고 된 휴대폰 정보를 공유하게 돼 분실·도난 단말기 유통을 차단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미래부, '14.2월)

휴대전화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9)

48

39

지하철, 안심하고 타세요. 24시간 여러분을 지켜 드립니다.

개선 전

도시철도(지하철, 경전철) 차량은 CCTV 설치 의무 대상 아님

개선 후

신규 구매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의무화

- '도시철도법' 개정 (국토부, '14.1월)

21개 노선, 하루 890만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예방

문의 :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044-201-3959)

49

40
큰 문은 편하게 자동으로,
작은 문은 안전하게 수동으로!
개선 전
동력으로 작동되는 대형문을 설치하는 경우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설치
개선 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소형문을 설치해
근로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고용부, '14.9월)
안전 제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수동 설비 구축 비용 절감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4)
50
규제개혁 핵심사례 40선
알면 힘이되고
희망이 됩니다

제4절
2015년 행정규제 업무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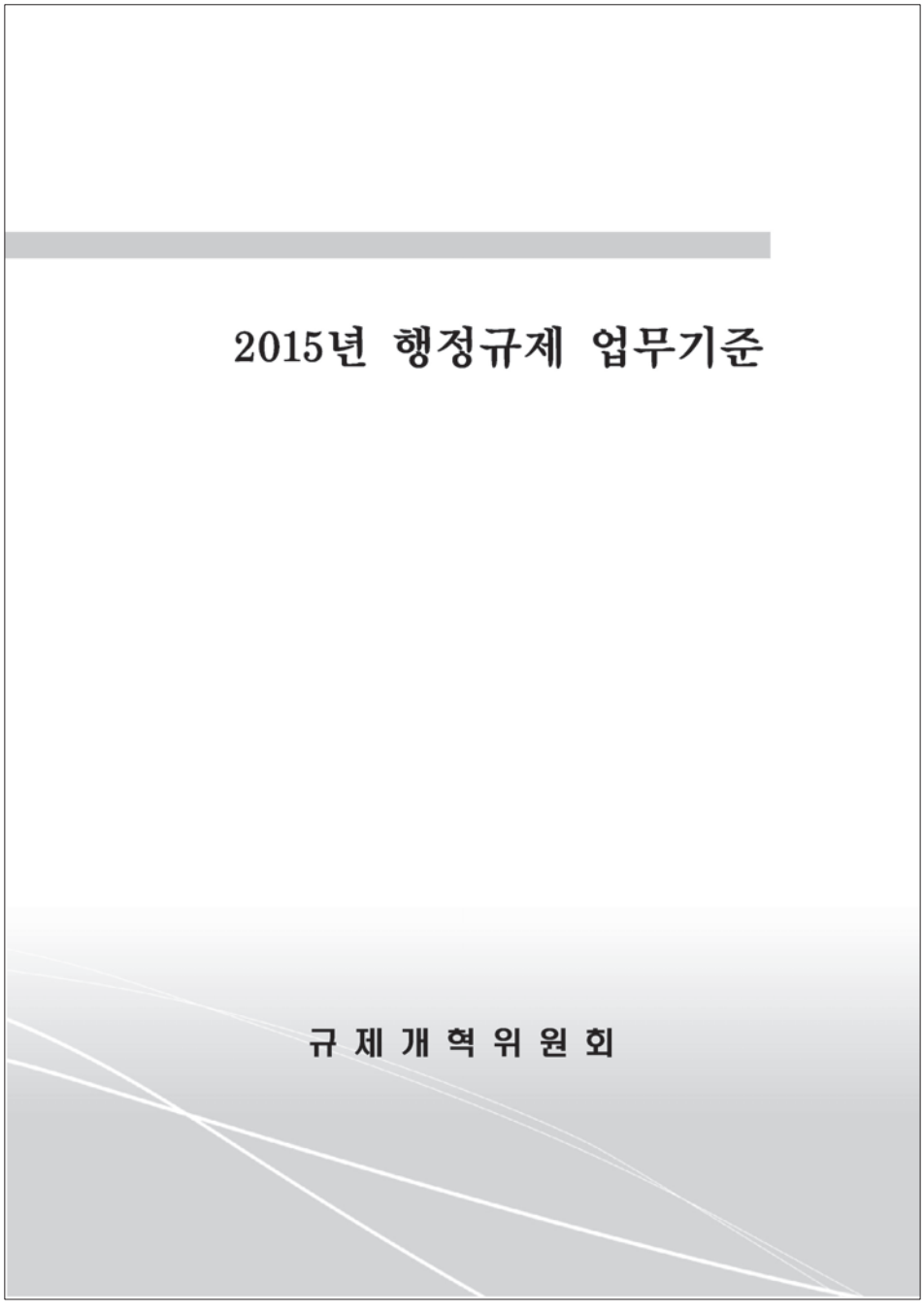

1 업무기준의 목적

1.1 이 기준은 행정규제기본법, 동법 시행령, 훈령, 지침 등에 나누어져 있는 규제개혁 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 주요 용어

2.1 동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표와 같다.

용 어	약칭	정 의	비고
행정규제	규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기본법 9조
법령등	-	·법 령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고시등 :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기본법 2조
조례·규칙	-	조례·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고 등	
행정기관	-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동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기본법 2조
규제 정비	정비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기본법 17조
행정규제기본법	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1935호, '13.8.17 시행)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 '14.11.19 시행)	
중요규제	-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본심사를 받도록 위원회가 결정한 규제	기본법 11조
자체심사	-	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과 의견수렴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의 타당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심사	기본법 7조
예비심사	-	신설 또는 강화 규제가 중요규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가 실시하는 심사	기본법 11조
본심사	-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위원회가 검증하는 심사	기본법 12조

용 어	약칭	정 의	비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설치한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주재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	기본법 23조
규제개혁장관회의	장관 회의	규제개혁을 효과적이고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통령훈령에 의거 설치한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	규제개혁 장관회의 규정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추진단	현장 중심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규제관련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리훈령에 의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민관 합동 추진단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제개혁작업단	작업단	전문적인 분야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리훈령에 의거 공정위·중기청·산업부 내에 설치한 작업단 (해당 업무범위에 관해서는 위원회 사무기구의 일부로 봄)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직접비용	-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	
직접편익	-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자가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편익	
간접비용	-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피규제자에게 2차적 효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제3자에게 발생하는 비용	
간접편익	-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피규제자에게 2차적 효과로 발생하는 편익 및 제3자에게 발생하는 편익	
규제순비용	순비용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접 비용에서 직접편익을 제외한 것	
규제영향분석	-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직접비용·직접편익·간접비용·간접편익 등을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	기본법 2조
규제비용총량제	비용 총량제	규제 신설·강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규제순비용의 기존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규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규제부담의 증가를 억제하는 규제개선 메커니즘	
규제비용분석	-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을 분석하는 것	
규제 일몰제	일몰	규제가 주기적으로 검토·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그 규제의 존속기한(=효력상실형 일몰) 또는 재검토기한(=재검토형 일몰)을 설정하는 것	기본법 8조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정할 때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	

용 어		약칭	정 의	비고
규제종합정보시스템	규제정보화 시스템 (ris.go.kr)	RIS	규제등록, 심사 등 규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이용	
	지방규제 정보화시스템 (rims.go.kr)	RIMS	RIS의 정보를 기반으로 중앙부처의 현행규제, 지자체 규제, 법령별 규제정보를 조회하고, 규제정보포탈을 통하여 접수받은 규제건의 사항을 소관 지자체가 답변·소명 하는 기능의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지자체가 이용	
	규제정보포탈 (better.go.kr)	-	규제 등록·심사, 법령, 규제개혁 진행상황 등 주요 규제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개선해 가는 인터넷을 통한 원스탑(One-Stop) 쌍방향 소통창구	
손톱 밑 가시		손가시	추진단이 현장을 중심으로 발굴한 기업·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 관련 건의사항 중 부처협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확정한 과제	
규제기요틴		-	경제·사회적 파급도가 높고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	
규제차등화		-	해당 규제로 인한 피규제자별 부담을 파악하여 규제부담 측면에서 형평성을 맞추는 것	

2.2 동 지침에서 사용하는 규제비용의 분류는 다음 그림과 같다(OEC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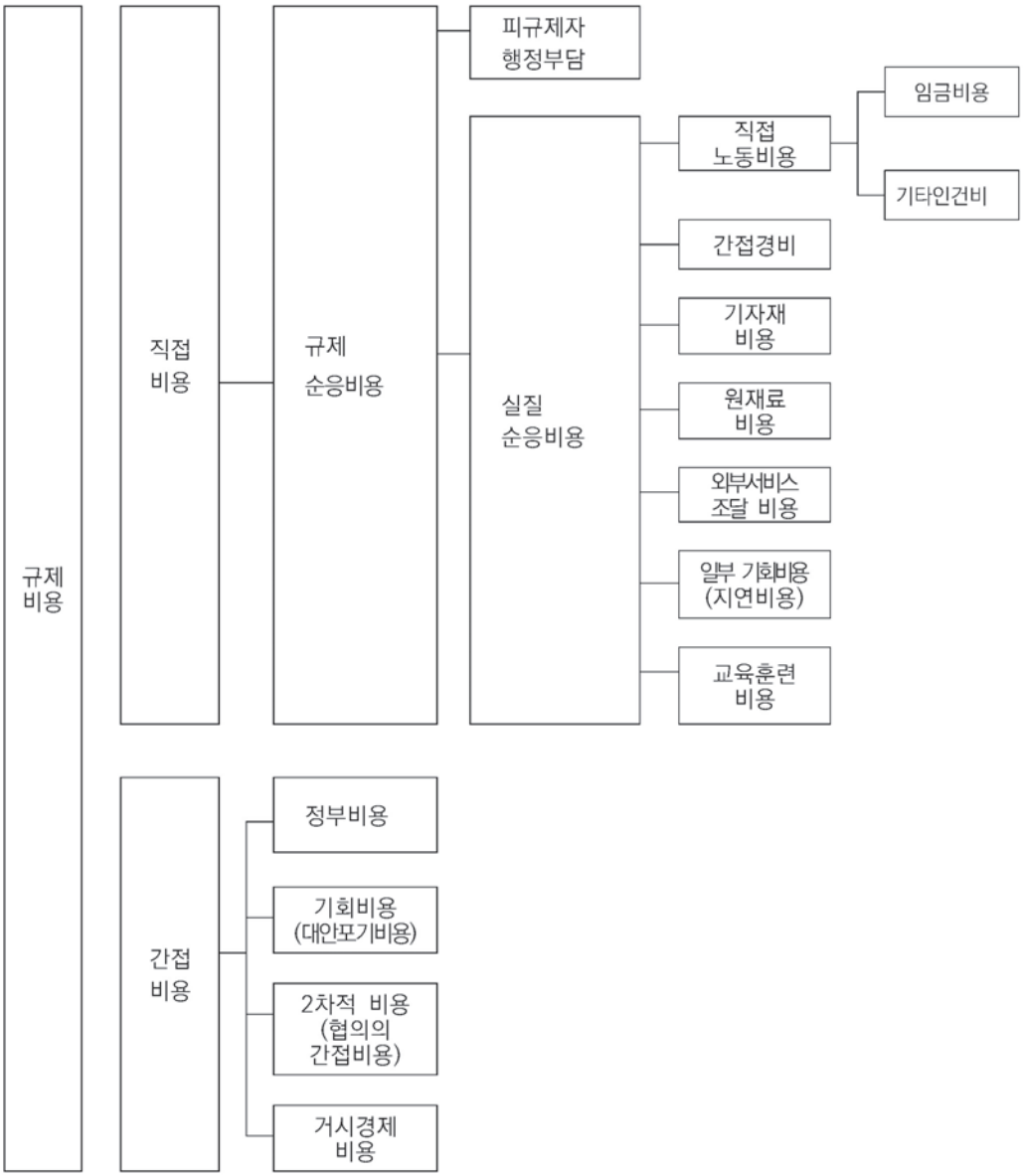

※ 규제비용총량제 상의 직접비용은 피규제자 행정부담, 실질 순응비용을 의미

3 규제의 개념과 원칙

3.1 규제의 개념

3.1.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3.1.2 규제의 주체·객체·형식 요건은 아래와 같다.

요 건	내 용
주체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객체	자연인인 국민(외국인 포함),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형식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및 조례·규칙

3.1.3 규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붙임1:규제 판단기준 참조).

가.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나.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다.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1.4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규제로 보지 아니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나.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라.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마.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바.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2 규제의 원칙

〈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원칙 〉

3.2.1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3.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3.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3.2.4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2.5 규제는 객관성·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3.2.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규제절차 매뉴얼상의 원칙 〉

3.2.7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만큼 현상의 문제점이 중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동 규제가 시급하게 필요하여야 한다.

3.2.8 규제의 도입 시 기존규제의 활용가능성 또는 타 법령의 유사규제 여부를 확인하여 규제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2.9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규정되어야 하고(3.2.4의 내용과 동일)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거나 행정편의주의 시각에서 규제목적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과도한 내용을 규정하여서는 안된다.

3.2.10 규제는 일반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기술적 여건, 규제 집행 일선공무원의 현실, 우리나라의 실태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없는 규제는 법규위반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거나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

□ OECD 좋은 규제 원칙

① 정책적 목적에 충실하고, 목표달성에 효과적일 것

② 안정적인 법률적·실증적 기반을 갖출 것

③ 소요비용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혜택을 가져올 것. 이 때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환경·사회적 여파를 고려해야 함

④ 비용 및 시장왜곡을 최소화할 것

⑤ 시장 인센티브 및 목표 설정을 통해 혁신을 추구할 것

⑥ 사용자에게 명확하고 간결하며 현실적일 것

⑦ 타 정책 및 규제와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

⑧ 최대한 경쟁, 교역 및 투자 활성화와 같은 원칙을 국내외적으로 촉진시킬 것

□ 호주의 규제개혁 원칙

① 최고의 편익을 제공하는 규제를 선택할 것

② 비용 대비 효용이 더 클 경우에만 규제 부과 가능

③ 신규 규제비용은 현존 규제부담의 감소로 완전히 상쇄(offset)할 것

④ 규제변화는 규제영향보고서의 대상에 포함

⑤ 규제 신설시 기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반드시 협의

⑥ 규제 중복 예방을 위해 부처간 협의를 강화

⑦ 규제수립 관련 정보는 적극 공개

⑧ 상식·공감·존중을 가지고 규제를 시행

⑨ 규제 효용성, 타당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

⑩ 규제완화 부서와의 긴밀한 공조 유지

4 규제개혁 추진체계

4.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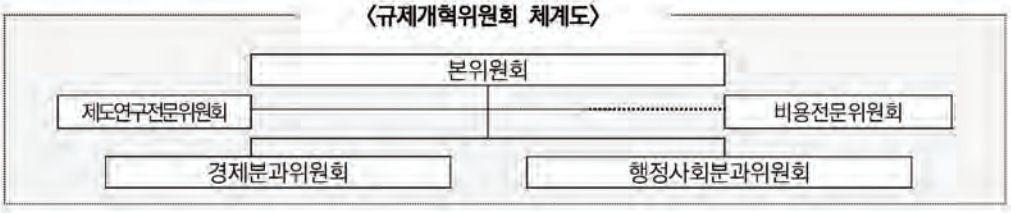

4.1.1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4.1.2 위원회는 위원장 2명,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1.3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정부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민간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촉하는 자가 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6명) :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법제처장

4.1.4 위원회에 경제분과위원회와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4.1.5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분과위원회에 안건 위임여부는 위원장이 정한다.

분과위	소관
경제분과 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 포함),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행복도시건설청, 산림청
행정사회 분과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4.1.6 위원회에 제도연구전문위원회와 비용전문위원회를 두며,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민간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4.1.7 제도연구전문위원회는 규제제도의 연구, 비용전문위원회는 규제비용 분석·검증 등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한다.

4.1.8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내 규제조정실이 수행한다. 위원회장과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발언할 수 있다.

4.1.9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4.1.10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1.11 위원장 또는 위원은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되며, 제척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가. 당해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나.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에 응한 경우 또는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4.1.12 의안은 위원장, 분과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안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의결 사안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법 제11·12조)	·기존규제의 심사(법 제18조)
·중요규제 결정(법 제11조)	·기존규제 정비지침(법 제20조)
·미등록규제 정비 요청(법 제6조)	·규제정비종합계획(법 제20조)
·회의의 비공개 결정(시행령 제1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시행령 제21조)
·위원회 운영세칙 제·개정(시행령 제29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시행령 제27조)
·대통령에게 시정조치 건의(법 제34조)	·규제개선 확인·점검 결과 평가(법 제34조)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법 제24조)	

4.1.13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1.14 위원회는 회의 일시, 주요 심의내용(주요 발언내용 및 질의·답변 사항을 포함)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4.1.15 위원회는 규제정책의 심의·조정과 규제의 심사·정비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
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다.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4.1.16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4.1.17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규제개혁장관회의

4.2.1 규제개혁을 효과적이고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를 둔다.

4.2.2 장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가. 규제개혁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나. 규제개혁과 관련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다. 서비스산업 등 주요 분야의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라. 규제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관계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마.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안건 및 보고 사항

4.2.3 장관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

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법제처장·중소기업청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기획(정책조정) 담당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4.2.4 의장은 장관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2.5 장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4.2.6 관계 부처 간 이견 조율 등 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관회의에 조정회의를 두며, 조정회의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4.3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4.3.1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의 발굴과 규제 관련 건의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둔다.

4.3.2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기업 현장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의 발굴에 관한 사항

다. 기존 규제 관련 국민 건의사항의 접수에 관한 사항

라. 발굴·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마.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행 실태의 확인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규제 개선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

4.3.3 추진단에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3명의 공동단장과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 1명의 부단장을 둔다.

4.3.4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무에 관한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4.3.5 추진단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4.4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4.4.1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공정거래위원회), 기술규제개혁작업단(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중소기업청)을 설치·운영하며, 운영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4.2 각 작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경쟁제한규제개혁 작업단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기술규제개혁 작업단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중소기업규제개혁 작업단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규제관련 민원처리,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4.4.3 각 작업단은 위원회가 소관 분야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추진하는 일선 현장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개선방안 검토 및 현장 점검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규제의 등록 및 공표

5.1 규제의 등록

5.1.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등에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조문(이하 "규제조문"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5.1.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조문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의 규제정보사항을 규제정보화 시스템(RIS) 상의 규제정보카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가. 규제의 명칭

나. 규제의 내용

다. 규제의 필요성

라. 규제의 존속기한

마.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5.1.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조문이 신설·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관보에 공포(법령) 또는 발령(고시등)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5.1.4 규제조문의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제·개정된 법령 등이 시행된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개정 법령의 조문에 대해 규제 포함여부 및 등록·변경 필요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규제등록 시스템을 통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원회는 제·개정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법령 조문별 규제포함 여부 및 등록·변경 필요여부 검토결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에 따라 규제등록 시스템에 해당 조문의 등록 또는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조문을 등록·변경 신청하는 경우 각 조문에 대한 규제 정보사항과 함께 근거조문(상위법령) 및 구체화조문(하위법령)을 연계한 관련규제 사무법령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변경 신청한 규제조문 및 관련 정보가 적절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바. 위원회는 검토 결과 등록·변경신청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정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조문 및 관련 정보를 수정하여 재신청하여야 한다.

사.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조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5.2 규제등록 공표

5.2.1 위원회는 등록된 규제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2.2 규제 목록의 공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5.3 규제종합정보시스템

5.3.1 위원회는 규제등록, 심사, 건의과제의 접수·처리 등 규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 내부 전산시스템인 규제정보화시스템(RIS)을 운영한다.

5.3.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정보화시스템(RIS)을 이용하여 소관 규제를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5.3.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정보 총괄담당자를 지정하고, 총괄담당자로 하여금 기관의 규제 정보를 관리하게 한다.

5.3.4 규제정보 총괄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제별 실무담당자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5.3.5 규제정보화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내용
부처 자체심사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등록, 예비심사 및 심사 신청
규제 등록관리	소관 규제정보 등록·변경
규제 과제관리	손톱 밑 가시, 대통령 회의 시 건의사항, 현장간담회, 규제기요틴
규제 건의관리	규제개혁 신문고
운영관리	규제정보 총괄담당자 지정·관리

5.3.6 위원회는 규제정보의 공개, 국민의 직접 참여 등 규제개혁에 관한 쌍방향 소통창구로서 인터넷 기반의 규제정보포탈(better.go.kr)을 운영한다.

5.3.7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에 대한 개선사례를 규제정보포탈 및 소관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유사한 사례로 인한 피해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8 위원회는 규제개혁 신문고와 손톱 밑 가시, 규제기요틴 등 각종 규제건의 접수창구를 규제정보포탈에 둘 수 있다.

5.3.9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부처 홈페이지 및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자 지정, 검토·답변 및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국민에게 이행사항 및 처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5.3.10 위원회는 융합·신산업 분야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제정보포탈에 별도의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3.11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정보 공유, 지방규제에 관한 건의과제 처리 등 지방규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규제정보화시스템(RIMS)을 운영하면서, 규제정보화시스템(RIS) 및 규제정보포탈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5.3.1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규제정보화시스템(RIMS)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등의 제·개정사항 및 규제업무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조례·규칙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신속히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6 규제의 신설·강화

6.1 규제법정주의

6.1.1 규제는 「행정절차법」,「법제업무 운영규정」,「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조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성 심사(법제처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1.2 특히 규제의 세부내용을 '고시등'(훈령·예규·고시·공고 등)에 정하는 경우에는 위임의 불가피성과 구체성에 대해 엄격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고시등에 규제를 정하기 위한 요건	
실체적 요건	· 전문적·기술적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 · 업무의 성질상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으로의 위임이 불가피 ·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절차적 요건	·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에 준하는 사전 예고 · 법제처의 적법성 사전 검토

6.1.3 지침, 교육자료, 지시 등에는 새로운 규제를 정할 수 없으며 해당 규제의 운영·집행 절차, 내용의 명확화 등 규제의 해석에 관한 사항만 정할 수 있다.

6.2 사전협의

6.2.1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사전협의 실시방법	
법률상 의무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 입법예고(40일 이상 원칙) · 그 밖에 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ⅱ)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ⅲ)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 행정예고(20일 이상 원칙)
실시 권장	·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도 규제를 신설·변경·폐지하는 경우 : 행정예고(20일 이상 원칙)

6.2.2 국가의 중요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입안하는 때에는 당정협의를 실시한다.

6.2.3 규제 사전협의 시에는 주요 이해관계자 단체의 의견이 누락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당해 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국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여야 한다.

6.3 규제영향분석

6.3.1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등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6.3.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붙임3)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작성 요령 〉

6.3.3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 심사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규제가 하나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연계 시행되는 경우 규제별 규제영향 분석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규제영향분석서로 작성할 수 있다

6.3.4 규제영향분석서의 평가항목 및 요소는 아래와 같다.

항목	분석서 기재사항	내용 상세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배경과 원인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신설·강화 규제의 정책목적
	- 규제의 타당성	·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기존 규제 또는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 적정여부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비교 · 위임근거 검토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다른 대안을 명시적으로 제시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직접비용·직접편익(운영비/인건비/시설 및 자재비용, 행정부담 비용 등) 수치화 · 간접비용·간접편익 분석가능한 경우 적시 · 다른 대안과 비교
	다. 규제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이해관계자 의견 및 협의 여부 ·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조치 사항, 그 결과
	2) 집행자원 및 능력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행정적 집행 가능성 · 지자체 위임시 집행 가능성
	라. 기대 효과	

6.3.5 6.3.4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 분야에 대한 규제의 적정성 및 규제 부담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중소기업영향평가(중기청), 경쟁영향평가(공정위), 기술영향평가(산업부 등 관련 행정기관)

〈 규제영향분석서 처리 절차 〉

6.3.6 각 행정기관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될 해당 규제와 규제영향분석서 초안을 입법예고일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의 충실성,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협의해야 한다.

6.3.7 위원회는 규제영향분석서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규제의 중요도, 규제영향분석서의 충실도 등을 검토하고 내용 미흡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비용·편익의 적정성 등 전문적 검토를 위해 규제연구센터·비용전문위원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6.3.8 각 부처는 위원회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여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한다. 그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추가된 사항이나 새로운 사실은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보완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6.3.9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는 최종 규제영향분석서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탈을 통해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작성시 유의 사항〉

6.3.10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해외사례 분석 및 비교를 실시하여 국제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상위법령을 명확히 적시하고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지 소명해야 한다.

6.3.11 비용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계량화된 비용·편익 분석 수치를 제시하여야 한다(비중요규제의 경우 간이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거나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면서 정성적 분석을 예외적으로 허용). 중요규제의 경우에는 객관적 근거 하에 계량화된 비용·편익 분석 수치가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경제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심층적인 분석자료 및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6.3.12 규제대안은 최소 3개 대안[①현상유지안 ②규제대안 ③비규제대안(non-regulatory option) 또는 피규제자에게 보다 적은 규제부담을 발생시키는 대안(light-handed regulatory option)]을 제시한 뒤 비교하여야 하며, 전문적 사항은 외부연구기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6.3.13 비용·편익 분석시 간접비용 중 규제의 운영·관리 및 이행상황 감독 등을 위해 정부에게 발생하는 비용인 '정부비용'(「규제비용분류표」 (2.2) 참고)을 반드시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3.14 비용·편익 분석이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생명·안전 확보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6.4 규제심사절차

〈 규제심사 절차(비용총량제 포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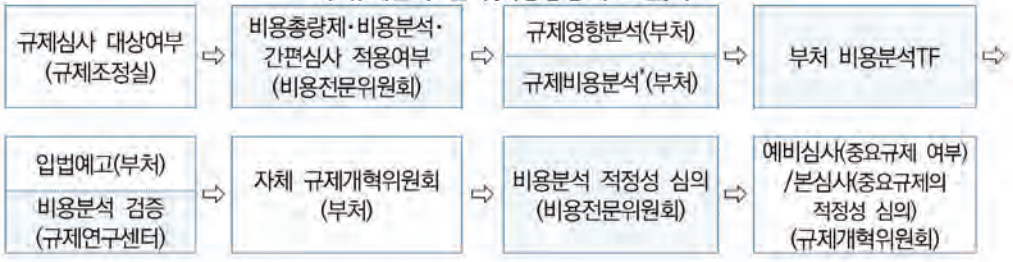

* 규제비용총량제의 경우 시범사업 부처만 적용

6.4.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을 개정하려는 경우 규제심사절차에 대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처 규제전담부서 및 규제조정실은 해당 법령등이 규제심사 대상(신설·강화 규제)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6.4.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설·강화 규제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총량제 적용여부 검토서'(붙임4)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비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비용전문위원회는 적용제외/간편심사/심사처리제 해당여부 결정

비용총량제 적용여부 검토서 작성대상
가.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제외 해당)
나. 규제비용총량제 적용대상이나 규제의 직접비용이 낮은 규제 (⇒간편심사 해당)
다. 신설·강화 규제가 총량제 적용대상이나, 화폐적인 비용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객관적·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 (⇒심사처리제 해당)

6.4.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설·강화 규제가 6.4.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설·강화 규제 및 폐지·완화*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붙임5)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한다.

* 원칙적으로 동시에 제출하되, 동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규제 폐지·완화계획[규제사무명, 정비시기(원칙:1년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등]을 작성·제출한다.

6.4.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 내 담당 공무원, 비용·편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처 비용분석TF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설치해야 하며, 비용분석위원회에 규제비용 분석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부처 비용분석TF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6.4.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고, 규제연구센터로부터 규제비용분석서의 검증을 받는다.

6.4.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종료 후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위원회에 송부한다.

6.4.7 비용전문위원회는 비용분석·검증이 적정한지, 복수의 대안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폐지·완화 규제의 경우 이로 인한 문제는 없겠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6.4.8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거친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규제가 중요규제 여부인지를 판단하는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6.4.9 '규제심사 대상'이 포함된 고시등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예고 및 법제처의 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6.4.10 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요규제'로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6.4.11 위원회는 아래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규제를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명백히 다른 규제 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중요규제 판단기준
1.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인 규제
2.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되는 규제
3. 명백하게 진입 또는 경쟁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조치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기술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6.4.12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에 대하여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하며,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4.1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따르기 곤란한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재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6.5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6.5.1 규제의 방식은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그 밖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일명 '네거티브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6.5.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기존규제를 재검토하는 경우 특히 사업활동 및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6.5.3 위원회는 규제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6.6 규제 일몰제

6.6.1 규제 신설·강화 시에는 존속기한(5년 이내)을 설정하여야 한다. 장기간 지속이 필요한 경우에도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 검토가 가능하게 하는 존속기한을 설정한다.

6.6.2 다만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재검토기한(3년 이내)을 설정할 수 있다.

6.6.3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고 재검토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규제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몰제 적용기준	
원칙	• 5년 이내의 **존속기한**(기한 도래 시 규제 효력이 상실)을 설정
예외	• 3년 이내의 **재검토기한**(일정 기한마다 규제 시행상황 점검)을 설정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장이 존속기한 설정 부적합 사유를 입증 예)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 등
	•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모두 설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명백히 불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로 엄격히 한정

6.6.4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기준 시점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로 하되, 개별 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날짜로 정할 수 있다.

6.6.5 위원회는 규제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6.6.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 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한다.

6.6.7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기한만료 6개월 전까지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관련 개정안의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률의 경우에는 기한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7 기존규제의 정비(폐지 또는 개선)

7.1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

〈 규제정비종합계획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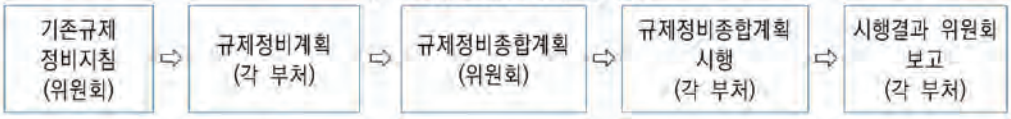

7.1.1 정부는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기존규제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바,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는 아래와 같다.

7.1.2 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존규제 정비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존규제 정비지침 포함 사항(위원회)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1.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기존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규제정비계획 포함 사항(각 부처)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7.1.4 위원회는 각 부처의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그 내용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7.1.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 결과 및 규제정비종합계획 추진실적을 위원회가 정하는 기한(다음연도 1월 31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2 규제개혁 신문고

7.2.1 누구든지 기존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 규제정비 요청사유
1.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
2. 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
3.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규제
4. 비용이나 부작용이 편익이나 기대효과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규제
5. 국제기준이나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규제
6. 국민의 생명·안전의 보호와 재난·재해의 예방 등을 위하여 보완·강화·개선이 필요한 규제

7.2.2 위원회는 규제의 정비를 요청받으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2.3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정비 요청(접수)일부터 답변기한(2주) 이내에 책임자(국·과장) 실명으로 규제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심층 검토를 위해 답변기한 연장요청을 할 수 있고(1회, 2주 限), 연장된 경우 규제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안내하여야 한다.

7.2.4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 규제존치 필요성 또는 대안 제시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규제존치 필요성 또는 규제개선 방안을 책임자(실장) 명의로 소명하여야 한다.

* 단, 행정기관은 중장기 검토(6개월) 답변을 한 경우, 접수일부터 3개월이 이미 경과되므로 소명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규제존치 필요성 또는 규제개선 방안을 책임자 명의로 소명하여야 한다.

7.2.5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규제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소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정비요청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사항
1. 규제 이외의 정책수단으로 동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2. 규제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 해당 규제는 가장 효과적으로 설계되었음
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해당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4. 해당 규제는 국제기준과도 부합하고, 모순·과도·중복되는 바가 없음

7.2.6 위원회는 소관 부처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규제존치가 불합리하거나 다른 창의적·합리적 규제대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규제개혁 신문고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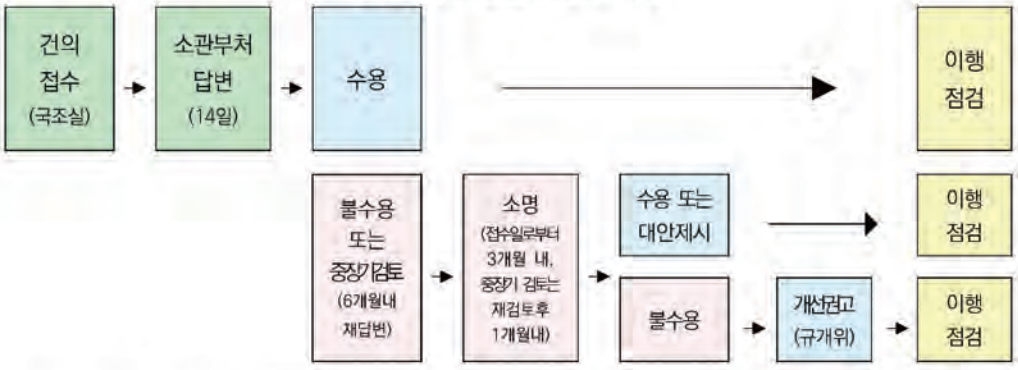

7.3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7.3.1 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소상공인 등이 현장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규제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과 적극 협력한다.

7.3.2 추진단에서 발굴한 과제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 조회를 요청한 과제는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붙임6)에 따라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7.3.3 수용 과제는 과제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7.3.4 수용 과제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한 후, 제대로 이행된 경우에 규제정보화시스템(RIS)으로 종결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가. 해당과제의 개선방안이 건의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다. 지자체의 조례·규칙 또는 산하기관의 내부규정이 개정되었는지 여부

7.3.5 중장기 검토 및 불수용 과제는 해당 정책 및 법령의 취지 및 관련 통계를 인용하는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7.3.6 추진단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중장기 과제 및 불수용 과제는 원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7.3.7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중요한 과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협의회에 소속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3.8. 추진단에서 종결된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행점검(실제 집행 여부 확인, 규제 개선 체감여부 조사 등)과 관련하여 과제 소관 기관장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손톱 밑 가시 개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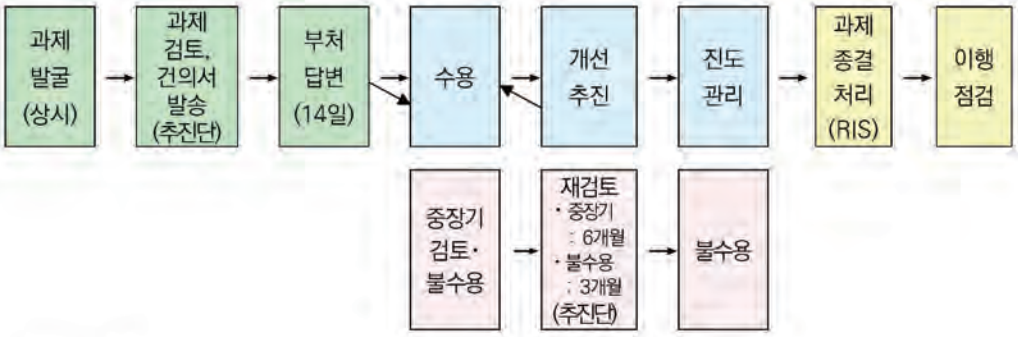

7.4 규제기요틴

7.4.1 정부는 경제·사회적 파급도가 높고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기요틴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실시할 수 있다.

7.4.2 규제기요틴 과제는 정부가 주요 경제단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등을 대상으로, 아래 사항과 관련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나. 미래산업 기반마련

다. 기업 혁신

라. 시장진입 저해요소 개선

마. 기업부담 완화 등

7.4.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기요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여야 한다.

7.4.4 규제기요틴 과제에 대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부검토를 거쳐 건의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진방안을 신속히 수립·시행한다.

7.4.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도 부분수용하거나 건의내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과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7.4.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기요틴 과제에 대한 부분수용, 대안마련, 수용곤란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7.4.7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검토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 소명회의를 실시하여 각 과제를 심층검토하고 조정한다.

7.4.8 소명회의를 통해 심층검토한 결과 추가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개선안을 도출한다.

〈규제기요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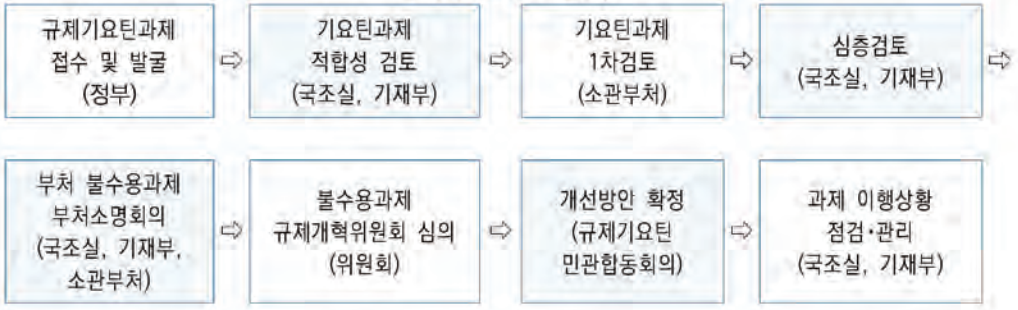

7.5 연관규제 정비

7.5.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와 모순 또는 중복되는 규제가 있거나 소관 규제 정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이 아닌 연관 규제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7.5.2 위원회는 연관규제의 정비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7.5.3 위원회는 연관규제의 정비 또는 폐지를 권고하거나, 관련 정책조정기구 및 회의체 등에 상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7.6 규제의 사후영향평가

7.6.1 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원회는 규제가 시행되어 일정기간(3년) 경과 후 경제적·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중요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 여부에 관하여 사후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가. 당초 의도한 규제 목적의 달성 여부

나. 규제를 시행한 결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한 비용과 편익

다. 국제기준과의 부합도

라. 규제의 준수율

7.6.2 규제의 사후영향평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외부 전문연구기관의 활용 등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6.3 사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규제의 일몰 연장 여부 결정, 정비 여부 및 다른 규제의 신설·강화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7.6.4 행정기관의 장은 사후영향평가 결과 규제가 당초 도입된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거나 다른 효과적인 대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후영향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8 규제비용총량제

8.1 개념 및 적용대상

8.1.1 규제비용총량제란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하여 규제순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규제를 폐지·완화토록 유도함으로써 피규제자의 규제비용 부담을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8.1.2 규제비용총량제는 피규제자에게 직접적인 비용 및 편익을 발생시키는 기본법상의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8.1.3 규제비용총량제의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사업 대상 부처인 8개 부처(문체부, 농식품부,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중기청) 외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표명한 부처 등을 추가하여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다.

* 대표사례의 기준은 직접비용이 연간 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거나 피규제자 수가 연간 5만명 또는 500개소 이상인 규제로 한다(중요규제에 상응하는 수준).

8.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에는 비용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비용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비용총량제 적용제외 사유
1.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2. 조약이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규제 - 단, 조약이나 국제협정 준수를 위한 최소 요건 이상으로 국내 규제수준을 설정(gold plating)하여 피규제자에 추가 비용을 유발할 때에는 비용총량제 적용 ※ 국제적 권고사항 등을 도입하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이행 합의된 사항이거나, 부처간 이견이 없는 경우임을 소명할 것
3. 국가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경우, 주요 선진국 기준 및 규제의 필요성·적절성(타 규제와 중복여부, 대안여부 등) 등을 입증할 것
4. 금융·외환시스템 위기의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환경 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
5. 1년 이하의 효력상실형 일몰이 설정된 규제
6. 통상적인 임금 및 물가상승에 상응해 기존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규제
7. 규제의 미이행·미준수로 인해 부과되는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 단, 의무부과·금지규정이 강화되어 규제가 확대·강화된 경우 비용총량제 적용
8. 1항 내지 7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비용전문위원회에서 비용총량제 적용제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

8.2 규제(순)비용 산정

8.2.1 '규제순비용'이란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접비용에서 직접편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직접비용'이란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

나. '직접편익'이란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편익을 말한다.

구분	범위
직접비용	가. 공공 부문 또는 제3부문에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규제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나. 규제준수활동에 투입된 인건비 등 직접 노동비용 다. 임대료·사무용품 구입비 등 관리운영에 관계된 간접경비 및 기계장비 등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구입한 기자재 비용 라. 전문가 자문비용, 시스템 위탁 운영비용 등 규제준수를 위하여 외부 공급자에게 지출된 비용 마. 규제이행에 따라 감수하는 영업손실 비용 등 일부 기회 비용 바. 그 밖에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피규제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
직접편익	가. 보조금 등 피규제자가 직접적으로 받는 금전적 이익 나. 규제기준의 설정으로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편익 다. 그 밖에 규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피규제자가 절감하게 되는 비용 등 피규제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

8.2.2 규제순비용의 산정방법은 규제의 존속기한 동안 현재가치로 전환된 직접비용에서 직접편익을 차감하여 이를 모두 합산한 후 연간균등순비용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 규제의 존속기한이 불분명한 경우 기본값은 10년으로 한다.

8.2.3 규제순비용의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연간균등순비용} = \frac{\text{순비용 현재가치}}{\text{연간지급율}^*}$$

$$^* a_{t,r} = \frac{1+r}{r}\left[1 - \frac{1}{(1+r)^t}\right]$$

$a_{t,r}$: 연간지급율(r : 사회적 할인율, t : 분석대상 기간)

8.2.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순비용 총량과 규제비용분석서를 규제정보포털 및 소관부처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8.3 규제연구센터 검증

8.3.1 규제연구센터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행정연구원(KIPA)에 설치한다.

8.3.2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행정연구원 내 규제연구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 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 및 필요 시 규제영향분석 검증 · 소관 부처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원 및 교육 · 규제 제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행정사회 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 및 필요 시 규제영향분석 검증 · 소관 부처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원 및 교육 · 규제 제도 연구

8.3.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설·강화 규제가 비용분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규제가 비용총량제 적용제외, 간편심사 또는 심사처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규제조정실에 제출하고, 규제조정실은 검토 후 이를 규제연구센터에 송부한다.

8.3.4 규제연구센터는 원칙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검증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25일 내 1차 규제비용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 자체가 곤란할 정도로 규제비용분석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8.3.5 규제연구센터의 검증 결과, 동의 또는 보완(재제출 불필요)이면 비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8.3.6 규제연구센터의 검증 결과, 부동의 또는 보완(재제출 필요) 이면 해당 부처는 규제비용분석서를 재보완하여 원칙적으로 15일 내 2차 규제비용분석서를 재제출 하여야 한다. 2차 규제비용분석서 검증 결과 부동의 또는 보완(재제출)인 경우 해당부처는 이를 재보완하여 원칙적으로 5일내 3차 규제비용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은 최대 2회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8.3.7 규제연구센터는 비용분석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검증보고서(붙임7)를 작성, 비용전문위원회로 송부하고, 비용전문위원회는 검증결과를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8.4 비용전문위원회 심의

8.4.1 비용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비용총량제 적용여부 검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규제의 비용총량제 적용여부, 비용분석 가능여부, 간편심사 해당여부에 대해 심의·결정하고, 비용전문위원회는 그 결과를 즉시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가. 신설·강화 규제가 비용총량제 적용제외 판정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전의 규제심사 절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만 제출하면 된다.

나. 신설·강화 규제가 간편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 비용전문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이 경우 비용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연구센터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규제조정실에서 검토할 수 있다.

다. 신설·강화 규제가 심사처리제 판정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성질·강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사수준의 규제를 폐지·완화한다. 이 경우 유사수준의 규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비용전문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붙임8)이나, 부처에서 자체 개발한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

8.4.2 규제비용분석서는 규제연구센터의 검증 또는 규제조정실 검토가 완료된 후 비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규제연구센터의 검증 완료 후 또는 규제조정실 검토 완료 후 10일 내 비용전문위원회에 상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8.4.3 비용전문위원회에서는 비용분석·검증이 적정한지, 복수의 대안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폐지·완화 규제의 경우 이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8.4.4 신설·강화 규제와 폐지·완화 규제의 교환에 따른 규제순비용 적립분(저축 또는 부채)은 비용전문위원회 심의완료 시점에 예비 정산·관리하고, 실제 정산·관리는 규제 등록시를 기점으로 한다.

8.4.5 신설·강화 규제의 비용총량제 적용절차를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tr><th colspan="3">비용총량제 적용대상</th><th>적용제외</th></tr>
<tr><th colspan="2">비용분석 가능</th><th>비용분석 불가</th><td rowspan="3">8.1.4에 해당되는 규제</td></tr>
<tr><th>① 정식 절차</th><th>② 간편심사제</th><th>③ 심사처리제</th></tr>
<tr><td>규제비용분석서 작성
⇓
부처 비용분석 T/F 검토
⇓
규제연구센터 검증
⇓
비용전문위원회 심의</td><td>규제비용분석서 작성
⇓
부처 비용분석 T/F 검토
⇓
규제조정실 검토
⇓
비용전문위원회 심의</td><td>유사규제 선정(부처자체)
⇓
부처 비용분석 T/F 검토
⇓
비용전문위원회 심의</td></tr>
<tr><td colspan="4">⇓
위원회 예비심사/본심사</td></tr>
</table>

* 간편심사제 적용대상 : 직접비용이 낮은 규제(예:연간 직접비용 10억 원 미만)

9 규제 유연성 제고

9.1 중소기업 규제 차등적용

9.1.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기존규제 정비 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과도한 규제부담을 해소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9.1.2 규제영향분석 시 규제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9.1.3 규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규제영향분석의 일부로서 중소기업 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9.1.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 등이 받는 과도한 규제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집행기구 및 중소기업 대표단체 등 피규제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9.1.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2018년 3월말까지)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도록 법령등에 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따른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

9.1.6 위원회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50인 미만)에 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은 규제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담경감 방안(예시)	
·일부 면제	·전부 면제
·유예기간 연장	·정보, 훈련, 사용안내 등 지원
·한시적 면제	·직접 재정지원
·기업의 유형·규모에 따른 요건 차등화	·사전동의, 자발적 해결

9.1.7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의 차등적용에 관한 법령등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9.2 창조·융복합 규제애로 해소 지원창구 운영

9.2.1 위원회는 융복합 신제품 또는 신기술에 대한 시장창출이 지연되거나 창업에 애로를 겪는 현장사례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창조·융복합 규제애로 해소 지원창구(Creative Business Regulatory Support Center, 이하 CBRS)를 신설·운영한다.

9.2.2 누구든지 CBRS에 규제적용 여부 및 규제 개선, 인증 신설 등을 직접 건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건의를 접수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 접수처: 온라인은 규제정보포털, 오프라인은 위원회

9.2.3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융복합 신제품 또는 신기술이 출시되는 것이 기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 적용여부를 답변하여야 한다(①규제여부 판단).

9.2.4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업이 건의한 법 개정 필요성 또는 신제품 인증 신설 등을 검토하여 개선 여부를 결정한다(②개선여부 판단).

9.2.5 위원회는 소관 행정기관에서 개선이 어렵다고 결정한 사안 중 건의의 타당성·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된 과제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한다(③개선방안 검토).

* 적합성 인증제 등을 통해 인증 마련이 필요한지, 신제품 출시를 위해 기존의 법·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등

9.2.6 민관합동 T/F가 도출한 개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부처 간 의견조정이 필요하면 규제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 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법령의 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창조·융복합 규제애로 해소 지원창구 운영절차(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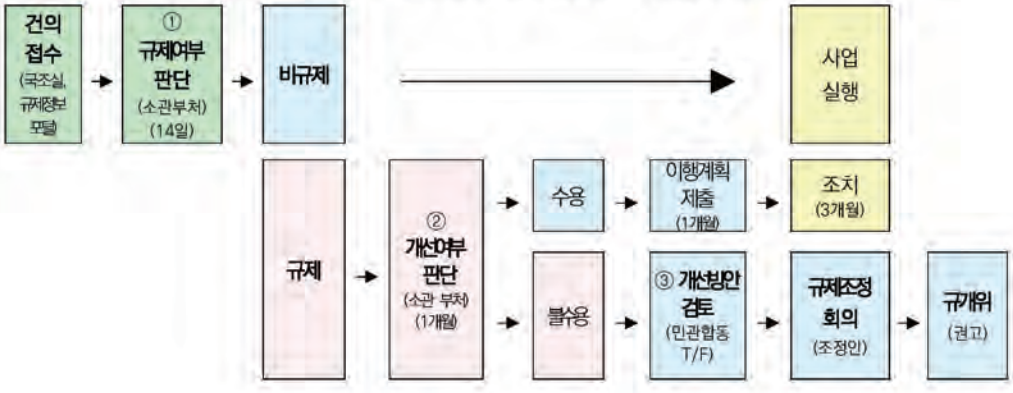

10 지방자치단체 규제 관리

10.1 지방자치단체는 기본법에서 정한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공표,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 규제의 품질개선과 주민의 불편·부담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등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규제를 신설·강화할 수 없으며, 법령등의 개정사항이 조례·규칙에 지체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의 제·개정에 따른 규제의 신설·강화 시 당해 개정사항이 조례·규칙과 관련되어 있다면 조례·규칙에 개정되는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10.4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규제 관리현황 및 개선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5 위원회는 규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규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인력·예산 등 규제 집행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6 위원회는 필요 시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1 규제개혁 평가

11.1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 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11.2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규제개혁평가단(이하 "평가단") 및 규제개혁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1.3 평가 대상기관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으로 하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처 업무특성 및 등록규제 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1.4 위원회는 평가대상기관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5 평가는 당해연도 12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업무평가 일정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1.6 평가단은 평가대상 기관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평정(안)을 작성하고, 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친 후 정무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12 적용시기

12.1 이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12.2 6.3.11과 관련된 사항은 비용총량제 시범부처(8개)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금년 7.1 일부터 전 부처에 확대 적용한다.

(붙임1) 규제 판단기준

행정규제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적용제외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兵役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판단원칙	▸ **행정규제의 주체·객체·내용·형식에 모두 해당할 때 행정규제로 판단**
1. 주체	▸ **국가**(중앙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소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국세청 등)) ▸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2. 객체	▸ **자연인(외국인 포함),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 국가 등을 객체로 하는 규정는 행정내부관계 규율로써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3. 형식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및 고시 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
4. 내용	▸ **특정한 행정목적** * 일반적인 민사·상사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및 상법은 원칙적으로 비규제
	▸ **권리 제한** - 예시) **허가, 면허, 등록, 승인, 허가 취소, 가격통제, 행정제재 등**
	▸ **의무부과** - 예시) **금지의무, 수인의무, 자료제출의무 등**

규제판단 유의사항	▸ "특정 행정목적실현을 위한 권리제한·의무부과"에 해당하면 **규제목적의 공익성, 규범적 성격, 규정방식**(임의적 또는 강제적), 구체적 **하위규정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로 봄 ▸ **하위법령에**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권리제한·의무부과(자격요건, 절차준수 및 자료제출의무 등)"이 규정되어 **규제로 판단된 경우 관련 상위 규정도 규제로 판단** ▸ **보조금 등 지원규정**은 원칙적으로 **비규제**이며, 이에 수반되는 **자격기준 및 요건** 등 역시 과도하거나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한 비규제임 ▸ 본 판단기준은 일종의 준거기준으로서, 구체적 사례의 규제여부는 행당 규제의 내용·성격·정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붙임2) OECD 및 미국의 규제개혁 원칙

1. 규제정책과 가버넌스 관련 OECD권고안(2012)

① 규제 품질과 관련된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며,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전정부적 접근에 대해 최고위층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

② 규제 사용자의 수요에 근거한 규제정책과 열린 정부, 투명성과 참여 제고

③ 규제정책 감독을 위한 기관과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규제정책을 집행하고 규제 품질을 제고

④ 규제 신설시 규제영향분석 진행

⑤ 기존규제를 검토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규제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며, 비용 효과적이고, 규제 도입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지

⑥ 규제프로그램과 규제자들의 성과(규제영향분석 및 기존규제 검토 등)와 관련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출판

⑦ 규제정책이 객관적이고 편파적이지 않도록 규제자들과 관련된 일관성 있는 정책 개발

⑧ 규제 및 규제관련 제재의 합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마련

⑨ 규제 고안 및 집행에 있어서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

⑩ 다층적 정부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간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규제 일관성 확보

⑪ 하위정부(예: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규제 관리 역량 강화

⑫ 규제 수단을 개발할 때, 동일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관할권 밖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국제적 표준과 체계를 고려

2. OECD 좋은 규제 수립을 위한 정책권고안(2005)

Ⅰ. 명확한 목적 및 집행을 위한 틀을 갖춘 광범위한 규제 개혁 프로그램을 정치적인 차원에서 도입할 것

1. 최고위 정치권에서부터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규제정책의 핵심 요소 (정책, 제도 및 실행도구)를 명확하게 인식함과 동시에 핵심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국민에게 개혁 목표, 전략 및 혜택을 명확하게 전달할 것
2. 1995년 정부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OECD 권고안을 기반으로 "선진규제"의 원칙을 수립할 것. 선진규제란 (ㄱ) 정책적 목적에 충실하고, 목표달성에 효과적인 규제, (ㄴ) 안정적인 법률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ㄷ) 소요비용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혜택을 가져와야 함. 이때,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 환경, 사회적 여파를 고려해야 함, (ㄹ) 비용 및 시장왜곡 최소화, (ㅁ) 시장 인센티브 및 목표설정을 통한 혁신 추구, (ㅅ) 사용자에게 명확하고, 간결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함, (ㅇ) 타 정책 및 규제와 일관성 유지, (ㅈ) 가능하면 최대한 경쟁, 교역 및 투자 활성화와 같은 원칙을 국내·국외적으로 촉진시켜야 함
3.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정책적 목표간에 일관성을 유지하며, 규제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성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적절한 제도적 틀 및 자원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규제관련 자원관리 및 규제집행 임무를 단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규제팀 내 적절한 인력확보를 통해 규제품질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자문기구들을 포함한 자문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
4. 정부 전체에 더 나은 규제를 장려하며, 조정을 개선하고, 규제당국 및 정부기관간의 중복된 역할을 제거할 것. 정부내의 투명성·비차별 원칙·효율성 등 규제품질 확보를 위한 요건을 적용하며, 표준수립 기관 등 민간단체에서도 규제품질 확보를 위한 요건을 수립하도록 독려할 것
5. 기존 규제 및 신규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규제체계 개선을 위한 역동적인 접근법'을 받아들이며, 논리적인 순서에 입각하여 개혁을 단행하고, 가능할 경우, 관련 시장은 함께 자유화시킬 것

Ⅱ. 체계적으로 규제 영향을 평가하고 검토하여 해당 규제가 변화하는 복잡한 경제· 사회환경에서도 효과적·효율적으로 의도된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것

6. 규제자의 입장이 아닌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좋은 규제의 원칙에 입각해 경제적·사회적·행정적인 규제를 검토할 것. 'Sun-setting'과 같은 자동검토방식을 통해 규제를 업데이트할 것
7. 비용, 편익, 분배효과 및 경쟁·시장개방·행정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체 규제(자율규제를 포함)를 모색할 것
8. 규제 장치 및 제도에 성과기반의 평가방식을 사용하여 좋은규제 및 경제성과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

9. 규제검토는 가장 가시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규제, 특히 경쟁 및 시장 개방성을 저해하고 기업(중소기업 포함)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및 기존 규제를 대상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

10. 규제 품질을 참고하여 제안된 신규 규제 및 기존규제를 검토할 것 규제 수립 또는 검토시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가능할 경우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구축된 기관이 감독하도록 할 것

11. 중요한 규제 수립, 검토 및 수정 시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를 포함시키며, RIA를 활용하여 시장개방성 및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 RIA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RIA의 품질 및 준수여부를 모니터하기 위해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포함시킬 것

12. 국민과 기업의 행정비용을 낮추고 정책차원의 경제효율성 마련의 일환으로써 규제대상자의 총체적인 규제부담을 완화시킬 것

Ⅲ. 규제, 규제 집행기관, 규제절차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일 것

13. 국민의 이익이 규제당국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제도를 마련할 것

14. 규제의 영향을 받는 주요 당사자(국내·해외)의 의견을 규제 수립 또는 검토 초기단계부터 수렴하고, 의견수렴 절차 자체의 투명성을 유지할 것

15. 해당 업계의 기업이 해당 규제에서 유발될 수 있는 특정혜택 또는 비용의 영향을 전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할 것. 단, 이와 같은 혜택 및 비용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방지하기에 반드시 필요할 경우, 예외로 함

16. 정기적으로 규제 및 사업요건을 담은 내용의 책자를 만들고 업데이트하며, 기타 수단을 통해 국내·외국기업이 쉽게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17. 규제적용을 위한 행정절차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개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포함하는 동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결정을 지연시키지 말 것

18. 규제기관은 신뢰할 수 있으며, 투명해야 함

Ⅳ. 필요할 경우, 경쟁정책의 범위·효과·집행을 검토하고 강화할 것

19. 상당한 공공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대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부문간 격차를 제거할 것. 경쟁법의 집행, 경쟁보호, 무역자유화를 위한 부문별 규제간에 일관성 유지를 위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함

20. 경쟁법의 엄격한 집행을 통해 담합, 시장지배력의 남용 또는 경쟁에 위배되는 합병 등을 조사할 것. 카르텔 감면제도 등 효과적인 장치를 사용하여, 심각한 위배사항을 발견하고 억제할 것. 경쟁에 위배

되는 행위에 대해 가해진 제제는 위배자체를 억제하기 위해 충분한 것이여 함. 즉, 위배자의 예상되는 이득, 감지에 따른 리스크와 공공 이익의 저해에 따른 리스크 등을 반영하여야 함

21. 경쟁정책을 시행하는 당국에게 충분한 권한 및 역량을 부여하여 개혁을 단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민에게 경쟁의 역할 및 혜택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것

Ⅴ. 모든 부문에서 경쟁, 시장개방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규제를 설계하고,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규제를 모두 제거할 것

22. 경쟁 및 시장 개방을 제한하는 규제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공공이익의 보호에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

23. 보편적 서비스 의무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및 그 효과, 시장진입과 가격에 대한 제한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24. 시장 지배력의 남용이 예상되어 경제규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증대 및 효과적인 경쟁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 특히, (ㄱ) 민영화 등의 사례 및 경쟁을 도입 중인 시장 개혁의 경우, 규제 하에 있는 전기수도가스 (Utility) 산업과는 분리시키되, 기존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 (ㄴ) 중요한 망시설 (Network facility)의 사용에 대해서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시의적절하고 투명한 사용을 제공하여 비차별(non-discriminatory)적 접근을 장려할 것, (ㄷ) 지역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망시설의 연결을 추진할 것, 그리고 (ㄹ) 가격조절이 필요할 경우, 가격 상한선 및 기타 장치를 마련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것

25. 소비자에 의한 기업선택을 장려하여 합리적인 비용 및 제재 없이 기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

Ⅵ. 지속적인 자유화를 통해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장벽을 제거하고, 전반적인 규제절차에 걸쳐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및 의지를 반영하여 경제효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

26. 규제설계 및 집행에 있어 시장개방 원칙을 더욱 많이 고려할 것. 그리고 시장개방(무역·투자자유화의 선진화라는 측면)을 결정하는데 있어 확대된 국내 규제환경을 참작하면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것

27.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해 국제규칙 및 원칙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와 함께 협력하고 집행할 것. 특히, 투명성, 비차별성, 불필요한 무역제재의 제거, 국제기준과의 조화, 순응평가절차의 능률화 및 국제적인 시각에 입각한 경쟁원칙의 적용에 집중할 것

28. 각 국가로부터 제기되는 산발적이고 중복적이며, 시대에 뒤진 규제를 수반하는 무역 및 투자 관련 규제장벽을 최우선순위 과제로 하여 줄여나갈 것

29. 의도된 정책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내 규제와 규제검토의 근간으로서 국제적으로 조율된 표준의 사용·개발을 지지하고 주요 이해관계자·타국과의 협력개선을 지지할 것
30. 해외표준·요건이 동일한 규제목적을 추구한다고 인정되어 국내의 표준 및 요건과 동일하다고 받아들일 경우, 명확하게 규정된 표준을 잘 다듬어 나갈 것. 동일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해외 제조업체 및 서비스 공급업체에게 투명하고 접근가능한 수단을 제공할 것
31.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일방적 동일성 인정, 공급업체의 동일성 공표문건 등을 통해 동일성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교역을 증진시킬 것. 동일성 승인을 위해 국내의 수용능력을 발전시키고 그 접근절차를 용이하게 할 것

Ⅶ. 기타 다른 정책적 목표와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것

32. 안정성, 안전, 보건, 소비자 보호 및 에너지 안보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공공정책을 조화시켜, 경쟁시장환경 내에서 최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경쟁 및 시장개방에 따른 혜택이 다른 주요 정책적 목표와 일치할 때 자유화를 추진할 것. 규제품질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서비스도 포함시킬 것. 정책적 목표가 다양해짐에 따라, 많은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규제의 설계 및 규제 평가업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
33. 변화하는 환경하에서 리스크 평가를 가능한 한 투명하고 완전하게 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것
34. 보조금, 세제혜택, 조달정책, 관세와 같은 무역의 수단들 및 기타 지원 정책 등 비규제적 정책을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시장개방 및 경쟁을 저해할 경우 조정할 것
35. 규제개혁의 잠재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조치들이 변화를 유도하며, 초점이 명확하며, 조정절차를 지연하기 보다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

3. 미국의 규제개혁 원칙(EO 12866)

1. 규제기관은 규제의 개선을 통해 개선하고자하는 문제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한다.
2. 규제기관은 기존의 규제 혹은 여타 법률들이 새로운 규제가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야기하는지 혹은 야기하는데 원인이 되고 있는지 여부와 과연 이들 기존규제들이 규제의 목적을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3. 규제기관은 직접적인 규제에 대한 가능한 모든 대안, 즉 사용자 수수료 혹은 거래가능한 허가권 등과 같이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혹은 국민들이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대안을 찾아내고 이들을 평가하여야 한다.
4. 규제기관은 규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기관에 주어진 행정권 내에서의 각종 조치들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의 정도 및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하였을 때, 행정기관은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규제를 고안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규제기관은 혁신, 일관성, 예측가능성, 집행가능성 및 순응비용, 정부와 일반국민에게 가해지는 비용, 신축성, 부의 재분배효과, 평등성 등에 대한 유인 또한 고려해야 한다.
6. 규제기관은 제안하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여야 하며, 비용의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적어도 제안하는 규제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이 그 비용보다 크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에만 동 규제를 제안하고 채택하여야 한다.
7. 규제기관은 제안하는 규제의 필요성과 그 영향에 관한 정보들, 즉 가장 최선의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및 기타정보들을 감안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8. 규제기관은 가능한 한 여러 가지 규제대안을 찾아내고 평가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순응방법을 명시하기보다는 성과와 관련된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9. 규제기관들은 규제를 부과하기 전에 동 규제로 하여금 심각하거나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주정부, 지방정부, 부속정부 기관들의 공무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또한 연방차원의 규제가 주정부, 지방정부들에 미치는 영향들, 즉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충원가능성을 포함한 영향들을 평가하여야 하며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이러한 지방기관들에 심각하거나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능한한 규제기관들은 연방차원의 규제조치와, 주정부,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 및 다른 정부기능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각 기관들은 지금 부과하려는 규제가 다른 규제조항,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일관성 없고 경쟁력 없고 중복적인 규제를 피해야 한다.
11. 규제는 개인, 단체를 막론하고 피규제를 받는 집단에게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목적과 일치되어야 하며 예측가능한 정도와 누적되는 규제의 비용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12. 규제관련 초안을 비롯한 문서들은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잠재적 불확실성의 최소화와 이러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송사를 피해야 한다.

(붙임3) 규제영향분석서 양식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 등</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2. 구분</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3"></td></tr>
<tr><td>4. 근거법령명 등</td><td colspan="4"></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4"><table>
<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h>의견
수렴방식</th><th>의견내용</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4"></td></tr>
<tr><td>7. IN 규제비용</td><td colspan="4"></td></tr>
<tr><td>8. OUT 규제비용</td><td colspan="4"></td></tr>
<tr><td>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td><td colspan="4"></td></tr>
<tr><td>10. 규제체계도</td><td colspan="4"></td></tr>
</table>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규제타당성(목적-수단간의 적합성), 실효성(이해관계자, 집행력) 입증 강화
▸규제적정성 입증시 해외사례 분석 강화
▸피규제자 등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내실화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 위임근거 검토 〉

○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의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 外 타 대안 제시*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타 대안과의 비교*

다. 규제 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2) 집행자원 및 능력

○ *※ 기술적/행정적 집행가능성/지자체에 위임될 경우 집행가능성 등*

라. 기대효과

(붙임4) 비용총량제 적용여부 검토서 양식

[비용총량제 적용여부 검토서 작성 양식]

비용총량제 적용여부 검토서					
법 령 명					
규제사무명					
부처 / 담당자	▸ 담당자, 담당과장, 담당국장 성함 및 연락처(사무실) / 규제실 담당자 성명 명기				
규제의 주요내용	▸ 신설·강화 내용을 2-3줄 정도로 핵심위주로 요약				
현 행	개 정 안	비용총량제 적용 여부			규제실 검토의견
		적용제외 (사유)	비용분석 가능여부 (사유)	간편심사 적용여부 (사유)	
	▸ 필요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도 적시	▸ 해당사항 없는 경우 미작성	▸ 해당사항 없는 경우 미작성	▸ 해당사항 없는 경우 미작성	

(붙임5) 규제비용분석서 양식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양식]

<table>
<tr><th colspan="5">개입과 대안(Intervention and Options)</th></tr>
<tr><td colspan="2">규제명 :

규제등록번호 :</td><td>소관 부처/부서 :</td><td colspan="2">규제연구센터 의견 :
(동의/보완/부동의)</td></tr>
<tr><td colspan="2">구분 : (신설/강화/폐지/완화)</td><td colspan="3">일시 :</td></tr>
<tr><td colspan="2">법적 근거 : (상위/하위 법령)</td><td colspan="3">담당자 : (직책, 성명, 사무실 연락처)
담당과장 :
담당국장 :</td></tr>
<tr><td colspan="5">제안된 대안의 비용·편익 정리 (단위 : 백만원)</td></tr>
<tr><td>규제비용총량제 적용대상 여부 :
(적용/미적용)</td><td>유형 :
(IN/OUT)</td><td>총 순비용
(현재가치)</td><td>기업순비용
(현재가치)</td><td>연간균등 기업순비용
(현재가치)</td></tr>
<tr><td colspan="5">그간 제기된 문제점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td></tr>
<tr><td colspan="5">(최대 7줄)</td></tr>
<tr><td colspan="5">규제목표 및 기대효과</td></tr>
<tr><td colspan="5">(최대 7줄)</td></tr>
<tr><td colspan="5">고려된 대안(규제 이외의 대안도 포함) 및 제안된 규제의 타당성</td></tr>
<tr><td colspan="5">(최대 15줄, 자료 부분에서 더 상세히 기재)
› 폐지·완화 규제의 경우 규제 폐지·완화로 인한 문제점이 없겠는지 등을 추가 서술</td></tr>
<tr><td colspan="2">폐지·완화 계획</td><td colspan="3">기업 유형별 규제 적용 여부</td></tr>
<tr><td colspan="2">규제사무명 :

예상 시기 :</td><td colspan="3">☐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하 ☐ 비영리 법인 등</td></tr>
</table>

분석 및 증거(Analysis & Evidence)				
전체 경제 영향평가 (단위 : 백만원)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 기간 (년)	할인율	총 순비용 (현재가치)
비용 (단위 : 백만원)				
일회성 비용(현재가치)		반복성 비용(현재가치)		총비용(현재가치)
주요 영향집단에게 발생한 주요 금전적 직접비용의 설명과 규모 (최대 5줄)				
주요 영향집단에게 발생한 주요 금전적 간접비용의 설명과 규모 (최대 5줄)				
주요 영향집단에게 발생한 그밖의 주요 비금전 비용 (최대 5줄)				
편익 (단위 : 백만원)				
일회성 편익(현재가치)		반복성 편익(현재가치)		총편익(현재가치)
주요 영향집단에게 발생한 주요 금전적 직접편익의 설명과 규모 (최대 5줄)				
주요 영향집단에게 발생한 주요 금전적 직접편익의 설명과 규모 (최대 5줄)				
주요 영향집단에게 발생한 그밖의 주요 비금전 편익 (최대 5줄)				
주요 추정				
(최대 5줄)				
기업 영향평가 (단위 : 백만원)				
기업순비용(현재가치)			연간균등기업순비용(현재가치)	
비용(현재가치): 편익(현재가치): 순비용(현재가치):				

(붙임6)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table>
<tr><td>접수일</td><td colspan="2">'00. 00. 00</td><td>회신일</td><td>'00. 00. 00</td></tr>
<tr><td>소관부처</td><td colspan="2"></td><td>담당과</td><td></td></tr>
<tr><td rowspan="3">담당</td><td>【국 장】</td><td colspan="3">(직책 / 성명 / 연락처: 사무실,휴대폰)</td></tr>
<tr><td>【과 장】</td><td colspan="3">(직책 / 성명 / 연락처: 사무실,휴대폰)</td></tr>
<tr><td>【담 당】</td><td colspan="3">(직책 / 성명 / 연락처: 사무실,휴대폰)</td></tr>
<tr><td>제 목</td><td colspan="4"></td></tr>
<tr><td>건의
내용</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7">부처
의견</td><td>☐ (일부)수용</td><td>☐ 기조치</td><td>☐ 중장기검토</td><td>☐ 수용곤란</td></tr>
<tr><td rowspan="5">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td><td colspan="3">법률 개정 ( )</td></tr>
<tr><td colspan="3">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td></tr>
<tr><td colspan="3">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td></tr>
<tr><td colspan="3">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td></tr>
<tr><td colspan="3">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td></tr>
<tr><td colspan="4">○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표기(V) 및 관련 법령명/제도명 기재

○ 기조치 시 개선내용 및 추진상황 자세히 기재

○ 중장기검토 및 수용곤란 시 그 사유 자세히 기재</td></tr>
<tr><td>추진
일정</td><td colspan="4">○ 수용 및 일부수용 과제의 경우 추진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재</td></tr>
</table>

(붙임7) 검증보고서 양식

O차 규제사무명 검증보고서

□ 검증 결과

○ 동의 ☐ 보완 ☐ 보완 재제출 ☐ 부동의 ☐

□ 검증 개요

○ 소관 부처 :

○ 법령명 :

○ 검증대상 규제 :

○ 구분 : 신설 ☐ 강화 ☐ 폐지 ☐ 완화 ☐

□ 검증 일정

○ 센터 접수일 : 2015.

○ 검증 완료일 : 2015.

※ 검증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OOO(TEL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 의견 >

•

•

•

OOO 규제연구센터

◇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교표

※ 2차 검증시부터 필요시 작성, 제공

내 용	반영 여부	미반영사유(부처 작성)
* 규제비용분석서상 지적사항 등 검토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시	반영 / 미반영	
	반영 / 미반영	
	반영 / 미반영	
	반영 / 미반영	
	반영 / 미반영	
	반영 / 미반영	

1. 검증 결과 요약

항 목		부처 분석내용	보완 필요사항
비용·편익 식별의 타당성	① 규제대안		
	② 비용부담자		
	③ 비용식별/구분		
	④ 편익수혜자		
	⑤ 편익식별/구분		
규제순비용 추정의 타당성	① 분석의 가정		
	② 비용지표값		
	③ 기간/할인율		
	④ 균등순비용		
	⑤ 불확실성		

2. 검증 의견

※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서술

□

○

-

(붙임8) 유사수준 규제판단 규제실 가이드라인(※부처 자체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 활용 가능)

○ 규제 성격(진입·가격·거래·품질·질서)별 기초지수에 규제강도·파급효과·개선정도·규제방식·일몰설정 여부에 따른 가중치의 합을 곱하여 산출

※ 최종점수 = 규제성격별 기초지수 X Σ가중치(최저7점~최고95점)

가. 기초 지수 및 가중치

i) 규제성격별 기초지수

구 분	진입규제	가격규제	거래규제	품질규제	행정규제
기초지수	10	8	6	6	2

ii) 가중치 기준

○ 규제강도

	가 중 치		
	2	1.5	1
진입규제	원칙금지(허가)	일부허용(인가·등록)	일반허용(신고)
가격규제	전면통제(허가)	사전통제(인가)	사후통제(신고)
거래규제	원칙금지(허가)	거래조건 제한	기준설정(가이드라인)
품질규제	전면통제(허가)	사전통제	사후통제(신고)
행정규제			정보제공 의무

○ 규제 파급효과(영향집단)

구 분	1,000만명 이상	100만~1,000만명	100만명 이하
가중치	3	2	1

○ 규제개선 정도

구 분	대폭	중폭	소폭
가중치	1.5	1	0.5

○ 규제방식

구 분	Positive	혼합·기타	Negative
가중치	1.5	1	0.5

○ 일몰

구 분	미설정	재검토형 일몰	효력상실형 일몰
가중치	1.5	1	0.5

나. 세부 적용기준

i) '규제성격 및 강도' 적용 기준

ㅇ 진입규제 : 경제주체가 특정 산업 및 영역에 참여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

* 사업의 인·허가, 입지 제한, 특정업종 및 지역에 대한 참여 제한 등

- (원칙금지) 어떠한 영역에의 진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전면적으로 금지된 사항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경우

  * 카지노업 허가, 독점사업의 허가, 특정인의 소유제한 등

- (일부허용) 일반적으로 금지된 사항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시 허용하는 경우

  * 담배제조업 사업 허가 등

- (일반허용) 일반적으로 허용된 사항을 영위하기 위하여 단순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ㅇ 가격규제 : 제품가격이나 서비스요금 등에 대해 일정 수준이나 범위를 설정하는 규제

- (전면통제) 최저임금 설정, 농수산물 가격예시 등
- (사전통제) 통신요금인가제 등 가격의 결정을 사전에 통제하는 규제
- (사후통제) 가격에 대한 사후적 검증, 가격차별화 방식, 가이드라인을 통한 시장유도 등

ㅇ 거래규제 : 거래 상대방, 물량 등 거래조건 및 사업영위 방법에 대해 제한하는 규제

- (원칙금지) 거래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해 거래가 가능한 경우

  * 토지거래허가제, 농지취득자격 등

- (거래조건 제한) 물량, 거래방식, 계약기한, 영업방식 등 거래조건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있으며, 위반시 행정벌 및 질서벌 등 제재가 수반되는 규제
- (기준설정) 원활한 거래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ㅇ 품질규제 :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분·규격·제조설비 등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규제

- (전면통제) 관급제 등과 같이 정부가 재화 및 서비스의 수준을 직접 결정
- (사전통제) 생산과정의 각종 설비, 원료, 시설기준, 사업장 면적기준, 시설관리방법, 유자격자의 고용 등 산출 이전단계의 투입에 대한 규제

- (사후통제) 제품 및 서비스가 유지해야하는 품질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를 검증·시험·인증 등으로 통해 사후 확인하는 규제

○ 행정규제 : 정보제공, 자료협조 의무 등 규제행정의 집행에 필요한 규제

ii) '규제 파급효과'에 대한 적용 기준

○ 규제 신설·강화, 폐지·완화에 직·간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영향집단의 규모를 모두 고려

○ 직접적인 피규제자 뿐 아니라 관련 산업, 소비자 및 서비스 수혜자 등 간접영향집단까지 포함하되, 그 범위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정성적으로 판단

iii) '규제개선 정도'에 대한 적용 기준 : 정성적 판단

○ (대폭) 규제 신설·폐지 및 기존 규제수준에 비해 요구수준이 상당히 변경된 경우 등

○ (중폭) 규제 내용의 일정수준 이상 변화 등

○ (소폭) 규제 내용의 미미한 변화 등

iv) '규제방식' 적용 기준

○ (Positive)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방식으로 규제가 규정된 경우

○ (Negative)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규제가 규정된 경우

○ (혼합·기타) Negative(Positive) 형식이나 타 조항 및 하위법령 등과의 관계에 의해 사실상 Positive(Negative) 규정인 경우, 형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v) '일몰'

○ (미설정) 해당 규제에 일몰(재검토형, 효력상실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 (재검토형) 일정기간 후 규제의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는 경우

○ (효력상실형) 일정기간 후 규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경우

〈 담당 및 연락처 〉

목차	페이지	담당 및 연락처(044-200-)	
1. 업무지침의 목적	5	규제정책과	2431
2. 주요 용어	5	규제정책과	2431
3. 규제의 개념과 원칙	9		
3.1 규제의 개념	9	규제정책과	2429
3.2 규제의 원칙	10	규제정책과	2431
4. 규제개혁 추진체계	12		
4.1 규제개혁위원회	12	규제총괄과	2416
4.2 규제개혁장관회의	14	규제총괄과	2452
4.3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15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02-6050-3292
4.4 현장 중심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 작업단	16	규제총괄과	2416
5. 규제의 등록 및 공표	17		
5.1 규제의 등록	17	규제정책과	2429
5.2 규제의 공표	18	규제정책과	2429
5.3 종합규제정보시스템	18	규제정보팀	2406
6. 규제의 신설·강화	20		
6.1 규제법정주의	20	규제정책과	2431
6.2 사전협의	20	규제정책과	2431
6.3 규제영향분석	21	규제비용분석과	2441
6.4 규제심사절차	23	경제규제심사1과	2414
6.5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25	규제혁신과	2415
6.6 규제일몰제	25	규제혁신과	2415
7. 기존규제의 정비	27		
7.1 기존규제 정비계획	27	규제혁신과	2419
7.2 규제개혁 신문고	28	규제신문고팀	2634
7.3 손톱 밑 가시 규제 정비	29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02-6050-3292
7.4 규제기요틴	30	기획과제팀	2437
7.5 연관규제 정비	31	규제혁신과	2419
7.6 규제의 사후영향분석	31	규제비용분석과	2441
8. 규제비용총량제	33		
8.1 개념 및 적용대상	33	규제비용분석과	2441
8.2 규제(순)비용 검증	34	규제비용분석과	2441
8.3 규제연구센터 검증	35	규제비용분석과	2441
8.4 비용전문위원회 심의	35	규제비용분석과	2441
9. 규제 유연성 제고	37		
9.1 중소기업 규제차등적용	37	경제규제심사1과	2398
9.2 창조·융복합 규제애로 해소 지원창구 운영	38	기획과제팀	2438
10. 지방자치단체 규제관리	39	규제혁신과	2415
11. 규제개혁 평가	40	규제총괄과	2452
12. 적용시기	40	규제정책과	2431
※ 붙임자료	41-61		
1. 규제 판단기준	41	규제정책과	2429
2. OECD 및 미국의 규제개혁 원칙	42	규제정책과	2431
3. 규제영향분석서 양식	48	규제비용분석과	2441
4. 비용총량제 적용여부 검토서 양식	51	규제비용분석과	2441
5. 규제비용분석서 양식	52	규제비용분석과	2441
6.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54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02-6050-3292
7. 검증보고서 양식	55	규제비용분석과	2441
8. 유사수준 규제 판단기준	59	규제비용분석과	2441

제5절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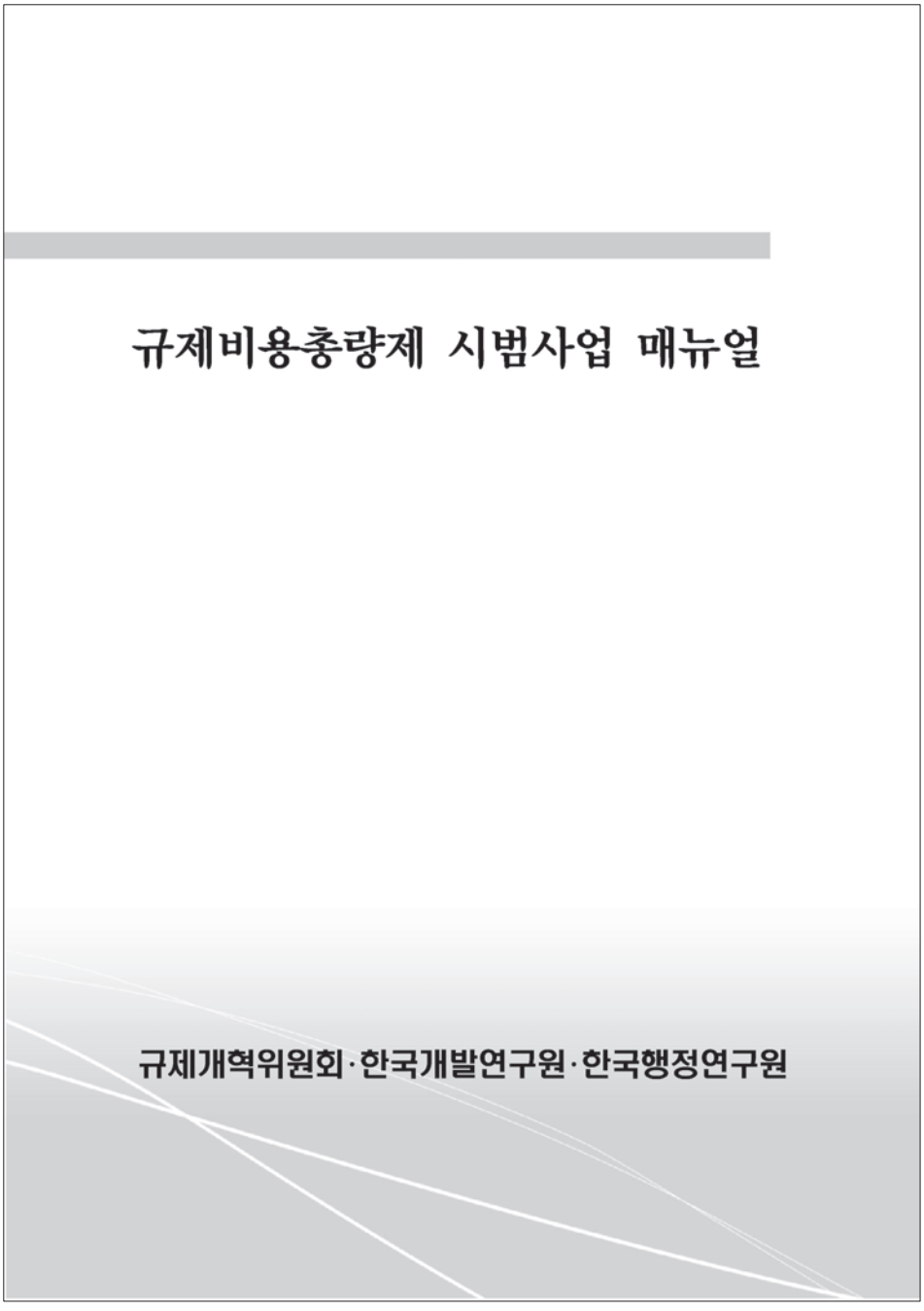

제1장 개 관

1 규제비용총량제 의의

(1) 개 념

○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규제자의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에 초점을 맞춰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순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제의 폐지·완화를 유도함으로써 규제비용총량을 감축하는 제도

〈 규제 신설시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 폐지(Cost-In, Cost-Out) 〉

○ 규제비용을 기준으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Cost-In, Cost-Out'으로 명명

> 영국은 2011년부터 'One-In, One-Out' 제도를 운영하여 신규 규제 도입시기업에 순비용을 초래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순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 2013년부터는 'One-In, Two-Out'으로 변경하여 신규 규제 도입시 이의 2배에 해당하는 순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

(2) 규제영향분석과 관계

○ 규제비용총량제의 비용·편익 분석은 규제영향분석의 일부분으로 피규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것임

- 즉, 규제비용총량제가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영향분석을 보완·개편하는 것임

○ 양 제도를 비교하면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에서는 국민 경제 전체의 직·간접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규제의 전반적인 효과를 평가

- 규제비용총량제는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에 초점을 맞춰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을 감축하고자 함

〈 규제영향분석 vs 규제비용분석 〉

※ 이하 '(규제)비용분석'은 피규제자에 대한 직접비용과 직접편익 분석을 의미

	직접 비용	간접 비용	직접 편익	간접 편익
피규제자	①	②	⑤	⑥
피규제자 이외의 경제 주체 (일반국민, 정부+)	③	④	⑦	⑧

■ 기존의 규제영향분석

– 경제전체의 직·간접비용 – 직·간접편익(현재가치) = 총 순비용(현재가치)
(①+②+③+④) – (⑤+⑥+⑦+⑧)

■ 규제비용분석

– 피규제자의 직접비용(현재가치)–직접편익(현재가치) = 규제순비용(현재가치) (① – ⑤)

○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제도는 규제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방법론적으로 복잡하고 규제품질 개선 유인은 부족

- 규제비용총량제는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기제가 될 수 있지만, 규제비용총량의 관리 범위를 피규제 대상의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으로 한정

2 추진방향

(1) 비용전문위원회 및 규제연구센터 설치·운영

- 부처가 제시한 비용 분석 검증을 위해 KDI(경제 분야)·행정연(행정·사회 분야) 산하에 독립센터 형태로 규제연구센터 설치('14.6)

-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비용분석·검증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비용전문위원회 설치('14.8)

(2) 운영실적 대국민 공표 강화

- 규제정보포털 및 각 부처 개별 홈페이지에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실적(규제순비용 총량, 규제비용분석서 등) 공개 추진

3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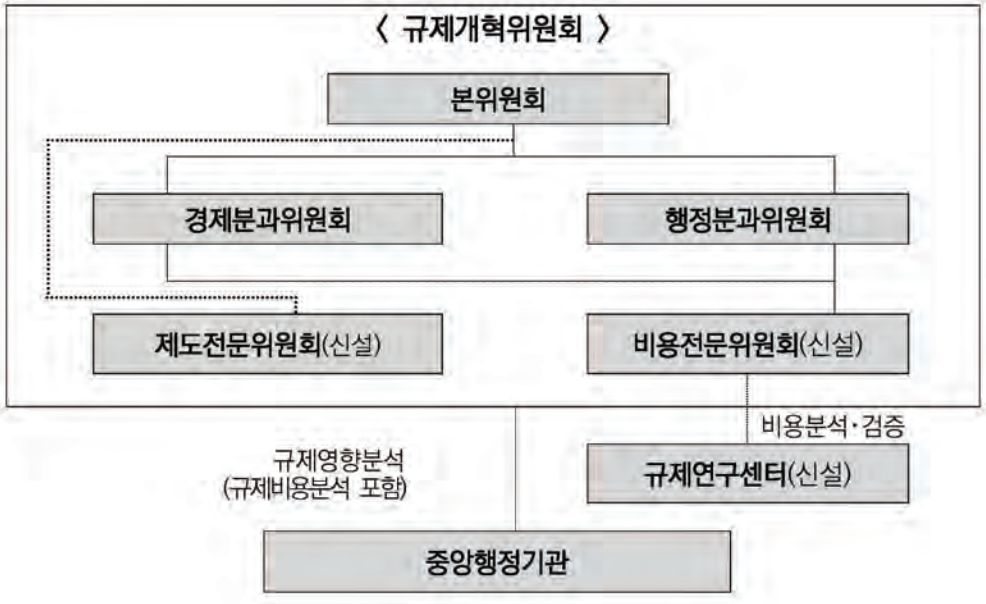

제 2 장 추진방안

1 개요

o 시범기관 : 총 14개 중앙행정기관(기존 시범부처 8개+ 자율 희망부처 6개)

- 미래부, 행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방통위, 관세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o 적용방법 : '15년 신설·강화 규제 중 i) 직접비용이 연간 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거나, ii) 피규제자 수가 연간 5만명 또는 500개소 이상인 규제를 대표사례로 선정, 진행

※ 다만, 규제심사 대상의 비용총량제 적용 여부 및 적용 유형(간편심사, 심사처리제) 심의는 통계 관리 차원에서 계속 진행

- 신설·강화 규제에 상응하는 폐지·완화 규제도 동시에 제시 원칙, 폐지·완화 규제는 신설·강화 규제의 해당 법령 분야에서 우선 발굴
- 단, '15년 신설 · 강화 규제 중 대표사례가 없을 경우 과거 사례 선정 가능

o 적용 시기 : '15.4월

2 적용 대상

o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로서 피규제자*에게 직접적인 비용 및 편익을 발생시키는 규제

- 신설·강화 규제뿐만 아니라 폐지·완화 규제에 대해서도 적용

* 피규제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의미

○ 다만, 다음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을 제외

①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② 조약이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규제
- 단, 조약이나 국제협정 준수를 위한 최소요건 이상으로 국내 규제 수준을 설정하여 기업에 대해 추가 비용을 유발할 때에는 비용총량제 적용

※ 국제적 권고사항 등을 도입하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이행 합의된 사항이거나, 부처간 이견이 없는 경우임을 소명할 것

③ 국가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경우, 주요 선진국 기준 및 규제의 필요성·적절성(타 규제와 중복여부, 대안 여부 등) 등을 입증할 것

④ 금융 · 외환시스템 위기의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환경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

⑤ 1년 이하의 효력상실형 일몰이 설정된 규제

⑥ 통상적인 임금 및 물가상승에 상응해 기존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규제

⑦ 규제의 미이행·미준수로 인해 부과되는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 단, 의무부과·금지규정이 강화되어 규제가 확대·강화된 경우 비용총량제 적용

⑧ 1항 내지 7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용총량제 적용제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

3 적용 방안

(1) 비용 분석

○ 신설·강화 규제의 비용분석 후,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

- 원칙적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시 대응하는 폐지·완화 규제 동시 검토
- 폐지·완화 규제를 동시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 폐지·완화 계획 [규제사무명, 정비시기(원칙:1년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등]을 작성 제출
- 신설·강화 규제와 폐지·완화 규제의 비용교환에 따른 규제순비용 적립 (저축 또는 부채) 가능 (규제비용적립제, banking)*

* 비용전문위원회 심의 완료 후 예비 정산·관리하고, 실제 정산·관리는 규제 등록시를 기점으로 함

(2) 간편심사제

○ 비용분석 대상이나, 규제비용이 경미한 경우 규제연구센터의 검증을 생략하는 간편심사(Fast-Track) 적용 (26쪽 참고)

(3) 비용분석 불가(심사처리제)

○ 화폐적인 비용분석이 불가능하거나, 분석에 많은 비용·노력이 소요되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경우,

- 규제의 성질·강도·파급효과 등을 고려, 유사수준의 규제 폐지·완화 (27쪽 참고)

〈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여부에 따른 분류 〉

<table>
<tr><th colspan="3">비용총량제 대상</th><th>비용총량제 非대상</th></tr>
<tr><td rowspan="2">비용분석</td><td>간편
심사</td><td rowspan="2">심사처리제</td><td rowspan="2">적용 제외</td></tr>
</table>

4 운영 절차 ※ 이하 운영절차는 정식 비용분석 절차 중심으로 서술

(1) 개요

○ 기존의 규제심사 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비용총량제 관련 절차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단계 前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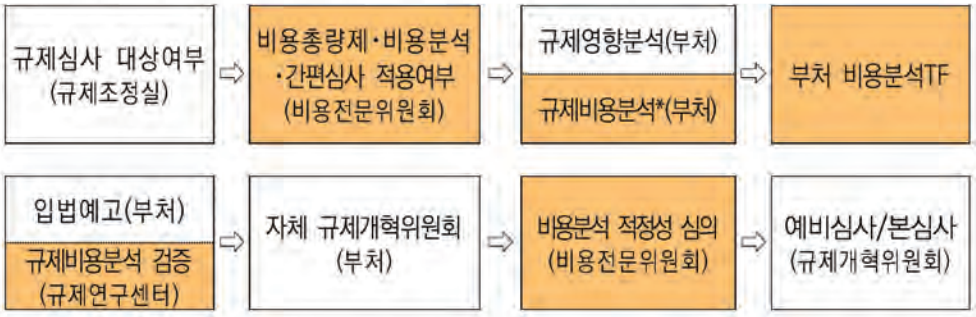

* 음영은 피규제자에 발생하는 직접비용·직접편익 분석을 의미

(2) 세부 운영절차

① 규제심사 대상여부 결정 (규제조정실)

○ 규제조정실은 부처에서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법령이 규제인지 여부를 판단, 규제심사 실시 여부를 결정

② 비용총량제 대상여부 결정 (비용전문위원회)

○ 부처는 규제심사 안건에 대해 비용총량제 적용 여부, 간편심사 대상 여부 및 비용분석 가능여부를 소명하는 비용총량제 적용여부검토서(34쪽 참고) 작성, 규제조정실에 제출

※ 명확히 비용분석 대상일 경우, 비용총량제 적용여부 검토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바로 비용분석 실시(비용분석 대상 여부는 규제조정실과 사전 협의 필요)

○ 신설·강화 규제의 비용총량제 적용여부·비용분석 가능여부·간편심사 적용여부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에서 심의·결정, 그 결과를 부처에 통보

○ 신설·강화 규제가 비용총량제 적용대상인 경우 소관 부처는 이에 상응하는 폐지·완화 규제를 자율적으로 결정

- 단, 폐지·완화 규제는 그와 상응하는 신설·강화 규제의 해당 법령 분야에서 우선 발굴

* 부처는 감축 대상 규제 우선순위에 대한 목록을 상시적으로 작성,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비

○ 비용총량제 적용 제외 규제의 경우, 현행과 같이 규제영향분석만 실시

③ 규제비용 분석 (각 부처)

○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에서 비용총량제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는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함께 규제비용총량제에 따른 규제비용을 분석

- 피규제자에게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을 발생시키는 항목에 대해 할인율을 고려, 규제순비용 및 연간균등순비용을 산정

- 피규제자에 대한 간접 비용 및 간접 편익도 분석하되, 계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를 제시, 계량화가 어려울 경우 서술 실시

○ 부처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응하는 폐지·완화 규제에 대해서도 비용분석 실시

○ 규제비용분석서 양식에 따라 신설·강화 규제 및 폐지·완화 규제에 대한 비용분석 결과를 작성

○ 다만, 직접비용보다 직접편익이 크거나 같은 경우 순비용을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제 퇴출이 요구되지 않음

④ 규제비용분석 자체 검증 (부처 비용전문TF)

○ 부처는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부처 내 담당 공무원, 비용·편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용전문TF를 설치, 규제비용 분석 결과를 자체 검증 후 규제조정실에 규제비용분석서 제출

※ 비용분석 불가규제인지 여부도 부처 비용전문 TF에서 자체 검증

- 규제비용분석서는 원칙적으로 입법예고 전까지 제출

⑤ 규제비용분석 검증 (규제연구센터)

○ 규제조정실에서 규제비용총량제에 따른 규제비용분석서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검토 후, 규제연구센터에 검증 의뢰

○ 규제연구센터에서 부처가 제시한 비용분석의 적정성을 검토(입법예고 기간 중 검증 추진)

- 경제 부처의 규제비용 검증은 KDI 규제연구센터에서, 행정·사회 부처의 규제비용 검증은 행정연 규제연구센터에서 실시

○ 규제연구센터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비용분석의 적정성 검증

〈 Check list 〉

- 공식적인 통계 미비시 분석에 대한 가정 및 추정치 제시가 합리적인가?
- 분석에 대한 근거 및 데이터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비용부담 대상자 및 항목을 정확히 식별했는가?
-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을 산정했는가?
- 신뢰성 있는 통계와 데이터를 사용했는가?
- 할인율을 고려, 현재가치로 비용과 편익을 제시했는가?
-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피규제자에 대한 의견청취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폐지·완화 규제의 경우 이로 인한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없는가?
- 신설·강화 규제와 폐지·완화 규제와의 비용교환에 따른 적립분이 정확히 산정되었는가?

ㅇ 규제연구센터에서 규제비용 분석·검증을 마친 후, 검증 결과 통보 (규제연구센터 → 규제조정실 → 부처)

- 이 때, 규제연구센터는 규제비용분석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25일 이내에 1차 검증을 완료

- 검증 결과는 동의, 보완, 보완(재제출 필요), 부동의 중에서 제시

ㅇ 부처는 규제연구센터의 검토결과가 보완(재제출 필요) 또는 부동의인 경우,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2차 규제비용분석서를 제출하고 재검증을 받아야 함

- 부처는 원칙적으로 규제연구센터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2차 규제비용분석서를 제출

※ 참고 : 규제비용총량제 업무 처리기한 가이드라인(16쪽)

ㅇ 다만, 간편 심사가 적용되는 규제의 경우 규제연구센터의 검증을 생략하고 규제조정실에서 분석 내용 간이 검토

ㅇ 규제연구센터의 검증이 완료(정식 비용분석 대상)되거나, 규제조정실의 검토가 완료(간편심사 대상)된 건은 원칙적으로 10일 내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에 상정

⑥ 안건 상정 및 비용분석 검증의 적정성 심의 (비용전문위원회)

ㅇ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는 비용분석 검증의 적정성 및 규제비용 교환에 따른 적립분(banking)에 대해 판단

- 폐지·완화 규제에 대해서는 이로 인한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없는지 추가 검토

⑦ 예비심사/본심사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결과를 반영한 규제심사를 진행

- 비용분석 검증 결과의 적정성
- 신설·강화 규제로 인해 증가하는 규제비용을 상쇄하는 수준의 규제비용 총량 관리 및 그 이행계획이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등

⑧ 규제비용의 정산 및 공개 (규제조정실)

○ 신설·강화 규제와 폐지·완화 규제의 교환에 따른 비용 적립분(저축 또는 부채)은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 심의 완료 시점에 예비 정산·관리

- 실제 정산·관리는 규제 등록시를 기점으로 함

○ 규제정보포털 및 각 부처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실적(규제순비용 총량, 규제비용분석서) 대국민 공개 추진

※ 각 부처는 규제비용총량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인력 및 예산을 편성 (산하 연구기관 포함)

〈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절차 정리 〉

<table>
<tr><th colspan="3">비용총량제 적용대상</th><th>적용제외</th></tr>
<tr><th colspan="2">비용분석 가능</th><th>비용분석 불가</th><th></th></tr>
<tr><th>① 정식 절차</th><th>② 간편심사제(저비용 규제)</th><th>③ 심사처리제</th><th></th></tr>
<tr><td>규제비용분석서 작성
⇓
부처 비용분석 T/F 검토
⇓
규제연구센터 검증
⇓
비용전문위원회 심의</td><td>규제비용분석서 작성
⇓
부처 비용분석 T/F 검토
⇓
규제조정실 검토
⇓
비용전문위원회 심의</td><td>유사규제 선정(부처자체)
⇓
부처 비용분석 T/F 검토
⇓
비용전문위원회 심의</td><td></td></tr>
<tr><td colspan="4">⇓
위원회 예비심사/본심사</td></tr>
</table>

〈 참고 : 규제비용총량제 업무 처리기한 가이드라인 〉

ⅰ) 부처가 제출한 규제비용분석서가 기본적인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접수를 반려하고 보완·재제출토록 요청(이 경우, 비용분석 검증 기간에 不산입)

ⅱ) 부처의 최초 분석서 제출부터 비용전문위원회 심의까지 60일 이내 완료 원칙

ⅲ) 센터의 검증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차로 완료함을 원칙으로 진행

ⅳ) 부처의 수정은 1차는 15일이내, 2차는 5일 이내 완료·제출함을 원칙으로 진행

ⅴ) 부처의 최종본 제출부터 비용전문위원회 심의까지는 10일이내 완료함을 원칙으로 진행

* 가이드라인에 따른 업무 절차 예시

안건(부처)	1차 검증	1차 수정	2차 검증	2차 수정	비용전문위	총계
◇◇◇◇(○○○부)	25	15	5	5	10	60

ⅵ) 규제실, 각 부처, 규제연구센터는 상기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숙지하고 업무처리시 일정관리 철저

〈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절차도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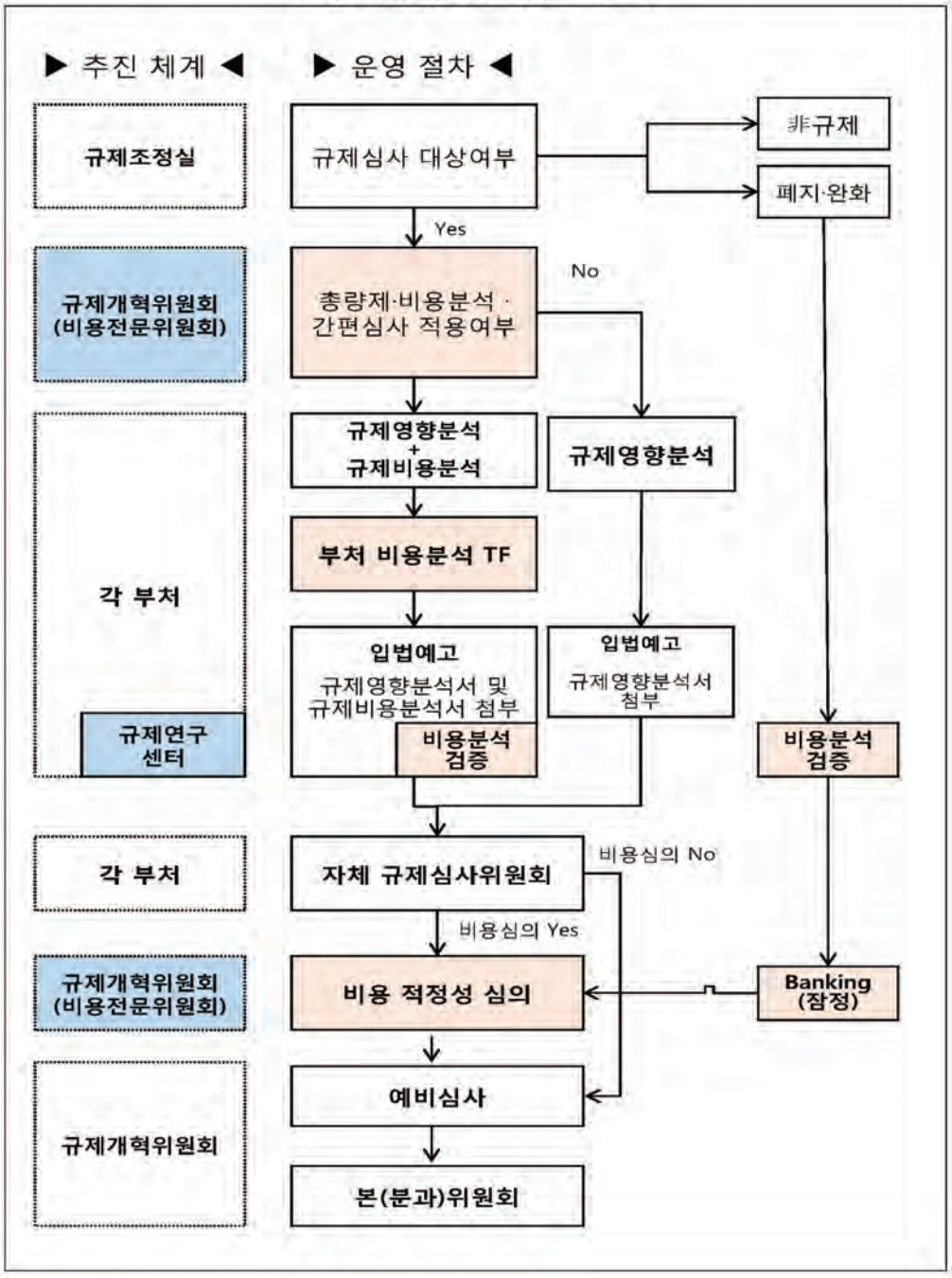

〈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절차도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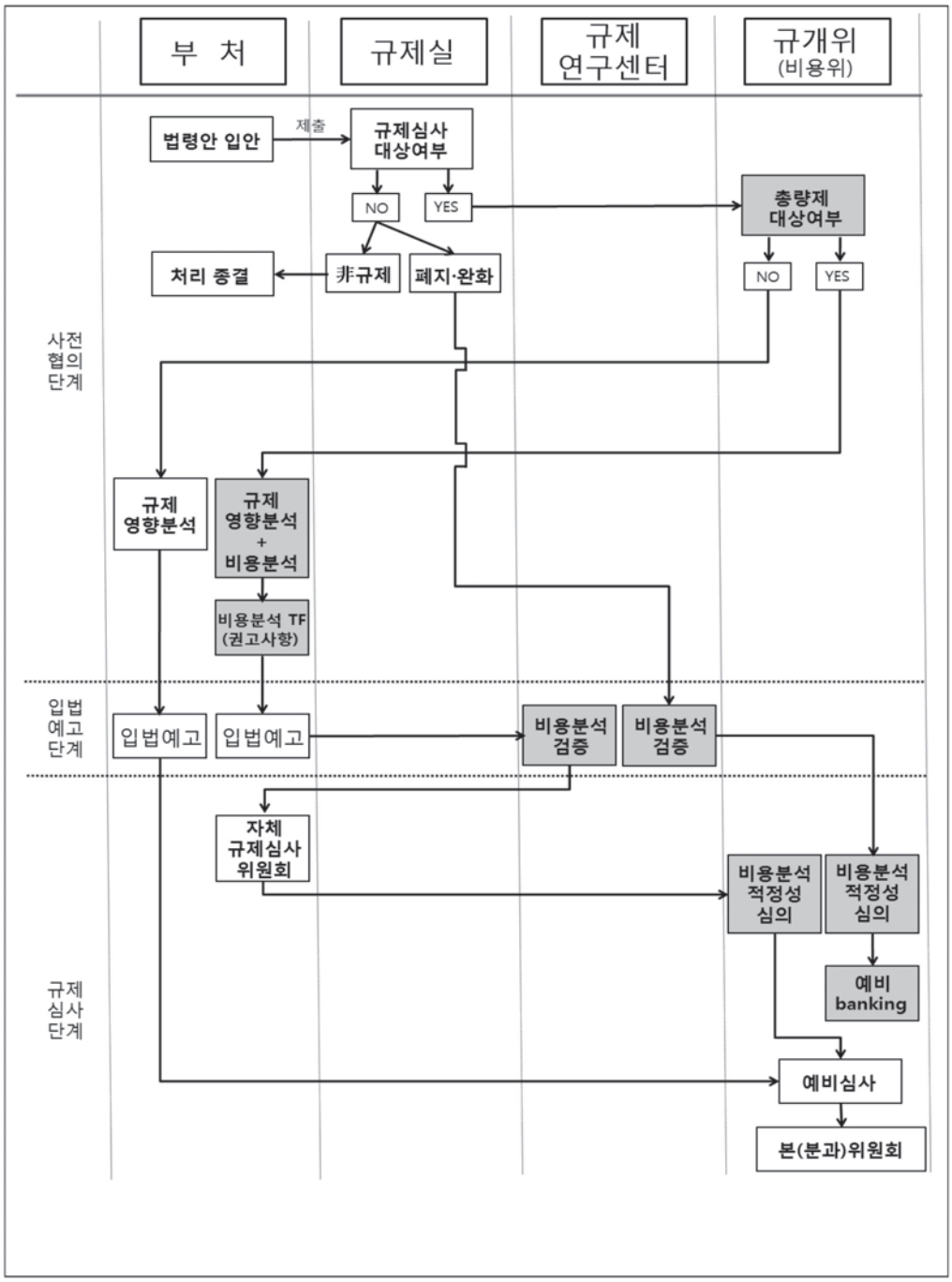

제 3 장 비용총량제 적용방법

1 규제비용 분석

(1) 개념

가. 규제 비용

○ 직접비용 :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

○ 간접 비용 :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피규제자에게 2차적 효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제3자에게 발생하는 비용

> * (예) 오염배출 생산시설에 고가의 환경보호 장치를 의무화하는 규제 도입
> ■ 직접비용 : 환경보호 장치 구입비, 운영·유지비 등
> ■ 간접비용 :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잉여 감소 등

나. 규제 편익

○ 직접편익 :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편익

○ 간접편익 :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피규제자에게 2차적 효과로 발생하는 편익 및 제3자에게 발생하는 편익

> * (예시) 반품·환불 절차 확대 등 소비자 권리를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
> ■ 직접 편익 : (소비자 권리 규제의 도입으로 반품 및 환불 기준이 명확히 확립됨으로써 기업이 절감할 수 있는) 소비자 소원 수리·소송 비용
> ■ 간접 편익 : 기업 이미지 제고로 인한 판매량 증가, 광고 효과 등

〈 비용·편익의 범위 〉

구 분	범 위
직접비용	· 공공 부문 또는 제3부문에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규제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규제준수활동에 투입된 인건비 등 직접 노동비용 · 임대료·사무용품 구입비 등 관리운영에 관계된 간접경비 및 기계장비 등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구입한 기자재 비용 · 전문가 자문비용, 시스템 위탁 운영비용 등 규제준수를 위하여 외부 공급자에게 지출된 비용 · 규제이행에 따라 감수하는 영업손실 비용 등 일부 기회 비용(지연비용) · 규제 신설·강화에 따라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교육 훈련비용 · 그 밖에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피규제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
간접비용	· 기회비용(대안포기 비용) · 2차적 비용(협의의 간접비용) · 거시 경제 비용(생산성 감소, 고용 감소) 등
직접편익	· 보조금 등 피규제자가 직접적으로 받는 금전적 이익 · 규제기준의 설정으로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편익 · 그 밖에 규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피규제자가 절감하게 되는 비용 등 피규제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
간접편익	· 고용 증대, 교역량 증가, 관광 유발 효과, 삶의 질 개선 등

※ 상세내용은 참고1 : 규제비용 분류(42쪽) 내용을 참고

(2) 분석방법

가. 측정비용

○ 피규제자에게 직접 발생하는 '순비용(직접비용-직접편익)' 측정

- 직접비용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편익도 고려, 순비용 측정
- 피규제자, 즉 규제의 직접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비용·편익으로 제3자로서 영향을 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규제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편익도 해당되지 않음

나. 분석대상 기간

○ 원칙적으로 당해 규제안의 존속기한으로 하되, 기본값은 10년으로 설정*

- 다만 규제의 기한이나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규제의 존속기간은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책담당자의 교체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10년을 기본값으로 설정

○ 규제비용 발생 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규제연구센터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다. 측정방법

○ 새로운 규제 시행 이전의 상태(base case)의 지표값을 측정하고 분석대상 기간 동안 지표값의 변화를 추정

○ 즉,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시행할 경우 base case값은 0이므로 새로운 순비용만 측정

-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변수에 추가적으로 순비용이 발생하므로 규제상황의 비용 지표값에서 base case의 지표값을 차감

* 예시 :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7%에서 8%로 강화할 경우 직접적인 규제순응비용은 자기자본비율을 1% 높이는데 소요되는 직접 비용

라. 할인율

○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편익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고려하여 발생하는 순비용을 현재가치로 전환, 이를 합산해야 함

○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

■ 할인율(discount rate)의 개념

- 미래의 비용·편익을 할인, 현재가치로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비율
- 10년 후의 1원이 현재의 1원과 다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각 비용과 편익이 가지는 가치를 평가

$$PV(Bn) = \frac{Bn}{(1+r)^n} \quad (r : 할인율, B : 편익)$$

- r은 할인율이고, 규제가 발효된 n년 후에 발생하는 편익을 Bn이라 하면, Bn을 규제시행 시점으로 현재화한 가치는 PV(Bn)으로 표시할 수 있음

■ 할인 절차

- 비용(편익)의 현재가치는 할인계수(discount factor)를 먼저 구하고 이를 발생되는 비용액(편익액)에 곱하여 계산

$$할인계수 = \frac{1}{(1+r)^t} \quad (r : 할인율, t : 해당년도)$$

■ 할인율 수치

- 할인율은 국가별, 경제 현실상황, 적용 대상 등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대형국책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5.5%)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

  * 영국의 경우 3.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비용(편익)을 현재가치화

마. 측정산식 : 연간균등순비용 도출

o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편익, 반복성 비용·편익을 모두 고려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모두 합하여 '순비용 현재가치'(Present Value of Net Costs to Regulatees : PVNCR) 도출

- 즉, 순비용 현재가치는 규제 존속기간 동안 매년 발생하는 피규제자가 부담하는 직접비용에서 직접편익을 차감한 후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

o 규제비용총량제에서는 피규제자를 대상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와 폐지·완화되는 규제의 연간균등순비용(Equivalent Annual Net Cost to Regulatees : EANCR)을 비교

- 비용발생기간이 상이한 순비용 현재가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순비용 현재가치를 연간균등기업순비용으로 환산하여 제시
- 연간균등순비용은 규제의 순비용 현재가치(PVNCR)를 '연간지급률 계수(annuity rate)'로 나누어 환산

$$\text{연간균등순비용} = \frac{\text{순비용 현재가치}}{\text{연간지급율}^*}$$

$$^* \text{ at,r} = \frac{1+r}{r}\left[1 - \frac{1}{(1+r)t}\right]$$

at,r : 연간지급율(r : 할인율, t : 분석대상 기간)

바. 규제비용 산정시 유의사항

o 비용·편익 분석 관련

- 가격, 비용·편익, 임금 등 분석에 사용되는 수치는 통계청, 한국은행, 조달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
- 가급적 직전 연도(혹은 가용한 가장 최신년도) 연말 기준 수치를 사용하되, 일관된 가격변수를 사용

※ 특히, 인건비 통계는 '고용노동통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통계가 없거나 특수 분야로 별도의 지표값 설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설문조사, 합리적 근거에 바탕을 둔 추정치 등을 통해 얻은 지표값 사용 가능

- 중요 수치의 경우 최근 5년간 변동 추이나 증감률을 감안, 분석에 반영
- 비용·편익의 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산식, 산출근거와 출처 및 분석 가정을 명시
- 비용·편익의 발생은 10년을 기준으로 제시하되, 특별한 경우 분석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는 비용전문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
- 주무부처는 가급적 직접비용을 지불하거나 직접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복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비용·편익발생 여부 및 비용·편익 수준에 대해 의견을 청취, 그 결과를 비용분석에 포함

o 자료 구득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비용·편익 추정을 위해 적용한 수치의 기준 연도가 분석 기준년도와 상이할 경우 이를 보정하여 분석을 수행

- 기업에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비용·편익에 대해 2년 이상 경과한 과거 수치를 활용하여 제시할 경우, 공표된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보정
- 규제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정지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세한 근거 서술이 필요

o 비용·편익의 현재가치화 및 기업순비용 현재가치의 산정

-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기업의 순비용을 현재가치로 변환하여 제시

⇨ 순비용 현재가치 등 산정은 다음의 「규제비용분석표」를 활용·작성

〈 규제비용 분석 예시 〉

- 규제 1을 도입했을 때, 1년차에 직접비용이 100억원, 2년차 55억원, 3년차20억원이 소요되며 4년차부터 유지비용 1억이 소요 / 매년 기업의 직접편익은 15억원이 발생하는 경우

〈 규제비용분석표 〉

(단위 : 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순비용 현재가치	현재가치 산정식	연간균등 순비용
1년차	10000	1500	8500	8500.00	$= 8500$	
2년차	5500	1500	4000	3791.47	$= 4000 \times \frac{1}{(1+0.055)^1}$	
3년차	2000	1500	500	449.23	$= 500 \times \frac{1}{(1+0.055)^2}$	
4년차	100	1500	-1400	-1192.26	$= -1400 \times \frac{1}{(1+0.055)^3}$	
5년차	100	1500	-1400	-1130.10	$= -1400 \times \frac{1}{(1+0.055)^4}$	
6년차	100	1500	-1400	-1071.19	$= -1400 \times \frac{1}{(1+0.055)^5}$	
7년차	100	1500	-1400	-1015.34	$= -1400 \times \frac{1}{(1+0.055)^6}$	
8년차	100	1500	-1400	-962.41	$= -1400 \times \frac{1}{(1+0.055)^7}$	
9년차	100	1500	-1400	-912.24	$= -1400 \times \frac{1}{(1+0.055)^8}$	
10년차	100	1500	-1400	-864.68	$= -1400 \times \frac{1}{(1+0.055)^9}$	
계	18200	15000	3200	5592.47		703.26

⇨ 규제 1의 순비용 현재가치는 총 55억 9,247만원 / 연간균등기업순비용은 7억 326만원, 10년간 매년 7억 326만원씩의 순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

※ 별첨 :「규제비용 간이계산기」 엑셀 서식(규제정보화시스템에 게시)

2 간편심사제(Fast-Track)

(1) 개요

o 비용분석은 가능하나, 규제의 직접 비용이 낮은 규제의 경우 규제연구센터의 검증을 생략하는 간편심사(Fast-Track) 적용

- 규제조정실에서 비용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 간이 검토 실시

o 피규제자에 대해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에 대해 분석·심사 역량을 집중,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부처의 규제심사 부담을 경감

※ (참고) 영국의 경우도 기업에 대한 규제비용이 낮거나(£1m 이하), 행정부담(Red-Tape Challenge) 등의 경우 Fast-Track 운영

(2) 적용대상

o 규제의 직접 비용이 낮은 규제

* 예) ⅰ) 매년 기업에 초래하는 직접 비용이 대략 10억 미만, ⅱ) 자격 기준·요건 등 관련 규제로서 직접비용이 크지 않은 규제, ⅲ) 법령 제정 등으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으나, 이전에도 이미 준수하던 사항으로 피규제자에게 추가되는 규제 부담이 거의 없는 경우

※ 참고 6 : 간편심사 사례(67쪽)

(3) 적용 방안

o 간편심사 적용대상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연구센터의 사전 검증을 생략, 비용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 처리

- 다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규제내용이 크게 변경된 경우, 규제연구센터의 검증과 비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ㅇ 이 경우에도, 비용분석의 기본적인 수치(직접비용, 직접편익, 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등)을 제시해야 함
- ㅇ 매 분기별로 규제연구센터에서 간편 심사 분석 내용의 적정성을 사후 검토,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에 사후 보고

3 심사처리제

(1) 개요

- ㅇ 비용분석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비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폐지·완화
- ㅇ '규제 부담수준의 유사성' 판단 시에는 규제 성격·강도·파급효과·규제개선 정도·규제방식·일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ㅇ '규제부담의 유사성' 판단기준은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28쪽 참고)을 활용하되,
  - 부처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수립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에서 심사 후, 기준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2) 대상 및 처리방식

가. 비용분석 불가 규제 범위

- ㅇ 비용 분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규제 (유형 1)
- ㅇ 규제 기준 및 규제범위 설정이 대단히 어렵고, 관련 통계 등이 전무하여 비용분석 추계(시뮬레이션)조차 불가능한 규제 (유형 2)

※ 참고 7 : 심사처리제 사례(69쪽)

나. 처리절차

○ 부처는 규제비용 분석이 어려워 심사처리제에 해당된다고 판단시, 부처 비용분석 TF의 검토를 거쳐 규제영향분석 前, 규제조정실에 비용총량제 적용여부 검토서(34쪽 참고)를 작성·제출

○ 부처는 비용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제시한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에서 비용분석 불가여부를 판단

* 비용분석 활성화를 위해 비용분석 가능 여부(심사처리제 해당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

- 규제비용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규제에 대하여는 필요시 규제연구센터가 분석방법 제시 등 컨설팅을 실시, 부처의 비용분석 지원

다. 적용방안

○ 신설·강화 규제의 성질, 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 부담이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폐지·완화

- 신설·강화 규제와 유사한 수준의 폐지·완화 규제는 규제심사시 동시에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규제부담의 유사성 분류 기준(가이드라인)

○ 규제 성격(진입·가격·거래·품질·질서)별 기초지수에 규제강도·파급효과·개선정도·규제방식·일몰설정 여부에 따른 가중치의 합을 곱하여 산출

※ 최종점수 = 규제성격별 기초지수 X Σ가중치(최저7점~최고95점)

가. 기초 지수 및 가중치

i) 규제성격별 기초지수

구 분	진입규제	가격규제	거래규제	품질규제	행정규제
기초지수	10	8	6	6	2

ii) 가중치 기준

○ 규제강도

	가 중 치		
	2	1.5	1
진입규제	원칙금지(허가)	일부허용(인가·등록)	일반허용(신고)
가격규제	전면통제(허가)	사전통제(인가)	사후통제(신고)
거래규제	원칙금지(허가)	거래조건 제한	기준설정(가이드라인)
품질규제	전면통제(허가)	사전통제	사후통제(신고)
행정규제			정보제공 의무

○ 규제 파급효과(영향집단)

구 분	1,000만명 이상	100만~1,000만명	100만명 이하
가중치	3	2	1

○ 규제개선 정도

구 분	대폭	중폭	소폭
가중치	1.5	1	0.5

○ 규제방식

구 분	Positive	혼합·기타	Negative
가중치	1.5	1	0.5

○ 일몰

구 분	미설정	재검토형 일몰	효력상실형 일몰
가중치	1.5	1	0.5

나. 세부 적용기준

i) '규제성격 및 강도' 적용 기준

ㅇ 진입규제 : 경제주체가 특정 산업 및 영역에 참여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

* 사업의 인·허가, 입지 제한, 특정업종 및 지역에 대한 참여 제한 등

- (원칙금지) 어떠한 영역에의 진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전면적으로 금지된 사항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경우

* 카지노업 허가, 독점사업의 허가, 특정인의 소유제한 등

- (일부허용) 일반적으로 금지된 사항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시 허용하는 경우

* 담배제조업 사업 허가 등

- (일반허용) 일반적으로 허용된 사항을 영위하기 위하여 단순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ㅇ 가격규제 : 제품가격이나 서비스요금 등에 대해 일정 수준이나 범위를 설정하는 규제

- (전면통제) 최저임금 설정, 농수산물 가격예시 등

- (사전통제) 통신요금인가제 등 가격의 결정을 사전에 통제하는 규제

- (사후통제) 가격에 대한 사후적 검증, 가격차별화 방식, 가이드라인을 통한 시장유도 등

ㅇ 거래규제 : 거래 상대방, 물량 등 거래조건 및 사업영위 방법에 대해 제한하는 규제

- (원칙금지) 거래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해 거래가 가능한 경우

  * 토지거래허가제, 농지취득자격 등

- (거래조건 제한) 물량, 거래방식, 계약기한, 영업방식 등 거래조건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있으며, 위반시 행정벌 및 질서벌 등 제재가 수반되는 규제

- (기준설정) 원활한 거래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o 품질규제 :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분·규격·제조설비 등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규제

- (전면통제) 관급제 등과 같이 정부가 재화 및 서비스의 수준을 직접 결정

- (사전통제) 생산과정의 각종 설비, 원료, 시설기준, 사업장 면적기준, 시설관리방법, 유자격자의 고용 등 산출 이전단계의 투입에 대한 규제

- (사후통제) 제품 및 서비스가 유지해야하는 품질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를 검증·시험·인증 등으로 통해 사후 확인하는 규제

o 행정규제 : 정보제공, 자료협조 의무 등 규제행정의 집행에 필요한 규제

ii) '규제 파급효과'에 대한 적용 기준

o 규제 신설·강화, 폐지·완화에 직·간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영향집단의 규모를 모두 고려

o 직접적인 피규제자 뿐 아니라 관련 산업, 소비자 및 서비스 수혜자 등 간접 영향집단까지 포함하되, 그 범위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정성적으로 판단

iii) '규제개선 정도'에 대한 적용 기준 : 정성적 판단

- o (대폭) 규제 신설·폐지 및 기존 규제수준에 비해 요구수준이 상당히 변경된 경우 등
- o (중폭) 규제 내용의 일정수준 이상 변화 등
- o (소폭) 규제 내용의 미미한 변화 등

iv) '규제방식' 적용 기준

- o (Positive)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방식으로 규제가 규정된 경우
- o (Negative)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규제가 규정된 경우
- o (혼합·기타) Negative(Positive) 형식이나 타 조항 및 하위법령 등과의 관계에 의해 사실상 Positive(Negative) 규정인 경우, 형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v) '일몰'

- o (미설정) 해당 규제에 일몰(재검토형, 효력상실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 o (재검토형) 일정기간 후 규제의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는 경우
- o (효력상실형) 일정기간 후 규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경우

다. 적용 예시

* 아래 예시는 점수산출을 위한 사례일 뿐, 예시 규제가 심사제 적용대상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제·개정 상황도 단순히 가정한 것임

〈사례1〉 카지노업 허가를 신설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21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각호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성격	강도	개선정도	파급효과	방식	일몰	총점
진입규제	원칙금지	대폭	중	Positive	미적용	
10	2	1.5	2	1.5	1.5	85

: 10 x (2 + 1.5 + 2 + 1.5 + 1.5) = 85

〈사례2〉 승강기 사고보고 및 조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 4)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단서생략)

② 승강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 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생략)

성격	강도	개선정도	파급효과	방식	일몰	총점
행정규제	정보제공	중폭	강	기타	미적용	
2	1	1	3	1	1.5	16

: 2 x (1 + 1 + 3 + 1 + 1.5) = 15

제 4 장 작성방법

1 비용총량제 적용여부 검토서

o 비용총량제 적용제외 및 심사처리제, 간편심사 적용 규제에 대해 각 부처는 비용총량제 적용여부 검토서를 규제영향분석 前 규제조정실에 작성·제출

o 비용전문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심의, 비용총량제 적용 여부 및 유형 결정

〈 작성 양식 〉

비용총량제 적용여부 검토서					
법 령 명	*신설·강화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명 적시*				
규제사무명	*규제사무명 적시*				
부처 / 담당자	*담당 국장·과장·담당자 성명(사무실 전화번호)*				
주요 내용	*신설·강화 내용을 2-3줄 정도로 핵심위주로 요약*				
현 행	개 정 안	비용총량제 적용 여부			규제실 검토의견
		적용제외 여부 (사유)	비용분석 가능여부 (사유)	간편심사 적용여부 (사유)	
현행 법 조항 적시	*필요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도 별도 적시*	*적용제외(유형번호)* *- 사유*	*심사처리제 (유형번호)* *- 사유*	*적용* *- 사유*	*미작성 (규제조정실 작성)*

※ 상기 양식은 횡(橫)으로 작성·제출 / 중고딕, 13p 작성

2 규제비용분석서

o 비용총량제 적용대상 규제 중에서 비용 분석이 가능한 규제에 대하여 작성 (정식 비용분석, 간편심사)

- 폐지·완화 규제의 경우에도 동일한 양식에 작성

o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에 규제비용분석서를 추가 작성

※ 작성 양식은 다음 페이지 참고

〈 작성 양식 〉

Ⅰ. 규제안 개요

□ 주요 내용

○ 분석대상 :

○ 총량제 적용유형 :

○ 근거규정 :

□ 비용분석·검증 경과

○ *규제실 작성란*

□ 규제비용 분석내용(최종 분석안, 현재가치)

○ **피규제자** :

○ **순비용** :

- 직접비용 :
- 직접편익 :

○ **연간균등순비용** :

□ 최종 검증결과(OOO 규제연구센터) :

○ *규제실 작성란*

□ 규제실 검토의견 :

○ *규제실 작성란*

Ⅱ. 규제비용 분석

1) 규제비용분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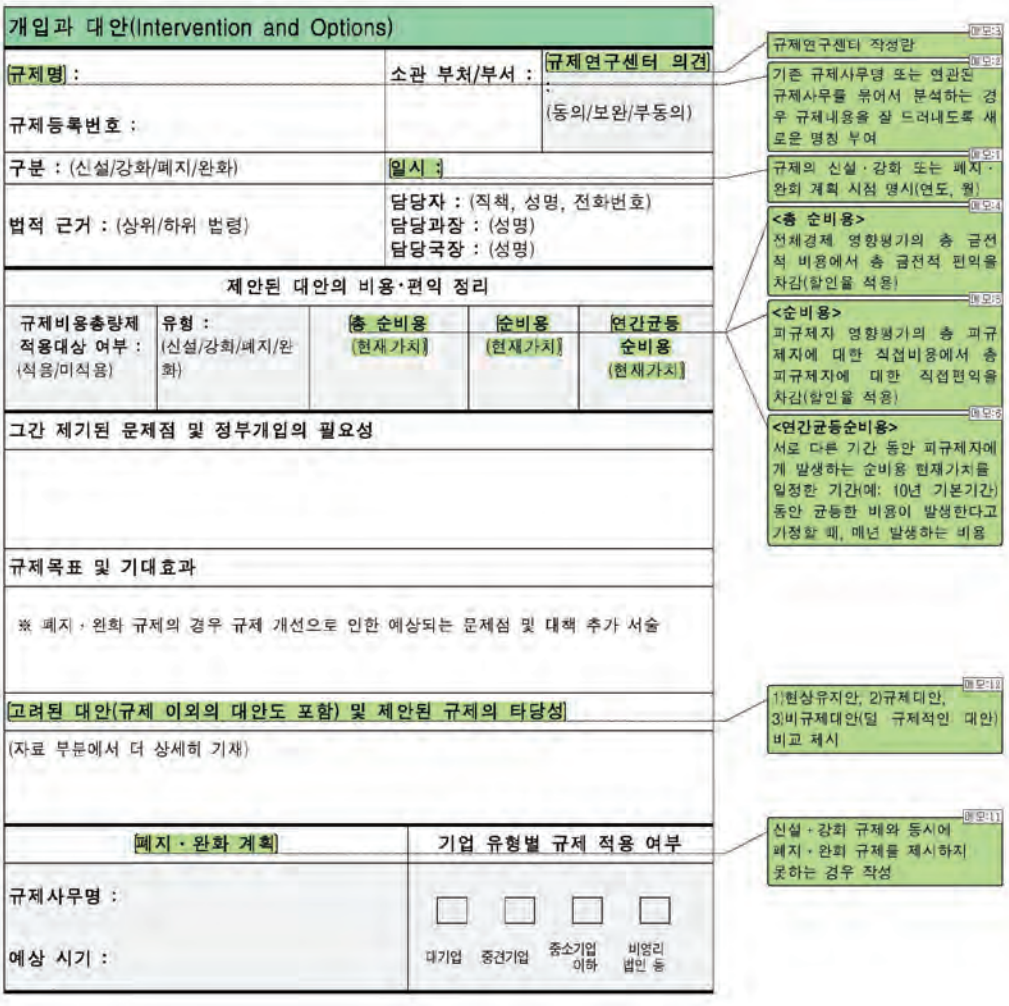

개입과 대안(Intervention and Options)

규제명 :	소관 부처/부서 :	규제연구센터 의견 : (동의/보완/부동의)
규제등록번호 :		
구분 : (신설/강화/폐지/완화)	일시 :	
법적 근거 : (상위/하위 법령)	담당자 : (직책, 성명, 전화번호) 담당과장 : (성명) 담당국장 : (성명)	

제안된 대안의 비용·편익 정리

규제비용총량제 적용대상 여부 : (적용/미적용)	유형 : (신설/강화/폐지/완화)	총 순비용 (현재가치)	순비용 (현재가치)	연간균등 순비용 (현재가치)

그간 제기된 문제점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

규제목표 및 기대효과

※ 폐지·완화 규제의 경우 규제 개선으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추가 서술

고려된 대안(규제 이외의 대안도 포함) 및 제안된 규제의 타당성

(자료 부분에서 더 상세히 기재)

폐지·완화 계획	기업 유형별 규제 적용 여부
규제사무명 : 예상 시기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하 □ 비영리 법인 등

매모:3 규제연구센터 작성란

매모:2 기존 규제사무명 또는 연관된 규제사무를 묶어서 분석하는 경우 규제내용을 잘 드러내도록 새로운 명칭 부여

매모:1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폐지·완화 계획 시점 명시(연도, 월)

매모:4 <총 순비용>
전체경제 영향평가의 총 금전적 비용에서 총 금전적 편익을 차감(할인율 적용)

매모:5 <순비용>
피규제자 영향평가의 총 피규제자에 대한 직접비용에서 총 피규제자에 대한 직접편익을 차감(할인율 적용)

매모:6 <연간균등순비용>
서로 다른 기간 동안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순비용 현재가치를 일정한 기간에: 10년 기본기간) 동안 균등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매년 발생하는 비용

매모:10 1)현상유지안, 2)규제대안, 3)비규제대안(덜 규제적인 대안) 비교 제시

매모:11 신설·강화 규제와 동시에 폐지·완화 규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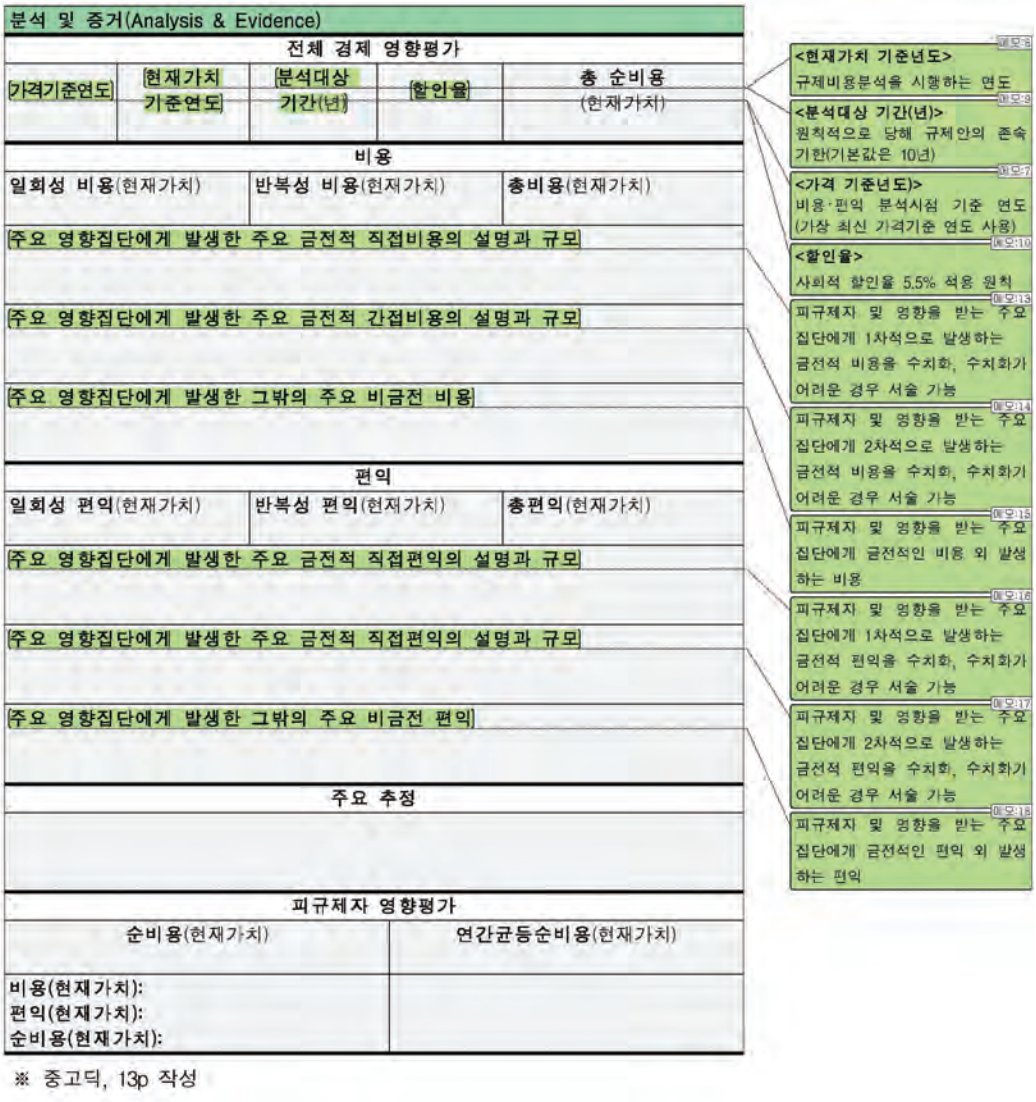

분석 및 증거(Analysis & Evidence)

전체 경제 영향평가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 기간(년)	할인율	총 순비용 (현재가치)

비용

일회성 비용(현재가치)	반복성 비용(현재가치)	총비용(현재가치)

주요 영향집단에게 발생한 주요 금전적 직접비용의 설명과 규모

주요 영향집단에게 발생한 주요 금전적 간접비용의 설명과 규모

주요 영향집단에게 발생한 그밖의 주요 비금전 비용

편익

일회성 편익(현재가치)	반복성 편익(현재가치)	총편익(현재가치)

주요 영향집단에게 발생한 주요 금전적 직접편익의 설명과 규모

주요 영향집단에게 발생한 주요 금전적 직접편익의 설명과 규모

주요 영향집단에게 발생한 그밖의 주요 비금전 편익

주요 추정

피규제자 영향평가	
순비용(현재가치)	연간균등순비용(현재가치)
비용(현재가치): 편익(현재가치): 순비용(현재가치):	

메모:6 <현재가치 기준년도>
규제비용분석을 시행하는 연도

메모:9 <분석대상 기간(년)>
원칙적으로 당해 규제안의 존속기한(기본값은 10년)

메모:7 <가격 기준년도)>
비용·편익 분석시점 기준 연도(가장 최신 가격기준 연도 사용)

메모:10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 5.5% 적용 원칙

메모:13 피규제자 및 영향을 받는 주요 집단에게 1차적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치화, 수치화가 어려운 경우 서술 가능

메모:14 피규제자 및 영향을 받는 주요 집단에게 2차적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치화, 수치화가 어려운 경우 서술 가능

메모:15 피규제자 및 영향을 받는 주요 집단에게 금전적인 비용 외 발생하는 비용

메모:16 피규제자 및 영향을 받는 주요 집단에게 1차적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편익을 수치화, 수치화가 어려운 경우 서술 가능

메모:17 피규제자 및 영향을 받는 주요 집단에게 2차적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편익을 수치화, 수치화가 어려운 경우 서술 가능

메모:18 피규제자 및 영향을 받는 주요 집단에게 금전적인 편익 외 발생하는 편익

※ 중고딕, 13p 작성

2) 설명자료

※ 동 양식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세부 서술 양식은 규제사안에 따라 변형 가능 / 휴먼 명조, 15p 작성

① 국민 경제전체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 개요

○

-

□ 규제비용 분석

○ 직접 비용

-

○ 간접 비용

-

□ 규제편익 분석

○ 직접 편익

-

○ 간접 편익

-

② 피규제자 규제비용·편익 분석

□ 분석의 가정

○

□ 직접 비용

○

-

□ 직접 편익

○

-

□ 연간균등순비용 ※ 규제비용분석표(25쪽 양식 참고) 활용

○

-

③ 결론

□

○

-

※ 심사처리제 적용 규제의 경우,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신설·강화 및 폐지·완화 규제간 적정성에 대한 근거와 설명자료 제시

제 5 장 부처 협조 사항

ㅇ 신설·강화 규제 중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사례 선정·제출(시범부처)

- 이에 대응하는 폐지·완화 목록 발굴 및 사전 비용 추계 등 준비

ㅇ 부처 내 규제비용분석 TF 설치 및 비용·편익 분석 전문가 배치, 산하 연구기관의 전문 인력 활용 등 비용분석 내부 심사체계 구축

- 비용·편익 분석시 소관 규제정책 담당 공무원과 비용·편익 분석 전문가의 상호 협조하에 작성

※ 영국의 경우, ▲내부검증(정책부서 담당자 비용분석 → 내부 Economist 검토) ▲외부검증(RPC 검증 → RRC 최종 확인) 등 절차로 진행

ㅇ 향후 전면 시행에 대비, 여타 부처도 시범부처에 준해 준비 만전

참고1 규제비용의 분류

1. 규제비용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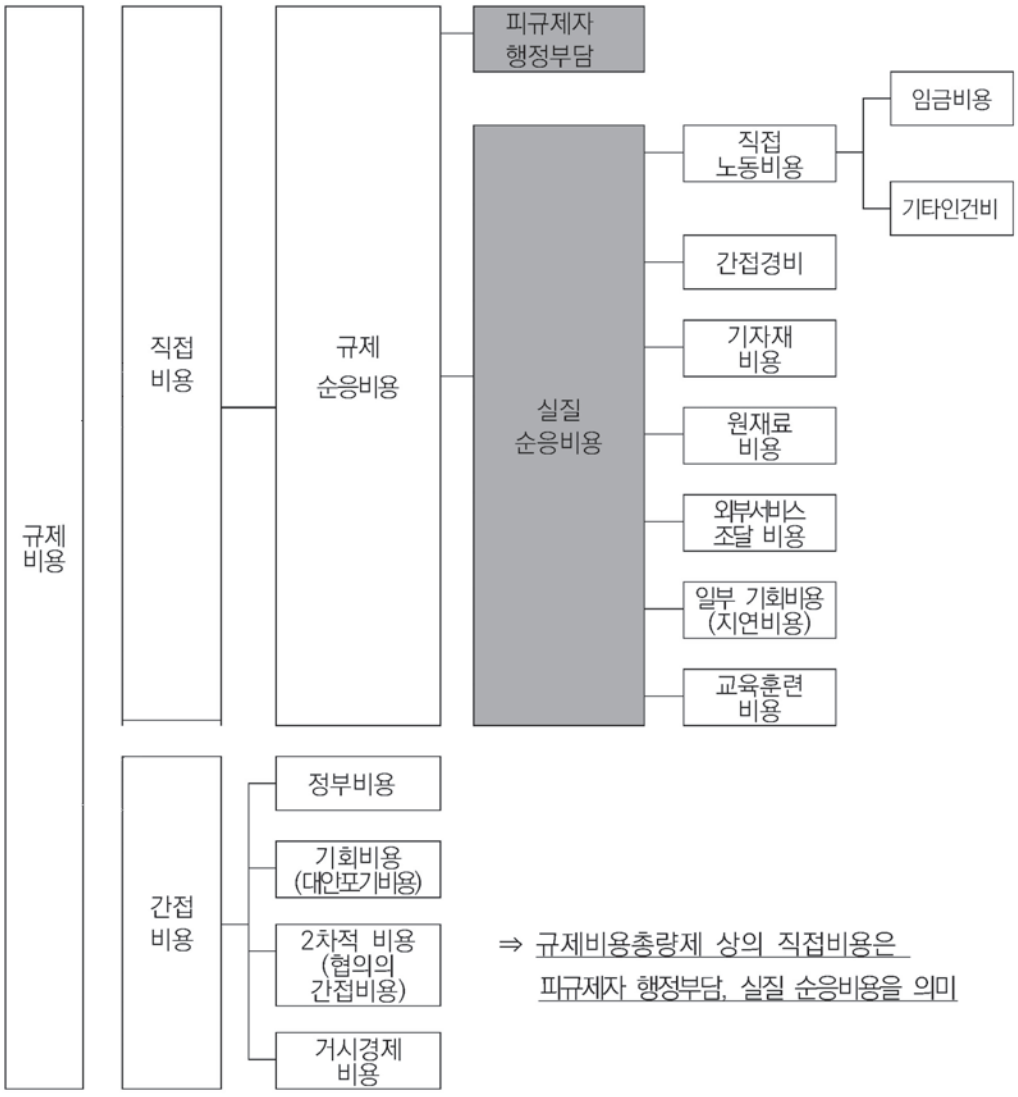

※ 상기 내용은 「OECD 규제순응비용 측정 가이던스('15년)」을 기초로 하여, 규제비용을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으로 분류한 것이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분류틀을 일부 변형하였음

직접비용(Direct Costs)

(1) 규제순응비용(Regulatory Compliance Costs)

: 피규제자와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피규제자 행정부담·실질 순응비용·정부비용으로 구분

① 피규제자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s)

- 규제가 요구하는 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정활동의 비용
- 정보의무는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모으고 준비해서 제공하는 의무 (감사, 방문, 조사 등에 협조하여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 등)

② 실질 순응비용(Substantive Compliance Costs) : 피규제자가 새로운 규제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 직접 노동비용: 규제준수활동에 투입된 직원의 인건비로 임금비용과 기타 인건비로 구분(임금비용: 지불된 시간급, 기타 인건비 : 연금, 휴가, 병가, 소득세, 각종 보험 등 임금(시간급)외에 지불되는 비용)
- 간접경비: 임대료, 사무용품 등 직원이 사용하는 용품의 비용, 기타 기업의 관리운영에 관계된 간접경비
- 기자재비용(설비비용) :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구입한 자본장비(배출오염 정화기계 등) 비용으로 기계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포괄
- 원재료비(원자재비용) : 규제준수를 위해 투입되는 각종 투입재 비용 (예: 에너지 효율강화에 따른 이중유리 사용의무로 인한 대체재 투입으로 추가된 비용)

  * 이러한 비용은 설비재에 투입되는 자본비용(Capital cost)과 구분하여 운영비용(Operating costs)에 해당

- 외부서비스비용(외주비용) : 규제준수를 위해 외부 공급자에게 지출된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비용, 시스템 위탁 운영비용 등이 해당

- 일부 기회비용(지연비용) : 규제자가 규제이행에 따라 감수하는 영업손실 비용 등 규제수행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예) 규제이행을 위해 영업장에 설비 설치시, 동 기간 동안 생산·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 기회비용에는 직접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지연비용)과 간접비용(대안 포기비용, 후술)에 해당하는 항목이 모두 있음을 유의

- 교육 훈련비용 : 새로운 규제 신설·강화 내용에 순응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비용

* 예)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이에 관련된 직원 교육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규제 내용이 명시적으로 교육 및 훈련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 등

간접비용(Indirect Costs)

(1) 정부비용(Administration & Enforcement Costs)

- 정부부문에서 규제의 운영·관리와 이행상황의 감독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새로운 규제를 공포하고 규제집행을 위한 새로운 등록, 면허, 인허가 등의 시스템을 개발, 설치,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 정부비용은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간접비용으로 분류됨에 유의

(2) 기회비용(대안 포기비용)

- 규제대상자가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생산방식, 영업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포기하는 최대 기대 수익

(3) 2차적 비용(협의의 간접비용)

- 피규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감소 등

(4) 거시경제비용

- 규제로 인해 GDP, 고용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의미, 때에 따라 중요한 비용항목으로 취급될 수 있어 측정이 필요

※ OECD 규제순응비용 측정 가이던스를 일부 변경한 사항

1. 실질 순응비용에서 '이행비용' 삭제

-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행비용(규제대상자가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조직운영 및 영업전략 변경 비용 등 의미)은 실질 순응비용에 포함
- 그러나, 이는 인건비(조직운영 및 영업전략 변경에 따른 인력 투입)나 외부서비스 비용(조직운영이나 영업전략 변경과 관련,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별도로 분류하지 않음

2. 실질 순응비용에 '교육 훈련비용' 추가

3. 일부 항목 용어 수정

- 직접비용에 해당하는 일부 기회비용을 '지연비용'으로 분류하여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기회비용(대안 포기비용)'과 구분
- 기존의 '행정부담'을 '피규제자 행정부담'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행정적인 부담이라는 의미를 명확화
-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피규제자외 주요 영향집단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으로 명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해 '2차적 비용(협의의 간접비용)'으로 명칭 변경

4. '정부비용'을 간접비용으로 분류

- 직접비용을 피규제자에게 1차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의함에 따라 정부에게 발생하는 정부비용을 간접비용으로 분류

5. 간접비용에서 '금융비용'을 삭제, 직접비용 항목으로 흡수

-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비용(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생산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 자본조달에 소요되는 이자비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 자본조달에 소요되는 이자 비용 등은 실질 순응비용 중 '기자재 비용'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음

2. 실질적 순응비용 측정 방법

※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각 비용별로 대상자 특성, 규제환경 등에 따라 적절한 측정 방법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필수

① 행정부담

- 보고비용 :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 시간급 × 전환계수 × 투입인력 × 연간보고 횟수
- 새로운 장비나 생산과정의 비용 : 관련 당사자와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데이터 생성

② 직접 노동비용 (Direct Labor Costs)

- 임금 : (총 노동 투입시간) × (시간당 노동비용)

* 투입 시간은 표준 추정치, 전문가 의견, 유사 규제 사례 등을 적절히 활용하거나 규제대상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파악

** 단위당 노동 비용은 규제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 전체 경제 또는 특정 산업분야의 평균노동비용을 사용하거나 직접 조사

- 기타 인건비 : 연금, 휴가, 상해보험료, 관련 세금 등으로 공통기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

③ 간접경비 (Overhead Costs)

- 대상자에 따라 조직구조, 사무실·장비 이용 방법 등이 다양해 직접 조사보다 기준값(benchmark figure)*사용이 권장됨

* 호주의 경우 임금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

④ 기자재 비용 (Equipment Costs) : (구입총비용) × (일정비율)

- 규제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구입 또는 개선하는 기자재는 기존 기자재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생산에 투입되어 수익을 실현하므로 그만큼은 규제 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함
- 해당 기자재의 내구년수, 사용 기간, 자본조달비용 등을 고려, '일정비율'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산정

⑤ 원자재 비용 (Material Costs) : (신규원자재 이용시 예상 판매가격) - (현재 판매가격)

- 판매가격은 수요변동 등 다양한 시장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지만 불확실성이 크므로 신중할 필요

⑥ 외부 서비스 비용 (Cost of External Service)

- 관련 업종에서는 외부조달이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을 상대적으로 정확히 산정할 수 있으므로 직접 조사가 바람직

⑦ 교육 훈련비용

- 교육 훈련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을 계산

3. 측정 절차

(1) 규제의 범위에 대한 사전 검토 (Preliminary Assessment of Regulatory Scope)

o 대상 규제의 영향 범위 및 정책적 중요성, 관련 비용의 구성, 데이터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해 비용측정 계획을 수립

o 제한된 분석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석 대상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중요도를 파악해서 그에 상응하는 분석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

- 즉, 측정 방법을 결정할 때 필요한 노력·시간과 측정의 효과간에 비례성 (proportionality)을 준수

- 실제 OECD 각국은 일정 금액 기준을 설정*하거나 재량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규제담당기관과 평가기관이 협의

* 미국은 비용이 1억불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충실한 양적 평가 실시

** 호주는 'likely to be highly significant', EU는 'highly significant'등의 기준 사용

〈 비례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본 비용측정방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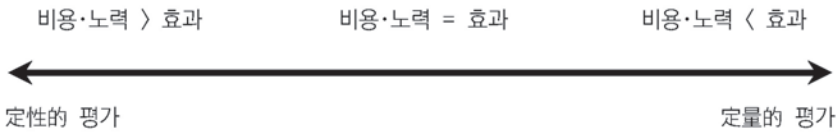

- 정성 평가 :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규제대상자 면접, 체크리스트 이용, 순위 비교 등 이용
- 기초 정량 평가 : 주요 순응비용의 구성을 파악하고 포괄적인(rough) 수준으로 정량적 평가를 진행해 신속하게 결과를 도출
- 중급 정량 평가 : 충실한 양적 평가를 진행하되 실제로 조사하기 보다는 비용 항목별로 사전에 정해진 기준치, 추정치 등을 이용
- 고급 정량 평가 : 비용 규모가 크고 규제의 영향이 큰 경우, 대상자에 대한 survey, 워크숍 개최, 유사한 규제의 측정치 사용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세밀한 방법으로 장시간에 걸쳐 정량적 평가 진행

(2-1)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소스 파악 및 수집전략의 수립 (Identify data Source and Strategy to be used)

o 필요한 데이터와 활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에 대한 파악은 비용측정의 불확실성 최소화 및 작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수

o 이때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자의 구성 및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사업자 단체 등을 통한 데이터 확보가능성 확인
- 확보된 데이터가 왜곡되었거나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데이터소스를 확보하거나 확인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
- 사용된 데이터소스를 정확히 밝히고 데이터에 대한 외부 접근이 가능토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방안도 마련

(2-2) 비용 추정을 위한 적절한 방법적 접근법 선택 (Select appropriate methodological approach to cost estimation)

o 각 비용별로 대상자 특성, 규제환경 등에 따라 적절한 측정 방법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측정을 위해 필수

(3) 자료수집(Data Collection)

(4) 기존 규제 순응 비용 파악(Develop an Appropriate Base Case)

o 기존의 상황(base case)을 기준으로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신규도입 규제의 순응비용은 총 비용에서 기존 규제의 순응비용을 차감한 순증분(incremental basis)으로 파악되어야 함
(규제도입 후 총 비용) - (기존 규제 순응비용 : base case)

o 대상 분야 전체를 묶어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이질적인 소그룹은 별도 측정한 뒤 합산하기도 함

(5-1) 각 세부비용에 대한 총합 도출 (Calculate estimates of each type of compliance cost)

o 각 비용을 합계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추가 고려할 필요

- 비용의 반복 여부 : 같은 비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 존속 기간 : 장기비용의 정확한 측정 (보통 10년)
  - · 할인율 : 미래비용의 현재가치를 정확히 측정(표준 할인율 사용)
- 정량분석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 정성분석의 효과적 사용

(5-2) 필요시 민감성 테스트 진행(Conduct sensitivity analysis if required)

o 주요 변수에 대해 복수의 추정값을 사용해 비용을 측정하고 그 내용을 비교분석한 내용을 정책 결정과정에 고려

o 비용 측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항목별 추정값의 작은 변동에 의해서 전체 비용 추정이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수행 필요

(6) 추정치 점검, 비용요소 확인, 규제안의 변경 필요 가능성 검토 (Review estimates, identify cost drivers, consider need/potential to revise proposal)

- ㅇ 산출된 전체 비용에 대한 확인, 주요 비용 요인에 대한 검토, 비용절감 방안의 추가 발견 등의 경우 상기 절차의 반복 필요
- ㅇ 대상 규제의 목적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실현 수단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평가되기도 함

(7) 결과의 제출(Present the results)

- ㅇ 규제의 도입여부 결정에 비용 측정 결과가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과보고에 포함되어야 함
  - 산출된 총 비용의 규모에 대한 이해 가능한 설명
  - 중요한 비용의 발생 시점 및 발생기간(단기 비용 or 지속 비용 등)
  - 주요 비용발생 요인 및 절감 가능성
  - 각 규제대상 집단(소비자, 중소기업 등)의 비용 부담 내용
  - 각 집단별 비용부담 규모 비교
  - 각 비용 추정값의 신뢰성, 정확성
  - 주요 불확실성의 내용 및 가능성

(8) 순응비용 측정 결과의 발표 (Publish the results of compliance cost assessment)

- ㅇ 측정 과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 부여, 측정담당자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결과는 발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ㅇ 대외 발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 권장
  - 결과발표를 공식 절차에 포함해 협의(consultation) 가능성 확대
  - 규제 도입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진행
  - 이해관계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사용

(9) 사후 확인 절차 진행 (Conduct *ex post* validation)

- 이행상황의 관찰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실제 규제가 도입된 후에 비용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 사후확인은 앞의 사전 측정기법과 유사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나 피규제자에 대한 조사(survey)가 특히 중요할 것임

참고2 규제연구센터

□ 개요

○ (목적) 규제비용분석 검증 등 규제비용총량제 실시를 지원

○ (기능) 규제비용 검증, 규제비용 분석틀 및 비용분석 매뉴얼 마련, 규제제도 연구, 비용분석기법 컨설팅

○ (조직) KDI·행정연 산하 독립 센터

- KDI(경제) : 2실(분석평가실·제도연구실)
- 행정연(행정·사회) : 3팀(비용분석팀·제도지원팀, 컨설팅팀)

	KDI 규제연구센터	행정연 규제연구센터
소 장	▸ 이수일 박사	▸ 이종한 박사
지 위	▸ KDI 산하 독립센터	▸ 행정연 산하 독립센터
기 능	▸ 경제부처 규제비용 분석·검증 ▸ 규제제도 연구 ▸ 비용분석기법 컨설팅	▸ 행정·사회부처 규제비용 분석·검증 ▸ 규제제도 연구 ▸ 비용분석기법 컨설팅
조 직	▸ 2실(분석평가실, 제도연구실)	▸ 3팀 (비용분석팀, 제도지원팀, 컨설팅팀)
대표번호	▸ 044-550-4069	▸ 02-2007-0523

□ 조직도

참고3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제외 판단기준

1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3번)

○ **(유형)** ▲관련 사업자 등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 ▲시설·설비 관련 기준을 강화** ▲안전관련 사전교육 및 점검 등 의무를 강화*** ▲기존 안전규제 적용대상 확대**** 등

* 낚시 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인명안전 설치 비치 등 조치

** 선박구명 설비기준 강화(자동복원형 구명뗏목 탑재, 구명동의 추가 비치 등)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에게 준수사항 교육실시 의무화

**** 운항증명을 받아야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사용 사업의 범위를 추가 확대

○ **판단기준**

- 1차적으로는 관련 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 생명·안전을 도모하는 형태이더라도 **규제의 '목적'**이 **국민 생명·안전 확보**인 경우 **적용제외**에 해당

  · 단, 해당규제의 **목적**이 **1차적**으로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例) ▲층간소음방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을 설정 : 1차적인 목적은 쾌적한 주거환경, 이웃간 분쟁 사전 예방
  ▲어선원 복지공간 설치대상 확대 : 1차적인 목적은 어선원의 복지 증대

- 다만, 도입하고자 하는 안전규제에 대해 **주요 선진국 기준, 타 규제와의 중복여부 등**에 대한 **입증내용을 충분히 제시**하고 이를 확인 후, 적용제외 인정

2 규제의 미이행으로 부과되는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7번)

○ **(유형)** 일반적으로 **의무부과·금지 규정**과 이를 미이행하거나 위반할 경우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을 가하는 형태로 구성

※ 미이행 또는 위반시 → 과태료, 과징금 / 자격정지, 업무정지, 영업소 폐쇄, 등록·지정의 취소 / 장비 수거 및 그 비용 징수 / 위반내용 등 공표 / 시정지시, 주의 촉구, 경고, 고용제한 / 시정조치계획 수립·공고, 시정조치 및 보고 /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조치

- 구체적으로는 ▲**의무부과·금지 규정**과 이에 따르는 **처분규정**을 **동시**에 신설 또는 강화* ▲**처분규정만**을 강화** ▲**의무부과·금지규정만**을 추가 신설 또는 강화***하는 형태

* 제조업자 등의 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및 업무의 정지기준을 신설(자체 시설·설비 등이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1차 일부정지 1개월, 4차 등록 취소 등)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부과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 ▲과태료 부과기준인 음주상태 기준 강화(0.05%~0.11% 50만원 → 0.03%~0.1% 50만원 등), ▲중기청장이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조합원 가입 권유시 등)

○ **판단기준**

- 행정제재처분의 인정범위 관련, 법령상 주어진 **의무나 금지**를 **미이행하거나 위반**했을 경우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 제재조치는 적용제외로 인정**

- 다만, **의무부과 및 금지규정**이 **새롭게 신설·강화**되어 **규제가 확대된 경우**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님**

3 조약이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2번)

○ **(유형)** ▲국제협약에 따라 **의무가 부과**된 사항을 규정하거나 **권고사항**을 도입하는 규정* ▲국제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선언적 사항을 국내법령에서 구체화**하는 규정** 등

* 의무부과사항 : STCW협약에 따라 운항관련 육상 실습기간을 승무경력으로 불인정(STCW 제II/1.2에서는 12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을 요구)
권고사항 : WTO TBT협정에 따라 철근, 후판, 형강 등을 원산지 표시대상에 추가

** 구체적 사항 :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에 따라 냉각 위험물질 주의표시 규정
선언적 사항 : 유엔기후변화협약 가입('93) → 30% 감축의사 공식 발표('09)
→ 국가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구체화(ITS구축, 대중교통인프라 확충 등)('14)

○ **판단기준**

- 국제협약 등에 의해 **의무가 부과된 사항**은 적용제외 인정
- **권고사항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행 합의**된 사항이거나 **부처간 이견이 없는 경우** 등에 적용제외 인정

  ※ 별도로 가입하는 국제협약 등이 아닌 국제적 기준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거나 다수 선진국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제외로 인정

- 선언적 사항을 국내법령에서 구체화하는 경우는 **세부내용을 각 국에 위임한 것**이므로 적용제외 인정

④ 1항 내지 7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용총량제 적용 제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8번)

○ **(유형)** ▲금품수수, 위·변조 등 사회 규범적 사안을 금지하거나 준수토록 하는 내용* ▲기존규제 완화에 따라 보완 또는 수반되는 기본적 의무규제** ▲그간 모순되었던 조항을 정상화***하는 규제 등

* ▲금품수수 등 계량기 관련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을 신설 규정 ▲항만시설운영자가 부두운영회사와 체결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안을 규정(공공복지 증진, 임대료 체납 등)

** 기존에 금지되던 보세구역내 석유제품 혼합제조행위를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여 허용함에 따라 기존 석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준의 기본의무를 부과(보고, 불법시설 개조 금지 등 금지행위 등)

*** 신용협동조합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순자본비율 관련 기준을 상호금융업의 기본법인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호금융감독규정에 준하여 조정

○ **판단기준**

- 사회규범적 사항, 모순되었던 조항 조정 등은 규개위가 인정하는 적용제외 사항
- 단, 기존규제 완화에 따라 보완 또는 수반되는 의무 규제는 **규제비용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간편심사, 적용제외, 비용분석)

⑤ 통상적인 임금 및 물가상승에 상응해 기존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규제(6번)

○ **(유형)** 정부내 공식 절차에 따라 각종 분담금, 부담금 요율을 상향

○ **판단기준**

- 정부의 충분한 검토·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로서 **규제강화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제외 인정

  * 방제분담금 : 5년마다 재산정하여 금액을 현실화 하는 절차 존재, 이해당사자와의 사전협의(선주 및 석유협회), 공식 절차 진행(기재부 심의운용위원회 통해 확정)

  * 담배 폐기물부담금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담배 값 인상에 연동

참고4 규제비용분석 및 검증 과정의 수정·보완 주요사례

1. 돼지 이력관리제

□ 개 요

○ 돼지 이력관리제 도입에 따라 그 이행단계별 이행주체인 사육농가, 도축장, 포장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및 신고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 (신설·강화 규제)

○ 최종결과 : 연간균등순비용 58.67억원

□ 분석 및 검증 과정 【수정·보완 사항】

❶ (문제점) 당초 양돈농가의 이력번호 표시 등 불편함 토로 등 돼지 이력관리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서술 ⇨ 돼지 이력관리제 도입이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서술로 수정

❷ (대안) 도입하려는 규제외의 대안에 대한 서술이 없었음 ⇨ 돼지 이력 관리를 ⅰ) 양돈농가별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농가 식별번호를 돼지에 표시(문신)하는 '농장별 이력관리방식'과 ⅱ) '전자태그를 활용한 개체별 이력관리방식'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내용 보완

❸ (분석의 가정) 비용산출시 유통단계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는바 그 대표성 입증 필요 ⇨ 직접 인터뷰한 결과를 활용하였고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였음을 소명

* 사육농장 20호, 종돈장 14호, 도축장 23개소, 포장처리업소 26개소, 식육판매업소 18개소 등

❹ (정부 보조금 계상) 당초 문신기 비용에서 정부 보조금액을 차감한 순비용만을 직접비용으로 계상 ⇨ 문신기 비용을 직접비용 항목에, 정부 보조금을 직접편익 항목에 계상

❺ (비용지표값) 당초 인건비 산정시 일괄적으로 시급 7,000원으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 보완 필요 ⇨ 통계청(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4)의 '13년 농업 노동임금을 적용

* 1일 농업노동임금 : 남자 91,917원, 여자 60,612원, 평균 76,265원

2. 간행물의 정가변경 절차

□ 개 요

○ 발행 후 18개월이 지난 도서(구 간행물)에 대해 정가변경이 가능토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출판업자가 이행해야 할 정가변경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신설·강화 규제)

○ 최종결과 : 연간균등순비용 4백만원

□ 분석 및 검증 과정 【수정·보완 사항】

❶ (분석의 가정) 정가변경 구간 추정치인 연간 발행종수의 12%에 대한 가정 보완 필요 ⇨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분석의 가정을 제시

* 구 간행물의 정가변경은 어학, 문학, 아동서, 일부 실용서 4개분야 중심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측 (4개분야 비율 0.3), 4개분야 구간 정가변경 예상 비율(0.4) → 0.3 × 0.4 = 0.12

3. 친환경주택의 설계 및 성능기준 강화

□ 개 요

○ 친환경 주택(30호이상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30→4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신설·강화 규제)

○ 최종결과 : 연간균등순비용 9억원

□ 분석 및 검증 과정【수정·보완 사항】

❶ (분석의 가정) 분석대상을 민간은 전용84㎡, 공공임대는 전용46㎡로 가정한 근거 제시 필요 ⇨ 민간은 주택종합계획상 대표평면인 59㎡, 74㎡, 84㎡, 101㎡, 125㎡의 평균인 80.56과 가장 가까운 84㎡로 가정 / 공공은 36㎡, 59㎡의 중간 크기인 46㎡로 가정

4. 계량행정업무 정보관리 및 정량표시상품 관리

□ 개 요

○ 계량기 제조업자, 형식승인기관 등의 기록관리 및 그 보존에 관한 사항, 적합성 확인기관의 적합성 신청 제출 서류를 보관 의무화 등 내용
(신설·강화 규제)

○ 최종결과 : (계량행정업무 정보관리) 연간균등순비용 11.59억원 /
(정량표시상품 관리) 연간균등순비용 16백만원

□ 분석 및 검증 과정【수정·보완 사항】

❶ (분석의 가정) 계량기 관련 사업자수의 가정에 대한 설명 필요
⇨ '13년 국가기술표준원 내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함

* 계량기 제조업자 323, 계량기 수리업자 493, 계량 증명업자 1,439 등

❷ (비용지표값) 인건비 산정시 당초 명목임금상승률을 비용항목 중 일부에만 적용
⇨ 인건비 산정시 명목임금상승률인 3.9%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 고용노동통계의 최근 5년간의 5인이상 사업장 기준 명목임금상승률인 3.9% 적용

5. 배합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

□ 개 요

- ㅇ 양축용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별도의 사료제조시설(분쇄·배합·포장 등) 설치의무를 폐지 (폐지·완화 규제)
- ㅇ 최종결과 : 연간균등순비용 △878백만원

□ 분석 및 검증 과정【수정·보완 사항】

❶ (규제대안) 당초 규제의 도입취지 및 규제 폐지 필요성 제시 미흡 ⇨ 여타 사료관련 규정* 및 지자체 감독 등을 통해 사료원료 혼입 방지 및 관리가 가능함을 추가 보완하여 동 규제 폐지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소명

* 이미 다른 규정을 통해 배합사료의 원료가 되는 단미사료 제조단계에서부터 다른 단미사료와의 구분이 엄격히 이뤄지도록 관리 등

6. 통합허가 배출기준 설정 등

□ 개 요

- ㅇ 수질·대기 등 매체별로 분절된 허가관리체계를 통폐합하여 통합 허가, 최적가용기법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허가사항 확인 및 이행점검 등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신설·강화 규제)
- ㅇ 최종결과 : 연간균등순비용 △8,241백만원

□ 분석 및 검증 과정【수정·보완 사항】

❶ (비용·편익 항목) 통합허가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절감액*을 피규제자의 직접 편익으로 산정 ⇨ 정부비용 절감액이므로 직접 편익 항목에서 삭제

* 매체별 허가 대행비용 - 통합허가 대행비용

❷ (비용지표값) 인건비를 월급, 일급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임금과 관련된 비용을 비교 가능하도록 일관된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 ⇨ 시간당 급여로 표준화

7. 어선중개업의 등록 의무화

□ 개 요

○ 기존에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어선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어선중개업의 신규 및 변경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취소 사유와 손해배상책임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신설·강화 규제)

○ 최종결과 : 연간균등순비용 △284.46백만원

□ 분석 및 검증 과정 【수정·보완 사항】

❶ (피규제자 범위) 어선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어민까지 피규제자로 간주
⇨ 피규제자로 어선중개업자를 식별했으므로 제3자인 일반 어민은 제외

* 단, 거래당사자가 보증보험 가입 후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의 경우, 어업인이 어선거래로 인한 피해발생액을 보전받는 것이므로 일반어민을 피규제자로 간주

❷ (분석의 가정) 투명한 어선거래시장 조성으로 인한 어선가격·중개수수료 인하를 직접편익으로 간주 ⇨ 어선가격·중개수수료의 변동 방향이 불확실하고, 어선가격 인하 등의 영향이 간접적*이므로 간접편익으로 간주

* 어선중개업 등록 의무화 → 투명한 어선거래시장 조성 → 어선가격 등 인하

참고5 분석·검증 완료된 안건의 통계분석 사례

□ 유형분석

ㅇ 피규제자수 모수 추정

i) 주로 해당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통계**를 활용, 마땅한 통계가 없는 경우는 해당분야 **협회 등과의 인터뷰 결과**도 활용

【 관리통계 활용 】▲ 돼지 이력관리제 : 농가 수 등에 대해 '13년말 농식품부 통계를 활용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 산림사업법인 등록수에 대해 산림청 '13년 말 통계를 적용

【 인터뷰 등 활용 】▲ 구간의 정가변경 절차 : 정가변경 구간 규모를 대한출판 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협회 관계자 면담을 통해 추정

ii) 피규제자수의 변동은 해당분야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활용**하거나, **최근의 추세**, 연구결과 등을 다양하게 활용

【 중장기종합계획 활용 】▲ 산림탄소사 자격요건 : 교육생수에 대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출 종합대책('13.3)상 산림탄소관리사 고용창출 계획을 적용

【 최근의 추세활용 】▲ 배합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 : 향후 신규 등록 예정 업체에 대해 최근 3년간 1개 업체가 신규 등록한 실적이 있음을 감안, 3년마다 1개 업체 신규등록하는 것으로 가정

ㅇ 각종 비용의 단가

i) 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존 단가기준**을 활용

▲ 계량행정업무 정보관리 등 : 인건비는 '1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한국물가정보), 제조업 및 서비스업 월평균 급여('12년 고용부 임금근로시간) 적용

ii) 여의치 않을 경우, **직접 조사한 결과**나 **업체의 중간치를 기준**으로 활용

▲ 돼지 이력관리제 : 재료비에 대해 '14년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적용

▲ 배합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 : 배합사료 제조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사료제조업체 중 생산량이 중간값을 보이는 공장의 시설설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 기타

- 비용 등을 산출해야 하는 항목을 식별하기 위해 직접 피규제자를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례도 존재

▲ 돼지 이력관리제 : 사육농장 20호, 종돈장 14호, 도축장 23개소, 포장처리업소 26개소, 식육판매업소 18개소 등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

□ 통계분석 사례

안건	통계분석 사례
돼지 이력관리제	○피규제자수 모수 추정 - 2013년말 농식품부 통계를 근거로 설정 (양돈농가 5,356농가, 종돈등록농가수 106호, 도축두수 16,130천두, 종돈등록두수 186천두, 식육판매업소 51,851개소 등) - 향후 10년간 피규제자 수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추정 ○각종 비용의 단가 - 재료비 : '14년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적용 (문신기 70천원/개, 잉크비 11천원/500㎖, 이표 1,199원/두 등) - 인건비 :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의 농업노동임금(2014)의 남·녀 평균으로 적용 (1일 임금 : 남자 91,917원, 여자 60,612원, 평균 76,265원) * 시급은 1일 8시간 근무조건으로 환산하여 적용 : 평균 9,533원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산출해야 하는 항목은 피규제자(양돈농가, 협회, 업체 등)를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 - 표본조사자 수 : 사육농장 20호, 종돈장 14호, 도축장 23개소, 포장처리업소 26개소, 식육판매업소 18개소
배합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	○피규제자수 모수 추정 - 양축용 및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업체수는 '14.10월말 현재 등록된 업체 수 통계 적용 (29개) - 향후 신규 등록 예정 업체는 최근 3년간 1개 업체가 신규 등록한 실적이 있음을 감안, 3년마다 1개 업체 신규등록하는 것으로 가정 ○각종 비용의 단가 - 배합사료 제조시설 설치비용의 경우, 사료제조업체중 생산량이 중간값을 보이는 00원료사료 00공장의 시설설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분쇄시설 250만원, 배합시설 40만원, 정선시설 30만원, 포장시설 80만원)

안건	통계분석 사례
산림탄소사 자격요건	○피규제자수 모수 추정 - 교육생수는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13.3)상의 산림탄소관리사 고용창출 계획을 적용 (1년차 8명, 2년차 9명, 3년차 9명, 4~10년차 매년 11명) ○각종 비용의 단가 - 산림탄소사 자격 획득을 위한 교육비는 산림교육원의 교육비(1일 3만원)를 적용하고, 신규교육은 5일(15만원), 보수교육은 2일(6만원)을 적용 · 신규 5일, 보수 2일은 산업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9조(검증 전문인력의 관리 등) 기준을 적용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피규제자수 모수 추정 - 산림사업법인 등록수는 산림청 통계를 적용 ('13년말 현재 635개) - 향후 법인수 변동은 임업의 부가가치가 2030년까지 연평균 1.2% 감소시 고용노동자는 2030년까지 1.1%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을 근거로 산출(김철상, 2010년) - 산림사업법인중 영세업체의 비중은 산림사업법인협회 인터뷰를 통해 확보 (70%) ○각종 비용의 단가 - 상시고용 일반인부에 들어가는 비용은 급여 + 4대보험료(법인부담금)으로 산출 · 급여는 산림사업법인협회 통계 활용, 4대보험료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결과 활용
친환경 주택의 설계 및 성능기준	○피규제자수 모수 추정 - 연평균 신규건설 세대수는 제2차 장기('13-'22년)주택종합계획의 공급세대수 39만호/년을 적용하되, 공공임대는 연 11만호, 민간주택은 연 28만호로 추정 - 세대면적은 민간은 주택종합계획상 대표평면인 59m^2, 74m^2, 84m^2, 101m^2, 125m^2의 평균인 80.56m^2와 가장 가까운 84m^2로 가정 / 공공은 36m^2, 59m^2의 중간 크기인 46m^2로 가정 ○각종 비용의 단가 - 개별 요소항목의 변경에 따른 직접공사비는 LH의 공동주택 설계시 적용하는 일위대가를 근거로 추정하되,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상승률인 3.16%씩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안건	통계분석 사례
계량행정업무 정보관리 등	○피규제자수 모수 추정 - 계량기 사업자 수는 국가기술표준원 내부 통계자료('13년) 활용 (제조업자 323, 수리업자 493, 증명업자 1,439 등) - 폐업자 수는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의 제조업 평균 폐업율(8.2%)을 활용 (신규 진입은 거의 없는 것을 고려, 지속 감소 추정) ○각종 비용의 단가 - 공간비용은 1면당 필요 공간 × 평균 건축비 적용 · 1면당 필요공간은 국가기록원 기준으로 A4용지 100면을 한권으로 가정할 경우 1면당 0.0055m^2 필요 · 평균 건축비는 3.3m^2당 180만원 소요 가정 - 인건비는 '1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한국물가정보), 제조업 및 서비스업 월평균 급여('12년 고용부 임금근로시간) 적용 - 임금상승률은 고용노동통계의 최근 5년간('08-'13) 5인이상 사업장 기준 명목임금상승률인 3.9% 적용
통합허가 배출기준 설정 및 실태조사	○피규제자수 모수 추정 - 신규사업장 수는 '08-'12년 최근 5년간 허가를 신청한 사업자 수(41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가정 (매년 8개 정도) ○각종 비용의 단가 - 통합관리사업장 직원 인건비는 통계청의 「산업중분류 산업, 근로시간,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11년)」참고하여 산정
간행물의 정가변경 절차	○피규제자수 모수 추정 - 정가변경 구간 규모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협회 관계자 면담을 통해 추정 · 구간의 정가변경은 어학, 문학, 아동서, 일부 실용서 4개분야 중심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측(4개분야 비율 0.3), 4개분야 구간 정가변경 예상 비율 (0.4) → 0.3 × 0.4 = 0.12 ○각종 비용의 단가 - 출판업계 인건비는 '13년 출판 산업 실태조사시 대리급 일당 적용

참고6 간편심사 사례

1. 국제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 개 요

○ 국제선박에 승선 가능한 외국인 선원 수 기준을 규정 (신설·강화 규제)

- 필수국제선박은 6명 이하, 지정국제선박은 8명 이하, 일반국제선박은 자율 등

○ 금번 규제신설 이전에도 노사합의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명문화에 따른 실질적 비용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아 '간편심사제'를 적용한 사안

□ 최종 결과

○ 연간균등순비용 : 0원

※ '07년 노사합의 및 '08년 노사정공동선언문에 따른 내용을 그대로 고시로 명문화하는 것으로서,

- ▲그간 해수부는 노사합의 등에 적합한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신고를 승낙해 왔고, ▲국제선박외국인선원 고용협의회는 외국인 선원 관련 선사별 정원제 준수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 옴

⇨ 실효적 행정구속력이 유지되어 오던 것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추가비용 발생이 없음

2.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 개 요

- ㅇ 상위법(식품산업진흥법)이 우수식품 인증기관 재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 인증기관 지정신청 절차에 재지정 신청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 (신설·강화 규제)
- ㅇ 재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과 맞물려 필요한 기본적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아 '간편심사제'를 적용한 사안

□ 최종 결과

- ㅇ 연간균등순비용 : △0.54백만원

※ 재지정 신청을 위한 수수료(0.2백만원/5년)에 비해, 인증기관 재지정을 받음에 따른 단절없는 인증업무 수행을 통한 절감액(2.64백만원/5년)이 오히려 더 큰 사안

3. 어선설비 기준

□ 개 요

- ㅇ 10톤 이상 어선의 식당, 식품창고, 대변소 설치대상 확대(24m이상 어선 → 모든 어선) 등 어선원 복지공간 개선을 위한 내용 (신설·강화 규제)
- ㅇ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아 '간편심사제'를 적용한 사안

□ 최종 결과

- ㅇ 연간균등순비용 : 3.6억원

참고7 심사처리제 사례

1.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기준

□ 개 요

- ㅇ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면허기준대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운송부대시설 등 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내용 (신설·강화 규제)
- ㅇ 면허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운송사업 면허를 얻고자 하는 피규제대상을 사전에 한정하기 어렵고 지역별 노선에 따른 면허기준 차량대수도 추정하기 어려워 '심사처리제' 적용한 사안

□ 판단 기준

- ㅇ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총점관리제'를 적용

▲ 모든 규제를 입지·진입 / 거래·가격 / 품질·사회 / 행정규제로 나누고 각 카테고리별로 행위강도(특허〉인허가〉신고〉사후보고 등)와 적용범위(적용되는 기업 등 비율 : 75%초과, 75%이하, 50%이하 등)를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

□ 최종 결과

- ㅇ 운송사업 면허 기준은 운송사업 승인권자가 운송사업면허권자의 면허 승인시 행정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행정적 규제로 분류되며 유사 법령* 수준(E1)으로 분석 ⇨ 규제총점제 적용 결과, 15점 (신설·강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 ㅇ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기준'의 폐지·완화규제도 함께 제시
  ⇨ 규제총점제 적용 결과, 26점 (폐지·완화)

  * 노후화된 2단 단순승강식과 경사승강식의 경우에는 총 주차대수와 상관없이 철거 후 새로 확보하여야 하는 법정 주차대수의 절반 감면 등

2. 붕어 등 크기기준과 양식용 자라 국내 반입 허용기준

□ 개 요

○ 낚시터용 붕어, 잉어, 향어의 크기 기준을 설정(제한없음→20cm이상)하고, 양식용 자라는 국내산과 동종에 한하여 국내반입을 허용(신설·강화 규제)

○ 낚시터용·양식용 붕어, 잉어, 자라 등의 수량 및 업소 개수와 어규크기 및 품종에 따른 가격 변화 등의 추계가 어려워 '심사처리제' 적용한 사안

□ 판단 기준

○ 규제개혁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마련한 해수부 자체 기준 적용

▲ 규제성격(진입/가격/거래/품질/행정)별 기초지수에 규제강도(허가/인가/신고 등), 파급효과(영향집단 수), 개선정도(대폭/중폭/소폭), 규제방식(포지티브/네거티브), 일몰설정 여부 등에 따른 가중치의 합을 곱하여 산출

□ 최종 결과

○ 심사처리제 적용 결과, 36점 (신설·강화)

기초지수	가중치					총점
	강도	개선정도	파급효과	방식	일몰	
거래규제	거래조건 제한	소폭	100 만명 미만	positive	미설정	
6	1.5	0.5	1	1.5	1.5	36

: 6 x (1.5 + 0.5 + 1 + 1.5 + 1.5) = 36

○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승인기준 중 '모시조개 국내반입 크기 기준(각장2.8cm이하→각장3cm이하 등)'을 완화하고, '전복 국내반입은 국내에 서식하지 않는 종까지 확대'하는 폐지·완화규제도 함께 제시 ⇨ 심사처리제 적용 결과, 36점 (폐지·완화)

2014년도

규제개혁백서

발 행 일 : 2015. 4.
발 행 처 : 규제개혁위원회
편 집·인 쇄 : 경성문화사 (044-868-7636)

발 간 등 록 번 호
11-1092000-000005-10

2014 Regulatory Reform Book

국민을 웃게 하는 행복한 변화